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11



법 무 부

발 간 사

법무부는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과 발전된 형사법 이론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009년 3월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작업 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영미·대륙법계 국가의 형사 법제를 참고하고 해외 입법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해당 국가의 재외 국민 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각국 형사법에 대한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에는 일본 형사소송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자료집의 번역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 11.

법무부 검찰국장 국 민 수

서 문

국내의 모든 형사소송법 책을 펼치면 첫 대목에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나온다. 독자들은 세계의 형사소송법의 역사를 배우면서 형사소송제도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눈다고 읽는다. 그 중 하나가 당사자주의고, 다른 하나가 직권주의다. 물론 순수한 당사자주의나 순수한 직권주의란 이념형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어떤 제도를 당사자주의 쪽이다 혹은 직권주의 쪽이다, 라고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때 우리는 영국의 형사소송제도를 당사자주의라고 보고, 프랑스나 독일의 형사소송제도를 직권주의라고 본다. 특히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19세기 「치죄법」이 먼저 알려졌었기 때문에, 독일의 직권주의에 비해 조금 더 강경한 것은 아닐지 지레 짐작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프랑스에는 아직도 오노레 드 발자크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불렸던 예심판사가 존재하므로, 틀림없이 강경한 직권주의가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과연 그럴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별은 중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로마법을 모범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프랑스 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요소가 로마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공존하고 있다.

로마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소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delits prives)’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delits publics)’였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선의에 의한 합의나, 조정, 중재, 혹은 결투, 또,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쌍방당사자로 서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앞서부터 말하자면, 화해, 형사조정, 중재, 결투, 법정공방

식으로 다양한 해결 방식을 마련해 왔다. 그 중 가장 마지막 것을 일컬어 우리는 당사자주의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당사자주의적인 형사소송구조를 줄곧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플리바기닝도 미국의 예를 본 딴 것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에는 전혀 없던 것도 아니다. 원래 죄질이 특히 중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크게 다투지 않는 범죄를 재판 이전에 처리하는 제도란 미국에 특유한 제도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법익 혹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지만 죄질이 중한 것은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화해에 부칠 수 없었으리라는 점도 당연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직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혐의자를 불러서 신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것이 바로 라틴어로 *quaestio*이고, *inquisition*(직권주의)이라는 말은 *quaestio*에서 나온 말이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accuse*하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혐의 인지 후에 바로 판사의 신문을 시작하던 방식, 이것을 나중에 직권주의라고 통칭하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로마가 먼저 이런 식의 직권주의를 시작했고, 나중에 프랑스가 받아 들였으며, 예심판사의 직권주의라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요컨대, 프랑스는 지금도 사소와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의 흔적을 역력하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심판사의 피고인신문이라는 직권주의의 골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형사소송제도는 과연 당사자주의 쪽인가? 직권주의 쪽인가? 답하자면, 경죄에 대해서는 당사자주의 쪽이고, 중죄에 대해서는 직권주의 쪽이다. 그리고 어떤 시대, 가령, 19세기 초반에는 직권주의 쪽이었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당사자주의 쪽이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다시 직권주의 쪽이었다. 프랑스의 형사소송제도는 그렇게 모습을 달리해 왔다.

그러다가 21세기를 열면서 소위 *Outreau* 사건이라고 하는 예심판사의 권한 남용 사건이 발발하고, 프랑스의 직권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예심판사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10년 간 예심판사의 직권주의에 대한

대안이 줄기차게 모색되고 있으며, 그 모색은 오늘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수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형국이다.

당연히 또 수년 내에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부쳐질 것이다. 프랑스의 직권주의는 지금 그만큼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형사소송법 한국어판 2005는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프랑스 형사소송제도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도저히 내릴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라는 조건 속에 있는 프랑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판 2005를 출간하신 분들도 한두 해 단위의 개정판을 내실 엄두를 못 낸 것이다. 그렇게 2010년에 이르렀고, 필자가 2010년 판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받았을 때, 2005년 판에 비해서 약 600조 가량이 개정되었으며, 200조가 새로 추가된 상태였다. 번역 대상으로 삼은 조문 끝 번호가 제803조인 걸 감안하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법이 2010년 프랑스 형사소송법이었다. 그래서 2005년 판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번역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형사소송법 자체는 지금 심각한 고민의 와중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직권주의의 강화냐, 당사자주의로의 전격적인 혁명이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또, 국외적으로는 프랑스적인 형사소송법이나 유럽 형 형사소송법이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앞의 이슈에 대해서는 2010년 법 개정 당시 해법이 정해져서 입법에 반영된 게 아니므로, 번역 부담은 크지 않았다. 다만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뒤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총 600개조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조문 사이사이 바뀐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일부 개정의 수준은 훨씬 넘는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제1권 「수사와 공소」에서는 제1편 제1장bis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이의 업무분담”이라는 제목 아래 제30조가 신설되었고, 제2장 제5절 “국가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제목 아래 제48-1조가 추가되었다.

제1권 제3편 「예심법원」 항목에서는 제1장 제7절 제4관으로 “구속에 대한 보상”을 담은 조문 제149조와 제150조가 신설되었으며, 제2권 「판결법원」에서는 제1편 제8장을 추가하여 중죄에 대하여도 궤석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중죄의 경우에도 “궤석재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제379-2조).

이처럼 제3권까지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 편이나 절 전체가 통째로 추가된 예는 별로 없다. 하지만 제4권 「특별소송절차」에서는 종전 법과의 동일성이 의심될 정도로 많은 조문 개정과 추가가 있었다. 특히 제10편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제목 아래 「총론」,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항」, 「프랑스와 특정 국가의 사법공조에 관하여」, 「2002년 6월 13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회원국 간의 범인 인도 절차와 유럽 체포구금영장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등 주로 외국과의 협약의 결과를 형사소송법에 반영하는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있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자체적인 결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 세계의 사법제도가 공조할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제20편 bis에서는 「사법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하여」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제21편bis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경감 혹은 방지하거나,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정범 혹은 공범의 특정에 도움을 주어 형 면제 또는 감경의 혜택을 얻은 자에 대한 보호”라는 제목을 붙여, 현재 우리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어 제25편 내지 제31편까지는 종전에 없던 항목들이다. 가령, 제25편은 「조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고, 제26편은 「선박폐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 제27편은 「보호대상인 성인이 저지른 범죄의 기소, 예심 수사 및 판결에 대한」 규정, 제28편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9편은 「압류특칙」, 제31편은 「보존조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도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방식과 국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히 제25편 「조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에 보면, “감시(706-80),” “잠입(706-81),” “보호유치(706-88),” “수색(706-89),” “전기통신의 감청(706-95)” 등 새로운 수사에 대한 규정이 대폭적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그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방안도 치밀하게 기획되어 약 30개 조문으로 된 새로운 장이 추가된 모양새다.

제5권 「집행절차」에서는 제1편 제3장에 “몰수 결정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한 장이 신설되었다. “2006년 10월 6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몰수 결정의 집행과 양도에 관”하여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구체화 방안을 담은 것이다. 또, 제2편 「구속」에서 제2장 제8절 “형벌조정이 없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방법”과 제9절 “중죄 또는 경죄로 형 선고를 받은 위험한 자에 대한 사법감시”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제3편 bis로 「공공근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7편 ter는 「보안조치의 일종인 전자감시」를 규정하는 편으로 신설되었고, 제10편 제1장 제3절에서는 「몰수 목적의 물건 압수에 대한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제목만 나열해 보아도 2003년이나 2005년이 법이 예정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공조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달라진 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된다.

번역에 착수하면서 역자는, 한편으로는 개정 조문들을 정확하게 편입하고, 2005년 한국어판에서 소개된 것을 다듬고,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하지만 번역을 끝내고 돌아볼 때, 부족한 것 투성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급적 우리 법과 비슷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단어를 놓친 것 같아 내내 불편하다. 독자들의 가차 없는 지적을 구한다.

2011년 가을 현재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형사소송법 개혁안을 또 하나 만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심판사의 폐지와 당사자주의의 강화라는

의도에서 기획안을 만들었고, 프랑스 내 모든 법조 관련기관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이다.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다시 반영되면 이미 포화상태처럼 보이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것이고, 그걸 또 우리는 고통스럽게 번역해야 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왜 자주 변하는 것일까? 왜 남들보다 자주, 많이 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실무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중계하는 것이 역자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바라는 생각을 한다. 까다롭고 힘든 일이지만 2012년부터는 추록 형태로라도 변모된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재빨리 번역해서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반드시 잘 하고 싶다. 그를 위해서도 이번 판에 대한 독자들의 거침없는 질책과 제안, 지적이 간절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이 풍부히 인용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9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희균

목 차

프랑스 형사소송법

序 條 (2000년 6월 15일 법률 제2000-516호)	3
서편 공소 및 사소	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편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14
제1장 사법경찰	15
제1절 총 칙	15
제2절 사법경찰관	16
제3절 사법경찰리	20
제4절 사법경찰의 특정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22
1.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22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23
3.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	27
제1-1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이의 업무분담	28
제2장 검 사	29
제1절 총 칙	29
제2절 고등검사장의 권한	29
제3절 검사장의 권한	30
제4절 경찰법원 및 근린법원의 공소관	41
제5절 국가사법정보시스템	42
제3장 예심판사	43

제2편 수사 및 검문	45
제1장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법	45
제2장 예비수사	65
제3장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	70
제3편 예심법원	76
제1장 예심판사:제1단계의 예심법원	76
제1절 총 칙	76
제2절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효과	85
제3절 현장검증, 압수·수색 및 통신의 감청	90
1. 현장검증과 압수·수색	90
2. 전기통신의 감청	96
제4절 증인신문	97
1. 총 칙	97
2. 출석증인	100
제5절 피의자 신문 및 대질	102
제6절 영장 및 그 집행	109
제7절 사법통제 및 구속	116
1. 사법통제	118
2.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124
3. 구 속	126
4. 구속에 대한 보상	138
제8절 공조의 촉탁	139
제9절 감 정	142
제10절 예심수사의 무효	149
제11절 예심수사 종결 결정	151
제12절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159
제13절 새로운 증거에 기한 예심수사의 재개	164
제2장 고등법원 예심부:제2단계의 예심법원	164
제1절 총 칙	164
제2절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고유 권한	175

제3절 사법경찰관리 활동의 감독	179
제4편 공통규정	180
제1장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180

제2권 판결법원

제1편 중죄법원	182
제1장 중죄법원의 관할	182
제2장 중죄법원의 개정	182
제3장 중죄법원의 구성	183
제1절 법 원	184
1. 재판장	184
2. 배석 판사	184
제2절 배 심	185
1. 배심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	185
2. 배심원단의 구성	187
제4장 중죄재판의 준비절차	190
제1절 필요적 행위	190
제2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193
제5장 재판의 개시	195
제1절 배심원 명부의 수정	195
제2절 공판배심의 구성	197
제6장 심 리	199
제1절 총 칙	199
제2절 피고인의 출석	202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204
제4절 변론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209
제7장 판 결	212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212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214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216

제4절 판결문 및 조서	218
제8장 중죄의 궤석재판	218
제9장 제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220
제1절 총 칙	220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222
제3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223
제2편 경죄의 재판	224
제1장 경죄법원	224
제1절 경죄법원의 관할 및 사건수리	224
1. 총 칙	224
2. 임의출석과 소환장에 의한 출석	228
3. 조서에 의한 소환과 신속절차기소	230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공판의 개정	235
제3절 공판의 공개 및 법정경찰권	238
제4절 공 판	239
1. 피고인의 출석	239
2.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그 효과	243
3. 증거 법칙	245
4. 당사자의 의견 제출	250
제5절 판 결	252
제6절 불출석 재판 및 이의신청	260
1. 불출석 재판	260
2. 이의신청	261
3. 재 불출석	262
제7절 간이소송절차	263
제8절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266
제2장 경죄사건에 관한 항소법원	270
제1절 항소권의 행사	270
제2절 경죄항소부의 구성	276
제3절 경죄항소부에서의 절차	276

제3편 위경죄의 재판	279
제1장 경찰법원의 관할	279
제2장 간이소송절차	280
제2-2장 범칙금 절차	282
제1절 일정한 위경죄에 적용되는 규정	282
제2절 육상수송기관의 경찰에 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	283
제2-2절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	286
제3절 공통규정	287
제3장 경찰법원의 사건수리	289
제4장 경찰법원의 중국적 심리	290
제5장 굴석재판 및 이의신청	292
제6장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	292
제4편 소환 및 송달	293

제 3 권 비상구제방법

제1편 대법원에의 상고	300
제1장 상고대상 재판 및 상고요건	300
제2장 상고의 제기	305
제3장 상고심의 개시	308
제4장 상고심의 심리 및 공판	310
제5장 대법원의 판결	311
제6장 법률상 이익을 위한 상고	314
제2편 재심청구	315
제3편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따른 형사 판결의 재심	319

제 4 권 특별소송절차

제1편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321
제1장 사법적 협력	321
제1절 형사사법 공조	321
제2절 체포 및 범인 인도	322

제2장 국제형사법원이 선고한 형 및 배상조치의 집행	326
제1절 벌금형 및 몰수, 피해자를 위한 배상조치의 집행	326
제2절 징역형의 집행	327
제1편bis 합헌성 문제	328
제2편 위 조	329
제3편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소송절차	331
제4편 정부각료와 외국사절의 증언절차	332
제5편 관할의 결정	333
제6편 관할의 이전	334
제7편 기 피	336
제8편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	339
제9편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	340
제1장 프랑스 법원의 관할	340
제2장 기소의 실행 및 토지관할	345
제10편 국제형사사법공조	346
제1장 총론	346
제1절 공조 요청의 실행과 전달	346
제2절 잠입, 감시 및 진술청취 목적의 공조 요청	348
제3절 몰수 목적의 물건 압수에 대한 사법공조	349
제2장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항	350
제1절 사법공조의 요청 및 전달	350
제2절 공동수사팀	350
제3절 유로저스트에 관하여	351
제4절 유로저스트의 대표	353
제5절 2003년 7월 22일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증거물 및 자산의 동결 결정의 통지 및 집행에 관하여	353
1. 총 칙	353
2. 프랑스의 사법기관이 행한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에 대하여	356

3. 외국의 사법기관이 발령한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356
제3장 프랑스와 특정 국가의 사법공조에 관하여	361
제4장 2002년 6월 13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회원국 간의	
범인 인도 절차와 유럽체포구금영장에 대하여	361
제1절 총론	361
제2절 프랑스 사법기관의 유럽체포구금영장 통지에 관하여 ...	363
1.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통지 조건	363
2.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효력	364
제3절 외국기관이 발부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366
1. 집행 요건	366
2. 집행절차	369
3. 예심부예의 출석	371
4. 대상자의 인도	374
5. 특칙	375
제4절 송치	379
제5장 범죄인 인도	380
제1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380
제2절 범죄인 인도 절차	382
제3절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간이 범죄인 인도	388
제4절 범죄인 인도의 효과	391
제5절 기타	394
제11편 군과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396
제1장 평시의 군에 관한 중죄 및 경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396
제1절 관할	396
제2절 소송절차	397
제2장 전쟁, 동원령,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의 관할법원	400
제3장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	401

제12편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해제 청구 ...	402
제13편 경제 및 재정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403
제13편bis 보건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408
제14편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409
제14편bis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보상을 위한 구조	415
제15편 테러행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16
제1절 관 할	416
제2절 소송절차	420
제16편 마약밀매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21
제17편 조직매춘 또는 미성년자 매춘방지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24
제18편 법인에 의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427
제19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용되는 소송절차	429
제1장 총 론	429
제2장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사법정보	433
제3장 보안감시와 보안유치	439
제20편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	444
제20편bis 사법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하여	447
제21편 증인의 보호	448
제21편bis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경감 혹은 방지하거나,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정범 혹은 공범의 특정에 도움을 주어 형 면제 또는 감경의 혜택을 얻은 자에 대한 보호	450
제22편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제소권	451
제23편 소송절차 중 전기통신 수단의 사용	452
제24편 조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	454
제1장 특별법원의 관할	455
제2장 절 차	457
제1절 감 시	457

제2절 잠 입	458
제3절 감 치	460
제4절 수 색	462
제5절 전기통신의 감청	464
제6절 특정 장소 또는 자동차에 대한 영상녹화	465
제7절 보존조치	466
제8절 공통규정	467
제25편 선박 폐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적용되는 절차	468
제26편 보호대상인 성인이 저지른 범죄의 기소, 예심수사 및 판결에 대하여	471
제27편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과 절차에 관하여	473
제1장 예심판사 및 예심부에 적용되는 규정	473
제2장 중죄법원 또는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6
제1절 중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6
제2절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477
제3장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릴 수 있는 보안조치	477
제28편 압류 특칙	479
제1장 공통규정	480
제2장 상속재산의 압수	481
제3장 부동산의 압류	482
제4장 동산 또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압류	484
제29편 보존조치	486

제5권 집행절차

제1편 형사판결의 집행	487
제1장 총론	487
제2장 형법적용법원	491
제1절 설치 및 구성	491
제2절 제1급 형법적용법원의 관할과 절차	492

제3절 항소 절차	495
제4절 공통규정	497
제3장 몰수결정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503
제1절 2006년 10월 6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몰수결정의 집행과 양도에 관하여	503
1. 총 칙	503
2. 프랑스 법원이 선고한 자산에 대한 몰수 결정에 관하여	505
3.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 법원이 선고한 자산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507
제2절 외국 사법기관이 선고한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513
제2편 구 속	515
제1장 구속의 집행	515
제2장 자유형의 집행	516
제1절 총 칙	516
제2절 자유형의 집행정지 및 분할	520
제3절 구금기간	522
제4절 형의 감경	523
제5절 외부구금, 반자유, 외출허가, 경호부 외출허가	526
제6절 전자감시처분	527
제7절 간이 형 변경 절차	530
1. 석방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530
2. 수감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532
제8절 형벌 조정이 없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방법	534
제9절 중죄 또는 경죄로 형 선고를 받은 위험한 자에 대한 사법감시에 관하여	535
제3장 각종 교정시설에 관한 공통규정	539
제4장 피구금자의 금전재산	541
제5장 수형자의 이송	542
제3편 조건부 석방	544
제3편bis 사회봉사	548

제4편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549
제1장 단순집행유예	549
제2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550
제3장 사회봉사부 집행유예	552
제4장 형의 선고유예	553
제5편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재확인	554
제6편 환형 유치	554
제7편 체류금지	557
제7편bis 보호관찰	558
제7편ter 보안조치의 일종인 전자감시	562
제8편 전과기록부	563
제9편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복권	575
제1장 자연인에 적용되는 규정	576
제2장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579
제10편 소송비용	580
 통 칙	 581
 프랑스 형사소송법 원문	 583

부 록

프랑스 형사소송법

프랑스 형사소송법

序 條 (2000년 6월 15일 법률 제2000-516호)

- I. 형사소송절차는 공정한 대심절차에 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는 공소 담당기관과 재판 담당기관의 분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유사한 조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 II. 사법당국은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III.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에 대한 침해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되고, 보상된다.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혐의 내용을 고지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는 사법당국의 결정이나 사법당국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만 집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절차상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소된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종국 판결의 선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법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4 프랑스 형사소송법

서편 공소 및 사소

제1조 ①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는 사법관¹⁾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위탁 받은 공무원이 제기하고 또 수행한다.

② 공소는 이 법에 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① 중죄²⁾, 경죄³⁾ 또는 위경죄⁴⁾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私訴는 범죄로 직접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소권의 포기는 제6조 제3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수행을 중지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다.

제2-1조 ① 범죄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관에 인종차별에 대항하거나, 또는 국적·민족·인종 혹은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 모든 단체는 어떤 자에 대하여 그 국적 또는 민족·인종 혹은 종교에의 소속 유무(그 진위를 불문한다)를 이유로 하여 저지른 형법 제225-2조 및 제432-7조에 규정하는 차별행위와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4조, 제222-1조 내지 제222-18조 및 제322-1조 내지 제322-13조에 규정된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고의의 침해와 파괴, 훼손 및 손괴행위에 관하여, 사소 청구인⁵⁾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magistrat. 판사와 검사를 통칭하는 상위개념이며 판사는 magistrat du siège (앉아있는 사법관), 검사는 magistrat debout (서있는 사법관) 라고 함. 우리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국립사법관 학교(변호사 선발 및 교육기능은 없고 변호사는 별도 선발절차에 의함) 졸업 후 판사 또는 검사로 임관되며 상호 직역간 교류가 매우 활발함

2) crime.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 13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는 중죄법원에서 재판. 중죄, 경죄, 위경죄의 구분은 각 법률에서 정함 (형법 제111-1조 참조)

3) délit.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서 경죄법원에서 재판함 (제381조 참조)

4) contravention.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로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경찰법원에서 재판. (제521조 참조)

② 다만, 범죄행위가 한 개인을 상대로 자행된 경우에 제1항에 정한 단체가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2-2조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관에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투쟁을 명시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피해 당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4조, 제222-1조 내지 제222-18조, 제222-23조 내지 제222-33조, 제224-1조 내지 제224-5조, 제226-4조, 제227-25조, 제227-26조, 제227-27조 및 제432-8조에 정한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고의의 침해, 성폭행 및 다른 성적 침해, 약취·감금 및 가정폭력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사소청구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피해자가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성인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피학대아동 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형법 제222-3조 내지 제222-6조, 제222-8조, 제222-10조, 제222-12조, 제222-13조, 제222-14조, 제222-15조, 제222-24조, 제222-25조, 제222-26조, 제222-29조, 제222-30조, 제227-22조, 제227-25조, 제227-26조 및 제227-27조에 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고문·가혹행위·폭행 및 성폭행과 미성년자들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관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혹은 전쟁범죄에 반대하는 것 또는 레지스탕스 혹은 강제수용소의 피수용

5) *partie civile*. 사소당사자 또는 사소원고라고도 함 사소청구인의 구성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제85조 이하 참조

6 프랑스 형사소송법

자의 정신적 이익 및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레지스탕스 혹은 강제수용소의 피수용자의 정신적 이익 및 명예의 보호를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전쟁범죄, 적에 대한 협조범죄의 옹호, 기념물파괴 및 훼손, 분묘손상 또는 단체의 임무 수행에 직접 혹은 간접의 손해를 발생시킨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① 성별 또는 풍습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피해자의 성별, 가족상황 또는 풍습을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형법 제225-2조 및 제432-7조에 정한 차별행위와 노동법 제123-1조에 정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만, 노동법 제123-1조의 마지막 항에 정한 범죄 및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제6조에 정한 범죄에 관하여는 관계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증명하거나, 관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은 후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③ 이 단체는 피해자의 성별이나 풍습을 이유로 자행된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4조, 제222-1조 내지 제221-18조, 제322-1조 내지 제322-13조에 규정된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및 파괴, 훼손 및 손괴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보호 대상 성인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숲·산림·황야·관목림·황무지·조림지·식림지에 대한 방화로 형사소추가 된 경우 공범 상 법인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 판결 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2-8조 ① 병자 또는 장애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 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형법 제225-2조 및 제432-7조에 정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행해진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5조, 제22-1조 내지 제22-18조, 제222-2조 내지 제222-33-1조, 제223-3조 및 제223-4조, 제223-15-2조, 제225-16-2조, 제312-1조 내지 제312-9조, 제313-1조 내지 제313-3조, 제322-1조 내지 제322-4조 및 제434-3조에 정한 학대행위의 불고지·가혹행위·착취·사기·학대·권한남용·유기·성폭력,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 생명 침해 행위에 대해서 검사 또는 피해당사자가 기소한 경우에 위 단체는 사소 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인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장애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건축·주택법 L111-7조 및 L152-4조에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해 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8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10조 극빈 또는 가정상황을 이유로 하는 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형법 제225-2조 및 제432-7조에 정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인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11조 조국을 위하여 싸운 재향군인 및 전쟁피해자의 정신적 이익 및 명예를 수호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전국재향군인·전쟁피해자 사무소에 등록한 모든 단체는, 단체의 임무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를 발생시킨 기념물 파괴 및 손상 또는 분묘훼손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2조 ① 교통범죄의 방지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 또는 지원을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자동 차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상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해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13조 정관에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동물에 대한 중대한 학대, 잔학행위 및 부적절한 취급에 관련된 범죄와 형법이 정하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의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4조 프랑스어의 보호를 정관에 명시하고,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은 모든 단체는, 프랑스어의 용법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률 제94-665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5조 ① 대중교통 또는 공공장소 혹은 주거 및 사무용으로 임대된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정관에 명시하고, 그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단체는, 당해 사고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해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당해 단체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국참사원령으로 이를 정한다.

③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국참사원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법무부에 등록한 단체는 제1항에 정한 장소와 조건하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검사 혹은 피해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6조 마약 중독 또는 마약거래의 퇴치를 정관에 명시하고, 그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한 모든 단체는,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 및 제227-18-1조에 정한 범죄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해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7조 인간을 보호하고 지원하거나 개인적·집단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 단체는, 정신적·육체적 예속을 조장하고,

10 프랑스 형사소송법

유지하고, 악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조직 혹은 결사 내에서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6조, 제222-1조 내지 제222-40조, 제223-1조 내지 제223-15조, 제223-15-2조, 제224-1조 내지 제224-4조, 제225-5조 내지 제225-15조, 제225-17조, 제225-18조, 제226-1조 내지 제226-23조, 제227-1조 내지 제227-27조, 제311-1조 내지 제311-13조, 제312-1조 내지 제312-12조, 제313-1조 내지 제313-3조, 제314-1조 내지 제314-3조, 제324-1조 내지 제324-6조에 정한, 개인의 생명이나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 개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개인의 자유·존엄·개성에 대한 침해,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 등과 관련된 범죄와 공중보건법 제4161-5조, 제4223-1조에 규정된 의료 및 약품의 불법 사용에 관한 범죄와 소비자법 제121-6조, 제213-1조 내지 제213-4조에 규정된 기망 광고·사기 및 위조행위 등이 개인이나 단체의 의해 자행된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18조 ①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관에 산업재해사고 피해자와 직업병 환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 모든 단체는, 직업수행 과정에서 행하여진 형법 제221-6조, 제222-19조, 제222-20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검사나 피해당사자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19조 ① 프랑스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의 지역단체 가운데 5년 이전부터 정관을 갖추어 등록한 단체는, 시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받은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상해에 대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20조 ① 행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정관에 주거사용에 관한 집합건물의 임차인·소유자·임대인의 정신적·물질적 이해관계를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형법 제222-1조 내지 제222-18조 및 제322-1조 내지 제322-13조에 규정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고의적 침해 또는 손상행위, 재물 손괴행위가 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종류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가 제기한 공소에서 사소청구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다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미성년자 또는 보호대상 성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21조 ① 고고학적 유산의 보호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행위일로부터 3년 이전에 인가를 얻은 모든 단체는 형법 제322-3-1조에 정한 범죄와 단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물건 등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소청구인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단체의 인가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참사원령이 정한다.

제3조 ① 사소는 공소와 동시에, 동일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사소는 물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해 등 소추대상인 행위에서 유래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① 제2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공소와 분리하여 민사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② 민사법원에 제기된 재판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공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연기한다.

③ 제2항에 정한 것 외에는 형사재판에서의 판결로 인하여 민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공소로 인하여 민사재판이 연기되지 않는다.

12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형법 제121-3조에서 말하는 형사 상 과실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민법 제1383조에서 정한 민사 상 과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사회보장법 제452-1조에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제5조 관할권을 가진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수행중인 당사자는,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가져갈 수 없다. 다만, 민사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기 전에, 검사가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신속심리의 신청을 받은 민사법원은, 신청인이 형사법원에서 사소 청구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의 존재가 극히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대상인 사실에 관해 모든 가치분을 명할 권한을 갖는다.

제6조 ① 형벌의 적용을 위한 공소권은 피고인의 사망·시효의 완성·사면·형벌법규의 폐지 및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다만, 공소권의 소멸을 선언한 판결문이 위조된 것임이 위조에 관한 그 후의 소송에 의하여 판명되고, 또 그로 인하여 형이 선고된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효는 이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범인에 대하여 형 선고가 있는 날까지 정지된다.

③ 그 외에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형사화해절차가 개시되거나, 고소가 소송조건인 범죄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소멸한다.

제6-1조 형사소송절차에 위반한 행위가 형법 상 중죄 혹은 경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에 관하여 형사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정지된 시효는 형사법원의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 제7조** ① 중죄에 관한 공소권은 형법 제21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중죄가 행해진 날부터 기산하여 만 10년 안에 어떠한 예심수사 또는 소추의 처분이 경료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예심수사 또는 소추의 처분이 행하여진 때에는, 공소권은 그 최후의 처분 시부터 기산하여 만 10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당해 예심수사 또는 소추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③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중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 제8조** ① 경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는 만 3년으로 하며, 전조에 정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 ② 형법 제222-9조, 제222-11조 내지 제222-15조, 제222-27조 내지 제222-30조, 제225-4-2조, 제225-7조, 제225-15조, 제227-22조, 제227-25조 내지 제227-27조에 정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22-30조, 제227-26조에 정한 경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9조 위경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는 만 1년으로 한다. 시효는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완성된다.

- 제10조** ① 사소가 형사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공소시효에 따르고, 민사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시효는 민법 상 소멸시효에 따른다.
- ② 사소가 형사법원에 제기된 경우, 형사법원 판사가 내리는 명령 가운데 그 성격이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민사소송규정에 따른다.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편 공소 및 예심수사⁶⁾를 담당하는 기관

제11조 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및 예심수사 과정에서 절차는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전항의 절차에 참여한 자는,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③ 다만, 각기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질서의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예심법원⁷⁾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절차 진행사항의 객관적 요소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혐의사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1조 검사 혹은 예심판사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명령으로 권한을 위임한 단체 혹은 기관, 그 외 관계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 혹은 기관은 과학적인 수단 혹은 기술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할 수 있고,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범죄피해의 보상과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각 단체 혹은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형법 제226-13조 내지 제226-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6) instruction. 예심판사에 의한 수사적 성격의 소송행위로서 예심이라고도 함. 프랑스 형소법은 소추, 예심수사, 판결의 각 기능을 엄격히 구분하여 소추는 검사에게, 예심수사는 예심판사에게, 판결은 판결법원에 귀속시키고 있음. 예심판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검사와 유사하게 수색, 압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공조촉탁의 방식)를 통한 수사, 피의자 및 증인신문 등을 하고 있어 그 실질에 부합하게 예심수사로 번역함

7) juridiction d'instruction. 제79조 이하 참조

제 1 장 사법경찰

제 1 절 총 칙

제12조 사법경찰권은 검사의 지휘 하에 본편에 정하는 사법경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리가 행사한다.

제12-1조 검사와 예심판사는 재량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법경찰은 각 고등법원의 관할구역별로 고등검사장의 감독을 받고 제224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⁸⁾의 통제를 받는다.

제14조 ① 사법경찰은, 예심수사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에서 본편에 정한 바에 따라 형법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한다.

② 예심수사가 개시된 때에는, 사법경찰은 예심법원의 수사지휘 사항을 집행하고 그 요구에 따른다.

제15조 사법경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리 및 보조사법경찰리
3. 법률에 의하여 특정 분야의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직원

8) chambre d'instruction. 2000년 6월 15일 법률 제2000-516호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전에는 chambre d'accusation (중죄소추부)이었음. 제191조 이하 참조

1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5-1조 본장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가 통상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조직·기구·관할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관계장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정되는 국참사원령에 따른다. 그 조직 및 토지관할은 국참사원령에서 규정한 구분에 따라 한 개 도 전체 혹은 그 일부, 여러 개의 군영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2조 사법경찰관리의 사법경찰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조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감찰부서가 조사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법관이 이를 담당한다.

제15-3조 ① 사법경찰은 형사법 상 범죄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접수할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권 있는 사법경찰기관이나 군부대⁹⁾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고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조서를 작성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사법경찰관

제16조 ① 다음의 자는 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다.

1. 시장 및 그의 보좌관
2. 3년 이상 헌병대에서 근무한 헌병장교 및 하사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명된 헌병대 소속 병사

9) 프랑스는 역사적인 이유로 시 군 등 농촌지역에서의 민간치안유지활동은 국방부 소속의 헌병(gendarmerie nationale)이 담당하고 있고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음

3. 국가경찰의 치안정감 또는 치안감·경찰청차장·경무관·경찰서장
4. 3년 이상 국가경찰의 지휘관·간부직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지명된 자
-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속하는 사법경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및 관계 장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③ 내무부장관에 직속하는 사법경찰국장 또는 차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국방부장관에 직속하는 헌병대 국장 또는 차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실제로 사법경찰직을 수행하고 있고 고등법원¹⁰⁾ 소속 검사장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조직의 명에 따라 치안유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권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들 공무원들이 다른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고등법원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다만,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은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의 명령으로 명단에 등재되어야 하고, 제15-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배속되거나, 같은 명령에 언급된 기관이나 부대에 배속되어야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⑥ 본조에서 언급한 자격부여 요건, 자격박탈 혹은 일시 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및 각 관계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16-1조 사법경찰관은 자격부여의 정지 또는 박탈 결정의 통고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고등검사장에 대하여 결정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1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그 안에 재결이 행해지지 않은 때에는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0) cour d'appel. 항소법원 또는 항소원이라고도 함

1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6-2조 ① 전조에 규정된 청구의 명시 또는 묵시의 기각 결정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은 대법원¹¹⁾ 부장 또는 대법원 판사 자격을 갖춘 3인의 사법관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본항에서 말하는 사법관은 1년마다 대법원 사무국이 지명하며, 동시에 3인의 예비위원도 지명한다.

② 이 경우 검사의 직무는 대법원 소속 검사장이 행한다.

제16-3조 ① 위원회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 재결한다. 심리 및 결정은 평의부에서 하며, 구두에 의한다.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구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17조 ①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정한 권한을 행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을 수리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 내지 제78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예비수사¹²⁾를 행한다.

②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제53조 내지 제67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임무의 집행을 위하여 공권력의 협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① 사법경찰관은 그 통상의 직무를 행하는 구역 내에서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일시적으로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은 당해 지역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③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

11) cour de cassation. 파기원이라고도 함

12) enquête préliminaire. 사법경찰은 원칙적으로 현행범 수사만 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검사의 지휘와 통제하에 예비수사(인지수사)를 할 수 있음. 예심판사의 예심수사는 instruction 이라고 하는 반면 경찰의 수사는 enquête 로 하여 구분함. 제75조 이하 참조

법원 또는 그 산하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고, 신문·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본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道에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방법원들은 동일한 관할로 본다. 파리·낭테르·보비나·크레테이 지방법원의 관할은 단일한 관할로 취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예비수사 혹은 현행범 수사와 관련하여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또는 검사의 지시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 국토의 전역에서 위임 혹은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항이나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위임이나 지시를 한 사법관은 당해 지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관련 정부기관의 동의를 얻어 예심판사가 위임한 사항이나 검사가 지시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에서 신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행정 상 필요가 있어 소속된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혹은 고등검사장이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대중교통 및 그 대중교통이 연결하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은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① 사법경찰관이 중죄·경죄 및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임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한 조서의 원본 및 그 인증등본 1통을 직접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일체의 관련서류 및 기록, 압수한 물건 등도 동시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이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기재한다.

제19-1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근무평정은 승진 결정에 참고한다.

제3절 사법경찰리

제20조 ① 사법경찰리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헌병
 2. 본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경찰지휘관·간부직렬에 속하는 공무원¹³⁾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
 3. (폐지)
 4. 舊국가경찰·부장직렬에 속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 수습생으로 임명되어 2년간 근무하고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기능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5. 舊수사형사 직렬에 속해 있던 경찰관으로서, 1979년 3월 1일 이전에 수습생으로 임명되어 2년간 근무하고 사법경찰 및 중죄법원 배심원에 관한 형사절차의 개정에 관한 1978년 7월 28일 법률 제78-788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 하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 ② 다만, 전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무원이라도 사법경찰리로서의 권한 행사가 가능한 직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법경찰리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사법경찰리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다. 조직의 명으로 치안유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사법경찰리로서의 권한 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③ 사법경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의 임무 수행을 보좌하는 것;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를 인지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들 범죄의 정범 혹은 공범에 관한 징표, 증거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는 것
- ④ 사법경찰리는 보호유치¹⁴⁾ 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13) command police(고참 경감급), capitaine de police(경감급), lieutenant de police (경위급) 등이 이에 해당

14) garde à vue. 우리의 긴급체포와 유사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및 구금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24시간 동안 허용되고 검사의 허가를 얻어 다시 24시간 연장이 가능함. 마약밀매 기타 조직범죄 등 범죄유형에 따라 최대 72시간까지 허용됨. 제63조 이하 참조

제20-1조 재직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퇴직 국가경찰공무원 및 헌병은 국가예비경찰 및 예비헌병의 직책으로 사법경찰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본조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사법경찰리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력 조건 및 행사 가능한 권한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21조 ① 다음의 자를 보조사법경찰리로 한다.

1. 국가경찰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2. 헌병대 소속 군무원 자격을 갖춘 지원병
- 1-3. 공공안전의 확보와 발전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법률 제95-73호 제36조에 명시된公安공무원
- 1-4. 파리지방감시국 직원
- 1-5. 제20-1조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헌병대 소속 보충병
2. 지방자치단체 경찰리

3. 국토보존에 관한 법 제2213-18조 마지막 항에 정한 활동 관련 산림감시원

② 전항에 정한 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것;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상관의 명령에 따라, 형벌법규에 규정한 범죄를 인지하고, 조직법규 또는 특별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들 범죄의 범인을 발견하기 위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국참사원령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상 위경죄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것

③ 보조사법경찰리가 조서에 의해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위경죄 위반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1-1조 사법경찰리 및 보조사법경찰리는 그 통상의 직무를 행하는 구역 내에서만 관할권이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국가경찰 혹은 헌병대에

2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소속된 경우에는 그 국가경찰 및 헌병대가 직무를 행하는 구역 내에서만 관할권이 있다. 사법경찰관을 보좌하는 경우, 사법경찰리 및 보조사법경찰리는 당해 사법경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구역 내에서만 관할권이 있다.

제21-2조 ① 제21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법경찰리가 중죄, 경죄, 위경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 경찰이나 헌병대의 사법경찰관에게도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정한 사법경찰리는 지체 없이 보고서 및 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항의 사법경찰관을 통해 검사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절 사법경찰의 특정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1.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제22조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은, 산림 또는 전원에 손해를 미치는 경죄 및 위경죄를 수사하고 조서로써 이를 인지한다.

제23조 ①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원감시원은, 장물을 그 운반된 곳까지 추적하여 이를 압수한다.

② 다만, 전항에 열거한 자는 사법경찰관의 참여가 없으면, 가옥·공장·건조물·인접한 정원 내 및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동행을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자기가 참여한 조치에 관하여 조서에 서명한다.

제24조 ①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원감시원이 경죄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이를 전부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한다.

②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은 제22조에 규정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권력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원감시원은 시장·시청 직원 또는 헌병대장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시청직원 또는 헌병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 검사·예심판사 및 사법경찰관은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은 산림에 대한 손해를 확인하는 조서를 상관에게 제출한다.

제27조 ① 전원감시인은 작성한 보고서와 조서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과 사법경찰관 또는 헌병대장을 통하여 검사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정한 조서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포함하여 늦어도 5일 이내에 전항에 정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제28조 특별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그 특별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특별법의 제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제28-1조 I. ① 국참사원령에 따라 구성되고 역할이 정해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과 예산부 장관의 명령으로 특별히 임명된 A와 B 범주의 세관직원은 검사의 지시 또는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다.

2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② 이들은 이 조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전 국토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

③ 이들은

1. 관세법 위반 범죄;
2. 간접세 관련 범죄 및 부가가치세 탈루, 문화재 절도;
3. 유럽연합의 금융질서 위반 범죄;
4. 국방법 제2339-1조 내지 제2339-11조, 제2344-7조 및 제2353-13조 위반 범죄;
5. 형법 제324-1조 내지 제324-9조 위반 범죄;
6. 지적재산권법 위반 범죄;
7. 도박 및 고리대금업 규율과 경쟁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2010년 5월 12일 법률 제2010-476호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범죄;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정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인지과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④ II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마약류의 유통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

II. ①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에 규정된 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I에 정한 세관직원 및 사법경찰관들로 임시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팀 팀장은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지명한다.

② 전항에 정한 수사팀은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고, 전 국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III. (폐지)

IV. ① I에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세관직원이 사법수사를 하거나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의 결정으로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수사권한 부여 결정은 전항에 정한 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검사장이 행한다. 자격의 부여, 정지, 박탈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③ 자격정지 혹은 박탈 결정을 받은 관련 세관직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고등검사장에 대하여 그 결정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1월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 세관직원은, 제16-2조에 정한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제16-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V. I, II호에서 말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직원은 제224조 내지 제230조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역의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과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는다.

VI. ① 검사의 지시에 따라 I 호 및 II호에 정한 세관직원이 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때에는 제54조(2항 및 3항), 제56조, 제57조 내지 제62조, 제63조 내지 제67조, 제75조 내지 제78조, 제706-28조, 제706-29조, 제706-32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세관직원들이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할 때에는 제152조 내지 제155조에 따른다.

③ 세관직원들은 그들이 소속한 사무실 주소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세관직원들이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100조 내지 제100-7조, 제122조 내지 제136조, 제694조 내지 제695-3조, 제706-28조, 제706-30-1조, 제706-73조 내지 제706-106조가 적용된다. 이들이 제706-80조 내지 제706-87조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법 제716-9조 내지 제716-11조 및 관세법 제415조에 정한 범죄와 상표법위반 물품과 주정, 주류, 담배 등의 밀수범죄도 취급할 수 있다. 또, 사법관이 지명한 제706조와 제706-2조에 정한 자들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⑤ 세관직원들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할 때는 제4편 제29장이 적용된다.

2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⑥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3조 제2항에 정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공소는 검사가 수행한다.

VII. I 호 및 II 호에서 말한 세관직원은 국참사원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법 행정처 소속 사법관의 행정지도를 받는다.

VIII. I 호 및 II 호에서 말하는 세관직원은,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률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로 한다.

제28-2조 I. ① 국참사원령으로 구성과 기능이 정해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과 예산부 장관의 명령으로 특별히 임명된 A와 B 범주의 국세청 직원은 검사의 지시 또는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이들은 전국토를 관할로 하고, 국세절차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세법 제1741조 및 제1743조 위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II. ① I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국세청직원이 사법수사를 하거나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사장의 결정으로 수사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수사권한 부여 결정은 전항에 정한 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검사장이 행한다. 자격의 부여, 정지, 박탈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③ 자격정지 혹은 박탈 결정을 받은 관련 국세청직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고등검사장에 대하여 그 결정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1월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 세관직원은, 제16-2조에 규정된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서의 절차는 제16-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Ⅲ. Ⅱ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직원은 제224조 내지 제230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고, 고등검사장의 감독과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으며, 내무부에 배속된다.

Ⅳ. ① 검사의 지시에 따라 제Ⅱ호에 정한 국세청직원이 수사를 진행하는 때에는 제54조(2항 및 3항), 제56조, 제57조 내지 제62조, 제63조 내지 제67조, 제75조 내지 제78조의 적용을 받는다.

② 국세청직원들이 예심판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할 때에는 제100조 내지 제100-7조, 제152조 내지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다.

③ 국세청직원들은 그들이 소속한 사무실 주소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Ⅴ. Ⅱ호에 정한 국세청직원은,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률이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로 한다.

Ⅵ. Ⅱ호에 정한 조건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직원은 그 기간 동안은 국세절차법에 따른 국세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처리한 국세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검사 혹은 사법기관이 인지한 범죄와 관련해서 사법경찰직을 마친 이후에 세법 상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3.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¹⁵⁾

제29조 ①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은 자기가 감시하는 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일체의 경죄 및 위경죄를 조서로써 인지한다.

② 조서는 직접 혹은 등기우편으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송부는 조서에 적은 사실을 인지한 날을 포함하여 늦어도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서는 무효가 된다.

15) garde particulier. 특히 수렵이나 낚시와 관련된 것으로 과거 하급 사법경찰관이었다고 함

2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29-1조 ① 제29조에 정한 특별감시원은 그들이 감시하는 재산의 소유자 혹은 권한 보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감시원은 위임재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배속된다.

② 다음의 자는 특별감시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1. 임무 수행 상 필요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자. 특히 국내의 안전을 위한 2003년 3월 18일 법률 제2003-239호 제21조에 정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전과기록 제2호 등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도덕성 및 신망이 없다고 보이는 자
 2. 임무 수행에 필요하여 국참사원령으로 정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3. 제15조 제1호 및 2호, 제22조에 정한 자
 4. 보호재산의 실질적인 권리 보유자 또는 소유자와 보호재산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
- ③ 특별감시원의 자격 기준, 자격의 정지와 취소, 선서에 관한 사항, 주요 행동강령, 임무 수행 조건 등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1-1 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이의 업무분담

제30조 ① 법무부장관은 정부의 공소수행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모든 관할구역에서의 법 적용을 감독한다.

② 이를 위하여 검찰청에 속한 모든 검사들에게 공소수행에 관하여 지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직접 인지한 사건 및 소추 지시를 받은 사건을 의견을 담은 문서로써 또는 정식 서류로써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 수사 및 소추를 개시하게 하거나,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선고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회부하도록 한다.

제 2 장 검 사

제 1 절 총 칙

제31조 검사는 공소를 수행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

제32조 ① 검사는 각 형사법원에 소속된다.¹⁶⁾

② 검사는 판결법원의 심리에 참여한다. 모든 재판은 검사의 출석 하에 이를 선고한다.

③ 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담당한다.

제33조 검사는 제36조, 제37조 및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시 받은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과 구형을 한다. 검사는 사법정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을 구두로 자유롭게 개진한다.¹⁷⁾

제 2 절 고등검사장의 권한

제34조 고등검사장은 산림법 제105조 및 전원법 제446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하여, 고등법원 검사 및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된 중죄 법원 검사를 대표한다. 고등검사장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같은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의 다른 중죄 법원의 검사를 대표할 수 있다.

제35조 ① 고등검사장은 고등법원의 관할 전체에서 형법법규의 적용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6) 프랑스 검찰은 법원과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고등검찰청, 대검찰청도 동일한.

17) la plume est servie, mais la parole est libre. “펜은 복종하지만 말은 자유이다”라는 뜻으로 상명하복에 따라 검사는 상사의 서면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나 법정에서의 검사의 구두 논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프랑스의 확립된 전통을 규정화한 것임.

3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② 고등검사장은 형법 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소속 검사들의 공소 수행을 독려하거나 조정하고, 소속 검사들이 수행하는 정치적 목적의 소송행위를 지도한다.
- ③ 검사는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서류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 외에, 매월 그 관할구역의 사건보고서와 활동보고서, 회계보고서를 고등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고등검사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검찰총장은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써 또는 정식 서류로써 고등검사장에게 인계하여 수사 및 소추를 개시하게 하거나 총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회부하도록 한다.

제37조 고등검사장은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의 모든 검사를 지휘한다.

제38조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는 고등검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고등검사장은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정보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제 3 절 검사장¹⁸⁾의 권한

제39조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산림법 제105조 및 전원법 제446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검사를 대표한다.

18) procureur de la République. 직역하면 “공화국 검사”임. 프랑스의 검사는 각 검찰청에 1명 뿐이고 우리의 검사는 substitut (검사 대리)로 표현함. 공익과 사회를 대표하는 1인의 검사를 정점으로 동일체를 구성하면서 substitut가 검사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로 번역함.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이므로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사회와 공익에 대한 기피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669조 제2항 참조

- ② 검사장은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된 중죄 법원¹⁹⁾의 검사를 대표한다.
- ③ 검사장은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해 본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찰법원²⁰⁾의 검사를 대표한다.

제39-1조 ① 검사장은 공소제기에 갈음하는 조치, 공소제기, 사법경찰의 감독, 검문 및 형벌의 집행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형법 상 범죄예방 활동을 지휘한다.

② 검사장은 이를 위하여 제35조에 정한 고등검사와 함께 국가가 정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할구역 내에서 공소수행에 관한 정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③ 검사장은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제40조 ① 검사는 고소 및 고발을 수리하고, 제40-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처리에 관하여 결정한다.

② 모든 관공서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 중에 중죄 또는 경죄를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 조서 및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1조 제40조에 따라 인지된 범죄사실이 형법 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가 특정되었으며, 공소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가진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9) cour d'assises. 중죄를 재판하는 비상설법원으로서 재판장 1인, 직업법관 2명, 시민배심원 9명으로 구성됨. 예외적으로 테러, 조직범죄등의 경우에는 전원이 직업법관으로 구성된 중죄법원이 있음. 제231조 이하 참조

20) tribunal de police. 위경죄의 벌금형 재판을 담당하며 위경죄법원이라고도 함. 제521조 이하 참조

3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1. 형사소추;
2. 제41-1조 또는 제41-2조에 정한 기소 외 조치;
3.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황으로 보아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절차로의 회부

제40-2조 ① 검사는 고소인에게 또는 피해자가 특정된 때에는 피해자 및 제40조 제2항에 정한 자에게 고소·고발의 결과 기소결정을 하거나 기소 외 조치 결정을 한 취지를 통지한다.

②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지한다.

제40-3조 범죄사실을 검사에게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가 결정한 조치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상대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제3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사소추를 명령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40-4조 ① 피해자가 사소청구인 구성을 희망하고, 제53-1조 및 제75조에 정한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은 후 변호사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의견을 들어 공소제기를 결정한 때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하면서 손해배상을 계속 원할 경우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제41조 ①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또는 이를 행하게 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검사는 그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활동을 지휘한다.

- ③ 검사는 보호유치를 감독한다. 검사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유치 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검사는 이를 위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취해진 보호유치의 수와 빈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 대장을 작성한다. 검사는 매년 보호유치 장소와 보호유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다. 법무부장관은 보호유치에 대한 보고내용을 총괄하여 연차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한다.
- ④ 검사는 제1권 제1편 제1장 제2절 및 특별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일체의 권한 및 특권을 행사한다.
- ⑤ 검사는 현행법의 경우에 제68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 ⑥ 필요한 경우 검사는 교정기관·보호관찰소·감독교육기관 또는 제81조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수사대상자의 경제상황·가족관계 또는 사회활동 등을 조사한 후 관계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495-7조 내지 제495-13조에 정한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제395조 내지 제397-6조에 정한 즉시출두절차에서는 구속에 앞서 전항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21세 미만인 성인이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⑧ 외국인의 프랑스 내 입국 및 체류에 관한 1945년 11월 2일 명령 제19조 및 제27조에 정한 범죄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프랑스 내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당해 외국인이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형법 제131-30-1조 혹은 제131-30-2조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사법경찰관·교도관·보호관찰관·청소년보호관 기타 제81조 제6항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외국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검사는 또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고등법원장의 요청으로 구성된 피해자구조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1-1조 ① 피해자의 손해배상이나, 범죄 관련 분쟁 해결,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장은 공소제기 결정에 앞서 직접 또는 소속 검사를 통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의무 있는 채무를 지급하게 하는 것
2. 행위자를 보건시설·사회시설·직업시설 등에 위탁하는 것;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약물남용치료과정, 부모로서의 역할 훈련 과정, 시민의식 연수 과정, 기타 보건시설·사회시설·직업훈련시설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 중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자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3. 행위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자격 혹은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것
4. 행위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
5.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절차 (la médiation pénale)에 회부하는 것; 화해가 성공한 경우 검사 또는 검찰 측 대리인은 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하게 한 후 자신도 서명하여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화해 내용에 피해자의 손해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조서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게 할 수 있다.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민법 제515-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형사화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거주지 혹은 주소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 및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호에 정한 조치는 가족법 상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은 바 있는 전 배우자·전 동거인·전 내연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정한 조치의 실시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③ 본조에 정한 의무를 범죄행위자가 책임질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달리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한 형사소추하거나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제41-2조²¹⁾ 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자를 통하여, 벌금형에 처할 경죄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 또는 수개의 위경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고청에 벌금을 납부할 것. 이 경우 형법에 규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죄질과 범죄자의 책임 및 자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벌금은 검찰청이 문서로 정한 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물건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
3. 최장 6개월 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
4. 지방법원서기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맡기는 것
5. 지방법원서기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수렵면허증을 맡기는 것
6.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법 상 법인 및 단체에 배속되어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최장 60시간 이내의 무보수노동을 제공하는 것
7. 18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최장 3개월 이내로 보건단체·사회단체 또는 직업훈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8. 최장 6개월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21) 1999년 도입된 검찰수사단계에서의 검사에 의한 형사화해제도임.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반성 및 보완책으로 2004년 3월 9일 법률 제2004-204호로 미국식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가 전면도입되었음. 제455-7조 이하 참조

3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9. 범죄행위자가 거주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범죄와 관련된 장소 혹은 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최장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
 10. 검사가 지정한 범죄피해자와 최장 6개월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
 11. 검사가 지정한 공범 혹은 종범 등과 최장 6개월 동안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
 12. 최장 6개월 동안 여권을 맡기고 프랑스 영토를 떠나지 않는 것
 1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비로 시민소양교육을 이수하는 것
 14.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거주지 혹은 주소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주소 및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가해자를 위탁하는 것. 본호에 정한 조치는 가족법 상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은 바 있는 전 배우자·전 동거인·전 내연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비로 금지약물의 남용위험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
 16.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법 상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직업교육을 받거나 기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
 17. 주류를 일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금지약물을 사용한 범죄혐의자의 경우에 보건법 제3413-1조 내지 제341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
- ②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때에는, 행위자가 범죄 피해를 배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6개월 내에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고, 그 취지를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물건의 원상회복도 포함한다.
- ③ 검사의 형사조정안은 사법경찰관을 경유하여 범죄행위자에게 통지된다. 조정안은 검사가 서명한 결정문으로 성립되며, 형사조정의 대상이 된 혐의 사실과 제안사항을 기재한다.

- ④ 형사조정에는 지역사법센터(maison de justice et du droit)에서 할 수 있다.
- ⑤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된 자는 검사의 제안에 동의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는다. 동의는 조서로 작성되며, 조서의 부분은 형사조정 참가자에게 교부한다.
- ⑥ 형사조정 참가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안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는 청구서를 법원장에게 접수시킨다. 검사는 접수사실을 참가자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법원장은 참가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변론을 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범죄행위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법원장이 조정안이 유효임을 선언하면 조정 내용대로 집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안은 무효가 되고, 법원장의 결정은 행위자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참가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후 결정된 사항을 완전하게 실행하지 않는 경우, 전항에 따라 조정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검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노역이나 지불 금액 등을 참작할 수 있다.
- ⑧ 형사조정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조정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⑨ 형사조정안의 집행으로 공소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경죄법원에 가해자를 직접 소환하여 기소하는 사소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법원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판사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사소청구인의 민사상 청구에 대해서만 재판한다. 피해자의 손해 혹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판결 내용에 포함된 경우, 피해자는 조서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집행된 형사조정 결과는 전과기록부 제1편에 기재된다.
- ⑪ 본조에 정한 형사조정절차는 정치 관련 범죄, 과실치사죄, 언론 관련

3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범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13세 이상 소년에게도 본조가 적용된다.

⑫ 법원장은 형사조정안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소속 판사 혹은 관할 내 근린법원 판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⑬ 본조의 적용과 관련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41-3조 ① 형사조정절차는 위경죄에도 적용된다.

② 운전면허증 및 수렵면허증의 압수는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무보수 노동은 3개월 간 3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수표발행 금지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41-2조 제9호 내지 제12호에 정한 조치도 위경죄에 적용할 수 있으나, 제6호에 정한 조치는 제1급 내지 제4급 위경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131-16조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따라 위경죄에 부가형벌을 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에 정한 조치도 이와 같다.

③ 근린법원의 특정 판사가 위경죄에 대한 형사조정안을 전담하도록 지명된 경우가 아닌 한, 조정안은 경찰법원의 판사 혹은 근린법원 판사가 효력을 결정한다.

제41-4조 ① 관할권을 행사할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에서 물건에 대한 환부 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나 고등검사장은,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환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다툼이 없어야 한다.

② 환부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사법 정의의 관점에서 법률에 따라 폐기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환부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검사 또는 고등검사가 직권으로 환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경죄법원이나 경죄항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한다.

③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최종판결이 선고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환부 청구가 없거나 환부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은 국가 소유로 한다. 다만 제3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자나 환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의 집으로 발송된 독촉장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환부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환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또는 환부하지 않기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국가 소유로 된다. 단, 이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41-5조 ① 압류한 동산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또는 최종 소재지에 통지한 후 2개월 동안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서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압류 또는 몰수한 동산을 폐기하거나 몰수 및 관리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압류한 동산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법에 의하여 몰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존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방구금판사는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무죄석방되는 경우에는 동산 소유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환부한다.

③ 전2항에 정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서기를 통하여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로 인하여 집행이 정지되며 소유자 또는 제3자는 예심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제3자는 독자적으로 항고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4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42조 검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접 경찰력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제43조 ① 범죄지, 범죄혐의자 중 1인의 주거지, 범죄혐의자 중 1인의 체포지, 범죄혐의자 중 1인의 구금지에 소속된 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체포 또는 구금이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사법관·변호사·공무원·헌병대원·국가경찰·세관원·교도소 관리, 기타 공무담당직원 또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자격으로 담당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항소부에 속하는 가장 가까운 법원의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을 이송 받은 검사는 제52조, 제382조 및 제5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관할을 갖는다. 이송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44조 검사는 그 관할구역 내 경찰법원 및 근린법원의 공소관을 지휘한다. 검사는 인지한 위경죄를 통고하고 소추를 지시할 수 있다. 검사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법원에 수사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1조 ① 공화국의 영토에 관한 법 제22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물에 대하여 자행된 위경죄는 지역경찰리가 조서로써 인지할 수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은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안한 조치와 범죄행위자가 동의한 조치에 대해서 검사가 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전항에 정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소권은 정지된다.

④ 범죄행위자가 합의한 조치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한 때에는 공소권은 소멸된다.

⑤ 전항에 규정한 조치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30시간 이내의 무보수

노동이 포함되며, 경찰법원 판사 혹은 근린법원 판사는 범죄행위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의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범죄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서 자행된 것인 경우에 시장은 검사에게 본법 제41-1조 또는 제41-3에 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 공화국의 영토에 관한 법 제2512-16조 및 제2512-16-1조에 따라 경찰직을 수행하는 파리 시 직원 및 파리 시 감독직원이 조서로써 인지할 수 있는 위경죄에 대하여도 본조가 적용된다. 공화국의 영토에 관한 법 제2213-18조에 따라 산림감시원이 조서로써 인지할 수 있는 위경죄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⑧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4 절 경찰법원 및 근린법원의 공소관

제45조 ① 지방검찰청 검사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경찰법원에서 공소관 직무를 담당한다. 검사는 경찰법원과 근린법원에 회부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통상 그 직무를 행하는 경찰서장에 갈음하여 공소관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다만, 산림범죄가 경찰법원에 회부된 경우에는, 산림기관 또는 산림국장이 지명하는 지방산림주사 혹은 산림기술직원이 공소관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46조 ① 경찰서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등검사장은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가경찰의 경찰서장 및 경찰지휘관 중에서 매년 1인 또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을 지명한다.

② 공판의 개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법원 판사는 경찰법원 소재지의 시장 또는 그 보조자에게 공소관의 직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47조 경찰법원 소재지에 2인 이상의 경찰서장이 있는 때에는 고등검사장이 공소관의 직무를 담당할 자를 지명한다.

제48조 경찰법원의 소재지에 경찰서장이 없는 경우, 고등검사장은 공소관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가경찰의 경찰서장 또는 경찰지휘관을 지명한다. 지명할 만한 자가 없는 때에는, 동일 도내 인접한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를 지명한다.

제 5 절 국가사법정보시스템

제48-1조 ① 국가사법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사법관의 감독 아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특히 이중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접수한 고소·고발 및 그 처리 결과, 관할법원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피해자에 관한 정보, 같은 범죄사실 또는 같은 행위자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한 법원 사이에 교환된 정보 등을 수록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또한 통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가사법정보시스템에 보존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일시, 장소, 죄명
2. 알려진 경우, 범죄행위자와 피해자의 성,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사회적 동기
3. 공소 결정, 예심 과정, 판결 절차 및 형 집행 방식 등에 관한 정보
4. 기소 또는 형 선고가 된 자에 대한 절차 진행 중 정보

④ 국가사법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는 최후 저장일로부터 10년 간 또는 이보다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또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집행시효 기간 동안 보존된다.

⑤ 각 법원에서 진행된 절차에 관한 정보는 토지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형사

사건 담당 검사 또는 판사의 감독 하에 서거나 기타 사법관을 보좌하는 자가 수록한다.

⑥ 본조의 정보는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판사와 이들을 보좌하는 서기와 보조인 등이 범죄행위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절차의 관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⑦ 본조의 정보는 또한 제704조, 제706-2조, 제706-17조, 제706-75조, 제706-107조 및 제706-108조에 정한 검사 또는 판사가 전체 관할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관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⑧ 본조의 정보는 항소부에서 진행되는 절차의 관리 목적이거나 제35조 및 제37조 관련하여 검사장이 열람할 수 있다.

⑨ 통계 상 목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제11-1조에 정한 정보를 제외하고 국가사법정보시스템 상 정보는 사법기관만 열람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수사나 예심수사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⑩ 정보와 자유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사참사원령의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열람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 3 장 예심판사²²⁾

제49조 ① 예심판사는 제3편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예심수사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예심판사는 예심판사의 자격으로 수사하였던 사건의 공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은 무효로 한다.

③ 예심판사는 소속 지방법원 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22) juge d'instruction.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라고도 하며 판사라는 명칭과 달리 검사의 예심수사 개시청구에 기해 피의자 및 증인신문, 구금, 사법경찰 수사지휘를 통한 수색, 압수, 통신감청 등 실질적인 수사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받음. 프랑스 혁명 이후 소추, 예심수사, 판결의 각 권한을 분리하면서 도입되었음.

4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50조 ① 예심판사는 법원의 판사 중에서 선정되며 판사의 임명방식에 따라 임명된다.

② 필요한 경우, 다른 판사를 적법한 임명방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임명하여 제1항에 정한 예심판사와 함께 예심판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이 재판부에 속한 1명의 판사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판사도 다른 예심판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예심판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④ 예심판사가 궐석이거나 질병 등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방 법원은 소속 판사 1인을 지명하여 예심판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① 예심판사는 제80조 및 제8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가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한 때 또는 사소청구인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예심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의 경우 예심판사는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③ 예심판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경찰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범죄지,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 중 1인의 주거지, 이들 중 1인의 체포지 또는 구금지의 예심판사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체포 또는 구금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와 같다.

제52-1조 ① 관할에 따라서는 예심판사들로 예심전담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예심전담부를 구성하는 예심판사들만 중죄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등급이 달라진 경우나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83-1조 및 제83-2조에 따라 복수의 예심판사가 지명된 경우에도 예심전담부의 관할로 한다.

④ 예심전담부를 둘 곳과 소속 예심판사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토지관할은 여러 개의 지방법원 관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제704조, 제706-2조, 제706-17조, 제706-75-1조 및 제706-107조에 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심판사 중 1인 혹은 수인을 지명하여 소속 예심판사들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편 수사 및 검문

제1장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

제53조 ①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중죄 또는 경죄를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으로 한다. 행위와 극히 근접한 시점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부르며 누군가 추적하는 경우, 중죄 혹은 경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또는 흔적 혹은 징표를 보이는 경우에도 이를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으로 한다.

②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을 인지하고 검사 주도로 본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는 8일을 넘을 수 없다.

③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가운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에 대하여 실제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는 최장 8일의 기간 동안 제2항에 정한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제53-1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고지한다.

1.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2.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사소청구인을 구성하거나, 관할법원에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소환에 의한 사소청구를 하거나, 예심판사에게 고소할 권리
3. 사소청구인 구성을 원할 경우, 직접 선임한 변호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4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따라 관할법원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 비용은 요건을 갖추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사법보장보험 대상이 아닌 한, 피해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4. 1개 또는 수 개의 공공기관의 서비스 혹은 피해자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배상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
6. 민법 제515-9조 내지 제515-13에 정한 보호처분을 청구할 권리.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가 폭력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형 집행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54조 ① 중죄의 현행범이 발생하여 사법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중죄 현장에 임검하여 범죄인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멸실 우려가 있는 징표를 보존하고, 진실 발견에 유용한 일체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의한다. 사법경찰관은 중죄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또는 제공하려고 했던 흉기 및 기구와 그 중죄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물건을 압수한다.

③ 중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현장에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요구한다.

제55조 ① 중죄가 행해진 장소에서, 수사활동 개시 이전에 허가 없이 그 장소의 상황을 변경하는 행위와 그 장소로부터 어떠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자는, 제4급 위경죄에 정한 벌금에 처한다.

② 다만, 그 변경 또는 사전조치가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1조 ① 사법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범죄의 흔적이나 단서와의 비교를 위한 외부채혈검사를 하거나, 자신의 감독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록의 생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 증거, 지문, 사진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감독을 받는 다른 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사기록의 생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명한 전2항의 조치에 대해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자가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① 중죄의 속성으로 판단할 때, 당해 중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점유하는 서류, 문서 기타 물건의 압수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석에서 그 자의 거주를 수색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또한 형법 제131-21조에 따라 압수 대상인 물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물건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목적인 때에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과 제57조에서 지정하는 자, 제60조에 따라 협력의무가 있는 자만 압수절차 이전에 서류·문서 또는 전자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미리 직무상 비밀 유지와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압수한 일체의 물건 및 서류에 대하여는 즉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봉인한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면밀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목록을

4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작성하고 정식으로 봉인할 때까지 이를 가봉인한다. 정식 봉인은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색에 입회하였던 자의 참여 하에 이를 실시한다.

⑤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는 전자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하거나 참여자의 입회하에 사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전자정보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본만 출력한 다음에 원본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본체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⑦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문서·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⑧ 검사는 압수물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으로 성질상 현물보존이 진실 발견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지시하여 금고나 위탁소 또는 프랑스 은행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⑨ 유로화 표시 위조지폐나 위조동전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그 확인 및 분석을 위해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와 동전을 적어도 1개씩 이를 위하여 설립된 국립분석기관에 보내야 한다. 국립분석기관은 봉인을 해제할 수 있고,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봉인의 개봉 및 재개봉에 관해 명시하여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와 봉인은 관할 지방 법원 서기에게 인계하고, 조서로써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전항의 규정은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가 1개이고 압수물이 1개인 경우로써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⑪ 압수 대상인 물건·서류 또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절차의 종료까지 그 자를 현장에 남아 있게 할 수 있다.

제56-1조 ① 변호사의 사무소 또는 가택의 수색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이 혐의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문서로써 결정하고, 사법관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기에 앞서 결정문의 내용을 변호사회 회장 또는 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사법관과 변호사회 회장 및 그 대리인은 압수·수색에 앞서 발견한 물건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결정문에 적시된 혐의사실 외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며, 본조에 위반한 압수·수색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압수·수색을 감독하는 사법관은 그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회 회장과 그 대리인은 물건 또는 서류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서류 또는 물건은 봉인된다. 압수·수색 조서에는 변호사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하고, 조서는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 없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문서 또는 물건이 압수된 경우, 그 압수·수색 조서는 제57조의 조서로 보지 않는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압수·수색보고서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적시한 명령으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결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이를 위해서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나아가 사무실이나 가택이 수색당한 변호사, 변호사회 회장, 그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해 볼 수 있다.

⑥ 석방구금판사는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원상회복, 조서의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보고서에 적시된 서류 또는 물건 및 그 보고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5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⑦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에 봉인된 압수물과 조서를 편철할 것을 명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판결법원이나 고등법원 예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⑧ 본조의 규정은 변호사공제회 혹은 변호사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지방법원장이 대신하고, 압수·수색 이전에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호사협회 회장의 주거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와 같다.

- 제56-2조** ① 신문사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의 사옥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만이 실시할 수 있다. 사법관은 수사가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 정보 전달을 저해하거나 또는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수색은 사법관이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이 혐의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문서로써 결정하고, 결정문의 내용은 제57조에 따라 수색에 참여한 자에게 수색 개시 시점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사법관과 제57조에 따라 수색에 입회한 자만 압수에 앞서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 또는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문에 명시된 죄 이외의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은 이를 압수할 수 없다.
 - ④ 전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압수·수색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⑤ 수색을 실시하는 사법관은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존중하고, 언론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 제2조에 정한 취재원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 전달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⑥ 본법 제57조에 따라 수색에 입회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서류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경우 이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서류 또는 물건은 봉인된다. 압수·수색조서에는 참여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하고, 조서는 기록에 편철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 없이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문서 또는 물건이 압수된 경우, 그 압수·수색조서는 제57조의 조서로 보지 않는다. 이 조서와 봉인된 서류 또는 물건은 압수·수색보고서의 원본 및 사본 1부와 함께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항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적시한 명령으로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결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⑧ 석방구금판사는 수색을 담당한 사법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나아가 수색에 입회하였던 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들의 입회하에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해 볼 수 있고, 언론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이 실시될 때 그 언론인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 특히,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언론인은 석방구금판사 앞에서 진술할 수 있고, 봉인의 개봉에 참여할 수 있다.

⑨ 석방구금판사는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원상회복, 조서의 폐기,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보고서에 적시된 서류 또는 물건 및 그 보고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인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에 봉인된 압수물과 조서를 편철할 것을 명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판결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심부에 압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56-3조 의사, 공증인, 代訴士 또는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이 각 관계자가 속하는 직업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56-4조 I. ①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만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안보자문위원장이 입회한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대신

5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지명할 수 있고,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자문위원장이거나 그 대리인은 자격을 갖춘 다른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에 정한 장소 목록은 간결하게, 자세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리령이 정하고, 그 목록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국가안보자문위원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보안에 유의하여 사법관에게 전달하고, 사법관은 수색할 장소가 이 목록에 기재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전항에 정한 장소에 물건, 서류, 정보, 정보망, 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미분류파일을 은닉한 경우, 행위자를 형법 제434-4조에 따라 처벌한다.

⑤ 전항의 수색은 사법관이 이유를 붙인 문서로써 결정하고, 사법관은 국가안보자문위원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장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수색 장소에 임검하고, 수색 시작과 함께 사법관은 위원장과 그 대리인, 수색장소의 책임자 또는 기관장, 그 대리인에게 혐의사실의 성격과 내용을 특정하여 압수·수색이 혐의사실의 확정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⑥ 국가안보자문위원장과 그 대리인, 필요한 경우 이들을 돕는 자들은 수색 장소에서 발견된 비밀정보를 확인한다. 이 가운데 사법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것들만 취합하며, 수사의 필요 상 원본을 압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자에게 교부한다.

⑦ 모든 비밀정보는 위원장이 목록을 작성한 후 봉인하고, 봉인은 국가안보자문위원장을 보관자로 하여 보관하게 한다. 압수한 비밀정보와 그 목록에 관한 일체의 조치는 조서에 기재하고, 이 조서는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며, 자문위원장이 보관한다.

⑧ 목록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와 열람에 관하여는 국방법 제2312-4조 및 그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Ⅱ. 수색의 기회에 어떤 장소에서 국가안보 상 중요한 비밀정보가 발견된 때에는 현장에 있거나 혹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법관은 즉시 국가안보자문위원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비밀정보는 열람 없이 사법관 또는 이를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봉인하며, 국방 상 비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자문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위원장은 이 봉인을 보관하고, 비밀정보에 관한 일체의 조치는 조서에 기재한다. 봉인된 정보의 공개와 열람에 관하여는 국방법 제2312-4조 및 그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Ⅲ- ① 형법 제413-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보 상 비밀로 분류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수색은 사법관만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안보자문위원장이 입회한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대신 지명할 수 있다.

② 사법관은 수색하고자 하는 장소가 국방 상 비밀장소인지 여부를 국가안보자문위원장에게 확인한다.

③ 전항의 수색은 사법관이 이유를 붙인 문서로써 결정하고, 사법관은 혐의 사실의 성격과 내용, 장소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이 혐의사실의 확정 필요 이유를 설명한다. 사법관은 결정문을 국가안보자문위원장에게 송부하고, 위원장은 수색 개시에 맞춰 수색장소의 책임자 또는 기관장, 그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④ 수색을 위하여는 일시적으로 특정 장소를 비밀장소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색은 그와 같이 비밀장소에서 제외된 곳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항에 정한 사법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자문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수색을 위하여 특정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비밀해제가 필요함을 통지한다.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비밀해제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해제는 수색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일부에 대하여 비밀해제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해제한 장소에 대하여만 수색할 수 있다.

5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⑤ 수색은 I 호 제6항 및 그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IV.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57조 ① 직무상 비밀유지와 방어권 존중에 대한 제56조의 규정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전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이 주거에 대하여 행하여질 경우에는 주거권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주거권자가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주거권자에게 참여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그러한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당해 행정청 관계자 이외의 자 중에서 2인의 참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6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본조에 정한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57-1조 ①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색을 함에 있어 그 수색장소에 설치된 정보장치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색을 할 수 있다. 그 정보가 다른 정보장치에서 시동되었거나 혹은 다른 정보장치에 접근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정보장치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

② 다른 정보장치로부터 접근 가능하거나 다른 정보장치로부터 취득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전자정보가 국외에 설치된 경우, 현행 국제협약에 정한 접근 조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전자정보는 모든 정보매체 저장수단으로 복사할 수 있고, 정보매체 저장수단은 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봉인되고 압수된다.

제58조 수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문서에 관하여,

예심대상자²³⁾ 혹은 그 권리승계자 또는 문서의 서명인 혹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법률로 열람 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 또는 누설한 자는 4,500유로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 ① 수색장소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시 이전 및 21시 이후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없다.

② 제56조, 제56-1조, 제57조 및 본조에 정한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제60조 ① 검증이나 기술 혹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자격 있는 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협력 요구를 받은 자는,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 중 하나에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선서한다.

③ 기술 혹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를 위해 지명된 자는 봉인을 개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봉목록을 기재하고, 제163조와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개봉 사실을 기재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구두로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

④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기술 혹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검사 결과를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했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60-1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역, 정보통신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사법 상 기관 및 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23) la personne mise en examen. 예심수사는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심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예심수사피의자라고도 함.

5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대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없거나 기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서류, 특히 파일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가 아닌 한, 전항의 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는 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언론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 제2조에 위반하여 얻은 정보는 증거로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절차는 무효로 한다.

제60-2조 ①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통신 또는 정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기관 또는 私法 상 법인은, 정보와 데이터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실발견에 유용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내용 및 그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미리 석방구금판사의 허가를 받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특히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86-1067호 제43-7조에 정한 기술자에게 요청하여, 그가 관리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하는 조치를 빠른 시간에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본조에 정한 기관이나 법인은 데이터통신 또는 정보통신으로 취득한 정보를 최단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본조에 규정한 요청을 거부한 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종류와 검색, 전송 또는 습득한 정보의 처리방법 등은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누구든 범죄장소로부터 이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또는 압수된 물건 및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를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소환하는 자는 출석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강제로 제61조에 정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자는 검사의 사건 허가를 얻어 강제로 소환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진술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진술을 한 자는 직접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며, 조서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진술을 한 자가 글자를 읽을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명에 앞서 조서를 읽어 주며, 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 제20조에 열거된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의 감독 하에,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사법경찰리는 이를 위하여 본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자기가 보좌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한다.

⑤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치할 수 있다.

제62-1조 제16조 내지 제29조에 정한 자는 근무지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다.

제63조 ① 수사 상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했다고 의심되는 요소를 하나 또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유치할 수 있다. 보호유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유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사가 문서로 이를 허가한

5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연장할 수 있고, 검사는 허가하기 전에 보호유치된 자를 출석시켜 면담할 수 있다.

③ 보호유치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석방하거나 또는 검사에게 신병을 인도한다.

④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 파리, 낭페르, 보비니, 크레페이의 지방법원 관할은 동일한 하나의 관할로 본다.

제63-1조 ① 사법경찰관 또는 그 감독을 받는 사법경찰리는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과 제63-2조, 제63-3조 및 제63-4조에 열거된 권리, 제63조에 규정된 보호유치 기간에 대하여 보호유치된 자에게 고지한다.

② 전항의 고지는 조서에 기재하고 보호유치된 자가 서명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③ 제1항에 열거한 고지사항은 보호유치된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④ 농아자로서 읽거나 쓰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화자나 농아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의 조력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아자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술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보호유치 종료 시점에 검사가 공소제기와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아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제77-2조의 규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관은 보호유치가 개시된 때로부터 적어도 3시간 내에 제63-2조 및 제63-3조에 정한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3-2조 ① 보호유치된 자는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자, 직계친족 혹은 형제 자매 중 1인 또는 고용주에게, 전조 제6항에 정한 기간 내에 전화로 자신에게 시행된 조치에 대해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수사 상 필요에 따라 전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한다. 검사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요청한 대로 통보한다.

제63-3조 ① 보호유치된 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호유치가 연장된 때에는, 재차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의사를 지명하여 보호유치된 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유치된 자, 검사, 사법경찰관 등 누구의 청구도 없는 경우에는 보호유치된 자의 가족이 의사의 진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

④ 의사는 지체 없이 보호유치된 자를 진단하고, 진단서에 보호유치의 계속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진단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사건 기록에 첨부된다.

⑤ 특별 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료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3-4조²⁴⁾ ① 보호유치가 시작된 때 보호유치된 자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호유치된 자는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요청은 적당한 수단으로 지체 없이 변호사회 회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③ 선임된 변호사는 접견의 비밀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보호유치된 자와

24) 프랑스는 초동수사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의 방지, 공범수사 등을 위해 변호인의 접견권만 인정하고 수사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6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접견할 수 있다. 그는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의 통제를 받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범죄사실의 일자와 죄명에 대해서 통보 받는다.

④ 접견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접견 후 변호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기록에 편철된다.

⑤ 보호유치 기간 중 변호사는 누구에게도 접견 내용을 발설할 수 없다.

⑥ 보호유치가 연장된 때에는, 보호유치된 자는 전항에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변호사와의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혐의사실이 형법 제450-1조에 정한 폭력조직에의 가입과 형법 제225-7조, 제225-9조, 제312-2조 내지 제312-5조 및 제312-7조에 정한 조직적 매춘 또는 특수강도, 형법 제224-3조, 제225-8조, 제311-9조, 제312-6조 및 제322-8조에 정한 조직범죄인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변호사와의 접견은 72시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다. 사법경찰관은 보호유치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한 후 본항이 적용되는 정황에 대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5조 수사 상 필요에 따라 보호유치된 자의 신체 내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전문의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64조 ① 모든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보호유치된 자에게 질문했던 시간, 질문 사이에 휴식을 주었던 시간, 보호유치 시작 일시, 석방 일시 또는 담당 사법관에게 인계한 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에 정한 요청과 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재에는 이해관계자가 특별히 난외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에는 반드시 보호유치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4-1조 ① 중죄로 보호유치된 자에 대하여 경찰서, 지서 또는 사법경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대 내에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예심 또는 정식재판에서 영상녹화물은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재생할 수 있고, 영상녹화물을 틀지 여부는 검사 또는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예심판사 혹은 정식재판 판사가 결정한다.

③ 누구든 본조에 정한 영상녹화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소가 소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월 안에 영상녹화물을 폐기한다.

⑤ 동일한 절차 또는 다른 절차에서 동시에 영상녹화하여야 할 자가 많아서 영상녹화가 곤란할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수사 상 필요에 따라 누구를 영상녹화할지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구하고, 검사는 문서로써 이를 결정하며, 결정문은 기록에 철한다.

⑥ 기술적인 이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문조서에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러한 사정을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형법 제4권 제1편 및 제2편, 본법 제706-73조에 정한 범죄로 보호유치된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한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검사가 영상녹화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 ① 제64조 제1항에 정한 보호유치의 개시 및 종료 일시, 신문시간 및 신문 중 부여된 휴식시간에 대한 기재 및 난외 서명은 보호유치된 자를 수용하는 경찰 또는 헌병대의 모든 유치장에 특별히 비치된 장부에도 기입하여야 한다.

6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② 사법경찰관이 진술기재 수첩을 소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수첩에도 전항에 규정된 기재 및 난외 서명을 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에게 송부하는 조서에는 기재만을 보존한다.

제66조 제54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즉석에서 작성하여 매 장마다 사법경찰관이 서명한다.

제67조 제5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경죄의 현행범으로서 법률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 ① 검사가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② 전항의 경우 검사는 본장에 규정된 사법경찰의 일체의 처분을 완성한다.

③ 검사는 모든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미 행한 조치를 속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 수사상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본장에 규정된 절차를 행하는 예심판사는 자기가 직무를 행하는 법원에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입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미리 수사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지역 외에서 조사하는 이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70조 ① 제7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제134조를 적용한다. 영장에 따라 구인된 자는 그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한다. 단, 이미 다른 수사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우에 그 수사관의 관할로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송하여 제18조에 정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을 발부한 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검사는 보호 유치기간 동안 범죄수사가 이미 진행된 장소로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인영장이 발부된 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가 지명수배 결정을 내린 경우 사건이 예심판사에게 회부되지 않은 한 구인영장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72조 검사 및 예심판사가 동시에 현장에 있는 때에는, 검사는 정식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다.

제73조 중죄의 현행범 또는 징역형에 처할 경죄의 현행범의 경우에는, 누구든 그 범인을 체포하여 가장 가까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74조 ① 사체를 발견한 경우 그 사인이 불명한 때 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변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최초 검사를 행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에 임하여 사망 원인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다만, 검사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을 지명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협력하는 자는,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의 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선서한다.

④ 검사의 지시에 따라 사망 원인을 판정하기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 제56조 내지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 원인을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다. 검사의 지시가 있을 후 8일 동안 진행되는 이와 같은 수사는 예비수사의 형식으로 한다.

6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⑤ 검사는 사망 원인의 수사를 위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본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나 중상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4-1조 ① 미성년자 또는 보호대상 성인이 실종된 사실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때,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리의 조력과 검사의 지시에 따라 실종된 자를 찾기 위한 제56조 내지 제62조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의 지시가 있는 이후 8일 동안 진행되는 이와 같은 수사는 예비수사의 형식으로 한다.

- ② 검사는 실종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규정은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안전이 염려되는 성인이 실종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4-2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사법경찰리의 조력과 검사의 지시에 따라 도주한 자를 찾기 위한 제56조 내지 제62조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1.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예심부 혹은 예심부장·중죄법원장·공판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따라 공판에 소환된 자
 2. 공판법원이 직접 발부하거나 혹은 형벌적용판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의 대상이 된 자
 3. 1년 이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이 집행되는 경우
- ② 도주한 자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석방구금판사는 제100조, 제100-1조, 제100-3조 내지 제100-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기통신으로 전달되는 편지를 감청하거나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할 수 있다. 범죄수사에 관련된 전문의 조치는 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최장 6개월

동안 같은 조건 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 조치를 감독하고 통제한다.

③ 제100-3조 내지 제100-5조가 적용되는 경우 예심판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검사 또는 그가 지정한 사법경찰관이 행사한다.

④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비수사

제75조 ① 사법경찰관 및 그 감독을 받는 제20조의 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수사를 행한다.

② 예비수사는 고등검사장이 감독한다.

③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고지한다.

1.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권리
2.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때, 관할법원에 범죄행위자를 직접 소환한 때 또는 예심판사에게 고소할 때 사소청구인을 구성할 권리
3. 사소청구인 구성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그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법원 변호사 중 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비용은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나 사법보호 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피해자보호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서 정한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 배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 민법 제515-9조 내지 제515-13에 정한 보호처분을 청구할 권리.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가 폭력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형 집행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제75-1조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예비수사를 명할 때에는 예비수사가 실시될 기간을 정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시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수사가 직권으로 시작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6월이 경과한 때에 검사에게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75-2조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예비수사를 실시하는 사법경찰관은, 범행을 하였거나,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추정되는 징표가 존재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76조 ① 수색, 가택방문 및 증거물의 압수,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의 몰수는 그 조치를 받는 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동의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서명한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문자를 쓸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동의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③ 제56조 및 제59조(제1항)은 본조에 준용된다.

④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경죄 혹은 중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또는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때에는 석방구금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본조에 정한 수색 등 조치를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명한 문서로써 결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몰수는 무효로 한다. 석방구금판사는 증거수집이 필요한 혐의사실의 요지, 수색 등 조치를 취할 장소 등을 특정하여 결정하고, 이 결정문에는 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수색 등 조치를 허가한 사법관이 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임검하여 감독한다. 석방구금판사가 특정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의 수사 및 인지를 위해 본항에 정한 조치가 시행될 때는 이를 무효로 하고,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것과 다른 물건을 몰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본항에 정한 절차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본항에 정한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색 등 조치가 시행되는 곳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소속된 법원의 석방구금판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국내 모든 지역에 임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검사는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검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석방구금판사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제76-2조 ① 검사 또는 검사의 허가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55-1조에서 정한 채혈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5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6-3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57-1조에 정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77조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범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였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이유가 존재하는 자를 보호유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보호유치를 시작한 때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된 자는 24시간을 초과하여 구금할 수 없다.

② 검사는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유치를 최장 24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호유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유치 대상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호유치 대상자의 인치 없이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결정으로 보호유치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는 장소가 사건을 인지한 검사의 관할구역 바깥인 경우, 수사지를 관할하는 검사가 보호유치의 연장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호유치가 종료된 시점에 기소할 만한 증거가 수집된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6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유치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 담당 검사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리, 낭테르, 보비니 및 크레페이 지방법원의 각 관할구역은 단일한 관할로 본다.

⑤ 제63-1조,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각 규정은 본장에 정한 보호유치에도 적용된다.

제77-1조 ① 검증, 기술 또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77-1-1조 ① 검사 또는 검사의 지시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역, 정보통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사법 상 기관 및 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필요를 포함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그 정보 등을 파일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요청을 받은 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0-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제60-1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77-1-2조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허가를 얻어 제60-2조 제1항에 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석방구금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60-2조 제2항에 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요청한 정보를 데이터통신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최단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본조에 정한 요청을 거절한 자는 제60-2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제77-2조 예비수사 또는 현행범 수사과정에서 보호유치되었다가 보호유치가 종료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기소가 되지 아니한 모든 자는, 보호유치가 되었거나, 보호유치가 될 수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이 질의는 수취인 확인 등기 우편으로 전달된다. 본조의 규정은 제706-73조에 정한 경죄 또는 중죄와 관련된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3조 보호유치가 실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예비 수사가 중단된 때에는, 보호유치되었던 자는 지체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검사에게 제77-2조에 정한 질의를 한다.

제77-4조 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78조 ① 수사 상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소환을 받은 자는 출석의무가 있고,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검사는 경찰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② 범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진술청취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초과하여 유치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진술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20조의 사법경찰리도 사법경찰관의 감독 하에 소환된 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서는 제62조 및 제6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다.

제3장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

제78-1조 ① 본장의 규정은, 제12조 및 제13조에 정한 기관의 감독 하에 적용된다.

②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본조 이하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경찰당국이 행하는 신분검사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78-2조 ① 사법경찰관과 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제20조 및 제21조 제1호의 사법경찰리 및 보조사법경찰리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범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고 했다는 사실
-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할 준비를 했다는 사실
-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를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 사법기관의 지명수배 대상이 된 사실

② 검사가 특정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해 서면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검사가 지정하는 장소 및 기한 안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신분검사의 결과, 검사의 청구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사실로 인하여 신분검사 등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공공의 안전, 특히,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자에 대하여 거동 여하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④ 1990년 6월 19일 쟁겐에서 서명된 조약에 따라 체약국과 프랑스와의 육상 국경선에서 국내로 향하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헌법위원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규정, 1993년 8월 5일 n° 93-323 DC)과 명령으로 지정된 국제 교통항구, 공항 및 철도역 또는 버스터미널의 공공구역(헌법위원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규정, 1993년 8월 5일 n° 93-323 DC)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에

정한 증명서 및 문서의 소지, 휴대 및 제시의무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신분검사가 국경을 지나는 기차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국경과 그 안쪽으로 20킬로미터 내에 있는 첫 번째 정차역 사이에서 시행한다. 다만, 첫 번째 정차역이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첫 번째 정차역과 국경으로부터 50킬로미터 내에 있는 두 번째 정차역 사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기차노선과 정차역은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1) 고속도로가 본항 제1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2) 첫 번째 톨게이트가 국경 안쪽으로 20킬로미터 지난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 신분검사는 국경과 첫 번째 톨게이트 사이에 있는 휴게소, 첫 번째 톨게이트 또는 첫 번째 톨게이트에 면한 휴게소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톨게이트는 명령으로 정하며, 신분검사의 결과, 상기 수인의무의 불이행 이외의 다른 범죄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사실로 인하여 신분검사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프랑스령 귀안(Guyane)의 육상 국경선 또는 연안선으로부터 국경 안쪽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레지나 영토상에 있는 2번 국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도, 법에 정한 증명서 및 문서의 소지 휴대 및 제시의무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2006년 7월 24일 법률 제2006-911호의 공표일로부터 5년 간 다음과 같이 법에 정한 증명서 및 문서의 소지 휴대 및 제시의무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1. 구아텔루프의 경우, 해안에서 국경 안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항구에서 국경 안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바스-테르·구르베이르·트루아리비에르 지역 1번 국도 위, 고지에·생탄느·생프랑수아 지역 4번 국도 위에서 실시한다.

2. 마이요트의 경우, 해안에서 국경 안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실시한다.

7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3. 생마르탱의 경우, 해안에서 국경 안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실시한다.
4. 생바르텔레미의 경우, 해안에서 국경 안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실시한다.

제78-2-1조 ①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제20조 및 제21조 (제1호)의 사법경찰리 및 보조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건축·제조·가공·수선·급부 또는 상품화 등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작업장과 그 부속건물 및 부속지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 다만, 그 장소가 주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기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공업자 명부 또는 상업·회사등기부예의 등록 여부와 사회보장 및 세무행정 상 신고가 없음을 확인할 목적
- 직원명부와 고용 상 신고의무 이행증명서를 확인할 목적
- 현재 고용된 직원이 상기 직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직원이 고용 전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신분검사를 하기 위하여

② 검사가 지시를 함에는 노동법 L제324-9조 및 L제341-6조에 정한 범죄 중에서 수사를 하게 하거나 소추하려고 하는 범죄를 특정하고, 검사를 실시할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의 유효기간은 최고 1개월로 하고,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제78-2-2조 ① 형법 제421-1조 내지 제421-5조에 정한 테러범죄, 전쟁무기 제조에 관한 1870년 9월 4일 법규명령을 대체한 1871년 6월 19일 법률 제3조에 정한 무기와 폭발물 관련 범죄, 전쟁물자와 무기 및 탄약에 관한 1939년 4월 18일 법규명령 제20조, 제31조 내지 제32조에 정한 범죄, 형법 제311-3조 내지 제311-

11조에 정한 절도죄,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38조에 정한 은닉죄,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38조에 정한 마약밀매죄 등에 대한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리 및 제21조 제1호, 제1호bis, 제1호ter에 정한 보조사법경찰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서면지휘에 기하여 검사가 지정한 시간 동안 범행장소에서 제78-2조 제6항에 규정한 신분검사를 할 수 있다. 운행 중이거나, 공공도로 및 공공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정차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수색도 이와 같다.

②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경우는 운전자의 신분검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정차시킬 수 있다. 정차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수색은 운전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가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행정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서 그 경찰의 요청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와 재산 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없다.

③ 범죄가 발견된 경우, 자동차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요구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수색이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 그 조치가 이루어진 날짜, 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간, 수색의 목적을 조서에 기재한다. 조서의 부분 중 1부는 이해관계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한다.

④ 자동차가 특별히 주거용으로 개조되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수색 및 검사는 주거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검사의 지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조에 정한 조치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제78-2-3조 ①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리 및 제21조 제1호, 제1호bis, 제1호ter에 정한 보조사법경찰리의 조력을 받아, 운전자 또는 승객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할 만한 1개 또는 수 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행 중이거나 공공도로 또는 공공의 접근이

7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가능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수색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제78-2-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78-2-4조 ① 사람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리 및 제21조 제1호, 제1호bis, 제1호ter에 정한 보조사법경찰리의 도움을 받아, 제78-2조에 정한 신분검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공공도로 또는 공공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된 자동차를 수색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말하는 검사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30분을 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자동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

③ 제78-2-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78-3조 ① 신분검사 대상자가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대상자를 현장에 유치하여 두거나 신분확인을 위하여 연행한 경찰서에 유치²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유치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인치되고, 사법경찰관은 그 자에게 신분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또 필요한 확인조치를 실시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유치자에게 자신에게 시행되는 신분확인 조치에 대하여 가족 또는 피유치자가 선택하는 자에게 검사가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가족 또는 피유치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한다.

② 신분확인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유치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방해되는 사유가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25) rétention. 수사과정에서의 구금은 détention 임

- ③ 신분확인 대상자는,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초과하여 유치할 수 없다. 유치는 제78-2조에 따른 신분검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검사는 언제든지 유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 ④ 신분검사를 위하여 불러 세워진 자가 자신의 신분증명을 계속 거부하거나 또는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밝히기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달리 신분증명의 수단이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아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채취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 ⑤ 지문채취 또는 사진촬영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조치를 취한 특별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⑥ 사법경찰관은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을 정당화하는 이유 및 대상자가 자신 앞에 인치되어 모든 권리를 고지 받은 사실,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조서에 기재한다. 또, 신분검사 개시 일시, 유치종료의 일시 및 유치시간을 조서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 ⑦ 전항의 조서는 그 서명을 받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제시하고, 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 ⑧ 조서는 검사에게 제출하고, 다음 항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에게도 그 사본을 교부한다.
- ⑨ 신분확인 후에, 피유치자를 사법당국에 인계하는 수사절차 또는 집행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때에는, 신분검사의 결과를 수사기록에 보존할 수 없고, 조서 및 신분확인에 관계된 일체의 자료는 검사의 감독 하에 6월 이내에 폐기한다.
- ⑩ 사법당국에 인계하는 수사절차 또는 집행절차가 개시되고 보호유치가 수반된 때에는, 피유치자는 즉시 검사에게 자기가 대상이 되어 있는 조치에 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⑪ 본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제78-4조 전조에 규정된 유치기간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유치기간에 산입한다.

7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78-5조 제78-3조에 따라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허가한 지문채취 또는 사진 촬영에 대하여 협력을 거부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및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6조 ① 제1호bis, 제1호ter, 제1호quater, 제2호에 규정된 보조사법경찰리는 시 경찰령에서 정한 위경죄, 법률과 규칙에서 사법경찰리에게 조서 작성 권한을 부여한 도로교통법 상 위경죄, 법률 상 명문규정에 따라 사법경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위경죄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위경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만일 위경죄를 범한 자가 신분확인을 거부하거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의 사법경찰리는 즉시 관할권 있는 국가 경찰이나 국가 헌병대 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위경죄를 범한 자를 자신에게 인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정한 보조사법경찰리가 위경죄를 범한 자를 유치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제78-3조에 따라 신분확인 진행 결정을 내리는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은 신분확인을 개시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 3 편 예심법원

제 1 장 예심판사 : 제1단계의 예심법원

제 1 절 총 칙

제79조 예심수사는 중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시한다. 경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실시한다. 위경죄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44조에 따라 이를 청구하는 때에는 예심수사를 행할 수 있다.

제80조 I. ① 예심판사는 검사가 예심수사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심수사를 행할 수 없다.

② 예심수사를 청구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자를 명시할 수도 있고, 이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예심판사가 예심수사청구서에 특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 또는 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예심개시를 청구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추가 수사를 명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제41-1조 내지 제41-3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거나, 고소장이나 조서를 관할권 있는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검사가 별도의 예심수사를 청구한 경우 별도의 예심수사는 제83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예심판사를 지명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소청구인 구성을 겸한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8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단, 사소청구인이 예심법원에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II. ① 중죄인 때 또는 사물관할이 결합된 때, 예심전담부가 없는 곳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정한 관할권을 가진 예심전담부 사법관에게 예심수사를 청구하고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 예심개시는 예심전담부가 설치된 관할 전반에 걸쳐 사건을 담당하고 그 관할 내의 사법경찰관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 예심전담부 소속 검사는 확정판결까지 사건을 담당한다.

④ 판결법원에 정식기소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할권 있는 근린법원·경찰법원·경죄법원·소년법원·중죄법원 중에서 선택한다.

III. 예심전담부가 있는 곳의 검사가 본조 제II-2항에 정한 예심개시를 청구하였으나 예심전담부가 담당할 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권

7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하기 전에 혐의자를 사법통제 하에 두거나 제394조 제3항과 제39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구금할 수 있다. 그와 같이 구금된 자는 늦어도 3일 안에는 관할권 있는 검사 앞에 소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80-1조 ① 예심판사는 수사 대상 범죄에 정범 또는 공범으로 관여하였음을 의심케 하는 명백하거나 혹은 개연성 높은 증거가 존재하는 자에 대하여만 예심수사를 할 권한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절차는 무효가 된다.

② 예심판사는 변호인을 동반하고 최초 출석한 피의자의 신문에 관한 제116조의 규정 또는 출석증인의 신문에 관한 제113-1조 내지 제11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로부터 미리 진술을 청취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진술을 청취하게 한 다음에만 예심수사를 개시한다.

③ 예심판사는 출석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심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80-1-1조 ① 예심수사의 대상이 된 자는 최초출석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제173조, 제173-1조 및 제174-1조에 따라 예심수사의 종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고, 제80-1조 제3항에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심수사 중에도 예심판사에 대하여 자신의 지위를 출석증인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수사개시 이후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정한 청구는 위임수사의 결과에 대해 청취한 후, 사소청구인이나 증인, 수사대상인 출석증인 외에 다른 출석증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④ 예심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대해 공소관의 의견을 들어 지위를 변경한다.

⑤ 예심판사가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출석증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자에게 통지하며, 그가 구금상태에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석방한다.

⑥ 예심판사가 수사 계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 또는 개연성 높은 증거를 적시하여 청구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 제80-2조** ① 예심판사는 예심수사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최소 10일 최대 2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116조에 정한 최초출석 절차에 따라 예심판사 앞에 출두할 것을 통지한다. 이 우편에는 소환일시를 적시하고, 예심판사가 인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피소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과 직권으로 변호인 지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그와 같은 선임 및 지명요구는 예심법원 서기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또한 피소환자가 예심판사 앞에 최초출석한 후에 예심수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 ② 예심판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소환사실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통지서에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며, 통지서 사본을 수령한 자가 서명한 조서로써 통지사실을 확인한다.
- ③ 선임 또는 지명된 변호인은 제114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 소환한다. 변호인은 동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 제80-3조** ① 예심수사의 개시 즉시 예심판사는 피해자에게 절차의 개시, 사소 청구인을 구성할 권리 및 그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② 전항에 정한 통지서에는 사소청구인 구성을 원할 경우, 직접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의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변호인 비용은 요건을 갖추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사법보장보험 대상이 아닌 한, 피해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피해자가 사소청구인이 되어 변호사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에 예심판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한다.

제80-4조 ① 사망 원인 또는 제74조 및 제74-1조에 규정된 실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행함에 있어, 예심판사는 제1권 제3편 제1장에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통신의 감청은 제100조 및 제100-1조 내지 제100-7조에 규정한 조건 및 제한 하에 시행된다. 통신감청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②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척들은 부대사소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실종자가 발견되고 그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지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소청구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미성년자나 보호대상 성인인 경우 예심판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사소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다.

제81조 ① 예심판사는 법률에 따라 진실 발견에 필요한 모든 수사를 한다. 예심판사의 수사대상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예심수사 서류와 기타 소송서류는 사본을 작성한다. 각 사본은 서기 또는 제4항에 정한 사법경찰관이 인증하며, 모든 소송기록은 예심판사의 작성 순서 또는 수리 순서에 따라 서기가 번호를 매긴다.

③ 다만, 사진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 수 있는 때에는 전송을 통해 사본을 만든다. 서류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부수를 인쇄하며, 서기는 사본과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항고 등 불복절차가 개시되어 절차가 중단된 때에는 제194조에 정한 기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제때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④ 예심판사가 스스로 모든 예심수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일체의 예심수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51조 및 제152조에 정한 요건 및 동조에 정한 제한에 따라 수사위임을 할 수 있다.

⑤ 예심판사는 전항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된 수사자료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의 성격과 경제상황·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상황에 관한 조사를 직접 행하거나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행하게 하거나,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죄에 있어서 이 조사는 임의적이다.

⑦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출소자 지원위원회, 감독교육당국 또는 전항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 예심수사피의자의 경제상황·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상황을 조사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에 적합한 조치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범죄에 있어 범행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성인을 구속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가 동일한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예심판사는 의학적·심리적 검사를 명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체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의 일방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전항에 정한 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청구하였으나 예심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때부터 늦어도 1월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⑩ 전항의 청구는 사건이 계속된 예심판사의 서기에 대하여 한다. 서기는 청구를 확인하고 일자를 붙인 후,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과 함께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서기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이 관할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서기에 대한 청구는 배달증명 등기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예심수사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청구는 구치소의 장을 통해 할 수 있고, 구치소의 장은 청구를 확인하고 일자를 붙인 후, 청구인과 함께 이에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그 취지를 기재한다. 청구서의 원본 또는 사본은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예심판사의 서기에게 송부한다.

⑪ 1월 이내에 예심판사가 결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장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제186-1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8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81-1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심판사는 직권이나 검찰 또는 사소청구인의 청구를 받아 피해자가 제출한 손해의 성격 및 심각성 등을 평가하거나 피해자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2조 ① 검사는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하면서 또는 수사 중에 범죄사실을 추가하면서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처분 및 보안 처분을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또한 그가 청구한 처분의 집행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은 24시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예심수사피의자의 구속 또는 그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제137조 제2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10일 이내에 예심판사가 결정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는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할 수 있고, 예심판사를 통해 청구를 수리한 석방구금판사가 1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82-1조 ① 예심수사에서 당사자는 예심판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변론 또는 신문, 증인신문, 대질신문 또는 현장검증, 당사자의 일방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명령 발부 기타 진실발견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본항의 청구는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행위를 특정하여야 하며, 그 청구가 신문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피신문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예심판사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최종 소환일로부터 4월의 기간이 경과되고, 예심수사피의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예심판사는 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심판사는 청구의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문을 행하며, 본항의 청구는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2-2조 ① 예심수사피의자가 예심판사에게 제82-1조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 검증, 증인·사소청구인 또는 다른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하는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소청구인은 현장검증이나 증인 및 다른 사소청구인의 신문 또는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문에 관하여도 변호인의 참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예심판사는 이들 청구에 대하여 제8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예심판사는 늦어도 현장검증일 또는 신문일 2일 전까지 제12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예심수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호인을 소환한다.

제82-3조 예심판사가 공소시효를 확인하여 달라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 때에는 청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83조 ① 사건의 중대성 또는 복잡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복수의 예심판사가 지명될 수 있다.

② 예심전담부가 있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궐석 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법관은 예심수사의 개시 시점에 또는 예심수사 중에 직권 또는 예심개시를 청구한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인 또는 복수의 예심판사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예심수사 중에 담당 예심판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검사가

제81조 제10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고 이에 예심판사가 동의한 경우, 또는 법원장의 직권행사에 대하여 예심판사가 동의한 경우, 법원장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사를 예심수사에 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청구가 있은 후 6월 안에는 전문의 청구를 반복할 수 없고,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장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사를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관할 내에 예심전담부가 없는 법원에서 본항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 예심전담부가 있는 법원의 법원장은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예심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예심전담부가 있는 법원의 예심판사를 지명하고 하나 또는 여러 명의 예심판사를 추가로 배정한다. 예심전담부의 예심판사가 배정되는 날에 기존의 예심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④ 담당 예심판사의 동의가 없거나 1월 이내에 지명이 없는 등 전항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법원장, 검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공동관할권을 행사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당사자 중 1인의 청구가 제81조 제10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심부장은 1월 이내에 예심판사를 지명하며, 예심전담부가 없는 곳에서 청구가 수리된 경우 예심부장은 예심부를 공동관할권을 행사하는 예심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전문의 지명을 받은 예심부가 복수의 예심판사 지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1월 이내에 사건을 본래 예심판사에게 돌려보내고, 실제진실의 발견과 형사사법 상 정의를 위하여 복수의 예심판사 지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래 예심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복수의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⑤ 법원장의 결정과 전항에 규정한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83-2조 복수의 예심판사가 지명된 경우 기존에 사건을 담당하던 예심판사는 직무수행에 관하여 조정한다. 그는 석방구금판사에게 회부하는 것과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 제175조에 정한 수사종결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업무를 분담하고 상기 결정에 대하여 공동관할권을 행사하는 예심판사가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

제84조 ① 검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이유를 붙인 청구서로써 법원장에 대하여, 예심판사를 해임하고 다른 예심판사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57조 및 제66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장은 이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명령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예심수사 담당판사가 휴가, 질병 기타 원인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임무를 맡게 된 경우, 법원장은 이에 갈음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④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나 독립 처분에 대하여는, 모든 예심판사가 같은 법원의 다른 예심판사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8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지명된 법관 또는 복수의 법관이 있는 때에는 최초로 지명된 법관이 본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예심수사 담당판사를 갈음하거나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제 2 절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효과

제85조 ① 중죄 또는 경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52조, 제52-1조 및 제706-42조의 적용을 받는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

② 단, 피해자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을 통하여 또는 직접 검사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사가 허락한 경우, 피해자가 검사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배달증명우편 영수증을 받은 후 3개월이 경과

8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피해자는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소청구인이 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에 규정된 경죄와 중죄, 선거법 제86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100조, 제102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13조에 정한 경죄와 중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대답을 받은 때까지, 또는 검사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제86조 ① 예심판사는 검사로 하여금 예심수사청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소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것을 명한다.

② 예심수사 청구는 그 대상이 될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고소의 이유가 불충분하거나 그 증거가 불충분한 때에는, 검사는 예심수사 청구에 앞서 예심판사에게 사소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할 것 또는 필요한 경우 고소의 근거가 되는 모든 증거를 사소청구인이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가 가능할 만큼 충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여도 형법 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심판사에게 예심불개시의 청구를 한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또는 본조 제3항이 적용되어 수사를 해 본 결과 혐의자가 사소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명된 경우, 수사하지 않아도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 그럼에도 예심판사가 이와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 예심판사가 예심수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177-2조 및 제177-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87조 ① 예심수사 중 언제든지 사소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당사자는, 사소청구인의 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예심판사가 사소청구인 구성의 불수리를 선고한 때에는, 예심판사는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열람시킨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 예심판사는 명령으로 고소장의 접수를 확인한다. 예심판사는 법률구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 사소청구인이 사무국에 공탁하여야 할 금액 및 공탁기한을 사소청구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기한까지 공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소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예심판사는 사소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8-1조 ① 제88조에 따라 결정되는 공탁금은 제177-2조에 의해 선고될 수 있는 민사벌금²⁶⁾의 지급을 담보한다.

- ② 예심판사가 민사벌금을 선고하지 않거나, 검찰 혹은 사소청구인의 항고를 받은 고등법원 예심부가 이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한다.

제88-2조 ① 예심수사 중에 사소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검사는 제800-1조 제2항에 따른 비용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88조에 정한 공탁금에 추가 비용을 납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예심판사가 감정 청구를 기각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한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추가비용의 납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800-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추가비용을 환급한다.

26) l'amende civile

제89조 ① 사소청구인은 예심수사가 프랑스 본토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프랑스 본토의 현재 주소를, 예심수사가 해외영토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해외영토의 주소를 예심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소청구인은 자기의 개인 주소 또는 자기 앞으로 된 서면을 수령할 제3자의 주소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자의 주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예심판사는 사소청구인에게, 예심수사의 종결 전에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신고하거나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한다. 또한, 최후에 신고된 주소에 대한 송달은 사소청구인 본인에 대한 송달로 간주된다는 점도 고지한다.

④ 주소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소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어야 할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9-1조 ① 사소청구인이 최초 진술을 할 때, 예심판사는 사소청구인에게 예심수사 중 또는 늦어도 제175조 제1항에 정한 고지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제81조 제9항, 제156조 제1항 및 제173조 제3항에 정한 조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청구 기각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한다. 다만, 제17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심판사가 예심수사절차의 예상기간이 경죄의 경우 1년, 중죄의 경우 18개월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그 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 만료 시 제175-1조에 따라 절차 종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예심판사는 경죄의 경우 1년, 중죄의 경우 18개월이 지난 때에 사소청구인에게 동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 종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③ 전항의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90조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심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사소청구인을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제90-1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경죄, 형법 제3편에 정한 재산에 대한 경죄 또는 형법 제2편에 정한 사람에 대한 경죄의 경우 예심판사는 매 6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사소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지는 우편으로 본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고, 진술을 청취하는 기회에 할 수도 있다.

③ 제2-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룬 경우 제1항의 고지는 단체에 대하여 함으로써 피해자 전체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단, 피해자들이 각기 자신들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소청구인이 원할 경우 본조에 정한 고지 기간을 매4월로 바꿀 수 있고, 고지를 목적으로 사소청구인을 소환하여 설명해 줄 것을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 ① 사소청구인이 구성되어 예심수사가 개시된 후 불기소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 및 고소장에 특정된 자는 민사상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 한 아래 절차에 따라 고소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무고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불기소 결정 확정일로부터 3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예심수사가 계속되었던 경죄법원에 소환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 경죄법원은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기록을 제출받아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평의실에서 진행하며,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손해배상 선고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판결 전문 또는 초록을 법원이

9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지정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신문지상에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게재료의 최고 한도는 법원이 정한다.

④ 이의신청 및 항소는, 경죄사건에 정한 기간을 준용한다.

⑤ 항소는 경죄법원 항소부에 제기하며, 경죄법원 항소부는 원심 법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⑥ 제177-2조에 따라 내려진 확정판결에서 사소청구인의 구성이 권한남용이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본조에 정한 법원을 기속한다.

제3절 현장검증, 압수·수색 및 통신의 감청

1. 현장검증과 압수·수색

제92조 ① 예심판사는 수사 상 필요한 검증 또는 수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검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현장검증에 관하여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예심판사의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예심판사는 항상 서기를 참여시킨다.

③ 예심판사는 위 조치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93조 예심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심판사는 그 법원의 검사에게 통지한 후, 전국의 어느 장소에도 서기를 동반하여 현장검증하고, 일체의 예심수사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심판사는 미리 검증할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검증의 이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94조 수색은 진실발견이나 형법 제131-21조에서 정한 몰수물의 확보를 목적으로 대상 물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실시한다.

제95조 예심판사가 예심수사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때에는,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96조 ① 예심수사피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에서 수색을 하는 때에는, 주거권자를 불러 입회하도록 한다. 그 자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때 또는 입회를 거부한 때에는, 그곳에 있는 혈족 또는 인척 2인의 입회하에, 친족도 없는 경우에는 2인의 참관인의 입회하에 수색한다.

② 예심판사는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예심판사는 미리 직무상 비밀유지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56-1조, 제56-2조, 제56-3조의 규정은 예심판사에 의한 수색에 준용한다.

제97조 ① 예심수사 과정에서 문서나 전자정보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를 위해서 예심판사 또는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만 압수 이전에 문서 또는 전자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일체의 압수물, 문서 및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즉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봉인한다. 다만,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제56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③ 범죄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압수함에는 전자정보가 담긴 물건을 압수 하거나 참여자의 입회하에 사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그 전자정보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본만 출력한 다음에 원본은 예심판사의 지시에 따라 본체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의 동의를 얻어 진실 발견에 유용한 물건·문서·전자정보 및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를 유지할 수 있다.

⑥ 봉인이 행하여진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가 정식으로 소환되어 입회하거나

92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변호인과 함께 입회한 경우가 아니면, 봉인을 해제하거나 문서를 개피할 수 없다. 압수가 제3자의 주거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제3자도 봉인해제 및 문서 개피에 참여시킨다.

⑦ 예심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압수된 문서 또는 전자 정보의 사본·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단,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⑧ 예심판사는 압수물이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이어서 성질상 현물보존이 진실발견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기에게 지시하여 금고나 위탁소 또는 프랑스 은행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⑨ 유로화 표시 위조지폐나 위조동전을 압수한 경우에는, 예심판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확인 및 분석을 위해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와 동전을 적어도 1개씩 이를 위하여 설립된 국립분석기관에 보내야 한다. 국립분석기관은 봉인을 해제할 수 있고,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봉인의 개봉 및 재개봉에 관해 명기하여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와 봉인은 관할법원의 서기에게 인계하고, 조서로써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전항의 규정은 위조로 의심되는 지폐 또는 동전의 형태가 1개이고 압수물이 1개인 경우로써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7-1조 사법경찰관은 위임 받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7-1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8조 예심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수사피의자, 승계인 또는 수색을 통하여 취득한 문서의 서명인, 수취인의 승낙 없이, 법률에 의하여 열람권이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누설한 자는 4,500유로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 ① 예심판사는 예심수사 기간 중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을 관할한다.

② 예심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아니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 사소청구인, 예심수사피의자의 청구와 그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환부에 관하여 재판한다.

③ 예심판사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소유권의 귀속에 다툼이 없는 압수물을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또는 환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진실발견 또는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와 환부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압수물의 물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⑤ 본조 제2항의 결정이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용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검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제186조 제4항에 정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법원 서기에게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심판하고, 심판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⑥ 제3자도 전항의 항고에 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소송절차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제99-1조 ① 농수산업법 제214-23조에 정한 사법절차 또는 검사절차 중 하나 또는 여러 마리 동물의 압수 또는 환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범죄지 관할 지방법원의 검사나 예심판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심판사가 장소를 지정하여 동물을 보관하거나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항의 결정은 장소를 특정하여야 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② 유치 장소의 조건이 동물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심판사·지방법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수탁판사는 검사의 청구와

9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수의사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유상으로 동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안락사하게 할 수 있다. 본항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결정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 또는 그의 지명을 받은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예심판사의 결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제99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가 관할한다.

④ 동물의 판매대금은 5년간 공탁한다. 압수를 하게 된 예심수사가 불기소 또는 무죄로 종결될 때에는 압수 시 동물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한다. 동물이 제3자에게 위탁된 때에는 소유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에게 동물의 환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보관에 필요한 비용은, 면제신청을 수리한 제2항의 수탁판사 또는 사실심 법원의 반대 취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자가 부담한다. 비용의 면제는 불기소 또는 무죄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제99-2조 ① 예심수사 중 압수한 동산이 보존할 필요가 없고,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또는 최종 소재지에 통지한 후 2개월 동안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서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심판사는 압수 또는 몰수한 동산을 폐기하거나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압수한 동산을 보존할 필요가 없고, 법에 의하여 몰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존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판사는 몰수 및 관리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매매대금은 10년 간 공탁하며,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석방되거나, 무죄 석방되는 경우에는 동산 소유권자의 신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환급한다.

③ 예심판사는 법원이 보관 중인 동산으로서 진실발견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법률에 정한 위험물, 유해물 또는 그 보유가 금지된 물건일 때에는 그 폐기를 명할 수 있다.

- ④ 본조의 결정은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하여야 하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검사·이해관계자,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는 소유자 및 제3자에게 통지한다. 이들은 제99조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99-3조 ① 예심판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서류나 거래내역, 정보통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사법 상 기관 및 단체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필요가 없거나 혹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서류, 특히 파일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제56-1조 내지 제56-3조에 정한 자에 대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전항의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6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60-1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99-4조 ① 위임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60-2조 제1항에 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 예심판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60-2조 제2항에 정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관련 기관과 개인은 요청을 받은 정보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통신 혹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제60-2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된다.

2. 전기통신의 감청

제100조 ① 중죄 및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죄에 관하여는 예심판사가 예심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의 감청·녹음 및 녹취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예심판사의 권한과 감독 하에 시행된다.

② 감청 결정은 서면에 의하고, 이 결정은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불복할 수 없다.

제100-1조 제100조의 결정에는, 감청의 대상이 되는 통신을 특정하는 사항, 감청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감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0-2조 감청기간은 최장 4월로 하며, 형식·조건 및 대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00-3조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통신부의 관할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조직·기관의 자격 있는 직원 또는 인가를 받은 통신 네트워크업자 또는 통신 서비스 공급업자에 속한 자격 있는 직원에게, 감청장비의 설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0-4조 ①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감청과 녹음 등 조치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감청의 개시 및 종료 일자를 명시한다.

② 녹음은 봉인한다.

제100-5조 ①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진실발견에 필요한 통신을 녹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이 녹취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외국어에 의한 통신은 통역인에게 위탁하여 프랑스로 녹취한다.
- ③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변호인과의 통신 내용은 녹취할 수 없고, 그 녹취서는 무효로 한다.
- ④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 제2조에 위반되는 신문기자와 취재원과의 통신 내용은 녹취할 수 없고, 그 녹취서는 무효로 한다.

제100-6조 ①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는 검사 또는 고등 검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폐기된다.

② 폐기절차는 조서에 기재한다.

제100-7조 ①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의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판사가 당해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② 변호사의 사무소 또는 주거에 접속하는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예심판사가 변호사회 회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③ 사법관의 집무실 또는 주거에 접속하는 전화회선에 대하여는 사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사장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니면 감청할 수 없다.

④ 본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 감청은 무효로 한다.

제4절 증인신문

1. 총 칙

제101조 ① 예심판사는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를 집행관 또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소환한다. 소환장의 사본은 소환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9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② 증인은, 통상우편·등기우편 또는 행정 상 수단으로 소환할 수 있고, 증인이 임의 출석할 수도 있다.
- ③ 소환장을 집행하면서 증인에게, 불출석하거나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라 강제로 구인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제102조 ① 예심판사는 서기의 입회하에 개별적으로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당사자 또는 다른 증인과 대질한 상태에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은 조서에 적는다.

② 예심판사는 서기와 다른 증인을 배제하고 성년의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 선서를 하지 않은 통역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선서한다.

③ 증인이 청각장애인일 때에는 예심판사는 직권으로 신문 시 증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화자 또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또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를 지명한다. 이들이 선서를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선서한다. 이들은 증인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인 증인이 읽고 쓸 능력이 있으면, 예심판사는 필기로 증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제103조 증인은 모든 진실을 말할 것과 진실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한다. 판사는 증인의 성명·연령·신분·직업·주소와 증인이 당사자의 혈족 또는 인척인지 여부, 친족이라면 몇 촌간인지, 당사자의 고용인인지 여부를 질문한다. 질문과 답변은 조서에 기재한다.

제105조 범죄사실을 범하였음을 의심하게 할 만한 명백한 증거나 개연성 높은 증거가 있는 자를 증인으로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

제106조 조서는 각 장마다, 판사·서기 및 증인이 서명한다. 증인의 진술을 다 받아 적은 경우에는 증인에게 이를 다시 읽게 하고, 증인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선언한 때에는 이에 서명하게 한다. 증인이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때에는 서기가 읽어 들려주며, 증인이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통역인이 있는 때에는 통역인도 각 장마다 서명한다.

제107조 ① 조서에는 행간에 글자를 적을 수 없다. 삭제하거나 난외에 글자를 적는 경우 예심판사·서기·증인, 통역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통역인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승인이 없으면 삭제 및 난외의 기입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정식 서명이 없는 조서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08조 16세 미만의 아동은 선서 없이 진술하게 한다.

제109조 ① 진술청취를 위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누구든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226-13조 및 제226-1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기자는 그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③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예심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경찰력으로 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제110조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은 신청에 의한다. 신청에 따라 증인은 처분을 명한 사법관에게 직접, 지체 없이 인치된다.

제112조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예심판사는 진술을 듣기 위하여 그 소재 장소에 가거나 또는 제15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사를 위임한다.

100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13조 전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진술한 증인이 소환에 응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예심판사는 그 증인에 대하여 제109조에 규정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2. 출석증인

제113-1조 예심수사청구 또는 추가청구에 의하여 특정된 자는 예심수사피의자가 아닌 한 출석증인으로만 신문할 수 있다.

제113-2조 ① 고소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피해자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모든 자는 출석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예심판사 앞에 소환되어 출석증인으로서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오직 출석증인으로만 신문하여야 한다. 특히 사소 청구인이 지명한 자가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에는 출석증인으로서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증인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범죄행위에 정범 또는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자는 예심판사가 출석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13-3조 ① 출석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제114조 및 제114-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미리 공판기일을 통지받고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변호인은 출석증인이 선임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 협회장이 직권으로 지명한다.

② 출석증인의 첫 신문기일에 예심판사는 그의 권리를 고지한다.

제113-4조 ① 출석증인의 첫 신문기일에 예심판사는 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에게 예심수사 개시 청구 사실, 고소 또는 고발사실을 통지하고 권리를 고지하며, 제116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고지사실은 조서에 기재한다.

② 예심판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출석증인으로 신문할 것이라는 취지를 고지한다. 우편에는 전항에 정한 사항들을 기재하며, 선임된 변호인의 이름을 예심판사의 서기에게 고지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명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를 서기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113-5조 출석증인은 사법통제²⁷⁾하에 두거나 가택 전자감시에 부치거나 구속할 수 없고, 이송명령이나 중죄법원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13-6조 ① 절차 중 아무 때라도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또는 예심판사 앞에서 진술로 출석증인을 예심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증인은 등기우편이 발송된 때로부터 혹은 진술로 요청한 때로부터 예심 피의자로 전환된다.

② 제105조 규정은 출석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제113-7조 출석증인은 선서하지 않는다.

제113-8조 ① 절차진행 중 출석증인을 예심에 회부할 만한 명백하고 개연성 높은 증거가 발견되면 제11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예심을 개시하며 제114조에 정한 방식으로 신문한다.

② 예심판사는 특정한 혐의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종 조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예심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예심의 예상 소요기간 등을 제116조 제7항 및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고지함으로써 예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등기우편은 제175조에 따른 예심종료의 고지와 동시에 발송할 수

27) contrôle judiciaire. 제137조 이하 참조

있다. 그 등기우편에는 20일 이내에 특정 조치의 청구 또는 예심종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④ 본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예심판사 앞에서의 새로운 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예심판사의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제 5 절 피의자 신문 및 대질

제114조 ① 당사자는 변호인이 입회하거나 정식으로 절차를 개시한 후가 아니면 진술청취·신문 또는 대질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인은 늦어도 피의자신문 및 진술청취의 5일 전까지, 배달증명부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구두로 소환된다.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고,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난외에 수령 취지를 서명한다.

③ 소송기록은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사소청구인에 대한 각 신문일로부터 늦어도 4일 전까지 변호인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소송기록은 예심수사 피의자의 최초 출석 또는 사소청구인의 제1회 신문 후에도, 근무시간 중에는 변호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심수사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호인은 예심수사피의자의 최초 출석 또는 사소청구인의 제1회 신문 후에,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기록 중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서 사본은 파일 형태로 교부될 수 있고, 제803-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기통신을 통하여 교부될 수 있다. 사본의 교부는 신청 후 1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변호인은 전항에 따라 입수한 사본을 복사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의뢰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다음 항 및 제114-1조의 규정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를 확인한다.

- ⑥ 감정서 사본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 ⑦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교부하려고 하는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서기에게 신고하거나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예심판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⑧ 예심판사는 청구를 수리하고 5일 이내에 피해자·예심수사피의자·변호인·증인·수사관·감정인, 기타 소송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지할 수 있다.
- ⑨ 전항의 결정은 적당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고지된다. 제7항의 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예심판사로부터의 응답이 없는 경우, 변호인은 신고한 목록에 기재된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결정의 고지로부터 2일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장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⑩ 변호인이 구급된 의뢰인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의 절차와 당해 의뢰인이 그 사본을 소지하는 조건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⑪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소 청구인의 변호인은 예심판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예심판사의 허가는 적당한 방법으로 변호인에게 고지되며, 예심판사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또는 5일 이내에 예심판사로부터의 응답이 없는 경우, 변호인은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은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104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14-1조 제114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규정에 따라 예심 수사절차의 증거물 또는 증거서류의 사본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사본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 ① 당사자는 예심수사 중 언제든지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의 성명을 예심판사에게 고지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들 중 소환 및 통지를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환 및 통지는 최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한다.

② 최초로 선임된 변호인이든 혹은 신문이나 진술청취 중에 선임된 변호인이든 전항에 정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예심판사 서기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 내용은 서기가 일자와 취지를 확인하고 신고한 자도 이에 서명한다. 신고한 자가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며, 관할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피의자가 구금된 경우 전항의 고지는 교도소장에게도 할 수 있다. 고지 내용은 교도소장이 일자를 확정하여 확인하며, 구금된 피의자가 이에 서명한다. 피의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며, 고지 내용은 원본·사본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기가 이를 수령한 때 고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피의자가 구금된 경우에 피의자는 변호인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인은 제2항과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선임사실을 고지한다. 변호인은 수취한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 원본 또는 사본을 서기에게 송부하고 서기는 이를 서류에 철한다. 구금된 피의자는 15일 이내에 본조 제2항과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선임사실을 고지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116조 ① 예심판사가 출석증인으로 신문한 바 없는 자에 대하여 예심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출석을 진행한다.

② 예심판사는 그 인적사항의 상위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대상이 된 범죄 사실과 그 법적인 평가 등을 명시하여 고지한다. 고지한 범죄사실과 죄명은 조서에 기재한다.

③ 제80-2조의 규정에 정한 조치가 시행되고 변호인이 입회한 경우 예심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실시한다. 출석한 변호인은 예심판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전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직권에 의한 변호인의 지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변호인에게, 직권에 의한 지명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 회장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고지하며, 선임된 변호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가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예심수사피의자는 최초 출석 절차에서 그를 돕기 위한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즉시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예심수사피의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묵비권과 신청권, 진술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고지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피의자의 동의는 변호인 입회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무효로 하며, 예심수사피의자의 변호인은 예심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의 요청이 있거나 예심수사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한다.

- 예심수사 개시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 :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출석증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예심수사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 예심판사는 이미 고지한 범죄사실 또는 죄명과 다를 경우 그 범죄사실과 죄명을 고지한다. 예심수사 진행 중

늦어도 제175조 제5항에 규정된 고지가 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예심수사 피의자에 대하여, 제81조, 제82-1조, 제82-2조, 제156조 및 제173조에 기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예심수사의 종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제17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예심판사가 예상한 수사기간이, 경죄의 경우 1년 미만, 중죄의 경우 18개월 미만인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이 기간을 통지하고, 위 기간이 종결되면 제175-1조에 의하여 절차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심판사는 동조에 따라 경죄의 경우 1년, 중죄의 경우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절차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예심수사피의자에게 고지한다.

⑦ 예심수사피의자는 최초 출석 시에 예심판사에게 자기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를 수령할 제3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3자의 주소로 자기의 주소에 갈음할 수 있다. 신고된 주소는 예심수사가 프랑스 본토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프랑스 본토의 도내에, 예심수사가 해외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때에는 해외의 도내에 있어야 한다. 예심판사의 수탁을 받은 석방구금판사가 피의자를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석방구금판사에게 주소를 신고한다.

⑧ 신고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예심수사 종결 전에 직접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소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한다. 또, 최종 신고 주소로 발송된 통지 또는 송달은 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로 본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이와 같이 고지되었다는 점과 신고된 주소는 조서에 기재한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석방구금판사가 이를 고지한다.

제116-1조 ① 중죄에 대하여 예심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과 최초 출석 시의 진술청취, 대질신문 등은 그 내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상녹화물은 예심 또는 정식재판에서 검사 또는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재생할 수 있다. 제114조 제4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본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중 일방이 영상녹화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하여 예심판사는 제8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③ 누구든 본조에 정한 영상녹화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소가 소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1월 안에 영상녹화물을 폐기한다.

⑤ 동일 절차에서 또는 다른 절차에서 동시에 영상녹화하여야 할 자가 많아서 영상녹화가 곤란할 경우에 예심판사는 수사 상 필요에 따라 어느 것을 영상 녹화에 부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⑥ 기술적인 이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할 경우 예심판사는 신문조서에 그 취지 및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기재한다.

⑦ 형법 제4권 제1편 및 제2편, 본법 제706-73조에 정한 범죄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예심판사가 영상녹화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117조 ① 증인이 빈사상태에 있거나 범죄의 증거나 흔적이 소멸 직전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제72조에 정한 경우에는, 예심판사는 제1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곳에서 신문 및 대질을 할 수 있다.

② 조서에는 급속을 요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 ①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부과된 범죄사실이 경죄가 아니라 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중죄수사가 개시됨을 선언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18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08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경죄를 이유로 한 구금영장은 그대로 유효하고 중죄영장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라 중죄에 대한 구속조건을 적용하되, 갇힌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초로 경죄영장이 발부된 때를 기점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정한 선언을 하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제11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라 예상되는 수사기간을 피의자에게 고지한다.
- ④ 본조에 정한 선언이 있는 경우 사건을 예심전담부가 없는 곳의 예심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예심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예심전담부 소속 예심판사를 새로 지명한다.

제119조 ① 검사는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문 및 대질과 사소청구인의 변론에 입회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예심판사에게 입회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예심판사의 서기는 늦어도 신문의 2일 전까지 통상 고지의 방법으로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 예심판사는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 및 진술청취를 주관한다. 검사와 당사자의 변호인은 질문을 하거나 간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발언순서를 정하고,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예심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심수사피의자의 명예를 해하는 질문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 중단사실은 조서에 기재한다.
- ④ 검사나 당사자의 변호인이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예심판사는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120-1조 피의자 또는 출석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들은 제82-1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따로 피의자 또는 출석증인과

대질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제82-1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며, 공동대질을 원한다는 이유로 단독대질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1조 ① 신문 및 대질조서는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② 통역인을 사용한 때에는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심수사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예심판사는 예심수사에 있어 그를 돕기 위하여 수화통역인 또는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방법에 능한 자를 직권으로 통역인으로 지명한다. 이들이 선서를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선서한다. 이들은 예심수사피의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인 예심수사피의자가 읽고 쓸 능력이 있으면, 예심판사는 필기로 예심수사피의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제 6 절 영장 및 그 집행

제122조 ①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소환장²⁸⁾, 구인영장²⁹⁾, 체포영장³⁰⁾을 발부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³¹⁾는 구금영장³²⁾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수색영장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유가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자에 대하여 발부하고, 출석증인·피의자 또는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발부하지 않는다. 수색영장은 경찰력으로 영장에 기재된 자를 수색하여 보호유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8) mandat de comparution

29) mandat d'amener

30) mandat d'arrêt

31) juge des liberté et de la détention. 피의자의 구속, 구속연장 등을 전담하는 고위직 법관으로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0년 6월 15일 법률 개정으로 신설됨. 제137조 이하 참조

32) mandat de dépôt

11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③ 소환장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명백하거나 개연성 높은 증거가 있는 자, 출석증인 또는 예심수사피의자를 체포하여 출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소환장은 영장에 기재된 자를 영장에 지정한 일시에 판사 앞에 데려올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구인영장은 예심판사가 경찰력에 대하여 부여한 명령으로서 영장에 기재된 자를 즉시 예심판사에게 인치할 것을 명한다.
- ⑥ 체포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자를 경찰력으로 체포하여 임시로 유치하였다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
- ⑦ 예심판사는 제116조에 따라 피의자신문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장·구인영장·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를 출석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들을 보호유치할 수 없다.
- ⑧ 구금영장은 예심수사피의자로서 구속에 처할 자에 대하여 발부되며, 구치소의 장에 대하여 부여한 명령으로서, 명령이 발부된 예심수사피의자를 인수하여 이를 구금할 것을 명한다. 구금영장에 미리 명시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수색과 이송 집행을 할 수 있다.

제123조 ① 모든 영장에는 대상자를 특정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영장에는 이를 발부한 사법관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 ② 구인영장·구금영장 및 체포영장에는, 전항 외에 범죄사실 및 죄명과 적용 법조를 기재한다.
- ③ 소환장은, 그 대상인 자에게 집행관이 송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리 혹은 경찰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자에게 통지하고 사본을 교부한다.
- ④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직원이 이를 통지하여 집행한다. 영장은 이를 영장에 기재된 자에게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 ⑤ 다른 이유로 이미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한 통지는 전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구치소의 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한다.
- ⑥ 구인영장 및 체포영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발부할 수 있다.
- ⑦ 전항의 경우에는, 원본의 중요한 기재사항, 특히, 대상자를 특정하는 사항과 범죄사실 및 죄명, 영장을 발부한 사법관의 성명 및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의 확보 임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4조 영장은 공화국 영토 전역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5조 ① 예심판사는 소환장에 기재된 자가 출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신문한다.

- ② 예심판사는 동일한 요건 하에서, 구인영장으로 체포한 자의 신문을 행한다. 신문을 즉시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를 헌병대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24시간 동안 유치할 수 있다. 그 안에 예심판사 앞에, 예심판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판사 앞에 출석시켜 신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한다.

제126조 ① 구인영장으로 체포한 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유치장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억류한 때에는 이를 불법감금으로 본다.

- ② 전항의 불법감금을 명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를 간과한 사법관 또는 공무원은 형법 제432-4조 내지 제43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27조 구인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의 신병을 영장을 발부한 예심판사의 소재지로부터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확보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112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영장을 발부한 예심판사의 동의를 얻어 유치하거나, 체포지의 검사에게 인치한다.

제128조 ① 검사는 인치된 자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그 자가 이송에 동의하는지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심판사의 결정이 있기까지 구인영장의 효력을 연장하여 현재지에서 기다릴 것을 희망하는지를 묻는다. 이송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그를 인치하고, 즉시 담당 예심판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그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 등을 기재한 출석조서의 원본 또는 사본은 지체 없이 담당 예심판사에게 송부한다.

② 전항의 조서에는, 그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129조 고지를 받은 예심판사는, 전조의 서류를 수리한 후 즉시 이송을 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30조 ①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이송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영장의 고지로부터 4일 이내에 영장을 발부한 예심판사에게 인치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송이 해외도로부터 다른 도를 향하여, 또는 프랑스 본토에서 해외도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6일 이내로 한다.

제130-1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한 예심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자를 석방한다. 다만, 인치의 지연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그 자가 도주한 때 또는 공화국의 영토 외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범죄사실이 징역형이 규정된 경죄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할 경우에 한하여 예심판사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제133조** ① 피체포자는 수감 후 24시간 이내에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나 그가 지정한 판사 앞에 소환된다. 예심판사 등은 피체포자를 신문할지 아니면 제145조에 따라 구금할지를 결정한다. 전문의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피체포자를 석방하며, 제126조의 규정은 본항에 적용된다.
- ② 영장을 발부한 예심판사의 소재지로부터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자는 즉시 체포지의 검사에게 인치한다. 검사는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진술을 청취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는 조서에 기재한다.
- ③ 검사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사법관에게 통지하고 이송한다. 즉시 이송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 ④ 이송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30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영장에 지정된 유치장에 인치한다. 제130-1조의 규정은 본항에 준용한다.

제133-1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사법관 앞에 인치되기 전에 경찰서 또는 헌병대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한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신병확보 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체포된 자는 제6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친지 등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제63-3조에 따라 의사 등의 진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제134조** ①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임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시 이전 및 21시 이후에는 시민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전항의 공무원은 영장에 기재된 자를 체포함에 적합한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찰력은 영장을 집행하여야 할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를 청구하며,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영장에 기재된 자를 체포할 수 없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한 사법관에게 수색조서 및 체포불능조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체포를 면탈한 자는 제176조에 정한 예심수사피의자로 본다.

114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35조 ① 중죄와 경죄의 경우에는 제145조에 정한 명령을 집행하는 때가 아니면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② 구금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영장에 기재된 자를 구치소의 장에게 인치한다. 구치소의 장은 대상자에 대한 인수증을 교부한다.

제135-1조 수색영장으로 발견된 자는 발견지의 사법경찰관이 제154조에 따라 보호유치한다. 보호유치 사실은 즉시 담당 예심판사에게 통지하며, 이미 그 자에 대한 수사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 예심판사는 발견지의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하여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고, 기타 수사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보호유치 기간 동안 피유치자를 관할권 있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제135-2조 ① 예심수사 종료 후에 체포영장에 정한 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피체포자를 수감한 경찰 또는 헌병대원은 검사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감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감에 관하여는 제63-2조 및 제6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피체포자는 수감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법원 소속 검사 앞에 소환된다. 검사는 피체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피체포자를 석방구금판사 앞에 인치한다.

④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145조 제4항 내지 제9항에 정한 변론을 실시한 다음에 제144조에 정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피체포자를 사법통제 하에 둘지 아니면 정식재판까지 구금할지를 결정한다. 구금을 할 경우 제179조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기간과 제181조 제8항 및 제9항에 정한 기간은 구금명령 시부터 진행한다.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선고 후 10일 안에 대상범죄가 경죄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항소부에, 중죄인 경우에는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⑤ 정식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고, 24시간 내에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앞에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체포지 검사 앞에 소환하고, 체포지 검사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피체포자를 신문한다. 또, 피체포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유치장에 인치한 후 정식재판이 열리는 곳의 검사에게 통지하고, 관할지의 검사가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영장을 제시한 때로부터 4일 이내에 피체포자를 이송하여야 하며, 프랑스 내에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프랑스 내 도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본항에 적용된다.

⑥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석방구금판사 앞에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법원 판사 앞에 소환한다.

⑦ 본조의 규정은 예심종결 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예심수사 중에 혹은 예심종결 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체포대상자가 경죄의 경우에는 변론판결이나 무변론판결에 따라 구금되었거나 중죄의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미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의 판결 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이와 같다. 이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 앞에 소환할 필요 없이, 이의신청 기간 중일 경우에는 구금하여 두고,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담당 판사 앞으로 소환한다. 단, 이로 인하여 피체포자가 법률에 따라 석방 신청을 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135-3조 체포영장 또는 수색영장은 검사, 예심판사의 청구에 따라 대상자의 기록철에 편철한다. 대상자가 기판력에 따라 판결법원 판사 앞에 인치되면, 기록담당자는 영장 발부 기록을 확인하여 제135-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6조 ① 소환장·구인영장·구금영장 및 체포영장에 관하여 규정된 방식에 위반한 때에는,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 또는 검사를 징계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이보다 더 중한 형을 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6조·제57조·제59조·제96조·제97조·제138조 및 제139조에 정한 개인의 자유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위반한 모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전2항에 규정된 경우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권한쟁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법법원이 항상 전속관할권을 갖는다.
- ④ 형법 제432-4조 내지 제432-6조 및 제432-8조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 또는 주거의 불가침성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것인지 혹은 그 행위자 개인에 대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절 사법통제 및 구속³³⁾

제137조 ① 무죄로 추정되는 예심수사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 둔다.

- ② 예심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보안조치를 목적으로 예심수사피의자를 사법통제에 둘 수 있고, 그것으로 목적 달성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자감시에 부쳐 가택구금한다.
- ③ 전자감시를 부친 가택구금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제137-1조 ① 석방구금판사는 구속과 그 연장을 명령한다. 석방 청구도 석방구금판사의 관할로 한다.

- ② 석방구금판사는 법원장·수석부법원장·부법원장의 지위를 갖는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석방구금판사가 변론에 임할 때에는 서기가 입회한다. 석방구금판사가 없고, 그를 지명한 법원장·수석부법원장 등도 없는 경우에는

33) détention provisoire. 가구금 또는 잠정구금이라고도 함.

가장 직급이 높은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석방구금판사를 지명한다. 이 경우 제93조의 규정이 준용한다.

③ 석방구금판사는 자신이 관여한 형사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절차는 무효가 된다.

④ 제137-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판사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소송서류와 검사의 청구서를 첨부하여 석방구금판사에게 사건을 회부한다. 석방구금판사가 제145조에 따라 재판할 경우 제145조 제6항에 정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7-1-1조 ① 사법관의 연차휴가 등으로 인한 당직 또는 초과근무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원장·수석부법원장 또는 부법원장급 판사 중에서 석방구금판사를 겸하고 있는 자는 같은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 지방법원 석방구금판사 직을 겸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법원장들이 상호 조율하여 청구한 것을 기초로 수석지방법원장이 결정한다. 결정문에는 그와 같이 결정한 이유, 기간, 관련 법원들을 명기하고, 2개 이상 법원의 석방구금판사 직을 겸직하는 기간은 회계연도 1년당 40일을 넘을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석·궐석 등 사유로 같은 지방법원 내에 석방구금판사 직을 맡을 사법관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지명방식, 기간 등은 전항의 규정을 따르되, 그 총 기간은 연속하여 40일을 넘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친 기간을 합해서도 4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37-2조 ① 사법통제는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② 석방구금판사가 사법통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방구금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제137-3조 ① 석방구금판사가 구속을 명하거나, 이를 연장하거나 또는 석방

11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제143-1조 및 제144조를 참고해서 구속이 합당한 이유와 사법통제로는 부족한 이유에 대해 법적인 측면 및 사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후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이 경우 소송서류 전체의 사본을 수령한 예심수사피의자에게 명령을 고지한다.

제137-4조 ① 검사의 구속청구에 대해 예심판사가 구속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석방구금판사에게 넘기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죄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죄에 있어서 검사가 제144조 제4호 내지 제7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여 구속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석방구금판사 앞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 경우 예심판사가 사법통제에 부쳤을 때에는 그 사법통제는 무효로 한다. 검사가 석방구금판사 앞에 데려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취지를 예심판사에게 고지하고, 피의자는 석방된다.

1. 사법통제

제138조 ①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가 경죄에 관한 징역형 또는 그보다 중한 형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법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가 사법통제를 결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에 열거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1.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정하는 지역 밖으로 나가지 아니할 것
2.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정한 조건을 준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소나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지정하는 거소에 머물 것

3. 일정한 장소에 가지 아니할 것 또는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정한 장소 외에 가지 말 것
4.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이동할 때에는, 전부 이를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에게 신고할 것
5.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지정하는 시설, 권한 있는 단체 또는 관청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것. 이들 시설 또는 관청은 예심수사피의자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예심판사가 지정하는 모든 관청 또는 단체, 자격 있는 자의 소환에 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훈련 또는 교육기관에의 출석,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의 참가에 관하여 감독을 받을 것
7. 법원사무국·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신원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것, 특히, 신원증명의 일환으로 여권을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을 것
8. 모든 차량 또는 일정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할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증을 법원사무국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을 것. 보관증과 바꾸어 운전면허증을 법원 사무국에 제출할 것. 다만,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가 그 직업 활동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9.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와 교제하거나 만나는 것을 중지할 것과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그 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중지할 것
10. 진료·치료 또는 간호를 수인할 것. 특히 해독을 위한 입원조치에 따를 것
11. 예심판사가 특히 예심수사피의자의 자산상태와 책임을 고려하여 총액·지급기간·횟수를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할 것
12. 범죄가 특정 직업 또는 사회활동을 행하는 때 또는 그 기회에 범하여진 것이고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로 당선되거나 조합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그 활동이 변호사 활동인 경우, 예심판사의 청구를 받은 변호사협회 내 위원회가, 특정사법직 및 법률 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71-1130호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12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요건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이 조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고,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13. 오로지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인에 대하여 원본의 인출을 허용하는 수표 또는 보증된 수표를 제외하고는 수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이 금지된 수표대장을 법원사무국에 제출할 것
 14. 무기를 소지 또는 휴대하지 않을 것과 필요한 경우, 소지한 무기를 법원 사무국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을 것
 15. 예심판사·석방구금판사가 정하는 기간 및 금액에 대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설정할 것
 16. 부양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부양비의 지급의무 혹은 혼인비용의 분담에 관한 재판, 사법 상 계약에 기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부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17.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거주지 혹은 주소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 및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호에 정한 조치는 가족법 상 계약에 따라 관계를 맺은 바 있는 전 배우자·전 동거인·전 내연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 본조의 적용방식, 특히 사법통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138-1조 ① 제139조 제9호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만나는 것을 중지할 것과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사소 청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명령을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지도 고지한다.

제139조 ① 예심수사피의자는 예심판사의 결정에 따라 사법통제에 부친다. 이 결정은 예심수사 기간 중 언제든지 발효될 수 있다.

② 예심판사는 언제든지 사법통제에 부친 자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사법통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1개 또는 수개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들 의무의 준수를 임시로 면제할 수 있다.

제140조 ① 예심판사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대상자의 청구와 그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듣고, 사법통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예심판사는 대상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예심판사가 전항의 기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상자는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고등검사장의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한다. 이 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사법통제는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상자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1조 제139조 및 제140조에 의하여 예심판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모든 경우에 제148-1조의 구별에 따라 관할권을 갖게 된 법원에 속한다.

제141-2조 ① 예심수사피의자가 사법통제 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예심판사는 그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또한 제137-1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무슨 형이 부과될 것이냐에 상관없이 석방구금판사는 그 자에 대하여 구속을 위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제141-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② 사법통제를 받는 중에 재판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는 제272-1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석방구금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금영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제13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제141-4조는 본항에 적용되며, 예심판사의 권한은 검사가 행사한다.

제141-3조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던 자에게 내려진 사법통제가 취소되고 다시 구속이 내려진 경우, 구속의 누적기간은 제145-1조 및 제145-2조에 각각 규정된 최장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처단형이 제143-1조에 규정된 기간 미만일 경우에도, 총 구속기간은 4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1-4조 ① 경찰 또는 헌병대원은 직권 또는 예심판사의 지시에 따라 제138조 제9호 및 제17호에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심수사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예심수사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하여 최대 24시간까지 유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 즉시 사법경찰관은 예심판사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③ 체포된 즉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그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준수사항의 내용과 제63-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2조 내지 제63-3조, 제63-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63-2조 및 제63-3조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예심판사가 행사한다.

⑤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본조에 정한 절차에 준용된다.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체포된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경찰 또는 헌병대원은 신체수색을 할 수 없다.

⑥ 본조에 정한 조치가 종료된 시점에 예심판사는 사법통제의 취소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예심수사피의자를 소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석방 및 구금 판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⑦ 예심판사는 또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를 통해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소환일자를 고지할 수 있다.

제142조 ① 구속되어 있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보증금 및 담보는 다음 사항을 담보한다.

1. 모든 소송절차 및 판결의 집행과정에서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과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부과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출석

2. 다음 순서에 따른 변제

a)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및 원상회복과 예심수사피의자가 부양비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소추된 때에는, 그 부양비의 지급

b) 벌금

②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가 보증금 또는 담보의 두 부분에 각각 충당할 금액을 정한다.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전항 제2호에 정한 금액 전부를 담보하도록 정하든지 아니면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담보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혹은 사소청구인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배상금액으로 획정된 경우, 그 금액은 국참사원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관리인 또는 국고청이 관리한다.

제142-1조 ①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중 피해자 또는 부양 청구권자의 권리의 담보에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권리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집행력 있는 결정으로 피해자 또는 청구권자에

12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예심수사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전항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142-2조 ① 출석에 대한 보증금과 담보는, 예심수사피의자·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모든 소송절차에 출석하고, 사법통제 상의 의무를 준수하며, 판결집행에 복종한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② 불출석·의무위반·불복종의 경우에는, 책임면제 사유가 있거나 불기소 결정·무죄선고·형 면제 결정이 내려진 때가 아니면 출석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담보로 제출된 채권은 실행된다.

제142-3조 ① 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또는 변제에 충당될 금액 중 범죄피해자 또는 부양청구권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은, 예심수사 불기소 결정 또는 제372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 면제 또는 무죄판결에 기하여 이를 환부한다.

②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에 충당한다. 잔여부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이를 환부한다.

③ 담보는 전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실행되거나 채권회수절차를 밟는다.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142-4조 판결법원이 본장에 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제148-2조에 따른다.

2.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제142-5조 ① 예심수사피의자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가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을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예심수사피의자는 특별한 사유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거주지 혹은 예심판사나 석방구금판사가 정한 주거에 머물러야 한다.
- ③ 전2항에 정한 가택구금에는 제723-8조에 정한 전자감시가 적용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7년 이상의 징역과 보호관찰에 처할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763-12조에 정한 이동식 전자감시의 대상이 된다. 제723-9조 및 제723-12조가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 제763-12조 및 제763-13조가 적용되며, 예심판사가 형벌적용판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제142-6조 ① 제145조에 정한 구두변론을 거쳐 예심판사 혹은 석방구금판사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석결정과 동시에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명령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구두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142-7조 가택구금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142-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6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가택구금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2-8조 ① 제139조 제2항 및 제140조, 제141-3조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에 준용된다.

- ②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제14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체포·구인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제142-9조 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관찰소장 등은 통제조치의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구금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예심판사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6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42-10조 불기소·형 면제·무죄 석방 등으로 인하여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에서 벗어나게 된 피의자는 제149조 내지 제1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2-11조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기간은 제716-4조에 정한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구속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42-12조 ① 예심법원과 판결법원은 제135-2조, 제145조, 제148조, 제201조, 제221-3조, 제272-1조, 제397-3조, 제695-34조 및 제696-1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에 갈음하여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은 가택구금 명령의 철회·유지·변경·취소에 관해서는 사법통제에 적용되는 제148-2조, 제148-6조, 제213조, 제272-1조, 제695-35조, 제695-36조, 제696-20조 및 제696-21조에 따른다.

제142-12-1조 ① 제14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심수사피의자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로 수사를 받고 1.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2.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이동식 전자감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과거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기타 내연관계에 있던 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42-13조 본장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3. 구 속

제143-1조 ① 제137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결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1. 예심수사피의자가 중죄형에 해당할 때
2. 예심수사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경죄형에 해당할 때
- ② 예심수사피의자가 고의로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제14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구속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제144조 구속은 다음 각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으로 다음 각호에 정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결정 또는 연장된다.

1.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증거 또는 물증의 보전
2. 증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협의 방지
3. 예심수사피의자와 공범 또는 공모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방지
4. 예심수사피의자의 보호
5. 형벌 집행을 위한 예심수사피의자의 신병 확보
6. 범죄의 종료 또는 재발 방지
7. 범죄의 중대성, 범행상황 또는 피해 규모 때문에 공공질서에 대하여 초래된 특별하고 지속적인 혼란의 방지. 이와 같은 혼란이 범죄로 인하여 직접초래되어야 하며, 본항의 규정은 경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4-1조 ① 구속은 예심수사피의자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중대성 및 진실 발견에 필요한 수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된다.

- ②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제144조 및 본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14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된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144-2조 제143-1조, 제144조, 제144-1조, 제145-2조, 제145-3조 또는 제706-24-3조에 따라 석방 결정이 내려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8조 제9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예심수사 피의자에게 사법통제를 가하거나 피해자와의 만남·서신교환 등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8-1조가 준용된다.

제145조 ① 예심판사로부터 예심수사피의자의 구속을 청구 받은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를 출석시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입회하에 본조에 정한 절차를 진행한다.

② 서류심사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결과 구속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취지를 예심수사피의자에게 고지한다.

③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통제 하에 둘 것을 명하는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주소 신고에 관한 제116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결정을 내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구두변론을 통하여 결정을 다룰 수 있다는 점과 구두변론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예심수사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 본인이 선임하였거나 직권으로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직권선임의 경우에는 변호사회 회장에게, 사선의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에게 선임사실을 고지하고, 사선변호인이 조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 본항에 규정된 고지를 하였다는 취지는 조서에 기재한다.

⑥ 석방구금판사는 구두변론절차에서, 제82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을 듣고 예심수사피의자,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성인인 경우 구두변론절차를 공개하며,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은 절차의 공개가 예심수사에 불가결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석방구금

판사는 판사실에서 검사, 예심수사피의자 및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변론의 공개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실에서 구속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

⑦ 다만,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방어를 위한 준비기간을 요구한 때에는, 석방구금판사는 즉시 구속을 명할 수 없다.

⑧ 전항의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전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유를 붙이고,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으로, 예심수사피의자의 수감을 명할 수 있다. 이 수감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석방구금판사는 이 수감기간 중 예심수사피의자를 다시 출석시킨 후, 변호인의 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제6항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석방구금판사가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예심수사피의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⑨ 예심판사가 예심수사피의자의 신상과 피의사실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그 심사기간 중에 예심수사피의자를 사법통제에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속에 관한 변론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직권으로 최대 4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금 결정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구두변론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는 석방된다. 본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87-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룰 수 있다.

⑩ 전항의 경우에 임시 구금기간은 제145-1조 및 제145-2조에 정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나, 제149조 및 형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45-1조 ① 경죄사건에 대하여, 예심수사피의자가 지금까지 보통법상의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중죄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여지지 아니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의 선고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예심수사 대상이 되는 죄의 법정형이 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아닌 경우에는, 구속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석방구금판사는 제13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제145조 제6항에 정한 구두변론절차를 거친 후에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구속연장 결정은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변호인을 소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145-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합산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절차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범한 범죄나 마약거래·테러·조직범죄·조직매춘·탈세 또는 범죄단체조직죄,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고 예심수사피의자의 석방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본조에 정한 최장 2년의 기간을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제137-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144조, 제144-1조, 제145-3조, 제194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6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심판한다. 예심수사피의자는 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45-2조 ① 중죄사건에서는 예심수사피의자를 1년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다만, 석방구금판사는 제145-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기간 만료시에 제145조 제6항에 정한 구두변론을 거쳐 제137-3조의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제114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변호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구속연장 결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② 예심수사피의자는 법정형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2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 범죄사실 중 일부가 국외에서 범해진 경우 이 기간은 각각 3년, 4년이 되며, 예심수사피의자가 형법 제2권 및 제4권에 정한 범죄 또는 마약거래·테러·조직매춘·탈세·조직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4년이 된다.

- ③ 예외적으로, 예심판사의 수사가 필요하고 예심수사피의자의 석방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본조에 정한 기간을 4월 연장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제137-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144조, 제144-1조, 제145-3조, 제194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6조 및 제207조에 따라 심판한다. 예심수사피의자는 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본 결정은 동일한 요건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1회 갱신할 수 있다.
- ④ 본조의 규정은 예심수사종결 결정시까지 적용된다.

제145-3조 ① 구속기간이 중죄사건에서 1년, 경죄사건에서 8월을 초과하는 경우, 구속기간의 연장 결정을 하거나 석방 요구의 기각 결정을 할 때에는, 예심수사의 속행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 및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예상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예심판사가 진행하려고 하는 수사의 성격을 특정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연장결정에서 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

제145-4조 ① 예심수사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예심판사는 10일 동안 접견금지를 명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접견금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 기간은 10일로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예심수사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없다.

②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장소에서 방문자와 면회할 수 있다.

③ 예심판사는 구속개시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심수사피의자 가족의 면회 허가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단, 예심수사 상 필요성 등을 적시하여 문서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면회불허가 결정은 적당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132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결정한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할 수 없고,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예심판사의 면허 불허가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면회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145-4-1조** ①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는 수사 상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예심수사피의자와 다른 구금자를 분리수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구금영장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속 갱신 결정을 할 경우에도 본항에 정한 명령을 갱신할 수 있다. 예심판사가 분리 결정을 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② 분리수감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상 필요한 조치를 제외하고 2009년 11월 24일 법률 제2009-1436호 제22조에 정한 수감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제145-5조** ① 석방구금판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대상자에 대하여 예심판사가 예비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제81조 제9항에 정한 사람 또는 기관 중 하나가 미성년자의 건강·안전 및 인격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상자를 구속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중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경죄 또는 사법통제 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46조** ① 예심수사 과정에서 중죄법원에 회부될 사건임이 판명된 경우, 예심판사는 검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달하여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석방구금판사에게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구금 상태의

유지 또는 사법통제부 석방의 금지 혹은 사법통제 없는 석방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석방구금판사는 예심판사의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147조 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예심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사법통제부 석방 혹은 사법통제 없는 석방을 명하되, 예심수사피의자가 모든 소송절차에 성실히 출석할 것과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예심담당관에게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검사도 또한 언제든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심판사가 석방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판사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기록을 석방구금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석방구금판사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148조 ①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속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전조 제1항에 정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언제든지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석방 청구는 예심판사에게 하고, 예심판사는 즉시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송달하여 석방 청구 절차를 경로하게 한다.

③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판사는 검사에게 송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석방구금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석방구금판사는 3일 이내에, 제144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결정의 근거가 된 권리의무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문의 기간은 석방 청구에 대하여 또는 석방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 청구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결정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수 개의 석방 청구가 중복된 때에는 석방구금판사는 전술한 기간 내에 중복청구를 통합하여 결정한다.

④ 석방을 명할 때에는, 사법통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석방구금판사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34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예심수사피의자는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에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등법원 예심부는 고등검사장의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한 청구에 기하여 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 재판한다.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기간은 전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사도 동일한 요건 하에서 고등법원 예심부에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8-1조 ① 예심수사피의자, 중죄 또는 경죄의 피고인은 소송절차 중 언제든지 사유의 제한 없이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사건이 판결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판결법원이 보석에 관해 결정한다. 중죄법원에 회부되기 전이나 중죄법원의 회기 사이에는 예심부가 결정한다.

③ 상고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석방 청구에 대해서는 최후로 사건의 본안의 심리를 한 법원이 이를 재판한다. 상고가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인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구속에 대하여 결정한다.

④ 관할위반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건이 어떠한 법원에도 계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석방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48-1-1조 ① 검사의 의견과 달리 구속된 자에 대하여 석방구금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석방 결정이 있을 경우, 그 석방명령은 즉시 이를 검사에게 통지한다. 검사에게 위 결정통지가 있는 때로부터 4시간 동안은, 본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수사피의자는 석방되지 아니하며, 석방 집행을 위하여 구치소장에게 결정을 통지할 수 없다.

② 검사는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석방구금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서기에게 접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제187-3조에 따라 고등법원장에게 구속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 및 구속가처분의 취지는 명령문에 적시된다. 석방구금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석방 명령문을 송달함과 동시에 항고 또는 구속가처분이 청구되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고등법원장 또는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석방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또 예심수사피의자 혹은 변호인에 대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서면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검사가 석방명령 통지를 받은 후 4시간 내에 구속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서기는 그 신청이 없었다는 취지를 명기하여 구치소의 장 및 예심수사피의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예심수사피의자가 다른 사유로 구속되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속을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검사가 예심수사피의자의 석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185조에 정한 시간 내에 항고를 제기할 권리와는 별도로, 석방명령서를 석방구금판사에게 반송하고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반대가 없었다는 취지를 명령서에 기록한다. 이때 예심수사피의자는 다른 사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석방된다.

제148-2조 ① 제141-1조 및 제148-1조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사법통제의 전부 혹은 일부의 해제청구 또는 석방 청구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재판한다. 이 경우,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의견청취 48시간 전까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소환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최근 4개월 안에 출석한 적이 있다면, 재판장은 석방청구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출석 없이 심판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예심수사피의자가 아직 제1심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경우, 관할법원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제1심의 경우는 10일 이내에, 제2심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재판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제1심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판한다. 예심수사피의자가 제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재판한다.

③ 다만, 신청 접수일에 석방 또는 사법통제 해제의 선결적 청구가 있거나,

136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석방 청구 및 사법통제해제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전항의 기간은 관할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경우 사법통제는 해제되고, 당해 예심수사피의자가 다른 이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직권으로 석방된다.

④ 제1심 법원에 의한 결정은, 불복신청의 유무에 불구하고, 즉시 집행력을 갖는다. 피고인이 구금중인 경우, 제2심 법원은 불복신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판한다. 그 재판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다른 사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은 한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148-3조 ① 예심수사피의자는 석방에 앞서, 예심판사 또는 구치소의 장에 대하여, 제116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심수사피의자는 예심수사종결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신고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재신고의 방식으로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예심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 받는다. 예심수사피의자는 또, 최종 신고 주소에 대한 송달은 본인에 대한 송달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지 받는다.

③ 전항의 고지가 있었다는 취지는 신고 주소와 함께 조서 또는 구치소의 장이 예심판사에게 지체 없이 발송한 서면의 원본과 사본에 기재된다.

제148-4조 예심판사 또는 동 판사로부터 촉탁 받은 사법관에게 최후로 출석하고 부터 4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예심수사 종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구금 중인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에 석방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148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한다.

제148-5조 모든 사건에 관하여 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은 특별히 예심수사 피의자나 경죄 또는 중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경호조건부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8-6조 ① 사법통제의 해제, 변경 청구 또는 석방 청구는, 사건이 계속된 예심수사법원의 서기 또는 제148-1조에 정한 관할법원 서기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서기는 전항의 신고에 일자를 붙여 기록하며, 이 기록에는 서기와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이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서기는 그 취지를 기록에 기재한다.

③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담당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서기에 대한 신고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48-7조 ①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석방 청구는 구치소의 장에 대한 신고서로 할 수 있다.

② 구치소의 장은 신고서를 확인한 후 일자를 붙여 청구인과 함께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신고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사건이 계속된 법원 서기에게 송부하거나, 제148-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 서기에게 송부한다.

제148-8조 ① 제140조 제3항, 제148조 제6항 또는 제148-4조에 따라 예심수사 피의자가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제148-6조 및 제148-7조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의 서기 또는 구치소의 장에 대하여 한다. 청구를 받은 구치소의 장은 반드시 이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제140조, 제148조 제6항 또는 제148-4조에 따라 예심부에 직접 신청한 사법통제의 해제 청구 또는 석방 청구가 명백히 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청구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 취지와 결정은 소송기록에 편철된다.

4. 구속에 대한 보상

제149조 ① 소송 과정에서 구속된 후에 불기소 결정, 형 면제 또는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자는 그 구속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전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조직법 제78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 제122-1조의 책임무능력 규정이 적용될 경우, 구속 이후 사면된 경우, 본범을 도주하게 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소추된 경우, 과실로 대신 소추된 경우, 석방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제156조 및 그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감정인이 손해를 평가한다.

② 불기소 결정, 형 면제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와 제149-1조 내지 제149-3조(제1항)의 내용을 고지한다.

제149-1조 전조에 규정된 보상금은 불기소 결정, 형 면제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지역의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결정으로 지급한다.

제149-2조 ① 고등법원 수석부장은 불기소 결정, 형 면제 또는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보상 청구를 수리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심리는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공개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경우에는 청구인 혹은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149-3조 ① 고등법원 수석부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속보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대법원에 소속되어 최종심을 담당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어떤 사유로도 불복할 수 없다.

② 대법원 사무국은 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이 위원회 또는 필요한 경우 그에 소속된 각 부는 대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매년 대법원 사무국이 대법원의 부장판사, 판사 또는 조사판사 중에서 지명하는 2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2인의 법관에 결원이 생길 경우 보충할 3인의 법관을 대법원 사무국이 본조에 정한 방식으로 지명한다.
- ④ 검사의 직무는 대법원 소속 검사장이 수행한다.
- ⑤ 제149-2조의 규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149-4조 고등법원 수석부장 및 위원회는 민사법원으로서 심리하고 그 절차는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150조 본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악의의 고발 또는 위증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또는 구속이 연장된 경우에는 국가가 그 고발인 또는 위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보상금은 형사사법 비용으로 취급한다.

제 8 절 공조의 촉탁³⁴⁾

제151조 ① 예심판사는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의 방법으로, 그 법원의 모든 판사, 예심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심수사를 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②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를 함에는 범죄의 성질 및 소추 대상을 명시한다.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에는 이를 발령한 법관이 일지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34) *commission rogatoire*. 공조촉탁은 예심판사가 다른 예심판사, 판사 및 사법경찰에 대하여 예심수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공조촉탁은 그 실질이 수사지휘이므로 예심판사 및 판사에 대한 것은 공조촉탁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것은 수사지휘로 번역함

14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③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는 소추 대상이 된 범죄의 처벌에 직접 관련된 예심수사에 국한된다.
- ④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함에는 기한을 특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특정된 기한 내에 조서를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예심판사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지휘의 집행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조서를 예심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조 ① 공조촉탁을 받은 사법관 또는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의 범위 내에서 예심판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② 다만, 사법경찰관은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는 신문 및 대질을 할 수 없고, 사소청구인 또는 출석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

제153조 ① 공조촉탁 및 수사지휘에 따른 진술청취 단계에서 소환된 증인은 출석의무와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청취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그를 유치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촉탁이나 지휘를 명한 법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법관이 경찰력을 이용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434-15-1조에 정한 벌금에 처한다.

③ 선서의무와 진술의무에 관한 규정은 제154조에 따라 보호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호유치된 자가 전에 진술청취 과정에서 선서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당해 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제154조 ① 수사지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1개 또는 수개의 이유가 있는 자를 보호

유치할 수 있고, 보호유치 즉시 사건을 담당하는 예심판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예심판사는 보호유치 조치를 감독하고 사법경찰관은 24시간을 초과하여 보호유치할 수 없다.

② 보호유치된 자는 24시간 내에 사건 담당 예심판사에게, 수사지휘의 집행이 예심판사의 관할지역 외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집행지를 관할하는 예심판사에게 인치한다. 인치를 받은 예심판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보호유치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보호유치된 자가 예심판사에게 인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연장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리, 낭페르, 보비니 및 크레페이유 지방법원의 각 관할구역은 단일한 관할구역으로 본다.

④ 제63-1조,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본장에 정한 보호유치에도 준용된다. 이 경우 제63-2조 및 제63-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예심판사가 행사한다. 제63-4조 제3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수사지휘 과정에 보호유치가 개시되었음을 명시한다.

제154-1조 ① 수사지휘의 집행 상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제55-1조에 정한 외부채혈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5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154-2조 ① 증인으로 진술청취에 붙여지지 않은 자를 신문하고자 하는 예심판사는 제1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예심판사에게 제116조에 정한 신문을 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촉탁을 받아 제116조에 정한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하는 예심판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참조한 결과 유죄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환된 자를 출석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그 취지를 공조촉탁을 한 예심판사에게 전달한다.

③ 출석증인의 자격으로 진술청취를 한 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자 할 때 예심판사는 다른 예심판사에게 피의자신문을 해 줄 것을 촉탁할 수 있다.

제155조 ① 공조촉탁 또는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예심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촉탁 또는 지휘를 내리는 예심판사의 명령문을 복사본 또는 등본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

② 공조촉탁 또는 수사지휘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명령문의 중요한 기재사항, 특히 피의사실의 요지, 촉탁이나 지휘를 내린 법관의 성명 및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절 감 정

제156조 ① 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감정을 청구한 검사나 당사자는 청구취지에 감정인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② 예심판사가 감정 청구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 수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경우 제81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감정인은 예심판사의 감독 하에 또는 감정을 명한 법원이 지명하는 수명 법관의 감독 하에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57조 ① 감정인은 대법원 사무국이 작성한 전국 감정인명부 또는 고등법원이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명부에 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 중에서 선임한다.

② 예외적으로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정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7-1조 지명된 감정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내부자 가운데 법인의 이름으로 감정을 행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연인의 성명을 적시하여 법원의 승인을 구한다.

제158조 감정인의 임무는 전문적인 문제의 조사에 국한된다. 감정을 명하는 결정에 전문분야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9조 ① 감정을 행하는 감정인은 예심판사가 지명한다.

② 예심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수의 감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60조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감정인은, 위촉을 받은 때마다, 예심판사 또는 수명법관의 면전에서, 1971년 6월 29일 법률 제71-498호에 정한 선서를 행한다. 선서를 하였다는 취지의 조서에는, 당해 법관, 감정인 및 서기가 서명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선서를 받을 수 있다. 선서서는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제161조 ① 감정인을 위촉하는 결정에는 그 임무를 행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항의 기간은 감정인의 청구에 따라 감정인을 지명한 법관 또는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감정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경질할 수 있다. 감정인은 이미 행한 조사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된 물건, 서류 및 자료를 48시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간을 어긴 감정인에 대하여는 제157조에 규정된 명부로부터의 말소 등 징계처분을 과할 수 있다.

14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③ 감정인은 예심판사 또는 수명법관과 연락하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진전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예심판사 또는 수명법관에게 보고하고, 예심판사 또는 수명법관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예심판사는 수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정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161-1조 ① 감정명령서의 사본은 즉시 검사 및 당사자의 변호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 및 변호인 등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1조 제10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행할 질문을 수정 또는 추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정된 감정인을 제157조의 명부에 등재된 다른 감정인으로 교체할 것을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예심판사는 1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아무 결정이 없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 등은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 ③ 감정인의 임무 수행이나 감정결과의 제출이 시급하고 제1항에 규정한 10일 동안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경우나 제1항에 정한 사항의 전달로 인하여 감정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감정이나 명령으로 명부에 등재된 감정인에 대해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소송당사자 등은 변호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출석하여 본조에 정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161-2조 제161조에 정한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제16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은 예심판사 또는 감정인에게 최종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다.

- 제162조** ① 감정인이 자기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은 문제를 감정해야 할 경우에는, 판사는 그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를 지명하여 감정에 협력하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제16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서한다.
- ③ 전항에 따라 선서한 자의 보고서는 제166조에 규정된 보고서에 첨부하며, 그 두 개의 보고서는 일체로 간주한다.

- 제163조** ① 예심판사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봉인물을 감정인에게 송부하기에 앞서, 제9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조서에 봉인물을 열거하여 기재한다.
- ②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은 봉인을 개피 또는 재개피할 수 있고, 감정 대상물에 변형을 가한 후에 다시 봉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인물의 목록을 조서에 기재하고 재봉인하였음을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7조 제4항의 규정은 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제164조** ① 감정인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고할 목적으로 예심수사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예심판사 또는 수탁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감정인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출석증인 또는 사소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의견청취는 제1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 하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감정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서면으로 출석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피의자·출석증인 또는 사소청구인은 감정인이 출석한 가운데 예심판사 앞에서 증거보전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6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③ 예심수사피의자·출석증인·사소청구인 등에 대한 검진을 위탁받은 의사 및 심리학자는 예심판사 및 변호인의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65조 당사자는 감정과정에서 감정을 명한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이 어떤 종류의 조사를 행하게 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166조 ① 감정이 종료한 때에는 감정인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감정 경과와 결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위탁된 임무의 실행을 위하여 감정인의 감독과 책임 하에 조력한 자의 성명과 자격을 명시한다.
② 복수의 감정인이 지명되었으나 감정인이 상호 의견을 달리하거나 또는 공통의 결론에 유보를 붙인 때에는, 각 감정인은 이유를 명기하여 자기의 의견 또는 그 유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봉인물 또는 그 잔존물은 감정을 명한 법원 서기에게 제출한다. 이 제출 사실은 조서로 증명한다.

제167조 ① 예심판사는 제114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을 소환하여 감정인이 내린 결론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판사는 제60조 및 제77-1조에 따라 감정에 참여한 자들이 내린 결론을 고지한다. 또,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 전체 보고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의 결론은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또는 예심수사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의 장을 통하여 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치소의 장은 예심판사에게 지체 없이 당사자가 서명한 수령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한다.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보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미리 전자우편 주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803-1조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전체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어느 경우에도, 예심판사는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는 보충감정·재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기간 중 당사자의 변호인은 소송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회계나 재정에 관한 문제가 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 등은 제82-1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여 일체의 보충감정 또는 재감정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예심판사는 청구의 수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당사자가 복수의 감정인의 지명을 청구하였으나 예심판사가 감정인을 1명만 지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1월 이내에 예심판사가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직접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예심판사는 또한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출석증인에게도 감정의 결과를 통지하고, 보충감정 또는 재감정 청구 기한을 정한다. 이 경우, 예심판사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출석증인이 제113-6조에 따라 피의자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7-1조 감정 결론에 따라 예심판사가 형법 제12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때에는, 제167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소청구인에게 당해 감정결과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소청구인은 2주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는 보충감정 혹은 재감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소청구인은 재감정 청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재감정에는 2인 이상의 감정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14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67-2조 ① 예심판사는 최종 감정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당사자는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예심판사가 정한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회계나 재정에 관한 문제가 계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감정인 또는 예심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의견서를 참고하여 감정인은 최종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다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최종 감정보고서로 본다.

②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제161-1조에 따라 감정에 회부하는 결정에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당사자가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때에는, 반드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8조 ① 감정인은 필요한 경우 자기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를 선서한 후 감정결과를 법정에서 진술한다. 이때 감정인은 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감정인에게 촉탁한 임무 범위 내에서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진술을 종료한 후에도 재판장이 퇴정을 허가하지 않는 한 심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9조 판결법원의 법정에서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서 신문을 받은 자가 감정의 결론에 반박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새로운 사실을 지적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정인·검사·피고인 측 및 필요한 경우, 사소청구인들의 의견을 구한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심리를 속행할지 아니면 사건을 후일로 연기할 것인지 정하고, 사건을 후일로 연기하는 때에는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9-1조 제60조 및 제74조에 따라 검증이나 사망 원인 판정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68조 및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절 예심수사의 무효

제170조 모든 사건에서 예심판사·검사·당사자는 예심수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동안 고등법원 예심부에 대하여 예심수사 상 처분의 무효 또는 증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1조 본법 기타 형사소송법규가 규정하는 중요절차에서 관계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제172조 중요절차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은 당사자는 무효 주장을 포기하고 소송절차를 추인할 수 있다. 이 포기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변호인이 정식으로 소환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73조 ① 예심판사는 예심수사 상 처분 또는 증거 중에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그 무효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한다.

② 검사는 무효인 처분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고등법원 예심부에 회부하게 하기 위하여 예심판사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이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예심부에 무효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③ 당사자는 무효인 처분이 행하여졌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유를 붙인 청구서로 고등법원 예심부에 무효 청구를 하고, 그 청구서의 사본을 예심판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예심판사는 소송기록을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이송한다. 무효 청구는 고등법원 예심부 사무국에 대한 신고로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지 않는다. 서기는 청구서를 확인한 후 일자를 붙이고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과 함께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서기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국에 대하여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심수사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무효 청구는 구치소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치소의 장은 신고서를 확인한 후 일자를 붙이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그 취지를 기재하며,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등법원 예심부 사무국에 송부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을 허용하는 예심수사 처분, 특히, 구속 또는 사법통제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그 부의 사무국이 소송기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본조 제3항 혹은 제4항, 제173-1조, 제174조 제1항 또는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무효 청구에 이유가 붙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무효 청구를 각하한 후,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예심수사기록을 예심판사에게 송부할 것을 명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이 소송기록을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고등검사장은 이를 받아 제194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173-1조 ① 예심수사피의자는 예심수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첫 기일의 신문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 또는 그 신문 자체의 무효를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 예심수사 피의자가 무효의 원인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출석증인에게도 적용되며, 출석증인은 최초 출석과 그 이후의 진술청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사소청구인에게도 적용되며, 사소청구인은 최초 출석과 그 이후의 진술청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74조 ① 제173조에 기하여 고등법원 예심부가 무효 청구를 수리한 경우, 당사자는 당해 예심수사에 관한 모든 무효 사유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 예심부가 직권으로 무효 사유를 문제 삼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무효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중에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 사유를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하자 있는 예심수사 상 처분 및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 또, 무효 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 전부 또는 일부까지 무효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고, 제2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③ 무효가 된 예심수사 상 처분 또는 증거는 예심수사 기록에서 삭제하고 고등법원 사무국이 정리한다. 일부가 무효로 된 예심수사 상 처분 또는 증거는, 등본을 작성한 후에 무효 부분을 삭제하고, 고등법원 사무국이 정리한다. 무효가 된 예심수사 상 처분 또는 증거는 당사자를 공격하는 자료로서 이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 변호인 및 사법관은 징계절차에 회부된다.

제174-1조 고등법원 예심부가 제80-1조 위반을 이유로 예심수사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대상자는 제113-6조 및 제113-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출석 이후부터 예심수사 종결 시까지의 신문절차에서 출석증인으로 간주한다.

제 11 절 예심수사 종결 결정

제175조 ① 예심판사는 예심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자 및 그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한다.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152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그 취지를 소송기록의 난외에 기재하며, 예심수사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의 장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치소의 장은 피고지자가 서명한 고지수령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예심판사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는 예심수사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예심판사에게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의견서의 사본은 같은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고지가 있는 후 1월 혹은 3월 이내에 당사자 등은 제81조 제10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유를 적시한 의견서를 예심판사에게 제출한다. 이 의견서의 사본은 같은 기간 내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④ 제1항의 고지가 있는 후 1월 혹은 3월 이내에 당사자는 제173조 제3항, 제156조 제1항, 제82-1조, 제81조 제9항에 기한 청구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은 경우에는 다시 같은 청구와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고지가 있는 후 1월 혹은 3월이 경과하고 나면, 검사는 예심수사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예심판사가 고지한 바에 대하여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⑥ 전항에 정한 10일 혹은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예심판사는 사건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견 또는 요구사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절차의 무효와 청구에 관한 제4항의 규정은 출석 증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⑧ 당사자는 본조에 정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는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변호인이 정식으로 소환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75-1조 ① 예심수사피의자·출석증인 또는 사소청구인은 각각 예심수사 개시 결정, 첫 기일 또는 사소청구인의 구성일로부터 제116조 제8항 또는 제89-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지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81조 제10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심판사에 대하여, 사건의 판결법원으로의 이송·중죄법원으로의 이송·예심수사 불기소 결정 또는 필요한 경우 사건의 분리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4개월간 아무런 예심수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예심판사는 전항의 청구 수리일부터 1월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청구를 인용하거나 또는 예심수사 속행을 선언한다. 전자의 경우, 예심판사는 본절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후자의 경우나 1월 이내에 예심판사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심수사피의자·출석증인 또는 사소 청구인은, 제207-1조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장에 대하여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5일 이후 1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예심판사가 예심수사의 속행을 선언한 경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본조의 규정은 제175조 제1항에 규정된 고지가 발송된 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75-2조 ① 모든 사건에 관하여 예심수사기간은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 진실발견에 필요한 조사의 복잡성 및 방어권 보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만약, 예심수사개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예심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 예심판사는 전항의 기준을 감안하여 예심수사의 속행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속행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통지되고,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제221-1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결정은 6월마다 갱신한다.

154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76조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77조 ① 예심판사는 피의사실이 중죄, 경죄 혹은 위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 범인을 모르는 때 또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충분한 혐의가 없는 때에는 불기소 결정을 한다.

②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가 형법 제122-2조, 제122-3조, 제122-4조, 제122-5조 및 제122-7조에 따른 책임무능력이나 예심수사피의자의 사망인 경우, 결정문에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충분한 혐의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속 중인 예심수사피의자는 석방하며, 불기소 결정에 따라 사법통제는 종료된다.

④ 예심판사는 불기소 결정과 동시에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재판한다. 환부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예심판사는 환부를 거부할 수 있다. 환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7-1조 ① 예심판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불기소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표하거나 예심판사가 지정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신문·정기간행물·텔레비전·라디오에 결정주문 및 결정이유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할 수 있다.

②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표 대상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거나 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심판사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하고,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다.

제177-2조 ① 예심판사가 사소청구인의 구성에 따라 개시된 예심수사를 종결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사소청구인의 구성이 권리남용이나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사소청구인에게 총액 15,000유로 이하의 민사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단, 사소청구인과 변호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검사의 청구서를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20일이 지난 후에만 전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소청구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예심수사 불기소결정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절차로 항고할 수 있다.

④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검사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77-3조 사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에게 악의가 있으면 제177-2조에 규정된 민사벌금은 그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8조 ① 예심판사는 피의사실이 위경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법원에 이송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다.

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절차 상 하자는 치유된다.

제179조 ① 예심판사는 피의사실이 경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경죄법원으로 이송하는 취지의 선고를 한다.

② 예심수사 종결 결정으로 구속·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또는 사법통제는 종료된다. 이 경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은 효력을 지속하고, 구인영장과 수색영장은 효력이 소멸한다. 예심판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③ 특별한 이유를 붙인 별도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기까지 구속·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사법통제를 계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속의 계속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44조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이송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죄법원이 본안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은 즉시 석방한다.
- ⑤ 다만, 전항의 기간 경과 전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의 개시를 방해하는 사실관계 또는 권리의무관계를 적시하여 2월의 구속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청구하면 직접 출석할 수 있고, 연장 결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의 경과 후에도 심리가 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 ⑥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제180조 ① 경찰법원 또는 경죄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예심판사는 소송기록에 그 결정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한다. 검사는 재판할 법원의 사무국에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경죄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본법에 규정된 소환기간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까운 공판기일 중 하나를 지정하여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1조 ① 예심판사는 예심수사피의자에 부과된 피의사실이 법률상 중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죄법원으로 이송을 명한다.

- ② 예심판사는 관련범죄에 대하여도 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중죄법원 이송 결정문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공소사실의 요지·법적 평가 등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송은 무효가 된다. 결정문은 또한 피고인이 형법 제132-78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④ 중죄법원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⑤ 피고인에 대한 사법통제 및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은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 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이송된 자에 대한 구속·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또는 사법통제는 제17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한다. 이 경우 제179조 제4항에 정한 기간은 6월이 된다.
- ⑦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발부한 구속영장은 제148조 및 아래 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죄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이 경우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은 효력을 지속하고, 구인영장과 수색영장은 효력이 소멸한다. 예심판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⑧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제기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구속된 피고인이 중죄법원에 소환되지 않거나, 공소제기 후에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중죄법원에 소환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 ⑨ 다만, 전항의 기간 경과 전에 본안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심부는 심리의 개시를 방해하는 사실관계 또는 권리의무관계를 적시하여 6월의 구속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청구하면 직접 출석할 수 있고, 연장 결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의 경과 후에도 심리가 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 ⑩ 예심판사는 그 결정과 함께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중죄법원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⑪ 중죄법원이 예심판사와 다른 지역 법원인 경우에는,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중죄법원에 송부한다.

제182조 ① 예심수사의 경과 중에 일부 불기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58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 ② 수집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증거가 예심판사에게 계속된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사건의 일부 이송 결정 또는 증거물의 일부 송부 결정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행할 수 있다.
- ③ 일부 이송 결정 또는 증거물의 일부 송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다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예심수사피의자가 아닌 자는 출석증인으로 본다. 예심수사절차의 분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83조 ① 예심수사 종결 결정은 예심수사피의자 및 출석증인에게 통지하고, 이송 결정 및 중죄법원 이송 결정은 사소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지체 없이 구두 또는 등기우편으로 행하며,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소송기록의 난외에 기재한다.

② 소송의 일방당사자 또는 제99조, 제186조 및 제186-1조에 정한 제3자의 불복신청 대상이 되는 결정은 이를 지체 없이 신청권자에게 구두 또는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며, 구두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소송기록의 난외에 기재한다. 다만, 제137-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심수사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지체 없이 예심판사에게 예심수사피의자가 서명한 수령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한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결정문의 사본을 교부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된 것은 본인에 대한 통지로 본다.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변호인에게도 통지한다.

⑤ 검사에 대한 통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예심판사가 검사의 청구취지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검사에 대한 통지는 서기가 한다.

⑥ 모든 경우에 서기는 본조에 정한 소송행위의 성질 및 일자와 절차를 소송기록에 기재한다.

제184조 본절에 정한 예심판사의 결정문에는 예심수사피의자의 성명·생년월일·출생지·주소 및 직업을 기재한다. 또, 예심수사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혐의사실의 유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제175조에 따라 예심판사에게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유를 붙여야 하고, 예심수사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혐의사실의 유무를 결정한다.

제 12 절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185조 ① 검사는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전항의 항고는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법원 사무국에 대한 신청으로 한다.

③ 제181조에 규정된 중죄법원 이송 결정에 대하여 예심수사피의자가 항고하는 경우, 검사에게 예심수사피의자의 항고일로부터 5일의 추가기간을 보장한다.

④ 고등검사장도 모든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권리를 갖는다. 고등검사장이 항고를 하는 때에는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6조 ① 예심수사피의자는, 제80-1조, 제87조, 제139조, 제140조, 제137-3조, 제142-6조, 제142-7조, 제145-1조, 제145-2조, 제148조, 제167조 제4항, 179조 제3항 및 제181조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사소청구인은 예심수사 불개시의 결정, 예심수사 후 불기소 결정 및 자기의 민사상 이익을 해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만, 사소청구인은 예심수사피의자의 구속이나 사법통제에 관한 결정 또는 결정중의 처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없다.

- ③ 당사자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한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항고와 제99조 제5항에 정한 청구는 제502조 및 제503조에 규정된 조건과 방식에 따라, 결정의 통지 또는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예심수사기록 또는 제81조에 따라 작성된 사본은 검사의 이유를 붙인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고등검사장은 제194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 ⑥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항고불수리의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 제4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예심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거나 항고가 이유 없게 된 경우도 이와 같다. 예심부장은 또 항고 취하의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 제186-1조** ① 당사자는, 제81조 제9항, 제82-1조, 제82-3조, 제156조 제2항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예심수사기록 또는 제81조에 따라 작성된 사본은 검사의 이유를 붙인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송부한다.
 - ③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기록을 수령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항고를 수리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불복할 수 없다.
 - ④ 항고를 수리하는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기록을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고등검사장은 제194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 ⑤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예심수사 기록을 예심판사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제186-2조 제181조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결정일로부터 4주 이내에 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된 예심수사피의자는 직권으로 석방한다.

제186-3조 ① 중죄법원에 기소해야 할 범죄사실을 그릇 판단하여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경죄법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사소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복수의 예심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제83-2조에 정한 예심판사의 공동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87조 ① 예심수사 종결 결정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때 또는 제81조 제9항, 제82-1조 제2항, 제15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가 항고를 직접 수리한 때, 고등법원 예심부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예심판사는 필요한 경우 예심수사 종결 시까지 수사를 속행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173조에 따라 예심수사의 무효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87-1조 ① 예심수사피의자를 구속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날 안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검사는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법관에게, 고등법원 예심부의 심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그 항고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대한 항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예심수사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검사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심수사피의자의 변호인은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심리 중에는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청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참조하여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제144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심판사의 결정을 파기하고 예심수사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에 대한 사건 계속은 소멸한다.

④ 전항과 반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항고사건을 고등법원 예심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예심판사의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예심수사피의자를 사법통제에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항고사건이 고등법원 예심부에 이송되는 경우 그 결정을 고등검사장에게 통지한다. 구치소의 서기를 통해 예심수사피의자에게도 결정 취지를 고지하고, 이 경우 구치소 서기는 예심수사피의자로부터 항고 취하를 받을 수 있다.

⑦ 항고 및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는, 제145조 제4항에 정한 구두변론을 거쳐 석방구금판사가 심사한다. 본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송기록을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송부할 때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제187-2조 제187-1조에 정한 항고를 제기한 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직접 심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기록을 참조하여 청구일로부터 늦어도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심리하여야 한다.

제187-3조 ① 제148-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의 의견제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석방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항고를 제기한 검사는 같은 4시간 안에 고등법원 수석부장에게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에게, 항고절차의 중지를 촉구하는 구속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계속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의견서로 첨부한다. 이 경우 예심수사피의자 및 그 변호인도 석방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판결한다. 이 기간 동안 석방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며 피의자는 구금된다.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이 위 기간 내에 판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유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한, 그 피의자는 석방된다.

③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소송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며 이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예심수사피의자의 변호인은 그 사법관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검사에게도 통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소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이 보기에 제144조에 정한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의 청구로 고등법원 예심부에 계류된 항고심까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유지가 명백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항고심 기일까지 석방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다. 예심수사 피의자는 그 항고심 기일까지 석방되지 않으며, 피의자는 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최대한 신속히, 적어도 항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재판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한 피의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⑤ 반대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구금되어 있지 않은 한 석방 결정을 한다.

- ⑥ 구속가처분을 한 사법관은 검사의 항고에 대해 재판하는 고등법원 예심부를 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은 무효가 된다.
- ⑦ 고등법원 수석부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법관에 대한 기록의 송부는 팩시밀리에 의할 수 있다.

제 13 절 새로운 증거에 기한 예심수사의 재개

제188조 예심판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예심수사에 회부할 수 없다.

제189조 예심판사가 조사하지 못한 증인의 진술이나 증거물 혹은 조서 가운데, 근거가 박약했던 것을 사후에 보강한 것 또는 진실발견에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것 등은 이를 새로운 증거로 본다.

제190조 새로운 증거에 따라 예심수사의 재개를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제 2 장 고등법원 예심부 : 제2단계의 예심법원

제 1 절 총 칙

제191조 ① 각 고등법원에 최소한 하나의 예심부를 둔다.

-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부장 및 2인의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한다. 부장은 전임으로 하고, 다른 판사는 경우에 따라 고등법원 내 다른 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고등사법위원회³⁵⁾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규명령으로

35)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법무부장관이 부위원장인 헌법기관임. 판사, 검사의 임용, 승진, 징계 등을 담당

지명한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공석 또는 유고 시에는 고등법원장이 다른 부의 부장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부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자를 지명한다.

- ④ 고등법원 예심부를 구성하는 판사는 매년 다음 사법연도에 대하여 고등법원 법관회의가 지명한다.
- ⑤ 부의 수가 3개 미만인 고등법원 예심부의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당해 고등법원의 다른 부의 직무를 행할 것을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2조 고등법원 예심부에서 검사의 직무는 고등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행한다. 서기의 직무는 고등법원 서기가 행한다.

제193조 고등법원 예심부는 최소한 매주 1회 열리고, 필요한 때마다 부장이 소집하거나 고등검사장이 청구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94조 ① 고등검사장은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기록을 수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른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조사 준비를 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송치한다.

② 제173조 및 제186-1조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제81조 제9항, 제82-1조 제2항, 제156조 제2항 혹은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이 고등검사장에게 기록을 송부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심판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는 구속 사건에서 구속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항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항고사건은 항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심수사피의자를 석방한다. 다만, 보정명령이 발령된 때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조에 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5조 고등검사장은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이 수리한 사건이라도 아직 심리가 개시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 현재 의율된 죄명보다 중한 죄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의 제출을 명하고 조사 준비를 한 뒤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송치한다.

제196조 고등법원 예심부가 불기소 결정을 한 후에, 고등검사장이 제189조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가 포함된 소송기록을 수리한 때에도, 전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의 심리 개시 일까지 고등법원 예심부장이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구금영장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97조 ① 고등검사장은 각 당사자 및 그 변호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구속 중인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구치소의 장을 통하여 한다. 구치소의 장은 즉시 당사자가 서명한 통지 수령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구속 중이 아닌 모든 당사자, 사소청구인 또는 제99조 제5항에 규정된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예심판사가 예심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신고한 최종 주소로 발송한다.

② 등기우편의 발송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48시간, 그 외 사건에 있어서는 5일간의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전항의 기간 동안 소송기록은 고등법원 예심부의 사무국에 보관하고 예심 수사피의자의 변호인 및 사소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소청구인에 대하여는 사소청구인이 되는 데 다른 이의가 없었거나 또는 이의가 있었음에도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항에 정한 자가 서면으로 기록 등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자의 비용으로 사본을 교부한다. 교부된 사본은 공개할 수 없다.

제197-1조 예심수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 출석증인은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항고심 기일은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제198조 ①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은, 개정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검사 및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② 전항의 의견서는 고등법원 예심부 사무국에 제출하며 서기가 제출일자를 기재하고 검인한다.

③ 변호인이 고등법원 예심부가 있는 시에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기·검사 및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팩시밀리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서는 개정기일까지 수취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9조 ① 예심부는 비공개의 평의실에서 심리하고 결정한다. 다만, 변론 초기에 성년의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리 및 결정을 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가 예심수사에 필요한 특별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의 존엄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청구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는 고등검사장의 의견과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평의실에서 결정한다. 본안과 같이 상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관한 결정에서 예심수사피의자가 성년에 달한 경우 심리와 결정을 공개한다. 검사·예심수사피의자 또는 사소청구인은 공개가 예심수사에 필요한 특별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의 존엄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06-83조에 정한 사실에 관한 조사인 경우 심리의 개시에 앞서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는 고등검사장의 의견과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의 변호인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평의실에서 결정한다. 본안과 같이 상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예심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비공개의 평의실(en chambre du conseil)에서 심리하고 결정하며, 변론의 공개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소청구인이 공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판사의 보고가 있는 후, 고등검사장 및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 요지를 진술한다.

④ 고등법원 예심부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 및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고등법원 예심부장 또는 그 부에 속한 판사 중 1인이 결정문을 낭독하며, 이 절차는 다른 판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다.

⑥ 구속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예심수사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권리가 있다. 전문의 청구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대한 항고의 제기 또는 석방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한다. 4월 이내에 그 피의자가 고등법원 예심부에 소환된 적이 있는 경우, 부장은 석방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소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⑥ 이해관계인이 직접 출석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94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을 5일 간 연장한다.

제200조 심리가 종료한 때 고등법원 예심부는 평의를 개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검사장, 당사자 및 그 변호인과 서기는 평의에 배석할 수 없다.

제201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고등검사장이나 당사자 일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충 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직권으로 예심수사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는 예심수사피의자를 사법통제에 부치거나 그를 구속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심부장 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관은 구인영장·체포영장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예심부의 심리기일까지 최대 4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예심부장은 예심수사피의자를 가구금할 수 있다.

제202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직권으로 또는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그 부에 이송된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관하여, 소송기록 상 명백한 중죄·경죄·위경죄로서 예심판사의 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나 일부 불기소, 수사의 분리 혹은 경죄법원이나 경찰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에 따라 분리된 것 전부에 대하여, 주요사건인지 관련사건인지를 불문하고, 예심수사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전항에 언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심판사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예심수사를 명하지 않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제203조 수개의 범죄를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실행한 때, 수개의 범죄가 1인에 의하여 일시·장소를 달리 하여 행하여졌지만 그것이 수인의 공범자간의 통모의 결과일 때, 하나의 범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범죄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때, 1개의 중죄 혹은 경죄에 의하여 탈취·횡령 혹은 습득한 물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닉한 때, 수 개의 범죄는 관련범죄로 한다.

제204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소송기록 상 명백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예심부에 이송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제20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수사에

170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회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가 불기소의 확정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할 수 없다.

제205조 ① 보충수사는 예심수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 구성원의 1인 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특별히 촉탁한 예심판사가 담당한다.

② 고등검사장은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등검사장은 24시간 이내에 그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6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173-1조, 제174조 및 제175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가 절차를 무효로 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하자 있는 예심수사처분의 무효를 선언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이후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선언한다.

③ 무효 선언 후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201조, 제202조 및 제20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심리하거나 또는 예심수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한 예심판사 또는 다른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을 이송할 수 있다.

제207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가 구속에 관한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따라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때에는, 결정의 취지가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을 추인하는 것이거나, 파기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취지이거나, 구속의 계속을 명하는 것이거나, 또는 구인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면, 고등검사장은 영장의 취지에 따라 집행한 후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예심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심부가 구금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 결정 또는 구속연장 불허 결정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구속에 관한 결정권은, 예심부가

직접 석방 청구 또는 구속연장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예심판사 및 석방구금판사에게 속한다. 예심부가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부가택구금 명령을 발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가 기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예심판사의 결정을 파기하는 때 또는 제81조 제9항, 제82조 제4항, 제82-1조 제2항, 제156조 제2항 혹은 제1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및 제205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이송하여 절차를 진행하거나, 예심수사를 속행 시키기 위하여 예심판사 혹은 다른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또, 일부만 소송기록의 송달과 함께 예심판사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이송할 수 있다.

③ 항고가 제기된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을 고등법원 예심부가 추인하는 때에는, 그 결정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④ 석방 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심리 종결 전에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유에 기한 새로운 석방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항고에 대한 재판과 새로운 석방 청구를 동시에 관할한다.

제207-1조 ① 제17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등법원 예심부는 사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사건이 예심부가 판단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인용 시에는 사건기록을 고등검사장에게 이송하고 고등검사장은 제194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사건을 수리한 후, 판결 법원에 이송하거나, 중죄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예심수사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파기자판하거나, 제201조, 제202조 및 제204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거나, 예심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예심판사 또는 다른 예심판사에게 사건 기록을 이송할 수 있다.

③ 기각 시에는 이유를 붙여 예심수사기록을 예심판사에게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172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208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가 명한 보충심리가 종료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는 소송기록을 사무국에 보관할 것을 명한다.

② 검사는 즉시 등기우편으로, 각 당사자 및 그 변호인에게 이 보관 취지를 통지한다.

제209조 ① 소송기록은, 구속사건에 있어서는 48시간, 기타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5일간 이를 서기에게 보관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서기는 제197조, 제198조 및 제19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210조 고등법원 예심부는 하나의 결정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211조 고등법원 예심부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212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피의사실이 중죄·경죄 혹은 위경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 범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예심수사피의자에게 충분한 혐의가 없는 때에는 불기소 결정을 한다.

② 이 경우, 구속 중인 예심수사피의자는 석방되며, 사법통제와 전자감시부 자택구금은 종료된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는 동일한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2-1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기소 결정의 전부나 일부의 공표를 명하거나 또는 스스로 지정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신문·정기간행물·텔레비전·라디오에 결정주문 및 결정이유의 게재 혹은 방송을 명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중에서 공표대상이 되는 부분을 발췌하거나 또는 게재·방송될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가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제213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피의사실이 경죄 또는 위경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경죄의 경우에는 경죄법원에, 위경죄의 경우에는 경찰법원에 각각 사건을 이송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한다.

②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는 이를 즉시 석방하고 사법통제는 종료한다. 다만, 고등법원 예심부는 특별히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제17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는 즉시 이를 석방하고, 사법통제는 종료된다.

제214조 ①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이 법률상 중죄의 요건사실일 경우에 고등법원 예심부는 중죄법원 기소 결정을 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관련된 범죄도 중죄법원의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5조 ① 중죄법원의 공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적용 법조 및 공소대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형법 제132-7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② 제181조의 규정은 본조에 적용된다.

③ 기소 결정은 제183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174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216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에는 부장 및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에는 판사의 성명·증거물 및 기록의 검토 결과, 보고서 등의 검토 결과, 검사의 의견 및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취지를 언급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 소송비용 가운데 일부를 정하여 피고인이 사소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형평의 원칙 또는 범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직권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217조 ① 제196조에 규정한 경우 외에 판결의 주문은 3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②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전항과 동일한 방식 및 기한을 지켜 예심수사피의자에게 통지한다.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다만, 예심판사가 예심수사를 종결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판결문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 또는 제99조 제5항에 정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구속 중인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치소의 장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치소의 장은 지체 없이 예심수사피의자가 서명한 수령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④ 당사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한 통지는 본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218조 ①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4조 제3항의 규정은 본장에 이를 적용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단한 때에는, 그 부가 행한 판결의 적법성 및 이에 선행하는 절차의 적법성은 오직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상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제2절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고유 권한

제219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장과 둘 이상의 고등법원 예심부를 둔 고등법원에 서 법관회의가 지명한 예심부장 중 1인은 다음 조 이하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전항의 예심부장의 유고 시에는 그 권한은 고등법원 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고등법원에 소속된 법관 중 1인이 이를 행사한다.

③ 예심부장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소속된 법관의 1인에게, 당해 고등법원에 둘 이상의 예심부가 있는 때에는, 다른 예심부장의 동의를 얻어, 그 예심부에 소속된 법관의 1인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20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고등법원의 관할구역내의 예심부의 적정한 운영을 감독한다. 예심부장은 특히 제81조 제4항 및 제5항과 제144조의 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소송절차에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예심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또한 최소한 매년 1회 의견서를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관련 지방법원장 및 그 검사장에게 제출한다.

제221조 ① 이를 위하여 각 예심부에서 각 분기마다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사건마다 집행된 최종 예심수사 처분의 일자를 기재한다.

② 구속 중인 예심수사피의자에 관계된 사건은 특별목록에 기재한다.

③ 본조에 규정된 목록은, 매 분기 최초 3일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의 장 및 고등검사장에게 제출한다.

제221-1조 진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마지막 예심수사 처분이 행하여진 날부터 4월이 경과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및 제20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송하여 절차를 행하거나, 또는 예심수사를 속행시키기 위하여 예심판사 또는 다른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을 이송할 수 있다.

제221-2조 ① 마지막 예심수사 처분이 행하여진 날부터 4월이 경과한 때, 당사자는 제173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예심수사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심수사 피의자의 편의를 위하여 2월로 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서기가 소송기록을 수리한 날부터 8일 이내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고등법원 예심부로의 사건 계속을 중지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사건이 계속된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및 제205조에 따라 이송하여 절차를 속행하거나, 또는 예심수사를 속행시키기 위하여 예심판사 혹은 다른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최초에 사건이 계속된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이 송달된 때부터 2월 이내에 아무런 예심수사 처분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차 고등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예심수사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로 한다.

⑤ 전항의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심수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예심수사를 속행시키기 위하여 다른 예심판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21-3조 I. ① 예심피의자를 구속한 지 3월이 지난 시점에 그때까지 계속 피의자가 구속 상태이고 제175조에 정한 수사 종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의자의 청구에 따라 그간의 절차 전체를 심사하기 위한 심리를 개시한다. 검사나 당사자 중 1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8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 심리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예심부장은 출석증인과 당사자의 변호인 등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에 결정한다. 예심부 판사나 예심부장은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출석증인과 예심수사피의자의 소환을 명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한다. 전문에 정한 출석은 제706-71조에 정한 방식에 따른다.

③ 예심수사피의자가 성년에 달한 경우 심리와 결정을 공개한다. 검사·예심수사 피의자·사소청구인 또는 이들의 변호인은 공개가 예심수사에 필요한 특별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의 존엄성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06-83조에 정한 사실에 관한 조사인 경우 심리 개시에 앞서 심리를 비공개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는 검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평의에서 결정한다. 본안과 같이 상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예심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비공개의 평의실에서 심리하고 결정한다. 변론의 공개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소청구인이 공개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예심부장은 또한 공개가 예심수사에 필요한 특별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수사피의자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변론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심부장이 비공개 평의를 주재하여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안과 같이 상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⑤ 심리 개시일 2일 전까지 당사자는 석방 청구 또는 특정 소송행위의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의 청구에는 제186-1조가 적용되어 예전에 기각된 바 있는 청구, 제173-1조 및 제17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결정의 파기 청구, 공소시효의 경과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청구를 포함한다.

Ⅱ.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78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1. 석방 결정. 이 경우 사법통제를 부가하거나 부가하지 않을 수 있고,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는 석방 청구를 하지 않은 예심수사피의자가 포함될 수 있다.
 2. 제206조에 따른 하나 또는 수개의 소송행위의 무효 결정
 3. 사건을 이송하여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및 제205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결정
 4. 소송기록의 송달과 함께 사건의 일부만 예심판사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이송하는 취지의 결정
 5. 예심수사의 속행을 위하여 기록을 예심판사에게 송달하는 결정. 이 결정에는 필요에 따라 구속 또는 사법통제를 제외한 하나 혹은 수개의 행위를 일정 기한 안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6. 제83-1조에 따라 이미 사건이 배당된 예심판사 외에 절차의 진행을 돕는 하나 혹은 수 명의 예심판사를 지명하는 결정
 7. 진실발견과 사법정의를 위해 필요하고, 전호에 따른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예심판사를 배제하고 종전에 사건을 담당하던 예심판사 혹은 새로운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속행하게 하는 결정
 8. 사건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종결 결정. 이 경우 하나 혹은 수명의 예심수사피의자와 관련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예심부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이 사건을 배당한 후에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심수사피의자는 석방된다.
- ③ 결정이 내려지고 6월이 지난 시점에 그때까지 계속 피의자가 구속 상태이고 제175조에 정한 수사종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본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새로 심리를 개시한다.

제223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구속 중인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계속에 관한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심부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 절 사법경찰관리 활동의 감독

제224조 고등법원 예심부는 민간공무원인지 군인³⁶⁾인지를 불문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제225조 ① 고등검사장 또는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징계사건을 예심부에 회부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절차 심사의 기회에 직권으로 징계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

제226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징계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고등검사장 및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을 듣는다.
②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미리 고등검찰청에 비치된 그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 주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7조 고등법원 예심부는 당해 사법경찰관리에게 주의를 주거나, 당해 사법경찰관리가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 혹은 전 국토 내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사법경찰관 및 예심판사의 수사지휘 집행자로서의 직무 또는 사법경찰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직속상사가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에 회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고등법원 예심부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6) 역사적인 이유로 주로 시, 군 등 지방에서 민간인에 대한 치안유지와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헌병대(gendarmerie)와 관련된 규정임

180 제 1 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228조 사법경찰관리가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는 전조의 조치 외에 고등검사장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기록을 고등검사장에 송부할 것을 명한다.

제229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고등법원 예심부가 내린 결정은 고등검사장의 지시로 그 자가 소속한 관청에 통고된다.

제230조 본절의 규정은 보조사법경찰리 및 사법경찰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 4 편 공통규정

제 1 장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제230-1조 ① 제60조, 제77-1조, 제156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또는 예심수사 중 압수하거나 입수한 데이터를 해독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한 검사·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은 모든 자격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정보의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암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암호해독을 위한 비밀코드의 해제 등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대표자는 검사 또는 수소 법원에 실제로 전항의 조치를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이름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7조에 정한 감정인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제160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선서하여야 한다.

③ 범죄가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수사 또는 예심수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은 국방의 비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본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0-2조 ①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이 제230-1조에 정한 작업을 위해 국방 상 기밀에 속하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국에 서면으로, 해독 대상 자료 및 그 사본을 제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는 해독작업이 종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장될 수 있다. 해독을 요청한 기관은 언제든지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국은 이를 지체 없이 기술분석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은 법규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방 상 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는 국방비밀자문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1998년 7월 8일 법률 제98-567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0-3조 ① 작업이 완료된 때, 작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때, 또는 전항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법당국이 중지명령을 내린 때에는, 확보한 결과와 물품들은 작업지시를 내린 사법경찰국 기술부서의 책임 하에 이를 회수한다. 국방 상 비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결과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등을 첨부할 수 있고, 결과물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기술부서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결과물은 즉시 정보통신 기술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국이 사법당국에 전달한다.

③ 해독한 자료는 접수조서에 기재되고 소송기록에 첨부된다.

제230-4조 본장이 적용되는 결정은 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며, 어떠한 불복절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30-5조 국방상 비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본장에 규정된 모든 공무원은 사법당국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권 판결법원

제 1 편 중죄법원

제 1 장 중죄법원의 관할

제231조 ① 중죄법원은 중죄법원에 기소하는 결정에 따라 송부된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갖는다.

② 중죄법원은 그 외 모든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

제 2 장 중죄법원의 개정

제232조 중죄법원은 파리 및 각 도에서 개정한다.

제233조 고등법원은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의 재판부를 둘 수 있다.

제234조 ① 고등법원이 있는 도에서 중죄재판은 일반적으로 당해 고등법원의 소재지에서 개정한다.

② 그 이외의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청 소재지에서 개정한다.

③ 예외적으로 행정명령(국참사원령)에 의하여 지방법원이 소재하는 도내 다른 도시에 중죄법원을 둘 수 있다.

제235조 ① 고등법원은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통상 중죄재판을 행하는 곳 이외의 법원에서 중죄재판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은 고등검사장의 책임 하에 해당 법원에 통지한다.

제236조 ① 중죄재판은 3개월마다 개정한다.

② 다만, 고등법원장은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기간 동안 1회 또는 2회 이상 추가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7조 ① 중죄재판의 통상 개정기일 또는 추가 개정기일은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들어 고등법원장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235조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명령 또는 결정은 고등검사장의 책임 하에 적어도 개정일 15일 전까지 중죄재판이 개정되는 곳의 법원에 통지한다.

제238조 중죄법원의 추가 개정기일의 목적에 대해서는 항소법원 검사장 또는 법원장이 제안하고 검사가 청구하여 중죄법원 재판장이 결정한다.

제239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출석일자를 통지한다.

제 3 장 중죄법원의 구성

제240조 중죄법원은 법원과 배심으로 구성된다.

제241조 ① 중죄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는 제34조와 제39조에 정한 자가 수행한다.

② 다만, 고등검사장은 고등법원 관할 내 검사에게 그 관할 내에 설치된 중죄법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2조 ① 중죄법원의 공판에는 서기가 입회한다.

② 파리 및 고등법원이 소재하는 도에서 서기의 직무는 수석서기 또는 고등법원 서기가 담당한다.

③ 그 이외의 도에서 서기의 직무는 수석서기 또는 지방법원 서기가 담당한다.

제1절 법원

제243조 재판부는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1. 재판장

제244조 중죄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가 재판장이 된다.

제245조 중죄법원의 각 회기 또는 3개월 단위로 고등법원장이 기일을 배당하고 재판장을 지정한다.

제246조 ① 재판 개정 전에 재판장에게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법원장의 명령으로 교체된다.

② 돌발적인 사유가 재판 도중에 발생한 때에는 선임 배석판사가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7조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장이 될 수 있다.

2. 배석 판사

제248조 ① 배석판사는 2명으로 한다.

② 다만 재판기간 또는 재판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때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배석판사를 보충할 수 있다.

③ 보조배석판사는 공판에 입회한다. 보조배석판사는 정식배석판사에게 장애사유가 발생하고 중죄법원 재판장이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이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평결에 참여한다.

제249조 배석판사는 고등법원 판사 또는 중죄재판 개정지의 지방법원장·부원장 또는 판사들 가운데 선임한다.

제250조 배석판사는 3개월마다 각 중죄법원별로 재판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등법원장이 지명한다.

제251조 ① 재판의 개정 전에 배석판사에게 돌발적인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등법원장의 명령으로 배석판사를 교체한다.

② 장애사유가 재판기간 중 발생한 때에는 배석판사는 중죄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교체되고, 중죄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새로 선임된다.

제252조 재판이 개정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중죄법원 재판장은 1명 또는 수명의 보조 배석판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253조 중죄법원에 제소된 사건에 관하여 소추 또는 예심수사를 하였거나, 중죄법원 소추 결정에 참여하였거나, 피고인의 유죄와 관련된 실체에 관한 결정을 한 사법관은 재판장 또는 배석판사로 중죄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 절 배 심

제254조 배심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시민으로 구성된다.

1. 배심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

제255조 23세 이상의 남녀 시민으로서 프랑스어를 읽고 쓸 줄 알며 공민권·사권·가족법상의 권리를 갖는 자 가운데 아래 열거된 무자격자 또는 겸직 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배심원이 될 수 있다.

제256조 다음 각호의 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1. 전과기록부 표1에 기재된 중죄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경죄를 범하여 징역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폐지)
3. 중죄법원에 기소된 자 또는 궐석재판을 받고 있는 자 및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
4. 국가·도·시·군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
5. 법원보조직원으로서 파면된 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확정적으로 금지된 자
6. 파산 선고를 받아 복직되지 않은 자
7. 본법 제288조 제5항 또는 형법 제131-26조에 따라 배심원의 직무가 금지된 자
8. 사법상 보호를 받는 자, 후견을 받고 있는 자, 재산관리를 받고 있는 자 및 공중보건법 제326-1조 내지 제355조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제257조 배심원의 직무는 아래 열거한 직무와 겸할 수 없다.

1. 정부·의회·헌법위원회·고등사법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각 구성원
2. 국참사원 또는 회계감사원의 구성원, 사법관, 행정법원의 구성원, 상사법원의 사법관, 농업임대차법원 또는 노동법원의 배석판사
3. 내각 사무국장, 행정각부 사무국장, 국장·도지사의 구성원
4. 경찰 및 교정공무원, 현역복무 중인 군인

제258조 ① 70세 이상의 자, 중죄법원 소재지에 주된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제26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청구한 자는 배심원의 직무를 면제한다.
② 그 외에 위원회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의 직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258-1조** ① 과거 5년간 당해 도에서 배심원의 직무를 행한 자는 배심원 연차명부 및 보조배심원 특별명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말소한다.
- ② 도덕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에 의한 이의는 배심원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할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③ 제262조에 규정된 위원회는 중대한 사유로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다.
- ④ 본조 및 전조 규정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 구성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 배심원단의 구성

제259조 매년 각 중죄법원 관할별로 배심원 명부를 작성한다.

- 제260조** ① 위 명부는 파리중죄법원에는 1,800명, 기타 중죄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배심원 수가 200명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구 1,300명당 1명을, 배심원으로 등재한다.
- ② 각 중죄법원 연차명부에 관하여, 국참사원령은 매년 중죄법원의 재판 회수를 감안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많은 배심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③ 연차명부에 등재하는 배심원 수는 공인 인구통계표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배정은 매년 4월 시·군별 또는 재구성된 시·군별로 도지사의 명령으로 하며, 파리는 매년 6월 구별로 파리시장의 명령으로 이를 행한다.

제261조 ① 각 시·군에서는 연차명부의 예비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구별로 도지사의 명령으로 할당된 정수의 3배를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이 예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 중에 23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② 도지사의 명령으로 시·군에 대하여 재편성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추천은 도지사가 지명한 시장·군수가 행한다. 이 경우 추천은 관계 시·군의 선거인 명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③ 파리에서 추천은 각 구별로 시장이 지명한 호적공무원이 행한다.

제261-1조 ① 예비명부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군 사무소에, 파리의 경우에는 시청 별관에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법원 사무국에 7월 15일까지 송부한다.

② 시장·군수는 추천으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들에게 직업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이들에게 9월1일까지 제26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장에게 청구하여 제258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린다.

③ 시장·군수는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곳의 예비명부 등재자와 관련해서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규정에 따른 부적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수석서기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 되는 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2조 ① 연차명부는 각 중죄법원 소재지에서, 그곳이 고등법원 소재지인 경우 고등법원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그곳이 지방법원인 경우 지방법원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이를 작성한다.

② 위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다음의 자로 구성된다.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법원의 법관 전체회의에서 매년 지명되는 3인의 고등검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검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중죄법원 관할 변호사회 회장 또는 그 대리인, 시·군 의회에서 매년 지명되는 5인의 시·군의원, 파리에서는 파리 시의회에서 지명하는 5인의 시의원

- 제263조** ① 위원회는 9월 중에 중죄법원 소재지에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사무는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법원의 수석서기가 담당한다.
- ② 위원회는 제255조, 제256조 및 제257조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는 명부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258-1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제258-1조 제2항에 정한 자도 명부에서 제외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배심원의 연차명부는 제외 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추첨하여 작성한다.
- ⑤ 명부는 추첨순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즉석에서 서명하고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법원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264조** ① 연차배심원 명부 외에 위원회는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중죄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들로 보조배심원 특별명부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이 특별명부에 등재되는 보조배심원의 수는 50인 이상 700인 이하로 하고 국참사원령에 따라 각 중죄법원별로 정한다.

- 제265조** ① 연차명부와 특별명부는 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이를 각 시장·군수에게 전달한다. 시장·군수는 명부에 등재된 자 가운데 사망자, 법률상 무자격자 또는 검직 금지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중죄법원이 소재하는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죄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나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연차명부 및 특별명부에서 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를 제외할 권한이 있다.

- 제266조** ① 중죄법원 개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중죄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나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연차명부로부터 당해 재판을 위한 40명의 배심원과 특별명부로부터 12명의 보조배심원을 추첨한다.

② 추천된 자 중에서 사망한 자, 제255조, 제256조 또는 제25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당해 도에서 5년 이내에 배심원의 직무를 행한 1인 또는 수인의 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명부 및 특별명부에서 추천을 통해 지명된 1인 또는 수인의 자로 즉시 대체한다. 중죄법원 소재지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 및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부적격자의 이름을 연차명부 및 특별명부에서 제외한다.

③ 추천을 통해 선발된 부적격자가 당해 연도 내에 제26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명부 및 특별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267조 ① 도지사는 적어도 재판의 개정 15일 전까지 각 배심원에게 연차명부 및 특별명부 초본을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개정기일, 예상 재판기간,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288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이때 소환된 배심원에게, 통지서에 첨부한 영수증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반송해 줄 것을 통지한다.

② 필요한 경우, 서기는 경찰 및 헌병대원에게 지시하여 소환장에 응답이 없는 배심원들을 찾아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중죄재판의 준비절차

제1절 필요적 행위

제269조 기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에 대해 항고를 받은 중죄항고법원이 기소결정을 추인한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은 중죄재판의 개정지 소재 구치소로 이감한다.

제270조 ① 피고인이 도망하였거나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본편 제8장에 정한 바에 따라 결석재판한다.

②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재판기일은 최소한 재판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신고된 주소 또는 법원 서기에게, 아니면 지방법원이나 중죄법원 검사에게 통지한다.

제271조 ①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것이 아닌 때에는 고등검사장은 소송 기록을 중죄재판이 행해지는 지방법원 사무국에 송부한다.

② 증거물도 전항의 지방법원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272조 ① 중죄법원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도착하고 서기에게 증거물이 송부된 후 최단기간 내에 피고인을 신문한다.

②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27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③ 재판장은 배석판사 중 1인에게 신문을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통역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72-1조 ① 중죄법원 서기를 통해 행정절차를 거쳐 소환된 피고인이 중죄법원 재판장의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피고인을 구인할 수 있다.

② 중죄법원의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거나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구속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법통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인영장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거나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 개시 시부터 피고인을 사법통제에 부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관련 경죄를 위하여 이송된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

③ 언제라도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3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성명을 묻고 기소 결정 또는 항소를 한 경우 중죄 항고법원의 기소 결정을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74조 ①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명한다.

③ 전항의 지명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지명은 무효로 한다.

제275조 예외적으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부모 또는 친구 중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76조 ① 제272조 내지 제285조에 정한 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서기·피고인, 통역인이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이 서명한 조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한다.

② 피고인이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277조 심리는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상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개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제278조 ① 피고인은 그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변호인은 소송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 한 즉석에서 일체의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279조 각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에게는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조서, 증인의 진술서 및 감정보고서의 사본을 무상으로 교부한다.

제280조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 또는 그들의 변호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의 소송기록 사본을 교부받거나 교부받게 할 수 있다.

제281조 ① 검사와 사소청구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검사와 사소청구인이 있는 때에는 사소청구인에게, 최소한 변론개시 24시간 전까지 증인으로서 진술하려고 하는 자의 명단을 송부한다.

② 예심수사 과정에서 감정을 한 자를 감정 작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소환한 때에는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송달장에는 증인과 감정인의 성명·주소·직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청구한 증인의 소환비용 및 일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일당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는 변론개시 최소 5일 이전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인 명단에 열거된 증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명단에는 최대 5인까지만 기재할 수 있다.

제282조 ①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당해 재판의 배심원 명부는 적어도 변론 개시 전날까지 각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는 주소 또는 거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배심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 2 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제283조 ① 재판장은 배심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배심 종결 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일체의 예심수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심리는 재판장, 배석판사 중 1인, 특별히 재판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예심판사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제167조를 제외한 제1권 제3편 제1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284조 ① 보충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조서 및 기타 서류 또는 자료는 사무국에 맡겨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② 전항의 조서 등이 접수되면 서기는 이를 검사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검사 또는 당사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③ 고등검사장은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록은 24시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85조 ① 동일한 중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수개의 공판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소송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②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인에게 수개의 공판 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86조 공판 회부 결정이 관련 없는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내려진 경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범죄 중 1개 또는 수개에 대하여만 즉시 소추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87조 재판장은 사건목록에 게재되는 사건이 당해 개정 기간 내에 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개정 기일로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재판의 개시

제 1 절 배심원 명부의 수정

제288조 ①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공판을 개정한다.

- ② 서기는 제266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배심원의 성명을 호명한다.
- ③ 법원은 배심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받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배심원에 대하여는 3,75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⑤ 직접 또는 주소로 전항의 벌금을 통지 받은 배심원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죄법원 소재 경죄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 ⑥ 본조에 규정된 형은 소환에 응한 후 그 직무를 종료하기에 앞서 퇴정하고, 법원이 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289조 ① 출석한 배심원 중에 제255조, 제256조 및 제257조가 요구하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연차명부에서 말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성명을 중죄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할 것을 명한다.

- ② 사망한 배심원의 성명도 전항과 같다.
- ③ 법원 구성원 또는 배심원 중 1인과 배우자·부모 또는 숙부, 조카와 동일 촌수 내의 친족임이 판명된 배심원의 성명도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89-1조 ① 불출석 또는 법원의 제명 등 사유로 명부 상 배심원이 23인 미만이 되거나 재판 도중 배심원이 26인 미만이 된 때에는 중죄법원은 배심원을 새로 임명하여야 하고, 보조 배심원 중에서 특별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다. 그리고도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명부에 등재된 배심원 중에서 공개 법정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으로 보충하며, 재차 부족한 경우에는 연차명부에 등재된 당해 도시의 배심원 중에서 이를 보충한다.

② 중죄법원이 통상 개정되어야 할 곳 이외의 곳에서 개정되는 경우에 부족한 배심원은 연차명부에 등재된 당해 도시의 배심원 중, 공개법정에서 추첨으로 이를 보충한다.

③ 전항에 따라 중죄재판이 열리게 된 도시의 연차명부에서 차출한 배심원 및 특별명부에서 차출한 보조배심원의 성명은 명부에서 말소한다.

제290조 ① 법원의 결정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유를 붙여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안 판결에 대한 것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면 상소를 통해 불복할 수 없다.

제291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각 사건의 재판에 앞서 제288조, 제289조 및 제289-1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그 외에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배우자·부모 및 숙부 또는 조카와 동일 촌수 내의 친척인 자의 성명과 당해 사건의 증인·통역인·고발인·감정인·고소인 또는 사소청구인 및 당해 사건의 사법경찰관리 또는 예심수사를 한 자의 성명을 명부에서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부를 수정할 것을 명한다.

제292조 제266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구성을 정정하는 일체의 결정은 서기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통지한다.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론 개시를 연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 절 공판배심의 구성

제293조 ①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 개정한다.

- ② 공판배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구성한다.
- ③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항의 절차는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294조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생년월일·출생지·직업 및 주소를 확인한다.

제295조 ① 서 기는 출석이 면제되지 않은 배심원의 이름을 호명한다.

- ② 전항의 배심원의 이름을 기재한 카드를 투표상자에 넣는다.

제296조 ① 공판배심은 제1심의 경우 9명의 배심원으로, 항소심의 경우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 ② 법원은 배심원 명부의 추첨을 하기에 앞서 공판배심원과는 별도로 심리에 참여할 1인 또는 수인의 보조배심원을 추첨할 것을 결정으로 명하여야 한다.
- ③ 공판배심원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심리를 계속함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배심원으로 이를 대체한다.
- ④ 전항의 대체는 추첨으로 호명된 순서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297조 ① 제29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그리고 검사의 순서로 배심원의 성명을 투표상자에서 꺼낸 다음에 기피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을 기피한다.

- ②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나 검사는 기피 사유를 진술할 수 없다.
- ③ 공 판배심은 제296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기피되지 아니한 9인 또는 12인의 배심원의 성명 및 제296조에 규정된 보조배심원의 성명을 추첨함에서 꺼내 구성한다.

198 제2권 판결법원

제298조 중죄법원이 제1심일 경우 기피할 수 있는 배심원의 수는 피고인은 5인 검사는 4인이고, 중죄법원이 항소심인 경우에는 피고인은 6인 검사는 5인을 한도로 한다.

제299조 ① 피고인이 수인일 때에는 협의하여 배심원을 기피하거나 개별적으로 기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1인의 피고인에 대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기피할 수 없다.

제300조 수인의 피고인 간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피하지 않을 경우, 추첨으로 피고인들 간의 기피 순서를 정한다. 이 경우 1인의 피고인에 의하여 기피된 배심원은 모든 피고인을 위하여 기피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총 기피 가능한 수에 달하기까지 이를 계속한다.

제301조 수인의 피고인은 공동으로 일부에 대하여 기피할 수 있으나, 남은 숫자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기피하는 경우에는 따로 한다.

제302조 서기는 공판배심의 구성절차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303조 배심원은 장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판 부 옆에, 장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청석·당사자 및 증인으로부터 격리되어 피고인석과 마주보는 좌석에, 추첨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앉는다.

제304조 ① 재판장은 배심원들을 기립·탈모시킨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은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가장 양심적으로 심리하고, 피고인의 이익과 그를 기소한 사회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누구와도 교통하지 아니하며, 증오나 편견, 공포나

자비에 이끌리지 않고, 피고인은 어떤 경우에도 무죄로 추정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여, 여러분의 양심과 내면의 확신에 따라 성실하고 자유로운 인간에 합당한 공평함과 의연함으로 증거에 따라 결정하며, 직무를 마친 뒤에도 평의의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② 각 배심원은 한 사람마다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제305조 재판장은 배심원이 구성되었음을 선언한다.

제305-1조 변론 전 모든 절차를 무효화하는 사유로써 제316조에 따라 정칙 항고에 의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이의는, 공판배심의 구성 이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룰 수 없다.

제 6 장 심 리

제 1 절 총 칙

제306조 ① 공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공개한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개 법정에서 이를 선언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미성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공소가 강간 또는 성폭력을 수반하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피해자인 사소청구인 중 1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사소청구인 중 1인의 반대가 없는 한 재판의 비공개를 명할 수 있다.

- ④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때에는 제316조에 정한 사안에 대한 선고도 비공개로 한다.
- ⑤ 본안에 대한 판결은 항상 공개법정에서 선고하여야 한다.
- ⑥ 본조의 규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가 변론 개시 당시 성년이 된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중죄소년법원에도 준용된다. 단, 계속 미성년인 다른 피고인이 있거나,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가 변론 개시 당시 성년이 된 다른 피고인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심리는 중단 없이 법원의 판결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한다. 다만, 법원과 피고인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휴정할 수 있다.

- 제308조** ① 개정 후에는 일체의 녹음 또는 음성방송장치, 텔레비전 또는 영화 카메라, 사진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18,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벌금은 제4권 제8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다만, 재판장은 자신의 감독 하에 심리 과정을 녹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녹음된 저장매체는 봉인되어 중죄법원 사무국에 보관한다.
 - ④ 영상녹화물은 중죄법원의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평의 과정 중에는 제347조 제3항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항소사건을 다루는 중죄법원, 대법원 재심위원회, 재심 청구를 받은 대법원, 재심 청구를 받아 이를 파기 또는 취소한 후 사건을 맡게 된 이송법원에서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 ⑤ 봉인은 고등법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형 선고를 받은 자나 제623조 제3호에 정한 자의 입회하에 이들을 정식으로 소환한 후 개봉한다.
 - ⑥ 봉인을 개봉한 후 고등법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녹음을 녹취하게 한 뒤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 ⑦ 본조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절차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제309조 ① 재판장은 법정경찰권 및 소송지휘권을 갖는다.

② 재판장은 존엄을 해하거나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심리를 지연시키는 일체의 발언을 제지한다.

제310조 ① 재판장은 자신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진실발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16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 법원의 심판을 구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심리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누구든 구인영장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거나, 심리의 전개 과정에서 진실발견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아니하며 그의 진술은 참고자료로만 취급한다.

제311조 ① 배석판사 및 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신청한 후 피고인 및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배석판사 및 배심원은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제312조 ① 제30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및 각 당사자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신청한 우에 피고인·사소청구인·증인·기타 법정에 소환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은 재판장을 통해 질문한다.

제313조 ① 검사는 법의 이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청구를 행한다.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는 증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한다.

② 심리 도중 검사가 한 청구는 서기가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이 청구에 관한 모든 결정에는 재판장 및 서기가 서명한다.

제314조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예심수사와 재판은 중지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15조 피고인·사소청구인 및 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316조 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에 대해서는 검사, 각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은 본안에 대하여 예단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중죄법원이 사건을 항소심으로서 심리할 때 위 결정은 본안판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면 상소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중죄법원이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할 때 위 결정은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본안 판결과 함께 다른 중죄법원이 사건을 재심하는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당 법원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절 피고인의 출석

제317조 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은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274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지명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18조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다만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위를 붙인다.

제319조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법의 이름으로 출석을 명하고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며 경찰력의 도움을 받는다. 집행관은 재판장의 명령 및 피고인의 답변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다.

제320조 ① 피고인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은 또한 피고인의 소환불응 사실을 확인하는 조서를 공판정에서 낭독한 후 피고인이 껄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공판기일 후, 중죄법원의 서기는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조서를 읽어주고, 검사의 청구와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을 그에게 송달한다. 이 경우 대심절차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20-1조 제272-1조 제2항 및 제379-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장은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력으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제321조 ① 법정에 출석한 자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때에는 재판장은 그의 퇴정을 명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집행함에 있어 그 자가 명령에 저항하거나 또는 소란행위를 한 때에는 즉석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하고, 재판을 통해 2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법정모독을 하거나 사법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된 별도의 형이 적용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행위자를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력을 통해 법정에서 퇴정시킨다.

제322조 ① 피고인 자신이 질서를 방해한 때에도 제3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피고인에게 퇴정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력으로 중죄법원에 보호유치한다. 그리고 심리가 종료된 후 제320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진행한다.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제323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닌 때에는 재판장은 그에 대하여 양심에 반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예의와 절제를 지켜 피고인을 변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한다.

제324조 재판장은 집행관을 통하여 검사·피고인·사소청구인이 신청하고 제281조의 규정에 따라 호명된 증인을 소환한다.

제325조 재판장은 증인에게 대기실에 대기할 것을 명한다. 증인은 진술할 때 외에는 그 방을 나올 수 없다. 재판장은 진술 전에 증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한다.

제326조 ① 소환을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증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즉시 경찰력으로 법원에 구인할 것을 명하거나, 사건을 다음 기일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어느 경우에도, 법원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3,750유로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제226-14조 및 제226-13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취재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기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증인은 아는 바대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을 선고 받은 증인은 선고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구두 선고일 경우에는 고지 시로부터, 우편송달일 경우에는 주거지로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당해 개정기일 또는 다음 개정기일에 재판한다.

제327조 ① 공판 회부 결정문, 중죄법원이 항소심인 경우에는 제1심 선고에 대하여 중죄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 그에 대한 답변과 결정문, 선고된 판결문을 낭독함에 있어, 재판장은 피고인과 배심원들에게 주의 깊게 이를 듣도록 한다.

② 전항의 낭독은 서기가 한다.

제328조 ①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안 된다.

제329조 검사 또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예심수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없거나 소환된 사실이 없더라도 제281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된 경우에는 심리 중 증인신문의 대상이 된다.

제330조 ① 검사 또는 당사자는 소환되지 않은 증인이나 소환장의 송달에 문제가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재판한다.

③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소환된 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31조 ① 각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진술한다.

② 증인은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그 성명·연령·직업·주소 또는居所, 증인이 공판 회부 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발생 이전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인이 피고인 또는 사소청구인의 부모 또는 친·인척인지 여부, 친척 이라면 그 촌수 등을 고지해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또는 사소청구인과 업무 상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③ 증인은 증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증오와 공포심 없이 일체의 진실을 말하고, 진실 이외의 어떠한 사실도 진술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서한다. 증인은

구두로 진술하며, 재판장은 신문 중에 증인이 서류 등을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09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의 증언은 이를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⑤ 증인은 오로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인격 및 그 도덕성에 대하여 증언한다.

제332조 ① 각 증언이 끝난 후 재판장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검사,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의 변호인, 피고인, 사소청구인은 제3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질문할 수 있다.

제333조 증인의 증언과 그 증인이 앞서 한 진술 사이에 사실의 추가, 변경 또는 차이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서기에 조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조서는 공판조서에 첨부한다.

제334조 각 증인은 증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변론 종결 시까지 법정에서 머무른다.

제335조 다음 각 호의 자는 선서 하에 증언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부모, 기타 직계존속 또는 동일한 공판에 출석하여 심리를 받는 다른 피고인
2. 자녀 기타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이상과 동일한 촌수의 친족
5. 배우자. 이혼 후에도 같다
6. 사소청구인
7. 16세 미만의 아동

제336조 ① 다만, 전조에 열거된 자에게 선서를 시켜 증언을 하게 한 경우에도 검사 및 당사자가 그 선서를 시킨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진술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② 검사 또는 당사자 1인 또는 수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소환된 자를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337조 ① 법률상의 의무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법원에 고발한 자도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소환된 자가 고발인이라는 취지를 중죄법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률 상 고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검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38조 검사와 사소청구인 및 피고인은 증언 후에 증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들은 후에 다시 입정시켜 단독으로 혹은 대질 하에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언제든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9조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이나 신문 후에, 1인 또는 수인의 피고인을 퇴정시킨 후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피고인에 대하여 그의 퇴정 중에 진행된 상황 및 그 결과를 고지한 후가 아니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40조 신문 중에 판사, 검사 및 배심원은 증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답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필기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심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제341조 ① 진술 중 또는 진술 후에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의견을 듣는다.

②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배석판사 및 배심원에게도 이를 제시하게 한다.

제342조 ① 신문 후에 어느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이나 검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히 그 증인에게 변론이 끝날 때까지 변론에 참석하고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법정에서 머무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인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재판장은 그를 일시적으로 체포한다.

② 중죄법원이 판결을 낭독하거나 또는 다음 기일로 연기한 때에는 재판장은 경찰로 하여금 전항에 정한 자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인치할 것을 명하고, 검사는 그 자에 대하여 예심수사 개시 청구를 한다.

③ 서기가 제333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343조 재판장은 언제든지 직권이나 검사 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따라 심리를 다음 기일로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4조 ① 피고인·사소청구인·증인 또는 그들 중 1인이 프랑스어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때 또는 심리에 제출된 문서를 번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21세 이상의 통역인을 임명하여 그에게 자기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한다.

② 검사·피고인·사소청구인은 기피 이유를 진술하여 통역인을 기피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에 대하여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통역인은 피고인 또는 검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배심원·공판담당서기·당사자 및 증인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5조 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일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수화통역인 또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한다. 지명된 자는 자기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사법에 협력한다는 취지로 선서한다.

② 재판장은 또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장치의 도움을 받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쓰고 입을 줄 아는 경우, 재판장은 그와 필기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④ 전조의 모든 규정들은 본조에 적용된다.

⑤ 재판장은 청각장애인인 증인 또는 사소청구인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46조 ① 신문이 끝나면 사소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검사가 논고한다.

②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한다.

③ 사소청구인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재항변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절 변론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제347조 ① 재판장은 변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② 재판장은 소추 및 방어방법에 관하여 요약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중죄법원 서기에게 위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재판장은 제355조 이하에 규정된 평의를 위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의 결정서를 재판장 관리 하에 둔다.

④ 평의 도중 중죄법원이 1개 또는 수개의 소송서류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평의실로 기록을 송부할 것을 명한다. 기록은 검사와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의 변호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위하여 개봉한다.

제348조 재판장은 법원 및 배심원이 답변하여야 할 질문을 낭독한다. 질문이 기소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거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낭독 요청을 포기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낭독할 필요가 없다.

제349조 ① 각각의 주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② 기소 결정문의 주문에서 특정된 각 사실에 대하여는 각 1개의 질문이 제시된다.

③ 각 가중사유는 독립된 질문사항으로 한다.

④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적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49조-1조 ① 형법 제122-1조(제1항), 제122-2조, 제122-3조, 제122-4조(제1항 및 제2항), 제122-5조(제1항 및 제2항), 제1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상 책임면제 사유의 존재를 방어 방법으로 원용하였을 경우, 기소 결정문의 주문에 특정된 각각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에 부친다.

1.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범하였는가?

2. 피고인이 형법 상 책임면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가?

② 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에 대한 각 기소사실에 대하여 책임 무능력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을 일괄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다.

제350조 심리 결과 기소 결정문에 적시되지 아니한 1개 혹은 수개의 가중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1개 또는 수개의 특별질문을 제시한다.

제351조 심리 결과 기소 결정문과 다른 법률상 죄명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재판장은 1개 또는 수개의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제352조 질문에 관하여 부대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법원이 제316조에 규정된 요건 하에 이를 재판한다.

제353조 ① 중죄법원이 퇴정하기에 앞서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낭독하고 위 지시사항은 큰 글자로 써 평의실의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② 법은 배심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배심원에게 증거가 충분한지 또는 완전한지를 판단할 때 특정 법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법은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 및 그 방어방법이 자신의 이성에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묻고 또 진실한 양심에 따라 탐구할 것을 배심원에게 명할 뿐이다. 법은 배심원에 대하여 「여러분은 내면의 확신을 얻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을 할 것이고, 이것이 배심원의 의무의 전부다.

제354조 ①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킨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 재판장은 그에게 평의기간 중 법원을 떠나지 말 것과 필요한 경우 머물러야 할 1개 또는 수개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위장에게 피고인이 위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② 재판장은 수위장에게 평의실의 출입구를 지키도록 한다. 누구든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재판장의 허가가 없으면 평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한다.

제7장 판결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제355조 ① 법원의 판사와 배심원은 평의실로 퇴장한다.

② 그들은 평결을 한 후가 아니면 평의실을 나올 수 없다.

제356조 법원과 배심원은 평의를 한 후 투표용지를 통해 개별적·순차적으로 투표한다. 투표는 주된 사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그 외의 주제가 있을 경우, 형사상 책임면제사유, 가중사유, 보충질문, 법률상 형의 면제·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투표한다.

제357조 ① 각 판사와 배심원은 위 투표를 위하여 중죄법원의 관인이 날인되고 “나의 명예와 양심에 따라 나의 선고는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개봉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② 각 판사와 배심원은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내용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배치된 책상 위에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말을 비밀리에 기입하거나 또는 기입하게 한다. 각 판사 및 배심원은 기입을 종료한 투표용지를 봉하여 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이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358조 ① 재판장은 법원과 배심의 구성원이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이를 개표한다. 재판장은 즉석에서 질문의 난외 또는 말미에 답변을 기록한다.

② 백지투표 또는 다수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투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입한다.

③ 각 표의 개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각한다.

제359조 피고인에게 불리한 모든 결정은 중죄법원이 제1심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최소한 8표의 다수, 제2심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최소한 10표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360조 결정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취지인 경우에는 제359조에서 요구하는 다수를 얻었다는 사실만 선언하고 득표수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제361조 2개 또는 수개의 답변 간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361-1조 제349-1조가 적용되는 경우 중죄법원이 제1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제2문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면 중죄법원은 유죄로 선고한다. 제1문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제2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면 중죄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제362조 ① 유죄 취지의 답변이 있을 때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형법 제132-18조 및 제132-24조, 필요한 경우 제132-19-1조의 규정을 읽어준다. 중죄법원은 이어형의 적용에 대해서 평의하고, 각 피고인별로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② 형의 결정은 투표자의 절대다수를 필요로 한다. 다만 법정형에서 최장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죄법원이 제1심으로 선고한 때는 최소한 8표, 중죄법원이 제2심으로 선고한 때는 최소한 10표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위의 다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형의 최고형은 선고하지 못하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징역 30년, 최고 법정형이 징역 30년 이하일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금고형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③ 투표를 2회 실시하고도 다수결에 의한 형의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전회의 투표에서 가장 중한 형은 이를 제외한다.

제3차 투표에서도 절대다수에 의하여 형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제4차 투표를 하되 가장 중한 형은 제외하면서 형을 선고할 때까지 투표한다.

④ 중죄법원이 경죄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다수결로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단순히 형의 집행유예를 명할 수 있다.

⑤ 중죄법원은 부가형 또는 보충형에 대하여도 평의한다.

⑥ 제706-53-1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중죄법원은 선고된 형의 전부를 집행하기에 앞서 제706-53-14조에 따른 보증금의 몰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을 선고 받은 자의 상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63조 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적용될 형법 규정이 없거나 폐지되었거나, 피고인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때에는 중죄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

② 피고인에게 형 면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죄법원은 유죄선고를 한 후 형 면제를 선고한다.

제364조 평결의 기재는 질문지에 한다. 재판장 및 추첨에 의하여 최초로 지명된 배심원은 그 용지 위에 서명한다. 최초로 지명된 배심원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중죄법원 구성원의 다수결로 지명된 배심원이 서명한다.

제365조 질문에 대한 중죄법원의 답변은 취소할 수 없다.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제366조 ① 중죄법원은 다시 속개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출석시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어주고, 형 선고, 형 면제 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② 재판장은 적용한 법조문을 공판정에서 낭독하고, 낭독하였다는 취지는 이를 판결서에 기재한다.

③ 형의 선고 또는 형 면제 판결을 할 경우에는 판결에서 신병 구속에 대하여 선고한다.

제367조 ① 피고인이 형을 면제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징역의 실행 이외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구속기간에 상응하는 징역의 실행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②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항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148-1조 및 제148-2조 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석방 청구권과는 별도로, 구금영장은 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지속된다. 또, 형의 선고 시까지 구금이 계속되도록 새로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중죄법원은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죄가 특별한 보안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당해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의 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31-6조 내지 제131-11조에 의한 형사 제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제368조 적법하게 무죄가 선고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제369조 심리 중에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검사가 그에 대한 소추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경찰을 통하여 무죄 선고된 피고인을 지체 없이 중죄법원 소재지 검사에게 인치할 것을 명한다. 이 경우 검사는 즉시 피고인에 대한 예심수사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0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한 후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항소 또는 상고 사유와 그 기한 및 절차를 고지한다.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제371조 ① 중죄법원은 공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후, 당사자 및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의 관여 없이 사소청구인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소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재판한다.

② 법원은 구성원 중 1인에게,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공판정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당사자는 다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어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한다.

제372조 사소청구인은 형 면제나 무죄 석방의 경우,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의 결과인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3조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원에 유치한 물건의 환부를 명할 수 있으나, 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환부할 수 없다. 단,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상소의 이유가 있음에도 기간을 도과해 버렸거나, 상소하여 최종판결을 받았음을 환부를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환부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373-1조 ① 압수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은 배심원의 관여 없이 몰수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고청의 비용으로 물건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몰수 또는 압수된 동산이 진실발견의 증거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보관으로 인하여 물건의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몰수 및 관리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가를 국고에 귀속한다.

- ③ 법원의 결정은 제379-4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파기된 사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등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갖는다. 다만,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검사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따라 환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무죄석방 결정이나 몰수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등은 물건의 반환이나 처분한 물건의 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국고청의 비용으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4조 ① 법원이 제1심으로 판결하는 경우, 제380-8조 규정과는 별도로,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가집행할 수 있다.

② 다만, 예심수사 중 내린 결정은 가집행하여야 한다.

제375조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사소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비용 가운데 법률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법원은 형평의 원칙이나 형 선고를 받은 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5-1조 사소청구인은 법원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지급에 관하여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75-2조 ① 동일한 중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환부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에게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연대하여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판결문 및 조서

제376조 서기는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결문에는 적용된 법조문을 표시한다.

제377조 ① 중죄법원 평의 후에 선고한 판결正本과 법원이 선고한 판결正本에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② 전항의 판결문에는 검사가 참석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8조 ① 법정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기는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서기가 이에 서명한다.

② 전항의 조서는 적어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379조 재판장이 직권이나 검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한, 조서에 피고인의 답변과 증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인 진술의 추가, 변경 또는 차이에 관한 제33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79-1조 ① 중죄법원의 판결正本은 모두 이를 당해 중죄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사무국에 모아서 보관한다.

② 다만, 고등법원이 소재하는 도의 중죄법원이 선고한 판결正本은 당해 고등법원 사무국에 모아 보관한다.

제8장 중죄의 궤석재판

제379-2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궤석재판한다. 변론 도중에 궤석하였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와 같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금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규정은 제320조 및 제322조에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79-3조 ① 법원은 피고인의 궤석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입회 없이 심리한다. 단, 다른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거나, 변론 개시 후에 피고인의 궤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문과 참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제306조 내지 제379-1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소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한다.
- ④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단, 이미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9-4조 ① 제379-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이미 수형 중이거나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중죄법원의 모든 절차에 관한 명령은 무효로 하고, 제269조 내지 제37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재판한다.

- ② 제379-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유죄판결 전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구금영장으로서 효력이 있고, 피고인은 중죄법원 출석 시까지 구금된다. 구금 시부터 기산하여 제181조에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석방된다.

제379-5조 궤석재판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는 항소할 수 없다.

제379-6조 본장의 규정은 관련 경죄로 중죄법원에 회부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경죄로 중죄법원에 회부된 자들에 대한 재판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죄법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마찬가지로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제 9 장 제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제1절 총 칙

제380-1조 ① 제1심인 중죄법원의 선고는 본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항소는 대법원 형사부가 지정한 다른 중죄법원에 제기하며 그 법원은 본편 제2장부터 제7장까지 규정된 방식과 요건에 따라 재판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 법원은 배심원 없이 재판한다.

1. 중죄와 관련된 경죄 하나에 대하여만, 중죄법원에 회부된 피고인만 항소한 때
2. 유죄판결 또는 무죄석방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중죄와 관련된 경죄에 관한 것이고 중죄에 대해서는 항소가 없을 때

제380-2조 ① 항소권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있다.

1. 피고인
 2. 검사
 3. 민사 상 이익에 관련해 민사상 책임이 있는 자
 4. 민사상 이익과 관련한 사소청구인
 5. 공무원이 공소를 수행한 사안에 있어 검사가 항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
- ② 고등검사장도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다.

제380-3조 공소에 대한 항소심을 재판하는 중죄법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80-4조 ① 항소기간 및 항소심 진행 중에는 판결은 그 집행이 유예된다.

② 다만, 환형유치명령은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효력을 계속 발생한다.

제380-5조 공소에 대한 판결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사소와 관련된 사소 청구인의 항소는 경죄법원 항소부에 제기한다. 이 경우 제380-14조 및 제380-15조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380-6조 ① 사소에 대하여 피고인, 민사상 책임자, 사소청구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을 재판하는 중죄법원은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사소청구인은 항소이유에서 어떠한 새로운 청구도 할 수 없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입은 손해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배상은 예외로 한다. 사소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제1심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한 피해자는 변론 종결 시까지 항소심을 재판하는 중죄법원에 사소청구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항 및 제375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0-7조 항소기간 및 항소심 진행 중에는 제374조 규정에 따라 사소에 대한 판결의 집행은 유예된다.

제380-8조 ① 중죄법원이 1심으로서 사소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지급을 명할 경우, 법원장은 항소이유로 판단해 볼 때 가지급 내용이 명백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가지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원장은 모든 회복 또는 배상에 필요한 인적·물적 담보가 있을 경우 가집행의 정지를 명하지 않고 집행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이 사소에 대한 재판을 하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가집행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가집행 신청이 되었으나 법원이 그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가집행 신청을 받은 법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본조의 적용에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지정된 중죄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장에게도 관할권이 있다.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제380-9조 ①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한다.

② 그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경우,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고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제380-10조 일방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5일의 추가 항소기간이 부여된다.

제380-11조 ① 피고인은 제272조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신문이 있을 때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취하로 검사 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는 무효가 된다.

③ 항소 취하는 중죄법원장이 명령으로 선고한다.

④ 항소한 피고인이 변론개시 전 또는 재판 도중에 도주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중죄법원장은 피고인의 항소의 무효를 선언한다.

제380-12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대상이 된 판결을 한 중죄법원의 사무국에 한다.

- ② 전항의 신청에는 서기·항소인 본인·변호인·고등법원 대소사(代訴士) 또는 특별대리인이 서명한다. 특별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그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서기가 작성한 증서에 첨부한다. 항소인이 서명을 할 수 없을 때는 서기가 그 취지를 기재한다.
- ③ 위 항소청구서는 항소기록부에 등록되고 누구든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④ 고등검사장이 항소를 제기하고 중죄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내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항소청구서에 검사의 서명을 받아 지체 없이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중죄법원 서기에게 송부한다. 항소청구서는 전항에 규정된 등록부에 등록되고 서기가 작성한 증서에 첨부된다.

제380-13조 ① 항소인이 구속되어 있을 경우, 항소는 구치소 장에 대한 신고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고는 구치소 장이 확인하여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한다. 항소인도 또한 이에 서명한다. 항소인이 서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구치소의 장이 그 취지를 기재한다.
- ③ 위 서류는 지체 없이 항소대상 판결을 한 중죄법원 사무국에 그 원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제출한다. 그 원본 또는 사본은 제380-12조 제3항에 정한 등록부에 등록되고 서기가 작성한 증서에 첨부된다.

제 3 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제380-14조 ① 항소가 등록된 때 검사는 지체 없이 대법원 형사부 사무국에 자신의 의견과 함께 항소 대상 판결, 필요한 경우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 ② 항소를 수리한 달에 대법원 형사부는 검사,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의 서면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항소심을 재판할 중죄법원을 지정한다.

- ③ 위 절차는 파기환송에 따른 절차에 준한다.
- ④ 제380-1조 제2항의 예외로서 해외 道,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폴리네시아 및 왈리 푸투나 제도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대법원 형사부는 그 항소심을 재판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달리하는 동일한 중죄법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은 마요뜨 형사법원, 썩 피에르 미켈론 형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우체국이 휴가이거나 부재, 장애 또는 법률상 검직 불능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소심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의 장 및 필요한 경우 배석판사의 직무는 매년 작성되는 명단에 기하여 파리고등법원장이 지명하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수행한다. 마요뜨 형사법원의 경우 썩 드니 드 라 레위니옹 고등법원장이 지명한다.

제380-15조 대법원 형사부는 항소가 법정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제기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항소심을 담당할 중죄법원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제 2 편 경죄의 재판

제 1 장 경죄법원

제 1 절 경죄법원의 관할 및 사건수리

1. 총 칙

제381조 ① 경죄법원은 경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② 법률이 징역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를 경죄로 한다.

제382조 ① 범죄지, 피고인의 주거지, 피고인의 체포지 경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 체포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도 체포지 경죄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② 형법 제227-3조에 규정된 가족유기죄에 있어서는 부양료·분담금·원조금 또는 위 법조에 규정된 교부금을 받을 자의 거주지나 주소지의 법원도 재판권을 가진다.

③ 경죄법원의 재판권은 법원에 계속 중인 범죄와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죄 및 위경죄에도 미친다. 경죄법원의 관할권은 제203조에서 규정한 관련 경죄 및 위경죄에도 미친다.

제383조 피고인 1인에 대한 재판권은 모든 공동정범 및 공범에게 미친다.

제384조 공소 제기된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피고인이 부동산 물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방어를 위하여 주장하는 모든 항변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제385조 ① 경죄법원은 예심판사 또는 고등법원 예심부에서 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 절차의 무효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② 경죄법원으로서의 이송 결정이 제183조 제4항 또는 제2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송 결정이 제184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때, 경죄법원은 절차의 적법을 위하여 새로운 예심수사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③ 예심판사의 이송 결정이 제175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죄법원에 절차 무효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경죄법원이 관할하게 된 사건이 예심수사절차를 통하여 경죄법원에

이송된 것이 아닌 경우, 경죄법원은 선행 절차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재판한다.

- ⑤ 소환의 무효는 제565조에 정한 요건 하에서만 선고될 수 있다.
- ⑥ 무효 주장은 본안에 관한 일체의 항변에 앞서 제기되어야 한다.

제385-1조 ① 제388-1조와 제388-2조의 경우,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의와 보험 계약 약정 또는 보험업자 면책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일체의 항변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이의에 대하여는 보험업자의 제3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전부 면책시키는 경우에만 심판할 수 있다.

② 제388-2조 규정에 따라 소송 고지를 받은 보험업자가 형사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는 모든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험업자가 보장하는 손해가 아닐 경우 법원은 보험업자를 면책한다.

제385-2조 민사상 이익이 관련된 것일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들에게 화해를 하도록 한 후, 화해 무효 사유와 본안에 관하여 하나의 판결로 재판한다.

제386조 ① 선결 항변은 일체의 본안에 관한 항변 이전에 제기한다.

- ② 선결 항변은 소추의 기초가 되는 범죄능력을 조각하는 것인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선결 항변은 피고인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권리에 관한 것인 때에만 허용된다.
- ④ 항변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법원에 항변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이 기간 내에 피고인이 항변을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항변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속행된다.

제387조 법원이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병합을 명할 수 있다.

제388조 경죄법원은 당사자들의 임의 출석³⁷⁾, 소환장에 의한 소환³⁸⁾, 조서에 의한 소환³⁹⁾, 신속절차기소⁴⁰⁾, 예심판사에 의한 이송 결정에 의하여 관할하게 된 사건을 재판한다.

제388-1조 ① 보험업자의 보상 대상이 되는 손해를 타인에게 입힌 과실치상죄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보험업자의 성명과 소재지, 보험증서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손해의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명시한 내용은 공판조서에도 기재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지정된 보험업자들은 소송에 참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보험업자는 변호사나 代訴士가 대리하여야 한다.

③ 변론 및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위 제1항, 제2항 및 제385-1조 제3항⁴¹⁾, 제388-2조, 제509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손해배상의무자 및 사소 청구인에 관한 규정을 피고인과 사소청구인의 보험업자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37) comparution volontaire

38) citation

39)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40) comparution immédiate. 즉시출두라고도 하며 “길거리 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 피의자를 신속히 재판하는 제도. 파리지방검찰청 및 법원의 실무는 동종 전력있는 재범의 단기실형선고를 위해 많이 활용되며 야간에 절도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오전 10시경 당직검사가 기록검토후 간단한 신문을 거쳐 즉시 기소하고 당일 오후 재판에서 즉석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변호는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국선당직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후 오후재판에서 변론을 거쳐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짐. 제395조 이하 참조

41) 제3항이 아닌 제2항으로 보아야함

제388-2조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최소한 공판 개시 10일 전까지 집행관을 통해서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소추의 취지, 피고인과 사소청구인의 인적사항,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보험증서의 번호, 배상 청구금액 또는 그것이 없을 때에는 손해의 성질과 범위, 법원, 공판 일시와 장소를 보험업자에게 고지한다.

제388-3조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또는 제388-2조에 따라 소송 고지를 받은 보험업자에 대하여는 민사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임의출석과 소환장에 의한 출석

제389조 ① 검사의 공판 고지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출석한 때에는 소환장의 발부를 면제한다.

② 검사는 공판고지서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한다.

③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사전 소환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390조 ① 소환장은 제550조 이하에 규정된 기간 및 방식에 따라 발부한다.

② 피고인이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세금면제사유서 등을 지참하여 출석하거나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이를 지참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소환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소환장에는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 제1018조A 제3항에 정한 법정세액이 증액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0-1조 ① 소환장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제55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서기

또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를 경유하여 고지되거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을 경우 구치소의 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에는 유효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소환장에는 공소사실·적용법조·법원·공판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고,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피고인이 수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세금납부증명서 또는 세금면제사유서 등을 지참하여 출석하거나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이를 지참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 소환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 소환장에는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 제1018조A 제3항에 정한 법정세액이 증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환장에 의한 소환은 피고인이 서명한 조서로 확인하고, 피고인은 조서 사본을 수령한다.

제391조 검사는 모든 고소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제392조 피고인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직접 소환한 사소청구인이 법원의 관할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소환장에 법원의 관할 내에 자신의 법률 상 주소를 명시한다.

제392-1조 ① 사소청구가 공소와 병합되지 않은 경우 경죄법원은 사소청구인의 자력을 고려하여 공탁금을 정하고, 법률구조 대상이 아닌 사소청구인은 공탁금을 기간 내에 서기에게 공탁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공탁하지 않으면 직접소환 청구는 기각된다. 이 공탁금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민사벌금의 지급을 담보한다.

② 사소청구인의 소환에 따라 사건이 계속되어 경죄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접소환의 남용 또는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판단하면 검사의

논고에 따라 판결로써 사소청구인에게 15,000유로 이하의 민사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의 논고는 변론종결 전, 상대방의 변론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소청구인이나 그의 변호인에게 그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심에서 경죄법원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본항에 따라 사소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주장하는 논고를 할 경우, 본항의 규정은 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조서에 의한 소환과 신속절차기소

- 제393조** ① 경죄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알리며, 피의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주장을 들은 후, 예심수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394조 내지 제396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 ②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사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회 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③ 변호인은 즉시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피고인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다.
- ④ 본항의 절차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무효가 된다.

제393-1조 제39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이 고지되어야 한다.

제394조 ① 검사는 이해관계인이 변호인 입회하에 명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10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내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피고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공판일시, 장소를 고지한다. 이러한 고지는 조서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며, 이 경우 사본은 소환장으로 취급한다.

②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을 요구하였을 경우 변호사회 회장에게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공판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이 사실은 조서에 기재된다. 변호사는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을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사법통제 하에 두거나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기의 입회하에 평의부를 주재하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게 피고인을 인치한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통지 후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38조와 제139조, 제142-5조 및 제142-6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고지되고 조서에 기재되며, 조서 사본을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명령 시에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41-2조 및 제141-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때 예심판사의 권한은 검사가 행사한다.

제395조 ①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할 경우, 검사는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여 바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소송의 쟁점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고인을 경죄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② 경죄의 현행범으로 법정형의 장기가 6월 이상인 경우, 검사는 소송의 쟁점에 비추어 즉시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고인을 경죄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당일 출석 시까지 유치되며 감시인의 호송을 받아 법정에 출석한다.

제396조 ① 전조의 경우, 당일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송의 쟁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사는 석방구금판사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석방구금판사는 서기의 입회하에 판사실에서 재판한다.

② 석방구금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제41조 제6항에 규정된 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검사의 구속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석방구금판사는 피고인을 법원에 출석시킬 때까지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결정의 절차는 제137-3조 제1항에 따르고, 피고인의 권리 및 제144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참고하였다는 취지가 결정문에 기재되어야 한다. 결정문에는 범죄사실을 명시하고, 이로써 경죄법원에 사건이 계속된다. 이 결정은 피고인에게 구두로 고지되고 조서에 기재되며, 피고인에게는 조서 사본이 교부된다. 피고인은 늦어도 이 결정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법원에 소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석방된다.

④ 만일 판사가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여 사법통제 하에 두거나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제39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판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한다. 피고인이 사법통제 또는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명령 시에 부과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4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97조 ① 제395조와 제396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일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와 같이 동의함에는 사선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회회장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② 만약 피고인이 개정 중인 공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동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제397-1조 ① 피고인이 개정중인 공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건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 및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2주 이상 6주 이내에 열리는 다음 공판기일로 재판을 연기한다.

②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일 때, 권리를 고지 받은 피고인은 피고사건이 2월 이상 4월 이내에 열리는 공판에 회부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7-2조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부 구성원 중의 1인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라 지명된 예심판사에게 위탁하여 보충심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제46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경죄법원은 사건이 복잡하여 자세한 보충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③ 경죄법원은 우선 피고인을 예심판사에게 출석시킬 때까지 구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한다. 피고인은 당일 중 출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석방된다. 하지만 사건이 예심전담부의 관할에 속하고 당해 지방법원 내에 예심전담부가 없는 때에는 3일 안에 관할권 있는 예심전담부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397-3조 ① 본관에 규정된 모든 경우에 법원은 제141-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사법통제 하에 둘 수 있다. 이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사법통제 하에 둔 피고인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14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95조 이하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구속의 계속을 명할 수 있다. 구속을 명하는 결정은 제135조, 제137-3조 제1항 및 제464-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고, 제144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참고하여 이유를 붙인다. 이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때에는, 본안 판결은 피고인이 법원에 최초로 출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안판결이 없을 경우 구속은 종료되며, 다른 사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은 직권으로 석방된다.

④ 제397-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전항의 기간은 4월로 한다.

제397-4조 ① 피고인을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제395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재판이 계속된 법원은 형의 기간을 불문하고 소송의 쟁점을 고려하여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피고인의 구속을 명하거나 구속의 계속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8-2조 및 제47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제기한 본안에 관한 항소에 대하여 4월 이내에 판결하고, 기간 내에 판결이 없을 경우, 다른 사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은 석방된다.

③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된 형의 기간과 관계없이 제4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7-5조 제550조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관에 규정된 모든 경우에 증인을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소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력을 행사하는 자로부터 구두 소환을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제438조 내지 제441조에 정한 제재를 받는다.

제397-6조 제393조 내지 제397-5조의 규정은 소년사건·언론 관련 경죄사건·정치 관련 경죄사건 또는 특별법에 소추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97-7조 제393조에 따라 검사 앞에 소환된 자가 예심전담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당해 지방법원 내에 예심전담부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6조 또는 제394조 제3항에 따라 관할권 있는 예심전담부에 소환되기까지 사법통제, 전자감시 하의 자택구금 또는 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앞에 소환된 자가 이미 구속 상태인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예심전담부에 3일 안에 소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 2 절 법원의 구성 및 공판의 개정

제398조 ① 경죄법원은 재판장 1인과 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

② 지방법원장은 소송의 성격 상 장시간의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1인 또는 수인의 판사를 보충적으로 심리에 입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경죄법원을 구성하는 1인 또는 수인의 판사가 장애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심리를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직급 순서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의 보충판사로 교체한다.

③ 제398-1조에 열거된 경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경죄법원은 1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그가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할 경죄법원 판사의 지명은, 각 재판부 사이의 업무분담을 위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행하며, 필요할 경우 경죄법원 재판장은 판사들 사이의 업무를 재분배한다.

⑤ 매년 초 지방법원장은 근린법원 판사 중에 필요한 경우 경죄법원의 구성원으로 차출될 판사의 명부를 작성한다. 이 명부는 법원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될 수 있고, 사법관·서기·보충판사 등이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떤 경우에도 경죄법원 구성원 중 비직업 법관은 한 명으로 제한된다.

⑥ 본조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398-1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죄는 제398조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재판한다.

1. 수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관한 1935년 10월 30일 법률 제66조와 69조에 규정된 경죄
2. 도로교통법 상 경죄와 형법 제222-19-1조, 제222-20-1조, 제223-1조와 제434-10조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 과정에서 범한 경죄
3. 전쟁용 무기 및 군수품에 관한 관리를 규정한 1939년 4월 18일 법률 제32조 제2호에 규정된 경죄
4. 국방법 제2339-9조에 규정된 제6급 무기 관련 범죄
5. 형법 제222-11조, 제222-12조(제1호 내지 제10호), 제222-13조(제1호 내지 제10호), 제222-16조, 제222-17조, 제222-18조, 제222-32조, 제227-3조 내지 제227-11조, 제311-3조, 제311-4조(제1호 내지 제8호), 제313-5조, 제314-5조, 제314-6조, 제322-1조 내지 제322-4조, 제322-12조, 제322-13조, 제322-14조, 제433-3조 제1항, 제433-5조, 제521-1조,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 제628조에 규정된 경죄
6. 수렵·어로·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죄 및 제5권 8편에 규정된 경죄
7. 산림법, 나무와 숲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경죄
8. 언론 관련 경죄를 제외하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죄
9. 동물 보호와 생육에 관한 농촌법 및 어로법 위반 경죄
10. 공공통신망을 이용한 지적재산권법 제335-2조, 제335-3조 및 제335-4조 위반 경죄
11. 건축 및 주거에 관한 법 제152-1조 제2항 위반 경죄

②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된 때 또는 신속기소절차에 따라 기소된 때에는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경죄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다른 경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제39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한다.

제398-2조 ① 제3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은 계속된 사건이 제398-1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적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제39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법원에 사건을 이송한다.

② 제39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은 계속된 사건이 제398-1조의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한 때에는, 본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98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③ 제398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은 규명하기에 복잡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제39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결정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사법적 행정처분으로 한다.

④ 제398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398-3조 경죄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가 담당하고, 서기 직무는 지방법원 서기가 담당한다.

제399조 ① 경죄법원의 공판 수와 기일은 지방법원장과 지방법원 검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것도 전항과 같으나, 사건 수리에 관한 검사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매 년도 말에 그 다음 년도를 위하여 법관회의의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항소법원장과 항소법원 검사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공판 수와 기일은 지방법원장이 정하고, 변론준비기일 수와 기일은 지방법원 검사장이 정한다.

제3절 공판의 공개 및 법정경찰권

제400조 ① 공판은 공개한다.

- ② 법원은 공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판정에서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비공개 재판이 명하여진 경우, 부대소송 또는 제459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 항변에 대한 결정의 선고도 비공개로 한다.
- ④ 본안에 대한 판결 선고는 항상 공개된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본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었다가 변론 개시 당시 성년이 된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경죄소년법원에도 준용된다. 피고인이 계속 미성년이거나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다가 변론 개시 당시 성년이 된 다른 피고인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 재판장은 법정경찰권과 소송지휘권을 가진다.

제402조 재판장은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중 특정인의 법정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404조 ① 공판정에서 방청인이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퇴정을 명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를 집행하는 중에 명령에 불복하거나 소란행위를 한 자는 즉석에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하고 재판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사법관에 대하여 모욕 및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한 형법 상 처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정한 자를 강제 퇴정시킨다.

제405조 ① 피고인 자신이 법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에는 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4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피고인이 퇴정을 명령 받은 때에는, 구속 중이 아니라도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력의 감호를 붙여 법원 내에 보호유치하며, 심리 종료 후 다시 입정시키고 그 면전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제 4 절 공 판

1. 피고인의 출석

제406조 재판장이나 재판장에 의하여 지명된 배석판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법원에 사건이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자·사소청구인·증인·감정인 및 통역인의 출석 여부도 확인한다.

제407조 ① 피고인, 사소청구인 또는 증인이 프랑스어를 충분히 말하지 못하거나 공판에 제출된 서류를 번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21세 이상의 통역인을 선임하고 명예와 양심에 따라 재판에 협력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은 이유를 붙인 기피신청으로 통역인을 기피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통역인은 피고인 또는 검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을 구성하는 판사, 공판에 참여한 서기, 당사자 및 증인 중에서 선임할 수 없다.

제408조 ①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수화통역자나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방법에 숙달된 사람을 선임하여 절차에 참여시킨다. 이때 선임된 사람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재판에 협력할 것을 선서한다.

- ② 재판장은 또한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기술적 장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만약 피고인이 읽고 쓸 수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필기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④ 전조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⑤ 재판장은 증인이나 사소청구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09조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경찰이 호송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제410조 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직접 소환을 받은 피고인은, 소환을 한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소환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제557조, 제558조 및 제560조에 따라 소환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된 때에는 동일한 의무가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피고인은 제41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0-1조 ① 제410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사건인 경우,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35-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으로 구속 중인 경우 피고인은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월 이내에 경죄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411조 ① 경죄법원에 소환된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궐석 상태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 또는 직권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대리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의 규정은 모든 소환 형태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중에 개입하거나 변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대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피고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일시를 정하는 공판에 출석하도록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재소환하게 하는 절차를 취한다.

④ 만약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대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걸로 본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410-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한다.

⑤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청구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변론이 연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2조 ①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을 명한다. 단, 제41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여 출석한 경우 변호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대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제411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제413조 피고인이 공판 개시 시점에 출석한 때에는 불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14조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고 특히 민사 문제에 관해서만 심리할 경우에 항상 적용된다.

제415조 손해배상의무자는 언제든지 변호사 또는 代訴士로 하여금 자기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대심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6조 피고인이 건강 상 이유로 법원에 출두할 수 없고,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수명법관이 서기를 대동하고 피고인의 주거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구치소에서, 또,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입회하에 신문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은 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조서를 작성한다. 변론은 피고인을 다시 소환한 후에 재개하며, 처벌할 형을 불문하고 제4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은 대심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7조 ① 출석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청구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정한다.

③ 변호인은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가된 代訴士 중에서만 선임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그 방어를 위태롭게 할 심신장애 상태에 있거나 형사후견의 형에 처하여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그 효과

제418조 ① 경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사소청구인 구성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공판정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할 필요가 없다.

③ 사소청구인은 그 구성을 통해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9조 사소청구인 구성 신청은 공판 전에는 법원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고, 공판 중에는 서기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20조 ① 사소청구가 공판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사소청구인의 신청서에는 소추 대상 범죄사실을 명시하고, 사소청구인이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선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 신청서는 서기가 즉시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사소청구인을 공판에 소환한다.

제420-1조 ① 전조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는,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공판기일 24시간 전까지 법원에 도달되는 등기우편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사소청구를 함으로써 압수물의 환부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등기우편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신청서에는 손해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며, 이 서류들은 즉시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해자에 의한 환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경찰 수사 시에도 검사의 동의하에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은 조서로 작성된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 청구는 사소청구로서의 효력이 있고, 경죄법원과 경찰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 ③ 사소청구인은 법원에 출두할 의무가 없다.
- ④ 환부 청구한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권에 다툼이 있거나 사소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충분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 상 이익에 관한 재판을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하고, 검사는 그 공판기일에 모든 당사자를 소환한다.

제420-2조 제420-1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환부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은 대심절차에 의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55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사소청구인에게 송달한다.

제421조 공판 중에 이루어지는 사소청구는 본안에 대한 검사의 논고가 있기 전에 행하여야 하고, 법원이 형의 선고를 연기한 때에는 검사의 구형이 있기 전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22조 ① 사소청구를 한 사람은 이후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못한다.
② 그러나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소청구인에게 증인과 동일하게 비용을 지급한다.

제423조 ① 법원은 사소청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각하한다.
② 검사, 피고인,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다른 사소청구인도 각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24조 사소청구인은 언제든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소청구인에 관하여는 대심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25조** ① 사소청구인이 정식으로 소환을 받고도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소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전항의 경우에 공소가 사소청구인이 청구하여 발부한 직접소환장에 의하여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없는 한 그 공소에 대하여 재판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은 제472조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사소청구인을 상대로 직접소환의 남용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소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은 제55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사소청구인에게 송달한다. 이 판결은 궤석재판에 의한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89조 내지 49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26조 사소청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소청구인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증거 법칙

- 제427조** ①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사실은 모든 증거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판사는 자유심증에 따라 재판한다.
- ② 판사는 공판정에 제시되고, 자기의 면전에서 대심의 방식으로 토의된 증거만을 그 판단의 근거로 한다.

제428조 자백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 제429조** ① 모든 조서 또는 보고서는 그 작성자가 그 직무 수행 중에 작성하고 그 소관사항에 있어서 직접 보고 듣거나 확인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서 법률상 양식에 따른 것인 때에만 증거능력을 갖는다.
- ② 모든 신문조서와 공판조서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30조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죄를 인지하는 조서 및 보고서는 단순한 참고자료로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제431조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라 조서 또는 보고서에 의하여 경죄를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반증은 서증 또는 증언으로만 주장할 수 있다.

제432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 사이에 교환된 편지는 증거서류가 되지 못한다.

제433조 법에 따라 위조의 증명이 있을 때까지 조서는 증명력을 갖는다. 위조 증명 절차는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4권 제2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4조 법원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56조 내지 제166조, 제168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35조 증인은 제550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소환한다.

제436조 재판장은 제406조에 규정된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증인에게 지정된 곳으로 퇴정할 것을 명한다. 증인은 진술을 하기 위하여서만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인이 진술 전에 서로 통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437조 ① 증인으로서 진술하기 위하여 소환된 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 증언하게 된 언론인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8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증인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75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439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경찰로 하여금 당해 증인을 즉시 동행토록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당해 공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40조 ① 불출석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비용부담을 선고 받은 증인은, 판결 선고 시로부터 또는 판결이 주소지에 송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항소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제441조 선서 또는 진술 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은 항소할 수 있다.

제442조 재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다.

제442-1조 ① 제40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사소청구인·증인 또는 법정에 소환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사소청구인 역시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443조 증인이 농아자이거나 프랑스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8 제2권 판결법원

제444조 ① 증인들은 따로 분리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의 성격, 도덕성에 관하여 진술한다.

②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의 신문 순서를 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환된 증인 중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는다.

③ 정식으로 소환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자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언할 수 있다.

제445조 ① 증인은 재판장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성명·연령·직업·주소 및 피고인이나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사소청구인의 부모 또는 친척인지 여부, 그들의 고용인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증인이 피고인,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사소청구인과 현재 또는 과거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446조 증인은 진술하기 전에 일체의 진실을 진술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

제447조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 없이 진술하게 한다.

제44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선서 없이 진술한다.

1. 피고인의 부, 모, 기타 모든 직계존속 또는 공동피고인 중 1인
2. 자녀 또는 기타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동급의 친척
5. 배우자. 이혼 후도 마찬가지다.

제449조 제447조 및 제448조에 열거된 자이더라도 검사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선서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50조 ① 선서를 한 증인이 공판 중 다시 증언을 하는 때에는 다시 선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증인에게 증인이 행한 선서 내용을 상기시킨다.

제451조 ① 법률 상 의무에 기하여 또는 자의로 소추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에 고발한 자는 증언을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이를 법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고발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금전상 보상을 받은 자도 당사자 또는 검사의 이익이 없는 한 증언할 수 있다.

제452조 ① 증인은 구두로 진술한다.

②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문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53조 ① 서기는 공판심리 과정을 기록하고, 특히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증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답변을 기록한다.

② 공판조서는 서기가 이에 서명하며, 늦어도 각 공판이 종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장이 서명으로 승인한다.

제454조 ① 증인의 진술 후에 제44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장과 검사,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증인에게 질문한다.

② 증인은 재판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진술 후에 퇴정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소청구인 및 피고인은 증인을 진술 후에 일시 퇴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은 후 다시 입정시켜 단독으로 또는 대질의 방법으로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언제든지 이를 명할 수 있다.

제455조 재판장은 심리 중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듣는다.

제456조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사소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와 그 변호인은 검증에 입회하기 위하여 소환되며, 검증은 조서로 작성된다.

제457조 ①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당사자 1인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정확한 진술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록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히 위 증인을 다시 신문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당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경찰로 하여금 당해 증인을 법정 내 또는 법정 외의 장소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한 후 증인을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명하고, 검사는 증인에 대한 위증죄의 예심수사 개시를 청구한다.

⑤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한 후, 위증임이 의심되는 진술 혹은 사실관계를 즉석에서 조서에 기재한다.

⑥ 위 조서 및 공판조서의 등본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4.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제458조 ①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정의에 합당하다고 믿는 청구를 한다.

② 서면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법원 서기가 공판조서에 이를 기재하고, 법원은 이에 답변할 의무를 진다.

제459조 ① 피고인, 기타 당사자와 그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 의견서는 재판장과 서기가 확인하여 서명하고, 서기는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 ③ 법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답하여야 하고, 부대사항 및 항변을 본안에 병합하여 동일한 판결에서 먼저 항변에 대하여 선고하고 이어 본안에 대하여 선고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0조 ① 공판정에서의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사소청구인은 의견을 진술하고 검사는 논고를 하며, 피고인과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가 반론한다.

- ② 사소청구인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재항변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항상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제460-1조 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420-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소청구를 하였을 경우, 재판장은 공판의 심리 종료 직후에 그 청구 내용을 낭독한다. 검사는 논고를 하고, 피고인 및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는 반론을 제출한다.

- ②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소청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전체 또는 민사 상 이해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음 공판으로 연기한다. 당사자는 별도의 소환 없이 연기된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위 규정은 즉시 통고장이 발부되어 법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61조 ① 심리가 동일한 공판기일에 종결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속행기일을 정한다.

- ② 진술을 하지 아니한 당사자와 증인 또는 법원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요구받았던 자는 별도의 소환이 없더라도 연기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5 절 판 결

제462조 ① 판결은 심리가 행해진 그 공판기일에 또는 그 다음 기일에 이를 선고한다.

② 심리가 행해진 공판기일 이후에 판결할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당사자에게 판결 선고일을 고지한다.

제463조 ① 보충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소속 판사의 1인에게 이를 위임하며, 위임을 받은 판사는 제151조 내지 제155조에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위임을 받은 판사는 형사후견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특히 제8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조사와 정신의학 검사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를 이행하게 한다.

② 보충심리는 제114조, 제119조, 제120조와 제121조에 정한 방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충심리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64조 ① 법원은 공소사실이 경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소청구에 대해 판결하고, 선고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선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의 신청이나 항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가집행을 사소청구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④ 공소제기 후 법원이 조사절차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사소청구인에게 청구취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사소청구인이 연기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법원은 또한 사소청구를 심리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심리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심리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1인의 법관이 주재한다.

⑤ 본조의 규정은 제398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이 심리한 결과 공소사실이 제398-1조에 규정된 경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464-1조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모든 소송단계에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구속 계속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영장의 효력은 계속된다.

제465조 ① 제464조 제1항의 경우, 일반법 상 경죄와 관련되거나 균형법 제3권에 규정된 군령에 관한 경죄이고 선고된 형이 집행유예가 없는 1년 이상의 징역인 때에는, 법원은 사건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구속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은 경죄법원에의 이의신청 또는 고등법원에의 항소에 따라 형이 1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감경된 때에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③ 경죄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은 고등법원에의 항소에 따라 징역형이 1년 미만으로 감경된 때에도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④ 경죄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이의신청이나 항소가 있는 때에는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모든 경우에 위와 같이 발부된 영장은 상소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⑥ 피고인이 체포영장으로 구속되어 있고 권석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135-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65-1조 ① 범죄사실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징역형 선고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범죄사실이 형법 제132-16-1조 및 제132-16-4조가 적용되는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선고형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심리 중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466조 법률에 따라 경죄로 규정된 행위에 관한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리한 경죄법원이 이를 심리한 결과 위경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형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소청구에 대하여 판결한다.

제467조 대상사건이 경죄와 관련된 위경죄에 해당하는 행위인 때에는, 법원은 그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468조 피고인이 법률상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 면제를 선고한다. 사소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64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469조 ① 경죄로 분류되어 경죄법원에 회부된 사건이 중죄의 형을 받을 성질의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를 검사에게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② 경죄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39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죄법원이 심리한

결과, 제398-1조에 열거된 경죄를 죄명으로 하여 소추된 사실이, 제398-1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④ 예심판사 또는 예심부장의 이송 명령에 따라 사건을 관할하게 된 경죄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송 당시 사소청구인을 구성한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고의범이 아닌 경죄 사건을 다루게 된 경죄법원에서의 심판 결과 고의범임이 판명되어 중죄형이 부과될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이송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69-1조 ① 제46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법 제132-59조 내지 제132-70조와 이 법 제747-3조 및 제747-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선언한 후 형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소청구에 대하여 판결한다.

② 형 면제 판결에서는,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유죄판결에 당연히 수반되는 금지, 권리박탈 또는 자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70조 법원은 소추된 사실이 형법 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기각한다.

제470-1조 ① 검사의 요구 또는 예심법원의 이송 결정에 의하여 형법 제121-3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정한 과실범의 소추를 수리한 경죄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사소청구인 또는 보험업자가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한 청구에 기하여 민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다만, 민사책임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죄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민사법원에 이송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사법원은 즉시 국참사원령에 정한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판한다.

- 제470-2조** ① 경죄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형법 제122-2조, 제122-3조, 제122-4조, 제122-5조 및 제122-7조에 정한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형법 제122-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한 책임무능력 규정인 제706-133조를 적용한다.

- 제471조** ①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에도 불구하고 판결 후 즉시 석방한다.
- ②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464-1조 또는 제4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또는 구속의 계속을 명한 경우에도 그 구속 기간이 선고된 형기에 달하는 즉시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사법통제는 종료된다. 또, 보증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제142-2조 제1항과 제2항, 제142-3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④ 형법 제131-6조 내지 제131-11조 및 제132-25조 내지 제132-70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벌은 가집행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사법통제의 계속을 명하고 사법통제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41-2조 제2항이 적용된다.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한조치가 개시된 경우 경죄법원 또는 형벌적용판사는 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을 사법통제 감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2조 사소청구인이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제470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 받은 자가 사소청구의 남용을 이유로 사소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474조 ①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구금되지 않는 피고인 또는 미결구금을 제외하고 남은 형기가 2년 이하인 피고인이 변론 종결 시점에 공판에 참석한 경우에는, 최대 30일 안에 형벌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형벌적용판사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 또 같은 목적으로 교도소 또는 보호관찰소에 최대 45일 안에 출석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이 재범인 경우에는 본항 제1문에 정한 2년은 1년으로 한다.

② 형벌적용판사 앞으로 소환을 명함에 있어, 만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적용판사 앞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기 전부를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단, 피고인이 선고된 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조건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근로 조건부 집행유예 또는 공공근로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이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보호관찰소로의 출석을 명한다.

제474-1조 제706-15-1조 및 제706-15-2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 시부터 또는 판결 확정 시로부터 2월 안에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테러범죄피해보상기금 또는 기타 범죄피해자 기금에서 배상금이 지급되고, 이 경우 집행비용 등 구조기금에서 지급된 금액에서 추가된 금액은 보험법 제422-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달한다는 점을 고지한다.

제475-1조 ① 법원은 사소청구인의 피해금액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258 제2권 판결법원

비용은 피고인이 직접 사소청구인에게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평과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 또, 직권으로 상기 조건을 검토하여 배상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사건에 개입한 제3자가 책임을 질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78조 ① 피고인, 사소청구인 또는 손해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대하여 보관 중인 물건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환부를 명할 수 있다.

제479조 ① 피고인, 사소청구인 또는 손해배상의무자 이외에, 법원의 보관 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환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에 정한 자에게 압수에 관한 조서만 공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환부에 관하여 별도로 재판한다.

제480조 환부를 허용한 경우, 법원은 본안 판결의 확정까지 언제든지 환부된 물건을 다시 제출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0-1조 ① 동일한 경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은 환부 및 손해 배상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법원은 공동정범이나 공범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81조 ① 법원은 보관 중인 물건이 실체발견에 필요하거나, 물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본안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환부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환부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환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482조 ① 환부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②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검사나 환부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피고인,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사소청구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③ 고등법원은 경죄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결을 한 후에만 위 항고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제484조 ① 고등법원이 사건을 관할하게 된 때에는 제478조 내지 제48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부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재판한다.

- ② 고등법원은 환부로 인하여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환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484-1조 ① 사법기관이 보관 중이지 않은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하는 경우 경죄법원은 몰수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국고청에 비용을 지급하고 대상 물건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 ② 경죄법원은 몰수 또는 압류된 동산이 진실발견의 증거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보관으로 인하여 물건의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 및 관리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가를 국고에 귀속한다.
- ③ 경죄법원의 결정은 제379-4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파기된 사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등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을 갖는다. 다만,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검사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따라 환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무죄석방 결정이나 몰수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 등은 물건의 반환이나 처분한 물건의 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경죄법원은 국고청의 비용으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85조 ① 모든 판결에는 이유와 주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판결이유에는 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를 명시한다.
- ③ 주문에는 유죄 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죄사실과 형벌, 적용법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④ 재판장이나 판사 중 1인이 판결문을 낭독하고, 낭독은 주문에 대해서만 한다. 제398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판사들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낭독할 수 있다.

제486조 ① 판결문 원본에는 결정을 한 날짜와 판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검사가 공판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판결문 원본은 재판장과 서기가 판결문에 서명한 후, 늦어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 사무국에 비치한다. 판결문 원본이 비치된 때에는 사무국에 비치된 특별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③ 재판장에게 유고가 있는 때에는 낭독을 한 판사가 판결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 6 절 불출석 재판 및 이의신청

1. 불출석 재판

제487조 제410조, 제411조, 제414조, 제415조, 제416조 및 제42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식 소환을 받은 자가 소환장에 명시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12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다.

제488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제55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이를 통지한다.

2. 이의신청

제489조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피고인은 판결 중 민사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0조 이의신청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사소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취지를 통지한다.

제490-1조 ①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구속 중일 경우, 이의신청은 구치소의 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치소의 장은 신청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한다.

③ 이 신청서의 원본 또는 사본은 지체 없이 원처분이 이루어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된다.

제491조 판결이 피고인에게 직접 통지된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 본토에 거주할 때는 10일, 본토 외에 거주할 때는 1개월

제492조 ① 판결이 피고인에게 직접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은 판결이 피고인의 거주지나 시청 또는 검찰청에 통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 본토에 거주할 때는 10일, 본토 외에 거주할 때는 1개월

- ②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또는 제557조 및 제558조에 규정된 등기우편을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통지, 집행행위, 제560조에 정한 통지에 따라 피고인이 당해 통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은 형의 소멸시효 기간 종료 시까지 제기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이의신청기간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493조 손해배상의무자와 사소청구인은 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모든 판결에 대하여 제491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모든 방법에 따른 판결의 통지 시점부터 진행한다.

3. 재 불출석

- 제494조** ①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구두 또는 조서로 고지한 날에 이의신청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제55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새로운 소환장에 정해진 날에 이의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신청은 무효로 한다.
- ②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소환장의 발부 없이 사건을 다음 공판으로 연기하도록 명하고 경찰에게 이의신청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경죄법원에 소속된 검찰청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이의신청인을 연기된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하거나 출석할 것을 최고한다.
 - ③ 이의신청인이 법원의 관할구역 외에서 발견된 때에는 체포지 검찰청 검사에게 이의신청인을 인치하고, 체포지 검찰청 검사는 이의신청인에게 연기된 공판기일을 최고한다.
 - ④ 모든 경우에 검사는 그 활동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을 24시간 이상 유치할 수 없다.

- ⑤ 이의신청인의 소재를 탐색하였으나 소재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차 연기함이 없이 이의신청의 무효를 선고한다.
- ⑥ 이의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출석 최고를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94-1조 제494조 제1항 내지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형을 가중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절 간이소송절차

제495조 ① 다음 경죄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다:

1. 도로교통법 상 경죄와 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상 위경죄
 2. 육상교통 관련 법령 위반 경죄
 3.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법 제4권 제4편의 경죄
 4. 공중보건법 제3421-1조 제1항에 규정된 환각제의 사용에 관한 경죄
 5. 건축 및 주거법 제126-3조에 정한 경죄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할 수 없다.
1. 피의자가 범죄일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수사 도중에 피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제495-1조에 의한 명령 발부 전에 피의자에 대한 직접소환을 청구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경죄가 위경죄, 과실치사,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비고의적 침해와 동시에 범하여진 경우
- ③ 검사는 경찰수사가 완료되고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정보, 특히 그 책임과 자력에 대한 정보가 형의 결정에 충분한 정도로 확보된 경우에 간이소송절차를 청구한다.

제495-1조 ① 간이소송절차를 선택한 검사는 소송기록과 의견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원장은 변론 없이 무죄 또는 벌금형을 약식명령⁴²⁾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1개 또는 수개의 부가형을 선고하며, 수개의 주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이 대심 형태의 변론이나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495-2조 ① 약식명령에 피고인의 성·이름·생년월일 및 주소·적용법조·범죄일시 및 장소, 기타 관련법령 그리고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된 하나 또는 수개의 형을 적는다.

② 약식명령에는 제495조 제3항에 적은 요소를 참작하여 이유를 붙인다.

제495-3조 ① 약식명령은 그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달되며, 검사는 법원 사무국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②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피고인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한 사건은 경죄법원에서 대심 형태의 공개재판으로 심리하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재판장은 또한 약식명령의 대상이 된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죄사건의 판결의 집행에 관한 본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⑤ 다만, 피고인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이해 관계인이 형벌 집행이나 다른 계기를 통하여 약식명령 발부 사실을 안 날로

42) ordonnance pénale

부터 또는 이의신청의 방식이나 기간에 대하여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고청 회계담당자는 법원 사무국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벌금형의 집행을 중단한다.

제495-4조 ① 이의신청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사건은 경죄 법원에 회부된다. 피고인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석재판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명시적으로 이의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약식명령은 집행력을 회복하며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5-5조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검사가 경죄법원의 공판에 회부하지 않은 경우 약식명령은 기판력이 있다.

② 다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위한 민사적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495-6조 ① 본절의 규정은 피해자가 경죄법원에 범죄행위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이 기판력을 가질 경우 법원은 오직 민사적 이익에 대해서만 판단하며, 이때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한 명의 판사로 법원을 구성한다.

제495-6-1조 지적재산권법 제335-2조, 제335-3조 및 제335-4조에 정한 경죄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범해진 경우에는 본장에 정한 간이공판절차에서 약식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9년 10월 22일 헌법위원회 결정 2009-590에 따라 위헌 결정됨]

제495-6-2조 건축 및 주택법 제152-1조 제2항에 정한 경죄도 본장의 간이공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제 8 절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제495-7조 주형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죄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자나 그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소환된 자, 제393조에 따라 검사에게 소환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본절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제495-8조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집행될 1개 또는 수개의 주형 또는 부가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형벌의 성질이나 벌금 총액은 형법 제132-2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징역형을 제시할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가 받게 될 징역형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검사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예를 제안할 수 있고, 제712-6조에 열거된 교화개선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검사가 징역형의 실행을 제안할 경우 피의자에게 그 형이 즉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 집행의 방법, 특히 반자유형, 외부 집행 또는 전자감시 하에서의 외부집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벌적용판사에게 소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③ 벌금형을 제안할 경우, 그 액수는 그가 받게 될 벌금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벌금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의 자백을 기록하고, 이해관계인이 선임하거나 또는 그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가 형벌을 제시하며, 사법구조의 대상이 아닌 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기록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검사의 제안을 받은 피의자는 그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5-9조 ① 피의자가 제안된 형을 수용하면 피의자는 검사의 승인 요청에 따라 곧 지방법원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수탁판사 앞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실 관계와 그에 대한 법령 등을 확인한 후 검사가 제안한 형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일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결정하며, 승인하는 경우 그 명령은 공개법정에서 낭독한다.

제495-10조 ① 검사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제495-8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의 이익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검사는 사법통제,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석방구금판사 앞에 인치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한 형이 징역 2월 이상의 실형으로서 그 형의 즉시집행을 검사가 청구한 경우, 제394조 제3항, 제395조, 제396조에 규정에 따라 검사 앞에 출석할 때까지 구속 결정을 하기 위하여 석방구금판사 앞에 인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소환은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위반될 경우 이미 시행된 사법통제,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또는 구속은 종료된다.

제495-11조 ①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의 제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그 형이

당해 범죄사실과 범죄자의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승인한다.

②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승인된 형이 징역형의 실행인 경우 피의자는 제495-8조의 구분에 따라,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형벌적용판사에게 인치되며 그 결정문은 지체 없이 송달된다.

③ 결정에 대해서는 제498조, 제500조, 제502조 및 제505조에 따라 피의자가 항소할 수 있다. 검사는 같은 조건 하에서 그에 부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가 없으면 결정은 기판력을 갖는다.

제495-12조 ① 피의자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가 승인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경우, 검사는 새로운 사유가 없는 한 제388조의 규정에 따라 경죄법원에 기소하거나 예심수사 개시 신청을 한다.

② 제393조에 따라 검사에게 소환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경죄법원에 기소하거나 예심판사에게 송치하기 전까지 제395조에 의거해서 당일 유치할 수 있다. 당일이 법원이 개정하지 않는 날인 경우는 제396조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의 규정은 제495-8조 및 제495-10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받기를 청구하였거나 구속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95-13조 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절차에 대해 통지한다. 피해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의자가 소환되는 때 동시에 소환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는 사소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며, 사소청구인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420-1조를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선고한다. 사소청구인은 제498조 및 제50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② 만약 피해자가 전항의 규정에 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464조

제4항에 따라 열리는 경죄법원에서 검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경죄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공판 기일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원은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을 근거로 민사 관련 사안에 대하여만 결정한다.

제495-14조 ① 소송절차가 무효인 경우, 이를 제495-8조 내지 제495-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서에 기재한다.

② 피의자가 검사가 제안한 형을 수용하지 않거나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가 검사의 제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조서는 예심법원이나 판결법원에 제출될 수 없으며, 검사와 당사자는 위 소송절차 중 이루어진 진술이나 작성된 서류를 위 각 법원에서 인용할 수 없다.

제495-15조 ① 제495-7조에 규정된 경죄를 범한 피의자가 직접 소환 대상이거나 제390조 또는 제390-1조 규정에 따른 소환 대상인 경우, 피의자는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검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등기우편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본질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검사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 피의자 및 변호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소환한 뒤 제495-8조 및 그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의자의 거부 의사나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의 승인 거부가 최초 수사 시에 지정된 경죄법원의 변론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소환과 법정소환은 무효로 한다.

③ 검사가 제495-8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 본조의 규정은 예심판사의 명으로 경죄법원에 이송된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95-15-1조 본장에 정한 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검사가 제390-1조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는 법정소환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피의자가 제안된 형을 수용하고 그 형이 승인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정소환에 의한 관할권은 무효가 된다.

제495-16조 본질의 규정은 18세 이하의 소년과 언론 관련 경죄, 과실치사에 관한 경죄, 정치 관련 경죄,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소추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경죄사건에 관한 항소법원

제1절 항소권의 행사

제496조 ① 경죄사건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제497조 아래 각호에 정한 자는 항소할 수 있다.

1. 피고인
2. 오로지 민사상의 이익만을 가지는 손해배상의무자
3. 오로지 민사상의 이익만을 가지는 사소청구인
4. 검사
5. 행정관청이 공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관청
6. 고등검찰청 검사장

제498조 ① 제50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는 대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항소 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1. 대심에 의한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판결 선고일을 고지 받지 못하여 선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2.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소송대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선임계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3. 제411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이 결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 ③ 제410조와 제494-1조에 규정된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498-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8-1조 ① 제4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징역형이나 일부를 집행유예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은 형 선고가 주소 또는 서기나 검사에게 고지된 때로부터 기산하나,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은 항소기간이 경과하면 집행된다.

② 제557조 및 제558조에 규정된 등기우편을 피고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통지, 집행행위 또는 제560조에 정한 통지에 따라 피고인이 당해 통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형 선고를 안 날로부터 형의 소멸시효기간 종료 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제1항에 정한 10일이 경과하여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2항에 따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유로 석방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항소법원의 변론 기일까지 구금된다.

④ 본조의 규정은 재불출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99조 판결이 불출석 또는 재차 불출석 재판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항소기간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500조 당사자의 일방이 위 기간 내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항소기간은 5일 추가된다.

제500-1조 항소 제기 시부터 1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이나 사소청구인이 항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는 실효되고, 검사의 부대항소도 이와 같다. 제50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항소와 제498조 또는 제505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선행 항소에 뒤이어 이루어진 항소에 관하여, 항소인이 부대항소임을 명시한 때에는 부대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 취하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 뒤에 제기한 항소를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제501조 법원이 제148-1조 및 제148-2조에 따라 석방 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때와 사법통제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02조 ① 항소장은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을 한 법원 서기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장에는 법원 서기와 항소인 또는 판결을 한 법원에 주재하는 代訴士, 변호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특별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기가 작성하는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항소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서기가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항소장은 비치된 대장에 기록하고, 누구든지 그 사본을 교부 받을 권리가 있다.

제503조 ① 항소인이 구속되어 있는 때에는, 항소는 구치소의 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항소장에는 구치소의 장이 확인한 뒤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하며, 항소인도 서명한다. 만약 항소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구치소의 장이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위 서류는 즉시 항소 대상이 된 결정을 한 법원 사무국에 송부되고, 제502조 제3항에 규정된 대장에 이를 기재한 다음, 서기가 작성한 문서에 첨부한다.

제503-1조 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 피고인은 자기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환장·경정문·선고문을 수령할 제3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3자의 주소로 자기의 주소에 갈음할 수 있다. 본항의 신고는 항소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1심에 기재된 주소를 항소인의 주소로 본다.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마지막 주소로 이루어진 소환·고지 또는 통지는 피고인 개인에게 한 것으로 보며, 항소심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대심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항소 제기 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 심리 이전에 석방된 때에는 석방에 앞서 항소법원 서기에게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4조 ① 항소이유서는 항소제기기간 내에 법원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代訴士 또는 특별대리인이 이에 서명한다.

② 검사는 항소이유서와 소송기록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고등검찰청에 송부한다.

- ③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는 때에는, 검사의 명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등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로 이감한다.

제505조 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제498조 내지 제50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에게 5일 간의 추가 항소기간이 부여된다. 다른 항소 없이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장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경죄법원이 선고한 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5-1조 제498조, 제500조 또는 제505조에 정한 기간 이후의 항소나 명백히 이유 없는 항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경죄 항소부 재판장은 직권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06조 항소기간 중과 항소심 계속 중에는 제464조(제2항 및 제3항), 제464-1조, 제471조, 제507조, 제508조 및 제70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507조 ① 경죄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결과 별개의 판결을 한 때, 그 판결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인 때에는 즉시 항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판결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면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며, 경죄법원은 그 기간 동안 본안에 대하여 재판할 수 없다.

- ③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항소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항소당사자가 제4항에 규정된 청구를 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은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재판한다.

④ 항소 당사자는 항소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항소를 즉시 수리하는 선언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경죄 항소부 재판장에 대한 청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508조 ① 법원 서기는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법원장에게 통지한다. 위 항소에 대한 선고가 있기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고,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서기는 항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이를 판결등본 및 항소장과 함께 경죄항소부 재판장에게 송부한다.

③ 재판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한다.

④ 재판장이 항소를 각하한 때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항고는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와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재판장은 공공질서 또는 재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심 공판기일을 정한다.

⑥ 항소법원은, 항소로 인하여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없는 항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결정 후 1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집행정지효가 없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결의 집행을 정지된다.

제509조 ① 사건은 항소장에 적시한 한도와 제515조에서 규정하는 항소인의 성격에 따라서 고등법원에 계속된다.

② 보험업자에 의한 항소는 사소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보험업자는 3일 이내에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고지한다.

제2절 경죄항소부의 구성

제510조 ① 경죄항소부는 고등법원 부장 1인과 고등법원 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검사의 직무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장검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수행하고, 서기의 직무는 고등법원 서기가 수행한다.

제511조 ① 경죄항소부의 공판회수 및 기일은 매 사법년도 말에 다음 사법년도에 대하여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 법관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으로 정한다.

② 이 결정은 필요한 경우 연도 중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판회수 및 기일은 경죄항소부 재판장이 정한다.

제3절 경죄항소부에서의 절차

제512조 경죄법원에 관한 규정은 아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고등법원에 준용한다.

제513조 ① 항소부는 공판정에서 고등법원 판사의 구두 보고에 기하여 재판하며, 피고인을 신문한다.

② 제435조 내지 45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검사는 그 증인이 경죄법원에서 이미 증언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부는 변론 전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항소인이 항소 이유를 간략히 진술한 후에 피항소인이 제4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술한다.

④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언제나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제514조 ① 고등법원은 항소가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한다.

② 고등법원은 항소가 절차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그 본안에 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 판결을 주인한다.

제515조 ① 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파기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은 피고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사소청구인 또는 이들의 보험업자가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사소청구인은 항소 도중에 새로운 청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소청구인은 1심 판결 후에 입은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5-1조 ① 경죄법원이 사소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집행을 명하고 가집행이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석부장은 급속심리에 의한 약식재판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석부장은 가집행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환부 또는 손해배상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죄법원이 가집행을 기각하였거나, 사소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소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항소심 심리 중에 수석부장은 급속심리에 의한 약식재판으로 가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516조 ① 고등법원은 중죄·경죄 또는 위경죄도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할 경우 무죄를 선고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석방된 피고인은 제4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접 고등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제517조 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법률상 형 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46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18조 고등법원은 행위가 위경죄만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소청구에 대하여 판결한다.

제519조 ① 고등법원은 행위가 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할위반을 선언하고 검사에게 이송하여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한다.

② 고등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 영장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520조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 판결이 무효가 되어 이를 취소하는 때에는, 고등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한다.

제520-1조 제495-11조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지방법원장 또는 수탁판사가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단,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위경죄의 재판

제1장 경찰법원의 관할

제521조 ① 경찰법원은 제5급 위경죄를 관할한다.

② 근린법원은 제4급 위경죄를 관할한다.

③ 제4급 위경죄 가운데 경찰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의 종류는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법원 관할 사건과 관련된 범죄가 근린법원이 심판할 사건인 경우에도 경찰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522조 ① 위 경죄의 재판권은 위경죄의 범치지, 인지 장소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 경찰법원에 있다.

② 차량의 적하 또는 장비에 관한 규칙 또는 육상운송 관련 위경죄의 경우, 당해 차량 소유 회사 소재지 경찰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③ 제383조 내지 제387조의 규정은 경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재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2-1조 근린법원의 토지관할은 법원조직법 제623-2조에 따라 형사사건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 시·군·구 법원과 제522조에 정한 경찰법원의 토지관할과 동일하다.

제522-2조 근린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시·군·구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근린법원은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고 사건을 시·군·구 법원으로 이송한다. 근린법원이 관할할 사건을 경찰법원이 수리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필요한 경우에 이송 결정은 당일 공판에서 선고할 수 있다.

제523조 경찰법원은 시·군·구 법원 판사⁴³⁾, 제45조 이하에 규정된 공소관과 법원 서기로 구성된다.

제523-1조 ① 근린법원의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331-7조 및 제331-9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근린법원에서 검사의 역할은 본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공소관이 담당한다.

제2장 간이소송절차

제524조 ① 모든 위경죄는 누범의 경우라도 이 장에 규정된 간이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이소송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동법 위반 위경죄

2. 제5급 위경죄를 범한 피고인이 범행일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

③ 간이소송절차는 위경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피해자가 제525조에 규정된 명령의 발령 전에 직접 피고인을 소환한 때에는 이를 더 이상 속행할 수 없다.

제525조 ① 간이소송절차를 선택한 공소관은 경찰법원 판사에게 소추에 관한 서류와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②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 1개 또는 수개의 부가형을 선고한다.

③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거나 벌금 이외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공소관에게 송부하여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소추를 진행하게 한다.

43) juge de tribunal d'instance

제526조 ①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의 성명·생년월일·출생지·주소·죄명·범죄일시와 장소·적용법조, 유죄판결인 경우에는 벌금액과 환형유치기간을 기재한다.

② 판사는 약식명령에 이유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527조 ① 공소관은 약식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사무국에 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소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은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피고인에게 통지되고, 위경죄에 대한 판결의 집행에 관한 본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③ 피고인은 등기우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약식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기간 내에 벌금의 납부나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벌금 및 소송비용의 납입기한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다만, 피고인이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음이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형의 선고를 안 날 또는 허용된 이의신청 기간과 방식에 대하여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고청 회계담당자는 사무국으로부터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징수를 중지한다.

제528조 ① 공소관 또는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건은 통상절차에 따라 경찰법원의 공판에 회부된다. 피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석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공판이 개시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은 그 집행력을 회복하며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28-1조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단, 약식명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에 대하여는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28-2조 ① 본장의 규정은 피해자가 본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범죄행위자를 직접 경찰법원에 소환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이 있는 후 동일 사실에 관하여 소환장이 발부된 때에는 경찰법원과 근린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제527조에 정한 기간 내에 또는 늦어도 공판개시 전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소 및 사소에 대하여 재판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피고인이 늦어도 공판개시 전까지 명시적으로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사소에 대하여 재판한다. 약식명령에 정한 대로 자진하여 납부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 2-2 장 범칙금 절차

제 1 절 일정한 위경죄에 적용되는 규정

제529조 ①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공소권은 범칙금의 납부로 소멸되며, 범칙금에는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다만, 범칙금 납부에 따른 공소권 소멸은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인지되어 그 중 범칙금에 의할 수 없는 범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9-1조 범칙금은 범죄의 인지 시에 조서를 작성하는 담당관에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범칙금은 범죄의 인지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위경죄 고지서가

늦게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기관 창구에 납부할 수 있다.

제529-2조 ① 위경죄 위반자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위경죄 고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대하여 면제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기간 내에 일시불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29-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위 청구는 동조에 정한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공소관에게 송달된다.

② 30일 이내에 납부 또는 면제 청구가 있지 않은 때에는 범칙금은 필요적으로 가산되어 공소관으로부터 집행권을 위임 받은 국고청이 징수한다.

제 2 절 육상수송기관의 경찰에 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

제529-3조 ① 사업자가 철도수송기관과 정기버스 및 관광버스에 대한 제4급 위경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제5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자와 사업자와의 화해로 소멸한다.

② 다만, 전항의 규정은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인지되었고, 그 중에 화해에 의할 수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29-4조 I. ① 화해는 배상금 또는 필요한 경우 승차요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항의 지급은,

1. 범죄의 인지 시에 사업자의 대리인에게,
2. 범죄의 인지로부터 2월 이내에 화해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창구에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 서류작성 비용이 가산된다.

③ 즉시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대리인은 위반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보할 권한을 갖는다. 대리인은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배상금 및 필요한 경우 서류작성 비용은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Ⅱ. ①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서 후 검사의 위임을 받은 청원 경찰이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② 위반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청원경찰이 관할권 있는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즉시 보고하고, 헌병대나 경찰관서는 지체 없이 위반자를 인치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인치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자를 풀어 주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신원조회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신원조회는 신원확인 시로부터 기산하여 제78-3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78-3조에 정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위반자가 즉시 범칙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정한 절차는 즉시 중지된다.

Ⅲ. 본조 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특히 검사로부터 경찰권의 위임을 받는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 청원경찰이 법률에 정한 검사와 연락하고, 경찰 및 헌병대와의 정보교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제529-5조 ① 위반행위 시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위반자는 사업자의 창구에 전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화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조서와 더불어 검사에게 송달된다.

② 전술한 2월 이내에 지급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사업자는 공소관에게 조서를 송부한다. 이로써 위반자는 필요적으로 가산된 범칙금의 미납자로 간주되고, 공소관이 집행력을 부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국고당국이 징수한다.

제529-5-1조 성명과 관할권이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 또는 수개의 근린 법원에 속한 공소관은 제529-3조에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범칙금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명령에 명시된 공공운송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하여 범한 위경죄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본조에 정한 관할권은 제522-1조의 관할권과 병존하며, 이의신청이나 재판 청구에 따라 근린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공소관은 위반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다.

제529-6조 I. ① 고속도로와 기타 유료도로에서 요금 미납 또는 도로교통법 제130-9조 위반으로 청원경찰에게 위경죄로 단속된 경우에 제521조에 정한 공소시효는 위반자와 사업자 사이의 화해로 소멸된다.

② 다만, 범칙금 납부에 따른 공소권 소멸은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인지되었고, 그 중에 범칙금에 의할 수 없는 범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① 화해는 사업자에 대하여 요금을 납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법 제321-11조에 따라 통행권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성립한다.

② 전항의 지급은 위반자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기관 창구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요금이나 범칙금, 환경법 제321-11조에 정한 통행권 요금 등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III. ① 위경죄 위반자는 II 관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위경죄 고지서에 기재된 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같은 기간 내에 일시불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서가 첨부된 이의신청서는 검사에게 송부된다.

② 2월 이내에 지급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사업자는 공소관 또는 자동차 등록 담당자, 도로교통법 제12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조서를 송부한다. 이로써 위반자는 필요적으로 가산된 범칙금의 미납자로 간주하고, 공소관이 집행력을 부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국고당국이 징수한다.

제 2-2 절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

제529-7조 주차에 관한 위경죄를 제외하고 국참사원령으로 정하는 제2급, 제3급 및 제4급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위경죄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제529-8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납부한 때에는 범칙금이 감경된다.

제529-8조 ① 감경된 범칙금은 범죄의 인지 시에 조서를 작성하는 담당관에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범칙금은 범죄의 인지로부터 3일 이내에 또는 위경죄 고지가 늦게 당사자에게 송부된 때에는 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범칙금의 납부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자는 범칙금 미납자로 본다.

제529-9조 ① 범칙금은 범죄의 인지 또는 위경죄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범칙금의 면제 청구 및 필요적 가산에 관한 제529-2조의 규정은 본절에 준용된다.

제529-10조 ① 도로교통법 제121-3조에 따른 범칙금 고지서가 자동차 등록 담당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2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본법 제529-2조에 따른 면제 청구와 제53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중 하나

- a) 자동차에 대한 절도·손괴, 도로교통법 제317-4조에 정한 자동차번호판 절도 등으로 인한 범죄신고 접수증 또는 동법에 정한 자동차손괴 신고증 사본
- b) 위경죄를 범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명된 자의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주소 등을 명시하고 서명한 면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2. 제529-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전부에 대한 공탁증서, 제53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범칙금에 대한 공탁증서. 공탁으로 인하여 범칙금을 완납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223-1조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취소되지도 않는다.

② 공소관은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면제청구가 수리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529-119조 제529-1조 또는 제529-8조에 따른 법 위반사실의 고지, 제529-6조에 따른 화해금액의 납부 고지는 공인된 자동감지카메라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린법원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자동감지카메라를 판독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한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또는 보고서를 근린법원에 송부한다. 이 경우 조서에는 일련번호를 붙여 서명할 수 있다.

제3절 공통규정

제530조 ① 제529-2조 제2항 또는 제529-5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명의를 경찰법원의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로 공소관이 서명을 한 때부터 진행하며, 서명은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가산 범칙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고지서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관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된 범칙금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로는 무효가 된다. 이의신청은 집행행위 기타 경로로 당사자가 가산 일시불 벌금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위경죄의 경우,

자동차등록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위경죄 통지를 하였을 경우 가산 범칙금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3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경죄를 범한 피의자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4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금에 대한 집행은 무효로 한다.

③ 이의신청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된 가산범칙금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29-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조가 요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제530-1조 ① 공소관은 제529-2조 제1항에 따른 청구, 제529-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530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공소제기를 포기하거나, 제524조 내지 제528조 또는 제531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의신청, 고지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수리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선고되는 벌금은 제529-2조 제1항 및 제529-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칙금 또는 배상금액, 제529-2조 제2항 및 제529-5조 제2항, 제529-6조 Ⅲ관 제2항에 규정된 가산 범칙금보다 낮을 수 없다.

③ 제529-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한 후에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금은 신청에 따라 일시불 벌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 또는 피고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으로 정하며, 유죄판결로 부과되는 벌금은 전조에 따라 10퍼센트 가산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제530-2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집행 및 채무명 의와 관련된 오류의 경정에 관한 부대적 제쟁은 경찰법원에 제소되어 제711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제530-2-1조 ① 위경죄 또는 가산 범칙금 납부통지가 외국 거주자에 대해 이루어질 경우, 제529-1조, 제529-2조, 제529-8조, 제529-9조 및 제530조에 정한 기간은 1월로 한다.

② 본법 제529-10조 및 제530조의 규정과 자동차등록증 소지자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21-2조 및 제121-3조는 외국기관이 발급한 동등한 문서에 기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530-3조 범칙금·배상금·감경 범칙금·가산 범칙금 및 서류작성 비용과 본장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쳐 발하는 명령으로 정한다. 이 명령에는 특히 범죄를 검증할 권한이 부여된 선서한 청원경찰과 범칙금 및 화해금의 수령 요건에 대하여 명시한다.

제530-4조 ① 가산범칙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범죄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 연기나 면제를 청원하는 경우, 이유를 붙인 청원서를 공소관이 아닌 국고청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이 경우 제529-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회계담당자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나 연기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70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20% 감액할 수 있다.

제 3 장 경찰법원의 사건수리

제531조 경찰법원은 예심법원으로부터의 사건 이송, 당사자의 자진 출석, 피고인 및 범죄 관련 민사 상 책임자에 대한 직접소환의 방식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수리한다.

제532조 ① 공소관이 발부하는 통지서에 의해 통지를 받은 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 소환장 발부를 면제한다.

② 통지서에는 소추되는 범죄와 이의 처벌에 관한 법조문을 기재한다.

제533조 제388-1조, 제388-2조, 제388-3조 및 제390조 내지 제392-1조의 규정은 경찰법원의 절차에 준용된다.

제4장 경찰법원의 종국적 심리

제534조 재판장은 공판기일 전에 공소관 또는 사소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 또는 산정하게 하거나, 조서를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모든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명할 수 있다.

제535조 ① 제400조 내지 제405조 및 제406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은 경찰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된다.

② 다만, 제404조 제2항에 규정된 제재는 공소관의 청구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죄법원이 경찰법원의 판사가 부대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조서를 심사한 후에만 이를 선고할 수 있다.

제536조 사소청구인의 참가에 관한 제418조 내지 제426조, 증거법칙에 관한 제427조 내지 제457조(제537조 제외), 당사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제458조 내지 제461조, 재판에 관한 제46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537조 ① 위경죄는 조서 또는 보고서로 증명하고, 보고서와 조서가 없는 때에는 증언 또는 증거물로 증명한다.

②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위경죄를 인지할 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조서 또는 보고서는 반증이 없는 한 증명력을 가진다.

③ 반증은 서면 또는 증언으로만 입증할 수 있다.

제538조 ① 보충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법원 판사 또는 근린법원 판사는 제114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② 이 경우 제4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9조 ① 경찰법원과 근린법원은 공소사실이 위경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다. 단, 형법 제132-59조 내지 제132-70조의 규정과 본법 제747-3조 및 제747-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법원은 사소가 청구된 때에는 제46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제540조 경찰법원은 공소사실이 중죄 또는 경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고 사건을 공소관에게 이송하여 그 의견에 따라 소추하게 한다.

제541조 ① 경찰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② 제470-1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542조 경찰법원은 피고인에게 법률상 형 면제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를 선고한 후 형을 면제한다. 또, 사소가 있는 때에는 제539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제543조 ① 소송비용, 법원의 보관 하에 있는 물건의 환부 및 판결의 방식에 관한 제473조 내지 제486조의 규정은 경찰법원과 근린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② 다만, 제480-1조의 규정은 제5급 위경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제 5 장 권석재판 및 이의신청

제544조 ① 피고인 및 민사 상 책임자의 출석 및 그 대리에 관한 제410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경찰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② 다만, 소추된 위경죄가 벌금형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代訴士 또는 특별대리인을 대리인으로서 출석시킬 수 있다.

제545조 권석재판에 관한 제487조 및 제488조의 규정, 이의신청에 관한 제489조 내지 제49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 6 장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

제546조 ① 제5급 위경죄에 대하여 벌금이 선고된 경우, 형법 제131-16조 제1호에 규정된 형이 선고된 경우 또는 선고된 벌금이 제2급 위경죄 법정형의 벌금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민사 상 책임자·검사·고등검사장 및 경찰법원과 근린법원의 공소관은 항소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 및 민사 상 책임자가 항소할 수 있다.

③ 사소청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사상 이익에 관하여만 항소할 수 있다.

④ 임야수리관리청의 청구에 따라 소추되는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의 성격 및 중요성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당사자가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다.

제547조 ①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에 이를 제기한다.

- ② 전항의 항소는 제498조 내지 제500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항소는 경죄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기하고 재판한다. 법원은 경죄항소부의 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가 재판장이 된다.
- ④ 제502조 내지 제503조와 제5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549조 ① 제506조 내지 제509조 및 제510조 내지 제520조의 규정은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의 판결에 준용한다.

- ②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의 관할위반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수리한 고등법원은 소추된 사실이 경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판결한다.

제4편 소환 및 송달

제550조 ① 소환 및 통지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집행관의 영장에 의한다.

- ② 고지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한다.
- ③ 집행관은 자기와 배우자, 그 친족 및 인척과 그 배우자의 친족 및 인척, 6촌까지의 방계친족 및 방계인척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 ④ 소환장 또는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일자, 집행관의 성명과 주소,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한다.
- ⑤ 영장의 등본을 수령한 자는 원본에 서명하고, 서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취지를 기재한다.

제551조 ① 소환장은 검사, 사소청구인 및 법률상 자격을 갖는 모든 행정관청의 청구에 기해 이를 발부한다. 집행관은 즉시 이들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환장에는 소추되는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조문을 기재한다.

③ 소환장에는 사건을 수리한 법원·공판기일·장소를 기재하고, 소환된 자의 자격이 피고인, 민사 상 책임자 혹은 증인인지를 명시한다.

④ 사소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소환장에 그 사소청구인의 성명·직업 및 실제 주소 또는 선정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증인에게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전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불출석, 증언 거부 및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2조 ① 소환장의 교부일과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정된 날 사이의 기간은 소환 받은 자가 프랑스 본토의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 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도내에 있는 법원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해외 도의 법원에 소환을 받은 자가 다른 해외 도, 해외 영토, 썸 피엘·미크롱, 마요트, 프랑스 본토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프랑스 본토 내 도의 법원에 소환을 받은 자가 해외 도, 해외 영토, 썸 피엘·미크롱, 마요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에 다시 1월을 추가한다.

③ 소환을 받은 자가 유럽연합 내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1월, 그 밖의 외국에 경우에는 2월을 추가한다.

제553조 ① 전조에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소환을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소환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2. 소환을 받은 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소환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나, 법원은 소환을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의 연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는 제385조에 규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관한 일체의 항변에 앞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4조 판결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소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

제555조 ① 집행관은 영장을 수취인 본인에게 또는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자, 그 특별대리인 또는 이를 위하여 특별히 권한이 부여된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수취인에게 영장 등본을 교부한다.

② 통지가 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집행관은 즉시 청구인의 성명과 영장 등본을 교부받는 자의 신분을 보통우편으로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5-1조 결정문의 고지는 집행장을 당사자에게 발부함으로써 할 수 있고, 수령을 받을 자가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교도소의 장을 통하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서기나 사법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56조 ① 영장의 수령인이 그 주소지에 없는 때에는 그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인척, 사용인 또는 그 주거에 거주하는 자에게 등본을 교부한다.

② 집행관은 전항의 등본을 교부 받은 자가 신고하는 자격을 영장에 기재한다.

제557조 ① 등본이 영장에 기재된 자의 주소에 거주하는 자에게 교부된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러한 교부 사실을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이 집행관의 등기우편을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에 서명하여 회신한 때에는 그 주소에서 교부한 영장은 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집행관은 보통우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영장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증 용지를 첨부하여 수취인이 이에 서명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집행관의 사무소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다.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증이 반송된 때에는 주소로 우편 송달된 영장은 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③ 법인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다.

제558조 ① 집행관이 영장에 기재된 자의 주소에서 당사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주소의 정확성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②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틀림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영장에 자신의 직무집행 상황 및 확인 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증 용지와 함께 서기에게 맡겨 둔 영장 등본을 즉시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한다. 영장이 재차 불출석으로 인하여 선고된 판결의 통지 취지인 때에는 등기우편에 통지행위의 소송 상 성격과 항소기간을 기재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집행관의 등기우편을 수취하였다는 수령증에 서명하여 회신한 때에는 법원서기에게 교부한 영장은 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④ 집행관은 전항에 규정한 배달증명부 등기우편 대신 보통우편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영장 사본과 이해관계인이 집달관의 사무소에서 수령증에 서명함으로써 영장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소지에 메모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증을 첨부하여 이를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집달관의 사무소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다. 집행관이 메모를 남긴 때에는 보통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지한다.

⑤ 수취인이 서명한 수령증이 반송된 때에는 시청(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송부된 영장은 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 영장이 출석 소환장인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수령중에 서명한 날과 경죄 법원 또는 경찰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정된 날과의 사이의 기간이 이해관계인의 주소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하여 제552조에 규정된 기간과 같은 경우에만 제4항에 규정된 효력을 발생한다.

제559조 ① 집행관은 영장에 지정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사건을 수리한 법원에 속한 검사실에 영장 등본을 교부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소재지가 불명인 법인에 관한 소송행위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559-1조 ① 영장이 결정의 고지 취지인 경우 집행관은 공소관 또는 사소 청구인의 청구 시로부터 최장 45일 간 제555조 내지 제55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전달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관은 공소관에게 고지가 실패했음을 알리고 공소관은 제560조에 정한 바에 따른 고지절차에 착수한다.

②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항의 기간은 3월로 연장된다.

제560조 ① 이해관계인이 제557조 및 제5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보낸 등기우편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영장이 검사실에 교부된 때에는,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색을 할 것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그에게 영장의 발부를 통보한다. 이 통보는 영장이 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② 모든 경우에 있어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그 수색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즉시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피고인 소환의 경우에도 검사는 경찰에게 명하여 이해관계인을 수색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발견된 경우 검사는 즉시 그 통지를 받아 소환장 등본을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통보는 이해관계자 본인에 대한 통지로 본다. 소환 대상이 된 피고인이 정해진 공판기일까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색 명령이 발령된다. 이해관계인이 발견된 경우 검사는 제390-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으로의 소환을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찾기 위하여 행정권의 통제 하에 모든 관공서·기업·시설·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비밀엄수 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1조 제557조 및 제558조에 정한 경우에는 등본은 봉합하여 교부하되 봉투 표면에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지만을 기재하고, 이면에는 집행관의 직인으로 봉인한다.

제562조 ①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사건을 수리한 법원에 속한 검사실로 소환되고, 검사는 원본에 검인하고 그 등본을 외무부장관 또는 외교 상 조약에 정한 다른 모든 관청에 송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준용된다.

제563조 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집행관은 영장의 원본에 조서의 방식으로 직무 집행의 상황 및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집행관이 한 조사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영장 원본은 24시간 이내에 그 송달을 청구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영장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교부된 때에는 영장 등본을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64조 집행관은 영장 원본과 등본의 말미에 집행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3유로 이상 15유로 이하의 민사벌금에 처하고, 벌금은 사건을 수리한 법원의 법원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565조 영장의 무효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선고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소환기간에 관한 제553조 제1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66조 ① 영장이 집행관의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는 집행관에게 영장비용 및 무효가 된 소송절차의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영장의 무효를 선고한 법원은 전항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선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권 비상구제방법

제 1 편 대법원예의 상고

제 1 장 상고대상 재판 및 상고요건

제567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과 중죄사건, 경죄사건 및 위경죄 사건에 관한 중국판결이 법률에 위반된 때에는 검사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다음 조 이하에 규정된 구별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고는 대법원 형사부에 한다.

제567-1조 대법원 형사부장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상고 불수리의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7-1-1조 형사부에 제기된 사건을 수리하기로 하는 때에는 형사부장 또는 형사수석부장은 3명의 법관으로 부를 구성한다. 부는 당사자 중 1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형사부 평의에 회부할 수 있고, 부를 구성하는 법관 중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부 평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부는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밖에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567-2조 ① 구속에 관한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수리한 대법원 형사부는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② 상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수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고는 실효된다. 다만, 대법원 형사부장은 예외적으로 제출기한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유서의 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상고이유서가 접수되면 대법원 형사부장은 즉시 공판기일을 정한다.

제568조 ① 검사와 모든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부터 5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다만, 상고기간은 다음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는 판결 송달의 형식을 불문하고 송달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1. 대심절차에 의한 심리 후 제462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아니한 당사자
2. 제411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한 피고인
3. 제410조 및 제4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
4. 재차 궐석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③ 궐석재판에 대한 상고기간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이를 기산하고, 검사에 대하여는 송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④ 일부 집행유예된 징역형이나 구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상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49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8-1조 ① 제695-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 상고하는 경우 제568조 제1항에 정한 상고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② 이 경우 상고의 제기로부터 48시간 내에, 송달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소송기록을 대법원 형사부 서기에게 송달한다.

제569조 ① 상고 제기기간 중이나 상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민사 상 선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항소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경죄법원이 제464-1조 또는 제465조 제1항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고등법원이 추인하거나, 이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등법원이 집행유예를 붙이지 아니한 징역형 또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붙인 징역형을 선고한 때에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사법통제는 종료한다.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42-2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무죄, 형 면제 또는 보호관찰의 유무를 불문하고 집행유예를 붙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고에도 불구하고 구속 중인 피고인은 판결 후 즉시 석방된다.

④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구속이 계속되고 있어, 그 구속기간이 선고를 받은 형기에 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⑤ 제498-1조 제3항의 규정은 제410조에 따라 선고된 형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0조 ① 경죄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결과 별도의 결정으로 재판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즉시 이에 대한 상고를 수리한다. 형사부장은 어떤 결정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당사자가 오인한 결로 판단한 경우에도, 공공질서 또는 재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상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수리 결정을 한다. 또는 반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불수리 결정을 한다.

② 결정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때에는 상고기간 만료 시까지 결정은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③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 또는 상고기간 만료 전에 상고인이 제4항에 규정된 청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경죄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재판한다. 제81조 제9항, 제82-1조 제2항, 제156조 제2항 혹은 제167조 제4항에 기하여 예심판사가 내린 결정의 불복신청에 대한 재판이나, 예심판사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행하여진 재판의 경우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이송된 때에는 형사부장은 이를 다시 본래 법원에 환송할 것을 명한다.

④ 상고인은 대법원 형사부장을 수취인으로, 상고기간 만료 이전에 상고를 즉시 수리한다는 취지의 선고를 청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71조 ① 법원 서기는 경죄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에게 제570조에 정한 청구서의 제출 사실을 보고한다. 이 청구서에 대한 선고가 없는 한 판결은 집행할 수 없으며, 본안에 대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② 법원 서기는 상고 및 청구서를 수리하는 즉시 이를 판결문 및 상고장 등본과 함께 대법원 형사부장에게 송부한다.

③ 대법원 형사부장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으로 청구에 대하여 재판한다.

④ 대법원 형사부장이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며 경죄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재판한다. 대법원 형사부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고는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와 동시에 이를 재판한다.

- ⑤ 대법원 형사부장은 공공질서 또는 재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고재판의 기일을 정한다.
- ⑥ 대법원 형사부장의 결정 후 2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로 인하여 정지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의 집행은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 ⑦ 제570조 및 본조의 규정은 고등법원 예심부가 행한 예비판결, 중간판결 및 예심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상고에 준용한다. 다만, 제570조 제3항에 열거된 판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대법원 형사부장이 제173조에 따라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즉시 수리 가능하다고 선언한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제외한 예심수사의 정지를 담당 예심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제571-1조 상고의 취하는 형사부의 부장이 결정으로 확인한다.

제572조 중죄법원이 선고한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법률문제에 대하여만 상고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고할 수 있다.

제573조 ① 다만, 중죄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제371조에 따른 무죄선고 후, 제372조에 따른 무죄 선고 후 또는 형 면제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 제373조에 규정된 원상회복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574조 피고인을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으로 이송하는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문제를 다루었거나, 구속에 관하여 변경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에만 이를 상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74-1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의 공판회부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경우에는 대법원 형사부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 ② 상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상고권을 상실한다. 다만, 대법원 형사부장은 예외적으로 제출기한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한 경과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유서의 제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석방된다.

- 제574-2조** ① 제568-1조의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형사부가 상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 ② 상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대법원이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상고권을 상실한다.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제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유서의 제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상고이유서를 수령하는 즉시 형사부장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제 2 장 상고의 제기

- 제576조** ① 상고의 제기는 원심법원 서기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 ② 상고의 제기는 서기, 상고인, 원심법원 소속 代訴士 또는 특별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경우 서기가 작성하는 문서에 위임장을 첨부한다. 상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서기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상고의 제기는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누구든지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 ① 상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구치소의 장에 대한 신고서에 의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구치소의 장은 전항의 신고서를 확인하여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신고서에는 상고인이 서명하고, 상고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그 취지를 기재한다.

- ③ 신고서 원본 또는 등본은 즉시 원심법원 사무국에 송부한다. 신고서는 제576조 제3항에 규정된 대장에 기재하고, 법원 서기가 작성하는 문서에 첨부한다.

제578조 상고인은 3일 이내에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검사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9조 제578조에 규정된 통지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제614조에 규정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심법원 사무국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584조 상고인은 상고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 10일 이내에 원심법원 사무국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여 서명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 서기는 상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85조 ① 형사 상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상고인은 전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이유서를 대법원 사무국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대법원 소속 변호사의 중개 없이는 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유서에는 소송당사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5-1조 ① 대법원 형사부장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상고인의 이유서는 상고일부터 1월 이내에 대법원 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상고인의 변호인의 이유서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585-2조 형사부장이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상고권이 있는 검사의 답변서는 상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대법원 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586조 법원 서기는 상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송서류에 정리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에 원심법원 판결문 등본, 상고장 등본 및 필요한 경우 상고인이 제출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서류목록을 작성한다.

제587조 ① 전조에 규정된 서류목록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 서기는 검사에게 이를 송부한다. 검사는 즉시 이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며, 검찰총장은 대법원 형사부 사무국에 이를 송부한다.
② 대법원 형사부장은 대법원 판사에게 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한다.

제588조 1인 또는 수인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고자인 대법원 판사는 형사부 서기 앞으로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정한다.

제589조 상고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유서의 등본을 받지 못한 상고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제614조에 규정된 통지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심법원 서기과에 제출할 수 있다.

- 제590조** 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와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법조문을 기재한다.
- ② 이유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상고인이 중죄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판사가 보고를 한 후에는 추가이유서를 첨부할 수 없다. 추가이유서가 시기에 늦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상고심의 개시

제591조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과 판결법원이 최종심으로 선고한 판결이 법률이 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파기할 수 있다.

- 제592조** ① 제591조의 판결이 법률로 정한 정수에 미달하는 판사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공판 전체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선언한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회의 공판이 개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모든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판결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때에도 이를 무효로 한다.
- ③ 그 외에 판결이 공개법정에서 선고되지 아니하거나 심리가 공개법정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선언한다. 다만,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3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과 최종심 판결에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판결 이유가 불충분하여 대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판결 주문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선언한다.

② 당사자의 1개 또는 수개의 신청 또는 검사의 1개 또는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선고를 유탈하거나 거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95조 고등법원 예심부가 절차 규정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예심 수사를 무효로 하는 모든 이유를 고등법원 예심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더 이상 예심수사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대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6조 중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선고하여야 할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된 판결인 경우에는 검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제597조 있어야 할 법률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363조에 정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제598조 선고된 형이 당해 범죄에 적용되도록 법률이 정한 형과 동일한 때에는 누구든지 법률 조문 인용 상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

제599조 ① 경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범한 무효 사유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경우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제305-1조의 규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하는 중죄법원에 제기하지 아니한 무효 사유를 상고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

310 제3권 비상구제방법

제600조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소추되어 있는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위반 또는 유탈을 그 자에게 불이익하게 원용할 수 없다.

제4장 상고심의 심리 및 공판

제601조 대법원은 재판의 공개, 법정경찰과 법정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2조 보고는 공판정에서 이를 행한다. 당사자의 변호인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가 있는 후 그 의견을 진술하며, 이어 검사가 논고를 한다.

제603조 ① 대법원의 합의에 있어서는 의견은 최선임 재판관부터 시작하여 임명순서에 따라 이를 개진하고 재판장이 이를 종합한다.

② 보고를 담당하는 대법원 판사는 항상 최초로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장은 최후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603-1조 형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는 형사부장, 보고담당관, 기타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성명, 심리에 참여한 대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인의 성명 외에 당사자의 성명·직업·주소 및 제출된 소송 이유를 기재한다.

제604조 ① 대법원은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 사건에 있어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즉시 상고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다.

② 대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기 전에 긴급히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상고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상고가 중죄법원의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에 대한 것인 경우

2. 상고가 사형을 선고한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3. 제571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로 한다.

제 5 장 대법원의 판결

제605조 대법원은 본안판결을 하기 전에 상고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 불수리 또는 상고권 상실 판결을 선고한다.

제606조 대법원은 상고 대상이 소멸된 때에는 각하 판결을 한다.

제607조 대법원은 상고를 수리한 경우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고 기각 판결을 한다.

제608조 대법원의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상고 취하를 승인하는 판결은 이를 무료로 등록한다.

제609조 대법원이 경죄 또는 위경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판결을 한 법원과 동일 심급의 법원에 사건과 당사자를 이송한다.

제609-1조 ① 대법원이 예심수사 중 결정에 대한 항고심으로서 고등법원 예심부가 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과 당사자를 다른 고등법원 예심부로 이송한다. 사건과 당사자를 이송 받은 고등법원 예심부는 모든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② 대법원이 전항에 정한 것 이외의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과 당사자를 이송 받은 고등법원 예심부의 관할은 대법원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파기의 이유가 된 쟁송의 해결에 한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기록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7조 제2항 또는 제206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처음 사건을 수리한 고등법원 예심부로 반환된다.

제610조 대법원은 중죄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사건의 이송을 선고한다.

1. 원판결이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인 경우, 중죄공판 회부 판결을 한 고등법원 예심부 이외의 고등법원 예심부
2. 중죄법원에서 범한 무효 사유로 인하여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원판결을 한 중죄법원 이외의 중죄법원
3. 민사상의 이익만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판결을 한 중죄법원이 소재한 관할구역 이외의 고등법원

제611조 사건이 고등법원 예심부로 이송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는 필요한 경우 그 관할구역 내에서 재판을 수행할 법원을 지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다른 관할구역 내에서 피고인을 이송하여야 할 형사법원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612조 ① 대법원은 경죄 또는 위경죄 사건에 있어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판결과 소송절차를 파기하는 때에는 재판을 할 판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그 판사에게 이송한다.

② 대법원은 1개 또는 수개의 사항만이 파기의 대상이 된 때에는 판결의 일부만을 파기할 수 있다.

제612-1조 ①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공질서 또는 재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고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파기판결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상고가 없음에도 파기판결이 적용되게 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본래 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보다 중할 수 없다.

제613조 대법원이 이송된 사건을 재판할 법원을 선정할 권한을 갖는 경우에는 즉시 평의에서 특별합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은 판결에 명시한다.

제614조 ① 상고가 인용되어 새로운 법원으로의 이송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등본은 3일 이내에 이를 검찰총장에게 송달한다. 또, 사건기록과 등본을 이송된 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사법관에게 송부한다.

② 대법원 판결은 사법관의 지휘에 따라 집행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③ 검찰총장도 또한 파기된 판결 또는 결정을 한 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 판결문 등본을 송부한다.

제615조 판결이 법률에 정한 중요한 형식 위반을 이유로 파기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본을 송부한다.

제617조 ① 상고를 기각한 판결 또는 이송 없이 파기를 선고한 판결은 법원 서기가 서명한 초본에 의하여 3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교부한다. 이 초본은 상고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담당할 사법관에게도 송부한다.

② 전항의 판결은 전항의 사법관의 지휘에 따라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18조 상고가 기각된 때에는 이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지 못한다.

제618-1조 법원은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금액 가운데 국가가

314 제3권 비상구제방법

지급하지 아니하는 소송비용을 사소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법원이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과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이를 고려한 결과 직권으로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619조 최종심으로 행하여진 제1심 판결이 파기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 동일한 자격으로 행하여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131-2조 및 제131-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제 6 장 법률상 이익을 위한 상고

제620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공식적인 명령에 기하여 법률에 위반한 사법상 처분 또는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형사부에 파기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제621조 고등법원·중죄법원·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이 최종심으로 선고한 판결에 파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도 법정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기간 경과 후에도 직권으로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고, 대법원은 이 상고의 수리 가능성 및 적법성에 관하여 선고한다. 상고가 수리된 때에는 파기를 선고한다. 다만, 당사자는 그 판결이 파기되었음을 원용하여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2편 재심청구

제622조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모든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살인죄에 대한 유죄판결 후 살인 피해자가 생존한다는 충분한 징후가 될 수 있는 증거물이 발견된 경우
2.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에게 새로운 유죄판결이 있고, 이 양 판결이 모순되며 양립할 수 없어 유죄판결을 받은 일방 또는 타방이 무죄라는 증거가 되는 경우
3. 증언을 한 증인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후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로 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이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을 새로운 변론에서 들을 수 없는 경우
4. 유죄판결 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유죄 혐의에 관하여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새로운 사실이나 변론기일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발생 하거나 발견된 경우

제623조 ① 재심 청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
 2.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무능력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포괄수증자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명시적인 위임을 받은 자
- ② 재심 청구는 대법원 전체회의가 지명하는 5인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한다. 대법원 형사부의 구성원 중에서 지명된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5인의 예비판사가 동일 절차에 따라 지명된다. 검사의 직무는 검찰 총장이 수행된다.
- ③ 위원회는 직접 또는 수사 위임에 의하여 유용한 모든 조사·신문·대질·

검증을 하고,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 및 검사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받은 후 재심 청구의 수리를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법원으로서 재판을 하는 대법원 형사부에 수리 신청을 한다.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공개법정에서 하며, 위원회는 이유를 붙여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622조 제4호에 의한 재심 청구의 경우 전에 기각된 1개 또는 수개의 청구에서 그 근거로 할 수 있었던 새로운 사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 전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624조 ① 재심 청구를 수리한 위원회는 언제든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재심사건이 계속된 재심법원도 전항과 같다.

③ 형의 집행을 정지시킨 위원회나 재심법원은 전자감시 하에 두는 것을 포함한 제731조 및 제731-1조에 정한 조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형 선고로 받은 자에게 부과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결정문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를 감독할 형벌적용판사를 지명한다. 형벌적용판사는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 조건 등을 제712-6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은 1년 간 유효하고, 위원회 또는 재심법원의 결정은 1년 간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부과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형벌적용판사는 위원회 또는 재심법원에 청구하여 선고된 형의 집행정지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는 또 제712-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구금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제712-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재심법원은 형벌적용판사의 청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형 집행 정지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25조 ① 재심법원은 사건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23조 제3항에 정한 절차를 진행한다.

② 재심법원은 사건의 조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고 불복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붙인 판결로 재판한다. 재심법원은 공판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 및 검사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 재판에서의 사소청구인이 즉시 참가한 때에는 정식으로 통지한 후에 사소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재심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고된 유죄판결을 파기한다. 재심법원은 대심 방식에 의한 새로운 심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기한 판결을 한 법원과 동일한 심급의 다른 법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다.

③ 유죄판결을 받은 1인 또는 수인의 사면, 사망, 심신상실, 도망 또는 궤석, 형사책임무능력 또는 유서가능성,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심법원은 분명하게 그 불가능 사유를 확인한 후, 사소청구인 및 각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입회하에 본안에 대하여 재판한다. 이 경우 재심법원은 유죄판결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사망자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④ 유죄판결을 파기하여 이송을 선고한 재심법원의 판결 후 새로운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재심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송법원 지정을 취소하고 전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판한다.

⑤ 유죄판결을 받은 생존자에 대한 판결의 파기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가 전부 소멸된 때에는 이송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⑥ 유죄판결의 파기에 따라 당해 전과는 전과기록부에서 말소된다.

제625-1조 제623조와 제625조의 적용에 있어서 청구인은 국참사원 및 대법원의

변호사 또는 정식으로 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가 대리하게 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626조 ① 법원조직법 제781-1조 제2항 및 제3항과 상관없이 본편을 적용하여 무죄로 인정된 자는 유죄판결로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액 전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죄를 범한 자를 도망가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라도 유죄판결로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항과 동일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에는 제156조 이하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 절차를 거친다.

④ 손해배상은 이해관계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제149-1조 및 제149-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중죄법원에서는 배심원들의 조력 없이 민사소송에서처럼 중죄법원의 판결로 결정한다.

⑤ 손해배상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국가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한 사소청구인, 고발인 또는 위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형사재판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지급한다.

⑥ 재심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무죄로 하는 재심판결은 유죄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도시, 중죄 또는 경죄가 범하여진 읍·면·동, 재심 청구인이 거주하는 읍·면·동과 오판의 희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출생지 및 최후 거주지 읍·면·동에서 이를 게시한다. 동일한 요건 하에 판결을 관보에 등재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선택하는 5개 일간지에 그 초본을 공고하도록 명한다.

⑦ 전항에 규정된 공고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제 3 편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따른 형사 판결의 재심

제626-1조 유럽인권협약 및 그 부속의정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유럽인권법원이 선고한 형사 확정판결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건의 성질과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위 협약 제41조에 선언한 “공평의 원칙을 충족”할 정도로 배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626-2조 재심은 다음의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피고인 또는 그가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

제626-3조 ① 재심 청구는 대법원 판사 7인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위원회에 제기하며 그 위원회의 판사는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는 그 부를 구성하는 판사 1인이 대표하나, 형사부는 판사 2인이 대표하고, 그들 중 1인이 위원장이 된다. 7인의 보조사법관이 동일한 요건에 따라 지명되며, 검사의 직무는 검찰총장이 수행한다.

② 재심은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개변론을 통해 변호인과 검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들은 후에 판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26-4조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재심 결과, 유럽인권협약의 규정과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 기타의 경우에는, 제62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소송 상 결정을 한 동일 심급의 동일법원으로 송부한다.

제625-5조 ① 선고된 판결의 집행 정지는 대법원 위원회의 재심 절차 중 언제라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위원회는 제626-4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대법원 전원회의 또는 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청구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단, 그 구속기간이 선고된 형기를 넘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있는 후부터 1년 안에 재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이유로 청구인을 구속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석방된다. 석방되지 않은 청구인은 구속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48-6조 및 제14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회의에 회부한 때에는, 청구인의 석방 청구는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한 곳의 항소법원 예심부가 심판한다.

③ 위원회 또는 재심법원이 결정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제624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준용된다.

제626-6조 본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참사원 소속 변호사, 대법원 소속 변호사나 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626-7조 소송 결과 피고인이 무죄로 밝혀진 경우 제6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 4 권 특별소송절차

제 1 편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제627조 ① 1998년 7월 18일 서명한 국제형사법원 규정(이하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프랑스는 범죄 진압에 참여하고 본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원과 협력한다.

② 이하 조문은 국제형사법원에 기소된 자와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25조에 정한 집단 살해, 반인륜범죄 또는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모든 자에 대해 적용된다.

제 1 장 사법적 협력

제 1 절 형사사법 공조

제627-1조 ① 국제형사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은 규정 제87조에 따라 원본 또는 모든 서류에 인증이 된 등본과 함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다.

② 위 서류는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함께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된다.

③ 급속을 요하는 경우, 위 서류는 직접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먼저 위 검사장에게 전달되고, 그 이후 전2항에 규정된 형식으로 전달된다.

제627-2조 ① 형사사법 공조는 파리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파리지방법원 예심 판사가, 필요한 경우, 국제형사법원 검사 또는 그 대표자나 국제형사법원의 청구에 따라 지명된 모든 자의 참여 하에 프랑스 전 국토에서 집행한다.

② 형사사법 공조 요청의 집행은 조서로 작성되며 이 조서는 규정 제87조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제형사법원에 제출된다.

③ 급속을 요하는 경우, 조서의 인증 등본은 직접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국제형사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그 후에 조서 원본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627-3조 ① 규정 제93조 제1단 k에 규정된 보존조치는 프랑스 국토 내에서 국고당국의 비용 부담으로, 파리지방검찰청 검사가 신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그 조치의 최장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기간은 국제형사법원의 요청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 동일한 조건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② 파리지방검찰청 검사는 규정 제87조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규정 제93조 제3단 및 제97조에 정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절 체포 및 범인 인도

제627-4조 ① 국제형사법원으로부터의 범인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은 원본 및 그 인증 등본과 함께 미리 그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규정 제87조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며, 이어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되고, 동시에 프랑스 국토 전역에서 집행된다.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 위 요청은 토지관할권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직접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되고, 그 후 전항에 정한 형식을 따른다.

제627-5조 ① 범인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에 따라 체포된 모든 자는 토지관할권이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24시간 이내에 인치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본법 제63-1조 내지 제63-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가 범인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의 대상이며, 최대 5일 안에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출두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검사는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명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또한 피체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③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조서에 기재하며, 이 조서는 즉시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된다.

④ 검사는 구치소의 장에게 명하여, 제1항에 정한 자를 구속한다.

제627-6조 ① 인도 요청된 자는 필요한 경우 파리고등검찰청 관할 구치소로 이송하여 수감한다. 이송은 검사에게 출석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송되지 아니할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송이 지연된 것이 아닌 한, 파리고등법원 예심부의 결정으로 즉시 석방된다.

②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인도 요청된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범인 인도를 위해 체포 요청되었다는 사실과 그에게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지한다.

③ 인도 요청된 자가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고, 그 변호인이 정식으로 소환된 경우, 고등검사장은 그 자의 진술을 듣는다.

④ 그 외의 경우에는, 고등검사장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지명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선임된 변호인 또는 직권으로 지명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사회 회장이 지체 없이 변호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변호인은 즉석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도 요청된 자와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인도 요청된 자의 진술을 듣고, 본조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제627-7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즉시 절차를 진행한다. 인도 요청된 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출석한 후 8일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에 출두한다. 고

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인도 요청된 자의 신청에 기하여 변론 전 8일의 기간을 더 허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인도 요청된 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는 조서에 기재된다.

② 변론과 판결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지나, 공개하는 것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이해관계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검사 또는 인도 요청된 자의 신청으로 비공개의 평의실에서 선고하며, 이는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심부는 선고와 동시에 제627-8조에 규정된 범인 인도에 대해 판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인도 요청된 자는 통역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제627-8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는 명백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인도 요청된 자에 대하여 범인 인도를 명하고, 그 자가 불구속인 경우에는 구속을 명한다. 고등법원 예심부에 제출된 모든 신문사항에 대한 신문결과를 국제형사법원에 송부하고, 국제형사법원은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권고한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소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고한다. 상고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 형사부는 대법원에 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판한다.

제627-9조 ① 인도 요청된 자는 규정 제59조와 본법 제148-1조 및 그 이하 조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파리고등법원 예심부에 대하여 언제든지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고등법원 예심부는 이에 대하여 규정 제59조 제4단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제627-10조 ① 고등법원 예심부의 판결문에는, 필요한 경우 인도 요청된 자의 인도 일시 및 인도 장소와 범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을 명시하며, 판결은 적당한 방법으로 규정 제87조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제형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도 요청된 자는 범인 인도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도되고, 인도의 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위 기간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된다.

제627-11조 ① 제627-4조 내지 제627-10조의 규정은 인도 요청된 자가 국제형사법원의 인도 요청에서 적용한 법률 규정 이외의 죄로 프랑스에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준용된다. 다만, 위와 같이 구속된 자는 제627-6조, 제627-9조 및 제627-10조 제2항에 따라 석방될 수 없다.

② 국제형사법원에서의 이후의 소송절차는 인도 요청된 자에 대한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를 중단시킨다.

제627-12조 규정 제87조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은 규정 제89조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를 경유할 수 있다.

제627-13조 ① 국제형사법원이 프랑스의 국가기관에 의한 범인 인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은 위 규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전달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첨부한 모든 인증기록과 함께 파리고등법원 예심부로 송부된다.

② 관련 기록과 관계자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고등법원 예심부는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범인 인도의 연장을 허용한다.

제627-14조 ① 규정 제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시 체포된 자가 동의할 경우,

규정 제87조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사법기관으로부터 공식 범인 인도 요청을 받기 전이라도 국제형사법원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범인 인도는 대상자에게 범인 인도의 공식적 절차와 관련된 법적인 권리를 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은 후 파리고등법원 예심부가 결정한다.

③ 고등법원 예심부에서의 변론 중 대상자는 선임한 변호사나 사선변호사가 없을 경우,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지명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규정 제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시 체포되었으나 법원에서 범인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자는, 국제형사법원으로부터 소송절차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식 인도 요청이 없고 그 법원으로부터의 입증자료 제출이 없을 경우 석방된다.

⑤ 석방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기하여 고등법원 예심부가 결정한다. 고등법원 예심부는 체포된 자가 소환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재판한다.

제627-15조 프랑스에서 체포된 모든 자는, 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원확인·변론·기타 예심수사상 필요에 따라 국제형사법원에 이송된다. 이송 허가는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 2 장 국제형사법원이 선고한 형 및 배상조치의 집행

제 1 절 벌금형 및 몰수, 피해자를 위한 배상조치의 집행

제627-16조 ① 국제형사법원으로부터 벌금형·몰수·배상명령의 집행 요청이 있을 경우, 파리경죄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집행을 허가한다. 그 이후의 절차는 경죄법원이 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한다.

② 법원은 제3자의 권리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 다만, 몰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그 물건·재산 및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수사 위임을 하여 피고인 및 그 자산과 관련된 모든 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명한 몰수 판결 또는 손해배상 판결의 집행이 국제형사법원 판결에 불복을 구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 사실은 검사에게 통보되고 검사는 국제형사법원에 모든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한다.

제627-17조 ① 본조의 규정에 따른 경죄법원의 집행 허가는 국제형사법원의 결정에 명시된 벌금과 몰수한 물품 또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물건을 매각한 대금의 송부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그 물건 또는 금전은 국제형사법원의 결정과 지시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벌금·물건·환가대금의 충당에 대한 모든 이의는 필요한 자료를 붙여서 국제형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 절 징역형의 집행

제627-18조 ① 규정 제103조에 따라 정부가 국제형사법원에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 집행을 위해 그를 프랑스 영토로 인수한 경우, 선고된 형은 프랑스 영토로 인도된 때부터 즉시, 직접, 집행할 수 있다.

② 위 규정과 본절에 정한 내용이 적용되는 외에, 형벌의 집행과 적용에 관하여는 본법에 따른다. 다만, 제713-1조 내지 제713-7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27-19조 ① 프랑스 영토에 집행 대상자가 도착한 즉시 도착지 관할 검사에게 출석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는 조서에 기재된다. 신문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구치소의 장이 직권으로 그 집행대상자를 검사에게 출두시킨다.

② 관련자의 이송에 관한 정부 및 국제형사법원의 합의 관련 서류, 판결문 및 집행 개시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한 국제형사법원의 인증 등본을 확인한 후, 검사는 즉시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구금을 명한다.

제627-20조 ① 그 자가 외부구금·반자유처분·형의 감경·형의 분할 또는 연기, 전자감시처분 또는 조건부석방 신청을 할 경우 그 신청서는 구금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제출되고 검사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② 위 신청서는 최단 기간 내에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국제형사법원에 송달된다.

③ 국제형사법원은 고려할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형 집행을 받을 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정부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구금할 것인지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국가로 이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제1편bis 합헌성 문제

제630조 형사사건에서 본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또는 합헌성 문제가 제기되어 대법원이 헌법위원회에 선결사항으로 질의하여야 할 경우, 그 절차는 헌법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1958년 11월 7일 명령 제58-1067 제23-1조 내지 제23-7조에 따른다.

제2편 위 조

제642조 ① 위조 주장이 있는 문서가 공공보관소에 현출되거나, 공공보관소에서 작성되었음을 검사가 안 경우에는, 검사는 그 보관소로 가서 필요한 모든 검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전항의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심되는 문서를 사무국으로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43조 ① 문서위조에 대한 예심수사에서 위조의 주장이 있는 서류가 예심판사에게 제출된 때 또는 법원에 입수된 때에는 예심판사는 즉시 이를 사무국에 보관하도록 명한다. 예심판사는 서기가 서류의 상태를 기재하여 작성한 보관증서에 서명하고, 서기도 이에 서명한다.

② 다만, 예심판사는 사무국에 보관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복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44조 예심판사는 모든 서류를 그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기는 전조에 규정에 따라 보관증서를 작성하고 예심판사와 서기가 이에 서명한다.

제645조 ① 위조 주장이 있는 서류 또는 위조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서류를 공적인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예심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때에는 점유를 취득한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제출 또는 유치된 서류가 공정증서의 성질을 갖는 것일 때에는 제출한 자는 서기에 대하여, 서기가 인증등본으로 유치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 기타의 방법으로 복사본을 남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등본 또는 복사본은 원본이 환부될 때까지 이를 사무소의 다른 정보 가운데 편철하여 둔다.

제646조 ① 법원의 공판 진행 중 소송서류 또는 제출된 서류가 위조라는 취지의 주장이 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법원이 위조에 관하여 신고할 때까지 심리를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위조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가 고의로 위조 서류를 행사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을 심리하는 법원은 위조 주장이 있는 서류의 성격에 관하여 부대적으로 재판한다.

제647조 대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위조 확인의 청구는 대법원장에게 하며, 청구서는 사무국에 제출한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국참사원 및 대법원의 변호사 또는 특별대리인이 서명한다. 특별대리인의 경우에는 서기가 작성하는 증서로 위임장을 첨부하고,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서기가 그 취지를 기재한다.

제647-1조 ① 대법원장은 청구서가 사무국에 제출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한다.

- ② 대법원장은 기각 결정 또는 위조서류 신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 ③ 기각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명령으로 정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명시적으로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7-2조 ① 위조서류 신고를 허가하는 결정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조를 주장한 서류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송달한다.

② 전항의 최고장에는 청구서 및 위조서류 신고를 허가하는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제647-3조 ① 피청구인은 15일 이내에 위조 주장이 된 서류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답변서는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제647-4조 피청구인이 위조를 주장한 서류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법률에 따라 위조서류 신고 사건을 재판할 법원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3 편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소송절차

제648조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미확정의 사건기록 및 제81조에 따라 작성된 사본이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훼손·탈취 또는 분실되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649조 ① 판결의 공정등본 또는 공증한 사본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본으로 보며, 판결을 한 법원의 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모든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당해 법원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전항의 명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면책된다.

제650조 중죄사건에서 판결의 공정등본 또는 공증한 사본이 없더라도 제364조에 따라 설문 용지에 기재된 법원 및 배심의 답변서가 남아 있는 때에는 그 답변서에 기하여 새로운 판결 선고 절차를 행한다.

제651조 ① 법원 및 배심의 답변서가 발견되지 않을 때 또는 사건이 쥔석재판으로 진행된 경우로써 그 재판에 관한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가 없어진 시점 이후의 심리 절차를 속개한다.

② 다른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판결의 공정등본 또는 공정한 사본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 4 편 정부각료와 외국사절의 증언절차

제652조 ① 수상 및 기타 정부 각료는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따라 각료회의가 허가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

② 전항의 허가는 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정부각료가 보조증인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53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출석한 경우에 증언은 다른 증인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다.

제654조 ① 출석 청구가 없거나 출석 청구를 불허한 경우 증언은 증인의 주거지에서 고등법원장의 서면으로 이를 확보한다. 증인이 고등법원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수리한 법원은 범죄사실의 설명서와 증언을 요하는 부분 및 질의사항을 전항에 규정된 사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55조 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받은 증언서는 즉시 이를 요구한 법원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봉인하여 그 법원 사무국에 송부하고, 지체 없이 검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다.

② 중죄법원에서는 증언서를 공개법정에서 낭독하고 심리에 회부한다.

제656조 ① 외교사절의 서면 증언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증언서는 고등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수탁 사법관이 수리한다.

② 전항의 절차는 제654조 제2항 및 제655조에 규정된 방식에 의한다.

제 5 편 관할의 결정

제657조 같은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소속된 2인의 예심판사가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검사는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 예심판사의 일방에 대하여 다른 예심판사를 위하여 사건을 각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각하에는 두 예심판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82조, 제658조 또는 제65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결정한다.

제658조 같은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2개의 경죄법원, 2명의 예심판사 또는 2개의 경찰법원이나 근린법원이 동시에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리한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검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정의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다.

제659조 그 외의 모든 관할의 경합은 검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대법원 형사부가 결정한다. 대법원은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리 관할 지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어진 법원의 모든 행위의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660조 대법원 형사부는 관할의 결정에 앞서 관할 지정의 신청이 종료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기록은 형사부가 정한 기간 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제661조 ① 관할 지정 결정은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송달한다. 당사자는 청구에 관한 답변을 이미 들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의 방식 및 기간에 따라 관할이 경합하는 법원 중 하나의 법원 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형사부가 동의하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절차는 정지된다.

③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서류가 대법원 사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판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형사부는 청구인에게 15유로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 편 관할의 이전

제662조 ① 중죄, 경죄 또는 위경죄 사건에서 대법원 형사부는 판결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의 재판권을 상실하게 하고 사건을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관할 이전의 청구는 검찰총장, 수소법원의 검사 또는 당사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 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청구서의 제출은 대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정지효를 갖지 않는다.

제663조 같은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속하는 2인의 예심판사가 1인이 저지른 범죄와 그와 관련된 범죄 또는 수인이 저지른 범죄와 그와 관련된 범죄를 동시에 수리한 때에는, 검사는 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제43조, 제52조 및 제3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예심판사의 일방에 대하여 타방 예심판사를 위하여 사건의 수리를 각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리의 각하는 두 예심

판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제6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4조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 결정에 따라 구속되어 있거나 형 집행중인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특히 피구금자의 이송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신병구금지의 예심법원 또는 판결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절차는 관할 결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제665조 ① 대법원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관할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 형사부는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수소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관할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등검사장은 10일 이내에 결정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검찰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대법원 형사부에 청구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대법원 형사부는 청구일로부터 8일 이내에 재판한다.

제665-1조 ① 일반적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을 적법하게 구성할 수 없는 때 또는 기타 재판의 진행이 중단된 때에는 대법원 형사부는 관할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 이전의 청구는 검찰총장 또는 수소법원의 검사가 이를 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법원 사무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대법원 형사부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판한다.

제666조 전조에 정한 원인 중 하나를 이유로 하는 관할 이전 청구에 대하여 행한 결정은 검찰총장의 책임 하에 관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제667조 공공의 안전, 제66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재판의 공정을 의심케 하는 사유 또는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이유로 하는 관할 이전 청구 기각 결정이 있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기하여 새로운 관할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7-1조 ① 통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법률이 정한 모순된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고등법원장은 해당법원의 인접법원으로서 본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법원으로 관할을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관할 이전은 수소법원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③ 청구는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정은 불복이 대상이 되지 않는 사법행정처분으로 본다.

⑤ 관련 지방법원장 및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들어 고등법원장은 각 관할 법원별로 본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법원을 지정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시행 중인 당해 연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제 7 편 기 피

제668조 다음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법관은 기피할 수 있다.

1.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의 6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인척인 때.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 일방의 2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때에는 이혼 또는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의 사망 후라도
 이를 기피할 수 있다.

2.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 후견인·후견 감독인·보좌인 또는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소송에 이해관계를 갖는 때,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감사에 관여하는 회사
 또는 조합이 소송에 이해관계를 갖는 때
3.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 일방의 후견인·후견 감독인·보좌인, 법정지배인
 또는 업무담당자의 6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인척인 때, 소송 중인 당사자인
 회사경영자·지배인 또는 6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인척인 때
4.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는 때
5. 판사가 사법관·중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소송의 심리에 관여한 때 또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한 때
6.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이들의 직계친족 또는 직계인척과 당사자의 일방, 그와 배우자 등
 관계에 있는 자와 이들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인척 사이의 소송인 때
7.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당사자 일방의 재판을 하는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을 때
8.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와 이들의 직계친족 또는 직계인척이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분쟁 중일 때

9. 판사 또는 그와 가족법 상 계약으로 맺어진 배우자·동거인, 기타 내연 관계에 있는 자와 당사자의 일방 사이에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중대한 의견 표명이 있을 때

제669조 ① 예심수사피의자·피고인 및 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예심판사·경찰법원 판사, 경죄법원·고등법원·중죄법원의 1인 또는 수인의 법관 또는 그 전체를 기피하려고 하는 때에는 고등법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기피 신청은 무효로 한다.

② 검사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신청서에는 기피할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을 특정하고 신청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일체의 증거를 첨부하며, 기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예심판사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써 기피사유가 될 만한 것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제670조 ① 고등법원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절차를 통해 기피된 법관이 속하는 법원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기피된 법관의 당해 재판업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등법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예심수사, 공판심리의 수행 또는 판결 선고를 연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71조 ①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보충의견서와 기피신청 법관의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은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듣고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②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은 확정된다.

제672조 고등법원장이 기피신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대법원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고, 제6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3조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명령과 함께 75유로 이상 750유로 이하의 민사 벌금을 선고한다.

제674조 법관은 제668조에 열거된 경우에도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듣고 행해진 고등법원장의 허가 결정 없이는 직권으로 회피할 수 없고, 고등법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제674-1조 형사사건을 수리한 대법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신청은 사무국에 제출하되, 반드시 변호사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674-2조 ① 당해 재판을 담당하는 부는 청구가 사무국에 제출되고부터 1월 이내에 기피신청된 대법원 법관의 의견을 들어 재판한다.

②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권 제20편 (신민사소송법 제1권 제10편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편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

제675조 제342조 및 제457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법정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관할 및 소송절차의 특별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재판한다.

제676조 공판기일에 위경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증인·검사 및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법률에 정한 형을 선고한다.

제677조 ①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의 공판기일에 경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전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때에는 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경찰법원의 공판정에서 경죄로 분류된 범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재판장은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한다. 재판장은 그 범죄사실이 6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범행을 한 자를 체포하여 즉시 검사에게 인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의 공판기일에서 형법 제434-24조에 규정된 모욕죄를 범한 경우 재판장은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한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공판정에 출석하고 있던 사법관은 수소법원을 구성할 수 없다.

제678조 범행이 중죄인 때에는 법원은 범인을 체포하게 한 후 신문하고 범죄 사실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당해 법원은 사건기록을 관할 검사에게 송부하고 즉시 범인을 검사에게 인치할 것을 명하며, 검사는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한다.

제 9 편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

제 1 장 프랑스 법원의 관할

제689조 프랑스 공화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정범 또는 공범은 형법 제1권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프랑스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거나 국제협약이

프랑스 법원에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프랑스 법원에 소추되고 재판을 받는다.

제689-1조 다음 조 이하에 열거된 범죄에 대하여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프랑스 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때에는, 다음 조 이하에 열거된 국제조약을 적용하여 프랑스 법원에 소추되고 재판을 받는다. 이들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미수범에게도 적용된다.

제689-2조 1984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고문 및 기타 잔악한 비인도적 혹은 품위를 손상하는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조약」 제1조에 정의된 고문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동 조약을 적용하여 제687-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689-3조 다음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977년 1월 2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서명된 「테러행위금지 유럽협약」 및 1979년 12월 4일 더블린에서 채택된 「동 조약의 적용을 위한 유럽공동체 가맹국가 조약」을 적용하여, 제687-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고문·가혹행위·상해치사·신체 일부의 절단·영구적 신체장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8일을 초과하는 완전노동능력 상실, 형법 제2권에 의해 처벌되는 납치와 감금 및 형법 제222-17조 제2항, 제222-18조에 규정된, 협약으로서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자(외교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죄
2. 왕래의 자유와 관련하여 형법 제241-1조에 정한 침해 또는 폭발물·수류탄·로켓탄·자동식 소총 혹은 소포탄이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는 형태로 사용된 모든 중죄나 경죄로서 이들 범죄가 위협 또는 공포에 의하여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해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개별 혹은 집단적인 기도와 관련된 경우

제689-4조 다음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3일 비엔나 및 뉴욕에서 서명된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조약을 적용하여 본법 제689-1조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핵물질의 방호 및 통제에 관한 1980년 7월 25일 법률 제80-572호 제6-1조에 규정된 범죄
2. 1980년 7월 25일 법률 제80-572호 제6-1조에 규정된 불법취득, 형법 제2권 및 제3권에 정의된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고의적 침해·절도·강도·공갈·사기·배임·장물취득·손괴·훼손 혹은 훼손 또는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취지의 협박으로서 이들 범죄가 같은 조약 제1조 및 제2조가 적용되는 핵물질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 또는 핵물질을 대상으로 한 것

제689-5조 다음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약」 및 1988년 3월 10일 로마에서 체결된 「대륙붕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를 적용하여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형법 제224-6조 및 제224-7조에 규정된 중죄
2. 형법 제2권 및 제3권에 규정된 생명 혹은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파괴·훼손 혹은 훼손,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협박, 형법 제224-8조 및 해양법 제331-2조에 규정된 경죄로서, 항해 또는 대륙붕에 설치된 플랫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
3. 생명에 대한 고의의 침해·고문·가혹행위 또는 형법 제2권에 규정된 폭력행위로 본조 제1호와 관련된 범죄, 항해 및 본조 제2호의 플랫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

제689-6조 다음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 침탈 방지에 관한 조약」 및 1970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의 방지에 관한 조약」을 적용하여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항공기의 탈취, 항공기 탈취 혐의자가 탈취의 실행에 있어 여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행한 기타 폭력행위
2.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항공기에 대한 범죄로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의 a, b 및 c 에 열거된 범죄

제689-7조 기계장치, 물질 혹은 무기를 사용하여 다음에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 및 1971년 9월 23일 체결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방지에 관한 추가 협약」을 적용하여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에 할당된 비행장의 안전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범죄
 - a) 형법 제2권에 규정된 명령에 대한 고의의 침해·고문 및 가혹행위·상해치사·신체의 일부 절단, 영구적인 신체장애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8일을 초과하는 노동능력의 완전상실을 초래한 폭력
 - b) 형법 제3권에 규정된 파괴·훼손 또는 훼손으로서 국제민간항공에 할당된 비행장 시설 또는 비행장 내에 보관된 업무 중이 아닌 항공기에 대한 행위
 - c) 민간항공법 제282-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경죄로서 국제민간항공에 할당된 비행장 시설 또는 비행장 내에 보관된 업무 중이 아닌 항공기에 대한 범죄
2. 민간항공법 제282-1조 제6항 제5호에 규정된 범죄로서 국제민간항공에 할당된 비행장의 업무에 대한 범죄

제689-8조 다음에 열거된 자에 대하여도 1996년 9월 27일 더블린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의 재정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의정서와 1997년 5월 26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 공무원 및 유럽연합회원국 공무원이 연관된 부패행위의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하여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1. 프랑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유럽공동체 기구 또는 유럽연합설립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의 모든 유럽공동체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435-1조에 규정된 경죄를 범한 자이거나 1995년 7월 26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의 재정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침해를 가하는 범죄를 범한 자
2. 형법 제435-1조 및 제435-2조에 규정된 경죄를 범하였거나 1995년 7월 26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의 재정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침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프랑스인 또는 프랑스의 공무담당자
3. 형법 제435-2조에 규정된 경죄 또는 1995년 7월 26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에 정한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에 침해를 가하는 범죄를 제외 프랑스국민에 대하여 범한 자

제689-9조 1998년 1월 12일 뉴욕에서 서명 개시한 「테러행위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폭발물 또는 기타 살상기구를 사용하여 행한 형법 제421-1조 및 제421-2조에 정한 테러행위 관련 중죄, 경죄 또는 형법 제421-2-1조에 정한 테러집단 조직 관련 경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 협약을 적용하여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689-10조 2000년 1월 10일 뉴욕에서 서명된 「테러행위자 금융제재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하여, 형법 제421-1조 내지 421-2-2조에 정한 중죄 및 경죄가

위 협약 제2조에서 정한 테러행위로 인한 금융행위인 경우 그 죄를 범한 자는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689-11조 ① 일정 기간 프랑스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고, 1998년 7월 18일 로마에서 서명한 「국제형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협약」 상 국제형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를 외국에서 범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그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거나 범되지 또는 범죄자의 국적지가 협약 당사국인 경우, 프랑스 법원이 그에 대하여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국제형사법원 또는 외국법원이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전항의 소추를 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국제형사법원에 문의하여 국제형사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기타 국제법원이나 외국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인도 요청을 경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89-12조 2006년 3월 15일 공로의 운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적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유럽의회의 규칙을 적용하여 규칙 제2장에 정한 운송 중 휴식과 운송시간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68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추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기소의 실행 및 토지관할

제692조 전장에 규정된 경우, 이미 동일한 사실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또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한 자에 대하여는 소추할 수 없다.

제693조 ① 피고인의 거주지, 피고인의 알려진 최후 주거지, 피고인의 현재지,

피해자의 주거지 그리고 범죄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항공기 착륙지의 각 법원은 토지관할을 갖는다. 단, 이로 인하여 제697-3조, 제705조, 제706-1조 및 제107-7조의 특별관할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리지방법원이 관할을 갖는다. 다만, 대법원이 검사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사건의 재판권을 범죄지 소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제 1 장 총 론

제 1 절 공조 요청의 실행과 전달

제694조 ① 국제협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프랑스 사법기관의 외국 사법기관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은 법무부장관을 통한다. 판결문 등 관련 서류도 같은 경로를 통해 외국사법기관에 전달한다.
2. 외국사법기관의 프랑스 사법기관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판결문 등 관련 서류도 같은 경로를 통해 프랑스 사법기관에 전달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국사법기관에 대한 또는 프랑스 사법기관에 대한 공조 요청은 관할권 있는 기관에 대하여 직접 할 수 있고, 판결문 등 관련 서류도 같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사법기관에 대한 공조 요청 및 프랑스 사법기관에 대한 외국의 공조 요청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가에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 제694-1조**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국사법기관의 프랑스 사법기관에 대한 공조 요청은 제69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권 있는 검사 또는 지방법원 예심판사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장을 경유하여 검사 또는 예심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예심판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법공조 요청을 외국으로부터 받은 경우 요청 취지를 예심판사에게 전달한다. 단,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검사장에게 이를 전달한다.
- ③ 예심판사는 직접 받은 공조 요청을 실행하기에 앞서 즉시 검사의 의견을 구한다.

- 제694-2조** ① 외국사법기관의 사법공조 요청은 검사가 실행하거나 검사의 위임을 받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실행한다.
- ② 공조 요청의 내용이 예심수사 과정에서 명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는 때에는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이를 실행한다.

- 제694-3조** ① 외국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조 요청은 본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공조 요청을 한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이 방식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본법에 정한 당사자의 권리나 절차 보장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외국의 공조 요청에 정한 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랑스 사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공조 요청을 한 기관에게 통지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요청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요청기관과 프랑스의 담당 사법기관이 공조 요청의 실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공조 요청 절차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공조 요청에 기해 이미 실행한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제694-4조** ① 외국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사법공조 요청이 공공질서와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요청을 받거나 제694-1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요청 취지를 전달 받은 검사는 공조 요청을 검사장에게 전달하고, 검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며, 이와 같은 전달 사실을 예심판사에게 통지한다.
- ② 공조 요청을 전달 받은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의 사법기관에게 요청 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국내 사법기관에게 통지 사실을 고지하고, 실행 중지와 서류 반환 등을 명한다.

제 2 절 잠입, 감시 및 진술청취 목적의 공조 요청

- 제694-5조** ① 제706-71조의 규정은 외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에서 행하는 행위와 프랑스의 공조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행하는 행위에 동시에 적용된다.
- ② 프랑스의 공조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행해지는 신문과 진술청취, 대질 등은 국제협약이 특히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소추 대상자의 신문과 대질은 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실행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434-13조와 제434-15-1조의 규정은 외국의 공조 요청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에서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증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694-6조** ① 외국에서 제706-80조에 정한 감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감시의 실행조서 또는 이에 첨부하는 보고서와 외국에서의 실행을 허가하는 서류 등은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제694-7조 ① 외국의 사법경찰은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프랑스 경찰의 지휘 하에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제706-81조 내지 제706-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고, 외국의 사법경찰은 제706-8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파리지방법원의 검사 또는 예심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의 사법경찰이 제706-81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프랑스의 사법경찰과 비슷한 조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법무부장관은 전항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94-8조 외국 사법기관의 동의하에 제694-7조 제2항에 명시한 외국의 사법경찰은 제706-81조 내지 제706-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에서 수색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사법경찰은 프랑스 사법경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프랑스의 사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94-9조 국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형사절차 중에 수집한 정보를 외국의 사법기관에게 전달할 수 있고, 조건을 정하여 그 정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몰수 목적의 물건 압수에 대한 사법공조

제694-10조 국제협약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몰수 또는 범죄수의 환수 목적으로 범죄행위의 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된 물건이나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외국 사법기관의 공조 요청에 따라 압수함에 있어서는 제694-11조 내지 제694-1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694-11조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94-10조에 따른 공조 요청은 제713-37조에 정한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694-12조 외국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을 받은 예심판사는 물건의 소유자가 출처를 숨기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존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랑스 영토 내에서 행하는 보존조치는 국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제 2 장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항

제695조 본장의 규정은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 내 국가 간의 사법공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1 절 사법공조의 요청 및 전달

제695-1조 국제협약이 달리 정한 경우나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공조 요청은 제694-1조 내지 제69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관할 있는 사법기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며, 판결문 등 기록도 직접 전달된다.

제 2 절 공동수사팀

제695-2조 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복잡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다른 회원국과 관련된 수사, 여러 회원국의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동의와 관련 회원국의 양해를 얻어, 관할권 있는 사법당국은 공동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특별히 수사 위임을 받아 공동수사팀에 참가한 외국 요원은 프랑스 사법기관의 감독 하에 프랑스 영토 내 전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죄·경죄·위경죄의 인지와 소속 국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조서 작성
2. 범죄 정보를 알고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여 소속 국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조서에 기재하는 것
3. 프랑스 사법경찰관의 업무 수행 보조
4. 감시와 권한을 위임 받은 경우 제706-81조 이하에 따른 수색. 이 경우 제694-7조 및 제694-8조가 적용된다.
 - ③ 공동수사팀에 소속된 외국 요원은 파견을 허락한 소속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 외국 요원은 지정된 임무만 행할 수 있으며, 공동수사팀을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 ⑤ 본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의 원본과 프랑스어로 번역되거나 다시 작성한 조서는 프랑스 형사절차에 제출된다.

제695-3조 ① 공동수사팀에 파견된 프랑스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수사팀장이 지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② 공동수사팀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당해 회원국의 담당기관이 정한다.

③ 공동수사팀 요원은 본법에 정한 형식으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고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 절 유로저스트에 관하여

제695-4조 중대범죄와의 투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28일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창설된 유로저스트는 사법권을 가진 유럽연합의 기구

로서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과 공조 증진을 목표로 한다. 유로저스트는 각국에 파견된 대표자 또는 지부를 통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제695-5조 유로저스트는 회원국에 파견된 대표 또는 지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지한 범죄사실을 검사장에게 통지하고 수사 또는 소추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있는 관할권 있는 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해 줄 것을 검사장에게 요청한다.
3. 공동수사팀을 발족해 줄 것을 검사장에게 요청한다.
4. 검사장 또는 예심판사에게 부탁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법처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695-6조 ① 유로저스트의 요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예심판사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때에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와 같은 결정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695-5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청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계속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타 관련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때에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95-7조 사법공조 요청의 취지로 판단할 때 관련국의 협력이 필요하여 유로저스트가 개입해야 할 경우에는 유로저스트는 요청을 받은 국가에 파견된 대표자를 통해 사건의 이송을 요구한다.

제 4 절 유로저스트의 대표

제695-8조 ① 유로저스트의 대표로는 법무부장관의 명에 따라 3년 간 유로저스트의 일을 담당할 사법관을 지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유로저스트를 대표할 사법관을 지휘한다.

제695-9조 ① 임무의 범위 안에서 유로저스트의 대표는 공판기록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법처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기관은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계속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타 관련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때에는 정보의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검사장은 유로저스트의 관할에 속하거나 최소한 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관련된 사건은 대표자에게 인계한다.

④ 대표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연락사무소의 수사에 관한 정보를 검사장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제 5 절 2003년 7월 22일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증거물 및 자산의 동결 결정의 통지 및 집행에 관하여

1. 총 칙

제695-9-1조 ① 이하에서 말하는 결정이라 함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몰수 대상 자산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내리는 동결 결정을 말하고,

이 결정을 통지 받은 집행국은 이들 물건의 훼손·변형·이동·운반·소비 등을 막기 위하여 결정을 집행한다.

② 본절에 정한 조건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은 자산 및 증거물의 동결 결정을 하여 이를 집행국인 다른 회원국에 송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국은 동결 조치를 실행한다.

③ 자산 및 증거물의 동결 결정은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압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695-9-2조 다음 각호의 물건은 동결 결정의 발효 및 집행 대상이 된다.

1. 범죄의 도구 또는 수단과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범죄행위의 생산물이나 이 생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는 유형·무형의 동산 또는 부동산과 그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표방하는 문서 또는 인증서
2. 통지국의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모든 물건·서류 또는 자료

제695-9-3조 자산 또는 증거물의 동결 결정은 결정을 내린 사법기관의 확인을 거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자산 동결 결정을 하고 이를 확인·인증한 사법기관, 통지기관과 집행기관이 다를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명칭
2. 동결 결정을 송달 받아 통지하는 것을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 경우 그 기관의 명칭
3. 동결 결정의 대상과 일시 및 증거물의 동결 결정을 집행할 때 특별히 지켜야 할 요건
4.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 및 증거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특히 자산 및 증거물의 특징과 집행국 내 위치, 보관자 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5.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개인 또는 법인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름 및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자의 이름

6. 동결 결정의 이유, 결정을 내린 사법기관이 알고 있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의 성격과 법조문, 그 범죄행위가 통지국의 법률에 따를 때 제695-23조 제3항 내지 제34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인지 여부
7. 전호에 속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8. 통지국의 법령에 따를 경우 동결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선의의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기간과 제출법원
9. 기타 관련 정보
10. 통지기관의 서명과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확인자 서명

제695-9-4조 ①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에는 경우에 따라 다음 요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통지국으로의 증거물 송부 요청
2. 자산 동결 결정의 실행 요청
- ② 전항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증거물을 전항 각호의 요청이 도달할 때까지 집행 시 상태로 보전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항의 요청이 도달 예정인 날짜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③ 통지국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적시한 사항을 요청하면 집행국은 이를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공조 요청이나 물수에 관한 국제공조 요청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695-9-5조 동결 결정의 인증서는 집행국의 언어 또는 집행국의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하여야 하며, 집행국이 선택한 유럽연합의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할 수 있다.

제695-9-6조 ① 동결 결정과 그 인증서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집행국의 사법기관에게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 집행국의 사법기관이 기록을 통해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원국이 전항의 성립의 진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결 결정과 그 인증서는 그 회원국이 지정한 하나 또는 수개의 기관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2. 프랑스의 사법기관이 행한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에 대하여

제695-9-7조 ① 프랑스의 검사와 예심법원, 석방구금판사와 관할권 있는 법원은 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몰수 결정을 하면서 프랑스 영토 밖에 있는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하여도 같은 조건으로 동결 결정을 하고 인증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② 인증서에는, 증거물에 대한 동결 요청은 집행국에서 본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5-9-8조 예심판사의 동결 결정은 제695-9-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국의 사법기관에 인증서와 함께 예심판사가 송달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법원에 속한 검사가 결정문과 인증서를 송달한다.

제695-9-9조 동결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제695-9-8조에 정한 방식으로 집행국의 사법기관에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3. 외국의 사법기관이 발령한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제695-9-10조 예심판사는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을 수리하고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제695-9-11조 ① 통지국의 동결 결정 및 그 인증서는 제695-9-6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는 예심판사에게 직접 송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장이나 검사를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토지관할은 동결 대상 자산이나 증거물이 있는 곳을 말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파리의 예심판사에게 토지관할이 있다.

③ 자산 및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이 송달된 사법기관이 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통지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695-9-12조 ① 직접 요청을 받은 예심판사는 심리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② 직접 요청을 받은 검사는 동결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다.

③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는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송한다.

제695-9-13조 ① 동결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예심판사는 빠른 시간 안에 동결 결정의 집행을 승인한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결정의 통지로부터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예심판사는 동결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다.

③ 예심판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동결 조치의 집행 사실을 고지한다.

제695-9-14조 ① 증거물에 대한 동결 조치는 본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른다.

② 단, 통지국이 달리 요청하는 경우 제694-3조에 정한 방식으로 동결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제695-9-15조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동결 조치는 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고청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제695-9-16조 인증서가 없거나 불완전하거나 동결 조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동결 조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예심판사는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수 있고, 그를 대체할 다른 서류를 수리하거나 결정의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제695-9-17조 ①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결 조치의 집행을 거부한다.

1. 프랑스 법에 따라 동결 조치가 불가능한 물건이거나 동결 조치가 면제된 물건에 대한 동결 결정
2. 프랑스나 기타 통지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이미 기판력이 생긴 범죄행위와 관련된 동결 결정. 단, 형벌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중이거나 형 선고 국가의 법에 따라 다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다.
3. 동결 결정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결 결정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과 관련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때
4. 동결 결정이 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에 따를 때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몰수형 선고가 불가능할 때

②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가 통지국의 법률에 따를 때 제695-23조 제3항 내지 제34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인 경우에는 전항 제4호에 정한 사유로 동결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695-9-18조 제695-9-17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세·간접세·관세·환전 등과 관련된 동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프랑스 법이 통지국의 법과는 달리 같은 종류의 직접세 또는 간접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직접세·간접세·관세·조세 등에 대해 달리 규정한 때에 한한다.

제695-9-19조 ① 자산 또는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의 집행 거부에 대하여는 이유를 붙여야 하고, 지체 없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산 또는 증거물의 멸실·파괴 등 이유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나 통지국과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에 지목한 장소에 대상물이 없거나 달리 추적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5-9-20조 ①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 또는 증거물에 대한 동결 결정의 집행이 연기될 수 있다.

1.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수사에 방해가 될 때
2. 동결 대상인 자산 또는 증거물 중 일부가 이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동결 또는 몰수된 때
3. 범죄수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또는 증거물의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프랑스 내 형사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동결 또는 몰수된 때
4.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 또는 증거물이 국가안보 등 사유로 보호대상인 문서 또는 매체이며, 보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집행을 담당하는 예심판사에게 보고된 바 없는 때

② 동결 결정을 연기하기로 한 예심판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국 사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정의 이유와 필요하다면 연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5-9-21조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예심판사는 제695-9-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결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95-9-22조 ①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이나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나 그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자는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 있는 항소법원 예심부 서기에게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은 집행 정지효가 없으며, 동결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룰 수 없다.

③ 항소부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으로 통지국의 대리인이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706-7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에 참여한다고 해도 통지국이 당사자의 일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695-9-24조 예심부 서기는, 통지국이 공표하고 인증서로 확인한 동결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통지할 수 있다.

제695-9-25조 검사장은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제706-71조에 정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이의신청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통지하며, 통지국의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도 통지한다.

제695-9-27조 ①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나 동결 결정의 목적이 범죄수익의 환수인 경우에는 동결한 물건은 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프랑스 영토 내에 보존한다.

②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물 또는 자산을 보존할 경우가 아닌 경우, 예심판사는 최종 결정에 앞서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문의하여 물건의 처리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695-9-29조 예심판사는 통지국의 사법기관에 동결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 선고된 동결 조치 또는 몰수 조치에 대하여 통지한다.

제695-9-30조 ① 이해관계 있는 자는 동결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직권 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동결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심판사는 통지국 사법기관에 통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③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동결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고청의 부담으로 통지국이 요청한 집행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3 장 프랑스와 특정 국가의 사법공조에 관하여

제695-10조 제2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2000년 5월 29일 조약과 유사한 조약의 모든 당사국과 프랑스 사이의 사법공조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 장 2002년 6월 13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회원국 간의 범인 인도 절차와 유럽체포구금영장에 대하여

제 1 절 총 론

제695-11조 ① 유럽체포구금영장은 ‘통지회원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연합 내 회원국이 ‘집행회원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유럽연합 내 회원국에 대하여 수색 대상자에 대한 형사기소나 형벌의 집행 또는 연금을 위해 대상자를 체포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영장을 말한다.

② 사법기관은 본장에 정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다른 유럽연합 내 회원국 사법기관에 대하여 영장의 발부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제695-12조 다음 경우에 통지회원국 법에 따라 유럽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사실이 발생한 때나 4월 이상의 징역형이 이미 선고된 때
2. 1년 이상의 연금조치에 처할 범죄사실이 발생한 때나 4월 이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조치가 이미 부과된 때

제695-13조 유럽체포구금영장은 다음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국적과 성명
2. 발부 사법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3. 통지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제695-12조 내지 제695-2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경우로서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체포구금영장 기타 법원의 결정이 경료된 취지
4. 범죄사실의 성격과 적용법조. 특히 제695-23조와 관련된 사실
5.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 정황과 대상자의 가담 정도
6.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된 형 또는 통지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벌, 기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결과

제695-14조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에서 발부된 유럽체포구금영장은 집행회원국의 공용어 중 하나 또는 당 회원국이 선택한 유럽연합의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695-15조 ① 대상자가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 유럽체포구금

영장은 직접 당해 회원국 사법기관에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회원국의 사법기관이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항에 정한 경우 외에 유럽체포구금영장은 생겐정보공유시스템이나 유럽사법망을 통한 보안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생겐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폴을 통하거나 기타 기록이 남고 집행회원국의 사법기관이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제695-13조에 정한 정보와 생겐정보공유시스템 상 서명으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생겐정보공유시스템으로 제695-13조에 정한 정보를 전부 송달할 수 있기까지는 원본 도착 전 서명만으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효력이 있다.

제 2 절 프랑스 사법기관의 유럽체포구금영장 통지에 관하여

1.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통지 조건

제695-16조 ①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한 예심법원, 판결법원 또는 형벌집행법원에 속하는 검사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5-12조 내지 제695-15조의 조건과 규칙이 적용되는 유럽체포구금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특별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대상자가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미 다른 범죄사실로 프랑스 내에 인도된 경우에도 영장을 발부한 예심법원·판결법원·형벌 집행법원에 속한 검사는 이를 유럽체포구금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또한 필요한 경우, 판결법원이 선고한 4월 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95-12조 내지 제695-15조에 정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제695-9-27조 대상자의 체포 사실을 통지 받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집행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지체 없이 체포구금영장의 사본을 송부하게 할 수 있다.

2. 유럽체포구금영장의 효력

제695-18조 검사가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인도 받은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 발부의 기초된 범죄 이전의 범죄로 자유형을 부과할 목적으로 구속하거나 소추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1. 대상자가 집행회원국의 법에 정한 조건에 따라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범인 인도에 동의하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
2. 대상자가 인도 이후에 제695-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를 포기한 경우
3. 대상자를 인도한 집행회원국의 사법기관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4. 수색 대상자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이후 45일 동안 집행국의 영토를 떠나지 않았거나 떠난 다음에 자의로 귀환한 경우
5. 범죄행위가 자유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695-19조 ① 전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상자가 인도된 예심법원, 판결법원 또는 형벌집행법원에서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인도된 자가 출석하면 관할법원은 그 자의 성명을 확인한 후에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통역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대상자에게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에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한다.

③ 출석 후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포기 취지를 확인하고, 그 결정문에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범죄사실을 명시한다.

제695-20조 ① 제695-18조 및 제695-21조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검사가 집행 회원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한다. 동의 요청을 함에는 제695-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695-13조에 열거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695-18조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회원국의 동의를 구하는 범죄 사실에 관하여 인도된 자가 직접 진술하게 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다음에, 요청서에 이 조서를 첨부한다.

제695-21조 I. 검사가 유럽체포구금영장을 통지하여 수색 대상자를 인도 받은 경우에, 대상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이전의 범죄사실로, 자유를 박탈하는 연금조치나 기타 형 집행을 위하여, 다른 회원국에 송치할 수 없다.

1. 대상자가 제695-1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특별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을 때
2. 대상자가 인도 후에 제695-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 송치 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
3. 대상자를 인도한 집행회원국의 사법기관이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한 때

II.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송달한 검사가 대상자를 인도 받은 경우, 검사는 그를 인도한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상자를 다른 회원국에 인계할 수 없다.

제3절 외국기관이 발부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1. 집행 요건

제695-22조 다음 경우에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프랑스 법원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때
2. 프랑스의 사법기관, 통지회원국 외의 다른 회원국의 사법기관 또는 제3국의 사법기관에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때. 이 경우 형 선고 회원국의 법에 따라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 중이거나 다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을 범할 당시 대상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던 때
4.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프랑스 법원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공소시효 또는 집행시효가 완성된 때
5. 체포구금영장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거나 체포구금영장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과 관련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때

제695-23조 ①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프랑스 법에 따를 때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도 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회원국의 법에 따를 때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사실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연금조치에 처할 범죄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장을 집행한다.

- 범죄조직의 참여

- 테러
- 인신매매
-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및 아동음란물
- 향정신성의약품 밀매
- 무기·탄약 및 폭발물의 밀매
- 부패
-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1995년 7월 26일 조약의 관점에서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을 해치는 내용의 사기를 포함한 사기범죄
-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한 범죄수익세탁
- 유로 위조를 포함한 통화 위조
- 사이버범죄
- 멸종위기동식물의 밀매를 포함한 환경에 관한 중죄 또는 경죄
- 불법체류자의 입국 및 체재를 돕는 범죄
- 모살·중상해 또는 폭행
- 장기밀매
- 인질의 유괴·감금·납치
- 인종범죄 및 외국인혐오 범죄
- 예술작품과 고미술 등 밀매
- 사기
- 횡령
- 유사품 제조 및 저작권 침해
- 공문서 위조 및 행사
- 지급수단 위조
- 호르몬제제 및 성장촉진제 밀매
-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밀매
- 도난차량거래

- 강간
- 방화
- 국제형사법원 관할에 속하는 중죄 또는 경죄
- 항공기 또는 선박 납치
- 기물파손

③ 본조에 정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법조문의 적용과 선고될 형의 계산 등은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④ 직접세·간접세·관세·환전 등과 관련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프랑스 법이 통지회원국의 법과는 달리 같은 종류의 직접세 또는 간접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직접세·간접세·관세·조세 등에 대해 달리 규정한 때에 한한다.

제695-24조 다음의 경우에는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체포구금영장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법기관이 이미 수색대상자를 기소하였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또는 사건 처리를 끝낸 때
2.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또는 연금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수색 대상이 된 자가 프랑스 국적이고 프랑스 사법기관이 이미 집행에 착수한 때
3. 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행해진 때
4. 범죄사실이 통지회원국의 영토 바깥에서 행해졌고 프랑스 법에 따를 때 영토 바깥에서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가 불가능한 때

제695-25조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2. 집행절차

제695-26조 ① 수색대상자가 영토 내에 알려진 장소에 발견되었을 경우 유럽 연합 회원국이 발부한 체포구금영장은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직접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관할 검사장에게 송달하고, 검사장은 청구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그 외의 경우에 유럽체포구금영장은 제695-15조 제2항에 정한 요건에 따라 송달되어 집행된다.

② 제74-2조의 규정은 유럽체포구금영장의 대상이 된 자의 수색에 준용된다. 이 경우 검사의 역할은 검사장이 담당하고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예심부장이거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담당한다.

③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송달 받은 검사장이 판단하기에 토지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토지관할 있는 곳의 검사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취지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통지한다.

④ 제695-15조 제4항에 정한 원본 또는 인증한 사본은 수색 대상자의 체포로부터 6일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수색대상자가 프랑스 내에서 면책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일 경우, 토지관할권을 가진 검사장은 지체 없이 프랑스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면책 또는 면제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법기관에게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전문에 정한 청구는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한다.

⑥ 수색대상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특별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로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검사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나라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5-27조 ①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집행하여 신병을 확보한 자는 관할권을 가진 검사장 앞에 48시간 내에 인치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은 제63-1조 내지 제6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검사장은 유럽체포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지한다. 검사장은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회 회장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지하고, 선임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 ③ 전항의 고지 사실은 조서에 기재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절차는 무효가 된다.
- ④ 변호인은 즉석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수색 대상자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다.
- ⑤ 검사장은 이어 수색대상자에게 체포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동의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 고지한다. 또한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고지한다.

제695-28조 ① 검사장은 수색 대상자를 모든 소송절차에 참가시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병을 확보한 곳의 항소부 구치소에 수감한다.

- ② 필요한 경우 검사장은 예심부에 출석하기까지 제138조에 정한 사법통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정은 구두로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서에 기재한 후에 그 사본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예심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예심부는 제695-29조에 따라 대상자가 출석한 때에 심판한다.
- ③ 제695-36조의 규정은 석방되거나 사법통제에 부친 대상자가 도망하거나 사법통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 준용된다.
- ④ 검사장은 지체 없이 본조에 정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고 체포구금영장의 사본을 송달한다.

3. 예심부에의 출석

제695-29조 예심부는 즉시 절차를 속개하고, 수색대상자는 검사장이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예심부에 출석한다.

제695-30조 ① 수색대상자가 출석한 경우에 예심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② 공개로 인하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심리는 공개한다. 이 경우 예심부는 검사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695-31조 제4항에 정한 본안에 대한 불복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검사와 대상자는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하며,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붙인다.

④ 예심부는 통지회원국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심리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통지회원국이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를 일방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

제695-31조 ① 출석 시에 대상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예심부는 그 동意的 법적 효과와 동意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 대상자가 인도에 대하여 계속 동의하는 경우 예심부는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다만 그 전에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포기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유럽체포구금영장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부는 대상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과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결정으로 확인한다. 예심부는 제695-33조에 정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의 출석 시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대상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제695-33조에 정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의 출석 시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제568-1조 및 제57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장 또는 수색 대상자가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프랑스 법에 따라 면책 또는 면제의 대상인 경우에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기간은 면책 또는 면제의 철회가 예심부에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⑥ 제695-26조 제6항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나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전항에 정한 기간은 다른 나라의 동의가 예심부에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⑦ 예심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은 검사장을 경유하여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지체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695-32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유럽체포구금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수색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 일시와 장소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쥘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출석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2. 수색대상자가 프랑스 거주자일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로 인하여 통지회원국에서 형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프랑스로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695-33조 유럽체포구금영장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심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심부는 통지회원국 사법

기관에 추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회원국 사법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5-34조 ① 수색 대상자는 제148-6조 및 제14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예심부에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적어도 심리 기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수색 대상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심부는 석방 청구가 있는 경우에 최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검사, 변호인 또는 수색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심리하고, 제19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수색 대상자가 예심부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항에 정한 기간은 대상자의 최초 출석 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예심부는 수색 대상자를 석방하거나 보안조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에 정한 조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수색 대상자는 석방에 앞서, 예심부 또는 구치소의 장에 대하여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색 대상자는 신고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재신고의 방식으로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예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 받는다.

⑥ 수색 대상자에게는 또, 최종 신고 주소에 대한 송달은 본인에 대한 송달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지한다.

⑦ 전항의 고지가 있었다는 취지는 신고 주소와 함께 조서 또는 구치소의 장이 예심부에 지체 없이 발송한 서면의 원본과 사본에 기재된다.

제695-35조 ① 예심부는 직권으로, 검사장 또는 수색 대상자의 신청에 기하여, 제199조를 적용하여 언제든지 사법통제 조건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수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예심부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695-36조 ① 수색 대상자가 사법통제에 정한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사법 통제가 수반되지 않는 석방 결정을 받은 후에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예심부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74-2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검사의 역할은 검사장이 담당하며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예심부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담당한다.

③ 수색 대상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 예심부는 그를 수감한 때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심판한다.

④ 예심부는 필요한 경우 사법통제의 취소를 명하고 대상자를 수감한다.

⑤ 예심부는 검사 및 수색 대상자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며,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붙인다.

⑥ 제2항에 정한 기관이 경과하면 대상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4. 대상자의 인도

제695-37조 ① 예심부의 결정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검사장은 수색 대상자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인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한다.

② 예심부가 대상자의 인도를 결정한 시점에 대상자가 석방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장은 대상자를 체포하여 수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4-2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검사의 역할은 검사장이 담당하며,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예심부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담당한다. 대상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 검사장은 지체 없이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③ 불가항력 등 사유로 대상자를 10일 이내에 인계하지 못할 때에는 검사장은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그 취지와 인도 가능한 날짜를 고지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인도 가능하다고 고지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도되어야 한다.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상자가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695-3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직권으로 석방한다.

제695-38조 ①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에 결정한 예심부는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인도로 인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도적인 견지에서 대상자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장은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그 취지와 인도 가능한 날짜를 고지하며, 새로 고지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상자가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제695-3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직권으로 석방한다.

제695-39조 ① 대상자가 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범죄사실로 이미 프랑스에서 기소되었고 형을 받아야 할 경우에, 예심부는 영장의 집행에 관한 재판을 하고 나서 인도를 연기한다. 이 경우 검사장은 그 취지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게 통지한다.

② 예심부는 또 대상자의 일시 인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장은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그 취지를 고지하며 서면으로 인도 기간과 조건을 명시한다.

제695-40조 인도 시에 검사장은,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상자가 구속되었던 기간을 명시한다.

5. 특 칙

제695-41조 ① 대상자를 체포할 경우에 통지회원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집행회원국 사법기관의 결정으로 제56조, 제56-1조 제1항 및 제2항, 제56-2조, 제56-3조 및 제5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1. 형 선고에 도움이 될 증거물
2. 범죄행위의 결과 대상자가 취득한 물건
- ② 대상자의 인도를 결정한 경우에 예심부는 제56-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종료한 후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물건을 송부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송부는 유럽체포구금영장의 대상이 된 자가 사망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정한 물건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형사절차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심부는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유치하거나 반환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 ⑤ 본조에 정한 물건에 대한 프랑스 또는 제3자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으며, 통지회원국에서의 절차가 종료하는 즉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회원국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제695-42조 ①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회원국이 유럽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범죄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다른 범죄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예심부의 판단으로 집행할 영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심부는 유로저스트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범죄행위의 결과, 범죄의 경중, 범죄지, 영장발부일 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자유를 박탈하는 연금조치가 선고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② 유럽체포구금영장과 제3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경합한 경우에 서류의 도달까지 예심부는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전항에 적시한 요소들과 아울러 적용될 조약과 합의문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95-43조 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또는 대법원예의 상고 등 사유로 수색 대상자의 체포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관할권을 가진 검사장은 통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 그 취지 및 지연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항에 적시한 기간은 추가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색 대상자의 체포 이후 90일 이내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관할권을 가진 검사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고지하고, 법무부장관은 유로저스트에 그 지연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기 환송 후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예심부는 환송 결정 후 20일 이내에 재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심부는 수색 대상자의 석방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제695-44조 ① 유럽체포구금영장이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발부된 때에는 예심부는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대상자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청취는 변호인 입회하에 또는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참여를 요청한 후에 실시한다.

③ 수색 대상자의 변호인은 늦어도 피의자신문 및 진술청취의 5일 전까지, 배달증명부 등기우편·팩시밀리 또는 구두로 소환된다. 팩시밀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고,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난외에 수령 취지를 서명한다.

④ 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는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입회하에 예심부장이 진행하며,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이 권한을 위임한 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형식을 갖춘 심리 조서는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즉시 송달된다.

제695-45조 ① 예심부는 수색 대상자가 동의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에 제695-28조 및 제695-29조, 제695-3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95-31조 제7항에 정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이송하였다가 다시 귀환하여 절차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은 심리 중에 선고되며, 즉시 집행된다.

제695-46조 ① 수색 대상자가 출석한 예심부는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또는 그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와 그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 또는 보안조치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있다.

② 예심부는 또한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또는 그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와 그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 또는 연금조치를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③ 전2항의 경우에 통지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은 인도 대상자가 범한 범죄사실을 기록한 조서를 예심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조서에는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이나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지명한 변호인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④ 예심부는 요청서에 제695-13조에 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경우 제695-32조가 요구하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⑤ 예심부는 요청서에 명시된 범죄사실이 제695-23조에 규정된 것이거나 제695-12조가 적용될 것일 경우에는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⑥ 예심부는 제695-22조 및 제695-23조가 적용될 경우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제695-24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도 이와 같다.

제 4 절 송 치

제695-47조 ① 법무부장관은 유럽체포구금영장에 따라 수색 대상자를 프랑스 영토를 경유하여 송치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프랑스 국적자인 경우에는 유럽체포구금영장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로 통지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아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프랑스 영토로 귀환하여 형벌을 받게 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송치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프랑스 국적자이고 자유를 박탈하는 연금조치 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위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송치를 거부한다.

제695-48조 송치허가요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수색 대상자의 성명과 국적
-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존재
- 범죄행위의 성격과 죄명
- 범죄의 장소·일시·결과와 수색 대상자의 범죄 가담 정도

제695-49조 송치허가요청서와 제695-48조가 요구하는 정보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같은 경로를 경유하여 요청에 대한 결정 취지를 통지한다.

제695-50조 프랑스 영토에 대한 밀입국 범죄에 대해서는 통지회원국이 법무부장관에게 제695-48조에 정한 정보를 통지한다.

제695-51조 제695-47조 내지 제695-50조의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이 아닌 자에 대하여 통지회원국이 그 영토 내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제 5 장 범죄인 인도

제696조 국제협약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인 인도의 요건·절차·효력 등은 본장에 따른다. 국제협약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제 1 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제696-1조 본절에 정한 바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없다.

제696-2조 ①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프랑스 국적을 갖지 않은 자 가운데 요청국이 기소하려고 하는 자나 요청국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자에 대한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

② 다만,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는 것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 요청국 내에서 요청국 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죄를 범했을 때
- 요청국 외에서 요청국 거주자가 죄를 범했을 때
- 요청국 외에서 요청국민이 아닌 자가 죄를 범한 때와 같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범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프랑스 법에 의해 프랑스 내에서 기소가 가능한 때

제696-3조 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거나 이에 응할 수 있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요청국 법에 따를 때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2. 요청국 법에 따를 때 경죄에 해당하고 장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사실 또는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선고된 형이 2월 이상의 징역형일 때
- ② 어떤 경우에도 프랑스 법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

- ③ 요청국과 피요청국 법에 따를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미수 범죄와 공범에 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인도 요청된 자가 범한 여러 개의 범죄행위가 있고 이들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이들 범죄행위 전부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인 경우에만 인도 요청에 응한다.

제696-4조 다음의 경우에는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

- 1.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발생할 당시 행위자가 프랑스 국적인 경우
- 2.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가 정치적 성격을 띤 중죄 또는 경죄이고, 인도 요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때
- 3.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난 때
- 4. 프랑스 영토 바깥에서 범한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형이 확정된 때
- 5. 프랑스 법 또는 요청국 법에 규정한 공소시효가 인도 요청 이전에 완성된 때나 대상자를 체포할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또는 요청국의 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 6.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보안조치를 부과하는 요청국 법이 프랑스의 공서양속에 반할 때
- 7. 인도 요청된 자가 방어권과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때
- 8. 군사법원법 제3권에 규정된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인도 요청인 때

제696-5조 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나라가 인도 요청을 해 온 경우 요청국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인 때나 요청국에서 벌어진 범죄인 때에는 그 요청국에 우선권이 있다.

- ② 서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나라가 인도 요청을 해 온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결과와 특히, 범죄일시 또는 장소, 죄질을 고려하고, 요청국이 재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96-6조 제696-3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요청에 응함에 있어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와 다른 범죄나 그 이전에 범한 범죄로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696-7조 ① 대상자가 프랑스에서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와는 다른 범죄로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온 경우 수사가 끝나거나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만 인도 요청에 응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요청국의 법원에 일시 출두하여 요청국의 법원의 심리가 끝난 후에 재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인도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은 대상자를 본법 제5권 제4편의 규정에 따라 노역장 유치에 처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2 절 범죄인 인도 절차

제696-8조 ① 본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인 인도 요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전달되어야 하며,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대상자를 소환하는 효과를 가진 공식적인 소송행위 관련 문서, 체포구금영장, 이와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 또는 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서에는 범죄행위의 일시와 성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한 문서는 원본이나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

③ 요청국은 또한 제1항에 적은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유럽연합 회원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관할권 있는 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서를 송달하고, 법무부장관은 제69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695-9조 요청서를 받은 외무부장관은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과 함께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토지관할권 있는 검사장에게 송달한다.

제696-9-1조 범죄인 인도 요청 또는 인도를 위한 체포 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수색함에는 제7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검사의 역할은 검사장이 담당하고,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예심부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담당한다.

제696-10조 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권을 가진 검사장 앞에 인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제63-1조 내지 제6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검사장은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지한다. 검사장은 또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변호사회 회장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지하고, 선임한 변호사와 즉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이 경우 고지가 있었다는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절차는 무효가 된다.

③ 변호인은 즉석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인도 대상자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다.

④ 검사장은 이어 피요청자에게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요청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동의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

고지한다. 또한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 고지한다.

⑤ 검사장은 피요청자,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696-11조 ① 검사장은 피요청자를 신병을 확보한 곳의 향소부 구치소에 수감할 것을 명한다.

② 필요한 경우 검사장은 예심부에 출석하기까지 제138조에 정한 사법통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정은 구두로 피요청자에게 통지하며 조서에도 기재한 후에 그 사본을 피요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예심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예심부는 5일 이내에 재판한다.

③ 제696-21조의 규정은 석방되거나 사법통제에 부친 피요청자가 도망하거나 사법통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 준용된다.

제696-13조 ① 피요청자가 검사장에게 인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검사장은 5일 이내에 예심부에 회부한다. 이 경우 검사장 앞에 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요청자를 예심부에 소환한다.

② 피요청자가 출석한 경우 예심부는 신원을 확인하고 피요청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③ 공개로 인하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피요청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심리는 공개한다. 비공개로 하는 경우 예심부는 검사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다.

④ 검사와 피요청자는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하며, 피요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붙인다.

제696-14조 ① 출석 시에 피요청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고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예심부는 그 동의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출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 단,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696-15조 ① 피요청자가 검사장에게 대하여 인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검사장은 예심부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 경우 검사장 앞에 출석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요청자를 예심부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696-1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예심부 앞에서 피요청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심부는 인도 요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예심부는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요청자의 출석 시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

⑤ 예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인도 결정의 적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96-16조 예심부는 결정으로, 요청국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 인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청국이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를 일방 당사자로 보지 않는다.

제696-17조 ① 예심부가 인도 요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요청자를 인도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경우 다른 이유로 구속되어 있지 않는 한 피요청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696-18조 ① 전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따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명령을 고지 받은 요청국이 1월 이내에 기관을 통해서 피요청자의 신병을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피요청자는 직권으로 석방되고 같은 이유로 다시 구금되지 않는다.

② 권한 남용을 이유로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은 무효로 한다. 행정청을 통한 이의신청과 법적인 불복절차는 별개로 진행한다.

제696-19조 ① 피요청자는 제148-6조 및 제14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예심부에 석방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예심부는 적어도 심리 기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피요청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심부는 석방 청구가 있는 경우 최대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요청자의 의견을 들어 심리하고, 제199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피요청자가 범죄인 인도 목적으로 수감되고 48시간 내에 석방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15일로 한다.

③ 예심부는 피요청자를 석방하거나 보안조치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에 정한 조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피요청자는 석방에 앞서, 예심부 또는 구치소의 장에 대하여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피요청자에게 신고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고의 방식으로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예심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한다. 또, 최종 신고 주소에 대한 송달은 본인에 대한 송달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지한다.

⑤ 전항의 고지가 있었다는 취지는 신고 주소와 함께 조서 또는 구치소의 장이 예심부에 지체 없이 발송한 서면의 원본과 사본에 기재된다.

제696-20조 ① 예심부는 직권으로, 검사장 또는 피요청자의 신청에 기하여, 제19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법통제 조건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피요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예심부는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696-21조 ① 피요청자가 사법통제에 정한 조건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사법통제가 수반되지 않는 석방 결정을 받은 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예심부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74-2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검사의 역할은 검사장이 담당하며 석방구금판사의 역할은 예심부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이 담당한다.

③ 피요청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 예심부는 그를 수감한 때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심판한다.

④ 예심부는 필요한 경우 사법통제의 취소를 명하고 피요청자를 수감한다.

⑤ 예심부는 검사 및 피요청자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며, 피요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붙인다.

⑥ 제2항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요청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696-22조 ① 예심부가 피요청자의 인도를 결정한 시점에 대상자가 석방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장은 피요청자를 체포하여 인도할 목적으로 수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요청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 검사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② 체포 시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국에 피요청자를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요청자는 직권으로 석방된다.

제696-23조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 또는 요청국의 관할기관이 직접 요청해 온 경우 검사장은 요청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목적으로 피요청자를 일시적으로 체포하여 구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체포를 요청하는 문서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696-8조에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송달되어야 하며, 나중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요청서에는 피요청자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보고하고, 성명·국적·범죄인 인도의 근거가 된 사실, 범죄일시와 장소, 필요한 경우 선고 가능한 형벌이나 선고된 형벌, 남은 형기, 시효가 문제될 경우에는 시효의 성격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요청서 사본을 외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검사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체포 사실을 고지한다.

제696-24조 ① 요청국의 관할기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요청자를 일시 체포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96-8조에 규정한 문서 중 하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전조에 따라 체포된 피요청자는 석방된다.

② 전항의 서류가 나중에 프랑스 정부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제696-9조 및 그 이하에 정한 절차를 재개한다.

제 3 절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간이 범죄인 인도

제696-25조 ① 유럽체포구금영장에 관한 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회원국 사이의 간이 범죄인 인도절차에 관한 1995년 3월 10일 협약 가입국이 범죄인 인도 목적으로 체포를 요청한 경우 제696-10조 및 제696-11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② 피요청자에게도 본절에 정한 간이절차에 따른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③ 본절의 규정은 1957년 12월 13일 유럽범죄인 인도 협약과 프랑스와 스위스 간 간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합의에 따라 스위스가 범죄인 인도 목적으로 피요청자의 체포를 요구한 때에도 적용된다.

제696-26조 ① 피요청자를 수감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검사장은 피요청자에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검사장은 또 간이절차에 따라 예심부의 면전에서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과 특별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이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무효가 된다.

② 피요청자는 제696-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696-27조 ① 피요청자가 인도에 동의하는 의사를 검사장에게 표시한 경우, 피요청자는 검사장 앞에 출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예심부에 소환된다.

② 피요청자가 전항의 사법관에게 동意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이 프랑스의 관할기관에게 도달한 때에는 제696-15조 및 그 이하에 정한 절차가 진행된다.

제696-28조 ① 전조 제1항에 따라 피요청자가 예심부에 출석한 경우 예심부장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② 예심부장은 피요청자에게 동意的 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럼에도 계속 인도에 동의하는지 묻는다.

③ 피요청자가 인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제696-2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피요청자가 계속해서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예심부는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때의 법적 효과를 설명한 후 그럼에도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지 묻는다.

- ⑤ 인도에 동의한 피요청자는 요청국에 인도하며,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취지는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피요청자가 서명한다.
- ⑥ 공개로 인하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피요청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심리는 공개한다. 비공개로 하는 경우 예심부는 검사, 피요청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다.
- ⑦ 검사와 피요청자는 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하며, 피요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을 붙인다.

제696-29조 ①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심부는 피요청자가 인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결정으로 확인한다.

- ② 예심부는 피요청자가 출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96-30조 ① 피요청자가 항고 제기 기간 내에 예심부의 인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대법원 형사부장 혹은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관은 항고 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요청자가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의 적용 포기를 철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피요청자가 인도 요청의 대상이 된 경우 제696-15조 및 그 이하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제696-31조 ① 예심부가 피요청자의 인도를 결정하고 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 검사장은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은 요청국의 관할 기관에 통지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인도 결정을 요청국에 통지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피요청자를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20일 이내에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즉시 요청국의 관할기관에 그 취지를 고지하고 인도 가능한 날짜를 알린다. 이 경우 피요청자를 인도 가능한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④ 20일이 경과한 후에 피요청자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견된 경우 그의 석방을 명한다.
- ⑤ 천재지변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경우나 피요청자가 프랑스에서 기소된 경우, 또는 그에 대하여 다른 범죄사실로 형이 선고되고 그 형기가 남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96-32조 언제든 제148-6조 및 제14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심부에 대하여 석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96-19조 및 제696-20조가 적용된다.

제696-33조 범죄인 인도 요청의 대상으로 일시 체포된 자에게 본장 제2절의 절차를 경료하였고, 체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후에 인도에 동의한 경우나 예심부 앞에 최초 출석 시점으로부터 10일 이후에 인도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696-26조 내지 제696-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인 인도 요청의 대상이 된 자가 나중에 예심부 앞에 소환되어 인도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4 절 범죄인 인도의 효과

제696-34조 ① 제696-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요청자가 제696-28조 및 제696-4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프랑스 정부가 제696-3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프랑스 정부는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제696-3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제696-35조 ①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된 범죄 이전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하거나 이미 선고 받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요청국 정부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피요청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하게 된 예심부는 새로운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요청국 정부는 피요청자의 의견이 담긴 서류를 예심부에 송달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피요청자가 선임한 변호인 또는 직권으로 지명된 변호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96-36조 ① 본장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의 범죄인 인도는 무효로 한다.

② 인도 대상자를 수감하자마자 검사장은 피요청자에게 범죄인 인도 결정이 본조에 정한 형식이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③ 피요청자의 인도 이후에 비로소 결정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 경우나 예심부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인도는 무효로 한다. 수사과정에서 발부된 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인도 결정을 내린 예심부는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무효청구가 있는 지 10일 이내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은 피요청자는 관할법원 서기에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 청구는 각하한다.

⑤ 무효 청구의 취지는 조서에 기재하고, 서기·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이 서명하며,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서기가 그 취지를 기재한다.

- ⑥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이 관할법원의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기에 대한 이유서 제출은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 ⑦ 청구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이 청구는 구치소의 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구치소의 장은 청구를 확인하고 일자를 붙인 후, 청구인과 함께 이에 서명한다. 청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구치소의 장은 그 취지를 기재한다. 청구서의 원본 또는 사본은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관할법원 서기에게 송달한다.

제696-37조 제696-36조에 정한 관할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96-38조 범죄인 인도 결정이 무효로 된 경우, 피요청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피요청자는 석방되며 범죄인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나 그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단, 석방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프랑스 영토 내에서 체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6-39조 석방 후 30일 내에 프랑스 영토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자가 다시 체포된 경우에 요청국의 법과 상관없이 그 자를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또는 그 이전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감할 수 있다.

제696-40조 ①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1996년 9월 27일 협약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아래 적시한 특별규정의 적용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또는 이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② 포기는 체포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하여야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인도된 자가 수감된 곳 또는 거주지의 항소법원 예심부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 인도된 자가 공판에 출석하면 예심부는 그 자의 성명을 확인한 후에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고 통역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인도된 자에게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한다.

④ 법원 앞에서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포기 취지를 확인하고, 그 결정문에 특별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범죄사실을 명시한다.

제696-41조 ① 프랑스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받은 후에 제3국 정부가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요청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또는 그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동일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는 그 자를 다시 프랑스로 인도한다는 보장이 있는 때에만 이에 응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자가 제696-39조에 정한 기간 내에 프랑스 영토를 떠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절 기 타

제696-42조 ① 법무부장관은 정치범 또는 군법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간단한 증명을 확인한 후에 외교 경로를 통한 요청을 수리하여 프랑스 국적이 아닌 자를 육로나 프랑스 선박을 이용하여 인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프랑스 정부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만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인도는 프랑스 공무원이 요청국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제696-43조 ① 인도 요청을 받은 예심부는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면서 압수한 증서·가치·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요청국에 송부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한다.

② 피요청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피요청자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항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심부는 또 피요청자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본조에 정한 물건 등에 대하여는 환부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 또는 보관자 등의 권리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696-44조 외국에서의 형사소추에 필요하여 외국 정부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에게 소송행위나 판결을 고지해야 할 경우, 외국정부는 제696-8조 및 제696-9조에 정한 방식에 맞추어,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프랑스어 번역문을 추가하여 프랑스에 요청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그 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진행하며, 원본은 요청국에 같은 경로로 반환한다.

제696-45조 프랑스 기관이 외국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 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외국의 사법기관은 제696-8조 및 제69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송부 요청을 한다.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증거물 또는 서류의 반송을 조건으로 송부 요청에 응한다.

제695-46조 ① 외국 정부가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96-8조 및 제696-9조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프랑스 정부는 그 자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

② 전항의 소환장에는 증인이 진술하는 범죄사실 이전의 범죄사실 또는 형 선고 사실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696-47조 제696-8조 및 제69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증인의 대질을 위하여 외국 정부는 증인의 이송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증인을 다시 이송해 줄 것을 조건으로 요청에 응한다.

제 11 편 군과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제 1 장 평시의 군에 관한 중죄 및 경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제 1 절 관 할

제697조 ① 제697-1조에 열거된 범죄의 예심수사 및 경죄 재판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이를 행한다.

② 관할 지방법원 법관회의의 의견을 받아 당해 법원의 사법관으로 군사법원 전문 재판부를 구성한다.

③ 제697-1조에 열거된 중죄재판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중죄법원에서 이를 행한다.

④ 법무부장관, 국새관 및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보고서에 따라 명령으로 관할법원의 목록을 정한다.

제697-1조 ① 제697조에 열거된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3권이 정하는 군사범죄를 심리한다. 위 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된 군인이 병역 중에 범한 보통법 상 중죄 및 경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갖는다.

② 위 법원은 정범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에 관여한 모든 성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원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경찰 직무를 수행 중인 헌병이 범한 보통법 상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97조에 열거된 경죄법원이 수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할의 부존재를 선언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이송하여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697-3조 제697조에 열거된 법원의 토지관할은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663조에 따라 정한다. 군대가 배치되거나 또는 상륙한 지역의 법원도 관할권을 행사하고, 피호송선의 승무원에 대하여 토지 관할을 갖는 법원은 호송선의 승무원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갖는다.

제 2 절 소송절차

제698조 ① 제697조에 열거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예심수사 및 재판은 제698-1조 내지 제698-9조에 정한 특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만, 제43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할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제698-1조 내지 제698-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98-1조 ① 제36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권을 가진 검사는 직접 인지한 사실과 특히, 국방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군 당국이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을 제외하고 소추에 앞서 국방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군 당국에 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은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건 기록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발취지 및 의견은 소송기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그 절차를 무효로 한다.

③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군 당국은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권한이 부여된다.

제698-2조 제697-1조 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은 범죄로 직접 손해를 입은 모든 자에게 속한다. 이 경우 제85조 및 그 이하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98-3조 ① 검사, 예심판사 및 사법경찰관은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사람 혹은 범죄와 관련한 증거물을 조사하려고 하는 때에는 군 당국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출입허가를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청구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의 성질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 당국은 출입을 허가하고 조사에 임회할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검사, 예심판사 및 사법경찰관은 군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과 협조하고, 특히 군사기밀의 보호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 군 당국의 대리인은 수사 및 예심수사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98-4조 수사상 필요가 있거나 수사 위임 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당국은 직무 수행 중인 군인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청구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8-5조 군사법원법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3조, 제94조, 제137조, 제204조, 제349조, 제357조, 제366조, 제368조, 제369조, 제371조, 제373조, 제374조, 제375조, 제377조 및 제384조 제2항은 본장에 준용된다. 군사법원법 제135조에 따라 예심수사피의자,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격리된 방에 구금한다.

제698-6조 ① 제2권 제1편의 규정, 특히 제240조 및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97조에 규정된 중죄법원은 1인의 재판장과 제1심일 경우 6인의 배석판사, 항소심일 경우에는 8인의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다만 제698-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배석판사들은 제248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249조 내지 제253조에 따라 지명된다.

② 전항과 같이 구성한 중죄법원에 대하여는 제2권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심 또는 배심원을 언급한 규정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254조 내지 제267조, 제282조, 제283조 내지 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5조 내지 제30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59조, 제367조 및 제362조의 적용에 있어 평의는 다수결에 의한다.

③ 제380-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죄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경우 대법원 형사부는 당해 고등법원에 항소사건을 담당할 중죄법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98-7조 ① 군인이 직무 집행 중에 범한 보통법 상 중죄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 국방 상 기밀 누설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698-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14조 제1항에 따라 공판회부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는 결정문에 국방 상 기밀 누설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와 제698-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중죄법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명시할 수 있다.

제698-8조 군사법원법 제3권에 규정된 범죄의 재판관할을 갖는 법원은 파면 및 계급박탈의 군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698-9조 ① 제697조에 규정된 판결법원은 재판의 공개로 국방 상 기밀누설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공개법정에서 선언할 수 있다. 비공개 재판이 명하여진 경우, 부대소송 또는 항변에 대한 결정의 선고에도 적용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한 판결 선고는 항상 공개된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전쟁, 동원령,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의 관할법원

제699조 ① 전시에는 즉시 군사법원이 설치된다.

② 군사법원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제697조에 규정된 법원에 계속된다. 제697조에 규정된 법원은 군사법원에 사건이 계속함에 동시에 소송계속을 해제한다.

제699-1조 정부가 국방조직에 관한 1959년 1월 7일 명령 제59-147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동원령 혹은 경계령을 발령한 때에는,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각료회의에서 제정된 명령으로 전시 군사법원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700조 ①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각료회의에서 제정한 명령으로 군사법원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은 전시 군사법원법 규정 및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의 선언에 관한 법률에 정한 특칙에 따른다.

- ③ 절차에 대하여 전시 군형사소송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한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제 3 장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

제701조 ① 전시에는 국가의 근본적 법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와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예심수사 및 재판은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진행한다.

- ② 다만, 검사는 긴급히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청구권을 예심판사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8-1조 내지 제698-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③ 검사는 긴급한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자기 또는 예심판사에 대한 사건 계속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02조 ① 평시에는 국가의 근본적 법익에 대한 중죄 및 경죄의 예심수사 및 재판은 보통법 법원이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한다.

- ② 공소사실이 형법 제411-1조 내지 제411-11조, 제413-1조 내지 제413-12조에 규정된 중죄 혹은 경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일 경우에는 그 관할은 제697조 및 제698조에 따라 정한 법원으로 이전한다.

- ③ 제697조에 규정한 경죄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할의 부존재를 선언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이송하여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 12 편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해제 청구

제702-1조 ① 형 선고의 당연한 효과로 또는 부가형으로 금지명령·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가 선고된 때에는 그 형을 선고한 법원이나 복수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최후의 선고법원에 대하여, 그 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금지·권리박탈 또는 자격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중죄법원이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중죄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한다.

② 청구가 회사의 재판상 회생 및 청산에 관한 상법 제626-6조를 적용한 권리박탈·금지·자격제한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관련자가 채무지급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법정관리, 재산의 청산과 개인 파산 및 도산에 관한 1967년 7월 13일 법률 제67-563호의 제126조 내지 제149조를 적용하여 파산범죄의 선고 결과 이루어진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의 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형 선고의 당연한 효과로 부과되는 조치를 제외하고 해제 청구는 최초의 형 선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최초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다음의 청구는 기각 결정 후 6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계속된 청구도 이와 마찬가지다. 징역형에 부가된 형벌로서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석방 후 6월이 지난 후에 관할법원에 해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 집행 중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금지 또는 자격제한의 해제 청구가 운전면허의 정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직업적인 운전은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운전면허를 계속 정지하는 형법 제13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 경죄법원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1인의 사법관으로 구성된다. 경죄 항소부나 예심부도 마찬가지로 1인의 판사로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사건을 관할 내의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을 이송한 사법관 자신이 합의부 구성원이 되며,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제703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제70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 선고일과 청구인의 형 선고 또는 석방 이후 거주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청구는 경우에 따라 검사 또는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검사 또는 고등검사장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형벌적용판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법원에 수리를 청구한다.
- ③ 수소법원은 비공개 평의실에서 검사, 청구인, 또는 변호인의 진술을 듣거나 최소한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후에 결정하고, 구금된 수형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법 제712조에 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결정이 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의 부재중에 이루어진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항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된 금지·권리박탈·자격제한 또는 공표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결정은 형 선고 판결문의 여백 및 전과 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 13 편 경제 및 재정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제704조 ①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또는 수개의 지방법원은 본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극히 복잡한 사건 또는 극히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소추, 예심수사 및 다음 경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404 제 4 권 특별소송절차

1. 형법 제222-28조, 제313-1조, 제313-2조, 제313-4조, 제313-6조, 제314-1조, 제314-2조, 제324-1조, 제324-2조, 제432-10조 내지 제432-15조, 제433-1조, 제433-2조, 제434-9조, 제435-1조 및 제435-2조에 규정된 경죄
 2. 상법에 규정된 경죄
 3. 금융재정법에 규정된 경죄
 4. 건축주거법에 규정된 경죄
 5. 지적재산권법에 규정된 경죄
 6. 조세법 제1741조 내지 제1753bis조에 규정된 경죄
 7. 관세법에 규정된 경죄
 8.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경죄
 9. 소비법에 규정된 경죄
 10. (폐지)
 11. (폐지)
 12. 도박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528호에 규정된 경죄
 13. 정기시장에 관한 1985년 3월 28일 법률에 규정된 경죄
 14. (폐지)
 15. 언론 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1986년 8월 1일 법률 제86-897호에 규정된 경죄
 16. (폐지)
- ②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은 수사, 기소 또는 예심수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항소법원의 관할구역까지 확대될 수 있고, 범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했다든가 피해자·공범·정범이 여럿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복잡해 보이는 경죄에 대한 재판도 관할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관할은 관련 사건에도 미친다.
- ④ 관할법원의 명단은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관할법원의 사법관회의의 의견을 들어 경제·재정 예심수사부 및 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한다.
- 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소법원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석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하나 또는 수인의 예심판사 및 예심 전담사법관, 본조에 정한 경죄를 재판하는 사법관을 지명한다.

⑥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소법원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항소법원의 수석부장 및 검사장은 각각 본조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다루거나 경죄재판을 전담할 판사 또는 검사를 지명한다.

제704-1조 금융재정법 제465-1조 및 제465-2조에 규정된 경죄의 기소, 예심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는 파리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이 관할권은 관련 사건에도 미친다. 이 경우 파리를 관할하는 검사 및 예심판사는 국토 전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705조 ① 제704조에 규정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경죄 재판에 대해 검사, 예심판사 및 같은 조에 규정된 지방법원 경죄 전문재판부는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② 제704조에 따라 범죄의 소추 및 예심수사를 관할하는 검사와 예심판사는 제704조에 정한 고등법원 관할구역 전체를 담당한다.

③ 제181조와 제46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죄질에 관계없이 예심수사 종결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단, 범죄사실이 위경죄를 구성하는 경우, 예심판사는 제5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경찰법원에 사건을 이송한다.

제705-1조 ① 제704조에 정한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는 동조에 열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청구하여 동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예심부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지가 있는 후 8일 이후 늦어도 1월 이내에 이송 결정을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예심판사가 이송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제705-2조에 정한 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0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가 있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부의 결정이나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까지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③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는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달한다.
- ④ 본 조의 규정은 예심부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705-2조 ① 제705-1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송 취지이거나 이송 거부 취지이면서 그 대상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한 때에는 검사 또는 당사자가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고,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 형사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결정 선고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불복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 예심부나 대법원 형사부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수사를 담당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제705-1조 제1항에 정한 1월의 기간 안에 예심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직접 예심부 또는 대법원에 형사부에 가져갈 수 있다.

- ② 예심부 또는 대법원 형사부는 검사 및 예심판사, 당사자에게 결정 취지를 고지한다.
- ③ 본조의 규정은 제705-1조 제4항에 따라 예심부가 내린 이송에 관한 결정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항고는 형사부에 제기한다.

제706조 ① A 또는 B부문 공무 분과 공무원 임명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 입학 자격시험 합격 후 4년 이상 경제·재정·사법·사회 분야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마친 학위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전문자문관⁴⁴⁾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 ② 전문자문관은 투입에 앞서 일정 기간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 ③ 전문자문관은 사법관의 감독 아래 소송절차에 참가하며, 그 외의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다. 단, 제60-1조, 제60-2조, 제77-1-1조, 제77-1-2조, 제99-3조 및 제99-4조의 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
- ④ 전문자문관은 사법관이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1. 예심판사의 수사를 돕는 일
 - 2. 검사의 공소행위를 돕는 일
 - 3. 사법관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을 돕는 일
 - 4. 수사기록에 편철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일
 - 5. 형법 제132-22조에 정한 사법관을 대신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일
- ⑤ 전문자문관들은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법 제226-13조에 따라 처벌된다.
- ⑥ 국참사원령으로 본조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특히, 지정된 전문자문관의 임기와 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706-1조 ①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와 파리지방법원 예심판사 및 파리경죄법원은 형법 제435-1조 내지 제435-1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소추, 예심수사, 재판에서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② 형법 제435-1조 내지 제435-10조에 규정된 범죄의 소추 및 예심수사를 관할하는 검사와 예심판사는 고등법원 관할구역 전체를 관장한다.

③ 파리 이외의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는 제1항에 정한 범죄에 대하여 제705-1조 및 제70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청구하여 파리 지방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4) assistant spécialisé

제706-1-1조 제704조에 정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항소법원 검사장은 다른 관할 구역의 검사장들과 협조하여 제704조에 따른 공소수행 방향을 조율한다.

제706-1-2조 제706-80조 내지 제706-87조의 규정은 지적재산권법 제335-2조, 제335-3조, 제335-4조, 제343-4조, 제521-10조, 제615-14조, 제716-9조 및 제716-10조에 정한 경죄를 조직적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706-1-3조 제706-80조 내지 제706-87조, 제706-95조 내지 제706-103조, 제706-105조 및 제706-106조의 규정은 형법 제313-2조(제2항), 제432-11조, 제433-1조, 제433-2조, 제434-9조, 제434-9-1조, 제435-1조 내지 제435-4조, 제435-7조 내지 제435-10조에 정한 경죄의 수사·기소·예심수사 및 재판에 적용된다.

제 13 편bis 보건의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판결

제706-2조 I. ①공중보건법 제5311-1조에서 정한 보건 관련 제품, 식품 또는 가축 사료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서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사건의 소추, 예심수사 및 그 범죄가 경죄인 경우 그 판결에 관한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은 1개 또는 수개의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확대된다.

- 형법 제2권 제2편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
- 공공보건법에 규정된 범죄
- 농업법 및 소비자법에 규정된 범죄
- 환경법 및 노동법에 규정된 범죄

② 전항의 관할권은 관련 범죄에도 미친다.

③ 관할법원의 명단과 관할구역, 소속 검사와 예심판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 본조에 정한 범죄의 전담재판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 예심판사 및 전항에 정한 전담재판부는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⑤ 본조에 정한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속하는 검사는 제1항에 정한 범죄에 대하여 제705-1조 및 제70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청구하여 본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예심부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Ⅱ. 제706조 제2항 내지 제10항에 정한 조건 및 형식에 따라 보건·연구·농업 담당 부서 A 또는 B부문 보건위생 관련 공무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고 대학입학 자격시험 합격 후 4년 이상 교육을 받아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전문자문관의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06-2-1조 제706-2조에 정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항소법원 검사장은 다른 관할구역의 검사장들과 협조하여 제706-2조에 따른 공소수행 방향을 조율한다.

제 14 편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특정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제706-3조 ①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람에게 대한 침해의 결과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1. 그 침해가 2001년 사회보장재정법(2000년 10월 23일 제2000-1257호) 제53조 및 보험법 제126-1조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위개선과 보상촉진에 관한 1985년 7월 5일 법률 제85-677호 제1장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해 동물의 수렵 또는 제거와 관련된 행위가 아닐 것

2. 그 행위가

- 사망, 영구적인 신체장애 또는 1월 이상의 전면적인 노동능력상실에 관련되거나
- 형법 제222-22조 내지 제222-30조, 제225-4-1조 내지 제225-4-5조 및 제227-25조 내지 제225-27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일 것

3.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일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민이거나, 조약이나 국제협력에 의해 범죄행위 시 또는 배상청구 시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자일 것

② 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06-4조 ① 배상금의 지급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제1심 민사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위원회는 지방법원 판사 2명과 프랑스 국적과 공민권을 가지고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성인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판사 중 1인이 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지방법원 법관회의가 3년의 임기로 지명한다.

④ 검사의 직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가 이를 수행한다.

⑤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06-5조 ① 손해배상은 범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할 경우 권리가 상실된다.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되며, 공소 또는 형사법원에 제기된 사소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이 만료된다.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 정한 범죄의 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은 제706-15조에 따라 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거나 청구인의 피해가 악화된 때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② 형사법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여 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제706-15-2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은 위원회의 결정에 고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706-5-1조 ① 배상위원회는 배상 청구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테러행위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상기금에 송부한다.

② 보상기금은 청구서와 증거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배상을 거부하는 결정에는 이유를 붙인다. 피해가 악화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③ 보상기금이 제시한 배상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해 합의서를 배상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④ 보상기금이 이유를 붙여 배상불가 결정을 내린 경우나 피해자가 배상액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위원장이나 배상평가사법관의 심사가 개시된다.

⑤ 피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보상기금은 언제든지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금은 그 취지를 배상위원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⑥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06-6조 ①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진술청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특히 범죄의 조서 또는 수사서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412 제4권 특별소송절차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모든 사람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 및 배상청구인의 직업·재정·조세·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
2.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사회보장기관·사회보장 급여관리기관 또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보험회사에 대해 그들 업무집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 ② 수집된 자료는 배상 신청의 심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누설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신청 절차의 계속 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의 가불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가불금 지급 결정은 청구인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06-7조 ①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소에 대한 판결이 행하여지기 이전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7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을 연기하여야 한다.
- ③ 심리 및 결정은 비공개 평의실에서 한다.

제706-8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위원회가 인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06-9조 ① 위원회는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시설·기관이 지급하는 급부와 농촌법 제1106-

9조(L.731- 30 및 L.731-31), 제1234-8조(L.752-13), 제1234-20조(L.752-28)에
열거한 자가 지급하는 급부

- 국가 기타 공법인의 민사배상소송에 관한 1959년 1월 7일 명령 제59-76호
제1조 Ⅱ에 열거된 급부
 - 치료비 및 재활교육비용의 환급금
 - 손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중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
 - 공제조합법에 정한 공제조합이 지급하는 일일의료보상 및 장애보상
- ② 위원회는 기타의 배상의무자로부터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이미 수령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모든 종류의 배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급이 인정된 보상금은 테러행위 기타 범죄의 피해자보상기금에서 지급
된다.

제706-10조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제706-9조에 규정된 수당 또는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보상기금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6-11조 ① 보상기금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
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들이 부담할 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또는 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기금은 형사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최초로 사소청구인을
구성할 수 있다. 보상기금이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사소청구인이 된 때에는
제420-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한 금액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국가기관·공공기관 또는 사회보장기관·사회보험 담당 기관·회계
법인·보험회사 등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414 제4권 특별소송절차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는 본조에 정한 목적 또는 보험법 제422-8조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되고, 이를 누설할 수 없다.

④ 범죄행위자가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감경, 조건부 석방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나 본편 또는 제14편bis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기금으로부터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상기금은 초과 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구상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제706-12조 ① 피해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는 형사법원에서 사소청구인을 구성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제706-4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과 위원회가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인은 전항과 관련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민사판결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제706-14조 ① 절도·사기·배임·강취·자기 소유의 재물손괴 또는 파괴의 피해자는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그 손해에 대하여 유효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 위기에 처한 자는 그 수입이 법률구조에 관한 1991년 7월 10일 법률 제91-647호에 규정된 상한선 미만일 때, 제706-3조(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706-12조에 따라 필요한 때,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상은 전항의 월 수입 상한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규정은 제706-3조에 정한 인체에 대한 침해의 피해자로서 1월 미만 노동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손해의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던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706-14조 ① 제706-14조의 규정은 육상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기타

기술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보험법 제211-1조에 정한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에도 방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제706-14조 제1항에 정한 월 수입액 상한선의 1.5배를 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본조의 규정은 사건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제706-15조 법원이 제706-3조 및 제706-14조에서 열거한 범죄행위자에게 사소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경우, 사소청구인에게 범죄피해자 배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제 14 편bis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의 보상을 위한 구조

제706-15-1조 ① 사소청구인으로 참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자가 제706-3조 또는 제706-14조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보상과 제375조 또는 제475-1조에 정한 금액의 보상을 위한 구조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범죄행위자가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감경, 조건부 석방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06-15-2조 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월이 지나도록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소청구인이 입은 손해나 제375조 또는 제475-1조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소청구인은 테러 기타 범죄의 피해자 보상기금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조 요청은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를 수리하지 않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기금이 청구를 수리할 수 있고, 보상기금이 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는 청구를 수리하도록 지방법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금의 불수리 결정 후 1월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법원장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는 보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단독으로 또는 배상의무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는 구조를 포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기금이 지불한 회계비용과 보상비용은 피해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15 편 테러행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 제706-16조** ① 형법 제421-1조 내지 제421-5조에 규정된 테러행위 및 그 관련 범죄는, 본편 규정을 특칙으로 한 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사하고 소추하며 재판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또한 형법 제1권 제1편 제3장 제2절에 따라 프랑스 법률이 적용되는 외국에서 행하여진 테러범죄에도 적용된다.

제 1 절 관 할

- 제706-17조** ①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의 소추·예심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파리의 검사·예심판사·경죄법원 및 중죄법원은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파리의 검사·예심판사·소년판사·소년법원 및 소년중죄

법원이 소년범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호가 적용되는 사건관할과 경합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의 소추 및 예심수사에 대하여 관할하는 파리의 검사 및 예심판사는 프랑스 영토 전역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④ 형법 제421-1조 제5호 내지 제7호, 제421-2-2조에 정한 테러범죄 행위의 예심수사는 제70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 분야 특별 예심수사의 형태로 파리지방법원의 사법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06-17-1조 ① 제706-16조가 적용되는 경죄 및 중죄의 판결에 관하여, 파리 고등법원장은 고등검사장의 청구에 따라 관련 지방법원장, 파리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필요한 경우, 파리중죄법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예외적으로 안전 상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고등법원 관할 내에서 통상 열리는 심리를 파리의 경죄법원·경죄법원 항소부, 또는 중죄법원에서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내린 결정은 고등검사장이 관련 지방법원에 전달하며, 이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사법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06-18조 ① 파리를 제외한 지방법원에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는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 파리지방법원의 예심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예심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심판사는 당사자에 대하여 미리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의견을 받은 후 최소한 8일 이후 늦어도 1월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에 따라 예심판사가 이송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제706-22조에 정한 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06-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가 있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부의 결정이나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까지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③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는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달한다.
- ④ 본조의 규정은 예심부에 계속된 관련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706-19조 ① 파리지방법원 예심판사는 자기에게 계속된 사건이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사건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에 의하여도 자기의 관할에 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할의 부존재를 선언한다. 청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미리 통지를 하여 의견을 구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8일 후에 결정한다.

- ② 제706-18조 제2항의 규정은 파리지방법원 예심판사에 의한 관할 부존재의 결정에 준용한다.
- ③ 파리지방검찰청 검사는 결정이 확정된 직후 사건기록을 토지관할권이 있는 검사에게 송부한다.
- ④ 본조의 규정은 파리 고등법원 예심부가 관할에 대해 재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06-20조 파리의 경죄법원 또는 소년법원이 제706-19조에 규정된 이유에 근거하여 관할의 부존재를 선언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동일한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영장 또는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706-21조 제706-18조 내지 제706-20조에 정한 경우, 구금영장 또는 체포구금영장의 집행력은 유지된다. 사건 계속 해제 결정 또는 관할 부존재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여진 소추 또는 예심수사 행위와 절차는 이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 제706-22조** ① 제706-18조 또는 제706-19조에 따라 행해진 예심판사에 의한 사건 계속 해제 결정 또는 파리지방법원 예심판사에 의한 관할 부존재의 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불복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당사자가 결정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구로써 대법원 형사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형사부는 사건수리일로부터 8일 이내에 예심수사를 수행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제706-18조 제1항에 정한 1월의 기간 안에 예심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직접 대법원 형사부에 가져갈 수 있다.
- ② 대법원 형사부는 파리지방법원의 예심판사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도 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그 법원에서 예심수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은 예심판사 및 검사에게 통지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 ④ 본조의 규정은 제706-18조 및 제706-19조의 제4항에 따라 고등법원 예심부가 행하는 사건 계속 해제 결정 또는 관할 부존재 결정에 준용한다.

- 제706-22-1조** ① 구속 장소나 범죄지가 어디인지와는 상관없이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행위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파리지방법원의 형벌적용판사, 파리 형 집행법원과 파리항소법원 형 집행부에 전속관할권이 있다. 단, 제712-10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② 전항의 결정은 제712-10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형벌적용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③ 본조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제1항에 정한 사법관은 국토 전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단, 전기통신수단의 사용에 관한 제706-71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절 소송절차

제706-24조 ① 테러와의 전쟁을 전담하는 경찰부서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가운데 파리 항소부 검사가 제706-16조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에 관한 수사를 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명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는 행정청이 배당한 번호로 특정된다.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할 때 번호로 특정된다.

② 전항에 정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인적사항은 파리 항소부 검사의 결정으로만 공개할 수 있으며, 판결법원의 법원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장에게 공개한다.

③ 전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에 정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06-8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 본조에 정한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사관의 소송 상 행위에만 근거해서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법원의 법원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수사관의 인적사항을 법원장에게 공개한다.

⑤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06-24-3조 형법 제421-5조에 정한 특수강도의 경죄 수사의 경우에 제145-1조 제2항의 총 구속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06-25조 ① 성인인 피고인의 재판을 위한 중죄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698-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에서 소년중죄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소년범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호 제20조 제8항 내지 제16항에 따라 배석판사 중 2명은 소년법원 판사 가운데 선택한다.

② 전항의 적용을 위하여 예심판사 또는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214조 제1항에

기한 공판회부 결정을 할 때 공소사실에 제706-16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 제706-25-1조** ① 제706-16조에 정한 중죄의 공소시효는 30년으로 한다. 위 중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시효는 형 선고의 확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 ② 제706-16조에 규정된 경죄의 공소시효는 20년으로 한다. 위 경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시효는 형 선고의 확정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 16 편 마약밀매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제706-26조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39조에 규정된 범죄 및 이를 준비할 목적으로 형법 제450-1조에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죄는 본편의 규정을 특칙으로 한 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소추하고 예심수사하고 재판한다.

- 제706-27조** ①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의 1개 또는 수개의 중죄법원은 제706-26조에 규정된 중죄 및 그 관련 범죄의 재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그 중죄법원의 명단은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성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중죄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698-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전항의 적용에 있어 고등법원 예심부는 제214조 제1항에 의한 공판회부 결정 시 공소사실에 제706-26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제706-28조 ① 제706-26조에 따라 범죄의 증거수집 및 혐의 확인을 위하여 행하는 제59조에 의한 출입·수색 및 압수는 대상자의 거주지, 타인과 함께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마약이 불법적으로 제조·가공·보관되고 있는 건물 내에서 동조가 정하는 시간 외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본조의 집행은 제706-26조에 규정된 범죄의 증거수집 및 혐의확인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를 행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때에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

제706-30-1조 ① 제99-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소송절차 중 마약물질을 압수한 경우, 예심판사는 필요한 때 감정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의 시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시료는 봉인한다.

② 예심판사 또는 예심판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압수된 마약의 폐기 전에 그 무게를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은 마약 물질 소지자의 출석 하에 행하여야 하며, 소지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예심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구한 다른 기관에 속한 2명의 증인의 출석 하에 행하여야 한다. 현행범 수사 또는 예비수사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건 하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세관 수사의 경우에도 A 또는 B 부문 세관 공무원이 이를 할 수 있다.

③ 계량의 시행에 대한 조서에는 위에 언급한 자가 서명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706-31조 ① 제706-26조에 정한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30년으로 한다. 위 중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제706-26조에 정한 경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으로 한다. 위 경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③ 제7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관세범죄에 대하여 100,000유로를 초과하는 벌금 및 재산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그 환형 유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제706-32조 ① 제706-81조 내지 제706-8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 제222-37조 내지 제222-39조에 규정된 마약류의 취득·제공·매매 행위를 인지

하고, 그 정범 또는 공범을 특정하며, 본법 상 압수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이 경우 예심판사는 검사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를 얻은 사법경찰관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는 형사 상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마약제품의 구매
2. 마약제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마약 범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통화 등을 양도하거나 수송·보관·저장·보호 및 연락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②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는 소송기록에 적시되고 편철되어야 하며, 마약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706-33조 ① 제706-26조에 정한 범죄에 대한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에 모든 호텔, 가구가 설비된 가옥·펜션·주점·레스토랑·클럽·씨클·무도장·극장 및 그 부속건물 또는 공공에 개방된 장소 또는 공공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그 사업자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위 범죄를 범한 때에는, 예심판사는 잠정적으로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폐쇄는 당초 폐쇄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해제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한 때 또는 관계당사자에게 고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판결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제148-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진행 중인 폐쇄조치의 해제 결정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갱신 결정을 한다.

제 17 편 조직매춘⁴⁵⁾ 또는 미성년자 매춘방지에 관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제706-34조 형법 제225-5조 내지 제222-12-4조에 정한 범죄 및 이들 범죄를 준비할 목적으로 형법 제450-1조에 정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죄는 본편의 규정을 특칙으로 한 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소추하고 예심수사하고 재판한다.

제706-35조 ① 호텔 내부, 가구가 설비된 가옥·펜션·주점·클럽·씨클·무도장·극장 및 그 부속건물, 공공에 개방된 장소 또는 공공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장소에 매춘에 종사하는 자가 습관적으로 출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06-34조에 규정된 범죄의 증거수집 및 혐의 확인을 위한 제59조에 정한 출입·수색 및 압수는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본조에 정한 처분은 제706-34조에 규정된 범죄의 증거수집 및 혐의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된 때에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

제706-35-1조 ① 형법 제225-4-1조 내지 제225-4-9조, 제225-5조 내지 제225-12조 및 제225-12-1조 내지 제225-12-4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행위자를 수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담수사부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또는 수사위임을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경우에, 형사 상 책임을 지지 않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허가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5) proxénétism. 포주가 개입되어 있는 조직적 매춘으로서 개인의 직업적 성격이 강한 prostitution과 구분됨. 러시아 마피아 등이 개입되어 인신매매 등이 수반되는 조직매춘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 중대조직범죄의 하나로 엄격히 처단하고 있음

1. 가명으로 통신하는 행위
 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혐의를 받는 행위자와 연락하는 행위
 3. 허가서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불법콘텐츠를 요청하는 자에게 불법콘텐츠를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존하는 행위
- ②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06-36조 ① 제706-34조에 정한 범죄에 대한 소추가 행하여진 경우, 예심판사는 잠정적으로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25-10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다만 그 소유자·지배인 또는 직원이 소추를 받은 경우
 2. 모든 호텔, 가구가 설비된 가옥·펜션·주점·레스토랑·클럽·무도장·극장 또는 부속 건물, 공공에 개방된 장소 또는 공공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장소. 다만, 소추를 받은 자가 소추 도중에 경영진 또는 직원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② 전항의 폐쇄는 당초 폐쇄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③ 전2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해제 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시 또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고지 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판결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제148-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진행 중인 폐쇄조치의 해제 결정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갱신 결정을 한다.

제706-37조 검사는 형법 제225-10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및 영업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추 사실 및 결정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고 이를 상업등기부 및 담보물을 등록한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06-38조 ① 제225-10조 제2호의 시설 중 하나에서 영업을 하는 주점·레스토랑의 허가권자 또는 영업재산의 소유자가 소추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225-22조에 규정된 부가형은 소추의 성격을 명시하고, 법원이 부가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을 하여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만, 이유를 붙인 특별결정으로 이를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정한 자는 공판에서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가 의견 제출권을 행사한 때에는 형법 제225-22조에 규정된 형 선고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제706-39조 ① 형법 제225-22조에 기하여 영업재산을 몰수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으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시설을 소유·관리·경영·지배하거나 운영하거나 출자 또는 출자에 기여한 모든 자를 건물로부터 추방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몰수된 영업재산은 국가로 이전되고 국가는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대위한다.

제706-40조 형법 제225-10조 제3호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점유자 및 매춘 종사자는 이웃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동조의 범죄사실이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검사·소유자·주임차인·점유자 또는 건물이웃 사람의 청구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춘에 종사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임차인·전차인·점유자의 축출을 선고한다.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건물이 매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제 18 편 법인에 의한 범죄의 소추, 예심수사 및 재판

제706-41조 본편 규정을 특칙으로 하는 본법 규정은 법인의 범죄 소추, 예심 수사 및 재판에 적용된다.

제706-42조 ① 자연인이 피의자가 되거나 소추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할 규정과는 상관없이 다음 각호의 자는 관할권이 있다.

1. 범죄지의 검사와 법원
2. 법인 소재지의 검사와 법원

② 전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범죄 및 테러행위에 관한 제705조 및 제706-17조에 규정된 특별 관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706-43조 ① 법인에 대한 소추 시에는 법률상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한다. 법률상 대표자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 또는 그 관련 시설에 관하여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추가 제기된 경우, 법인 대표자는 지방법원장에게 법인을 대표할 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대표권을 위임받은 모든 자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기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에 의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 중 법률상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본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법인을 대표할 권한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방법원장은 검사·예심판사 또는 사소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을 대표할 재판상 대리인을 지명한다.

제746-44조 소추된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에 대한 조치 이외의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706-45조 ① 예심판사는 법인을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사법통제 하에 두고 다음 각호의 의무 중 1개 또는 수개를 부과할 수 있다.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은 1회 또는 수회 분할하여 예심판사가 정한다.
 2. 일정 기간 내에 예심판사가 정하는 기간 및 금액으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것
 3. 수표의 발행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의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수표 또는 지급보증에 있는 수표의 발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정 직업활동 또는 사회활동의 금지. 이 경우 범죄가 그 활동 중 또는 활동의 기회에 행하여지고 새로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한다.
 5. 특정 활동 중에 범죄를 범하였거나 활동의 기회에 범죄를 행한 경우에 예심판사가 지명한 재판 상 대리인이 6개월 동안 활동 전체를 감시하게 하는 것. 이 경우 6개월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② 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된 금지처분은 예심판사가 소추된 법인에 대한 형벌로 선고된다. 제5호에 규정된 조치는 법인에 대하여 형법 제131-39호 제3호에 따라 형이 선고될 경우, 예심판사의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
- ③ 사법통제를 위반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434-43조 및 제434-4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706-46조 법인에 대한 송달에 적용되는 특칙은 제2권 제4편에서 정한다.

제 19 편 성범죄와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적용되는 소송절차

제706-47조 ① 본편 규정은 형법 제222-23조 내지 제222-31조, 제225-7조 제1호, 제225-7-1조, 제225-12-1조, 제225-12-2조, 제227-22조 내지 제227-2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매춘알선·성추행·폭행 또는 고문·가혹행위·강간 후 모살·강간 중 모살·살인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본편 규정은 또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동반한 모살 및 살인·고문·가혹행위·살인 및 모살의 재범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1 장 총 론

제706-47-1조 ① 제706-47조에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1-36-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 선고와 동시에 사회보호처분의 하나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형 선고 이후 조건부 석방의 기회에 제703-53-19조, 제723-30조, 제723-37조, 제731-1조, 제763-3조 및 제763-8조에 정한 사법감시 또는 보안감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이 부과된 경우에 의사는 공중보건법 제371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성욕을 억제하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③ 제706-47조에 정한 범죄 중 하나로 소추된 자는 실체에 관한 심리에 앞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정인은 치료명령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한다.

④ 전항의 감정은 검사의 수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감정 결과는 징역형 선고 시 제717-1조에 정한 구금에 대한 정신 의학감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도행정기관에 통지한다.

제746-47-2조 ① 수사 또는 수사지휘 임무를 수행중인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222-23조 내지 제222-26조, 제227-25조 내지 제227-2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행위를 범하였다고 보이는 중요한 증거 또는 개연성 높은 증거가 발견된 모든 자에 대하여 전염성 성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학 검사 및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

② 의사·간호사 기타 공중보건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 있는 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직업상 가능한 검사행위를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가 소명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조치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감정 또는 예심판사의 수사행위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고, 그 사실은 소송기록에 첨부된다.

④ 검진 결과는 최단 시일 내에 의사를 거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제706-50조에 따라 지명된 특별대리인에게, 통지한다.

⑤ 본조에 정한 검사를 받기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2-2조 내지 제13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형은, 병합의 가능성이 없다면 병과되며, 소송절차에 관한 중죄 또는 경죄로 선고될 수 있다.

제706-47-3조 ① 형법 제227-18조 내지 제227-24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행위자를 수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담수사부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또는 수사위임을 받아 수사를 행하는 경우에 형사 상 책임을 지지 않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허가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가명으로 통신하는 행위
2.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혐의를 받는 행위자와 연락하는 행위
3. 허가서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불법콘텐츠를 요청하는 자에게 불법콘텐츠를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취득하거나, 보존하는 행위

②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에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06-48조 ①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적합한 치료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학정신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감정은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명할 수 있다.

제706-49조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지체 없이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 관련 소송의 존재를 소년판사에게 알리고, 위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교육지원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소년판사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열람하게 한다.

제706-50조 ① 미성년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사실을 인지한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대리인 중의 1인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지명한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 보호를 담보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사소청구인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다. 사소청구인을 구성하는 경우 판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판결법원에도 준용된다.

제706-51조 전조가 적용되어 지명되는 특별대리인은 관할 판사에 의하여 친척 중에서 지명되거나 국참사원령으로 구성된 인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위 국참사원령에서는 특별대리인의 보상에 대한 요건도 정한다.

제706-51-1조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의 모든 미성년 피해자는 예심판사의 진술청취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회 회장이 즉시 지명할

수 있도록 이를 고지하며, 제114조의 규정은 새로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의 진술청취에 적용된다.

- 제706-52조**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의 과정에서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에 관한 공판은 본인의 동의하에, 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영상녹화의 대상이 된다.
- ② 전항의 영상녹화는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음성으로만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위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검사, 예심판사 또는 수사나 수사지휘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은 자격 있는 모든 자에게 위 영상녹화를 실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의 규정은 영상녹화를 실행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제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소송절차 후의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사본 1부를 작성하며, 사본은 수사 기록에 첨부된다. 또, 영상녹화물은 봉인하여 보관한다.
- ⑤ 예심판사의 결정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소송절차에서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상녹화물 사본은 예심판사 또는 서기의 입회하에 당사자, 변호인 또는 감정인이 이를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다.
- ⑥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4항 내지 제11항은 영상녹화물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의 비밀이 보장되는 조건 하에서, 당사자의 변호인이 법원에서 영상녹화물 사본을 시청할 수 있다.
- ⑦ 기술적인 이유로 영상녹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이유와 취지를 명시한다. 수사나 수사 위임의 실행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예심판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⑧ 영상녹화물 또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작성한 사본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영상녹화물과 그 사본은 1월 이내에 폐기한다.

제706-53조 수사 또는 예심수사 과정에서, 제706-47조에 규정된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또는 대질신문은 미성년자, 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가족, 제706-50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또는 소년판사의 위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결정한다.

제 2 장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사법정보

제706-53-1조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국가사법정보는 법무부장관 및 사법관의 감독 하에 전과기록을 자동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행위자의 특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장에 정한 방식으로 제706-53-2조에 정한 정보를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제706-53-2조 ① 본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사법정보에는 제706-47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범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주소 및 전후 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거주지 정보를 등재한다.

1. 확정이 안 된 것을 포함한 형 선고. 궤석상태의 형 선고나 집행이 연기되거나 면제된 형 선고도 포함한다.
2. 확정이 안 된 것을 포함하여 소년범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호 제8조, 제15조, 제15-1조, 제16조, 제16조bis 및 제28조에 따른 형 선고
3. 본조 제41-2조에 따라 검사가 주도하는 형사조정
4.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5. 예심수사피의자가 사법통제나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에 처해진 경우에
예심판사가 정보 등재를 명한 때
6. 외국의 사법기관 또는 법원이 전5호의 결정을 내리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고지한 때 또는 대상자를 이송 받아 프랑스
내에서 집행할 때
- ② 국가사법정보에는 범죄의 성격과 정보 등재를 명한 결정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제1호와 제2호는 선고 즉시 등재된다.
- ③ 제706-47조에 정한 경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사법정보에 등재하지 않는다. 단, 판결법원이 등재를 명하거나, 본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검사가 등재를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6-53-3조 ① 관할권 있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지체 없이 보안장치가
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국가사법정보에 공개할 정보를 송부한다.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송부한 정보는 국가사법정보 관리자가 주민등록부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만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가 등재된 자의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되었거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보안장치가 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국가
사법정보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제706-53-4조 ① 제706-53-9조 및 제706-53-1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06-53-2조에 정한 정보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나 등재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국가사법정보에서 삭제한다.

1.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죄나 중죄의 경우에는 30년
2. 그 외의 경우에는 20년

② 사면이나 복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과기록이 삭제되는 경우에도 국가
사법정보에 등재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다.

- ③ 국가사법정보 자체만으로는 누범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 ④ 제706-53-2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정보는 불기소, 형 면제 또는 석방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사법정보에서 삭제된다. 제5호의 정보에 관하여 사법통제나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조치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06-53-5조 ① 국가사법정보에 이름이 등재된 모든 자는 본조에 따라 보안 조치로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사법정보에 이름이 등재된 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국가사법정보 관리자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의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다음과 같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제706-53-6조 제2항에 정한 의무사항과 결정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후에 최초로 주소를 신고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1회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중죄나 경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매 6월마다 거주지의 관할헌병대나 경찰서에, 거주지의 공안당국 지휘부서 또는 관할 헌병부대에, 또는 도청이 지명한 기관에,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자가 위험한 인물일 경우에는 판결법원이나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벌적용판사가 매달 주소를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상자가 재범일 경우에는 매달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본조에 정한 신고나 정보제공의무는 대상자가 수감 중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본조에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에 위반한 경우에는 30,000유로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6-53-6조 ① 사법기관은 직접 고지, 최종 신고 주소에 대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국가사법정보에 이름이 등록된 자에 대하여 등재 사실을 고지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이 공권력으로 고지한다.

- ② 전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제706-53-5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선고될 형에 대하여 고지한다.
- ③ 대상자가 정보 등재를 정당화하는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어서 아직 제1항에 정한 정보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에 정한 정보는 석방 시점에 고지하거나 형벌의 최초 조정에 앞서 고지한다.

제706-53-7조 ① 국가사법정보의 내용은 보안조치가 된 전자통신으로 다음의 자에게 제공된다.

- 1. 사법기관
 - 2. 유괴·감금 또는 생명 침해 중죄, 제706-47조에 정한 범죄와 관련된 절차에서 그리고 제706-53-5조 및 제706-53-8조에 정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 3.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직업이나 업무의 감독, 그 직업이나 업무와 관련한 채용·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업무를 위하여 제706-53-12조에 정한 명령으로 정한 국가기관 및 구청에게
 - 4. 수감된 자의 수감일자 및 석방일자의 등록과 피석방자가 신고한 주소의 등록, 제706-53-6조에 정한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교도소의 장이 특별히 위임한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 ② 국가기관과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자는 제706-53-12조에 따라 명령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특히 대상자의 신원, 전후 주소 및 범죄행위의 성격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3호에 정한 자는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또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시가 있거나 이들 사법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현행범 수사, 위임수사의 실행, 예비수사를 목적으로 국가사법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시장·도의회 의장·시의회 의장도 또한 도청을 경유하여 국가사법정보의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영업 또는 직업의 감독과 그와 관련된 제1항 제3호에 정한 행정업무에 공할 목적에 제한된다.

제706-53-8조 ① 국가사법정보에 새로운 정보가 등재되거나 등재된 주소의 변경이 있거나 또는 규정된 기간 안에 주소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제706-53-12조에 규정한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사법정보 관리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고, 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이를 통지한다. 제706-53-4조 및 제706-53-10조에 따라 등재 정보가 삭제되어야 할 경우에 관리자는 그 취지를 수배자 명부 관리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② 등재 대상자를 신고 주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통지하여 지체 없이 수배자명부에 이들을 올리게 한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헌병대원은 대상자의 주소를 찾아서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제706-53-9조 ① 신원확인을 거친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검사에게 요청하여 국가사법정보에 등재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777-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706-53-10조 ① 국가사법정보에 등재된 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국가사법정보의 목적, 범죄행위의 성격, 범죄 시 연령, 범죄 이후 경과된 시간 또는 범죄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등재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대상자가 아직 복권되지 않았거나 또는 등재의 원인이 된 명령이 아직 공보에서 삭제되지 않은 때에는, 삭제 요청은 각하한다.
- ③ 검사가 정정 또는 삭제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자는 형벌적용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심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④ 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대하여 심리하기 전에 검사, 형벌적용판사 또는 예심부장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의사에게 명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대상자가 범한 죄가 중죄이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경죄 이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인 경우에는 전술한 감정 없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⑤ 제706-53-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본조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된 검사, 형벌적용판사 또는 예심부장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년에 1회 주소를 경찰서나 헌병대에 신고하게 하거나, 종전에 1월에 1회 신고하던 것을 6월에 1회 신고하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706-53-11조 ①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제30조에 규정한 정보통합 또는 연계는 본장이 규정하는 국가사법 정보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 및 개인이 보관하는 기명 정보 혹은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본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를 수배하기 위하여 수배자명부와 국가사법정보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 및 개인이 보관하는 기명정보 혹은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에 정한 조건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국가사법 정보에 수록된 정보를 언급할 수 없다.
- ③ 전2항의 규정 위반행위는 형법 제226-21조의 경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706-53-12조 ① 본장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② 국참사원령은 특히 어떤 방식으로 국가사법정보의 검색과 열람 기록을 보존할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안감시와 보안유치

제706-53-13조 ① 예외적인 경우에, 형 집행 종료 시에 감정 결과 성격 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본장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치를 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모살·살인·고문·가혹행위·강간·유괴·감금 등 중죄를 저질러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② 형법 제221-2조, 제221-3조, 제221-4조, 제222-2조, 제222-3조, 제222-4조, 제222-5조, 제222-6조, 제222-24조, 제222-25조, 제222-26조, 제224-2조 및 제224-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중유기·중감금·특수강간·특수가혹행위·특수고문·특수살인 및 특수모살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살인·고문·가혹행위·강간·감금·유괴범죄의 재범인 경우도 전항과 같다.

③ 보안유치는 장래 형 종료 시 정신감정을 통해 보안유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중죄법원이 형 선고와 동시에 경고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될 수 있다.

④ 보안유치는 대상자를 관할 사회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정신의학 치료 및 사회화 치료를 하고, 완치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을 말한다.

제706-53-14조 ① 최소한 석방일 전일까지 제763-10조에 정한 보안조치심의 위원회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제706-53-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완료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최소한 2명의 전문의가 다층적

으로 위험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6주 이상 정신감정기관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

③ 위원회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법정보에 등재하고, 치료명령을 선고하고, 전자감시 하에 두고, 사법감시나 사회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2. 재범 확률이 높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안유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④ 위원회는 대상자가 수감 기간 중 성격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의학 치료와 사회화 치료를 충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고려한다.

⑤ 위원회가 보안유치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기록을 형벌적용판사에게 송부하여 사법통제에 부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제706-53-15조 ① 보안유치는 관할권을 가진 지역보안유치법원이 결정한다. 본 법원은 항소법원 수석부장이 3년 임기로 지명하는 항소부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2명의 항소부 판사로 구성된다.

② 검사는 제763-10조에 정한 보안조치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형 선고자의 석방일로부터 최소 3월 이전에 전항의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법원은 변론을 거쳐 재판하고,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하며, 대상자는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나 직권으로 지명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감정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③ 지역보안유치법원은 대상자가 수감 기간 중 성격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의학 치료와 사회화 치료를 충실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보안유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보안유치 결정에는 전항 및 제706-53-14조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보안유치 결정은 형 집행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보안유치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중앙보안유치법원은 수석부장이 3년의 임기로 지명한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 ⑦ 중앙보안유치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706-53-16조 ① 보안유치 결정은 1년 간 유효하다.

- ② 보안조치심의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제706-53-14조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안유치 결정은 제706-53-1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1년의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제706-53-17조 ① 보안유치 결정이 확정된 후 3월이 지나면 보안유치 대상자는 지역보안유치법원에 보안유치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요청이 경료된 후에 3월이 지나도록 법원의 결정이 없으면 대상자는 직권으로 석방되며,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다시 3월이 지나기까지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개시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706-53-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706-53-18조 보안유치법원은 제706-53-14조에 정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즉시 보안유치의 종료를 명한다.

제706-53-19조 ① 보안유치의 연장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제706-53-17조 또는 제706-53-18조에 따라 보안유치가 종료된 경우, 보안유치 대상자가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보안유치법원은 같은

결정으로 2년 간 대상자를 보안감시에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심리를 열어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 또는 직권으로 지명한 변호인의 입회하에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도 있다. 보안감시를 선고하면서 제723-30조의 사법감시에 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공중보건법 제3711-1조 내지 제3711-5조에 정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본법 제763-12조 및 제763-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자감시에 부칠 수도 있다. 보안감시에 부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제706-53-15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고, 제706-53-1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 제1문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같은 조건 하에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다시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 법원장은 사회치료감호소에 대상자를 긴급 수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은 3월 이내에 제706-53-15조에 정한 보안유치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안유치법원은 보안조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상자를 석방한다. 승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706-53-15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④ 보안감시 조치를 시행하면서 부과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항에 정한 사회치료감호소 수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⑤ 보안유치법원장은 보안감시에 부처지는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전자감시에 부칠 수 있다는 점과 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회치료감호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⑥ 치료명령에서 지정한 의사나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인하여 대상자가 보안감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치를 명한다. 보안감시에 부처진 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712-16-3조가 적용된다. 형벌적용판사, 긴급한 경우나 형벌적용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할 사법관 또는 검사는 보안유치법원장 앞에 대상자를 인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712-17조에 따라 구인영장이나 체포구금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보안유치법원장이 수감을 명한 때에는 사회치료감호소에 인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 동안만 대상자를 수감한다.

제706-53-20조 ① 본장의 규정은 조건부 석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건부 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관찰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보안유치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선고된 보호관찰의 형기는 보안유치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706-53-21조 ① 보안유치와 보안감시의 집행 중 구금사유가 발생한 때는 집행을 정지한다.

② 구금기간이 6월을 넘은 때에는 구금이 종료된 후에 관할 보안유치법원이 보안유치 또는 보안감시를 재개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안유치 또는 보안감시는 직권으로 종료된다.

제706-53-22조 ① 본장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참사원령에는 사회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자의 고용·교육·직업훈련·면회·서신·종교의식 및 귀휴 또는 전자감시에 관한 권리 및 조건에 대하여 정한다. 단,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받는다.

③ 제706-53-1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치법원을 구성한 항소부의 명단과 이들의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국세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 20 편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

- 제706-54조** ①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은 생물학적 흔적에서 기인한 유전자 배열상과 제706-5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유전자 배열상을 관리하여 그 범죄의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법관의 감독 하에 둔다. 제706-55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와 제706-120조, 제706-125조, 제706-129조, 제706-133조 또는 제706-134조에 따라 형법 상 책임이 조각된 자에 대한 정보도 보존한다.
- ② 제706-5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 하나를 범하였다고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 또는 개연성이 높은 증거가 있는 자의 유전자 배열상도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예심판사의 지휘에 따라 위 시스템에 보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의 취지는 소송기록에 기재한다. 유전자를 더 이상 위 시스템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지휘한다.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삭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석방구금판사에게 제소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장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예심판사의 지휘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1개 또는 수개의 이유가 있는 자에 관하여 위 시스템에 보존된 데이터와 그 자의 유전자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자의 유전자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④ 본조에 규정된 시스템에는 제74조, 제74-1조, 제80-4조에서 따라 사망자의 사망 원인 규명 또는 실종자의 실종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중에 습득한 생물학적 흔적으로부터 추출한 유전자, 그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유전자 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 정보가 보존된다.
- ⑤ 위 시스템에 보존된 유전자 배열상은 성별의 일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암호화되지 않은 DNA 부분만 실행할 수 있다.

⑥ 본조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자유와 정보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특히 위 국참사원령은 등록된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해 규정한다.

제706-55조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호 범죄의 흔적이나 유전자 배열상을 집중 관리한다.

1. 제706-47조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와 형법 제222-32조에 정한 경죄
2. 형법 제221-1조 내지 제221-5조, 제222-1조 내지 제222-18조,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 제224-1조 내지 제224-8조, 제225-4-1조 내지 제225-4-4조, 제225-5조 내지 제225-10조, 제225-12-1조 내지 제225-12-3조, 제225-12-5조 내지 제225-12-7조, 제227-18조 내지 제227-21조에서 규정하는 반인륜범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고의적 침해·고문·가혹행위·상해·협박·마약 밀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인신매매·조직매춘·강제구걸 착취·미성년자 유기범죄
3. 형법 제311-1조 내지 제311-13조, 제312-1조 내지 제312-9조, 제313-2조 및 제322-1조 내지 제322-14조에서 규정하는 절도·사기·재물손괴·파괴·훼손·재산침해 위협의 중죄 및 경죄
4. 형법 제410-1조 내지 제413-12조, 제421-1조 내지 제421-4조, 제442-1조 내지 제442-5조, 제450-1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테러·통화위조·강도 목적 범죄단체 조직의 죄
5. 국방법 제2353-4조 및 제2339-1조 내지 제2339-11조에 정한 경죄
6. 형법 제321-1조 내지 제321-7조, 제324-1조 내지 제324-6조의 각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범죄로부터 생성된 물건의 은닉 또는 세탁행위

제706-56조 I. ① 사법경찰관은 제706-5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유전자 배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위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미리 그 대상자의 유전자가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사법경찰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분석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민법 제16-12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고, 그가 사법감정인 명단에 없는 자라도 이와 같다. 이 경우 그 자는 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선서한다.

③ 전항에 규정한 요청은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할 수도 있다.

④ 요청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통신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국립유전자정보시스템의 유전자 배열상 정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정한 자에 대한 생물학 정보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몸에서 나온 재료로부터 유전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중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는 검사의 서면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으며, 중죄 또는 10년 이하의 경죄로 기소되어 제706-120조, 제706-125조, 제706-129조, 제706-133조 또는 제706-134조에 따라 형법 상 책임이 조각된 자도 이와 같다.

Ⅱ. ① 전항에 규정한 생물학 정보의 채취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죄를 범한 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형법 제132-2조 내지 제13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에서 경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계산함에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이미 집행을 완료한 형을 합산하며, 이미 생물학적 정보 채취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고된 형도 이와 같다.

Ⅲ. 형 선고를 받은 자의 범죄행위를 평가함에는 감경된 부분은 감안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감경된 부분도 이와 같다.

제706-56-1조 등재대상자의 수감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본조에 정한 정보시스템에는 프랑스 국적자 또는 외국국적자이면서 프랑스 내에 주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유전자 정보를 보존한다. 외국의 형사법원에서 제706-55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것과 같은 범죄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프랑스 정부에 형 선고 사실을 고지한 때 또는 대상자를 이송 받아 프랑스 내에서 집행한 때에 한하여 정보를 등재한다. 제706-56조에 정한 규정은 본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0 편bis 사법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에 관하여

제706-56-2조 ① 사법절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나 사법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전과기록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형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에 대하여 파악하거나 위험성을 판단하거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② 파일에는 아래 정한 단계에서 수집한 대상자에 대한 다면감정, 심리검사, 정신의학감정, 심리테스트의 결과 및 의견이 포함된다.

1. 수사단계
2. 예심수사단계
3. 판결단계
4. 형 집행단계
5. 보안유치 또는 보안감시 처분의 선고단계 및 집행단계
6. 제706-136조 또는 제706-137조가 적용되는 단계

7. 공중보건법 제3213-7조, 본법 제706-135조가 적용되어 직권으로 입원결정을 내리는 단계
- ③ 형법 제122-1조 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을 제외한 불기소처분, 무죄의 확정판결, 형 면제 판결, 석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를 삭제한다.
- ④ 범죄행위로 기소 또는 형 선고를 받아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경우에 그 기록 보존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
- ⑤ 파일에 저장된 정보는 보안장치가 된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사법기관에게만 직접 전달된다.
- ⑥ 보안조치심의위원회 위원,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위협성 등을 심층 심사하는 감정인 기타의 자 역시 그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 ⑦ 파일의 보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유와 정보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 ⑧ 국참사원령은 특히 어떤 방식으로 위 정보시스템의 검색과 열람 기록을 보존할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정보의 보존기간 및 삭제 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1 편 증인의 보호

- 제706-57조** ①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어떠한 수궁할 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그 소송절차와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승인 하에, 그 주소를 경찰서 또는 헌병대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자가 영업 상 이유로 소환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자의 개인주소는 번호를 붙이고 구분한 장부에 따로 보관한다.

제756-58조 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 또는 경죄에 관한 소송절차에 있어서, 제705-57조에 규정된 자의 진술을 청취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 또는 가족과 친척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이유를 붙인 청구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 없이 증인의 진술을 소송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제706-60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복할 수 없다. 석방구금판사는 직접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은 증인신문 조서에 기재되고, 여기에는 이해관계자가 서명할 필요가 없다. 증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이해관계자가 서명한 다른 조서에 기재되며 그 조서는 소송기록과는 별도로 번호를 붙이고 구분한 장부에 보관한다.

제706-59조 ① 제706-57조 또는 제706-58조 규정으로 보호되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는, 제706-6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706-57조 또는 제706-58조 규정으로 보호되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공개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7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6-60조 ① 제706-58조의 규정은 범죄가 그 증인에 대하여 범하여진 것이어서 그 인적사항의 확인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예심수사피의자는 제706-58조에 따라 진행된 변론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예심부장에게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소송기록으로 볼 때 불복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기각하고, 제706-58조 제2항의 규정된 서류에 그 취지를 표시한다. 반면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등법원 예심부장은

변론의 무효를 선고한다. 예심부장은 또한, 증인 자신이 익명성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06-61조 ① 예심수사피의자 또는 판결법원에 소추된 자는 제706-58조가 적용되는 증인에 관하여 원거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대질하거나, 그의 변호인을 통하여 같은 장치를 통해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목소리는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분간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법원이 증인신문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지명한 예심판사나 수명법관이 전항에 정한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증인의 진술을 듣는다.

제706-62조 제706-58조 및 제706-61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증언만을 이유로 해서는 어떠한 유죄판결도 할 수 없다.

제706-63조 본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21 편bis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경감 혹은 방지하거나,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정범 혹은 공범의 특징에 도움을
주어 형 면제 또는 감경의 혜택을 얻은 자에 대한 보호**

제706-63-1조 ① 형법 제132-78조에 정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이 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전항에 정한 자는 지방법원장의 이유를 붙인 결정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정한 가명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7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1항의 보호를 받는 자나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폭행·상해·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00유로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누설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1항의 보호를 받는 자나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에 정한 보안조치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대상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보안조치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의 집행을 감독하며, 조건을 변경하거나 조치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자가 필요한 조치를 먼저 집행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⑤ 본조의 규정은 형법 제132-78조에 정한 자의 가족구성원과 친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22 편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제소권

제706-64조 예심법원과 중죄법원을 제외한 형사법원은 사법조직법 제151-1조를 적용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구할 있다. 다만, 사람이 구속되어 있거나 사법통제하에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706-65조 ① 판사가 사법조직법 제151-1조를 적용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판사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견해와 검찰 측 의견을 제출하게 한다. 단, 이미 견해 또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의 견해와 검찰 측 의견을 받거나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판사는 대법원에 법률문제를 작성하여 의견을 구한다. 판사는 대법원의 의견을 받은 때 또는 제706-58조에 지정된 기간의 경과 시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제706-66조 ① 대법원의 의견을 구하기로 한 결정은 검사 및 당사자의 의견서와 함께 법원 서기가 대법원 서기에게 제출한다.

- ② 대법원은 기록 송부일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전향의 취지를 통지한다.

- ③ 법원에 소속된 검사에게도 의견 요청 사실을 통지하며, 고등법원이 의견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닌 한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사장에게도 이를 통지한다.

제706-67조 대법원은 기록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의견을 회신한다.

제706-68조 사건은 검찰총장에게도 공개되며, 심리기일도 통지한다.

제706-69조 의견은 프랑스 관보에 실어 출판할 수 있다.

제706-70조 ① 의견은 이를 요청한 법원, 그 법원에 대응한 검사, 의견 요청이 고등법원에서 행한 것이 아닐 경우 고등법원장 및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 ② 당사자에 대하여는 대법원 서기가 통지한다.

제 23 편 소송절차 중 전기통신 수단의 사용

제706-71조 ① 수사 또는 예심수사에 있어 이를 정당화하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의 다수 지역에 있는 다수 사람들에 대한 진술청취·신문·대질

신문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같은 조건 하에서 보호유치 또는 신분검사를 위한 유치 연장을 위해 행하는 출석도 화상전기통신 수단에 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시된 장소에서 그 조치에 대한 조서가 작성되며, 영상녹화물로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다. 이 경우 제706-52조 제4항 내지 제9항이 적용된다.

② 화상전기통신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전항의 규정은 판결법원에서의 증인신문·감정인신문 및 당사자의 진술청취에도 적용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구금된 자에 대한 예심판사의 신문, 다른 이유로 구금된 자에 대한 구속 결정 전 심리, 구속연장 결정을 위한 심리, 구속 결정에 대한 예심부의 항고심 심리, 제272조에 따른 중죄법원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심리 결과를 고지하기 위한 판결법원 또는 결정법원에의 피고인 출석 절차, 민사 상 문제만을 다루는 심리, 구인영장에 의해 체포된 자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장의 신문,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구금 중인 자에 대한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속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항소법원장이 주재하는 범죄피해배상심의위원회·구금피해보상위원회·유죄판결재심위원회·재심 등에도 적용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때에는 변호인은 사법관·판결법원·위원회 측에 출석하거나 혹은 대상자 옆에 출석할 수 있다. 사법관·판결법원·위원회 측에 출석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자 옆에 출석하는 때에는 대상자의 구금 장소에 소송기록 일체를 두어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미 변호인에게 기록이 송부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통역인이 이동할 수 없어서 통역인을 통한 진술청취·신문·대질신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통역도 전기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본조의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24 편 조직범죄에 적용되는 절차

제706-73조 ① 다음 각호에 정한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기소·예심수사·재판에 관한 사항은 본편을 특칙으로 한 본법 규정에 따른다.

1. 형법 제221-4조 제8호에 정한 범죄집단의 살인
2. 형법 제222-4조에 정한 범죄집단의 가혹행위와 고문
3. 형법 제222-34조 내지 제222-40조에 정한 마약거래 관련 중죄 및 경죄
4. 형법 제224-5-2조에 정한 범죄집단의 유괴 및 감금 관련 중죄 및 경죄
5. 형법 제225-4-2조 내지 제225-12조에 정한 인신매매에 관한 중죄 및 경죄
6. 형법 제225-7조 내지 제225-12조에 정한 매춘알선 관련 중죄 및 경죄
7. 형법 제311-9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의한 절도(중죄)
8. 형법 제312-6조 및 제312-7조에 정한 공갈(중죄)
9. 형법 제322-8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의한 재물손괴·파괴·훼손(중죄)
10. 형법 제442-1조 및 제442-2조에 정한 통화위조 관련 중죄
11. 형법 제421-1조 내지 제421-6조에 정한 테러범죄의 일종인 중죄 및 경죄
12. 국방법 제2339-2조, 제2339-8조, 제2339-10조, 제2341-4조, 제2353-4조 및 제233-5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의한 폭발물 및 무기 관련 경죄
13.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에 관한 1945년 11월 2일 명령 제45-2658호 제21조 제 I-4항에 정한 범죄집단에 의한 불법체류자의 입국·운송·체류 관련 경죄
14. 형법 제324-1조 및 제324-2조에 정한 돈세탁, 형법 제321-1조 및 제321-2조에 정한 은닉 및 제1호 내지 제13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건·생산물·수익에 대한 은닉 및 세탁 관련 경죄
15. 제1호 내지 제14호에 정한 죄의 준비를 목적으로 형법 제450-1조에 따라 범죄단체를 조직한 죄(경죄)
16. 제1호 내지 제15호에 정한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증명하지 못하는, 형법 제321-6-1조에 따른 경죄

② 제3호, 제6호 및 제11호에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본편뿐만 아니라 제15편, 제16편, 제17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06-74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편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제706-73조에 정한 죄를 제외하고 범죄집단이 저지른 중죄 및 경죄
2. 본법 제706-73조 제15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형법 제450-1조 제2항에 정한 범죄단체조직죄(경죄)

제 1 장 특별법원의 관할

제706-75조 ① 제11호를 제외하고 제706-73조에 정한 중죄 및 경죄 가운데 사안이 매우 복잡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수사·소추·예심수사 및 판결에 관한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은 1개 또는 수개의 고등법원 관할구역으로 확대된다.

② 전항의 관할권은 관련 범죄에도 미친다.

③ 관할법원의 명단과 관할구역, 소속 검사와 예심판사의 조직에 관한 사항, 본조에 정한 범죄의 전담재판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706-75-1조 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소법원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수석부장 및 검사장은 지방법원장 및 검사의 의견을 들어 제11호를 제외한 제706-73조에 정한 범죄 또는 제706-74조에 정한 범죄의 수사·기소·예심수사·경죄재판을 전담할 하나 또는 수인의 검사·예심판사 또는 판사를 지명한다.

②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소법원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항소법원의 수석부장 및 검사장은 각각 제11호를 제외한 제706-73조 또는 제706-74조에 정한 사건을 다루고 경죄재판을 할 판사와 검사를 지명한다.

제706-76조 ① 제706-75조에 정한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에 속한 경죄전담재판부·검사·예심판사는 제706-75조에 정한 전역에 걸쳐 관할권을 행사하고,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갖는다.

② 이미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사건 종결 또는 판결 선고 당시 사건의 성격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사건이 위경죄를 구성하게 된 경우 예심판사는 제522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경죄법원이나 제522-1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근린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을 한다.

제706-77조 ① 제706-75조에 정한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는 제11호를 제외한 제706-73조 또는 제706-74조에 열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청구하여 제706-75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예심부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지가 있은 후 8일 이후 늦어도 1월 이내에 이송 결정을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예심판사가 이송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제706-78조에 정한 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06-7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가 있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부의 결정이나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까지 관할권을 행사한다.

③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는 제706-76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달한다.

④ 본조의 규정은 예심부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706-78조 ① 제706-77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송 취지이거나 이송 거부 취지이면서 그 대상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한 때에는 검사 또는 당사자가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고,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 형사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결정 선고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불복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예심부나 대법원 형사부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수사를 담당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제706-77조 제1항에 정한 1월의 기간 안에 예심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직접 예심부 또는 대법원 형사부에 가져갈 수 있다.

② 예심부 또는 대법원 형사부는 검사 및 예심판사, 당사자에게 결정 취지를 고지한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제706-77조 제4항에 따라 예심부가 내린 이송에 관한 결정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항고는 형사부에 제기한다.

제706-79조 제706-76조에 정한 사법관과 관할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장은 제70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문자문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자문관은 제70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706-73조 또는 제706-74조가 적용되는 중죄 및 경죄사건의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706-79-1조 제706-75조에 정한 범죄사실이 발생한 항소법원 검사장은 다른 관할구역의 검사장들과 협조하여 제704조에 따른 공소수행 방향을 조율한다.

제 2 장 절 차

제 1 절 감 시

제706-80조 ① 사법경찰관 및 그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리는 제706-73조 또는 제706-74조에 정한 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감시하거나 행적을 추적하거나 그 범죄행위의 도구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생산물·자산·물건의 운반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국토에 걸쳐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다. 단, 검사가 이에 대하여 반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 규정한 대로 관할영역을 확장하기에 앞서 감시활동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제706-06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게 된 검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잠 입

제706-81조 ① 제706-73조에 정한 중죄 또는 경죄의 수사, 예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청구를 받은 예심판사가 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본질에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잠입 활동을 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독은 허가를 내 준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담당한다.

② 잠입이란 명령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전체 범죄 수사를 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중죄 또는 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주위에서 공동정범이나 공범, 장물범으로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투입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고, 제706-82조에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③ 잠입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사법경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범죄 행위의 인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만 하고, 잠입수사에 투입된 경찰관과 제706-82조에 따라 경찰관을 돕는 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06-82조 ① 잠입 허가를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국토 전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범죄의 실행에 공하거나 범죄행위의 결과로 얻은 정보·서류·물건·자산·물질 등을 취득·보관·운반·인도·교부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보존·숙박·임치·운송수단이나 법적 혹은 금전적 수단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한 형사처벌의 면제는 잠입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입한 사법경찰관 혹은 사법경찰리를 돕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706-83조 ① 제706-81조에 따른 허가는 서면으로 특별한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허가서에는 잠입수사로 막고자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행위와 잠입수사 전체를 책임지는 사법경찰관의 신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허가서에는 4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기간을 명시하고, 이 기간은 같은 형식과 조건 하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이를 허가한 사법관은 언제든지 허가기간 전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잠입수사가 종료한 때에는 허가서는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706-84조 ① 가명으로 잠입수사를 실행하는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본명은 어떤 단계에서도 공개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신원을 공개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7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누설로 인하여 잠입수사를 하는 자나 그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폭행·상해·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누설로 인하여 잠입수사를 하는 자나 그 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이로 인하여 형법 제2권 제2편 제1장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06-85조 잠입수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나 허가기간이 경과하고 갱신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미 잠입수사를 실행 중인 자는 안전하게 잠입수사를 중지하는데 필요한 시간 동안은 제706-82조에 정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그 기간은 4월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4월이 경과한 후에도 안전하게 잠입수사를 중지할 방도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은 4월 동안 허가 기간을 연장한다.

제706-86조 ① 잠입수사를 감독한 사법경찰관은 전체 잠입수사에 관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706-81조에 따른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잠입수사를 직접 실행한 자의 지목으로 판결법원에 서게 되었거나 예심수사피의자가 된 자는 제706-6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잠입수사를 행한 경찰관과의 대질을 요구할 수 있다. 대질 기회에 경찰관에게 묻는 질문은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경찰관의 신원을 밝히거나 혹은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706-87조 ① 잠입수사에 투입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진술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절 감 치

제706-88조 ① 제706-73조에 정한 범죄행위 중 하나에 대한 수사 또는 예심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3조, 제77조 및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보호유치 기간을 24시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석방구금판사 또는 예심판사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허가한다.

③ 보호유치된 자는 사법관 앞에 소환되며, 사법관은 결정에 앞서 연장 여부에

대해 심리한다. 다만, 두 번째 연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나 시작할 수사 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유치된 자의 소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첫 번째 연장이 결정되면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지명한 의사가 보호유치된 자를 검진한다. 이 경우 의사는 그 자가 보호유치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서를 발부하며, 확인서는 소송기록에 첨부한다. 사법경찰관은 보호유치된 자에게 재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보호유치된 자에게는 검진청구권이 있다. 의사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하며, 보호유치된 자가 서명한다. 보호유치된 자가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호유치 기간인 48시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연장하면 수사 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석방구금판사 또는 예심판사는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1회 48시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유치된 자는 48시간 지난 후에 또는 72시간이 지난 후에 제6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다. 보호유치 연장 사실을 대상자에게 고지할 때 이와 같은 권리를 고지하며, 권리를 고지했다는 사실은 조서에 기재하고 보호유치된 자에게 서명하게 하고,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단, 보호유치의 근거가 된 범죄가 제706-73조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범죄인 때에는 72시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다.

⑦ 프랑스나 외국에서 테러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고 국제사법공조의 측면에서 긴박한 필요가 있으며, 중요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석방구금판사는 제2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24시간 동안 보호유치를 연장할 수 있고, 이를 다시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단, 제706-73조 제11호가 적용되는 범죄사실에 한한다.

⑧ 전항에 따라 96시간 또는 120시간 동안 보호유치된 자는 제6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에 정한 연장 고지 시에 보호유치된 자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⑨ 보호유치 초기에 의사의 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의 연장기회에도 의무적으로 검사, 예심판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명한 의사의 감정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는 보호유치된 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계속된 보호유치를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⑩ 보호유치된 자가 요구했음에도 그의 동거인, 직계존속 중 1인, 형제자매 중 1인 혹은 고용주에게 전화로 제63-1조 및 제6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유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호유치된 자는 48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재차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절 수 색

제706-89조 제706-73조에 정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현행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속한 석방구금판사는 제906-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59조에 정한 시간 외에도 가택방문·수색, 증거물의 압수를 허가할 수 있다.

제706-90조 제706-73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속한 석방구금판사는 제906-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59조에 정한 시간 외에도 가택방문·수색, 증거물의 압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거주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제706-91조 ① 제706-73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예심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 속한 석방구금판사는 제906-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59조에 정한 시간 외에도 가택방문·수색, 증거물의 압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거주지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는 없다.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면 예심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거주지에서 전항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중죄 또는 경죄의 현행범인 경우
2. 주요증거 또는 단서가 사라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수색을 해야 할 지역에 1인 또는 수인이 제706-73조에 규정한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06-92조 ① 제706-89조 내지 제706-91조에 정한 허가는 결정된 수색행위에 적용되며, 서면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증거 수집이 필요한 혐의 사실의 요지, 수색·가택방문·압수 등 조치를 취할 장소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색을 무효로 한다. 수색을 허가하는 결정문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이 결정문에는 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법적·사실적 이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수색 등 조치를 허가한 사법관이 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임검하여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② 전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 및 사실적인 검토를 경료하여 이를 결정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706-89조 및 제706-9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색 등 조치가 시행되는 곳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소속된 법원의 석방구금판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국내 모든 지역에 임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검사는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검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석방구금판사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6-93조 ① 석방구금판사 또는 예심판사는 특정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의 수사 및 인지를 위해 제706-89조 내지 제706-90조에 정한 조치가 시행될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가 특정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제706-94조 ① 제706-93조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범 수사 또는 예심수사 과정에서 보호유치된 자나 구금된 자의 주소지에 대한 수색의 필요가 있고, 수색에 입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호유치된 자나 구금된 자를 인치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의 지체로 증거 훼손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명된 2명의 증인 입회하에 수색을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76조 및 제706-9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심수사에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석방구금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절 전기통신의 감청

제706-95조 ① 제706-93조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범 수사 또는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석방구금판사는 제100조 제2항, 제100-1조, 제100-3조 내지 제100-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전기통신에 의해 전달되는 편지를 감청하거나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최대 1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건 혹은 기간을 정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석방구금판사는 이를 감독하고 통제한다.

② 제100-3조 내지 제100-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예심판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검사 또는 그가 지정한 사법경찰관이 행사한다.

③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석방구금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특정 장소 또는 자동차에 대한 영상녹화

제706-96조 ① 제706-93조가 적용되는 중죄 또는 경죄에 속하는 범죄행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예심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공사의 장소나 자동차에서 1인 또는 수인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를 채록하고, 저장하고, 전송·녹음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하여금 녹음장치를 설치하게 하거나, 사적인 장소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모습을 녹화하는 녹화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예심판사의 감독과 통제 하에 실시된다.

② 전항에 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59조에 명시한 시간 외에도 자동차나 사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장소의 소유자나 거주자, 소유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비밀리에 이들 장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단, 사인의 주거에 제59조에 정한 시간 외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심판사의 청구에 따라 석방구금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조치는 오로지 전항에 정한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석방구금판사의 감독과 통제 하에 시행된다. 이미 설치한 기계장치를 해체하는 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제1항에 정한 기계장치를 제56-1조, 제56-2조 및 제56-3조에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제100-7조에 정한 자의 주소나 사무소, 자동차에서는 본조의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④ 본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 본래 수사의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서 본조의 조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제706-97조 제706-96조에 정한 허가서에는 공사의 장소, 자동차를 특정하는 요소, 대상이 된 범죄와 감청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06-98조 전조의 허가 기간은 최대 4월로 하며, 같은 조건 및 형식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제706-99조 ① 예심판사나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706-96조에 정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위임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직, 단체 또는 개인의 명부는 명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 정한 자나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는 제706-96조의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형법 제226-3조에 정한 장치를 소지할 수 있다.

제706-100조 ① 예심판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와 영상녹화물의 채록·저장·녹화행위를 조서에 기재하고, 이 조서에는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상녹화물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706-101조 ① 예심판사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 내용 또는 이미지를 녹음·녹화하고, 그를 그대로 녹취하여 조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된 대화는 특별히 위임한 통역인의 도움으로 녹취할 수 있다.

제706-102조 ①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검사 또는 검사장의 책임 하에 영상녹화물을 폐기한다.

② 이에 대하여는 폐기 조서를 작성한다.

제 7 절 보존조치

제706-103조 ① 제706-73조 및 제706-74조에 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범죄피해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국고청의 비용으로 예심수사피의자가 공유 또는 단독 소유한 동산·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 형 선고 시에는 자동으로 압류효력이 발생하며,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불기소, 형 면제, 석방의 경우에는 국고청의 비용으로 전항의 압류조치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소 또는 공소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하여 석방구금판사는 국토 전역을 관할한다.

⑤ 본조에 의하여 본권 제24편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8 절 공통규정

제706-104조 [2004년 3월 2일 헌법위원회 결정 제2004-492호에 따라 위헌 결정됨]

제706-105조 ① 수사과정에서 제706-80조 내지 제706-95조가 적용되어 6월 이상 보호유치되어 있었으나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자는 보호유치지의 검사에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또는 다음 수사계획이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다. 본항의 문의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검사가 예비수사를 속개하여 새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문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전항의 문의가 있는 후로부터 2월 이내에 피보호유치자에게,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나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지명한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청구가 있는 후에 15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진술 청취나 신문이 개시될 경우에는 그 진술청취와 신문 이전에 수사기록이 전달되어야 한다.

-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문의가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취지를 피보호유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전3항에 정한 경우 외에는 검사가 피보호유치자의 문의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 제706-80조 내지 제706-95조가 적용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⑤ 제1항의 문의가 보호유치가 이루어진 법원 소속 검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때에는 문의를 받은 검사는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문의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706-106조 ① 수사과정에서 제706-80조 내지 제706-95조가 적용되어 제39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앞에 인치된 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즉석에서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제39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와 접견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변호인과 함께 검사 앞에 출석하고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394조 내지 제396조에 정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예심수사의 개시를 청구한다.

- ② 검사가 즉시출두절차에 따라 사건을 경죄법원에 이송한 때에는 제397-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실제로 선고될 형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2월 이후 4월 이내에 사건을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5 편 선박 폐기로 인한 해양오염에 적용되는 절차

제706-107조 ① 환경법 제2권 제2편 제8장 제1절 2에 따라 정의되고 처벌되는 선박의 항로나 해수에 관한 오염행위와 관련된 경죄의 수사·기소·예심수사·판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죄가 영해·내수면 기타 해로에서 발생한 경우에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항소법원의 관할구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범죄가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범하여진 때에도 적용된다. 단, 환경법 제218-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특별히 복잡해 보이는 경우에 제1항에 정한 지방법원 소속 검사는 제706-110조 및 제706-1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심판사에게 사건을 파리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파리지방법원은 수사단계에서 복잡하거나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
- ⑤ 본조의 관할은 관련사건에도 미친다.
- ⑥ 본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전담할 검사·예심법원·판결법원의 구성을 포함하여 해양법원의 명단과 관할에 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706-108조 ①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은 영해 외에서 벌어진 제706-107조의 범죄행위의 수사·기소·예심수사·판결에 대한 관할은 파리지방법원에 속한다.

② 파리지방법원은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 제218-19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수사·기소·예심수사와 판결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제706-109조 ① 제706-107조에 정한 검사, 예심판사 및 지방법원의 경죄전담 재판부는 본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게 된 지역 전부에서 제43조, 제52조, 제382조 및 제706-42조에 따른 관할권자와 경합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전항에 정한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자와 경합하여 같은 조건 하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

1. 선박·기계 또는 갑판의 등록지나 세관적
2. 선박·기계 또는 갑판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③ 판결 또는 결정 선고 시 대상범죄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본조에 정한

전담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한다. 단, 범죄사실이 위경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제522-1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근린법원이나 제522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경찰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 제706-110조** ① 제706-107조에 정한 지방법원 이외의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는 제706-107조가 적용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에게 청구하여 제706-107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예심부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심판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지가 있는 후 8일 이후 늦어도 1월 이내에 이송 결정을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예심판사가 이송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제706-111조에 정한 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706-11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항고가 있는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부의 결정이나 대법원 형사부의 결정으로 확정되기 까지 관할권을 행사한다.
- ③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는 제706-10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에 속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을 송달한다.
- ④ 본조의 규정은 예심부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706-111조 ① 제706-110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이송 취지이거나 이송 거부 취지이면서 그 대상 법원이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한 때에는 검사 또는 당사자가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고, 같은 고등법원 관할 내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 형사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결정 선고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불복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예심부나 대법원 형사부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수사를 담당할 예심판사를 지명한다. 제706-110조 제1항에 정한 1월의 기간 안에 예심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직접 예심부 또는 대법원에 형사부에 가져갈 수 있다.

- ② 예심부 또는 대법원 형사부는 검사 및 예심판사, 당사자에게 결정 취지를 고지한다.
- ③ 본조의 규정은 제706-110조 제4항에 따라 예심부가 내린 이송에 관한 결정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항고는 형사부에 대하여 제기한다.

제 26 편 보호대상인 성인이 저지른 범죄의 기소, 예심수사 및 판결에 대하여

제706-112조 본편의 규정은 민법 제1권 제11편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대상인 모든 성인에 대한 절차에 적용된다.

제706-113조 ①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기소를 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재산관리인·후견인 또는 후견판사에 이를 고지한다. 피해보상이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기소·형사조정·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에 회부된 경우나 출석증인이 된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은 대상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대상자가 구속된 경우에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은 대상자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

④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대상자에게 유죄판결, 책임조각을 이유로 하는 무죄판결, 불기소, 형 면제, 무죄석방 등이 선고된 경우에 이를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에게 통지한다.

⑤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은 공판기일을 고지 받을 권리가 있고, 이들이 출석한 경우에 법원은 증인 자격으로 진술을 청취한다.

제706-114조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이고 그들을 대리할 자가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후견법원에 특별재산관리인 또는 특별후견인을 지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도 이와 같다. 청구가 없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형사절차에서 대상자를 도울 특별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706-115조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에 앞서 범죄행위 시에 소추 대상자가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706-116조 ① 소추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② 대상자나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변호사회 회장에게 지명 요청을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사법구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한다.

제706-117조 ①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소추 대상자의 후견판사에게 대상자가 사법보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후견판사는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지명하고, 특별대리인은 소송절차에서 제706-113조에 따라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한다.

② 전항의 특권은 특별보호대리인(mandataire de protection future)에게도 인정된다.

제706-118조 필요한 경우 본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 27 편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과 절차에 관하여

제 1 장 예심판사 및 예심부에 적용되는 규정

제706-119조 ① 수사 종결 시 예심판사의 판단으로 피의자가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형법 제122-1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175조에 따라 서류를 검사에게 송달하면서 그 취지를 고지하고, 당사자에게도 동조에 따라 이를 고지한다.

② 검사와 당사자는 각각 청구서와 의견서를 통해 본법 제706-122조 내지 제706-127조에 따라 형법 제122-1조 제1항 적용 여부에 대하여 심판해 줄 것을 예심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06-120조 ① 예심수사 종결 시에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고 형법 제122-1조 제1항이 적용될 사안이라는 판단이 선 경우에 예심판사는 예심부에 사건을 회부하도록 검사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장에게 송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검사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② 전항에 정한 경우 외에는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정을 선고한다.

제706-121조 ①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정으로 구속 또는 사법통제는 종료한다.

② 제706-120조에 정한 기록의 송달로는 사법통제 또는 구속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구속 또는 사법통제는 예심부의 심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단, 예심판사가 별도의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이나 사법통제의 해제를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예심부는 기록이 도착한 날로부터 경죄에 관하여는 4월, 중죄에 관하여는 6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구속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는 석방된다.

제706-122조 ① 제706-120조에 따라 예심부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 예심부장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사소청구인·예심수사피의자의 청구에 따라 피의자가 상태가 이를 허락하는 한 피의자의 소환을 명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심부장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회 회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지명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변호인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를 대리한다.

② 제306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③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예심부장은 제442조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한다.

④ 제168조에 따라 예심부는 피의자를 감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⑤ 예심부는 예심부장의 결정에 따라,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고 형법 제122-1조 제1항이 적용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 중에 제436조 내지 제45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또는 검사가 청구한 증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검사와 예심수사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사소청구인의 변호인은 제44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의자·사소청구인·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출석한 예심수사 피의자와 사소청구인도 예심부장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⑧ 예심수사 심리가 종결되면, 사소청구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검사가 논고한다.

⑨ 출석한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한다.

⑩ 사소청구인과 검사는 이에 대하여 재항변을 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06-123조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예심부장은 수사 종결을 선언한다.

제706-124조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지만 형법 제122-1조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예심부는 사건을 관할 판결법원에 이송할 것을 명한다.

제706-125조 그 외의 경우에 예심부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그와 더불어

1. 예심수사 피의자가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한다는 선고
2. 예심수사 피의자가 행위 시에 분별력 또는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정신 의학적인 혹은 심리적인 결함이 있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선고
3. 사소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489-2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할권 있는 경죄법원에 이송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선고
4. 필요한 경우 본편 제3장에 정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안조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706-126조 ①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정으로 구속이나 사법통제는 종료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706-127조 제211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은 제706-123조 내지 제706-125조에 정한 결정에 준용된다.

제706-128조 제706-122조 내지 제706-127조의 규정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정에 대한 항고나 형법 제122-1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리한 예심부에 적용된다.

제 2 장 중죄법원 또는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제 1 절 중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제706-129조 제349-1조 및 제361-1조를 적용하여 중죄법원의 평의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평결을 하고, 형법 제122-1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평결을 선언한다.

제706-130조 ① 제366조에 따라 중죄법원이 법정에 입장한 때 중죄법원장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② 이 선고로 인하여 사법통제 또는 구속은 종료된다.

제706-131조 ① 제37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중죄법원은 배심원 없이 민법 제489-2조에 따라 사소청구인이 청구한 배상액에 대하여 심판한다.

② 필요한 경우 법원은 본편 제3장에 따라 하나 또는 수개의 보안조치를 선고한다.

제706-132조 ①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할 수 있고, 중죄항소법원은 제380-14조 및 제380-15조에 따라 구성된다.

② 피고인 및 사소청구인은 민사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이는 제380-5조에 따라 경죄항소법원에 회부된다.

제 2 절 경죄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제706-133조 ① 형법 제122-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경죄법원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와 더불어

1. 피고인이 수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선고
2. 피고인이 행위 시에 분별력 또는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정신의학적인 혹은 심리적인 결함이 있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선고
3. 사소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489-2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할권 있는 경죄법원에 이송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선고
4. 필요한 경우 본편 제3장에 정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안조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심신상실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결로 인하여 사법통제 또는 구속은 종료된다.

제706-134조 ① 제706-133조의 규정은 경죄항소부에 적용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4호를 제외하고 경찰법원 또는 근린법원에 적용된다.

제 3 장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릴 수 있는 보안조치

제706-135조 공중보건법 제3213-1조 및 제3213-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심부 또는 판결법원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결정 혹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공중보건법 제3222-1조에 정한 시설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심리상태로 보아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송기록에 명시한 정신의학전문가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파리의 경우 경찰청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에 따른 수용은 공중보건법 제3213-1조에 따라 명령된 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제2항에 준하여 시행된다. 공중보건법 제3213-8조도 또한 준용된다.

제706-136조 ①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예심부 또는 판결법원은 경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정기로, 중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경죄의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않는 정기로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또는 미성년자 등 특별히 지정한 자와의 교류 금지
2.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 출현 금지
3. 무기 소지 또는 보유의 금지
4. 미리 정신의학검사를 경료하여 활동을 지속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은 바 없이 행위 수행 중에 미성년자와 접촉하거나 특정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위험이 있었던 영업활동 또는 비영리활동의 금지
5. 운전면허의 정지
6. 운전면허의 취소 및 재발급 신청 금지

② 정신의학감정을 경료한 다음에만 명할 수 있는 전항의 보안조치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③ 공중보건법 제3213-1조 및 제3213-7조에 따라 시설에 수용된 경우 제1항의 보안조치는 수용기간 중에도 적용되고, 수용이 끝난 후에도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다.

제706-137조 제706-136조에 따라 보안조치가 부과된 대상자는 수용시설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석방구금판사에게 조건의 변경 또는 보안조치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받은 석방구금판사는 청구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거나 최소한 변호인에 대한 정식소환장을 발송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회와 함께 결정한다. 석방구금판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안조치를 철회함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신감정을 경료하여야 한다. 본조에 정한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최소한 6월 안에는 어떤 종류의 청구도 할 수 없다.

제706-138조 ① 제706-136조 제1항의 조치가 발령된 때에는 사소청구인은 장래 공중보건법 제3213-1조 및 제3213-7조에 따라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를 철회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이를 즉시 고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소청구인은 언제든지 검사에게 자신은 수용의 철회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제706-139조 제706-136조에 정한 보안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이로 인하여 형법 제122-1조 제1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06-135조 본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28 편 압류 특칙

제706-141조 형법 제131-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부가형으로서의 몰수 집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칙으로서 본편 규정은, 본법에 따라 행하는 대상자의 유형·무형의 자산, 동산·부동산, 채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와 소유권의 박탈에 이르지 않는 몰수에 적용된다.

제 1 장 공통규정

제706-142조 검사, 예심판사 또는 이들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본편에 정한 압류와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6-143조 ① 압수의 해제 또는 압수된 자산의 몰수 시까지 압수 재산의 소유자,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자산의 관리와 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고청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관리와 보존비용은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부담한다.

② 소유자 또는 보관자를 알 수 없거나 이들이 전항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검사 또는 예심판사는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위탁하여 자산의 평가·관리·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법적·사실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단, 정당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자산가치의 하락, 변형, 또는 중요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를 명하거나 허가한 검사의 신청에 기하여 석방구금판사의 허가가 있거나, 압류를 명하거나 허가한 예심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압수 후에 예심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예심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706-144조 ① 자산의 압수를 명하거나 허가한 사법관과 압수 후에 예심수사를 개시한 예심판사는, 압수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단, 제41-5조 및 제99-2조에 따른 예심수사 및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산의 양도와 폐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② 검사의 청구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청구인과 검사는 결정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심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로 인하여 집행이 정지된다.

제706-145조 ① 제41-5조 및 제99-2조와 본장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된 자산을 소송절차 중에 처분할 수 없다.

② 압수에 대항력이 생긴 때로부터 해제되거나 몰수에 이르기까지는 형사 상 압수의 목적이 된 자산에 대한 모든 민사집행은 정지 또는 금지된다.

③ 본편의 적용에 있어서 압수 이전에 집행절차를 개시한 채권자는 자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 간주하고, 전술한 집행절차에 따라 대항력을 확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제706-146조 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채무 명의 등 권한을 증명한 채권자는 제706-1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을 개시하거나 속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자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없고, 대항력을 가진 시점 이전에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자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하며, 불기소, 면소, 무죄 석방되거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환부한다.

② 형사 압수로 정지된 민사절차는 속개되며, 적법하게 계속된 절차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

제706-147조 상법 제63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불정지 후에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본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 장 상속재산의 압수

제706-148조 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중죄 또는 경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형 선고자의 자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것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자산을 몰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석방구금판사는 형법 제131-21조 제5항 및 제6항이 적용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비용은 국고청이 선납한다. 예심판사도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직권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 본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검사와 압수 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이 자산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제3자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자에게도 고지된다. 제3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 서기에 대한 신고로 예심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효가 없으며, 예심부는 소유자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 경우 제3자는 절차에 대한 재량권과 처분권이 없다.

제706-149조 본편에 정한 특정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압수 결정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압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도 적용된다.

제 3 장 부동산의 압류

제706-150조 ① 현행범 수사 또는 예비수사 과정에서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형법 제131-21조에 따라 몰수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고청이 선납한다. 예심판사도 예심수사 과정에서 같은 조건 하에 본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검사와 압류 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이 자산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제3자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자에게도 고지된다. 제3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 서기에 대한 신고로

예심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효가 없으며, 예심부는 소유자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 경우 제3자는 절차에 대한 재량권과 처분권이 없다.

제706-151조 ① 부동산에 대한 형사압류는 바랭(Bas-Rhin)이나 오프랭(Haut-Rhin), 모젤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대장에 등기된 때부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등기소에 저장권을 설정하는 결정문의 공고 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 본항의 공고는 검사 또는 예심판사의 이름으로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이 한다.

② 부동산에 대한 형사압류의 해제 또는 몰수까지 부동산의 전체 가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단, 공고 이전에 등기된 우선권과 저장권 또는 민법 제2378조에 정한 우선권 등 선순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에 대한 압류 명령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형사상 압류의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706-152조 ① 부동산에 대한 형사상 압류 명령의 고지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나 특정 지역의 토지 등기부예의 등재 또는 저장권 설정 결정문의 공고 이후에 공고된 경우에는 압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단, 이후에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압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매매를 통해 정상적인 가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사법관은 대항력을 가진 시점 이전에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매매대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의 고지 및 매매대금에 대한 공탁 고지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제 4 장 동산 또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압류

제706-153조 ① 현행범 수사 또는 예비수사 과정에서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형법 제131-21조에 근거하여 몰수 대상인 자산 또는 무형의 권리에 대한 압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하며, 집행비용은 국고청이 선납한다. 예심판사도 같은 조건 하에서 예심수사 중에 본항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검사와 압류 대상 자산 또는 권리의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이 자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제3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고지된다. 제3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 법원 서기에 대한 신고로 예심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효가 없으며, 예심부는 소유자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 경우 제3자는 절차에 대한 재량권과 처분권이 없다.

제706-154조 압류가 법적으로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의 구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한 것이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 시 그 구좌에 남아 있는 모든 금액에 미치며, 그 중 일부에 대한 압류는 결정문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06-155조 ① 압류가 일정 금액의 채권에 대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공탁기금이나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에 공탁한다. 단,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에 이르러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압류가 생명보험계약 상 채권에 대한 것인 경우에, 계약의 상환·철회 및 담보 설정 권한은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정지된다. 압류 후 판결이 있기까지는 보험수익을 수령할 수 없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없다. 압류사실은 서명인과 보험자, 연서한 기관들에게 통지한다.

제706-156조 ① 압류가 주식·유가증권·지급수단 또는 자산 기타 무형의 권리에 대한 것일 때에는 발행인에게도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228-1조에 정한 등록중개인과 화폐금융법 제542-1조에 정한 금융중개인에게도 이를 고지한다.

제706-157조 영업재산에 대한 압류는 영업재산 소재지 상사법원 서기가 관리하는 해당권부에 국고청의 비용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제706-158조 ① 현행범 수사 또는 예비수사 과정에서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근거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형법 제131-21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 한도에서 몰수 대상인 자산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고청이 선납한다. 예심판사도 예심수사 과정에서 같은 조건 하에 본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은 검사와 압류 대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고, 이 자산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제3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고지된다. 제3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 서기에 대한 신고로 예심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항고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효가 없으며, 예심부는 소유자와 제3자의 진술을 듣는다. 이 경우 제3자는 절차에 대한 재량권과 처분권이 없다.

③ 제1항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 압류를 명한 사법관은 압류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와 보존의 책임을 지는 자를 지명할 수 있고, 그 관리 비용은 필요한 경우 본법 제706-1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명령에서 특히 이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관리 및 보존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9 편 보존조치

- 제706-166조** ① 형법 제3권 제1편에 정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706-103조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과 범죄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예심수사피의자가 공유 또는 단독 소유한 동산·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형 선고 시에는 자동으로 보존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불기소, 형 면제, 석방의 경우에는 국고청의 비용으로 전항의 보존조치를 해제하며, 사소 또는 공소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하여 석방구금판사는 국토 전역을 관할한다.
- ⑤ 본조로 인하여 본권 제29편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5 권 집행절차

제 1 편 형사판결의 집행

제 1 장 총 론

제707조 ① 사법기관의 결정에 기하여 또는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아, 형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어야 한다.

② 형벌의 집행은 사회의 이익과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도에서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사회편입과 복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③ 이를 위하여 집행 전에 또는 집행 중에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관계·인성·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된 형을 조정한다.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의 개별화를 통해서 형 선고를 받은 자를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어떤 사법감시 조치 없이 형 선고를 받은 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④ 체포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었던 경우에 자유형은 본법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본조의 적용으로 형 선고가 집행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감경해 주어야 한다. 단, 제712-14조에 따라 검사의 항소에 부여된 집행 정지효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07-1조 ① 검사와 당사자는 각각 형벌의 집행을 도모한다.

② 단, 벌금의 회수와 수익의 몰수는 검사의 이름으로 공공회계가 집행한다. 그 외 몰수형의 집행은 검사의 이름으로 몰수 및 압류 재산의 관리와 회수 담당기관이 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고청의 비용으로 대장에 등기한다.

③ 벌금액 전부를 징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벌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형 선고를 받은 자를 구금한다.

④ 벌금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압류가 고지되거나 형 선고자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 발부된 경우에는 집행시효는 정지된다.

⑤ 검사는 또한 재산형의 상호 인정의 원칙을 선언한 2005년 2월 24일 유럽의회 결정 2005/214/JAI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사법기관이 선고한 재산형을 집행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국참사원령은 또한 본법 제707-2조 및 제749조 내지 제762조를 상기 재산형에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프랑스 사법기관이 선고한 재산형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07-2조 ① 경죄 또는 위경죄에 관하여 형 선고를 받은 자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일반세법 제1018A조에 따라 부과된 정액 인지세와 필요한 경우 선고된 벌금액 전부를 납부한다.

②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정액 인지세와 선고된 벌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한 경우에는 총액 대비 20%를 삭감한다. 단, 삭감액이 1,500유로를 넘을 수 없다.

③ 형사처분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부한다.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07-3조 ① 법원이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선고 이후로 1월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1,50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벌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② 재판장은 또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그것이 법률 상 상소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한다.

③ 형 집행국 서기나 법원 서기가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본조에 정한 고지를 할 수 있다.

제707-4조 제707-2조 및 제707-3조의 규정은 국고청이 정한 조건과 기한에 따라 벌금을 분납하기로 한 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08조 ① 판결이 확정된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선고된 형을 집행한다.

② 다만, 제505조 및 제548조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항소기간으로 인하여 어떤 종류의 형이든 그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자유형이 아닌 경죄 또는 위경죄의 집행은 의학·가족·직업 또는 사회적인 중대한 이유로 이를 정지하거나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정지하여야 할 집행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거나, 검사의 제안으로 경죄법원 또는 경찰법원·근린법원 평의부가 결정한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형의 정지 또는 분할은 그 정지형이 직업적 운전까지 전부 정지된다고 법률 또는 법규가 규정한 경죄 또는 위경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판결법원이 형법 제132-28조를 적용하여 벌금형, 일수벌금형 또는 운전면허 정지형의 분할집행을 결정한 때에는 이 결정은 전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09조 검사 및 고등검사장은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도움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709-2조 검사는 매년 형벌의 집행 현황과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특히 각 관할구역 내의 벌금 회수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의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늦어도 매년 3월 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 재정부는 보고서를 검사에게 전달하고, 검사는 법무부장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6월 말 이전에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제710조 ①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제기한다. 법원은 그 결정에 포함된 명백하고 객관적인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형법 제132-4조에 따라 제출된 형의 병합 청구에 대하여도 재판한다.

② 중죄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예심부가 중죄법원의 판결의 정정 및 집행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한다.

③ 본조에 정한 청구는 전2항의 구분에 따라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어 있는 관할지역의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 예심부가 관할한다. 구금된 자로부터 형의 병합을 청구 받은 검사는 이를 구금지의 관할법원에 송달한다.

④ 형의 병합을 제외하고 본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죄법원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1인의 사법관으로 구성된다. 경죄 항소부나 예심부도 마찬가지로 1인의 판사로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사건을 관할 내의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을 이송한 사법관 자신이 합의부 구성원이 되며, 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711조 ① 경죄법원 또는 중죄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의 청구에 기하여 검사 및 당사자의 변호인,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의견을 들은 후 비공개 평의실에서 재판한다. 단, 제712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구금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특별히 명시하여 청구한 때에만 청구인을 법원 앞에 소환한다.

②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계쟁중인 판결의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③ 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 제712조** ①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소 법원은 구금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법원의 장에게 공조촉탁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위임하여 구금된 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한다.
- ③ 법원은 또한 제706-71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2 장 형법적용법원

제 1 절 설치 및 구성

- 제712-1조** ① 형법적용판사와 형법적용법원은 제1급 형법적용법원을 구성하며 이 법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유형의 주요 집행방법이나 그 외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집행방법을 정하고,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② 형법적용판사 및 형법적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본장에 정한 구분에 따라 부장과 2인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형법적용부나 형법적용부 부장이 관할한다. 귀안(Guyane)의 형법적용법원 및 형법적용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포트 드 프랑스 항소법원 특별부나 특별부장이 관할한다.

- 제712-2조** ① 각 지방법원에서 하나 또는 수인의 판사가 형법적용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 ② 사법관회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들 판사를 지명하며, 보직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③ 형법적용판사가 일시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그를 대신할 판사를 지명한다.
- ④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형법적용판사에게 1인의 서기와 1인의 서기보를 배정한다.

제712-3조 ① 같은 항소법원 관할 아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형벌집행법원이 속하고, 이 형벌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지방법원의 관할과 부합하도록 명령으로 정한다. 형벌집행법원은 법원에 소속된 형벌적용판사 가운데 수석부장이 지명한 2명의 배석자와 1명의 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해외지역에서는 최소한 형벌적용법원의 구성원 중 한 명은 형벌적용판사로 하고, 포르 드 프랑스의 항소법원 관할구역에서 형벌적용법원은 카이엔(Cayenne) 지방법원에 설치하며, 최소한 1인의 형벌적용판사를 배치한다.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마이요트나 썬 피에르 에 미켈롱 공동체에서 형벌적용법원은 형벌적용판사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형벌적용법원의 변론은 항소법원 관할구역 내의 여러 개 지방법원이나 교도소에서 속개할 수 있다.

④ 검사의 역할은 변론이 열리는 지방법원의 검사나 변론이 열리는 교도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담당한다.

제 2 절 제1급 형벌적용법원의 관할과 절차

제712-4조 ① 형벌적용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형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에 기하여 아래 조문에 정한 구분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의 판사가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연기하거나 기각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② 선고된 형기나 잔여형기를 고려해서 전향의 결정은 제723-14조 내지 제723-47조에 정한 간이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712-5조 ①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의 감면, 외출허가, 경호조건부 외출허가에 대한 결정을 함에는 형벌적용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사건 계류 후 한 달 이내에 위원회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향의 의견청취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 ③ 형벌적용위원회는 형벌적용판사가 의장이 되고, 검사와 교도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12-6조 ① 외부시설 수용, 반석방, 형벌의 분할 또는 정지, 전자감시, 조건부 석방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 평의에서 형벌적용판사가 검사, 형 선고를 받은 자, 필요한 경우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상태인 경우 심리는 교도소 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제706-71조의 규정도 또한 준용된다.

- ② 검사와 형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대심에 의한 심리 없이 전항의 조치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

- ③ 형벌적용판사는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검사 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에 기하여 사건을 형벌적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송 결정을 한 판사는 제712-7조에 정한 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심리에 참여하며, 이송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법률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본조의 규정은 보호관찰·체류금지·공공근로·제한조치나 공공근로의무를 부가한 집행유예, 제한조치를 부가한 선고유예 등 형벌에 관한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제712-7조 ① 형벌적용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보호기간의 연장, 조건부 석방, 형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로 사건을 수리한 형벌집행법원이 승인하거나, 연기하거나, 기각하거나, 취소하거나, 철회한다. 제712-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형벌적용판사가 사건을 형벌적용법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② 형벌적용법원은 비공개 평의에서 형 선고를 받은 자, 필요한 경우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상태인 경우 심리는 교도소 내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제706-71조의 규정도 또한 준용된다.

제712-8조 ① 제712-6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조치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제712-7조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선고한 조치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변경을 기각하는 결정은, 검사가 제712-6조에 정한 대심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벌적용판사가 이유를 붙여 선고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반석방조치·외부시설 수용·전자감시·외출 허가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벌적용판사가 결정문에 교도소장, 교정기관장, 보호관찰소장, 미성년 형 선고자의 경우에는 지역 청소년보호센터장에게 일부 변경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 선고를 받은 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형 집행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교도소 등에서의 출입시간, 특정 장소에서의 출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형벌적용판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형벌적용판사는 결정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712-9조 ① 구금되지 않은 형 선고자가 그를 감독하는 형벌적용판사에게 신고한 주소로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12-6조 또는 제712-7조에 정한 대심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형벌적용판사 또는 형벌적용법원은 결석 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항에 정한 예외가 아니면 항고기간은 전술한 주소로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전항의 송달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결정 취지가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유리한 조치의 취소 또는 철회인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만료되기까지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간은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결정에 대하여

알게 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항고를 하는 경우에 형 선고를 받은 자는 형벌 적용부에 대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경우 제706-71조가 적용된다.

제712-10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 수감된 교도소를 관할하는 법원 형벌적용판사에게 토지관할이 있고, 구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법원의 형벌적용판사에게 토지관할이 있으며, 형 선고를 받은 자가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심으로 사건을 재판한 법원의 형벌 적용판사에게 토지관할이 있다.

② 외부시설 수용 또는 반석방 등의 조치가 이를 결정한 형벌적용판사의 관할구역 바깥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경우, 집행지 인근 교도소에 형 선고를 받은 자를 이감하여 등록한다. 이 경우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법원의 형벌 적용판사는 집행조건을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철회를 선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③ 전자감시나 조건부 석방이 승인된 경우, 이를 승인한 결정문에 명시된 주소지나 형 선고자를 인계할 시설이 위치한 법원의 형벌적용판사에게 토지 관할이 있다.

④ 본조에 규정한 토지관할은 형벌적용판사에게 사건이 회부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토지관할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관할을 달리 하는 곳의 새로운 주소지나 새로운 구금지의 형벌적용판사에게 이전한다.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주소지, 구금지 또는 본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형을 집행할 곳의 항소법원 형법적용법원에게도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관할이 있다.

제 3 절 항소 절차

제712-11조 형벌적용법원 또는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 선고를

받은 자, 검사 또는 검사장이 항고할 수 있고,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다음 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712-5조 및 제712-8조에 정한 명령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
2. 제712-6조 및 제712-7조에 정한 결정에 대하여는 10일 이내

제712-12조 제712-5조 및 제712-8조에 정한 항고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에 회부되며, 형벌적용부는 검사, 형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712-13조 ① 제712-6조 및 제712-7조에 정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에 계속되며, 형벌적용부는 검사 및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진술을 듣는 대심절차를 거쳐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형벌적용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진술은 듣지 않는다.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의 변호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최소한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후에 제706-71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 그가 구금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진술을 청취하거나, 법원의 구성원 중 한 명이 교도소로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한다.

② 제712-7조에 정한 결정에 대한 항고심 심리를 위하여, 항소법원 형벌적용부는 재판장과 2인의 배석자 외에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재할담당자와 범죄피해구조담당자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본항을 적용함에 있어 항소법원의 관할은 여러 개의 항소법원 관할을 아우를 수 있고, 이들 항소법원의 명단과 관할에 대하여는 명령으로 정한다.

③ 형벌적용부가 제712-6조 또는 제712-7조에 정한 조치의 승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형벌적용부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은 같은 조치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기간은 남은 구금형기의 3분의 1일을 넘을 수 없고,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712-14조 형벌적용판사 및 형벌적용법원의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단, 검사의 항고가 결정의 고지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 또는 그 재판장이 심리를 개시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심리는 검사의 항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끝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고는 무효로 한다.

제712-15조 제712-12조 및 제712-13조에 정한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효가 없다.

제 4 절 공통규정

제712-16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형벌적용법원은 전 국토에 걸쳐 조사·진술청취·수사·감정·청구, 형법 제132-22조에 정한 조치 등 형벌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거나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직접 하거나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712-16-1조 ①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를 그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벌적용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범죄피해자 또는 사소청구인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② 형벌의 개별화를 위해서 제712-16조에 정한 조치를 시행함에는 범죄피해자나 사소청구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숙고하여야 하고, 특히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들과 대면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모든 결정에 앞서 피해자 또는 사소청구인에게 15일 이내에 그들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수 있고, 이 고지는 직접 또는 그들의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712-16-2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 또는 사소청구인과 대면할 위험이 있고, 범죄행위의 성격이나 행위자의 인성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그와 같은 대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구금상태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결정과 함께 이들 피해자 또는 사소 청구인과 접촉하지 말 것, 그들의 주소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제706-47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항의 금지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이유를 붙여 그와 같은 금지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금지조치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해자가 동시에 사소청구인인 경우에는 그의 변호인에게도 고지한다. 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하여도 또한 고지한다.

④ 피해자나 사소청구인의 성격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피해자 또는 사소청구인이 형 집행조건 등에 알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대 외출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 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⑤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사소청구인은 주소나 직장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형벌적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2-16-3조 ① 경찰이나 헌병부대에 속한 자는 직권이나 형벌적용판사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법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위임을 받아, 형벌적용 판사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이유가 있는 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를 포함한 일정한 종류의 자들과의 접촉 금지 및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의 출입금지에 위반한 자를 체포한다. 신원을 확인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변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문에 따라 체포된 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경찰서나 헌병 부대에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형벌적용판사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법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금된 자에게는 사법경찰관이나 그의 감독을 받는 사법경찰리가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무의 내용과 제63-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2조, 제63-3조, 제63-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④ 제63-2조 및 제63-3조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형벌적용판사가 행사하고, 형벌적용판사나 그를 대신할 사법관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행사한다.

⑤ 제64조 및 제65조는 본조의 조치에 준용된다.

⑥ 본조에 정한 조치가 종료한 경우에 형벌적용판사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법관은 대상자를 인치할 것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를 일시적으로 구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형벌적용판사 또는 그를 대신하는 사법관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에게 지시하여 나중에 사법관 앞에 소환되어 유치 상태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피체포자에게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712-17조 ① 형 선고를 받고 그의 감독 하에 있는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적용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②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체포영장의 발부로부터 그 집행까지 형 집행 또는 수정 조치의 집행시효는 정지된다.

③ 급속을 요하고 형벌적용판사나 그를 대신할 사법관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통지가 가능한 시점에 즉시

형벌적용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형벌적용판사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1일 이내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발부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구인영장은 무효가 된다.

④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래 조문에 의한다.

⑤ 경찰 또는 헌병대원은 구금 즉시 그 사실을 체포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시간을 넘을 수 없는 구금 기간 동안, 제63-2조 및 제63-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피체포자가 최대 24시간 이내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관할권 있는 형벌적용판사가 속한 지방법원 검사 앞에 인치되면, 검사는 신원을 확인하고 영장 취지를 고지한 다음에 그 자를 형벌적용판사 앞에 데리고 가며, 제712-6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⑦ 즉시 형벌적용판사 앞에 데려 가기 불가능한 때에는 피체포자를 석방구금판사 앞에 인치하고, 석방구금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체포자를 형벌적용판사 앞에 데리고 가기까지 구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경죄의 경우에는 8일 이내에 중죄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⑧ 정식재판이 열리는 곳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고, 24시간 내에 제6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앞에 인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체포지 검사 앞에 소환하고, 체포지 검사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을 제시한 다음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피체포자를 신문한다. 또, 피체포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유치장에 인치한 후 영장을 발부한 형벌적용판사에게 통지한다. 형벌적용판사가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영장을 제시한 때로부터 4일 이내에 피체포자를 이송하여야 하고, 프랑스 내에서 해외로 또는 해외에서 프랑스 내 도로 이송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6일 이내로 한다.

제712-18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반석방, 외부시설 수용 또는 전자감시

조치가 발령되었으나 그 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별적용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조치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지로 인하여 재수감된 이후에 15일이 지나도록 제712-6조에 정한 대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구속 사유가 없는 한 형 선고를 받은 자를 석방한다. 전술한 15일의 기간은 제712-7조에 따라 형별적용법원 앞에서 대심이 열릴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로 연장한다.

제712-19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제한조치나 공공근로의무를 부가한 집행유예·보호관찰·사법감시·형벌의 분할 또는 정지·조건부 석방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별적용판사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자에 대한 임시 구금을 결정한다.

② 임시 구금 결정은 형 선고를 받은 자를 발견한 지역의 형별적용판사가 명할 수 있다.

③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된 이후 15일 이내에 제712-6조에 정한 대심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구속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석방한다. 전술한 15일의 기간은 제712-7조에 따라 형별적용법원 앞에서 대심이 열릴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월로 연장한다.

제712-20조 제712-6조 및 제712-7조에 정한 공공근로의무를 포함한 집행유예 또는 보안조치를 포함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치가 끝난 후 1월 안에 이미 사건을 수리한 형별적용판사나 새로 사건을 수리하게 된 형별적용판사에게 청구하여 선고된 조치의 취소 또는 철회를 선언하게 할 수 있다.

제712-21조 ① 제712-5조, 제712-6조 및 제712-7조에 정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이 부과된 형 선고자에 대하여 미리 정신의학감정을 경로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단, 통제조건부 외출허가 및 즉시 석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 감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인, 모살 또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정신의학감정은 2인의 감정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신의학감정을 통해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형 선고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제706-47조에 정한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인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형의 변경에 앞서 정신의학감정을 통해서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면밀히 판단하여야 한다.

④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치료명령에 포함된 치료 및 의사가 특별히 처방한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경우에 따라 제712-17조에 정한 영장의 발부, 제712-8조에 정한 변경 조치의 정지, 제712-19조에 정한 임시 구금 또는 제712-20조에 정한 조치의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12-22조 ① 제712-6조 및 제712-7조에 정한 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형벌적용 법원은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의 선고와 함께 부가형으로 부과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면되는 부가형에는 공직·직업활동·사회활동의 금지, 상업 또는 제조업 활동 금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영리기업·제조업 또는 회사 등을 경영하거나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운영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② 제712-6조에 따라 사건을 심판하는 형벌적용판사가 형 변경 조치를 허가하기 전에 전항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결정문에 그 취지를 명시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명령에 의할 수도 있다.

③ 전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형벌적용법원은 같은 요건에 따라 형의 변경을 방해하는 전과기록 제2호를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712-23조 ① 본장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의 명령에는, 검사의 동의가 있고 형 선고자에 관한 기록에 제721-21조에 정한 검사를 경료한 기록이 있거나, 목록에 정한 특정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외출허가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자의 품성으로 판단해 볼 때 새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720-1-1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의사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721-21조에 정한 정신의학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

제 3 장 몰수결정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제 1 절 2006년 10월 6일 유럽의회 결정에 따른 몰수결정의 집행과 양도에 관하여

1. 총 칙

제713조 ① 몰수결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즉,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결정한 확정된 형벌 또는 조치를 말하고, 형법 상 하나 또는 수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하나 또는 수개의 재산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사법기관은 본절에 정한 조건과 규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 즉, 집행국이 요청하는 경우에 집행국의 관할기관에 몰수형의 집행에 필요한 결정문을 송달한다.

제713-1조 몰수결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동산·부동산, 유형·무형의 자산과 자산에 대한 권리·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처분문서를 몰수 집행하여 양도하고, 몰수 결정은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한다.

1. 범죄행위의 도구 또는 수단
2. 범죄행위로 인한 생산물과 그 생산물의 대가 중 일부 또는 전부

3. 범죄행위의 도구나 수단, 생산물이 아니지만 통지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몰수 대상인 것

제713-2조 몰수 결정은 결정을 내린 사법기관의 확인을 거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통지국의 명칭
2. 자산 동결 결정을 한 통지국 법원의 명칭
3. 몰수 결정이 선고된 대상 법인 또는 자연인의 신원
4.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 및 증거물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특히 자산의 특징과 집행국 내 위치 및 보관자에 관한 사항, 또는 몰수 총액
5. 몰수 결정의 이유, 근거가 된 범죄행위의 성격, 몰수 결정을 정당화하는 범죄의 죄질 및 죄명, 범죄행위가 통지국의 법률에 따를 때 제695-23조 제3항 내지 제34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범죄인지 여부
6. 제5호에 정한 범주에 들어가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구체적 특징
7. 결정이 확정되었고,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8.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에게 해당 절차에서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졌고, 이의신청 조건 또는 기간이 고지되었다는 확인
9. 이미 집행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포함하여, 몰수 결정에 이미 집행된 부분의 명시
10. 통지국의 법률에 따를 때 대체형이 선고될 가능성 및 필요한 경우, 대체형을 부과하는 데 대한 통지국의 동의, 대체형의 성격 및 최대 부과기간
11.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통지국 사법기관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제713-3조 몰수 결정의 인증서는 집행국의 언어 혹은 집행국의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하여야 하며 집행국이 선택한 유럽연합의 공용어 중 하나로 번역할 수 있다.

제713-4조 ① 몰수 결정과 그 인증서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국의 사법기관이 집행국의 사법기관에게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 집행국의 사법기관이 기록을 통해서 그 성립의 진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원국이 전항의 성립의 진정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결 결정과 그 인증서는 그 회원국이 지정한 하나 또는 수개의 중앙행정기관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③ 통지국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몰수결정에 대한 인증서의 사본과 정본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환되어야 한다.

④ 모든 의사소통은 관할 기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2. 프랑스 법원이 선고한 자산에 대한 몰수 결정에 관하여

제713-5조 ① 몰수를 선고한 법원에 속한 검사는 결정문과 그에 부수하는 인증서를 만들어 제713-4조에 정한 방식으로 제713-6조 내지 제713-1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회원국의 사법기관에 이를 송부한다.

② 전항의 송부에도 불구하고 몰수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프랑스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713-6조 ① 몰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한 국가에서 집행될 것을 목적으로 송달된다.

② 몰수 결정이 특정 자산에 대한 것일 때, 검사는 그 자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집행국의 관할기관에 결정문과 인증서를 송달한다.

제713-7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몰수 대상인 자산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거나 결정문에서 특정한 하나 또는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결정문과 그 인증서를 여러 나라에 송달한다.

제713-8조 ① 몰수 결정의 대상이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재산 또는 수익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국 관할기관에 결정문과 인증서를 송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 나라에 송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여러 나라에 송달할 수 있다.

③ 몰수 결정을 집행하여 여러 나라에서 회수한 총액은 몰수 결정에서 특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3-9조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의 재산 또는 수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는 때에는 검사는 결정문과 그 인증서를 그 자의 주소지나 영업소가 있는 나라의 관할기관에 송달한다.

제713-10조 몰수 결정이 총액에 대한 것이고 집행국의 관할기관이 금액 대신 자산에 대하여 몰수 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받을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여 동의한다.

제713-11조 ① 자산의 몰수를 선고한 법원에 속하는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집행국의 관할기관에 즉시 통지하여 결정의 집행을 막거나, 집행국에서의 집행을 면하거나, 결정의 집행 조건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설명한다.

② 몰수 결정이 이미 부분적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총집행액과 잔액을 명시한다.

3. 유럽연합 내 다른 회원국 법원이 선고한 자산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제713-12조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경죄법원은 다른 회원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심판한다.

제713-13조 ① 통지국의 몰수 결정 및 그 인증서는 제71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죄법원 소속 검사에게 직접 송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토지관할은 몰수 대상 자산이 있는 곳을 말하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파리 경죄법원에 있다.

③ 자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받은 검사가 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권 있는 경죄법원 소속 검사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통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3-14조 검사는 경죄법원에 몰수 결정의 승인 및 집행 요청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13-15조 경죄법원은 전조의 요청이 적법한지를 검토한 후에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심판한다.

제713-16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죄법원은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와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진술을 청취한다. 이 경우 진술을 하는 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713-17조 ① 경죄법원은 결정문을 번역할 필요가 있거나, 몰수 대상 자산이

이미 압류·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었거나, 다른 절차에 따라 확정된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심판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심판을 연기하는 경우 경죄법원은 제484-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압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심판이 연기된 경우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의 관할 기관에 지체 없이 연기 이유와 필요한 경우 연기 기간을 통지한다.

제713-18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경죄법원은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심판하고,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제713-19조 제713-22조 또는 제713-20조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정한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몰수 결정의 집행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 경죄법원은 심판에 앞서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713-20조 ①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 결정의 집행을 거부한다.

1. 인증서가 없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정문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
2. 자산의 성격 및 형상에 비추어 몰수 조치가 불가능한 물건이거나 프랑스 법에 따라 몰수가 면제된 자산인 때
3. 프랑스나 기타 통지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이미 기판력이 생긴 범죄행위와 관련된 몰수 결정. 단, 형벌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이거나 형 선고 국가의 법에 따라 다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4. 몰수 결정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거나 몰수 결정이 범죄행위자의 성별·

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과 관련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때

5. 몰수 결정이 프랑스 법에 따를 때는 몰수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 내려진 때
 6. 프랑스 법에 따를 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몰수 결정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
 7. 인증서로 판단해 볼 때, 몰수 결정에 이른 절차에서 피고인을 대리하는 자가 없고 몰수 결정이 선고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단, 통지국의 법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절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거나 피고인이 몰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몰수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프랑스 법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프랑스 법에 따를 때는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한 몰수 형 선고가 불가능할 때
- ② 몰수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가 통지국의 법률에 따를 때 제695-23조 제3항 내지 제34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범죄인 경우에는 전항 제5호에 정한 사유로 동결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몰수 결정이 제713-1조 제3호에 정한 이유를 근거로 하는 경우 몰수 결정의 집행을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13-24조 제5항이 적용된다.

제713-21조 제713-20조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세·간접세·관세·환전 등과 관련된 동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프랑스 법이 통지국의 법과는 달리 같은 종류의 직접세 또는 간접세 규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직접세·간접세·관세·조세 등에 대해 달리 규정한 때에 한한다.

제713-22조 ① 다음의 경우에는 몰수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몰수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때
2. 몰수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이 통지국의 영토 바깥에서 행해졌고 프랑스 법에 따를 때 영토 바깥에서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가 불가능한 때

제713-23조 몰수 결정이 외화로 표시된 총액에 관한 것인 때에는 경죄법원은 몰수 결정이 선고된 날의 환율에 따라 유로화로 환산하여 몰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713-24조 ① 아래 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죄법원은 몰수 결정에 갈음하는 조치를 선고할 수 없고, 몰수 대상 자산을 변경하거나 몰수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이 다른 나라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몰수 결정이 집행된 것을 증명할 경우, 경죄법원은 통지국 관할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집행한 금액을 프랑스에서 집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통지국 관할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경죄법원은 몰수 대상 자산을 환산한 가격에 대하여 몰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몰수 결정이 금액에 대한 것이고 그 전부를 집행할 수 없었을 경우 경죄법원은 총액 한도에서 다른 자산에 대하여 몰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몰수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로는 프랑스에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경죄법원은 프랑스 법에 따라 그 범죄행위와 유사한 범죄행위에서 몰수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몰수 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제713-25조 몰수 자산에 대한 집행 결정을 거부함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며, 지체 없이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3-26조 ① 인증서에 자산의 소재지가 충분히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이를 문의한다.

② 몰수 결정에 정한 자산이 이미 몰수되었거나 소실되었거나 멸실되었거나
인증서에 정한 장소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총액 전부를 몰수하지
못했거나 몰수 대상자가 프랑스 내에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몰수가 불가능한
취지를 통지한다.

제713-27조 경죄법원은 몰수의 집행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
었거나 검사가 몰수 결정의 집행을 연기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제484-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 자산의 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713-28조 ① 같은 대상자에 대한 몰수 결정이 여러 개 있고, 대상자가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그 총액을 다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동일 자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몰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죄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몰수결정의
선고일·송달일·범죄행위일·죄질·동결 결정의 경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 또는 통지국들의 관할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제713-29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는 몰수 결정의 프랑스 내 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 결정의 대상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몰수 결정의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관할 있는 경죄법원 항소부 서기에게 집행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몰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512 제5권 집행절차

- ④ 항고에는 집행 정지효가 있으나 몰수 결정의 선고에 이르게 된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법원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결정으로 통지국이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또는 제706-71조에 정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공판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통지국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제713-30조 심리 법원에 속한 검사는 제70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고,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713-31조 ① 검사는 다음 경우에 몰수 결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 1. 몰수 결정이 금액에 대한 것이고 몰수 결정을 여러 나라에서 집행함에 따라 총액 이상에 대하여 몰수가 집행될 염려가 있는 때
- 2. 몰수 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수사나 형사절차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는 때
- ② 집행이 연기된 경우 검사는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고, 연기 이유와 필요한 경우 연기 기간을 명시한다.
- ③ 연기 이유가 없어진 때에는 검사는 몰수를 집행하며, 기록이 남는 모든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지국의 관할기관에 통지한다.

제713-32조 ① 몰수 결정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은 국유지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 ② 회수된 금액과 몰수 대상물의 매도 금액은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국고와 통지국이 반분한다.
- ③ 통지국에 반환하는 비용에서 몰수 결정의 집행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단, 집행에 특별히 많은 비용이 들어 이를 전보할 필요가 있고, 그 세부내역을

통지국에 설명한 경우에는 집행비용 중 일부를 통지국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지국과 달리 결정한 바 없는 경우에 매각하지 않는 자산은 통지국에 인계한다.

제713-33조 ①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가 다른 나라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몰수 집행이 선고될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검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국 관할기관에 통지한다.

② 다른 나라에서 몰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 결정의 집행액에서 공제한다.

제713-34조 검사가 몰수 결정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프랑스 사법기관의 결정 집행권을 박탈하는 조치에 대하여 고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종료한다.

제 2 절 외국 사법기관이 선고한 몰수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제713-36조 국제협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동산 또는 부동산, 범죄행위의 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된 물건이나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몰수할 목적으로 외국 사법기관이 선고한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13-37조 내지 제713-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13-37조 제694-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우에는 몰수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1. 결정의 근거가 된 범죄행위가 프랑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
2. 몰수가 선고된 자산이 프랑스 법에 따를 때 몰수 대상이 아닌 때;

514 제5권 집행절차

3. 외국에서 선고된 몰수 결정이 개인의 자유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때;
4. 외국에서 선고된 몰수 결정이 범죄행위자의 성별·민족·종교·인종·국적·언어·사상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소추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인 때;
5. 프랑스 검사가 외국 법원이 이미 몰수 결정을 선고하였거나 프랑스 기타 통지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이미 기판력이 생긴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단, 형벌이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이거나 형 선고 국가의 법에 따라 다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6. 정치범에 대한 몰수 결정인 때

제713-38조 ① 경죄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제713-36조에 따라 외국 사법기관이 선고한 몰수 결정의 집행을 허가한다.

② 전항의 집행 허가는 요청국의 법이 외국법원의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집행 허가로 인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몰수 대상 자산에 대하여 프랑스 법이 인정한 정당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단, 제3자가 프랑스 법에서 규정한 것과 유사한 권리를 외국 법원에서 행사한 후 그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몰수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외국의 결정을 프랑스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④ 외국에서 선고된 몰수 결정의 집행 거부로 인하여 압류는 해제된다. 외국에서 행해진 수사가 종료되거나 그로 인하여 압류된 자산의 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13-39조 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죄법원은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몰수 결정의 대상이 된 자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와 형 선고를 받은 자, 압류 자산의 소유자의 진술을 청취한다.

- ② 전항에 정한 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죄법원은 사실에 관한 외국법원의 결정에 구속된다. 사실 확인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외국 기관에 청구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3-40조 ① 외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결정을 프랑스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요청국의 이의가 없는 한 몰수 자산을 프랑스 영토 내로 운반한다.

- ② 전항에 의해 확보한 자산은 국유지법에 따라 매각한다.
- ③ 외국 법원이 금액에 대하여 몰수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결정함에 따라 프랑스가 그 금액에 대한 채권을 갖는다. 지불이 없는 경우에는 프랑스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13-41조 본절을 적용함에 있어 몰수 대상 자산 중 하나가 존재하는 곳의 경죄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파리 경죄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편 구 속

제1장 구속의 집행

제714조 ① 구속 결정이 내려진 예심수사피의자 및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금한다.

- ② 법규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을 제외하고 각 지방법원·고등법원·중죄법원마다 1개의 구치소를 둔다. 법규명령에 의하여 법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서 각 법원 관할구역별로 피의자·항소한 피의자·피고인을 구금하는 구치소를 지정한다.

516 제 5 권 집행절차

제715조 예심판사·고등법원 예심부장·중죄법원장·검사 및 고등검사장은 예심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구치소에서 집행되어야 할 모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15-1조 감옥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심수사피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접견교통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16조 ① 구속 결정이 내려진 예심수사피의자·피의자·피고인은 주야독거구금에 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2. 피구금자의 성향 등으로 볼 때 독거수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3. 노역을 허가받았거나 직업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이수하고 수용시설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② 예심수사피의자·피의자 및 피고인을 함께 수용하는 경우 그 수용인원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과 인격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유형의 집행

제 1 절 총 칙

제716-1조 1일의 구류형은 24시간이다. 1월의 구류형은 30일이다. 1월 이상의 징역형은 일별로 계산한다.

제716-2조 모든 자유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수형자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병이 구금된 초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716-3조 자유형이 일요일 또는 법정축제일에 종료되는 경우 수형자는 그 전 평일에 석방된다.

제716-4조 ① 소송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구속이 행하여진 때에는 그 구속기간을 선고형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합산한 형기에 산입한다.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절차가 그 후에 무효로 되었을 경우 그 선고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집행된 구속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 집행 시의 신병구속, 범죄인 인도 청구 또는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으로 프랑스 밖에서 집행된 구금, 제712-17조 제7항, 제712-19조 및 제747-3조에 의한 구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16-5조 ① 징역형 또는 구금형의 집행을 위하여 검사 및 검사장은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그 자의 주거지에 투입할 수 있다. 단, 6시 이전과 밤 9시 이후에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징역형이나 구금형을 선고하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에 따라 체포된 자는 경찰관서 또는 헌병부대에 24시간 동안 인치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경력과 환경 등을 검사한다.

③ 전항의 조치를 개시한 즉시 검사 또는 검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체포 즉시 피체포자에게 제63-2조, 제63-3조 및 제63-4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⑤ 제2항의 조치를 종료한 후에 검사 또는 검사장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목적으로 피체포자를 자기 앞에 인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체포자의 진술을 들은 후에 검사는 수감 이유를 고지한다.

⑥ 피체포자에 대한 형벌 집행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지시하여 피체포자를 형벌적용판사 앞에 인치할 것을 명하거나, 그 취지를 피체포자에게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717조 ①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② 다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석방 준비, 가정상황, 인성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적당한 조건을 부가하여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치소 내 구분된 한 구역에 구금한다.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구치소에 수감한다. 남은 형기가 2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9월 이내에 교도소로의 이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형벌 감면의 혜택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7-1조 A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15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확정판결이 있는 해에 최소 6주 동안 특별히 지정된 시설에 수감하여 형벌 집행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혹은 보건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사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검사 결과에 따라 형벌적용판사는 개별화된 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서는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17-1-1조 ① 다층면접이 끝나고 교도소로 이송된 즉시 피구금자에 대한 인성평가를 한다. 교도소장과 교도행정기관 책임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벌의 집행 방향을 정한다. 이 경우 형 선고자의 의견을 참작하며, 집행 방향 설정과 변경 시에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내 형 집행을 위하여 수형자를 구분함에는 죄질·연령·건강상태 및 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금형태는 인성·건강·위험성 및 사회복귀 의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다 엄격한 구금형태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 24일 행형법 제2009-1436호 제22조에 정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③ 국참사원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인 범죄로 형 선고를 받은 자는 의학 및 정신의학적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하여야 한다.

- ④ 제763-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제안하여 수감 기간 중에 전향에 정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란 공중보건법 제3711-3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⑤ 수형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공중보건법 제3711-1조, 제3711-2조 및 제3711-3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의사는 수형자가 제721-1조에 정한 형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형벌적용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할 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⑥ 형의 종료로 석방되기 2년 전에 제706-53-13조에 정한 조치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는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학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안할 수 있다.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 필요한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특별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⑦ 교도행정기관의 직원 및 봉사자는 수형자에 대한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 담당자에게 수형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7-1-1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벌적용판사는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717-2조 ①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감할 때에는 주야간 독거구금하며, 교도소에서는 야간에만 독거구금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독방에서 관찰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거나 수형자의 인성으로 판단할 때 혼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일 때 또는 노역 동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7-3조 ① 노역 및 직업교육, 일반교육 등은 수형자의 행형 성적, 복귀 노력 등을 판단하여 정한다.

- ② 수형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도소 내 직업교육 시설, 직업활동 시설 및 일반교육 시설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수형자의 노역은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교도소 외에서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④ 수형자의 노력으로 생산한 물건의 배분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하고, 수형자의 생산물로부터 교도소 관리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없다.
- ⑤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당 보수는 명령으로 정한 하한과 노동법 제3231-2조에 정한 최저임금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이와 같은 비율은 수형자의 고용 상 역할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718조 수형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자기의 계산으로 노역에 종사할 수 있다.

제719조 프랑스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의원, 상원의원 또는 대리인은 언제든지 보호유치 장소, 수용센터, 대기실 및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제719-1조 국참사원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자가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교도행정기관은 그 자의 이름과 주소를 거주지의 경찰관서 또는 헌병부대에 통지한다.

제 2 절 자유형의 집행정지 및 분할

제720-1조 ① 경죄에 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자에 대한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의료·가족·직업 또는 사회적인 중대한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분할한 형은 2일 이하로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형벌적용판사가 제712-6조에 따라 정하며,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의무사항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징역형을 분할하는 결정이 형법 제132-27조를 적용하여 판결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결정은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20-1-1조 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벌의 종류나 잔여 형기와 상관없이, 예후가 좋지 않은 병리학적인 질병이 있거나 구금상태의 유지를 견뎌낼 만한 건강상태가 아닌 수형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인 장애로 보건 시설에서 치료 중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의 집행정지는 전항의 증상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2명의 다른 감정인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보건의료담당자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감정서를 기초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선고된 자유형의 형기가 10년 이하인 경우나 원래 형기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잔여형기가 3년 이하인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71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형 집행정지를 선고한다.

⑤ 본조에 따라 형 집행정지를 선고한 법원은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의무이행명령 또는 금지명령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수형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⑥ 형벌적용판사는 언제든지 수형자가 본조의 규정에 따른 형 집행정지의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의학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더 이상 본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형 집행정지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전항을 적용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형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새로운 재범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형벌적용판사가 결정을 함에는 제712-6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중죄의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 형 집행정지가 선고된 경우, 형 집행정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6개월마다 의학 감정을 실시한다.
- ⑧ 제720-2조의 규정은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제3절 구금기간

제720-2조 ① 형의 집행정지 또는 분할·외부구금·반자유처분·조건부석방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132-23조에 규정된 구금기간 동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사면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기간을 붙여 자유형 감형 또는 면제가 행하여진 경우, 감형 또는 면제의 결과 정해진 형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구금기간 동안은 필요적 구금이 계속된다. 다만, 이 경우 구금기간은 형 선고 시에 정한 구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0-4조 ① 수형자가 사회재적응의 뚜렷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때에는 형벌 적용법원은 예외적으로, 제712-7조의 요건 하에 형법 제132-23조에 정한 구금기간의 종료를 선고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단, 중죄법원이 형법 제221-3조 제2항 및 제221-4조를 적용하여 30년 간의 구금을 결정한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수형자가 최소한 20년 동안 수감된 후에만 구금기간의 단축 또는 종료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중죄법원이 무기 금고에 처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132-23조에 열거된 조치를 일절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형 선고 후 30년이 경과한 후에만 전향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④ 전향의 선고는 대법원 공인 감정인 명부에 등재된 3인의 의학감정인으로 구성되는 감정인단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감정인단은 수형자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⑤ 제73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벌적용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통제 조치 및 원조 조치를 선고할 수 있다.

제720-5조 5년 이상의 구금기간을 부과한 형 선고가 있는 경우, 수형자를 1년 이상 3년까지 반자유 처분 혹은 전자감시 하에 둔 후가 아니면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형벌적용법원은 잔여 형기가 3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71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반자유 처분 또는 전자감시 처분을 선고한다.

제 4 절 형의 감경

제721조 ① 수형자는 징역형에 대해서 첫 해에는 최대 3월까지 그 이후에는 최대 2월까지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형기가 집행되는 형에 대해서는 1월 당 7일 비율로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하여 1월 당 7일씩 감형이 되어도 그 총합이 2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수형자가 재범인 경우 첫 해에는 최대 2월까지 그 이후로는 최대 1월까지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형기가 집행되는 형에 대해서는 1월 당 5일 비율로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하여 1월 당 5일씩 감형이 되어도 그 총합이 1월을 넘을 수 없다. 조건부 석방 조건이 되는 형기를 기산함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항에 따라 감형 계산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조건부 석방 조건을 정한다.

③ 수감 중 행형 성적이 좋지 않은 때에는 교도소장이나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형벌적용판사는 1년 당 최대 3월, 1월 당 최대 7일의 비율로 형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형자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였거나, 살인·모살·고문·가혹행위·강간·성폭력·성범죄 등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고, 형벌적용판사가 제717-1조 또는 제763-7조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제안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경의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제712-5조에 정한 방식으로 한다.

④ 재범인 수형자에 대한 전향의 취소는 1년 당 최대 2월, 1월 당 최대 5일의 비율로 한다.

⑤ 본조 제1항 또는 2항,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 석방된 기간 동안 새로운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때에는 새로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감경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이를 추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추가로 집행되는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은 별개로 한다.

⑥ 수감 시 서기는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가 감경된 결과 석방 가능한 날짜와 행형 성적이 나쁠 때는 감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석방 후 다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석방 시에도 이와 같은 고지를 반복한다.

제721-1조 ① 사회복귀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보인 수형자, 특히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한 학교, 대학 또는 직업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 또는 훈련 분야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이거나 재범 위험을 줄이는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노력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중죄 또는 경죄를 저지르고 제717-1조 및 제763-7조에 따라 수감 중 치료를 받을 것을 제안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추가 감경을 할 수 없다.

② 추가 감경은 형벌적용판사가 행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허가하며, 재범일 경우에는 1년 당 2월, 잔여 형기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1월 당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재범이 아닐 경우 그 기간은 각각 3월과 7일로 한다. 단, 수형자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였거나, 살인·모살·고문·가혹행위·강간·성폭력·성범죄 등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한 경우 그 기간은 1년

당 2월, 1월 당 4일로 하고, 재범이면서 제안을 받은 치료를 거부한 때에는 1년 당 1월, 1월 당 2일로 한다.

③ 추가 감경은 형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회 감경분을 연수로 분할하여 적용한다.

④ 행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형벌적용판사가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은 제706-47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선고가 확정된 후 전과기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21-2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제721조 및 제721-1조에 의거 하나 또는 수개의 감형 혜택을 입은 자가 석방 후 감형된 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사소청구인 또는 피해자를 만나거나 어떤 형태의 접촉도 시도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수형자를 석방할 때 고지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때 고지한다.

② 전항의 명령과 함께 사소청구인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감형 혜택을 입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감경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재구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2-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21-3조 ① 형 선고 전후에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신고하여 제706-73조 및 제706-74조에 정한 범죄행위의 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저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체 형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무기 금고형을 받고 있는 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본법 제729조에 정한 최소 구금기간(le temps d'épreuve)을 18년에서 5년까지로 감경할 수 있다.

② 본조에 정한 특별 감경은 제71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선고한다.

제 5 절 외부구금, 반자유, 외출허가, 경호부 외출허가

제723조 ① 외부구금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작업에 관하여 교정시설 외부에 고용된 수형자에게 허용된다.

② 반자유처분은 형법 제132-2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전2항에 정한 조치의 허가 요건 및 적용 요건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723-1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1개 또는 수개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잔여 형기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형자, 선고 받은 1개 또는 수개의 자유형의 합계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수형자를 반자유처분 또는 외부구금에 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수형자가 재범일 경우에는 본항에 정한 2년의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조건부 석방된 수형자를 보호관찰 목적으로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반자유처분 또는 외부구금에 처할 수 있다. 반자유처분 또는 외부구금은 제729조에 정한 최소 구금기간의 종료 1년 전에 집행할 수 있다.

제723-2조 형법 제132-25조가 적용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반자유처분형이나 외부구금의 조건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자유처분형 또는 외부구금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던 모든 조건들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수형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형 성적이 좋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명령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인성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같은 조건 하에 반자유처분을 외부구금으로, 외부구금을 반자유처분으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에 전자감시를 부가할 수 있다.

제723-3조 ① 외출 허가는 수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정시설에서 나가는 것을 허가하는 조치이며, 이 기간은 집행 중인 형기에 산입한다.

② 외출 허가에 따라 수형자는 직업적인 또는 사회적인 복귀를 준비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접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723-4조 형벌적용판사는 또한 외부구금, 반자유처분 또는 외출 허가를 명한 수형자에게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의무 또는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723-5조 형법 제434-2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허가의 기회에 고의로 범한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하여 법원은 수형자가 이전에 선고 받은 형의 감경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3-6조 모든 수형자는 제712-5조에 정한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경호부 외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6 절 전자감시처분

제723-7조 ① 1개 또는 수개의 자유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1개 또는 수개의 자유형을 선고 받고 그 잔여 합산형기가 2년을 넘지 않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형법 제132-26-1조에 정한 전자감시 하에 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수형자가 재범인 경우 본항에 정한 2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조건부 석방된 수형자를 보호관찰 목적으로 1년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전자감시에 처할 수 있다. 전자감시처분은 제729조에 정한 최소 구금기간의 종료 1년 전에 집행할 수 있다.

③ 형벌적용법원이 지정한 장소가 수형자의 주소가 아니라면, 그 지정 장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는 전자감시를 결정할 수 없다. 단, 그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3-7-1조 형법 제132-26-1조가 적용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전자감시의 집행 조건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 집행의 개시일로부터 최대 4월 동안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감시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던 모든 조건들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수형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형 성적이 좋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거나, 수형자가 집행조건의 필요한 변경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형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명령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인성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같은 조건 하에 전자감시처분을 반자유형이나 외부구금으로 바꿀 수 있다.

제723-8조 ① 처분 집행의 감독은 각 확정기간마다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한 장소에 현존하는지 여부를 원격탐지 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의 방법 중에는 대상자에게 전 기간 동안 발신기 내장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 전항에 사용되는 기계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하고, 대상자의 존엄성,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법엄결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723-9조 ① 전자감시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된 곳을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의 통제를 받는다.
 ② 전자감시처분의 원격통제는 그 임무를 위임 받은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며,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실명의 전산자료를 관리한다.
 ③ 원격감시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운용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전자감시처분 결정에 명기된 기간 범위에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교정 당국 공무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형자를 만나기 위해 그를 그 장소에 오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형자의 동의 없이는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다. 공무원은 즉시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⑤ 경찰 및 헌병당국은 언제나 수형자의 불법적인 이탈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23-10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또한 전자감시처분이 내려진 자에 대하여 형법 제132-43조 내지 제132-46조에 정한 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또한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거나 통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723-11조 형벌적용판사는 직권 또는 수형자의 청구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723-10조에 규정된 전자감시처분의 집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723-12조 형벌적용판사는 언제든지 제72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계장치가 수형자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사를 지명할 수 있고, 수형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명하여야 한다. 의사의 소견서는 기록에 첨부한다.

제723-13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형법 제132-26-2조 및 제132-26-3조에 정한 의무 또는 금지명령을 어겼거나, 알려진 비행 사실이 있거나, 제723-10조를 적용하여 선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 선고를 받거나, 집행조건의 필요한 변경을 수형자가 거부하거나, 수형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전자감시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제712-6조에 정한 방식으로 한다.

② 전자감시처분을 취소한 경우, 수형자는 취소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감시 처분이 선고된 날 기준으로 남아 있던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한다. 단, 전자감시 처분을 받았던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723-13-1조 본절의 적용 요건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7 절 간이 형 변경 절차

제723-14조 ① 단기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는 구금 상태이든 석방 상태이든 상관없이 제723-15조 내지 제723-27조에 정한 조건 및 방식에 따른 간이 형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12-4조 및 제712-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필요한 경우 본절의 적용요건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1. 석방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723-15조 ①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구금되어 있지 않은 자, 잔여 형기가 2년 이하인 자, 여러 개의 형에 관하여 수감되었던 기간이 총계가 2년 이하인 자, 또는 여러 개의 형에 관하여 남은 형기가 2년 이하인 자는, 인성이나 상황이 허락하고 기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본 문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자유처분·외부구금·전자감시, 형의 정지·분할, 조건부 석방 또는 형법 제132-57조에 따른 형 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재범일 경우에는 본항에 정한 2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하나 또는 수개의 형벌 집행에 앞서 검사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형벌 적용판사에게 집행 방법의 결정을 청구한다. 검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대상자의 전과기록 제2호와 기타 결정문 등본이 포함된다.

③ 판결 선고 전에 본법 제474조에 따라 소환되었던 경우가 아닌 한, 형 선고를 받은 자는 먼저 형벌적용판사 앞에 소환되고 그 다음에 교도행정기관 담당자 앞에 소환되어 경제상황·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상황에 맞는 형벌 적용 방법이 결정된다. 이 경우 전항에 정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형벌

적용판사 앞에, 45일 안에 기타 기관에 소환되어야 한다. 단, 형벌적용판사가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3-15-1조 소환 결과 형의 조정이나 전환이 가능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또는 전환을 명한다. 단,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면 형벌적용판사는 교도행정기관에 지시하여 그로부터 2월 안에 형의 변경 및 전환 등 적당한 집행방법을 제안하게 한다. 교도행정기관의 이유를 붙인 제안서를 근거로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조정 및 전환을 결정한다.

제723-15-2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조정이나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교도 행정기관의 보고서에 따라 조정이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형벌적용 판사는 수감일을 지정한다.

② 결정문 사본의 제출 후 4월 이내에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이 없거나, 제723-1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는 형 집행에 착수한다.

③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형 집행에 착수한다.

제723-16조 ① 제723-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도주 위험이 확인 되었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 수감되었거나, 새로운 사실에 기하여 사람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2항에 따라 형벌적용판사에게 사건이 회부되어 있었던 때에는 그 취지를 형벌적용판사에게 통지한다.

제723-17조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723-15조에 언급한 형이 집행되지 않은 때에는 형 선고를 받은 자는 제712-6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실행하게 하기 위하여 형벌적용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가 이전에 같은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더라도 전문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로 인하여 전조에 따라 검사가 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정지된다.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심판한다.

제723-18조 수형자에게 남은 형기가 감정으로 인해 줄어들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전조의 조치를 선고하면서 수형자를 다시 수감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할 수 있다.

2. 수감된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제723-19조 ① 하나 또는 수개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총계가 2년 이하인 자, 하나 또는 수개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총합이 5년 이하이면서 잔여 형기가 2년 이하인 자는 인성이나 상황이 허락하고 기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본문단에 정한 절차에 따라 반자유처분·외부구금·전자감시·조건부 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재범일 경우에는 본항에 정한 2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23-20조 ① 교도행정기관의 장은 제723-19조에 정한 수형자 개인의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도소장의 의견을 들어 각 수형자의 경제상황·가족관계 또는 사회적 상황과 성격에 적합한 형벌이 되도록 선고된 형을 조정한다.

② 형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회복지 또는 재활 계획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교도행정기관의 장은 수형자의 동의를 얻고 검사를 경유하여 형벌적용판사에게 수형자에게 적합한 형 조정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형법 제132-45조에 정한 의무와 금지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단, 형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검사와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하고 그 취지를 수형자에게 통지한다.

③ 검사는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제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형벌적용판사의 승인을 요청한다. 형벌적용판사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제안의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④ 검사가 교도행정기관의 장의 제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그 취지를 제안서와 함께 형벌적용판사에게 고지하고, 수형자에게도 그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대심절차를 거쳐, 수형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형벌 조정을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본조 제2항에 정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한다.

제723-22조 형벌적용판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붙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수형자가 제712-11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723-24조 3주 내에 형벌적용판사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 교도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된 형벌을 집행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불복할 수 없다. 이 경우 형벌적용판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723-25조 ① 제723-20조 또는 제723-22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형벌적용판사 또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장은 제안된 형벌조정안을 제723-19조에 정한 조치 중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 또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장은 또 이와 함께 형법 제132-45조에 정한 의무나 금지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다. 형벌적용판사 또는 항소법원 형벌적용부장이 이와 같은 조치를 부과함에는 대심 없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② 형벌적용판사가 전항과 같이 결정한 경우에는 제712-11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또는 수형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723-26조 형벌조정안이 승인되거나 제723-2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교도행정기관의 장이 빠른 시간 안에 그에 따라 형벌을 조정한다. 이 경우 수형자가 조정안에서 정한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교도행정기관의 장이 형벌적용판사에게 제712-6조에 따른 조정 조치의 철회를 청구한다. 또, 검사의 청구로 또는 형벌적용판사의 직권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

제723-27조 제723-19조에 정한 수형자와 관련하여 본 문단에 정한 반자유처분·외부구금·전자감시·조건부석방 조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교도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외출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수형자는 형벌적용판사에게 제723-19조 내지 제723-24조에 따른 형벌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8 절 형벌 조정이 없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 방법

제723-28조 ① 형 집행 개시까지 아무런 형벌 조정이 없었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자에게 남은 형기가 4월인 경우 또는 6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전자감시의 방법으로 형을 집행한다. 단, 수형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형자의 인성이나 재범 위험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감시는 검사의 감독 하에 교도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하고, 검사는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의무 사항 중 수형자가 준수해야 할 것과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 ③ 전자감시 결정이 없는 경우 수형자는 형벌적용판사에게 이를 청구하고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따른 대심을 거쳐 결정한다.
-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 9 절 중죄 또는 경죄로 형 선고를 받은 위험한 자에 대한 사범감시에 관하여

제723-29조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하여 7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되면서 보호관찰이 부가된 경우에는 형벌적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높은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석방과 동시에 수형자를 전자감시에 부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은, 수형자가 감경 또는 추가 감경의 혜택을 입었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총 감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3-30조 ① 사범감시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1. 형법 제132-44조 및 제132-45조에 정한 의무
2. 형법 제131-36-12조에 정한 의무
3. 본법 제706-53-13조에 정한 중죄로 15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된 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이에 따라 수형자는 판사가 지정한 장소나 주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장소 및 기간을 지정함에는 수형자의 직업 활동,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지 여부,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연수를 받고 있거나 임시직에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의 참여 정도, 의학적 진료 의무 부과 내용 등을 고려한다.
- ② 형벌적용판사가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사범감시를 받는 자에게는 공중보건법 제3711-1조 및 그 이하의 규정에 따른 치료명령이 부과된다. 이 경우 제723-31조에 정한 전문 감정인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723-31조 제723-29조에 정한 재범 위험은 제712-16조에 따라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확인해 주어야 하고, 여기에는 수형자가 위험한 상태에 있고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조의 전문 감정인은 검사가 지명할 수도 있다.

제723-31-1조 ① 제723-29조에 따라 사법감시에 부처지는 수형자의 상태는 석방일 이전에 감정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형벌적용판사 또는 검사는 2주에서 6주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수형자의 위험성을 다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수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형자를 보안조치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③ 형벌적용판사 또는 검사는 제723-31조에 정한 감정을 2명의 감정인에게 의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23-32조 ① 제723-29조에 정한 결정은 수형자의 석방일 이전에 제712-6조를 적용한 판결로 한다. 제712-6조에 정한 대심절차에서 수형자는 반드시 그가 선임한 변호인 또는 그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판결에는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23-33조 ① 사법감시에 부처진 자는 동시에 사회복귀를 촉진 또는 검증하기 위한 원조조치 및 통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실행하고 부과된 의무를 감독하는 임무는 교도행정기관의 도움을 얻어 형벌적용판사가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23-34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제712-8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부과된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수형자의 인성이나 태도 등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23-32조 제1항 제2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의무 부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기간은 제723-2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3-35조 ① 수형자에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형자에 주었던 감형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2-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수형자에게 형법 제131-36-4조 및 제131-36-12조에 정한 조치는 그의 동의 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그 대신 그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 주어졌던 감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③ 보호관찰이 부가되는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사법감시를 명하는 판결법원이 형벌적용판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1항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지정된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치료명령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치료의 시작 또는 계속을 거부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의무 위반으로 본다.

제723-36조 본절의 규정은 보호관찰 형에 처한 자나 조건부 석방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23-37조 ①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15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된 자에게 사법감시가 선고된 경우에는 제706-53-15조에 정한 지역법원은 본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제723-3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수형자를 2년 간 보안감시에 부친다.

② 보안유치의 종료 6월 전에 검사 또는 형벌적용판사는 보안유치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③ 다음 경우에는 보안감시에 부치는 결정에 앞서 감정인이 수형자의 위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부과되는 의무이행 명령으로는 제706-53-13조에 정한 중죄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2. 재범가능성이 너무 높아 사법감시가 범죄 예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법감시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연장될 수 있다.

⑤ 제706-53-19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본조에 적용된다.

⑥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여 제723-35조에 따라 형 감경의 전부가 취소된 자를 사법감시에 부치는 경우, 보안유치를 관할하는 지역법원은 동시에 제706-53-1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형자를 보안감시에 부칠 수 있다.

제723-38조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로 1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한 자에 대하여 사법감시의 일환으로 전자감시가 선고된 경우, 그를 다시 사법감시 또는 보안감시에 부치면서 부과된 전자감시도 연장할 수 있다.

제723-38-1조 사법감시는 그 집행 중에 수형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정지되고, 제723-35조에 따라 감경된 형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정지된 사법감시는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된다.

제723-39조 본절의 적용 요건과 적용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각종 교정시설에 관한 공통규정

제724조 ① 교정시설은 구속된 자 또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한다.
 ② 교정시설에 인치되거나 자발적으로 출석한 모든 자에 대하여 수감조서를 작성한다.
 ③ 본조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정한다.

제724-1조 ① 교정당국은 각 수감자에 대하여 개인별 형벌 및 교정 정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관리한다.
 ② 교정당국은 당해 행정당국의 권한 집행의 필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수형자의 인적사항, 구금 장소, 형벌 집행 상황, 석방 일시 등을 알고자 하는 관련 행정당국과 교류한다.
 ③ 특히 교정당국은 내무부의 중앙기관 또는 지방기관과 구금된 외국인 또는 국외 추방 대상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제725조 교정당국의 공무원은 형 선고 판결, 체포명령,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 구속을 수반하는 구인영장 또는 법률에 따라 작성된 체포명령이나 제724조에 규정된 수감증서를 작성한 후가 아니면 누구도 수용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때는 불법감금으로 소추되고 처벌된다.

제726조 ① 자유형 선고를 받아 구금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② 국참사원령은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성격과 죄질에 따라 분류한 징계 사유
2. 대상 행위의 죄질에 다양한 제재. 징계방 수감이나 독방 수감은 최대 20일을 넘길 수 없으나,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30일까지 수감할 수 있다.
3. 최소한 교도행정기관 외부 인사 1명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징계절차. 대상자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 또는 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징계방 또는 독방에 수감된 수형자가 주간 면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절차 규정
6. 징계방 또는 독방 수감이 수감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규정

③ 예외적으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징계방에 수감할 수 있으나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성인 수형자나 16세 이상 미성년 수형자를 징계방이나 독방에 긴급 구금할 수 있으나 최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징계방을 포함해서 징계시설에 수감된 자는 형형법 제521-2조에 따라 가처분 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26-1조 ① 미성년자가 아닌 모든 수형자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도행정기관이 최대 3월 동안 분리 수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단, 사법기관의 동의 없이는 최대 분리 수감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분리 수감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 24일 교도행정에 관한 법률 제2009-1436호 제22조에 정한 수형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단, 안전을 이유로 한 형벌 조정은 예외로 한다.

③ 분리 수감된 자는 행형법 제521-2조에 따라 가처분 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27-1조 ① 도주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며, 교도행정시설이나 수형자를 수용한 치료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수형자의 전기통신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제외하고는 교도행정기관이 감청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으로 정한 요건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할권을 갖는 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수형자와 통화 상대방에 대하여 통화 내용을 듣거나, 감청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40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제출되지 않는 모든 녹음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제728조 각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참사원령으로 교정시설의 조직 및 내부제도를 정한다.

제 4 장 피구금자의 금전재산

제728-1조 ① 피구금자의 금전재산은 교정시설에 개설되는 피구금자의 기명 계좌에 넣어 사소청구인 및 부양료청구권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1부분, 직업상여금에 충당되며 어떠한 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는 제2부분, 피구금자의 자유처분에 맡겨지는 제3부분 등 3부분으로 구분한다.

- ② 사소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충당되는 돈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교정 시설의 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양료청구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테러 및 기타 범죄 피해자기금이 제706-11조에 따라 수형자의 금전재산에 대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소청구인을 위하여 공제된 금액 전부는 사소청구인에게 속하고 그가 권리를 행사한다.
- ③ 금전재산의 구성, 각 부문별 금액 및 기명계좌의 관리에 관하여는 명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수형자의 이송

- 제728-2조** ① 국제조약 및 국제합의에 따라 외국의 사법기관이 선고한 형의 집행 중에 남은 형기를 프랑스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이송된 자의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법의 규정, 특히,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심부가 제695-2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연금조치 또는 형벌을 부과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제728-3조** ① 프랑스 영토에 도착하자마자 수형자는 도착지의 검사 앞에 인치되며, 검사는 신분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다. 만약 즉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형자를 먼저 구치소에 수감하나,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 경과 후에 구치소의 장이 수형자를 검사에게 인치한다.
- ② 이송에 동의하는 외국의 동의서, 수형자의 동의서, 외국의 판결문 원본 또는 등본, 필요한 경우 이들 서류의 번역문을 검사한 후 검사는 수형자를 수감할 것을 명한다.
- ③ 유럽체포구금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관할권 있는 프랑스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직접 외국에서 선고한 형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예심부 결정에 기하여 대상자를 수감할 수 있다.

제728-4조 ① 국제조약 및 국제합의에 따라 외국에서 선고된 형은 집행 잔여분에 대하여 프랑스 영토 내에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고된 형이 프랑스 법에 따라 같은 범죄에 대하여 선고될 형보다 중한 경우에 검사 또는 수형자의 청구에 따라 수감지의 경죄법원이 프랑스 법에 따른 최고형으로 바꾸거나 법적 상한까지 외국에서 받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죄법원은 외국에서 다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여분을 상한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집행할 형의 종류와 기간을 다시 정한다.

제728-5조 경죄법원은 검사 또는 수형자, 수형자가 선임한 변호인 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지명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공개법정에서 재판한다. 경죄법원의 판결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즉시 집행력을 갖는다.

제728-6조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은 프랑스에서 집행할 형기에 산입한다.

제728-7조 ① 프랑스에서 집행할 자유형의 잔여 형기에 대한 모든 이익은 수감지의 경죄법원이 심판한다.

② 본법 제711조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제728-8조 형벌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따른다.

제728-9조 국제협약과 국제합의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형의 일부를 프랑스에서 집행하게 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하거나, 기소를 유지하거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3편 조건부 석방

제729조 ① 조건부 석방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한다.

② 1개 또는 수개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야 하는 수형자가 사회재적응의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조건부 석방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1.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성실히 임하거나, 사회재활을 위한 실무수습 또는 임시취업을 한 경우
2. 가정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3.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5. 재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② 형법 제132-2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역한 형기가 미집행 잔여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형자가 형법 제132-8조, 제132-9조 또는 제132-10조에 정한 누범으로 복역한 형기가 미집행 잔여기간의 2배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없다. 본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최소 구금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범인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기금고를 선고 받은 수형자는 그 최소 구금기간을 18년으로 하고, 재범인 경우에는 22년으로 한다.

④ 보호관찰이 부가된 중죄 또는 경죄로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수감 중에 제717-1조 및 제763-7조에 따라 형벌적용판사가 제안한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조건부 석방을 허가할 수 없다. 석방 후에 제731-1조에 따라 제시된 치료를 받지 않은 자도 이와 같다. 무기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조건부 석방하기 위해서는 수형자의 위험성을 다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심사와 의학적인 감정을 거쳐 보안조치심의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 한다.

보호관찰이 부가된 중죄로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감정에는 2명의 감정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치료 명령의 일환으로 공중보건법 제711-3조에 정한 성욕 억제 약물을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수형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최소 구금기간 등에 대하여 본조에 정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수형자가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조건부 석방할 수 있다. 특히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즉시 그를 돌볼 사람이 있거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재범을 저지를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수형자의 출소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9-1조 무기 금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제721조 및 제721-1조에 규정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조건부 석방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구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총 기간은 1년의 구금에 대하여 수형자가 법률상 누범인 경우에는 20일, 누범이 아닌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축은 형법 제132-23조에 규정된 보안기간이 붙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보안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형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제729-2조 형의 선고를 받은 외국인이 프랑스 내 체류 금지, 국경으로의 이송, 강제 퇴거 또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석방은 이들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조건부 석방은 외국인의 동의 없이 선고될 수 있다.

제729-3조 ① 조건부 석방은 4년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모든 수형자, 잔여 형기의 합계가 4년 이하인 자, 주거지에서 1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본조의 규정은 중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경죄를 범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0조 ① 자유형의 형기가 10년 이하인 경우나, 처음에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었는가와 상관없이 잔여 형기가 3년 이하인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제79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조건부 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조건부 석방은 제72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선고한다.

③ 제729조의 기한이 충족된 경우에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 적어도 1년에 1회 수형자의 상태를 감정한다.

④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 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에 관하여 사소청구인의 변호인은 그가 원하는 한, 형벌적용법원의 대심절차에서 또는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벌적용부와 형벌적용법원의 대심절차에서 검사의 의견 진술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731조 ① 조건부 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석방된 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원조 및 감독조치와 같은 개별 조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치는 교도행정기관의 지원과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의 협조를 얻어 형벌적용판사가 집행한다.

③ 명령으로 본조에서 정한 조치의 집행 방법과 전항에 규정한 전문 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한 위 조치의 집행비용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제731-1조 ① 조건부 석방의 대상이 된 수형자는 그가 범한 중죄 또는 경죄에 대한 선고에서 보호관찰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또, 본법 제712-21조에 정한 감정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중보건법 제3711-1조 및 그 이하에 규정된 치료명령이 부과된다. 단, 형벌적용법원 또는 형벌적용판사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수형자는 또 제763-10조 내지 제763-14조에 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전자감시에 부쳐질 수 있다.

제732조 ① 조건부 석방 결정문에는 집행 방식을 명시하고, 석방 결정을 받거나 또는 조건부 석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원조 및 감독 조치의 성질과 기간을 정한다. 형벌적용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두 날짜를 지정하고 그 가운데 형벌적용판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석방 지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한다.

② 원조 및 감독 조치의 기간은 정기형에 있어서는 석방 시 잔여기간에 미달할 수 없고, 잔여기간을 넘어도 최대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원조 및 감독조치의 총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집행 중인 형이 무기형인 때, 원조 및 감독조치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정한다.

④ 조건부 석방의 전 기간 동안 결정에서 정한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제730조의 구분에 따라 교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 석방 집행을 지휘하는 형벌적용판사가 변경하거나, 형벌적용판사의 제안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

제732-1조 ①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무기 구금형을 선고 받은 자가 치료 명령과 더불어 조건부 석방된 때에는 보안유치 관할법원은 조건부 석방 기간 이후까지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연장하는 결정을 제706-53-15조에 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형자를 2년의 기간 동안 치료 명령과 더불어 보안감시에 부칠 수 있다.

② 수형자를 보안감시에 부치기 위해서는 치료명령이 재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한 감정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723-3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23-38조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 제733조** ① 새로 형을 선고 받거나, 행형성적이 불량하거나 조건부석방 결정에 정한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부 석방 결정은 제730조의 구분에 따라 교도행정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형벌적용판사가 취소하거나, 제712-6조 또는 제712-7조에 따라 형벌적용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 결정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동안 대상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판명된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제731-1조에 따라 치료명령의 일환으로 제시된 치료 및 의사가 특별히 처방한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 위반으로 본다.
- ③ 조건부 석방이 취소된 자는 취소 결정의 효과로 조건부 석방 당시 잔여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하여야 하고, 새로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복역하여야 한다. 다만, 가체포되어 있던 기간은 이를 형기에 산입한다.
- ④ 전조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 전에 취소가 없었던 때에는 확정적으로 석방된다. 이 경우 조건부 석방일에 형기를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 3 편bis 사회봉사

- 제733-1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일수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결정함에는 제712-6조에 따른 대심을 거쳐야 한다.
- ② 사회봉사의 집행을 일부 종료한 후에도 전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733-2조** ①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형법 제131-9조 및 제131-11조에 따라 관할법원이 선고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집행으로 인하여 사회봉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체된다.

- ② 전항과 같이 결정함에는 제712-6조에 따른 대심을 거쳐야 한다.
- ③ 사회봉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제712-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4 편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 제734조** ①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형법 제132-29조부터 제132-57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또한 형법 제132-60조부터 제132-7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방식은 본편에서 정한다.

제 1 장 단순집행유예

제735조 판결법원이 형법 제132-38조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의 면제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판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형자는 그 후에 집행유예 취소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본 법 제702-1조 및 제703조에 규정된 관할과 절차 규정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한다.

제735-1조 유럽연합 회원국 형사사법기관이 선고한 징역형에 부가된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711조에 따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경죄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 제736조** ① 형의 집행유예는 손해배상의 지급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금지 및 권리박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자격제한, 금지 및 권리박탈은 형법 제132-35조 규정에 따라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법 제131-36-1조에 정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한 일상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직업활동 및 비영리활동의 금지의무가 부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제739조 ①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는 제712-10조에 따라 주거지 관할 형벌적용판사의 감독을 받는다.

② 보호관찰기간 중 선고를 받은 자는 형법 제132-44조에 규정된 감독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 형 선고 시에 혹은 그 이후 어느 때든 제712-8조에 따라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으로 특별히 부과된 형법 제132-45조에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40조 보호관찰기간 중, 선고를 받은 자를 감독하는 형벌적용판사는 스스로 또는 자격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감독 및 원조조치와 그 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한다.

제741조 ① 선고를 받은 자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감독하는 형벌적용판사 앞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712-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41-1조 (1970년 7월 17일 법률 제70-643호)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한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수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의 대상이 된 자는 발견된 곳의 형벌적용판사에게 인치된다. 만약 위 판사가 즉시 그를 신문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인치된다. 선고를 받은 자가 수색명령을 내린 형벌적용판사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조서는 지체 없이 그 판사에게 송부된다.

제742조 ① 선고를 받은 자가 감독조치 또는 제739조를 적용하여 부과된 개별적 의무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 선고를 받은 때, 형벌적용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연장을 명한다. 또, 형법 제132-49조 내지 제132-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유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은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고한다.

③ 본조의 규정은 판결법원이 정한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중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43조 형벌적용판사가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그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744조 ① 선고를 받은 자가 감독 및 원조조치와 제739조에 따라 부과된 개별적 의무를 준수하고 또 사회복귀의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직법원은 그 자에 대하여 형 선고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단, 형벌적용판사는 형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위한 청구를 수리할 수 없고, 직권으로 형 선고의 실효를 판단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결정은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고한다.

제746조 ① 형의 집행정지는 손해배상의 지급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형의 집행정지는 형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금지 및 권리박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자격제한, 금지 및 권리박탈은 제743조 또는 형법 제132-52조의 적용에 의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실효 간주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일상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직업활동 및 비영리활동의 금지의무가 부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효력에 관하여는 형법 제132-52조 및 제132-53조에 따른다.

제 3 장 사회봉사부 집행유예

제747-1조 사회봉사부 집행유예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사회봉사 의무는 특별히 부과된 의무이다.
2. 감독조치는 형법 제132-53조에 열거된 조치로 한다.
3. 제742-1조에 정한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4. 제74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47-1-1조 형벌적용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일수벌금을 사회봉사부 집행유예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선고한다.

제747-2조 ① 형법 제132-57가 적용될 경우 본법 제712-6조 또는 제723-15조에 따라 형벌적용판사가 사건을 수리하여 재판한다.

- ② 사건 수리 후에 형벌적용판사는 실체에 관한 판결이 있기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형벌적용판사가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사회봉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명확히 포기한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명할 수 있다.

제 4 장 형의 선고유예

제747-3조 ① 판결법원이 형법 제132-63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의 감독에 놓인다. 형벌적용판사는 스스로 또는 자격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감독조치의 집행을 확보한다. 이 경우 제741조는 피고인에 대한 감독에 준용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제712-8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개별적 의무를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감독 및 원조조치 또는 개별적 의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벌적용판사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시까지 법원에 청구하여 형벌에 대하여 재판하게 한다.

④ 제712-1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형벌적용판사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형 선고를 받은 자를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일시 수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죄법원에 청구하여 형을 정하게 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를 수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석방한다.

제747-4조 판결법원이 형법 제132-66조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는 스스로 또는 자격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법원이 명한 조치의 집행을 확보한다.

제 5 편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재확인

- 제748조**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하였거나 다시 체포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자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은 공개로 한다.
- ② 새로운 소추 과정 또는 그 기회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추를 수리한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편 환형 유치

제749조 중죄 또는 징역형에 처하는 경죄에 부수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세나 관세에 관한 벌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본편에 정한 바에 따라 환형유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벌금액 또는 그 총액에 대하여 법이 일정한 날짜로 정한 최장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벌적용판사가 정한다.

제750조 환형유치기간은 다음의 구별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2,000유로 이상 4,000유로 이하인 때에는 20일
2. 4,000유로 초과 8,000유로 이하인 때에는 1월
3. 8,000유로 초과 15,000유로 이하인 때는 2월
4. 15,000유로를 넘는 때에는 3월

제751조 행위 시 미성년자였던 자 및 선고 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제752조 모든 방법으로 지급불능을 증명한 자에 대하여는 환형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

제753조 환형유치는 별개의 선고에 따른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부부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제754조 ① 환형유치는 소추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에게 지급 명령이 발령되고 5일 이내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② 형 선고의 판결이 미리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명령의 모두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문을 기재한 판결 초본을 기재한다.

③ 지급명령의 송달이 있고, 그로부터 1년 안에 국고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벌적용판사에게 청구하여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환형유치를 명하게 한다. 형벌적용판사는 이를 위하여 제712-17조에 정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형벌적용판사의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제712-11조에 따른 항고의 대상이 된다. 형벌적용판사는 또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6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환형유치 결정을 연기하면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제758조 환형유치는 구치소의 특별구역에서 이를 집행한다.

제759조 ① 환형유치를 선고 받은 자는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의 지급 또는 공탁으로, 혹은 확실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환형유치를 저지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② 담보는 수납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며, 담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급속심리를 행하는 지방법원장이 확실하고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한다.

- ③ 담보는 1월 이내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제760조의 제한 범위 내에서 잔여 채무에 대한 새로운 환형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60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환형 유치가 종료한 때에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또는 그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환형유치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형의 선고로 인하여 이미 집행된 환형유치보다 장기의 환형유치가 부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이미 집행한 환형유치는 새로운 환형유치에서 공제한다.

제761조 구금된 채무자도 수형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환형유치한다. 단, 노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

제761-1조 환형유치를 받은 자는 이로 인하여 선고를 받은 금액의 지급을 면하지 못한다.

제762조 ① 형벌적용판사가 제754조에 따라 일수벌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752조 및 제753조의 규정은 전항에 적용된다. 제75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지급을 독촉하는 것은 지급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제 7 편 체류금지

제762-1조 형법 제131-31조에 따라 체류금지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선고와 함께 다음 각호에 처한 감시처분 중 1개 또는 수개를 부가할 수 있다.

1. 형 선고 시 정한 공공기관 또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
2. 형 선고 시 정한 제한구역 밖으로의 일체의 이동에 대하여 형벌적용판사에게 보고하는 것
3. 형 선고 시 지정한 기관 또는 자격 있는 자의 소환에 응하는 것

제762-2조 ① 체류금지형을 선고 받은 자는 감독하는 형벌적용판사에게 모든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12-17조의 규정은 체류금지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준용한다.

제762-3조 형법 제131-31조에서 규정하는 원조 조치는 체류금지형을 선고 받은 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62-4조 ① 체류금지형을 선고 받은 자가 주거지로 신고한 곳을 관할하는 형벌적용판사는 원조조치를 실시함과 함께 형 선고 시 정한 감시처분의 준수를 통제한다.

② 체류금지기간 중 언제라도 형벌적용판사는,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신문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712-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금지구역 목록, 감독 및 원조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62-5조 ①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체류금지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체류금지 장소를 관할하는 검사는 그 장소의 체류를 8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토지관할권 있는 형벌적용판사에게 결정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체류금지 형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중에 반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정지의 이익을 받고 있는 기간은 체류 금지형의 형기에 산입한다.

제763조 중죄에 관하여 선고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또한 확정적으로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직계상속인이 거주하는 道 내 체류가 금지된다.

제 7 편bis 보호관찰⁴⁶⁾

제763-1조 형법 제131-36-1조 내지 제131-36-8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보호관찰 형을 받은 자는 주거지 관할 형벌적용판사 또는 프랑스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1심 선고 법원의 관할구역 내 형벌적용판사의 감독을 받는다. 형벌적용판사는 또 교도행정기관에게 위임하여 수형자에게 부과된 의무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40조의 규정은 본조에 적용된다.

제763-2조 보호관찰 형을 받은 자는 형벌적용판사에게 그에게 부과된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63-3조 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형벌적용판사는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신문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형법 제131-36-2조 및 제131-36-3조에 정한 조치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46) suivi socio-judiciaire

- ② 전항의 결정은 가집행할 수 있고, 제712-11조 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고지한 때로부터 수형자, 검사 또는 검사장이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 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형별 적용판사는 석방에 앞서 감정인에게 치료의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감정 결과 치료 가능성이 확인된 때에는 형별적용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형별적용판사는 수형자에게 어떤 치료도 그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으나, 만약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31-36-1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이 경우 전2항이 규정이 준용된다.
- ④ 형별적용판사는 또 제763-10조에 정한 검사를 시행한 후 수형자를 전자 감시에 부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형별적용판사는 수형자에게 전자감시는 그의 동의 없이는 집행될 수 없으나, 만약 수형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 감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1-36-1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이 경우 전2항이 규정이 준용된다.
- ⑤ 수형자가 제706-53-13조에 정한 중죄를 범하여 15년 이상의 구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형별적용판사는 제723-30조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가택구금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된다.

제763-4조 ① 치료명령이 포함된 보호관찰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에 뒤이어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형별적용판사는 석방 이전에 대상자에 대한 의학감정을 명할 수 있다. 위 감정은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형별적용판사는 그 외에, 보호관찰의 전 기간 동안 제763-6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의학·심리학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감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본조에 정한 감정은, 형벌적용판사가 이유를 붙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의 감정인에 의해 실시된다.

제763-5조 ① 형법 제131-36-2조 및 제131-36-3조에서 규정한 의무나 치료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적용판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기하여 판결 법원이 형법 제131-36-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결정함에는 제712-6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대상자가 치료명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712-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지정된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치료명령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치료의 시작 또는 계속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무 위반으로 본다.

- ④ 보호관찰 형에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형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또 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이 누적된 징역형은 형 선고 시에 확정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63-6조 ① 보호관찰 형을 선고 받은 자는 형을 선고한 법원 또는 선고 법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선고한 법원에 그 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죄법원이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중죄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청구한다.

- ② 전항의 청구는 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관할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없다. 1차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후의 청구는 기각 결정이 있는 해의 다음 해부터 제기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 ③ 취소 청구는 형벌적용판사를 경유하며, 형벌적용판사는 의학감정을 명한 후 관할법원에 감정 결과와 이유를 붙인 의견서를 제출한다.

- ④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 살인 또는 모살이나 강간·고문·가혹행위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감정은 2인의 감정인이 시행한다.
- ⑤ 관할법원은 제703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판결한다.
- ⑥ 관할법원은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무의 일부만을 취소해 줄 수 있다.
- ⑦ 수형자가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형벌적용판사는 수형자를 신문하고 검사의 의견과 의학전문가의 견해를 참조하여 제712-8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치료명령을 포함한 보호관찰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제763-7조 ① 치료명령이 포함된 보호관찰 형을 선고 받은 자가 자유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형은 제718조 제2항에 규정된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며, 이 경우 그 시설은 적합한 의학·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형벌적용판사는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즉시 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거듭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형의 집행정지·분할, 감시 없는 외부구금, 반자유조치의 경우, 보호관찰에 수반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제763-8조 ① 제706-53-13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15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 형이 선고된 때에는 보안유치 관할법원은 형법 제131-36-1조에 정한 한도 내에서 선고 법원이 정한 기간 이상으로 부과된 의무를 연장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06-53-15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를 2년의 기간 동안 보안감시에 부친다.

② 본법 제723-37조 제2항 내지 제7항 및 제723-38조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된다.

③ 보호관찰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조건부 석방하는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63-9조 본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 7 편ter 보안조치의 일종인 전자감시

제763-10조 ① 형법 제131-36-9조 내지 제131-36-12조를 적용하여 전자감시에 처한 수형자를 석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석방 예정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 평가를 위해 감정인에게 위탁하여 감정하게 한다.

② 전항의 감정은 형벌적용판사가 집행하며, 제763-14조에 정한 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보안조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2-16조 및 제712-16-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감정 결과를 참조하여 형벌적용판사는 제712-6조에 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수형자를 전자감시에 부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경죄에 대해서는 1회, 중죄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④ 형벌적용판사는 수형자에게 전자감시는 그의 동의 없이는 집행될 수 없으나, 만약 수형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감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1-36-1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다.

⑤ 형벌적용판사는 전자감시 기간 종료 6월 전에 본조 제3항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자감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전자감시는 종료한다.

제763-11조 전자감시 기간 동안 형벌적용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수형자의 청구,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청구에 기하여 전자감시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변경·보완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63-12조 ① 전자감시에 부처진 수형자는 전자감시 기간 동안, 국토 전역 어디에서든 원거리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전향의 기계장치는 늦어도 석방 1주일 전에는 수형자에게 부착한다.

③ 본조에 정한 기계장치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하고, 대상자의 존엄성,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법엄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763-13조 ① 원거리 위치추적에 처한 사실은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에 정한 국가사법정보에 등재된다.

② 중죄 또는 경죄 관련 범죄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향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제763-14조 ① 본편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특히 제763-10조 제1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제763-13조에 정한 정보 및 제763-12조에 정한 기계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또, 전자감시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장치가 분리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추어 감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제763-13조에 정한 사법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특히, 보존 기간에 대하여 국참사원령에 명시함에는 정보와 자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8 편 전과기록부⁴⁷⁾

제768조 국가전산전과기록부는 1개 또는 수개의 처리센터를 운영하며, 법무부

47) le casier judiciaire

장관의 감독 하에 둔다. 국가전산전과기록부는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자연인에 관한 신원확인부에 따라 동일성 검사를 한 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아래 사항을 입력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신분확인에 이용할 수 없다.

1. 중죄, 경죄, 5급 위경죄에 대하여 대심 또는 궐석재판으로 형이 선고되고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한 것. 여기에는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수반한 유죄 선고가 포함된다. 다만, 형법 제132-59조에 따라 제1호 표⁴⁸⁾에 등재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주형 또는 부가형으로서 금지, 권리박탈 및 자격제한의 조치가 수반된 4급 위경죄 이하에 대한 형 선고로 대심 또는 궐석재판을 경료하고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한 것
3. 소년법에 관한 1945년 2월 2일 개정 명령 제45-174호 제8조, 제15조, 제15-1조, 제16조, 제16조 bis 및 제28조에 따른 결정
4.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자격제한이 부과되거나 또는 자격제한을 명한 것
5. 상법 제653-8조에 따른 권리박탈 또는 청산과 자연인에 대한 파산 결정
6. 父權의 박탈이나 철회 또는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을 선고하는 판결
7. 외국인에 대한 추방 명령
8. 외국 법원의 형 선고로서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에 통지된 것 또는 형 선고를 받은 자를 프랑스에 이송하여 집행한 기록
9. 검사가 집행 명령한 형사 조정
10.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 판결 또는 결정. 제706-135조에 따라 직권으로 병원에 수용하도록 한 것이나 제706-136조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보안조치가 부과된 것에 한한다.

48) bulletin n. 1

제768-1조 ① 국가전산전과기록부에는 법인에 대하여 상업등기부 및 영업소등기부로 동일성 검사를 한 후 다음 사항을 입력한다.

1. 모든 형사법원에서 중죄, 경죄, 5급 위경죄에 대하여 대심 또는 궐석재판으로 형이 선고되고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한 것
 2. 주형 또는 부가형으로서 금지, 권리박탈 및 자격제한의 조치가 수반된 4급 위경죄 이하에 대한 형 선고로 대심 또는 궐석재판을 경료하고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한 것
 3.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수반한 유죄판결. 선고유예에 부가된 형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4. 외국법원의 형 선고로서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에 통지된 것
- ② 본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제769조 ① 전과기록부에는 선고된 형, 형의 선고유예 후에 선고된 형, 형 면제·사면·감형 또는 형의 감경, 제1차 형 선고의 집행정지 또는 이를 명하는 결정, 제713-3조 제2항 또는 제713-6조 제1항을 적용한 결정, 조건부 석방 및 그 취소 결정, 형 집행 정지 결정, 추방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형기 종료일과 벌금 납부 완료일을 기재한다.

- ② 보안감시 또는 보안유치 결정과 이들 조치의 갱신 결정도 전항과 같다.
- ③ 일반사면 대상이 된 것과 전과기록의 정정 결정에 따라 정정된 기록은 전과기록부에서 삭제한다. 40년 전에 선고된 형으로서 그 이후 중죄 또는 경죄 형으로서 갱신되지 않은 기록도 이와 같다. 단,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 선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사항도 전과기록부에서 삭제한다.

1. 상법 제653-8조에 정한 개인파산 또는 금지조치를 선고하는 재판으로서,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중국판결 또는 복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한 것과 자연인에 대하여 재판상 청산을 선고하는 재판

으로서 확정 후 5년을 경과한 것 또는 복권 판결이 선고된 것. 단, 개인파산 또는 금지조치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만료 시까지 전과기록부 카드의 기재를 유지한다.

2. 복권에 의해 취소된 징계 결정

3. (폐지)

4. 형 면제를 수반하는 유죄선고로서 판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것

5. 위경죄에 대한 형 선고로서 재판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것. 경죄를 재범으로 범한 경우에는 이 기간은 4년으로 한다.

6. 형사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것. 단, 이 기간 동안 중죄 또는 경죄로 형이 선고되거나 새로운 형사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1945년 2월 2일 명령 제45-174호 제8조, 제15조, 제15-1조, 제16조, 제16조bis 및 제28조에 정한 조치의 선고 기록으로 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것. 단, 이 기간 동안 중죄 또는 경죄로 형이 선고되거나 형사조정에 회부되거나, 같은 명령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복권 대상이 된 형 선고로서 판결 법원이 제798조 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의 삭제를 명한 것

9.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또는 결정으로서 제706-135조에 따라 직권으로 치료시설에 수용한 명령이 종료한 경우나 제706-136조에 따라 선고한 보안조치가 실효된 경우

제769-1조 ① 제769조 제1항에 정한 변경 결정은 법인 전과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② 제769조 제3항은 법인에 대한 형 선고에 준용한다.

제770조 ①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판결이 있고 그 자에 대한 재교육이

달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법원은 당해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소년의 청구에 기하여 전과기록부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이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년법원은 최종심으로 재판한다. 전과기록 말소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초 형 선고 기록은 더 이상 전과기록부에 현출시켜서는 안 되며, 그에 관한 기록 일체를 폐기한다.

③ 최초 소추가 행하여진 법원, 소년의 현 주거지 법원 및 출생지 법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④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고된 형은 그 자의 사회복귀가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복역을 마쳐야 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때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한 부가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⑤ 전항이 적용될 경우에 형 선고를 확인하는 기록의 말소 청구는 제77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관할 및 절차 규정에 따른다.

제771조 국가전산전과기록부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 출생증서를 찾을 수 없는 자,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768조에 정한 형 선고·결정·판결·명령도 기재한다.

제772조 ① 병역의무에 복무하는 자에 대한 형 선고 또는 병적 편입조건을 변경하는 취지의 결정은 전과기록부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군 당국에 통지한다.

② 제769조 및 제77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카드 또는 전과기록부에 대하여 행하려는 일체의 수정 조치에 관하여도 이를 군 당국에 통지한다.

제773조 선거권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을 선고 받은 자의 신원은 국가전산 전과기록부에서 국립통계청으로 전달된다.

제773-1조 ① 중죄 또는 경죄로 인한 자유형 선고를 증명하는 기록부 사본은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찰 범죄경력부에 송부된다. 위 범죄경력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는 사법당국, 경찰 및 헌병대에 한한다.

② 일반사면의 대상이 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으로 또는 법적으로 복권된 형 선고 기록은 전항의 범죄경력부에서 삭제한다.

제774조 ① 동일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과기록부 정보카드의 전체 명세는 제1호 표로 불리는 표에 기입된다.

② 제1호 표는 사법당국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③ 전과기록부에 정보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 제1호 표에 <無>라고 기재한다.

제774-1조 ① 동일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과기록부 정보카드의 전체 명세는 제1호 표에 기입되며 위 표는 국내 사법당국에만 교부할 수 있다. 단, 상호주의 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 과기록부에 정보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제1호 표에 <無>라고 기재한다.

제775조 ① 다음에 정한 재판과 관계되는 정보카드를 제외하고, 동일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과기록부 정보카드의 전체 명세는 제2호 표⁴⁹⁾로 한다.

1. 범죄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개정 명령 제45-174호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5-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라 선고된 결정

49) bulletin n. 2

2. 제775-1조에 따라 제2호 표 기재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형의 선고
3. 위경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형 선고
4. 단순 또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형 선고로서 형 선고가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단, 형법 제131-36-1조에 따라 보호관찰 형이 선고되거나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직업적 또는 비영리활동 금지 형이 선고된 자에 대하여는 그 조치 기간 동안 제2호 표에 계속 기재하여 둔다.
5. 일반사면의 대상이 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으로 또는 법적으로 복권된 형 선고
6. 군사법원법 제255-22조가 적용되는 형 선고
7. (폐지)
8. (폐지)
9. 친권박탈 선고 조치
10. 추방명령으로서 폐지 또는 취소된 것
11. 형법 제131-5조 내지 제131-11조가 적용되어 그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형의 선고로서, 확정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것. 일수벌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제131-10조 및 제31-11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금지, 권리박탈 또는 자격제한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제2호 표에 계속 기재하여 둔다.
12.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수반한 유죄판결
13. 외국 법원에 의한 형 선고
14. 제768조에 정한 형사조정
15. 특별히 이유를 붙여 판사가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제4권 제4편에 정한 경죄로 인한 형 선고
 - ② 선거인 명부 등재에 관한 이의제기의 경우에 교부하는 제2호 표에는 투표권 행사자격의 상실에 관한 결정만을 기재한다.
 - ③ 제2호 표에 기재하여야 할 재판에 관한 정보카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無>라고 기재한다.

제775-1 A조 ① 다음에 정한 재판과 관계되는 정보카드를 제외하고,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과기록부 정보카드의 전체 명세는 제2호 표로 한다.

1. 제775-1조에 따라 제2호 표 기재가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형의 선고
2. 위경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형 선고 및 3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
3. 집행유예를 수반하는 형 선고로서 형 선고가 무효로 간주되는 경우
4. 형 면제 또는 선고유예. 선고유예에 부가된 형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5. 외국 법원에 의한 형 선고

② 전과기록부 중 제2호 표에 기재하여야 할 재판에 관한 정보카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표는 <無>라고 기재한다.

제775-1조 ①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판결선고 시에 또는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청구에 기하여 제702-1조 및 제703조에 정한 관할 및 절차에 따라 선고된 결정에서, 형 선고의 제2호 표 기재를 명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② 전향과 같이 배제되는 것에는 형 선고로부터 기인하는 일체의 금지, 권리 박탈, 또는 자격상실도 포함된다.

③ 본조의 규정은 제706-47조에 정한 범죄행위로 형 선고를 받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본조의 규정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 또는 무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775-2조 법률 상 복권 대상이 되지 않는 형 선고를 받은 자도 조건부 석방 이후 조건부 석방이 취소되지 않은 때에는 조건부 석방일로부터, 또는 최종적으로 석방된 날로부터 20년 간 중죄 또는 경죄로 새로운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청구로 형 선고의 제2호 표 기재의 배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76조 전과기록부의 제2호 표는 다음의 자에게 교부한다.

1. 공개채용 심사, 훈장 및 서훈 심사, 공사입찰 및 기타 공개입찰 심사, 징계 소추 심사, 사립학교 설립 심사, 전과기록 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기관
 2. 징집병 분류 또는 해군 군적 등록 및 지원병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 기관, 전술한 1985년 1월 25일 법률 제85-98호 제194조에 정한 선거권 행사 관련 이의심사 또는 공무담임권의 결격 사유에 관한 이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
 3. 제779조에 따라 국참사원령으로 작성한 명부에 등재된 법인이나 행정기관, 징계조치나 형 선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법과 명령에서 규정한 직업 활동 및 사회 활동 감독 기구 또는 행정기관
 4. 파산절차 및 재판상 파산 선고를 담당하는 상사법원장과 상업등기부 등기 신청 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판사
 5. 가족 및 사회부조법 제225-2조에 따라 입양 요청을 받은 위원회의 장
 6. 국제협약이나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 제재 또는 징계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경우에 법무부령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기관. 이 경우 전술한 국제협약 당사국 사법기관이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형사제재나 징계조치를 받은 자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의 적용에 관한 유럽 경제구역 조약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가족 및 사회부조법 제312-1조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문화·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공·사법 상 법인 대표자는 전과기록부 제2호 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인에 대한 채용심사 목적에 한정되며, 그 자에게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항이 적용되는 법인 명부는 내무부 장관 및 법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③ 국제협약이나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따라 전과기록부 제2호 표는 본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조약이나 협약 당사국 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776-1조 법인 전과기록부의 제2호 표는 다음의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1. 공사 입찰 및 기타 공개입찰 심사나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 또는 도지사
 2. 농업·광업·수공업 정상화 담당 행정기관
 3. 재판상 회생 또는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상사법원장과 상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업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4. 공적 예금을 청구하는 법인과 관련된 업무에서 증권거래위원회
 5. 국제협약이나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특정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 또는 징계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경우에 법무부령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기관. 이 경우 전술한 국제협약 당사국 사법기관이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형사제재나 징계조치를 받은 자의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의 적용에 관한 유럽경제구역 조약 가입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법인에 대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국제협약이나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따라 법인 전과기록부 제2호 표는 본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조약이나 협약 당사국 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777조 ① 제3호 표⁵⁰⁾는 제2호 표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중죄 또는 경죄 선고의 명세이다.

1.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로서 그 집행이 유예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그 형의 전부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
2. 제1호 표에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로서 법원이 제3호 표 기재를 명한 것
3. 형법 제131조 내지 제131-11조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고 선고된 금지, 권리박탈 또는 자격제한의 선고로서 금지, 권리박탈 또는 자격제한의 기간 중에 있는 것

50) bulletin n. 3

4. 형법 제131-36-1조에 따라 보호관찰 형을 선고하는 결정 또는 미성년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직업 또는 비영리적 활동 금지형으로서 그 집행 중에 있는 것

② 제3호 표는 본인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호 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없다.

제777-1조 형 선고의 제3호 표 기재는 제775-1조 제1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777-2조 ① 누구든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청구하여 그에 대한 전과기록부의 전체명세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② 법인의 경우 전항의 청구는 법률 상 대표자가 그 자격을 증명한 후에, 당해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청구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권한 있는 외교관 또는 검사를 통해 이를 교부한다.

④ 교부는 확정 전 판결 고지의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불복신청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⑤ 명세서 전체에 대한 어떠한 사본도 발급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규정은 경찰 범죄기록부에 준용한다.

제777-3조 ① 국가전산전과기록부와 개인 또는 법무부에 소속되지 아니한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기명 수감자 정보 파일 사이에서는 정보와 데이터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제30조 I-3호에 정의한 어떠한 접근 또는 접속도 할 수 없다.

② 개인 또는 법무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하는 기명수감자

574 제5권 집행절차

정보 파일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 선고 판결 또는 결정을 기재할 수 없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언제든지 형 선고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226-3조에 규정된 경죄에 대한 형으로 이를 처벌한다.

제778조 ① 어떠한 소송절차에서든 신원을 위조하거나 남의 호적을 모용하여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검사 또는 예심판사가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직권으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종결 이전에 필요한 정정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정정 청구는 재판을 한 법원장에게 이를 청구하여 심판하게 하며, 재판이 중죄법원에서 행하여진 것인 때에는 고등법원 예심부에 이를 청구한다.

③ 법원장은 청구서를 검사에게 열람하게 하고 사법관에게 축탁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심리 및 결정은 비공개 평의실에서 행하며, 법원은 형 선고의 대상이 된 자의 소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청구가 인용된 경우, 잘못된 판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절차에 소환되어 있는 때에는 비용도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반대의 경우 또는 지급불능의 경우에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과기록부의 정정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며,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비용 부담을 선고한다.

⑥ 결정 취지는 정정 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또는 결정의 난외에 기재한다.

⑦ 법률상 복권에 관한 이의 또는 제769조 제3항에 정한 일반사면법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송절차에 따른다.

제779조 ① 제768조 내지 제778조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전과

기록부의 제1호 표·제2호 표·제3호 표의 청구, 작성, 교부 요건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② 국참사원령은 또 국가전산전과기록부의 등록 정보를 형사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도 명시한다.

③ 그 외에 국가전산전과기록부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사이의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④ 본조에 정한 국참사원령을 제정함에는 정보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한다.

제781조 ① 누구든 성명과 자격을 위조하여 제3자의 전과기록부 초본을 교부 받은 자는 7,500유로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과기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하거나 또는 하게 할 수 있는 허위의 신원 자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③ 본법 제777-2조에 규정된 전체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자로부터 교부 받은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9편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복권

제782조 프랑스 법원에서 중죄, 경죄, 위경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누구라도 복권될 수 있다.

제783조 ① 복권은 형법 제133-13조 이하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복권과 본편에 규정된 요건 하에서 고등법원 예심부가 허가하는 복권으로 나뉜다.

② 위 모든 경우에 복권으로 인하여 형법 제133-16조에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제 1 장 자연인에 적용되는 규정

제785조 ① 법원에 대한 복권 신청은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생존 중에는 본인 또는 본인이 금치산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② 복권 신청은 그 이전의 복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형 선고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786조 ① 복권 신청은 중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 경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3년, 위경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1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기간은 벌금형 선고에 대하여는 그 선고가 확정된 날, 자유형의 선고에 대하여는 만기 석방일, 형사 후견 형 선고에 대하여는 그 종료일, 조건부 석방의 경우에는 제733조 제4항에 정한 조건부석방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조건부 석방이 취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금형 또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 제재를 주형으로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전항의 기간은 그 형사 제재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787조 ① 법률상 누범인 자, 복권 후 다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대심에 의하여 또는 궐석재판으로 중죄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집행이 면제된 자는 석방 또는 시효 완성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복권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다만, 중죄의 형을 선고 받지 아니한 누범과 복권 후 경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석방 후 6년을 경과한 경우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심에 의하여 또는 궐석재판으로 경죄의 형을 선고 받고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집행이 면제된 자는,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심에 의하여 또는 권석재판으로 형을 선고 받고 시효의 완성으로 그 집행이 면제된 자는 시효 기간 중 중죄 또는 경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타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88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 완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및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 사실 또는 지불 면제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명이 없는 경우 형 선고를 받은 자는 법원이 정하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국고 당국이 그 집행수단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사기파산죄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파산재산의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한 사실 또는 그 변제의 면제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경우에 법원은 복권 신청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 배상 또는 채무 부분을 정한다.

⑤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또는 피해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변제 제공하거나 공탁소에 공탁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을 단순 청구에 기해 공탁자에게 반환한다.

제789조 범죄 후 형을 선고 받은 자가 국가에 현저한 봉사를 한 때에는 기간 및 형의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벌금 및 손해배상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도 복권을 허가할 수 있다.

제790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는 현 주거지 검사에게 복권신청서를 제출한다.

그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프랑스 내 최종 주거지의 검사에게, 그 주거지가 없는 때에는 형 선고를 받은 곳의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형 선고 일자
2. 석방 후 거주한 장소

제791조 ① 검사는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체재한 사실이 있는 각 지역에 일체의 유용한 자료를 조회한다.

② 검사는 그 외에 형벌적용판사의 의견을 구한다.

제792조 ① 검사는 다음 서류의 교부를 요구한다.

1. 형 선고를 한 판결 등본
2.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수형 중 행형성적을 증명하는 구금 장소의 수감기록 초본
3. 전과기록부의 제1호 표

② 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 서류를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제793조 ① 고등법원은 고등검사장을 통하여 복권 신청을 수리한다.

② 신청인은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94조 고등법원은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을 듣거나 이를 정식으로 소환한 후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들어 2월 이내에 재판한다.

제795조 고등법원 예심부의 결정에 대하여 본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796조 제789조가 적용되는 경우 복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벌금 및 소송비용 없이 심리하고 재판한다. 모든 소송 서류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비는 무료로 한다.

제797조 복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다시 2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간 미달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미달 기간이 만료된 때 이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제798조 ① 복권을 선고하는 결정은 형 선고를 한 판결의 난외에 이를 기입한다.
 ② 전과기록부 제2호 표와 제3호 표에 기재된 형 선고 판결문에는 전항의 난외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 복권을 결정하면서 전과기록부에서 그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는 제1호 표에 기록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복권된 자는 무상으로 복권결정 등본 및 전과기록부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장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제798-1조 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복권 신청은 법률상의 대표자가 한다.
 ② 복권 신청은 형사 제재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복권 신청을 함에는 형 선고일자 및 형 선고 후에 발생한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 전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 대표자는 본점 소재지 검사에게 복권 신청서를 제출한다. 본점이 외국에 있는 때에도 형을 선고한 법원의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④ 검사는 법인에 대한 형 선고의 판결 등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전과기록부

제1호 표의 교부를 청구한다. 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들 서류를 고등검사장에게 송부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제788조의 규정과 제793조 내지 제798조의 규정은 형 선고를 받은 법인의 복권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797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10 편 소송비용

제800조 중죄, 경죄 및 위경죄의 소송비용이라는 명칭 하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은 국참사원령으로 이를 정한다. 위 명령은 비용의 액수, 그 지급 및 징수 방법, 불복 방법을 정하고, 비용 수취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결정하며 중죄, 경죄 및 위경죄의 소송비용 일체에 대한 통칙을 둔다.

제800-1조 ① 이와 반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죄, 경죄 및 위경죄의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며, 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구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소청구인 구성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제177-2조 또는 제212-2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소청구인이 신청한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예심부 또는 예심판사의 명령으로 본편에 정한 바에 따라 사소청구인이 지급하게 한다. 단, 사소청구인이 사법구조를 받는 자이거나 형법 제2권에 정한 사람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0-2조 ① 불기소, 형 면제 또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형사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형사보상금은 국가에게 지급책임이 있다. 다만, 공소가 사소청구인에 의해 제기된 경우 사소청구인이 지급 책임을 질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의 적용 요건은 국참사원령으로 정한다.

통 칙

제801조 어느 행위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마지막 날 만료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은 그 다음 최초의 평일에 만료된다.

제802조 법률이 이에 위반하는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위반한 경우 또는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의 청구를 수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인지한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은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무효를 선고한다.

제803조 ①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 대하여도 수갑 또는 족갑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수갑 또는 족갑을 찬 경우에도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는 안전의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수갑 또는 족갑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03-1조 본법을 적용하여 변호사에게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통지절차를 경료하여야 하는 경우, 통지는 영수증이 첨부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 기록이 남는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에 통지할 수 있다.

부 록

▶▶▶ 프랑스 형사소송법 원문

Code de procédure pénale

Partie législative

Article préliminaire

I. - La procédure pénale doit être équitable et contradictoire et préserver l'équilibre des droits des parties.

Elle doit garantir la séparation des autorités chargées de l'action publique et des autorités de jugement.

Les personnes se trouvant dans des conditions semblables et poursuivies pour les mêmes infractions doivent être jugées selon les mêmes règles.

II. - L'autorité judiciaire veille à l'information et à la garantie des droits des victimes au cours de toute procédure pénale.

III. - Toute personne suspectée ou poursuivie est présumée innocente tant que sa culpabilité n'a pas été établie. Les atteintes à sa présomption d'innocence sont prévenues, réparées et réprim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Elle a le droit d'être informée des charges retenues contre elle et d'être assistée d'un défenseur.

Les mesures de contraintes dont cette personne peut faire l'objet sont prises sur décision ou sous le contrôle effectif de l'autorité judiciaire. Elles doivent être strictement limitées aux nécessités de la procédure, proportionnées à la gravité de l'infraction reprochée et ne pas porter atteint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Il doit être définitivement statué sur l'accusation dont cette personne fait l'objet dans un délai raisonnable.

Toute personne condamnée a le droit de faire examiner sa condamnation par une autre juridiction.

Titre préliminaire : De l'action publique et de l'action civile

Article 1

L'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s peines est mise en mouvement et exercée par les magistrats ou par les fonctionnaires auxquels elle est confiée par la loi.

Cette action peut aussi être mise en mouvement par la partie lésée,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e présent code.

Article 2

L'action civile en réparation du dommage causé par un crime, un délit ou une contravention appartient à tous ceux qui ont personnellement souffert du dommage directement causé par l'infraction. La renonciation à l'action civile ne peut arrêter ni suspendre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sous réserve des cas visés à l'alinéa 3 de l'article 6.

Article 2-1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se proposant par ses statuts de combattre le racisme ou d'assister les victimes de discrimination fondée sur leur origine nationale, ethnique, raciale ou religieus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d'une part, les discrimin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du code pénal et l'établissement ou la conservation de fichiers réprimés par l'article 226-19 du même code, d'autre part,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les menaces, les vols, les extorsions et les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qui ont été commis au préjudice d'une personne à raison de son origine nationale, de son appartenance ou de sa non-appartenance, vraie ou supposée, à une ethnie, une race ou une religion déterminée.

Toutefois, lorsque l'infraction aura été commise envers une personne considérée individuellement,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personne intéressée ou, si celle-ci est mineure, l'accord du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lorsque cet accord peut être recueilli.

Article 2-2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dont l'objet statutaire comporte la lutte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ou contre les violences exercées sur un membre de la famill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les agressions et autres atteintes sexuelles, l'enlèvement et la séquestration et la violation de domicile réprimés par les articles 221-1 à 221-4, 222-1 à 222-18, 222-23 à 222-33, 224-1 à 224-5, 226-4 et 432-8 du code pénal, lorsque la victime de ces infractions était majeure à la date des faits.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Si celle-ci est un majeur en tutelle, l'accord doit être donné par son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3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et dont l'objet statutaire comporte la défense ou l'assistance de l'enfant en danger et victime de toutes formes de maltraitanc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et à l'intégrité, les agressions et autres atteintes sexuelles commises sur la personne d'un mineur, y compris incestueuses, et les infractions de mise en péril des mineur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1-1 à 221-5, 222-1 à 222-18-1, 222-23 à 222-33-1, 223-1 à 223-10, 223-13, 224-1 à 224-5, 225-7 à 225-9, 225-12-1 à 225-12-4, 227-1, 227-2, 227-15 à 227-27-1 du code pénal,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Toute association, inscrite auprè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st recevable dans son action même si l'action publique n'a pas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en ce qui concerne l'infraction mentionnée à l'article 227-23 du code pénal.

Il en est de même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222-22 et de l'article 227-27-1 dudit code.

Article 2-4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combattre les crimes contre l'humanité ou les crimes de guerre ou de défendre les intérêts moraux et l'honneur de la Résistance ou des déporté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crimes de guerre et les crimes contre l'humanité.

Article 2-5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défendre les intérêts moraux et l'honneur de la Résistance ou des déporté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soit l'apologie des crimes de guerre ou des crimes ou délits de collaboration avec l'ennemi, soit les destructions ou dégradations de monuments ou les violations de sépultures, soit les délits de diffamation ou injures, qui ont causé un préjudice direct ou indirect à la mission qu'elle remplit.

Article 2-6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se proposant par ses statuts de combattre les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e sexe ou sur les mœur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iscrimin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du code pénal,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raison du sexe, de la situation de famille ou des mœurs de la victime, et par l'article L. 123-1 du code du travail.

Toutefois,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123-1 du code du travail et à l'article 6 ter de la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écrit de la personne intéressée, ou, si celle-ci est mineure et après l'avis de cette dernière, celui du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L'association peut égalemen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as d'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ou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et de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1-1 à 221-4, 222-1 à 222-18 et 322-1 à 322-13 du

code pénal, lorsque ces faits ont été commis en raison du sexe ou des mœurs de la victime, dès lors qu'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un mineur ou un majeur protégé, celui de son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7

En cas de poursuites pénales pour incendie volontaire commis dans les bois, forêts, landes, maquis, garrigues, plantations ou reboisements,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peuven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vue d'obtenir le remboursement, par le condamné, des frais qu'elles ont exposés pour lutter contre l'incendie.

Article 2-8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ayant, en vertu de ses statuts, vocation à défendre ou à assister les personnes malades ou handicapée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iscrimin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du code pénal, lorsqu'elles sont commises en raison de l'état de santé ou du handicap de la victime.

En outre,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l'association pourra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l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les agressions et autres atteintes sexuelles, le délaissement, l'abus de vulnérabilité, le bizutage, l'extorsion, l'escroquerie, les destructions et dégradations et la non-dénonciation de mauvais traitement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1-1 à 221-5, 222-1 à 222-18, 222-22 à 222-33-1, 223-3 et 223-4, 223-15-2, 225-16-2, 312-1 à 312-9, 313-1 à 313-3, 322-1 à 322-4 et 434-3 du code pénal lorsqu'ils sont commis en raison de l'état de santé ou du handicap de la victime.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un mineur ou un majeur protégé, celui de son représentant légal.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ayant, en vertu de ses statuts, vocation à défendre ou à assister les personnes handicapées peut égalemen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à

590 프랑스 형사소송법

l'article L. 111-7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prévues et réprimées par l'article L. 152-4 du même code.

Article 2-9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assister les victimes d'infraction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Article 2-10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ayant, en vertu de ses statuts, vocation à lutter contre l'exclusion sociale ou culturelle des personnes en état de grande pauvreté ou en raison de leur situation de famill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iscrimin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du code pénal.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un mineur ou un majeur protégé, celui de son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11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et inscrite auprès de l'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es de guerr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défendre les intérêts moraux et l'honneur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es de guerre et des morts pour la Franc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égradations ou destructions de monuments ou les violations de sépultures, qui ont causé un préjudice direct ou indirect à la mission qu'elle remplit.

Article 2-12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combattre la délinquance routière et de défendre ou d'assister les victimes de cette délinquanc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élits d'homicide ou blessures involontaires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automobile terrestre à moteur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mineure, celui du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13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et dont l'objet statutaire est la défense et la protection des animaux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réprimant l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t les mauvais traitements envers les animaux ainsi que les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d'un animal prévus par le code pénal.

Article 2-14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se proposant par ses statuts la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 et agréé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des textes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 3, 4, 6, 7 et 10 de la loi n° 94-665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Article 2-15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ayant pour objet statutaire la défense des victimes d'un accident survenu dans les transports collectifs ou dans un lieu ou local ouvert au public ou dans une propriété privée à usage d'habitation ou à usage professionnel et regroupant plusieurs de

ces victimes peut, si elle a été agréée à cette fin,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cet accident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ssociations visées au premier alinéa peuvent être agréées, après avis du ministère public, compte tenu de leur représentativité, sont fixées par décret. Toute fédération d'associations,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et inscrite auprè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ont l'objet statutaire est la défense des victimes d'accidents collectif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un accident collectif survenu dans les circonstanc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Article 2-16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lutter contre la toxicomanie ou le trafic de stupéfiant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et par l'article 227-18-1 du code pénal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Article 2-17

Toute association reconnue d'utilité publique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et se proposant par ses statuts de défendre et d'assister l'individu ou de défendre les droits et libertés individuels et collectifs peut, à l'occasion d'actes commis par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dans le cadre d'un mouvement ou organisation ayant pour but ou pour effet de créer, de maintenir ou d'exploiter une sujétion psychologique ou physique,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contre l'espèce humaine, d'atteintes volontaires ou involontaires à la vie ou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de mise en danger de la personne, d'atteinte aux libertés de la personne, d'atteint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d'atteinte à la personnalité, de mise en péril des mineurs ou

d'atteintes aux bie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14-1 à 214-4, 221-1 à 221-6, 222-1 à 222-40, 223-1 à 223-15, 223-15-2, 224-1 à 224-4, 225-5 à 225-15, 225-17 et 225-18, 226-1 à 226-23, 227-1 à 227-27, 311-1 à 311-13, 312-1 à 312-12, 313-1 à 313-3, 314-1 à 314-3, 324-1 à 324-6 et 511-1-2 du code pénal, les infractions d'exercice illégal de la médecine ou de la pharmacie prévues par les articles L. 4161-5 et L. 4223-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les infractions de publicité mensongère, de fraudes ou de falsific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L. 121-6 et L. 213-1 à L. 213-4 du code de la consommation.

Article 2-18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défendre ou d'assister les victimes d'accidents du travail ou de maladies professionnelle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1-6, 222-19 et 222-20 du code pénal commises à l'occasion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mineure, celui du titulaire de l'autorité parentale ou du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19

Toute association départementale des maires régulièrement déclarée, affiliée à l'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et dont les statuts ont été déposés depuis au moins cinq an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dans toutes les instances introduites par les élus municipaux à la suite d'injures, d'outrages, de diffamations, de menaces ou de coups et blessures à raison de leurs fonctions.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 élu.

Article 2-20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qui se propose, par ses statuts, de défendre les intérêts moraux et matériels des locataires, propriétaires et bailleurs d'immeubles collectifs à usage d'habitation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as d'atteintes volontaires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ou de destruction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2-1 à 222-18 et 322-1 à 322-13 du code pénal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lésée et 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un immeuble faisant partie de son objet associatif.

Toutefois, l'association ne sera recevable dans son action que si elle justifie avoir reçu l'accord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un mineur ou un majeur protégé, celui de son représentant légal.

Article 2-21

Toute association agréée déclarée depuis au moins trois ans, ayant pour but l'étude et la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éologique,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faits réprimés par l'article 322-3-1 du code pénal et portant un préjudice direct ou indirect aux intérêts collectifs qu'elle a pour objet de défendr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ssociation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peuvent être agréées.

Article 3

L'action civile peut être exercée en même temps que l'action publique et devant la même juridiction.

Elle sera recevable pour tous chefs de dommages, aussi bien matériels que corporels ou moraux, qui découleront des faits objets de la poursuite.

Article 4

L'action civile en réparation du dommage causé par l'infraction prévue par l'article 2 peut être exercée devant une juridiction civile, séparément de l'action publique.

Toutefois, il est sursis au jugement de cette action tant qu'il n'a pas été prononcé définitivement sur l'action publique lorsque celle-ci a été mise en mouvement. La mise en mouvement de l'action publique n'impose pas la suspension du jugement des autres actions exercées devant la juridiction civile, de quelque nature qu'elles soient, même si la décision à intervenir au pénal est susceptible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e influence sur la solution du procès civil.

Article 4-1

L'absence de faute pénale non intentionnelle au sens de l'article 121-3 du code pénal ne fait pas obstacle à l'exercice d'une action devant les juridictions civiles afin d'obtenir la réparation d'un dommag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383 du code civil si l'existence de la faute civile prévue par cet article est établie ou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452-1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si l'existence de la faute inexcusable prévue par cet article est établie.

Article 5

La partie qui a exercé son action devant la juridiction civile compétente ne peut la porter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Il n'en est autrement que si celle-ci a été saisie par le ministère public avant qu'un jugement sur le fond ait été rendu par la juridiction civile.

Article 5-1

Même si le demandeur s'est constitué partie civil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la juridiction civile, saisie en référé, demeure compétente pour ordonner toutes mesures provisoires relatives aux faits qui sont l'objet des poursuites, lorsque l'existence de l'obligation n'est pas sérieusement contestable.

Article 6

L'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peine s'éteint par la mort du prévenu, la prescription, l'amnistie, l'abrogation de la loi pénale et la chose jugée.

Toutefois, si des poursuites ayant entraîné condamnation ont révélé la fausseté du jugement ou de l'arrêt qui a déclaré l'action publique éteinte, l'action publique pourra être reprise ; la prescription doit alors être considérée comme suspendue depuis le jour où le jugement ou arrêt était devenu définitif jusqu'à celui de la condamnation du coupable de faux ou usage de faux. Elle peut, en outre, s'éteindre par transaction lorsque la loi en dispose expressément ou par l'exécution d'une composition pénale ;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retrait de plainte, lorsque celle-ci est une condition nécessaire de la poursuite.

Article 6-1

Lorsqu'un crime ou un délit prétendument commis à l'occasion d'une poursuite judiciaire impliquerait la violation d'une disposition de procédure pénale, l'action publique ne peut être exercée que si le caractère illégal de la poursuite ou de l'acte accompli à cette occasion a été constaté par une décision devenue définitive de la juridiction répressive saisie.

Le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court à compter de cette décision.

Article 7

En matière de crime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13-5 du code pénal, l'action publique se prescrit par dix années révolues à compter du jour où le crime a été commis si, dans cet intervalle, il n'a été fait aucun acte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S'il en a été effectué dans cet intervalle, elle ne se prescrit qu'après dix années révolues à compter du dernier acte.

Il en est ainsi même à l'égard des personnes qui ne seraient pas impliquées dans cet acte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Le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47 du présent code et le crime prévu par l'article 222-10 du code pénal, lorsqu'ils sont commis sur des mineurs, est de vingt ans et ne commence à courir qu'à partir de la majorité de ces derniers.

Article 8

En matière de délit,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st de trois années révolues ; elle

s'accomplit selon les distinctions spécifiées à l'article précédent.

Le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des délits mentionnés à l'article 706-47 et commis contre des mineurs est de dix ans ; celui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2, 222-30 et 227-26 du code pénal est de vingt ans ; ces délai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partir de la majorité de la victime.

Article 9

En matière de contravention,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st d'une année révolue ; elle s'accomplit selon les distinctions spécifiées à l'article 7.

Article 10

Lorsque l'action civile est exercée devant une juridiction répressive, elle se prescrit selon les règles de l'action publique.

Lorsqu'elle est exercée devant une juridiction civile, elle se prescrit selon les règles du code civil. Lorsqu'il a été statué sur l'action publique, les mesures d'instruction ordonnées par le juge pénal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obéissent aux règles de la procédure civile.

Livre Ier : De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et de l'instruction

Titre Ier : Des autorités chargées de l'action publique et de l'instruction

Article 11

Sauf dans le cas où la loi en dispose autrement et sans préjud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la procédure au cours de l'enquête et de l'instruction est secrète. Toute personne qui concourt à cette procédure est tenue au secret professionnel dans les conditions et sous les peines des articles 226-13 et 226-14 du code pénal.

Toutefois, afin d'éviter la propagation d'informations parcellaires ou inexactes ou pour mettre fin à un trouble à l'ordre public,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office et à la demande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s parties, rendre publics des éléments objectifs tirés de la procédure ne comportant aucune appréciation sur le bien-fondé des charges retenues contre les personnes mises en cause.

Article 11-1

Sur 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selon les cas, peuvent être communiqués à des autorités ou organismes habilités à cette fin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pris le cas échéant après avis du ou des ministres intéressés, des éléments des procédures judiciaires en cours permettant de réaliser des recherches ou enquêtes scientifiques ou techniques, destinées notamment à prévenir la commission d'accidents, ou de faci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ou la prise en charge de la réparation de leur préjudice.

Les agents de ces autorités ou organismes sont alors tenus au secret professionnel en ce qui concerne ces informations, dans les conditions et sous les peines des articles 226-13 et 226-14 du code pénal.

Chapitre Ier : De la police judiciaire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12

La police judiciaire est exercée,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officiers, fonctionnaires et agents désignés au présent titre.

Article 12-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ont le libre choix des formations auxquelles appartiennen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13

La police judiciaire est placée, dans chaque ressort de cour d'appel, sous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 et sous le contrôl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formément aux articles 224 et suivants.

Article 14

Elle est chargée, suivant les distinctions établies au présent titre,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d'en rassembler les preuves et d'en rechercher les auteurs tant qu'une information n'est pas ouverte.

Lorsqu'une information est ouverte, elle exécute les délégations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éfère à leurs réquisitions.

Article 15

La police judiciaire comprend :

- 1°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
- 2°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
- 3°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auxquels sont attribuées par la loi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15-1

Les catégories de services ou unités dans lesquels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visés aux sections II et III du présent chapitre exercent leurs fonctions habituelles, les modalités de création de ces services ou unités ainsi que leurs critères de compétence territoriale sont détermin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sur le rapport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ministre intéressé.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e ces services ou unités s'exerce,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par ce décret, soi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soit sur une ou plusieurs zones de défense, ou parties de celles-ci, soit sur l'ensemble d'un département.

Article 15-2

Les enquêtes administratives relatives au comportement d'un officier ou d'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ans l'exercice d'une mission de police judiciaire associent l'inspection générale des services judiciaires au service d'enquête compétent.

Elles peuvent être ordonnées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et sont alors dirigées par un magistrat.

Article 15-3

La police judiciaire est tenue de recevoir les plaintes déposées par les victimes d'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et de les transmettre, le cas échéant, au service ou à l'unité de police judiciair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Tout dépôt de plainte fait l'objet d'un procès-verbal et donne lieu à la délivrance immédiate d'un récépissé à la victime.

Si elle en fait la demande, une copie du procès-verbal lui est immédiatement remise.

Section 2 :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16

Ont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

- 1° Les maires et leurs adjoints ;

- 2° Les officiers et les gradés de la gendarmerie, les gendarmes comptant au moins trois ans de service dans la gendarmerie, nominativement désignés par arrêté des ministres de la justice et de l'intérieur,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
- 3° Les inspecteurs généraux, les sous-directeurs de police active, les contrôleurs généraux, les commissaires de police et les officiers de police ;
- 4° Les fonctionnaires du corps d'encadrement et d'application de la police nationale comptant au moins trois ans de services dans ce corps, nominativement désignés par arrêté des ministres de la justice et de l'intérieur,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La composition des commissions prévues aux 2° et 4° sera déterminé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sur le rapport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ministres intéressés.

Ont également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s personnes exerçant des fonctions de directeur ou sous-directeur de la police judiciaire relevant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e directeur ou sous-directeur de la gendarmerie au ministère des armées.

Les fonctionnaires mentionnés aux 2° à 4° ci-dessus ne peuvent exercer effectivement les attributions attachées à leur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i se prévaloir de cette qualité que s'ils sont affectés à un emploi comportant cet exercice et en vertu d'une décision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les y habilitant personnellement. L'exercice de ces attributions est momentanémen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ils participent, en unité constituée, à une opération de maintien de l'ordre.

Lorsqu'ils appartiennent à un service dont la compétence excède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la décision d'habilitation est prise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u siège de leur fonction. Toutefois, les fonctionnaires visés au 4° ne peuvent recevoir l'habilitation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que s'ils sont affectés soit dans un service ou une catégorie de services détermin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5-1 et figurant sur une liste fixée par arrêté des ministres de la justice et de l'intérieur, soit, à titre exclusif, dans une formation d'un service mentionnée par le même arrêté. Les conditions d'octroi, de retrait et de suspension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de l'habilitation prévue par le précédent alinéa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sur le rapport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ministres intéressés.

Article 16-1

Dans le mois qui sui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refus, de suspension ou de retrait d'habilita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de rapporter cette décision. Le procureur général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un mois. A défaut, son silence vaut rejet de la demande.

Article 16-2

Dans le délai d'un mois à partir du rejet explicite ou implicite de la demande prévue à l'article précéden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former un recours devant une commission composée de trois magistrats du siège de la Cour de cassation ayant le grade de président de chambre ou de conseiller. Ces magistrats sont désignés annuellement, en même temps que trois suppléants, par le bureau de la Cour de cassation.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remplies par le parquet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16-3

La commission statue par une décision motivée.

Les débats ont lieu et la décision est rendue en chambre du conseil.

Le débat est oral ; le requérant peut être entendu personnellement sur sa demande ou celle de son conseil ; il peut être assisté de son conseil.

La procédure devant la commission est fixée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17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xercent les pouvoirs définis à l'article 14 ; ils reçoivent les plaintes et dénonciations ; ils procèdent à des enquêtes préliminair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5 à 78.

En cas de crimes et délits flagrants, ils exercent les pouvoirs qui leur sont conférés par les articles 53 à 67.

Ils ont le droit de requérir directement le concours de la force publique pour l'exécution de leur mission.

Article 18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nt compétence dans les limites territoriales où ils exercent leurs fonctions habituelle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mis temporairement à disposition d'un service autre que celui dans lequel ils sont affectés, ont la même compétence territoriale que cell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u service d'accueil.

En cas de crime ou délit flagran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se transporter dans le ressort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limitrophes du tribunal ou des tribunaux auxquels ils sont rattachés, à l'effet d'y poursuivre leurs investigations et de procéder à des auditions, perquisitions et saisies.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linéa, les ressor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situés dans un même département sont considérés comme un seul et même ressort.

Les ressor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anterre, Bobigny et Créteil sont considérés comme un seul et même ressor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sur commission rogatoire expresse du juge d'instruction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ises au cours d'une enquête préliminaire ou d'une enquête de flagrance, procéder aux opérations prescrites par ces magistrats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Ils sont tenus d'être assistés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i le magistrat dont ils tiennent la commission ou la réquisition le décid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est informé par le magistrat ayant prescrit l'opération.

Avec l'accord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concerné,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sur commission rogatoire expresse du juge d'instruction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céder à des auditions sur le territoire d'un Etat étranger.

Ils peuvent, sur proposition d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dont ils dépendent et par habilitation du procureur général, recevoir compétence dans les mêmes limites de compétence territoriale que celles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qu'ils sont appelés à suppléer en cas de besoin.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xerçant habituellement leur mission dans les

604 프랑스 형사소송법

véhicules affectés au transport collectif de voyageurs ou dans les lieux destinés à l'accès à ces moyens de transport sont compétents pour opérer sur l'étendue de la zone de défense de leur service d'affectation, dans d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19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sont tenus d'informer sans déla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s crimes, délits et contraventions dont ils ont connaissance.

Dès la clôture de leurs opérations, ils doivent lui faire parvenir directement l'original ainsi qu'une copie certifiée conforme des procès-verbaux qu'ils ont dressés ; tous actes et documents y relatifs lui sont en même temps adressés ; les objets saisis sont mis à sa disposition.

Les procès-verbaux doivent énoncer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eur rédacteur.

Article 19-1

La notation par le procureur général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habilité est prise en compte pour toute décision d'avancement.

Section 3 :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20

Son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

- 1° Les gendarmes n'ayant pas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
- 2° Les fonctionnaires titulaires du corps d'encadrement et d'application de la police nationale n'ayant pas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fonctionnaires visés aux 4° et 5° ci-après ;
- 3° (Abrogé)
- 4° Les gardiens de la paix issus de l'ancien corps des gradés et gardiens de la police nationale nommés stagiaires avant le 31 décembre 1985, lorsqu'ils comptent au moins deux ans de services en qualité de titulaires et ont satisfait aux épreuves d'un examen techniqu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ou détiennent les

qualifications professionnelles permettant l'accès au grade supérieur ;

- 5° Les gardiens de la paix issus de l'ancien corps des enquêteurs de police, nommés stagiaires avant le 1er mars 1979, lorsqu'ils comptent au moins deux ans de services en qualité de titulaires et remplissent les conditions d'aptitude prévues par la loi n° 78-788 du 28 juillet 1978 portant réforme de la procédure pénale sur la police judiciaire et le jury d'assises ou ont satisfait aux épreuves d'un examen techniqu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ou détiennent les qualifications professionnelles permettant l'accès au grade supérieur.

Toutefois, les fonctionnaires mentionnés aux 1° à 5° ci-dessus ne peuvent exercer effectivement les attributions attachées à leur qualité d'agent de police judiciaire et se prévaloir de cette qualité que s'ils sont affectés à un emploi comportant cet exercice ; l'exercice de ces attributions est momentanément suspendu pendant le temps où ils participent, en unité constituée, à une opération de maintien de l'ordre.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ont pour mission :

De seconder,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

De constater les crimes, délits ou contraventions et d'en dresser procès-verbal ;

De recevoir par procès-verbal les déclarations qui leur sont faites par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leur fournir des indices, preuves et renseignements sur les auteurs et complices de ces infractions.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n'ont pas qualité pour décider des mesures de garde à vue.

Article 20-1

L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et les militaires de la gendarmerie nationale à la retraite ayant eu durant leur activité la qualité d'officier ou d'agent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bénéficier de la qualité d'agent de police judiciaire lorsqu'ils sont appelés au titre de la réserve civile de la police nationale ou au titre de la réserve opérationnel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Il précise les conditions d'expérience et les qualités requises pour bénéficier de la qualité d'agent de police judiciaire au titre du présent article.

Article 21

Son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

- 1° Les fonctionnaires des services actifs de police nationale ne remplissant pa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0 ;
- 1° bis Les volontaires servant en qualité de militaire dans la gendarmerie ;
- 1° ter Les adjoints de sécurité mentionnés à l'article 36 de la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
- 1° quater Les agents de surveillance de Paris ;
- 1° quinquies Les militaires servant au titre de la réserve opérationnell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ne remplissant pa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0-1 ;
- 2° Les agents de police municipale ;
- 3° Les gardes champêtres, lorsqu'ils agissent pour l'exercice des attributions fixée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2213-18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ls ont pour mission :

De seconder,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

De rendre compte à leurs chefs hiérarchiques de tous crimes, délits ou contraventions dont ils ont connaissance ;

De constater, en se conformant aux ordres de leurs chefs,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et de recueillir tous les renseignements en vue de découvrir les auteurs de ces infractions, le tout dans le cadre et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s lois organiques ou spéciales qui leur sont propres ;

De constater par procès-verbal les contraventions aux dispositions du code de la route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orsqu'ils constatent une infraction par procès-verbal,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peuvent recueillir les éventuelles observations du contrevenant.

Article 21-1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ont compétence dans les limites territoriales où ils exercent leurs fonctions habituelles ainsi que dans celles où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responsable du service de la police nationale ou de l'unité de gendarmerie

auprès duquel ils ont été nominativement mis à disposition temporaire exerce ses fonctions. Lorsqu'ils secondent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ils ont compétence dans les limites territoriales où ce dernier exerce ses attribution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8.

Article 21-2

Sans préjudice de l'obligation de rendre compte au maire qu'ils tiennent de l'article 21, les agents de police municipale rendent compte immédiatement à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nationale ou de la gendarmerie nationa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e tous crimes, délits ou contraventions dont ils ont connaissance.

Ils adressent sans délai leurs rapports et procès-verbaux simultanément au maire et, par l'intermédiair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mentionnés à l'alinéa précéde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ction 4 : Des fonctionnaires et agents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Paragraphe 1er : Des ingénieur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et des gardes champêtres

Article 22

Les ingénieurs, le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et les gardes champêtres recherchent et constatent par procès-verbaux les délits et les contraventions qui portent atteinte aux propriétés forestières ou rurales.

Article 23

Le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et les gardes champêtres des communes suivent les choses enlevées dans les lieux où elles ont été transportées et les mettent sous séquestre.

Ils ne peuvent cependant pénétrer dans les maisons, ateliers, bâtiments, cours adjacentes et enclos, qu'en présenc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ne peut se refuser à les accompagner et

608 프랑스 형사소송법

qui signe le procès-verbal de l'opération à laquelle il a assisté.

Article 24

Le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et les gardes champêtres des communes conduisent devant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 individu qu'ils surprennent en flagrant délit.

Les chefs de district et les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peuvent, dans l'exercice des fonctions visées à l'article 22, requérir directement la force publique ; les gardes champêtres peuvent se faire donner main-forte par le maire, l'adjoint ou le commandant de brigade de gendarmerie qui ne pourront s'y refuser.

Article 25

Le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ainsi que les gardes champêtres, peuvent être requ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e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fin de leur prêter assistance.

Article 26

Les chefs de district et agents techniques des eaux et forêts remettent à leur chef hiérarchique les procès-verbaux constatant des atteintes aux propriétés forestières.

Article 27

Les gardes champêtres adressent leurs rapports et leurs procès-verbaux simultanément au maire et, par l'intermédiair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ou de la gendarmerie national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 envoi au destinataire doit avoir lieu dans les cinq jours au plus tard, y compris celui où ils ont constaté le fait, objet de leur procès-verbal.

Paragraphe 2 : Des fonctionnaires et agents des administrations et services publics

Article 28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des administrations et services publics auxquels des lois spéciales attribuent certains pouvoirs de police judiciaire exercent ces pouvoirs dans les conditions et dans les limites fixées par ces lois.

Article 28-1

I. - Des agents des douanes de catégories A et B, spécialement désignés par arrêté des ministres chargés de la justice et du budget, pris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dont la composition et le fonctionnement sont détermin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euvent être habilités à effectuer des enquêtes judiciaires sur réqui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du juge d'instruction.

Ces agents ont, pour l'exercice des miss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compétence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Ils sont compétents pour rechercher et constater :

- 1°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code des douanes ;
- 2° L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contributions indirectes, d'escroquerie sur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et de vols de biens culturels ;
- 3° Les infraction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 l'Union européenne ;
- 4°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L. 2339-1 à L. 2339-11, L. 2344-7 et L. 2353-13 du code de la défense ;
- 5°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324-1 à 324-9 du code pénal ;
- 6° Les infractions prévues a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7° L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56 et 57 de la loi n° 2010-476 du 12 mai 2010 relative à l'ouverture à la concurrence et à la régulation du secteur des jeux d'argent et de hasard en ligne ;
- 8° Les infractions connexes aux infractions visées aux 1° à 7°.

Toutefoi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II, ils n'ont pas compétence en matière de trafic de stupéfiants.

610 프랑스 형사소송법

- II. - Pour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du code pénal et des infractions qui leur sont connex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eut constituer des unités temporaires composées d'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d'agents des douanes pris parmi ceux mentionnés au 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désigne le chef de chaque unité qu'il constitue. Les unités temporaires agissent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mandan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Elles ont compétence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 III. - (Abrogé).

- IV. - Les agents des douanes désign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 doivent, pour mener des enquêtes judiciaires et recevoir des commissions rogatoires, y être habilités personnellement en vertu d'une décision du procureur général.

La décision d'habilitation est prise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u siège de leur fonction. Elle est accordée, suspendue ou retiré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ans le mois qui sui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suspension ou de retrait de l'habilitation, l'agent concerné peut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de rapporter cette décision. Le procureur général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un mois. A défaut, son silence vaut rejet de la demande.

Dans un délai d'un mois à partir du rejet de la demande, l'agent concerné peut former un recours devant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16-2.

La procédure applicable devant cette commission est celle prévue par l'article 16-3 et ses textes d'application.

- V. - Pour l'exercice des missions mentionnées aux I et II, les agents des douanes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us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 et sous le contrôl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u siège de leur fon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4 à 230.

- VI. - Lorsque, sur réqui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agents des douanes mentionnés aux I et II procèdent à des enquêtes judiciaires, il est fait application des articles 54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55-1, 56, 57 à 62, 63 à 67, 75 à 78.

Lorsque ces agents agissent sur commission rogatoire d'un juge d'instruction, il est également fait application des articles 152 à 155. Ces agents sont autorisés à déclarer comme domicile l'adresse du siège du service dont ils dépendent.

Au cours des procédures confiées sur réquisition ou commission rogatoire à ces agents,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00 à 100-7, 122 à 136, 694 à 695-3, 706-28, 706-30-1 et 706-73 à 706-106 sont applicables ; lorsque ces agents agissent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80 à 706-87, ils sont également compétents en matière d'infractions douanières de contrebande de tabac manufacturé, d'alcool et de spiritueux et de contrefaçon de marque, ainsi que pour celles prévues à l'article 415 du code des douanes et aux articles L. 716-9 à L. 716-11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es agents peuvent être assistés par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706 et 706-2 agissant sur délégation des magistrats. Ces agents peuvent également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titre XXIX du livre IV au cours des enquêtes judiciaires et sur commissions rogatoires qui leur sont confiées. Par dérogation à la règle fixée au 2 de l'article 343 du code des douanes, l'action pour l'application des sanctions fiscales peut être exercée par le ministère public, en vu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 VII. - Les agents des douanes mentionnés aux I et II sont placés sous la direction administrative d'un magistrat de l'ordre judiciaire selon des modalité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 VIII. - Les agents de l'administration des douanes mentionnés aux I et II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exercer d'autres attributions ou accomplir d'autres actes que ceux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dans le cadre des faits dont ils sont saisis par l'autorité judiciaire.

Article 28-2

- I. - D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de catégories A et B, spécialement désignés par arrêté des ministres chargés de la justice et du budget, pris après avis conforme d'une commission dont la composition et le fonctionnement sont déterminé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euvent être habilités à effectuer des enquêtes judiciaires sur réqui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du juge d'instruction. Ces agents ont compétence uniquement pour rechercher et constater,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741 et 1743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orsqu'il existe des présomptions caractérisées qu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ces articles résultent d'une des conditions prévues aux 1° à 3° de l'article L. 228 du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 II. - L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désign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 doivent, pour mener des enquêtes judiciaires et recevoir des commissions rogatoires, y être habilités personnellement en vertu d'une décision du procureur général. La décision d'habilitation est prise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u siège de leur fonction. Elle est accordée, suspendue ou retiré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ans le mois qui sui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suspension ou de retrait de l'habilitation, l'agent concerné peut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de rapporter cette décision. Le procureur général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un mois. A défaut, son silence vaut rejet de la demande. Dans un délai d'un mois à partir du rejet de la demande, l'agent concerné peut former un recours devant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16-2 du présent code. La procédure applicable devant cette commission est celle prévue par l'article 16-3 et ses textes d'application.
- III. - L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habilit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I sont placés exclusivement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us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 et sous le contrôl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4 à 230. Ils sont placés au sein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 IV. - Lorsque, sur réqui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habilit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I du présent article procèdent à des enquêtes judiciaires,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54 et des articles 55-1, 56, 57 à 62, 63 à 67 et 75 à 78 du présent code. Lorsque ces agents agissent sur commission rogatoire d'un juge d'instruction, il est également fait application des articles 100 à 100-7 et 152 à 155. Ces agents sont autorisés à déclarer comme domicile l'adresse du siège du service dont ils dépendent.

- V. - L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habilit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I du présent article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exercer d'autres attributions ou accomplir d'autres actes que ceux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dans le cadre des faits dont ils sont sais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toute autre autorité judiciaire.
- VI. - Les agents des services fiscaux habilit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II ne peuvent participer à une procédure de contrôle de l'impôt prévue par le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pendant la durée de leur habilitation. Ils ne peuvent effectuer des enquêtes judiciaires dans le cadre de faits pour lesquels ils ont participé à une procédure de contrôle de l'impôt avant d'être habilités à effectuer des enquêtes. Ils ne peuvent, même après la fin de leur habilitation, participer à une procédure de contrôle de l'impôt dans le cadre de faits dont ils avaient été sais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toute autre autorité judiciaire au titre de leur habilitation.

Paragraphe 3 : Des gardes particuliers assermentés

Article 29

Les gardes particuliers assermentés constatent par procès-verbaux tous délits et contraventions portant atteinte aux propriétés dont ils ont la garde.

Les procès-verbaux sont remis ou envoyés par lettre recommandée directeme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 envoi doit avoir lieu, à peine de nullité, dans les trois jours au plus tard, y compris celui où ils ont constaté le fait, objet de leur procès-verbal.

Article 29-1

Les gardes particuliers mentionnés à l'article 29 sont commissionnés par le propriétaire ou tout autre titulaire de droits sur la propriété qu'ils sont chargés de surveiller.

Ils doivent être agréés par le préfet du département dans lequel se situe la propriété désignée dans la commission.

Ne peuvent être agréés comme gardes particuliers :

614 프랑스 형사소송법

- 1° Les personnes dont le comportement es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ces fonctions, en particulier si elles ne remplissent pas les conditions de moralité et d'honorabilité requises, au vu notamment des mentions portées au bulletin n° 2 de leur casier judiciaire ou dans les traitements automatisés de données personnelles mentionnés à l'article 21 de la loi n° 2003-239 du 18 mars 2003 pour la sécurité intérieure ;
- 2° Les personnes qui ne remplissent pas les conditions d'aptitude technique,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sont exigées pour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
- 3° Les ag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15 (1° et 2°) et 22 ;
- 4° Les personnes membres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ssociation qui les commissionne, ainsi que les propriétaires ou titulaires de droits réels sur les propriétés gardées.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notamment les modalités d'obtention de l'agré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celui-ci peut être suspendu ou retiré, les conditions d'assermentation des gardes particuliers, les principaux éléments de leur tenue ainsi que les conditions d'exercice de leurs missions,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hapitre Ier bis : Des attributions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Article 30

Le ministre de la justice conduit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déterminée par le Gouvernement.

Il veille à la cohérence de son applica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 cette fin, il adresse aux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es instructions générales d'action publique.

Il peut dénoncer au procureur général l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dont il a connaissance et lui enjoindre, par instructions écrites e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ngager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ou de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de telles réquisitions écrites que le ministre juge opportunes.

Chapitre II : Du ministère public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31

Le ministère public exerce l'action publique et requiert l'application de la loi.

Article 32

Il est représenté auprès de chaque juridiction répressive.

Il assiste aux débats des juridictions de jugement ; toutes les décisions sont prononcées en sa présence.

Il assure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Article 33

Il est tenu de prendre des réquisitions écrites conformes aux instructions qui lui sont donn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36, 37 et 44.

Il développe librement les observations orales qu'il croit convenables au bien de la justice.

Section 2 : Des attributions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Article 34

Le procureur général représente en personne ou par ses substituts le ministère public auprès la cour d'appel et auprès de la cour d'assises instituée au siège de la cour d'appel,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5 du code forestier et de l'article 446 du code rural.

Il peut, dans les mêmes conditions, représenter le ministère public auprès des autres cours d'assises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Article 35

Le procureur général veille à l'application de la loi pénale dans toute l'étendue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et au bon fonctionnement des parquets de son ressort.

616 프랑스 형사소송법

A cette fin, il anime et coordonne l'action des procureurs de République, en ce qui concerne tant la prévention que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ainsi que la conduite de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par les parquets de son ressort.

Sans préjudice des rapports particuliers qu'il établit soit d'initiative, soit sur demande du procureur génér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dresse à ce dernier un rapport annuel sur l'activité et la gestion de son parquet ainsi que sur l'application de la loi.

Le procureur général a,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e droit de requérir directement la force publique.

Article 36

Le procureur général peut enjoindre aux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par instructions écrites e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ngager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ou de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de telles réquisitions écrites que le procureur général juge opportunes.

Article 37

Le procureur général a autorité sur tous les officiers du ministère public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Article 38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sont placés sous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 Il peut les charger de recueillir tous renseignements qu'il estime utiles à 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Section 3 : D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39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présente en personne ou par ses substituts le ministère public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5 du code forestier et de l'article 446 du code rural.

Il représente également en personne ou par ses substituts le ministère public auprès de la cour d'assises instituée au siège du tribunal.

Il représente de même, en personne ou par ses substituts, le ministère public auprès du tribunal de police ou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rticle 45 du présent code.

Article 39-1

Dans le cadre de ses attributions en matière d'alternative aux poursuites, de mise en mouvement et d'exercice de l'action publique, de direction de la police judiciaire, de contrôle d'identité et d'exécution des pein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veille à la prévention d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A cette fin, il anime et coordonn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a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dans sa composante judiciaire, conformément aux orientations nationales de cette politique déterminées par l'Etat, telles que précis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en application de l'article 35.

Il est également consulté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avant que ce dernier n'arrête le plan de prévention de la délinquance.

Article 40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çoit les plaintes et les dénonciations et apprécie la suite à leur donn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40-1.

Toute autorité constituée, tout officier public ou fonctionnaire qu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acquiert la connaissance d'un crime ou d'un délit est tenu d'en donner avis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e transmettre à ce magistrat tous les renseignements, procès-verbaux et actes qui y sont relatifs.

Article 40-1

Lorsqu'il estime que les faits qui ont été portés à sa connaissanc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0 constituent une infraction commise par une personne dont l'identité et le domicile sont connus et pour laquelle aucune disposition légale ne fait obstacle à la mise en mouvement

618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l'action publi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écide s'il est opportun :

- 1° Soit d'engager des poursuites ;
- 2° Soit de mettre en oeuvre une procédure alternative aux poursuit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1-1 ou 41-2 ;
- 3° Soit de classer sans suite la procédure dès lors que les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liées à la commission des faits le justifient.

Article 40-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vise les plaignants et les victimes si elles sont identifiées, ainsi que les personnes ou autorités mentionné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0, des poursuites ou des mesur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qui ont été décidées à la suite de leur plainte ou de leur signalement.

Lorsqu'il décide de classer sans suite la procédure, il les avise également de sa décision en indiquant les raisons juridiques ou d'opportunité qui la justifient.

Article 40-3

Toute personne ayant dénoncé des fait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ormer un recours auprès du procureur général contre la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prise à la suite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6, enjoind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ngager des poursuites. S'il estime le recours infondé, il en informe l'intéressé.

Article 40-4

Lorsque la victime souhait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t demande la désignation d'un avocat après avoir été informée de ce droit en application du 3° des articles 53-1 et 75,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visé par l'officier ou l'agent de police judiciaire, s'il décide de mettre l'action publique en mouvement, en informe sans délai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Dans le cas contraire, il indique à la victime, en l'avisant du classement de sa plainte, qu'elle

peut directement adresser sa demande de désignation auprès du bâtonnier si elle maintient son intention d'obtenir la réparation de son préjudice.

Article 4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cède ou fait procéder à tous les actes nécessaires à la recherche et à la poursuite des 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A cette fin, il dirige l'activité des officiers et agents de la police judiciaire dans le ressort de son tribu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ntrôle les mesures de garde à vue.

Il visite les locaux de garde à vue chaque fois qu'il l'estime nécessaire et au moins une fois par an ; il tient à cet effet un registre répertoriant le nombre et la fréquence des contrôles effectués dans ces différents locaux.

Il adresse au procureur général un rapport concernant les mesures de garde à vue et l'état des locaux de garde à vue de son ressort ; ce rapport est transmis au garde des sceaux.

Le garde des sceaux rend compte de l'ensemble des informations ainsi recueillies dans un rapport annuel qui est rendu public.

Il a tous les pouvoirs et prérogatives attachés à la qualité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vus par la section II du chapitre Ier du titre Ier du présent livre, ainsi que par des lois spéciales.

En cas d'infractions flagrantes, il exerce les pouvoirs qui lui sont attribués par l'article 6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requérir, suivant les cas,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le service compétent de l'éducation surveillée ou toute personne habilit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81, sixième alinéa, de vérifier l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d'une personne faisant l'objet d'une enquête et de l'informer sur les mesures propres à favoriser l'insertion sociale de l'intéressé.

Ces diligences doivent être prescrites avant toute réquisition d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en cas de poursuites contre un majeur âgé de moins de vingt et un ans au moment de la commission de l'infraction, lorsque la peine encourue n'excède pas cinq ans d'emprisonnement, et en cas de poursuites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immédiate prévue aux articles 395 à 397-6 ou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prévue

aux articles 495-7 à 495-13.

A l'exception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19 et 27 de l'ordonnance n° 45-2658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n cas de poursuites pour une infraction susceptible d'entraîner à son encontre le prononcé d'une mesur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d'un étranger qui déclare, avant toute saisine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se trouver dans l'une des situ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0-1 ou 131-30-2 du code pé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 peut prendre aucune réquisition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s'il n'a préalablement requis, suivant les ca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péte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le service compétent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ou toute personne habilitée dans les conditions de l'article 81, sixième alinéa, afin de vérifier le bien-fondé de cette déclar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recourir à une association d'aide aux victimes ayant fait l'objet d'un conventionnement de la part des chefs de la cour d'appel, afin qu'il soit porté aide à la victime de l'infraction.

Article 41-1

S'il lui apparaît qu'une telle mesure est susceptible d'assurer la réparation du dommage causé à la victime, de mettre fin au trouble résultant de l'infraction ou de contribuer au reclassement de l'auteur des fai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préalablement à sa décision sur l'action publique,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n délégué ou d'un médiateur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1° Procéder au rappel auprès de l'auteur des faits d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a loi ;
- 2° Orienter l'auteur des faits vers une structure sanitaire, sociale ou professionnelle ; cette mesure peut consister dans l'accomplissement par l'auteur des faits, à ses frais, d'un stage ou d'une formation dans un service ou un organisme sanitaire, social ou professionnel, et notamment d'un stage de citoyenneté, d'un stage de responsabilité parentale ou d'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 en cas d'infraction commise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cette mesure peut consister dans l'accomplissement, par l'auteur des faits, à ses frais, d'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

- 3° Demander à l'auteur des faits de régulariser sa situation au regard de la loi ou des règlements ;
- 4° Demander à l'auteur des faits de réparer le dommage résultant de ceux-ci ;
- 5° Faire procéder, à la demande ou avec l'accord de la victime, à une mission de médiation entre l'auteur des faits et la victime.

En cas de réussite de la médi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médiateur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dresse procès-verbal, qui est signé par lui-même et par les parties, et dont une copie leur est remise ; si l'auteur des faits s'est engagé à verser des dommages et intérêts à la victime, celle-ci peut, au vu de ce procès-verbal, en demander le recouvrement suivant la procédure d'injonction de payer, conformément aux règle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civile.

La victime est présumée ne pas consentir à la médiation pénale lorsqu'elle a saisi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515-9 du code civil en raison de violences commises par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le partenaire avec lequel elle est lié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6° En cas d'infraction commise soit contre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soit contre ses enfants ou ceux de son conjoint, concubin ou partenaire, demander à l'auteur des faits de résider hors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u couple et, le cas échéant, de s'abstenir de paraître dans ce domicile ou cette résidence ou aux abords immédiats de celui-ci, ainsi que, si nécessaire, de faire l'objet d'une prise en charge sanitaire, sociale ou psychologique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6°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ncien conjoint ou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a personne ayant été liée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 domicile concerné étant alors celui de la victime.

La procédure prévue au présent article suspend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n cas de non-exécution de la mesure en raison du comportement de l'auteur des fai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uf élément nouveau, met en oeuvre une composition pénale ou engage des poursuites.

Article 41-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ant que l'action publique n'a pas été mise en mouvement, peut proposer,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une composition pénale à une personne physique qui reconnaît avoir commis un ou plusieurs délits punis à titre de peine principale d'une peine d'amende ou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ainsi que, le cas échéant, une ou plusieurs contraventions connexes qui consiste en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suivantes :

1° Verser une amende de composition au Trésor public.

Le montant de cette amende, qui ne peut excéder le montant maximum de l'amende encourue, est fixé en fonction de la gravité des faits ainsi que des ressources et des charges de la personne.

Son versement peut être échelonné, selon un échéancier fix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intérieur d'une période qui ne peut être supérieure à un an ;

2° Se dessaisir au profit de l'Etat de la chose qui a servi ou était destinée à commettre l'infraction ou qui en est le produit ;

3° Remettre son véhicule, pour une période maximale de six mois, à des fins d'immobilisation ;

4° Remettre au 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on permis de conduire, pour une période maximale de six mois ;

5° Remettre au 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on permis de chasser, pour une période maximale de six mois ;

6° Accomplir au profit de la collectivité, notamment au sein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ou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s, un travail non rémunéré pour une durée maximale de soixante heures,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supérieur à six mois ;

7° Suivre un stage ou une formation dans un service ou un organisme sanitaire, social ou professionnel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trois mois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supérieur à dix-huit mois ;

8° Ne pas émettre, pour une durée de six mois au plus,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et

ne pas utiliser de cartes de paiement ;

- 9° Ne pas paraître, pour une durée qui ne saurait excéder six mois, dans le ou les lieux dans lesquels l'infraction a été commise et qui sont désigné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xception des lieux dans lesquels la personne réside habituellement ;
- 10° Ne pas rencontrer ou recevoir, pour une durée qui ne saurait excéder six mois, la ou les victimes de l'infraction désign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ne pas entrer en relation avec elles ;
- 11° Ne pas rencontrer ou recevoir, pour une durée qui ne saurait excéder six mois, le ou les coauteurs ou complices éventuels désigné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ne pas entrer en relation avec eux ;
- 12° Ne pas quitter le territoire national et remettre son passeport pour une durée qui ne saurait excéder six mois ;
- 13° Accomplir, le cas échéant à ses frais, un stage de citoyenneté ;
- 14° En cas d'infraction commise soit contre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soit contre ses enfants ou ceux de son conjoint, concubin ou partenaire, résider hors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u couple et, le cas échéant, s'abstenir de paraître dans ce domicile ou cette résidence ou aux abords immédiats de celui-ci, ainsi que, si nécessaire, faire l'objet d'une prise en charge sanitaire, sociale ou psychologique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14°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ncien conjoint ou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a personne ayant été liée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 domicile concerné étant alors celui de la victime ;
- 15° Accomplir, le cas échéant à se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aux dangers de l'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
- 16° Se soumettre à une mesure d'activité de jour consistant en la mise en oeuvre d'activités d'insertion professionnelle ou de mise à niveau scolaire soit auprès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ublic, soit auprès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privé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d'une association habilitées à mettre en oeuvre une telle mesure ;

624 프랑스 형사소송법

17° Se soumettre à une mesure d'injonction thérapeutique, selon les modalités définies aux articles L. 3413-1 à L. 3413-4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orsqu'il apparaît que l'intéressé fait usage de stupéfiants ou fait une consommation habituelle et excessive de boissons alcooliques.

Lorsque la victime est identifiée, et sauf si l'auteur des faits justifie de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comm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t également proposer à ce dernier de réparer les dommages causés par l'infraction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supérieur à six mois.

Il informe la victime de cette proposition.

Cette réparation peut consister, avec l'accord de la victime, en la remise en état d'un bien endommagé par la commission de l'infraction.

La proposition de composition pénale émanan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être portée à la connaissance de l'auteur des faits par l'intermédiair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lle fait alors l'objet d'une décision écrite et signée de ce magistrat, qui précise la nature et le quantum des mesures proposées et qui est jointe à la procédure.

La composition pénale peut être proposée dans une maison de justice et du droit.

La personne à qui est proposée une composition pénale est informée qu'elle peut se faire assister par un avocat avant de donner son accord à la propo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dit accord est recueilli par procès-verbal.

Une copie de ce procès-verbal lui est transmise.

Lorsque l'auteur des faits donne son accord aux mesures proposé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par requête le président du tribunal aux fins de validation de la composi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de cette saisine l'auteur des faits et, le cas échéant, la victime.

Le président du tribunal peut procéder à l'audition de l'auteur des faits et de la victime, assistés, le cas échéant, de leur avocat.

Si ce magistrat rend une ordonnance validant la composition, les mesures décidées sont mises à exécution.

Dans le cas contraire, la proposition devient caduque.

La décision du président du tribunal, qui est notifiée à l'auteur des faits et, le cas échéant, à

la victime,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Si la personne n'accepte pas la composition pénale ou si, après avoir donné son accord, elle n'exécute pas intégralement les mesures décidé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et en mouvement l'action publique, sauf élément nouveau.

En cas de poursuites et de condamnation, il est tenu compte, s'il y a lieu, du travail déjà accompli et des sommes déjà versées par la personne.

Les actes tendant à la mise en oeuvre ou à l'exécution de la composition pénale sont interruptifs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L'exécution de la composition pénale éteint l'action publique.

Elle ne fait cependant pas échec au droit de la partie civile de délivrer citation direct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code.

Le tribunal, composé d'un seul magistrat exerçant les pouvoirs conférés au président, ne statue alors que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au vu du dossier de la procédure qui est versé au débat.

La victime a également la possibilité, au vu de l'ordonnance de validation, lorsque l'auteur des faits s'est engagé à lui verser des dommages et intérêts, d'en demander le recouvrement suivant la procédure d'injonction de payer, conformément aux règles prévues par le code de procédure civile.

Les compositions pénales exécutées sont inscrites au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en matière de délits de presse, de délits d'homicides involontaires ou de délits politiques.

Elles sont applicables aux mineurs âgés d'au moins treize an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2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Le président du tribunal peut désigner, aux fins de validation de la composition pénale, tout juge du tribunal ainsi que tout juge de proximité exerçant dans le ressort du tribunal.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41-3

La procédure de composition pénale est également applicable aux contraventions.

La durée de la privation du permis de conduire ou du permis de chasser ne peut dépasser trois

mois, la durée du travail non rémunéré ne peut être supérieure à trente heures, dans un délai maximum de trois mois, et la durée d'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ne peut dépasser elle aussi trois mois. Les mesures prévues par les 9° à 12° de l'article 41-2 ne sont pas applicables. La mesure prévue par le 6° dudi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aux contraventions de la première classe à la quatrième classe. Il en est de même des mesures prévues par les 2° à 5° et 8° de cet article, sauf si la contravention est punie des peines complémentaires visées aux 1° à 5° de l'article 131-16 du code pénal.

La requête en validation est portée, selon la nature de la contravention, devant le juge du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e juge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auf si le juge de proximité est désigné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aux fins de validation de l'ensemble des compositions pénales contraventionnelles.

Article 41-4

Lorsqu'aucune juridiction n'a été saisie ou lorsque la juridiction saisie a épuisé sa compétence sans avoir statué sur la restitution des obje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procureur général est compétent pour décider, d'office ou sur requête, de la restitution de ces objets lorsque la propriété n'en est pas sérieusement contestée.

Il n'y a pas lieu à restitution lorsque celle-ci est de nature à cré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ou lorsqu'une disposition particulière prévoit la destruction des objet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 la décision de non restitution prise pour l'un de ces motifs ou pour tout autre motif, même d'offic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être contestée dans le mois de sa notification par requête de l'intéressé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qu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i la restitution n'a pas été demandée ou décidée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a décision de classement ou de la décision par laquelle la dernière juridiction saisie a épuisé sa compétence, les objets non restitués deviennent propriété de l'Etat,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Il en est de même lorsque le propriétaire ou la personne à laquelle la restitution a été accordée ne réclame pas l'objet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une mise en demeure adressée à son domicile. Les objets dont la restitution est de nature à créer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deviennent propriété de l'Etat,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dès que la décision de non-restitution ne peut plus être contestée, ou dès que le jugement ou l'arrêt de non-restitution est devenu définitif.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ordonner la destruction des biens meubles saisis dont la conservation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orsqu'il s'agit d'objets qualifiés par la loi de dangereux ou nuisibles, ou dont la détention est illicite.

Article 41-5

Lorsqu'au cours de l'enquête la restitution des biens meubles saisis et dont la conservation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s'avère impossible, soit parce que le propriétaire ne peut être identifié, soit parce que le propriétaire ne réclame pas l'objet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une mise en demeure adressée à son dernier domicile conn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autoriser la destruction de ces biens ou leur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aux fins d'aliénatio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en vue de leur aliénation, des biens meubles saisis dont la conservation en nature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a loi, lorsque le maintien de la saisie serait de nature à diminuer la valeur du bien.

S'il est procédé à la vente du bien, le produit de celle-ci est consigné.

En cas de classement sans suite, de non-lieu ou de relaxe, ou lorsque la peine de confiscation n'est pas prononcée, ce produit est restitué au propriétaire des objets s'il en fait la demande. Les ordonnances prises en application des deux premiers alinéas sont motivées et notifiées au ministère public et, s'ils sont connus, au propriétaire ainsi qu'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le bien,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ans les dix jours qui suiven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Cet appel est suspensif.

Le propriétaire et les tiers peu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628 프랑스 형사소송법

Les tiers ne peuvent toutefois pas prétendre à la mise à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4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e droit de requérir directement la force publique.

Article 43

Sont compéten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infraction, celui de la résidence de l'une des personnes soupçonnées d'avoir participé à l'infraction, celui du lieu d'arrestation d'une de ces personnes, même lorsque cette arrestation a été opérée pour une autre cause et celui du lieu de détention d'une de ces personnes, même lorsque cette détention est effectuée pour une autre cause.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 saisi de faits mettant en cause, comme auteur ou comme victime, un magistrat, un avocat, un officier public ou ministériel, un militaire de la gendarmerie nationale, un fonctionnaire de la police nationale, des douanes ou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ou toute autre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ou chargée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qui est habituellement, de par ses fonctions ou sa mission, en relation avec les magistrats ou fonctionnaires de la juridic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office, sur propo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transmettr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près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 plus proche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Cette juridiction est alors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pour connaître l'affaire,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2, 382 et 522.

La décision du procureur général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rticle 44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autorité sur les officiers du ministère public près les tribunaux de police et les juridictions de proximité de son ressort.

Il peut leur dénoncer les contraventions dont il est informé et leur enjoindre d'exercer des poursuites.

Il peut aussi, le cas échéant,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Article 44-1

Pour les contraventions que les agents de la police municipale sont habilités à constater par procès-verbal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2212-5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qui sont commises au préjudice de la commune au titre de l'un de ses biens, le maire peut, tant que l'action publique n'a pas été mise en mouvement, proposer au contrevenant une transaction consistant en la réparation de ce préjudice.

La transaction proposée par le maire et acceptée par le contrevenant doit être homologu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actes tendant à la mise en oeuvre ou à l'exécution de la transaction sont interruptifs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lorsque l'auteur de l'infraction a exécuté dans le délai imparti les obligations résultant pour lui de l'acceptation de la transaction.

La transaction peut également consister en l'exécution, au profit de la commune, d'un travail non rémunéré pendant une durée maximale de trente heures.

Elle doit alors être homologuée, selon la nature de la contravention, par le juge du tribunal de police ou par le juge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orsqu'une de ces contraventions n'a pas été commise au préjudice de la commune mais a été commise sur le territoire de celle-ci, le maire peut propos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rocéder à une des mesures prévues par les articles 41-1 ou 41-3 du présent code.

Il est avis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suite réservée à sa proposi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appliquent aux contraventions de même nature que les agents de la ville de Paris chargés d'un service de police et les agents de surveillance de Paris sont habilités à constater par procès-verbal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L. 2512-16 et L. 2512-16-1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s dispositions s'appliquent également aux contraventions de même nature que les gardes

630 프랑스 형사소송법

champêtres sont habilités à constater par procès-verbal conformément à l'article L. 2213-18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ection 4 : Du ministère public près le tribunal de police e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rticle 45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ccupe le siège du ministère public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

Il peut l'occuper également en toute matiè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il le juge à propos, au lieu et place du commissaire de police qui exerce habituellement ces fonctions.

Toutefois, dans le cas où les infractions forestières sont soumises aux tribunaux de police ou aux juridictions de proximité,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remplies, soit par un ingénieur des eaux et forêts, soit par un chef de district ou un agent technique, désigné par le conservateur des eaux et forêts.

Article 46

En cas d'empêchement du commissaire de police, le procureur général désigne, pour une année entière, un ou plusieurs remplaçants qu'il choisit parmi les commissaires et les commandants ou capitaines de police en résidenc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 titre exceptionnel et en cas de nécessité absolue pour la tenue de l'audience, le juge du tribunal d'instance peut appeler, pour exercer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le maire du lieu où sièg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ou un de ses adjoints.

Article 47

S'il y a plusieurs commissaires de police au lieu où sièg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ocureur général désigne celui qui remplit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48

S'il n'y a pas de commissaire de police au lieu où sièg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ocureur général désigne, pour exercer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un commissaire ou un commandant ou capitaine de police en résidenc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à défaut,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imitrophe situé dans le même département.

Section 5 : Du bureau d'ordre national automatisé des procédures judiciaires

Article 48-1

Le bureau d'ordre national automatisé des procédures judiciaires constitue une application automatisée, placée sous le contrôle d'un magistrat, contenant les informations nominatives relatives aux plaintes et dénonciations reçues par l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ou les juges d'instruction et aux suites qui leur ont été réservées, et qui est destinée à faciliter la gestion et le suivi des procédures judiciaires par les juridictions compétentes, l'information des victimes et la connaissance réciproque entre les juridictions des procédures concernant les mêmes faits ou mettant en cause les mêmes personnes, afin notamment d'éviter les doubles poursuites. Cette application a également pour objet l'exploitation des informations recueillies à des fins de recherches statistiques.

Les données enregistrées dans le bureau d'ordre national automatisé portent notamment sur :

- 1° Les date, lieu et qualification juridique des faits ;
- 2° Lorsqu'ils sont connus,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ou la raison sociale des personnes mises en cause et des victimes ;
- 3° L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décisions sur l'action publique, au déroulement de l'instruction, à la procédure de jugement et aux modalités d'exécution des peines ;
- 4° L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a situation judiciaire, au cours de la procédure, de la personne mise en cause, poursuivie ou condamnée.

L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bureau d'ordre national automatisé sont conservées, à compter de leur dernière mise à jour enregistrée, pendant une durée de dix ans ou, si elle est supérieure, pendant une durée égale au délai d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ou, lorsqu'une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au délai de la prescription de la peine.

L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procédures suivies par chaque juridiction sont enregistrées sous la responsabilité, selon les ca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es magistrats du siège exerçant des fonctions pénales de la juridi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par les greffiers ou les personnes habilitées qui assistent ces magistrats.

Ces informations sont directement accessibles, pour les nécessités liées au seul traitement des infractions ou des procédures dont ils sont saisis, par les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et les magistrats du siège exerçant des fonctions pénales de l'ensemble des juridictions ainsi que leur greffier ou les personnes habilitées qui assistent ces magistrats.

Elles sont également directement accessibles aux procureurs de la République et aux magistrats du siège exerçant des fonctions pénales des juridic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704, 706-2, 706-17, 706-75, 706-107 et 706-108 pour le traitement de l'ensemble des procédures susceptibles de relever de leur compétence territoriale élargie.

Elles sont de même directement accessibles aux procureurs généraux pour le traitement des procédures dont sont saisies les cours d'appel et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5 et 37.

Sauf lorsqu'il s'agit de données non nominatives exploitées à des fins statistiques ou d'informations relevant de l'article 11-1, les informations figurant dans le bureau d'ordre national automatisé ne sont accessibles qu'aux autorités judiciaires.

Lorsqu'elles concernent une enquête ou une instruction en cour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1 sont applicable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précis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personnes intéressées peuvent exercer leur droit d'accès.

Chapitre III : Du juge d'instruction

Article 49

Le juge d'instruction est chargé de procéder aux informations, ainsi qu'il est dit au chapitre

Ier du titre III.

Il ne peut, à peine de nullité, participer au jugement des affaires pénales dont il a connu en sa qualité de juge d'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exerce ses fonctions au sièg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quel il appartient.

Article 50

Le juge d'instruction, choisi parmi les juges du tribunal, est nommé dans les formes prévues pour la nomination des magistrats du siège.

En cas de nécessité, un autre juge peut être temporairement chargé, dans les mêmes formes, des fonctions de juge d'instruction concurremment avec le magistrat désigné ainsi qu'il est dit au premier alinéa.

Si le premier président délègue un juge au tribunal, il peut aussi, dans les mêmes conditions, charger temporairement celui-ci de l'instruction par voie d'ordonnance.

Si le juge d'instruction est absent, malade ou autrement empêché,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igne l'un des juges de ce tribunal pour le remplacer.

Article 51

Le juge d'instruction ne peut informer qu'après avoir été saisi par un réquisito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par une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80 et 86.

En cas de crimes ou délits flagrants, il exerce les pouvoirs qui lui sont attribués par l'article 72.

Le juge d'instruction a,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le droit de requérir directement la force publique.

Article 52

Sont compétents le juge d'instruction du lieu de l'infraction, celui de la résidence de l'une des personnes soupçonnées d'avoir participé à l'infraction, celui du lieu d'arrestation d'une de ces personnes, même lorsque cette arrestation a été opérée pour une autre cause et celui du lieu

634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détention d'une de ces personnes, même lorsque cette détention est effectuée pour une autre cause.

Article 52-1

Dans certain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les juges d'instruction sont regroupés au sein d'un pôle de l'instruction.

Les juges d'instruction composant un pôle de l'instruction sont seuls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s informations en matière de crime.

Ils demeurent compétents en cas de requalification des faits en cours d'information ou lors du règlement de celle-ci.

Ils sont également seuls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s informations donnant lieu à une cosaisine conformément aux articles 83-1 et 83-2.

La liste des tribunaux dans lesquels existe un pôle de l'instruction e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es juges d'instruction qui le composent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Cette compétence peut recouvrir le ressort de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peuvent être chargés, en tenant compte s'il y a lieu des spécialis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4, 706-2, 706-17, 706-75-1 et 706-107, de coordonner l'activité des juges d'instruction au sein du pôl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Titre II : Des enquêtes et des contrôles d'identité

Chapitre Ier : Des crimes et des délits flagrants

Article 53

Est qualifié crime ou délit flagrant le crime ou le délit qui se commet actuellement, ou qui vient de se commettre.

Il y a aussi crime ou délit flagrant lorsque, dans un temps très voisin de l'action, la personne soupçonnée est poursuivie par la clameur publique, ou est trouvée en possession d'objets, ou présente des traces ou indices, laissant penser qu'elle a participé au crime ou au délit. A la suite

de la constatation d'un crime ou d'un délit flagrant, l'enquête menée sous le contrô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peut se poursuivre sans discontinuer pendant une durée de huit jours.

Lorsque des investigation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pour un crime ou un délit puni d'une peine sup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d'emprisonnement ne peuvent être différé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écider la prolongation,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l'enquêt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huit jours.

Article 53-1

Les officiers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informent par tout moyen les victimes de leur droit :

- 1° D'obtenir réparation du préjudice subi ;
- 2°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si l'action publique est mise en mouvement par le parquet ou en citant directement l'auteur des faits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ou en portant plaint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
- 3° D'être, si elles souhaiten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assistées d'un avocat qu'elles pourront choisir ou qui, à leur demande, sera désigné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près la juridiction compétente, les frais étant à la charge des victimes sauf si elles remplissen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ide juridictionnelle ou si elles bénéficient d'une assurance de protection juridique ;
- 4° D'être aidées par un service relevant d'une ou de plusieurs collectivités publiques ou par une association conventionnée d'aide aux victimes ;
- 5° De saisir, le cas échéant,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lorsqu'il s'agit d'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06-3 et 706-14 ;
- 6° De demander une ordonnance de protection,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par les articles 515-9 à 515-13 du code civil.

Les victimes sont également informées des peines encourues par le ou les auteurs des violences et des conditions d'exécution des éventuelles condamnations qui pourraient être prononcées à leur encontre.

Article 54

En cas de crime flagran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en est avisé, informe immédiat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 transporte sans délai sur le lieu du crime et procède à toutes constatations utiles.

Il veille à la conservation des indices susceptibles de disparaître et de tout ce qui peut servir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Il saisit les armes et instruments qui ont servi à commettre le crime ou qui étaient destinés à le commettre ainsi que tout ce qui paraît avoir été le produit direct ou indirect de ce crime.

Il représente les objets saisis, pour reconnaissance, aux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si elles sont présentes.

Article 55

Dans les lieux où un crime a été commis, il est interdit, sous peine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à toute personne non habilitée, de modifier avant les premières opérations de l'enquête judiciaire l'état des lieux et d'y effectuer des prélèvements quelconques. Toutefois, exception est faite lorsque ces modifications ou ces prélèvements sont commandés par les exigences de la sécurité ou de la salubrité publique, ou par les soins à donner aux victimes.

Article 55-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sous son contrôle, sur toute personne susceptible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ou sur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l'infraction, aux opérations de prélèvements externes nécessaires à la réalisation d'examen techniques et scientifiques de comparaison avec les traces et indices prélevés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Il procède, ou fait procéder sous son contrôle, aux opérations de relevés signalétiques et notamment de prise d'empreintes digitales, palmaires ou de photographies nécessaires à l'alimentation et à la consultation des fichiers de police selon les règles propres à chacun de ces fichiers.

Le refus, par un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de se soumettre aux opérations de prélèvement, mentionnées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ordonné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rticle 56

Si la nature du crime est telle que la preuve en puisse être acquise par la saisie des papiers, documents, données informatiques ou autres objets en la possession des personnes qui paraissent avoir participé au crime ou détenir des pièces, informations ou objets relatifs aux faits incrimin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 transporte sans désemperer au domicile de ces derniers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dont il dresse procès-verbal.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également se transporter en tous lieux dans lesquels sont susceptibles de se trouve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pour y procéder à une perquisition aux fins de saisie de ces biens ; si la perquisition est effectuée aux seules fins de rechercher et de saisi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es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ce même article, elle doit être préalablement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a seul, avec les personnes désignées à l'article 57 du présent code et celles auxquelles il a éventuellement recours en application de l'article 60, le droit de prendre connaissance des papiers, documents ou données informatiques avant de procéder à leur saisie.

Toutefois, il a l'obligation de provoquer préalablement toutes mesures utiles pour que soit assuré le respect du secret professionnel et des droits de la défense.

Tous objets et documents saisis sont immédiatement inventoriés et placés sous scellés.

Cependant, si leur inventaire sur place présente des difficultés, ils font l'objet de scellés fermés provisoires jusqu'au moment de leur inventaire et de leur mise sous scellés définitifs et c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ont assisté à la perquisition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57.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lorsque la saisie porte sur des espèces, lingots, effets ou valeurs dont la conservation en nature n'est pa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ou à la sauvegarde des droits des personnes intéressées, autoriser leur dépôt à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ou à la Banque de France.

Lorsque la saisie porte sur des billets de banque ou pièces de monnaie libellés en euros contrefaisant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oit transmettre, pour analyse et identification, au moins un exemplaire de chaque type de billets ou pièces suspectés faux au centre d'analyse national habilité à cette fin.

Le centre d'analyse national peut procéder à l'ouverture des scellés.

Il en dresse inventaire dans un rapport qui doit mentionner toute ouverture ou réouverture des scellés. Lorsque les opérations sont terminées, le rapport et les scellés sont déposés entre les mains du greffier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Ce dépôt est constaté par procès-verbal.

Les dispositions du précédent alinéa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il n'existe qu'un seul exemplaire d'un type de billets ou de pièces suspectés faux, tant que celui-ci est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Si elles sont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saisis, les personnes présentes lors de la perquisition peuvent être retenues sur plac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accomplissement de ces opérations.

Article 56-1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avocat ou à son domici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à la suite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prise par ce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par le magistrat.

Celui-ci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ont seuls le droit de consulter ou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se trouvant sur les lieux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la décision précit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ne portent pas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avoca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un objet s'il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u bâtonnier ou de son délégué,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d'autres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vocat au cabinet ou au domicile duquel elle a été effectuée et le bâtonnier ou son délégué.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dans les locaux de l'ordre des avocats ou des caisses de règlement pécuniaire des avocats.

Dans ce cas,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exerc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oit être préalablement avisé de la perquisi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perquisition au cabinet ou au domicile du bâtonnier.

Article 56-2

Les perquisitions dans les locaux d'une entreprise de presse, d'une entreprise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d'une entrepris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d'une agence de presse, dans les véhicules professionnels de ces entreprises ou agences ou au domicile d'un journaliste lorsque les investigations sont liées à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que par un magistrat.

Ces perquisitions sont réalisées sur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du magistrat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ainsi que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Le contenu de cette décision est porté dès le débu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e la personne prés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57.

Le magistrat et la personne prés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57 ont seuls le droit de prendre connaissance des documents ou des objets découverts lors de la perquisition préalablement à leur éventuelle saisie.

Aucune saisie ne peut concerner des documents ou des objets relatifs à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mentionnées dans cette décision.

Ces dispositions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qui effectue la perquisition veille à ce que les investigations conduites respectent le libre exercice de la profession de journaliste, ne portent pas atteinte au secret des sources en violation de l'article 2 de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et ne constituent pas un obstacle ou n'entraînent pas un retard injustifié à la diffusion de l'information.

La personne présente lors de la perquisi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57 du présent code peut s'opposer à la saisie d'un document ou de tout objet si elle estime que cette saisie serait irrégulière au regard de l'alinéa précédent.

Le document ou l'objet doit alors être placé sous scellé fermé.

Ces opération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s objections de la personne,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i d'autres documents ou objets ont été saisis au cours de la perquisition sans soulever de contestation, ce procès-verbal est distinct de celui prévu par l'article 57.

Ce procès-verbal ainsi que le document ou l'objet placé sous scellé fermé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vec l'original ou une copi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inq jours de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sur la contestation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cette fin, il entend le magistrat qui a procédé à la perquisition et, le cas éché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insi que la personne en présence de qui la perquisition a été effectuée.

Il peut ouvrir le scellé en présence de ces personnes.

Si le journaliste au domicile duquel la perquisition a été réalisée n'était pas présent lorsque celle-ci a été effectuée, notamment s'il a été fait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7, le journaliste peut se présenter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être entendu par ce magistrat et assister, si elle a lieu, à l'ouverture du scellé.

S'il estime qu'il n'y a pas lieu à saisir le document ou l'obje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rdonne sa restitution immédiate, ainsi que la destruction du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et, le cas échéant, la cancellation de toute référence à ce document, à son contenu ou à cet objet qui figurerait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il ordonne le versement du scellé et du procès-verbal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xclut pas la possibilité ultérieure pour les parties de demander la nullité de la saisie devant, selon les cas,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56-3

Les perquisitions dans le cabinet d'un médecin, d'un notaire, d'un avoué ou d'un huissier sont effectuées par un magistrat et en présence de la personne responsable de l'ordre ou de l'organisation professionnelle à laquelle appartient l'intéressé ou de son représentant.

Article 56-4

I. - Lorsqu'une perquisition est envisagée dans un lieu précisément identifié, abritant des éléments couverts pa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a perquisition ne peut être réalisée que par un magistrat en présence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Ce dernier peut être représenté par un membre de la commission ou par des délégués, dûment habilités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qu'il désigne selon d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président ou son représentant peut être assisté de toute personne habilitée à cet effet.

La liste des lieux visés au premier alinéa est établie de façon précise et limitative par arrêté du Premier ministre.

Cette liste, régulièrement actualisée, est communiquée à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insi qu'au ministre de la justice, qui la rendent accessible aux magistrats de façon sécurisée. Le magistrat vérifie si le lieu dans lequel il souhaite effectuer une perquisition figure sur cette liste. Les conditions de délimitation des lieux abritant des éléments couverts pa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 fait de dissimuler dans les lieux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des procédés, objets, documents, informations, réseaux informatiques, données informatisées

ou fichiers non classifiés, en tentant de les faire bénéficier de la protection attachée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xpose son auteur aux sanctions prévues à l'article 434-4 du code pénal.

La perquisition ne peut être effectuée qu'en vertu d'une décision écrite du magistrat qui indique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informations utiles à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ou son représentant se transporte sur les lieux sans délai. Au commencement de la perquisition, le magistrat porte à la connaissance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ou de son représentant, ainsi qu'à celle du chef d'établissement ou de son délégué, ou du responsable du lieu,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son objet et les lieux visés par cette perquisition.

Seul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on représentant et, s'il y a lieu, les personnes qui l'assistent peuvent prendre connaissance d'éléments classifiés découverts sur les lieux. Le magistrat ne peut saisir, parmi les éléments classifiés, que ceux relatifs aux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justifient que les éléments classifiés soient saisis en original, des copies sont laissées à leur détenteur.

Chaque élément classifié saisi est, après inventaire par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placé sous scellé.

Les scellés sont remis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qui en devient gardien. Les opérations relatives aux éléments classifiés saisis ainsi que l'inventaire de ces élément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et qui est conservé par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La déclassific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éléments mentionnés dans l'inventaire relèvent de la procédure prévue par les articles L. 2312-4 et suivants du code de la défense.

- II. - Lorsqu'à l'occasion d'une perquisition un lieu se révèle abriter des éléments couverts pa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 magistrat présent sur le lieu ou immédiatement avisé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 informe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éléments classifiés sont placés sous scellés, sans en prendre connaissance, par le magistrat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les a découverts, puis sont remis ou transmis, par tout moyen en conformité avec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aux secrets de la défense nationale,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afin qu'il en assure la garde.

Les opérations relatives aux éléments classifié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qui n'est pas joi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a déclassific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éléments ainsi placés sous scellés relèvent de la procédure prévue par les articles L. 2312-4 et suivants du code de la défense.

- III. - Lorsqu'une perquisition est envisagée dans un lieu classifié au titr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413-9-1 du code pénal, elle ne peut être réalisée que par un magistrat en présence d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Ce dernier peut être représenté par un membre de la commission et être assisté de toute personne habilitée à cet effet.

Le magistrat vérifie auprès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i le lieu dans lequel il souhaite effectuer une perquisition fait l'objet d'une mesure de classification.

La perquisition ne peut être effectuée qu'en vertu d'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qui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u des infractions sur lesquelles portent les investigations, les raisons justifiant la perquisition et l'objet de celle-ci, ainsi que le lieu visé par la perquisition.

Le magistrat transmet cette décision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Il la porte, au commencement de la perquisition, à la connaissance du chef d'établissement ou de son délégué, ou du responsable du lieu.

La perquisition doit être précédée d'une décision de déclassification temporaire du lieu aux fins de perquisition et ne peut être entreprise que dans les limites de la déclassification ainsi décidée. A cette fin,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aisi par la décision du magistrat mentionnée à l'alinéa précédent, fait connaître sans délai son avis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sur la déclassification temporaire, totale ou partielle, du lieu aux fins de perquisition. L'autorité administrative fait connaître sa décision sans délai.

La déclassification prononc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ne vaut que pour le temps des opérations.

En cas de déclassification partielle, la perquisition ne peut être réalisée que dans la partie des lieux qui fait l'objet de la décision de déclassification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La perquisition se poursui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sixième alinéa et suivants du I.

IV.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dictées à peine de nullité.

Article 57

Sous réserve de ce qui est dit à l'article 56 concernant le respect du secret professionnel et des droits de la défense, les opérations prescrites par ledit article sont faites en présence de la personne au domicile de laquelle la perquisition a lieu.

En cas d'impossibilité,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ura l'obligation de l'inviter à désigner un représentant de son choix ; à défau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hoisira deux témoins requis à cet effet par lui, en dehors des personnes relevant de son autorité administrative.

Le procès-verbal de ces opérations, dressé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66, est signé par les personnes visées au présent article ; au cas de refus, il en est fait mention au procès-verbal.

Article 57-1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ur responsabil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u cours d'une perquisit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ccéder par un système informatique implanté sur les lieux où se déroule la perquisition à des données intéressant l'enquête en cours et stockées dans ledit système ou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dès lors que ces données sont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il est préalablement avéré que ces données, accessibles à partir du système initial ou

disponibles pour le système initial, sont stockées dans un autre système informatique situé en dehors du territoire national, elles sont recueillie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réserve des conditions d'accès prévues par les engagements internationaux en vigueur.

Les données auxquelles il aura été permis d'ac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piées sur tout support.

Les supports de stockage informatique peuvent être saisis et placés sous scell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rticle 58

Sous réserve des nécessités des enquêtes, toute communication ou toute divulgation sans l'autorisa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de ses ayants droit ou du signataire ou du destinataire d'un document provenant d'une perquisition à une personne non qualifiée par la loi pour en prendre connaissance est punie de 4 500 euros d'amende et de deux ans d'emprisonnement.

Article 59

Sauf réclamation faite de l'intérieur de la maison ou exceptions prévues par la loi, les perquisitions et les visites domiciliaires ne peuvent être commencées avant 6 heures et après 21 heures.

Les formalité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 56-1, 57 et au présent article sont prescrites à peine de nullité.

Article 60

S'il y a lieu de procéder à des constatations ou à des examens techniques ou scientifique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 recours à toutes personnes qualifiées.

Sauf si elles sont inscrites sur une des listes prévues à l'article 157, les personnes ainsi appelées prêtent, par écrit, serment d'apporter leur concours à la justice en leur honneur et en leur conscience. Les personnes désignées pour procéder aux examens techniques ou scientifiques peuvent procéder à l'ouverture des scellés.

Elles en dressent inventaire et en font mention dans un rapport établi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63 et 166.

Elles peuvent communiquer oralement leurs conclusions aux enquêteurs en cas d'urgence.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onne connaissance des résultats des examens techniques et scientifiques aux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existe des indices faisant présum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ainsi qu'aux victimes.

Article 60-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ar tout moyen, requérir de toute personne, de tout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rivé ou public ou de toute administration publique qui sont susceptibles de détenir des documents intéressant l'enquête, y compris ceux issus d'un système informatique ou d'un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de lui remettre ces documents, notamment sous forme numérique, sans que puisse lui être opposée, sans motif légitime, l'obligation au secret professionnel.

Lorsque les réquisitions concernent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3, la remise des documents ne peut intervenir qu'avec leur accord.

A l'excep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3, le fait de s'abstenir de répond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cette réquisition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euros. A peine de nullité, ne peuvent être versés au dossier les éléments obtenus par une réquisition prise en violation de l'article 2 de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60-2

Sur demande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intervenant par voie télématique ou informatique, les organismes publics ou l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rivé, à l'exception de ceux visés au deuxième alinéa du 3° du II de l'article 8 et au 2° de l'article 67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mettent à sa disposition les information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à l'exception de celles protégées par un secret prévu par la loi, contenues dans le ou les systèmes informatiques ou traitements de données

nominatives qu'ils administren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intervenant sur réqui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éalablement autorisé par ordonnanc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requérir des opérateurs de télécommunications, et notamment de ceux mentionnés au 1 du I de l'article 6 de la loi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de prendre, sans délai, toutes mesures propres à assurer la préservation, pour une durée ne pouvant excéder un an, du contenu des informations consultées par les personnes utilisatrices des services fournis par les opérateurs.

Les organismes ou personnes visés au présent article mettent à disposition les informations requises par voie télématique ou informatique dans les meilleurs délais.

Le fait de refuser de répondre sans motif légitime à ces réquisitions est puni d'une amende de 3 750 euro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étermine les catégories d'organismes visés au premier alinéa ainsi que les modalités d'interrogation, de transmission et de traitement des informations requises.

Article 6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éfendre à toute personne de s'éloigner du lieu de l'infraction jusqu'à la clôture de ses opérations.

Article 62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ets et documents saisis.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lui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61.

Il peut égalemen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Il dresse un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personnes entendues procèdent elles-mêmes à sa lecture, peuvent y faire consigner leurs observations et y apposent leur signature.

Si elles déclarent ne savoir lire, lecture leur en est fait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alablement à la signature. Au cas de refus de signer le procès-verbal, mention en est faite sur celui-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entendre,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tout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Ils dressent à cet effet, dans les formes prescrites par le présent code, des procès-verbaux qu'ils transmettent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ls secondent.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ne peuvent être retenues q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Article 62-1

Les personnels visés aux articles 16 à 29 concourant à la procédure sont autorisés à déclarer comme domicile l'adresse du siège du service dont ils dépendent.

Article 63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lacer en garde à vue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Il en informe dès le début de la garde à v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personne gardée à vue ne peut être retenue plus de vingt-quatre heures.

Toutefois, la garde à vue peut être prolongée pour un nouveau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au plus, sur autorisation écri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 magistrat peut subordonner cette autorisation à la présentation préalable de la personne gardée à vue.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les éléments recueillis sont de nature à motiver l'exercice de poursuites sont, à l'issue de la garde à vue, soit remises en liberté, soit déférées devant ce magistrat.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s ressor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anterre, Bobigny et Créteil constituent un seul et même ressort.

Article 63-1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est immédiatement informée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 contrôle de celui-ci, par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e la nature de l'infraction sur laquelle porte l'enquête, des droits mentionnés aux articles 63-2, 63-3 et 63-4 ainsi qu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durée de la garde à vue prévues par l'article 63.

Mention de cet avis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et émargée par la personne gardée à vue ; en cas de refus d'émargement, il en est fait mention.

Les informa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oivent être communiquées à la personne gardée à vu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le cas échéant au moyen de formulaires écrits.

Si cette personne est atteinte de surdit  et qu'elle ne sait ni lire ni  crire, elle doit  tre assist e par un interpr te en langue des signes ou par toute personne qualifi e ma trisant un langage ou une m thod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des sourds.

Il peut  galement  tre recouru   tout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une personne atteinte de surdit .

Si la personne est remise en libert    l'issue de la garde   vue sans qu'aucune d cision n'ait  t  prise par le procureur de la R publique sur l'action publiqu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7-2 sont port es   sa connaissance.

Sauf en cas de circonstance insurmontable, les diligences r sultant pour les enqu teurs de la communication des droits mentionn s aux articles 63-2 et 63-3 doivent intervenir au plus tard dans un d lai de trois heures   compter du moment o  la personne a  t  plac e en garde   vue.

Article 63-2

Toute personne plac e en garde   vue peut,   sa demande, faire pr venir dans le d lai pr vu au dernier alin a de l'article 63-1, par t l phone, une personne avec laquelle elle vit habituellement ou l'un de ses parents en ligne directe, l'un de ses fr res et soeurs ou son employeur de la mesure dont elle est l'objet.

Si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stime, en raison des nécessités de l'enquête, ne pas devoir faire droit à cette demande, il en réfère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décide, s'il y a lieu, d'y faire droit.

Article 63-3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peut, à sa demande, être examinée par un médecin désig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 cas de prolongation, elle peut demander à être examinée une seconde fois.

A tout mo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d'office désigner un médecin pour examiner la personne gardée à vue. En l'absence de demande de la personne gardée à vu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un examen médical est de droit si un membre de sa famille le demande ; le médecin est désig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médecin examine sans délai la personne gardée à vue.

Le certificat médical par lequel il doit notamment se prononcer sur l'aptitude au maintien en garde à vue est versé au dossi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il est procédé à un examen médical en application de règles particulières.

Article 63-4

Dès le début de la garde à vue, la personne peut demander à s'entretenir avec un avocat.

Si elle n'est pas en mesure d'en désigner un ou si l'avocat choisi ne peut être contacté, elle peut demander qu'il lui en soit commis un d'office par le bâtonnier.

Le bâtonnier est informé de cette demande par tous moyens et sans délai.

L'avocat désigné peut communiquer avec la personne gardée à vue dans des conditions qui garantissent la confidentialité de l'entretien.

Il est informé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 contrôle de celui-ci, par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e la nature et de la date présumée de l'infraction sur laquelle porte l'enquête.

A l'issue de l'entretien dont la durée ne peut excéder trente minutes, l'avocat présente, le cas

652 프랑스 형사소송법

échéant, des observations écrites qui sont jointes à la procédure.

L'avocat ne peut faire état de cet entretien auprès de quiconque pendant la durée de la garde à vue.

Lorsque la garde à vue fait l'objet d'une prolongation, la personne peut également demander à s'entretenir avec un avocat dès le début de la prolongation,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Si la personne est gardée à vue pour 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4°, 6°, 7°, 8° et 15° de l'article 706-73, l'entretien avec un avocat ne peut intervenir qu'à l'issue d'un délai de quarante-huit heures. Si elle est gardée à vue pour 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3° et 11° du même article, l'entretien avec un avocat ne peut intervenir qu'à l'issue d'un délai de soixante-douze heur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 avisé de la qualification des faits retenue par les enquêteurs dès qu'il est informé par ces derniers du placement en garde à vue.

Article 63-5

Lorsqu'il est indispensable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de procéder à des investigations corporelles internes sur une personne gardée à vue, celles-ci ne peuvent être réalisées que par un médecin requis à cet effet.

Article 64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oit mentionner sur le procès-verbal d'audition de toute personne gardée à vue la durée des interrogatoires auxquels elle a été soumise et des repos qui ont séparé ces interrogatoires, les heures auxquelles elle a pu s'alimenter, le jour et l'heure à partir desquels elle a été gardée à vue, ainsi que le jour et l'heure à partir desquels elle a été soit libérée, soit amenée devant le magistrat compétent.

Il mentionne également au procès-verbal les demandes fait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63-2, 63-3 et 63-4 et la suite qui leur a été donnée.

Cette mention doit être spécialement émargée par les personnes intéressées, et, au cas de refus, il en est fait mention.

Elle comportera obligatoirement les motifs de la garde à vue.

Article 64-1

Les interrogatoires des personnes placées en garde à vue pour crime, réalisés dans les locaux d'un service ou d'une unité de police ou de gendarmerie exerçant une mission de police judiciaire font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L'enregistrement ne peut être consulté, au cours de l'instruction ou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qu'en cas de contestation du contenu du procès-verbal d'interrogatoire, sur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ou de la juridiction de jugement,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des parties.

Les huit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14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une partie demande la consultation de l'enregistrement, cette demande est formée et le juge d'instruction statue conformément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82-1.

Le fait, pour toute personne, de diffuser un enregistrement réalisé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 l'expiration d'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extinction de l'action publique, l'enregistrement est détruit dans le délai d'un mois.

Lorsque le nombre de personnes gardées à vue devant être simultanément interrogées, au cours de la même procédure ou de procédures distinctes, fait obstacle à l'enregistrement de tous les interrogatoire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 réfère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désigne, par décision écrite versée au dossier, au regard d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a ou les personnes dont les interrogatoires ne seront pas enregistrés.

Lorsque l'enregistrement ne peut être effectué en raison d'une impossibilité technique, il en est fait mention dans le procès-verbal d'interrogatoire qui précise la nature de cette impossibilit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est immédiatement avisé.

Le présen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lorsque la personne est gardée à vue pour un crime mentionné à l'article 706-73 du présent code ou prévu par les titres Ier et II du livre IV du code pénal, sauf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 l'enregistrement.

Un décret précis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65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65

Les mentions et émargements prévu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4, en ce qui concerne les dates et heures de début et de fin de garde à vue et la durée des interrogatoires et des repos séparant ces interrogatoires, doivent également figurer sur un registre spécial, tenu à cet effet dans tout local de police ou de gendarmerie susceptible de recevoir une personne gardée à vue. Dans les corps ou services où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sont astreints à tenir un carnet de déclarations, les mentions et émargements prévus à l'alinéa précédent doivent également être portés sur ledit carnet.

Seules les mentions sont reproduites au procès-verbal qui est transmis à l'autorité judiciaire.

Article 66

Les procès-verbaux dressés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 exécution des articles 54 à 62 sont rédigés sur-le-champ et signés par lui sur chaque feuillet du procès-verbal.

Article 67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4 à 66, à l'exception de celles de l'article 64-1, sont applicables, au cas de délit flagrant, dans tous les cas où la loi prévoit une peine d'emprisonnement.

Article 68

L'arrivé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ur les lieux dessaisi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ccomplit alors tous actes de police judiciaire prévus au présent chapitre.

Il peut aussi prescrire à tou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poursuivre les opérations.

Article 69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l'exig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lorsqu'il procède comme il est dit au présent chapitre peut se transporter dans les ressorts des tribunaux limitrophes de celui où il exerce ses fonctions, à l'effet d'y poursuivre ses investigations.

Il doit aviser, au préalab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ressort du tribunal dans lequel il se transporte.

Il mentionne sur son procès-verbal les motifs de son transport.

Article 70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ortant sur un crime flagrant ou un délit flagrant puni d'au moins trois ans d'emprisonnement l'exig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3, décerner mandat de recherche contre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l'infraction.

Pour l'exécution de ce manda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4 sont applicables.

La personne

découverte en vertu de ce mandat est placée en garde à vu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 lieu de la découverte, qui peut procéder à son audition,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43 et de la possibilité pour les enquêteurs déjà saisis des faits de se transporter sur place afin d'y procéder eux-mêmes, après avoir si nécessaire bénéficié d'une extension de compéten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yant délivré le mandat de recherche en est informé dès le début de la mesure ; ce magistrat peut ordonner que, pendant la durée de la garde à vue, la personne soit conduite dans les locaux du service d'enquête saisi des faits. Si la personne ayant fait l'objet du mandat de recherche n'est pas découverte au cours de l'enquête et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contre personne non dénommée, le mandat de recherche demeure valable pour le déroulement de l'information, sauf s'il est rapporté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72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sont simultanément sur les lieux,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régulière dont est saisi le juge d'instruction présent, par dérogation, le cas échéa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83.

Article 73

Dans les cas de crime flagrant ou de délit flagran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toute personne a qualité pour en appréhender l'auteur et le conduire devan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plus proche.

Article 74

En cas de découverte d'un cadavre, qu'il s'agisse ou non d'une mort violente, mais si la cause en est inconnue ou suspect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en est avisé informe immédiat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 transporte sans délai sur les lieux et procède aux premières constatatio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 rend sur place s'il le juge nécessaire et se fait assister de personnes capables d'apprécier la nature des circonstances du décès.

Il peut, toutefois, déléguer aux mêmes fins,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son choix.

Sauf si elles sont inscrites sur une des listes prévues à l'article 157, les personnes ainsi appelées prêtent, par écrit, serment d'apporter leur concours à la justice en leur honneur et en leur conscience.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une enquête aux fins de recherche des causes de la mort est ouverte.

Dans ce cadre et à ces fins, il peut être procédé aux actes prévus par les articles 56 à 62,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ces dispositions. A l'issue d'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s instructions de ce magistrat, ces investigations peuvent se poursuivre dans les formes de l'enquête prélimin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ussi requérir information pour recherche des causes de la mort. Les dispositions des quatre premiers alinéa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e découverte d'une personne grièvement blessée lorsque la cause de ses blessures est inconnue ou suspecte.

Article 74-1

Lorsque la disparition d'un mineur ou d'un majeur protégé vient d'intervenir ou d'être constaté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ssistés le cas échéan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céder aux actes prévus par les articles 56

à 62, aux fins de découvrir la personne disparue. A l'issue d'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s instructions de ce magistrat, ces investigations peuvent se poursuivre dans les formes de l'enquête prélimin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pour recherche des causes de la dispari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e disparition d'un majeur présentant un caractère inquiétant ou suspect eu égard aux circonstances, à l'âge de l'intéressé ou à son état de santé.

Article 74-2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ssistés le cas échéan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céder aux actes prévus par les articles 56 à 62 aux fins de rechercher et de découvrir une personne en fuite dans les cas suivants :

- 1° Personne faisant l'objet d'un mandat d'arrêt délivré par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son président ou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alors qu'elle est renvoyée devant une juridiction de jugement ;
- 2° Personne faisant l'objet d'un mandat d'arrêt délivré par une juridiction de jugement ou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 3°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supérieure ou égale à un an, lorsque cette condamnation est exécutoire ou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our rechercher la personne en fuite l'exig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toriser l'interception, l'enregistrement et la transcription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00, 100-1 et 100-3 à 100-7, pour une durée maximale de deux mois renouvelabl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dans la limite de six mois en matière correctionnelle.

Ces opérations sont faites sous l'autorité et le contrôl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00-3 à 100-5,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instruction ou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requis par ce magistra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informé sans délai des actes accomplis en 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Chapitre II : De l'enquête préliminaire

Article 75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ous le contrôle de ceux-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rocèdent à des enquêtes préliminaires soit sur les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d'office.

Ces opérations relèvent de la surveillance du procureur général.

Les officiers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informent par tout moyen les victimes de leur droit :

- 1° D'obtenir réparation du préjudice subi ;
- 2°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si l'action publique est mise en mouvement par le parquet ou en citant directement l'auteur des faits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ou en portant plaint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
- 3° D'être, si elles souhaiten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assistées d'un avocat qu'elles pourront choisir ou qui, à leur demande, sera désigné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près la juridiction compétente, les frais étant à la charge des victimes sauf si elles remplissen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ide juridictionnelle ou si elles bénéficient d'une assurance de protection juridique ;
- 4° D'être aidées par un service relevant d'une ou de plusieurs collectivités publiques ou par une association conventionnée d'aide aux victimes ;
- 5° De saisir, le cas échéant,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lorsqu'il s'agit d'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06-3 et 706-14 ;
- 6° De demander une ordonnance de protection,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par les articles 515-9 à 515-13 du code civil.

Les victimes sont également informées des peines encourues par le ou les auteurs des violences

et des conditions d'exécution des éventuelles condamnations qui pourraient être prononcées à leur encontre.

Article 75-1

Lorsqu'il donne instruction aux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procéder à une enquête prélimin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xe le délai dans lequel cette enquête doit être effectuée. Il peut le proroger au vu des justifications fournies par les enquêteurs.

Lorsque l'enquête est menée d'offic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rendent compt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son état d'avancement lorsqu'elle est commencée depuis plus de six mois.

Article 75-2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mène une enquête préliminaire concernant un crime ou un délit avis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ès qu'un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existent des indices faisant présum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l'infraction est identifiée.

Article 76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ou de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ne peuvent être effectuées sans l'assentiment exprès de la personne chez laquelle l'opération a lieu.

Cet assentiment doi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écrite de la main de l'intéressé ou, si celui-ci ne sait écrire, il en est fait mention au procès verbal ainsi que de son assentiment. Les dispos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56 et 59 (premier alinéa)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relative à un crime ou à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cinq ans l'exigent ou si la recherche de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le justifi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écider, par 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que les opéra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eront effectuées sans l'assentiment de la personne chez qui elles ont lieu.

A peine de nullité,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cise la qualification de l'infraction dont la preuve est recherchée ainsi que l'adresse des lieux dans lesquels ces opérations peuvent être effectuées ; cette décision est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éléments de fait et de droit justifiant que ces opérations sont nécessaires.

Les opérations sont effectuées sous le contrôle du magistrat qui les a autorisées, et qui peut se déplacer sur les lieux pour veiller au respect des dispositions légales.

Ces opérations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avoir un autre objet que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dans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la saisi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Toutefois, le fait que ces opérations révèlent des infractions autres que celles visées dans la décision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est compét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o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irige l'enquêt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a perquisition doit avoir lie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alors se déplacer sur les lieux quelle que soit leur localisation sur le territoire natio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saisi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la perquisition doit avoir lieu, par l'intermédia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cette juridiction.

Article 76-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ur autorisation de celui-ci,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faire procéder aux opérations de prélèvements externes prévues par l'article 55-1.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55-1 sont applicables.

Article 76-3

L'officier de police peut,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6, recourir aux opérations prévues par l'article 57-1.

Article 77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garder à sa disposition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Il en informe dès le début de la garde à v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personne gardée à vue ne peut être retenue plus de vingt-quatre heur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prolonger la garde à vue d'un nouveau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au plus.

Cette prolongation ne peut être accordée qu'après présentation préalable de la personne à ce magistrat.

Toutefois, elle peut, à titre exceptionnel, être accordée par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sans présentation préalable de la personne.

Si l'enquête est suivie dans un autre ressort que celui du sièg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 des faits, la prolongation peut être accord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xécution de la mesure.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 des faits,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les éléments recueillis sont de nature à motiver l'exercice de poursuites sont, à l'issue de la garde à vue, soit remises en liberté, soit déférées devant ce magistrat.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s ressor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anterre, Bobigny et Créteil constituent un seul et même ressor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1, 63-2, 63-3, 63-4, 64, 64-1 et 65 sont applicables aux gardes à vue exécutées dans le cadre du présent chapitre.

Article 77-1

S'il y a lieu de procéder à des constatations ou à des examens techniques ou scientifiqu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ur autorisation de celui-ci,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 recours à toutes personnes qualifiées.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0 sont applicables.

Article 77-1-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ur autorisation de celui-ci,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ar tout moyen, requérir de toute personne, de tout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rivé ou public ou de toute administration publique qui sont susceptibles de détenir des documents intéressant l'enquête, y compris ceux issus d'un système informatique ou d'un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de lui remettre ces documents, notamment sous forme numérique, sans que puisse lui être opposée, sans motif légitime, l'obligation au secret professionnel.

Lorsque les réquisitions concernent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3, la remise des documents ne peut intervenir qu'avec leur accord. En cas d'absence de réponse de la personne aux réquisitions, les dispositions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60-1 sont applicables.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60-1 est également applicable.

Article 77-1-2

Sur 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rocéder aux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0-2.

Sur autorisat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à cette fin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fficier de police peut procéder aux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0-2.

Les organismes ou personnes concernés mettent à disposition les informations requises par voie télématique ou informatique dans les meilleurs délais.

Le fait de refuser de répondre sans motif légitime à ces réquisitions est puni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60-2.

Article 77-2

Toute personne placée en garde à vue au cours d'une enquête préliminaire ou de flagrance qui,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a fin de la garde à vue, n'a pas fait l'objet de poursuites, peut interrog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 ressort duquel la garde à vue s'est déroulée sur la suite donnée ou susceptible d'être donnée à la procédure.

Cette demande est adress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applicables aux enquêtes portant sur l'un des crimes ou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Article 77-3

Lorsque l'enquête n'a pas été menée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la garde à vue a été réalisée, celui-ci adresse sans délai la demande mentionnée à l'article 77-2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dirige l'enquête.

Article 77-4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ortant sur un crime ou un délit puni d'au moins trois ans d'emprisonnement l'exig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écerner mandat de recherche contre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l'infraction.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0 sont alors applicables.

Article 78

Les personnes convoquées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our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sont tenues de comparaît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ersonnes qui n'ont pas répondu à un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ou dont on peut craindre qu'elles ne répondent pas à une telle convocation.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ne peuvent être retenues q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leur audi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resse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signés à l'article 20 peuvent également, sous le contrôle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tendre les personnes convoquées.

Les procès-verbaux sont dress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62 et 62-1.

Chapitre III :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Article 78-1

L'application des règle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est soumise au contrôle des autorités judiciaires mentionnées aux articles 12 et 13.

Toute personne se trouvant sur le territoire national doit accepter de se prêter à un contrôle d'identité effectué dans les conditions et par les autorités de police visées aux articles suivants.

Article 78-2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ur l'ordre et sous la responsabilité de ceux-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articles 20 et 21-1° peuvent inviter à justifier, par tout moyen, de son identité toute personne à l'égard de laquelle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

-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
- ou qu'elle se prépare à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
- ou qu'elle est susceptible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utiles à l'enquête en cas de crime ou de délit ;
- ou qu'elle fait l'objet de recherches ordonnées par une autorité judiciaire.

Sur réquisitions écrite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echerche et de poursuite d'infractions qu'il précise, l'identité de toute personne peut être également contrôlée, selon les mêmes modalités, dans les lieux et pour une période de temps déterminés par ce magistrat. Le fait que le contrôle d'identité révèle des infractions autres que celles visées dans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L'identité de toute personne, quel que soit son comportement, peut également être contrôl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pour prévenir une atteinte à l'ordre public, notamment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a frontière terrestre de la France avec les Etats parties à la convention signée à Schengen le 19 juin 1990 et une ligne tracée à 20 kilomètres en deçà, (Dispositions déclarées non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par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93-323 DC du 5 août 1993) ainsi que dans les zones accessibles au public des ports, aéroports et gares ferroviaires ou routières ouverts au trafic international et désignés par arrêté (Dispositions déclarées non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par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93-323 DC du 5 août 1993) l'identité de toute personne peut également être contrôl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en vue de vérifier le respect des obligations de détention, de port et de présentation des titres et documents prévues par la loi I.

Lorsque ce contrôle a lieu à bord d'un train effectuant une liaison internationale, il peut être opéré sur la portion du trajet entre la frontière et le premier arrêt qui se situe au-delà des vingt kilomètres de la frontière.

Toutefois, sur celles des lignes ferroviaires effectuant une liaison internationale et présentant des caractéristiques particulières de desserte, le contrôle peut également être opéré entre cet arrêt et un arrêt situé dans la limite des cinquante kilomètres suivants.

Ces lignes et ces arrêts sont désignés par arrêté ministériel (1).

Lorsqu'il existe une section autoroutière démarrant dans la zone mentionnée à la première phrase du présent alinéa (1) et que le premier péage autoroutier se situe au-delà de la ligne des 20 kilomètres, le contrôle peut en outre avoir lieu jusqu'à ce premier péage sur les aires de stationnement ainsi que sur le lieu de ce péage et les aires de stationnement attenantes.

Les péages concernés par cette disposition sont désignés par arrêté.

Le fait que le contrôle d'identité révèle une infraction autre que celle de non-respect des obligations susvisées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es frontières terrestres ou le littoral du département de la Guyane et une ligne tracée à vingt kilomètres en-deçà, et sur une ligne tracée à cinq kilomètres de part et d'autre, ainsi que sur la route nationale 2 sur le territoire de la commune de Régina, l'identité de toute personne peut être contrôl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en vue de vérifier le respect des obligations de détention, de port et de présentation des titres et documents prévus par la loi. Pendant cinq an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e la loi n°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l'identité de toute personne peut également être contrôl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n vue de vérifier le respect des obligations de détention, de port et de présentation des titres et

documents prévus par la loi :

- 1° En Guadeloupe,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e littoral et une ligne tracée à un kilomètre en deçà, ainsi que dans une zone d'un kilomètre de part et d'autre, d'une part, de la route nationale 1 sur le territoire des communes de Basse-Terre, Gourbeyre et Trois-Rivières et, d'autre part, de la route nationale 4 sur le territoire des communes du Gosier et de Sainte-Anne et Saint-François ;
- 2° A Mayotte,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e littoral et une ligne tracée à un kilomètre en deçà ;
- 3° A Saint-Martin,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e littoral et une ligne tracée à un kilomètre en deçà ;
- 4° A Saint-Barthélemy, dans une zone comprise entre le littoral et une ligne tracée à un kilomètre en deçà.

Article 78-2-1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ur l'ordre ou la responsabilité de ceux-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articles 20 et 21 (1°) sont habilités à entrer dans les lieux à usage professionnel, ainsi que dans leurs annexes et dépendances, sauf s'ils constituent un domicile, où sont en cours des activités de construction, de production, de transformation, de réparation, de prestation de services ou de commercialisation, en vue :

- de s'assurer que ces activités ont donné lieu à l'immatriculation au répertoire des métiers ou a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lorsqu'elle est obligatoire, ainsi qu'aux déclarations exigées par les organismes de protection sociale et l'administration fiscale ;
- de se faire présenter le registre unique du personnel et les documents attestant que les déclarations préalables à l'embauche ont été effectuées ;
- de contrôler l'identité des personnes occupées, dans le seul but de vérifier qu'elles figurent sur le registre ou qu'elles ont fait l'objet des déclaration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nt écrites et précisent les infractions, parmi celles visées aux articles L. 324-9 et L. 341-6 du code du travail, qu'il entend faire rechercher

et poursuivre, ainsi que les lieux dans lesquels l'opération de contrôle se déroulera.

Ces réquisitions sont prises pour une durée maximum d'un mois et sont présentées à la personne disposant des lieux ou à celle qui la représente.

Les mesures pris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remis à l'intéressé.

Article 78-2-2

Sur réquisitions écrite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echerche et de poursuite des actes de terrorisme visés par les articles 421-1 à 421-6 du code pénal,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armes et d'explosifs visées par les articles L. 2339-8, L. 2339-9 et L. 2353-4 du code de la défense, des infractions de vol visées par les articles 311-3 à 311-11 du code pénal, de recel visées par les articles 321-1 et 321-2 du même code ou des faits de trafic de stupéfiants visé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38 dudi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ssistés, le cas échéan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1°, 1° bis et 1° ter de l'article 21 peuvent, dans les lieux et pour la période de temps que ce magistrat détermine et qui ne peut excéder vingt-quatre heures, renouvelables sur décision expresse et motivée selon la même procédure, procéder non seulement aux contrôles d'identité prévus a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78-2 mais aussi à la visite des véhicules circulant, arrêtés ou stationnant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des lieux accessibles au public.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es véhicules en circulation ne peuvent être immobilisés q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au déroulement de la visite qui doit avoir lieu en présence du conducteur.

Lorsqu'elle porte sur un véhicule à l'arrêt ou en stationnement, la visite se déroule en présence du conducteur ou du propriétaire du véhicule ou, à défaut, d'une personne requise à cet effet par l'officier ou l'agent de police judiciaire et qui ne relève pas de son autorité administrative. La présence d'une personne extérieure n'est toutefois pas requise si la visite comporte des risques graves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des biens.

En cas de découverte d'une infraction ou si le conducteur ou le propriétaire du véhicule le demande ainsi que dans le cas où la visite se déroule en leur absence, il est établi un

procès-verbal mentionnant le lieu et les dates et heures du début et de la fin de ces opérations. Un exemplaire en est remis à l'intéressé et un autre est transmis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outefois, la visite des véhicules spécialement aménagés à usage d'habitation et effectivement utilisés comme résidence ne peut être faite q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relatives aux perquisitions et visites domiciliaires.

Le fait que ces opérations révèlent des infractions autres que celles visées dans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Article 78-2-3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ssistés, le cas échéan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d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1°, 1° bis et 1° ter de l'article 21, peuvent procéder à la visite des véhicules circulant ou arrêtés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des lieux accessibles au public lorsqu'il existe à l'égard du conducteur ou d'un passager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il a commis, comme auteur ou comme complice, un crime ou un délit flagrant ; ces dispositions s'appliquent également à la tentative.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78-2-2 sont applicables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8-2-4

Pour prévenir une atteinte grave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des bien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ur l'ordre et sous la responsabilité de ceux-ci,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1°, 1° bis et 1° ter de l'article 21 peuvent procéder non seulement aux contrôles d'identité prévus au septième alinéa de l'article 78-2 mais aussi, avec l'accord du conducteur ou, à défaut,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mmuniquées par tous moyens, à la visite des véhicules circulant, arrêtés ou stationnant sur la voie publique ou dans des lieux accessibles au public. Dans l'attente des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véhicule peut être immobilisé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trente minutes.

L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78-2-2 sont applicables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8-3

Si l'intéressé refuse ou se trouve dans l'impossibilité de justifier de son identité, il peut, en cas de nécessité, être retenu sur place ou dans le local de police où il est conduit aux fins de vérification de son identité.

Dans tous les cas, il est présenté immédiatement à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le met en mesure de fournir par tout moyen les éléments permettant d'établir son identité et qui procède, s'il y a lieu, aux opérations de vérification nécessaires.

Il est aussitôt informé par celui-ci de son droit de faire avis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vérification dont il fait l'objet et de prévenir à tout moment sa famille ou toute personne de son choix. Si des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l'exigent,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évient lui-même la famille ou la personne choisie.

Lorsqu'il s'agit d'un mineur de dix-huit a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t être informé dès le début de la rétention.

Sauf impossibilité, le mineur doit être assisté de son représentant légal.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vérification ne peut être retenue que pendant le temps strictement exigé par l'établissement de son identité.

La rétention ne peut excéder quatre heures, ou huit heures à Mayotte, à compter du contrôle effectu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78-2 e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y mettre fin à tout moment.

Si la personne interpellée maintient son refus de justifier de son identité ou fournit des éléments d'identité manifestement inexacts, les opérations de vérification peuvent donner lieu, après 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à la prise d'empreintes digitales ou de photographies lorsque celle-ci constitue l'unique moyen d'établir l'identité de l'intéressé. La prise d'empreintes ou de photographies doit être mentionnée et spécialement motivée dans le procès-verbal prévu ci-aprè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mentionne, dans un procès-verbal, les motifs qui justifient le contrôle ainsi que la vérification d'identité, et les

670 프랑스 형사소송법

conditions dans lesquelles la personne a été présentée devant lui, informée de ses droits et mise en demeure de les exercer.

Il précise le jour et l'heure à partir desquels le contrôle a été effectué, le jour et l'heure de la fin de la rétention et la durée de celle-ci.

Ce procès-verbal est présenté à la signature de l'intéressé.

Si ce dernier refuse de le signer, mention est faite du refus et des motifs de celui-ci.

Le procès-verbal est transm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pie en ayant été remise à l'intéressé dans le cas prévu par l'alinéa suivant.

Si elle n'est suivie à l'égard de la personne qui a été retenue d'aucune procédure d'enquête ou d'exécution adressée à l'autorité judiciaire, la vérification d'identité ne peut donner lieu à une mise en mémoire sur fichiers et le procès-verbal ainsi que toutes les pièces se rapportant à la vérification sont détruits dans un délai de six mois sous le contrô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 cas où il y a lieu à procédure d'enquête ou d'exécution adressée à l'autorité judiciaire et assortie du maintien en garde à vue, la personne retenue doit être aussitôt informée de son droit de faire avis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mesure dont elle fait l'objet. Les prescriptions énumérées au présent article sont imposées à peine de nullité.

Article 78-4

La durée de la rétention prévue par l'article précédent s'impute, s'il y a lieu, sur celle de la garde à vue.

Article 78-5

Seront punis de trois mois d'emprisonnement et de 3 750 euros d'amende ceux qui auront refusé de se prêter aux prises d'empreintes digitales ou de photographies autoris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8-3.

Article 78-6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mentionnés aux 1° bis, 1° ter, 1° quater et 2° de l'article

21 sont habilités à relever l'identité des contrevenants pour dresser les procès-verbaux concernant des contraventions aux arrêtés de police du maire, des contraventions au code de la route que la loi et les règlements les autorisent à verbaliser ou des contraventions qu'ils peuvent constater en vertu d'une disposition législative expresse.

Si le contrevenant refuse ou se trouve dans l'impossibilité de justifier de son identité, l'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en rend compte immédiatement à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nationale ou de la gendarmerie nationa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qui peut alors lui ordonner sans délai de lui présenter sur-le-champ le contrevenant. A défaut de cet ordre, l'agent de police judiciaire adjoint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ne peut retenir le contrevenant.

Lors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écide de procéder à une vérification d'ident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8-3, le délai prévu au troisième alinéa de cet article court à compter du relevé d'identité.

Titre III :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Chapitre Ier :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9

L'instruction préparatoire est obligatoire en matière de crime ; sauf dispositions spéciales, elle est facultative en matière de délit ; elle peut également avoir lieu en matière de contravention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requiert en application de l'article 44.

Article 80

I . - Le juge d'instruction ne peut informer qu'en vertu d'un réquisito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réquisitoire peut être pris contre personne dénommée ou non dénommée.

Lorsque des faits, non visés au réquisitoire,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u juge d'instruction, celui-ci doit immédiatement communiqu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plaintes ou les procès-verbaux qui les constat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lors soit requérir du juge d'instruction, par réquisitoire supplétif, qu'il informe sur ces nouveaux faits, soit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distincte, soit saisir la juridiction de jugement, soit ordonner une enquête, soit décider d'un classement sans suite ou de procéder à l'une des mesures prévues aux articles 41-1 à 41-3, soit transmettre les plaintes ou les procès-verbaux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distincte, celle-ci peut être confiée au même juge d'instruction, désign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83. En cas de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il est procédé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86. Toutefois, lorsque de nouveaux faits sont dénoncés au juge d'instruction par la partie civile en cours d'information,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qui précède.

- II. - En matière criminelle, ainsi que lorsqu'il requiert une cosaisin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 sein duquel il n'y a pas de pôle de l'instruction est compétent pour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devant les magistrats du pô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s pour les infractions relevant de sa compéten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3, y compris en faisant déférer devant eux les personnes concernées. Dans les cas prévus au premier alinéa, le réquisitoire introductif peut également être pr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 sein duquel se trouve le pôle, qui est à cette fi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ur l'ensemble du ressort de compétence de ce pôle, y compris pour diriger et contrôler les enquêtes de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c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st seul compétent pour suivre le déroulement des informations visées aux alinéas précédents jusqu'à leur règlement. En cas de renvoi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l'affaire est renvoyée, selon le cas,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tribunal de police, le tribunal correctionnel, le tribunal pour enfants ou la cour d'assises initialement compétents.

III. -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quel il y a un pôle de l'instruction constate qu'une personne est déférée devant lui en vue de l'ouverture d'une information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II et qu'il estime qu'aucune information relevant de la compétence du pôle ne doit être ouverte, il peut, avant de transmettr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requérir le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4 et l'article 396. Si la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elle doit comparaîtr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au plus tard le troisième jour ouvrable suivant. A défaut, ell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80-1

A peine de nullité, le juge d'instruction ne peut mettre en examen que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rendant vraisemblable qu'elles aient pu participer, comme auteur ou comme complice, à la commission des infractions dont il est saisi. Il ne peut procéder à cette mise en examen qu'après avoir préalablement entendu les observations de la personne ou l'avoir mise en mesure de les faire, en étant assistée par son avocat, soi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16 relatif à l'interrogatoire de première comparution, soit en tant que témoin assist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13-1 à 113-8. Le juge d'instruction ne peut procéder à la mise en examen de la personne que s'il estime ne pas pouvoir recourir à la procédure de témoin assisté.

Article 80-1-1

Sans préjudice de son droit de demander l'annulation de la mise en examen dans les six mois de sa première comparution, conformément aux articles 173, 173-1 et 174-1, la personne mise en examen peut au cours de l'inform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demander au juge d'instruction de revenir sur sa décision et de lui octroyer le statut de témoin assisté si elle estime que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premier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80-1 ne sont plus remplies.

674 프랑스 형사소송법

Cette demande peut être faite à l'issue d'un délai de six mois après la mise en examen et tous les six mois suivants. Cette demande peut également être faite dans les dix jours qui suivent la notification d'une expertise ou un interrogatoire au cours duquel la personne est entendue sur les résultats d'une commission rogatoire ou sur les déclarations de la partie civile, d'un témoin, d'un témoin assisté ou d'une autre personne mise en examen.

Le juge d'instruction statue sur cette demande après avoir sollicité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Si le juge d'instruction fait droit à la demande, il informe la personne qu'elle bénéficie du statut de témoin assisté.

Si la personne est détenue, le juge ordonne sa mise en liberté d'office.

Si le juge d'instruction estime que la personne doit rester mise en examen, il statue par ordonnance motivée faisant état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justifiant sa décision.

Article 80-2

Le juge d'instruction peut informer une personne par lettre recommandée qu'elle est convoquée,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ix jours ni supérieur à deux mois, pour qu'il soit procédé à sa première comparu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16.

Cette lettre indique la date et l'heure de la convocation.

Elle donne connaissance à la personne de chacun des faits dont ce magistrat est saisi et pour lesquels la mise en examen est envisagée, tout en précisant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Elle fait connaître à la personne qu'elle a le droit de choisir un avocat ou de demander qu'il lui en soit désigné un d'office, ce choix ou cette demande devant être adressé au greffe du juge d'instruction.

Elle précise que la mise en examen ne pourra intervenir qu'à l'issue de la première comparution de la personn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faire notifier cette convocation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ette notification comprend les men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 elle est constatée par un procès-verbal signé par la personne qui en reçoit copie.

L'avocat choisi ou désigné est convoqu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14 ; il a accè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cet article.

Article 80-3

Dès le début de l'information, le juge d'instruction doit avertir la victime d'une infraction de l'ouverture d'une procédure, de son droit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t des modalités d'exercice de ce droit.

Si la victime est mineure, l'avis est donné à ses représentants légaux.

L'avis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indique à la victime qu'elle a le droit, si elle souhait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d'être assistée d'un avocat qu'elle pourra choisir ou qui, à sa demande, sera désigné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en précisant que les frais seront à sa charge, sauf si elle rempli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ide juridictionnelle ou si elle bénéficie d'une assurance de protection juridique.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est informé par la victime qu'elle se constitue partie civile et qu'elle demande la désignation d'un avocat, il en informe sans délai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Article 80-4

Pendant le déroulement de l'information pour recherche des causes de la mort ou des causes d'une dispari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4 et 74-1,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hapitre Ier du titre III du livre Ier.

Les interceptions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sont effectuées sous son autorité et son contrô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00 et aux articles 100-1 à 100-7.

Les interceptions ne peuvent excéder une durée de deux mois renouvelable.

Les membres de la famille ou les proches de la personne décédée ou disparue peuven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à titre incident.

Toutefois, en cas de découverte de la personne disparue, l'adresse de cette dernière et les pièces permettant d'avoi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connaissance de cette adresse ne peuvent être communiquées à la partie civile qu'avec l'accord de l'intéressé s'il s'agit d'un majeur et qu'avec l'accord du juge d'instruction s'il s'agit d'un mineur ou d'un majeur protégé.

Article 81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conformément à la loi, à tous les actes d'information qu'il juge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Il instruit à charge et à décharge.

Il est établi une copie de ces actes ainsi que de toutes les pièces de la procédure ; chaque copie est certifiée conforme par le greffier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mentionné à l'alinéa 4. Toutes les pièces du dossier sont cotées par le greffier au fur et à mesure de leur rédaction ou de leur réception par le juge d'instruction.

Toutefois, si les copies peuvent être établies à l'aide de procédés photographiques ou similaires, elles sont exécutées à l'occasion de la transmission du dossier.

Il en est alors établi autant d'exemplaires qu'il est nécessaire à l'administration de la justice.

Le greffier certifie la conformité du dossier reproduit avec le dossier original.

Si le dessaisissement momentané a pour cause l'exercice d'une voie de recours, l'établissement des copies doit être effectué immédiatement pour qu'en aucun cas ne soit retardée la mise en état de l'affaire prévue à l'article 194.

Si le juge d'instruction est dans l'impossibilité de procéder lui-même à tous les actes d'instruction, il peut donner commission rogatoire aux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fin de leur faire exécuter tous les actes d'information nécessaires dans les conditions et sous les réserves prévues aux articles 151 et 152. Le juge d'instruction doit vérifier les éléments d'information ainsi recueillis.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ou fait procéder, soit par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conformément à l'alinéa 4, soit par toute personne habilitée dans d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à une enquête sur la personnalité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ainsi que sur leur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ou sociale.

Toutefois, en matière de délit, cette enquête est facultativ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commettre, suivant les cas,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le service compétent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ou toute association habilitée en application de l'alinéa qui précède à l'effet de vérifier l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d'une personne mise en examen et de l'informer sur les mesures

propres à favoriser l'insertion sociale de l'intéressée. A moins qu'elles n'aient été déjà prescrites par le ministère public, ces diligences doivent être prescrites par le juge d'instruction chaque fois qu'il envisage de placer en détention provisoire un majeur âgé de moins de vingt et un ans au moment de la commission de l'infraction lorsque la peine encourue n'excède pas cinq ans d'emprisonnem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prescrire un examen médical, un examen psychologique ou ordonner toutes mesures utiles. S'il est saisi par une partie d'une demande écrite et motivée tendant à ce qu'il soit procédé à l'un des examens ou à toutes autres mesures utiles prévus par l'alinéa qui précède, le juge d'instruction doit, s'il n'entend pas y faire dr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au plus tard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a demande mentionnée à l'alinéa précédent doi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saisi du dossier.

Elle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greffier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Si le demandeur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Lors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ne réside pa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déclaration au greffier peut être faite au moyen d'une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la demande peut également être faite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copie et par tout moyen, au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Faute par le juge d'instruction d'avoir statué dans le délai d'un mois, la partie peut saisir directeme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et procède conformément aux troisième, quatrième et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186-1.

Article 81-1

Le juge d'instruction peut, d'office, sur réquisition du parquet ou à la demande de la partie

civile, procéder, conformément à la loi, à tout acte lui permettant d'apprécier la nature et l'importance des préjudices subis par la victime ou de recueillir des renseignements sur la personnalité de celle-ci.

Article 82

Dans son réquisitoire introductif, et à toute époque de l'information par réquisitoire supplétif,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requérir du magistrat instructeur tous actes lui paraissant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toutes mesures de sûreté nécessaires.

Il peut également demander à assister à l'accomplissement des actes qu'il requiert.

Il peut, à cette fin, se faire communiquer la procédure, à charge de la rendr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S'il requiert le placement ou le maintien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es réquisitions doivent être écrites et motivées par référence aux seu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4.

Si le juge d'instruction ne suit pas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doit,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7-4,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dans les cinq jours de ces réquisitions.

A défaut d'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ans les dix jours,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Il en est de même 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le juge d'instruction, ne rend pas d'ordonnance dans le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sa saisine.

Article 82-1

Les parties peuvent, au cours de l'information, saisir le juge d'instruction d'une demande écrite et motivée tendant à ce qu'il soit procédé à leur audition ou à leur interrogatoire, à l'audition d'un témoin, à une confrontation ou à un transport sur les lieux, à ce qu'il soit ordonné la production par l'une d'entre elles d'une pièce utile à l'information, ou à ce qu'il soit procédé à tous autres actes qui leur paraissent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 peine de nullité, cette demande doit être form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ixième alinéa de l'article 81 ; elle doit porter sur des actes déterminés et, lorsqu'elle concerne une audition,

préciser l'identité de la personne dont l'audition est souhaitée.

Le juge d'instruction doit, s'il n'entend pas y faire dr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au plus tard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sont applicables.

A l'expiration d'un délai de quatre mois depuis sa dernière comparution, la personne mise en examen qui en fait la demande écrite doit être entendue par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son interrogatoire dans les trente jours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qui doit être form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ixième alinéa de l'article 81.

Article 82-2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aisit le juge d'instruction,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82-1, d'une demande tendant à ce que ce magistrat procède à un transport sur les lieux, à l'audition d'un témoin, d'une partie civile ou d'une autre personne mise en examen, elle peut demander que cet acte soit effectué en présence de son avocat.

La partie civile dispose de ce même droit s'agissant d'un transport sur les lieux, de l'audition d'un témoin ou d'une autre partie civile ou de l'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juge d'instruction statue sur ces demand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82-1. S'il fait droit à la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convoque l'avocat au plus tard dans les deux jours ouvrables avant la date du transport, de l'audition ou de l'interrogatoire, au cours desquels celui-ci peut interveni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20.

Article 82-3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conteste le bien-fondé d'une demande des parties tendant à constater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il d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es dispositions des avant-dernier et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81 sont applicables.

Article 83

Lorsqu'il existe dans un tribunal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en

cas d'empêchement,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désigne, pour chaque information, le juge qui en sera chargé.

Il peut établir, à cette fin, un tableau de roulement.

Les désigna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ont des mesures d'administration judiciaire non susceptibles de recours.

Article 83-1

Lorsque la gravité ou la complexité de l'affaire le justifie, l'information peut faire l'objet d'une cosaisin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quel il existe un pôle de l'instruction ou, en cas d'empêchement,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désigne, dès l'ouverture de l'information, d'office ou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requiert dans son réquisitoire introductif, 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pour être adjoints au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l'information.

A tout moment de la procédur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désigner 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cosaisins soit à la demande du juge chargé de l'information, soit, si ce juge donne son accord, d'office ou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u sur requête des parties dépos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Les parties ne peuvent pas renouveler leur demande avant six mois.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e président désigne 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pour être adjoints au juge chargé de l'information.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linéa, lorsque l'information a été ouverte dans un tribunal où il n'y a pas de pôl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ù se trouve le pô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ésigne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l'information ainsi que le ou les juges d'instruction cosaisins, après que le juge d'instruction initialement saisi s'est dessaisi au profit du pôle ; ce dessaisissement prend effet à la date de désignation des juges du pôle.

Lorsqu'elle n'est pas ordonn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linéa qui précède, en l'absence d'accord du juge chargé de l'information ou, à défaut, de désignation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délai d'un mois, la cosaisine peut être ordonnée pa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gissant d'office, à la demand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u sur requête des parties.

Le président statu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qui est déposée conformément à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si elle émane d'une partie.

Lorsque l'information a été ouverte dans un tribunal où il n'y a pas de pôl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ux fins de cosaisin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sa saisine, la chambre décide alors soit, s'il n'y a pas lieu à cosaisine, de renvoyer le dossier au magistrat instructeur, soit, si cette décision est indispensab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à la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de procéder au dessaisissement du juge d'instruction et à la désignation, aux fins de poursuite de la procédure, de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Les décisions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de cette dernière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des mesures d'administration judiciaire non susceptibles de recours.

Article 83-2

En cas de cosaisine,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l'information coordonne le déroulement de celle-ci.

Il a seul qualité pour saisi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ordonner une mise en liberté d'office et pour rendre l'avis de fin d'information prévu par l'article 175 et l'ordonnance de règlement.

Toutefois, cet avis et cette ordonnance peuvent être cosignés par le ou les juges d'instruction cosaisins.

Article 84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657 et 663, le dessaisissement du juge d'instruction au profit d'un autre juge d'instruction peut être demandé au président du tribunal,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par requête motivé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gissant soit spontanément, soit à la demande des parties.

Le président du tribunal doit statuer dans les huit jours par une ordonnance qui ne sera pas susceptible de voies de recours.

En cas d'empêchement du juge chargé de l'information, par suite de congé, de maladie ou pour toute autre cause, de même qu'en cas de nomination à un autre poste, le président désigne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le remplacer. Toutefois, en cas d'urgence et pour des actes isolés, tout juge d'instruction peut suppléer un autre juge d'instruction du même tribunal.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83-1, le juge désigné ou, s'ils sont plusieurs, le premier dans l'ordre de désignation, peut remplacer ou suppléer le juge chargé de l'information sans qu'il y ait lieu à application des alinéas qui précèdent.

Section 2 : De la constitution de la partie civile et de ses effets

Article 85

Toute personne qui se prétend lésée par un crime ou un délit peut en portant plaint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compétent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2, 52-1 et 706-42. Toutefois, la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n'est recevable qu'à condition que la personne justifie soit 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ui a fait connaître, à la suite d'une plainte déposée devant lui ou un service de police judiciaire, qu'il n'engagera pas lui-même des poursuites, soit qu'un délai de trois mois s'est écoulé depuis qu'elle a déposé plainte devant ce magistrat, contre récépissé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ou depuis qu'elle a adressé, selon les mêmes modalités, copie à ce magistrat de sa plainte déposée devant un service de police judiciaire.

Cette condition de recevabilité n'est pas requise s'il s'agit d'un crime ou s'il s'agit d'un délit prévu par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ou par les articles L. 86, L. 87, L. 91 à L. 100, L. 102 à L. 104, L. 106 à L. 108 et L. 113 du code électoral.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st suspendue, au profit de la victime, du dépôt de la plainte jusqu'à la répons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au plus tard, une fois écoulé le délai de trois mois.

Article 86

Le juge d'instruction ordonne communication de la plaint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our que ce magistrat prenne ses réquisitions. Le réquisitoire peut être pris contre personne dénommée ou non dénommée.

Lorsque la plainte n'est pas suffisamment motivée ou justifi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vant de prendre ses réquisitions et s'il n'y a pas été procédé d'office par le juge d'instruction, demander à ce magistrat d'entendre la partie civile et, le cas échéant, d'inviter cette dernière à produire toute pièce utile à l'appui de sa plaint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 peut saisir le juge d'instruction de réquisitions de non informer que si, pour des causes affectant l'action publique elle-même, les faits ne peuvent légalement comporter une poursuite ou si, à supposer ces faits démontrés, ils ne peuvent admettre aucune qualification péna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prendre des réquisitions de non-lieu dans le cas où il est établi de façon manifeste, le cas échéant au vu des investigations qui ont pu être réalisées à la suite du dépôt de la plainte ou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que les faits dénoncés par la partie civile n'ont pas été commis.

Dans le cas où le juge d'instruction passe outre, il doit statuer par une ordonnance motivée.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rend une ordonnance de refus d'informer, il peut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77-2 et 177-3.

Article 87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peut avoir lieu à tout moment au cours de l'instruction. Elle peut être contest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par une partie.

En cas de contestation, ou s'il déclare irrecevabl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e juge d'instruction statue, après communication du dossier au ministère public, par ordonnance motivée dont l'intéressé peut interjeter appel.

Article 88

Le juge d'instruction constate, par ordonnance, le dépôt de la plainte.

684 프랑스 형사소송법

En fonction des ressources de la partie civile, il fixe le montant de la consignation que celle-ci doit, si elle n'a obtenu l'aide juridictionnelle, déposer au greffe et le délai dans lequel elle devra être faite sous peine de non-recevabilité de la plainte.

Il peut dispenser de consignation la partie civile.

Article 88-1

La consignation fix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88 garantit le paiement de l'amende civile susceptible d'êt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77-2.

La somme consignée est restituée lorsque cette amende n'a pas été prononcée par le juge d'instruction ou, en cas d'appel du parquet ou de la partie civil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88-2

Le juge d'instruction peut, en cours de procédure, ordonner à la partie civile qui demande la réalisation d'une expertise de verser préalablement un complément de la consignation prévue par l'article 88 afin de garantir le paiement des frais susceptibles d'être mis à sa charge en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800-1.

Cette décision est prise par ordonnance motivée susceptible d'appel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Elle peut également être pris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e après que le juge d'instruction a refusé d'ordonner l'expertise demandée.

Le complément de consignation est restitué s'il n'est pas fait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800-1.

Article 89

Toute partie civile doit déclarer au juge d'instruction une adresse qui doit être située, si l'information se déroule en métropole, dans un département métropolitain ou, si l'information se déroule dans un département d'outre-mer, dans ce département.

Elle peut déclarer soit une adresse personnelle, soit, avec l'accord de celui-ci, qui peut être recueilli par tout moyen, celle d'un tiers chargé de recevoir les actes qui lui sont destinés.

Elle est avisée qu'elle doit signaler au juge d'instruction jusqu'à la clôture de l'information, par nouvelle déclaration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Elle est également avisée que toute not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Faute par elle d'avoir déclaré une adresse, la partie civile ne peut opposer le défaut de notification des actes qui auraient dû lui être notifiés aux termes de la loi.

Article 89-1

Lors de sa première audition, la partie civile est avisée de son droit de formuler une demande d'acte ou de présenter une requête en annulation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81, neuvième alinéa, 82-1, 156, premier alinéa, et 173, troisième alinéa, durant le déroulement de l'information et au plus tard le vingtième jour suivant l'envoi de l'avi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75,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3-1.

S'il estime que le délai prévisible d'achèvement de l'information est inférieur à un an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à dix-huit mois en matière criminelle, le juge d'instruction donne connaissance de ce délai à la partie civile et l'avise qu'à l'expiration dudit délai elle pourra demander la clôture de la procédur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5-1.

Dans le cas contraire, il indique à la partie civile qu'elle pourra demander, en application de ce même article, la clôture de la procédure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dix-huit mois en matière criminelle. Les avi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peuvent également être faits par lettre recommandée.

Article 90

Dans le cas où le juge d'instruction n'est pas compétent aux termes de l'article 52, il rend, aprè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une ordonnance renvoyant la partie civile à se pourvoir devant telle juridiction qu'il appartiendra.

Article 90-1

En matière criminelle, lorsqu'il s'agit d'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prévu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ou lorsqu'il s'agit d'un délit contre les biens prévu par le livre III du même code et accompagné d'atteintes à la personne, le juge d'instruction avise tous les six mois la partie civile de l'état d'avancement de l'information. Cet avis peut être donné par lettre simple adressée à la partie civile et à son avocat, ou à l'occasion de l'audition de la partie civile. Lorsqu'une association regroupant plusieurs victimes s'est constituée partie civi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15, l'avis est donné à cette seule association, à charge pour elle d'en informer les victimes regroupées en son sein, sauf si ces victimes se sont également constituées parties civiles à titre individuel.

Si la partie civile le demande, l'information relative à l'évolution de la procédure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intervient tous les quatre mois, et la partie civile est convoquée et entendue à cette fin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91

Quand, après une information ouverte sur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une décision de non-lieu a été rend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toutes personnes visées dans la plainte, et sans préjudice d'une poursuite pour dénonciation calomnieuse, peuvent, si elles n'usent de la voie civile, demander des dommages-intérêts au plaignant dans les formes indiquées ci-après.

L'action en dommages-intérêts doit être introduite dans les trois mois du jour où l'ordonnance de non-lieu est devenue définitive.

Elle est portée par voie de citation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ù l'affaire a été instruite. Ce tribunal est immédiatement saisi du dossier de l'information terminée par une ordonnance de non-lieu, en vue de sa communication aux parties.

Les débats ont lieu en chambre du conseil : les parties, ou leurs conseils, et le ministère public sont entendus.

Le jugement est rendu en audience publique.

En cas de condamnation, le tribunal peut ordonner la publication intégrale ou par extraits de son jugement dans un ou plusieurs journaux qu'il désigne, aux frais du condamné.

Il fixe le coût maximum de chaque insertion.

L'opposition et l'appel sont recevables dans les délais de droit commun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appel est porté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statuant dans les mêmes formes que le tribunal.

L'arrêt de la cour d'appel peut être déféré à la Cour de cassation comme en matière pénale. Lorsqu'une décision définitive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77-2 a déclaré qu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était abusive ou dilatoire, cette décision s'impose au tribunal correctionnel sais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Article 91-1

En matière criminelle, lorsqu'il s'agit d'un délit contre les personnes prévu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ou lorsqu'il s'agit d'un délit contre les biens prévu par le livre III du même code et accompagné d'atteintes à la personne, le juge d'instruction peut décider que la partie civile est assimilée au témoin en ce qui concerne le paiement des indemnités.

Section 3 : Des transports, des perquisitions, des saisies et des interceptions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Sous-section 1 : Des transports, des perquisitions et des saisies

Article 92

Le juge d'instruction peut se transporter sur les lieux pour y effectuer toutes constatations utiles ou procéder à des perquisitions.

Il en donne av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a la faculté de l'accompagner. Le juge d'instruction est toujours assisté d'un greffier.

Il dresse un procès-verbal de ses opérations.

Article 93

Si les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l'exig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après en avoir donné avis

688 프랑스 형사소송법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son tribunal, se transporter avec son greffier dans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à effet d'y procéder à tous actes d'instruction, à charge par lui d'aviser, au préalab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ans le ressort duquel il se transporte.

Il mentionne sur son procès-verbal les motifs de son transport.

Article 94

Les perquisitions sont effectuées dans tous les lieux où peuvent se trouver des objets ou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couverte serait uti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ou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Article 95

Si la perquisition a lieu au domicil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juge d'instruction doit se conformer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7 et 59.

Article 96

Si la perquisition a lieu dans un domicile autre que celui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a personne chez laquelle elle doit s'effectuer est invitée à y assister.

Si cette personne est absente ou refuse d'y assister, la perquisition a lieu en présence de deux de ses parents ou alliés présents sur les lieux, ou à défaut, en présence de deux témoins. Le juge d'instruction doit se conformer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7 (alinéa 2) et 59.

Toutefois, il a l'obligation de provoquer préalablement toutes mesures utiles pour que soit assuré le respect du secret professionnel et des droits de la défens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6 et 56-1 à 56-4 sont applicables aux perquisitions effectu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97

Lorsqu'il y a lieu, en cours d'information, de rechercher des documents ou des données informatiques et sous réserve des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et du respect, le cas échéant, de

l'obligation stipulée par l'alinéa 3 de l'article précédent,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ar lui commis a seul le droit d'en prendre connaissance avant de procéder à la saisie. Tous les objets, documents ou données informatique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sont immédiatement inventoriés et placés sous scellés.

Cependant, si leur inventaire sur place présente des difficultés,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ocède comme il est dit a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56. Il est procédé à la saisie des données informatiqu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n plaçant sous main de justice soit le support physique de ces données, soit une copie réalisée en présence des personnes qui assistent à la perquisition. Si une copie est réalisée dans le cadre de cette procédure, il peut être procédé, sur ordre du juge d'instruction, à l'effacement définitif, sur le support physique qui n'a pas été placé sous main de justice, des données informatiques dont la détention ou l'usage est illégal ou dangereux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des biens.

Avec l'accord du juge d'instruc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maintient que la saisie des objets, documents et données informatique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insi que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Lorsque ces scellés sont fermés, ils ne peuvent être ouverts et les documents dépouillés qu'en présence de la personne, assistée de son avocat, ou eux dûment appelés.

Le tiers chez lequel la saisie a été faite est également invité à assister à cette opération.

Si l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ne s'y opposent pas, copie ou photocopie des documents ou des données informatique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peuvent être délivrées à leurs frais, dans le plus bref délai, aux intéressés qui en font la demande.

Si la saisie porte sur des espèces, lingots, effets ou valeurs dont la conservation en nature n'est pa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ou à la sauvegarde des droits des parties, il peut autoriser le greffier à en faire le dépôt à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ou à la Banque de France.

Lorsque la saisie porte sur des billets de banque ou pièces de monnaie libellés en euros contrefaisants,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ar lui commis doit transmettre, pour analyse et identification, au moins un exemplaire de chaque type de billets ou pièces suspectés faux au centre d'analyse national habilité à cette fin.

690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centre d'analyse national peut procéder à l'ouverture des scellés.

Il en dresse inventaire dans un rapport qui doit mentionner toute ouverture ou réouverture des scellés.

Lorsque les opérations sont terminées, le rapport et les scellés sont déposés entre les mains du greffier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Ce dépôt est constaté par procès-verbal.

Les dispositions du précédent alinéa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il n'existe qu'un seul exemplaire d'un type de billets ou de pièces suspectés faux, tant que celui-ci est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rticle 97-1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our les nécessités de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procéder aux opérations prévues par l'article 57-1.

Article 98

Sous réserve des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judiciaire, toute communication ou toute divulgation sans autorisa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de ses ayants droit ou du signataire ou du destinataire d'un document provenant d'une perquisition, à une personne non qualifiée par la loi pour en prendre connaissance, est punie de 4 500 euros d'amende et de deux ans d'emprisonnement.

Article 99

Au cours de l'information, le juge d'instruction est compétent pour décider de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Il statue, par ordonnance motivée, soi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après avis de ce dernier, d'office ou sur requêt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la partie civile ou de toute autre personne qui prétend avoir droit sur l'objet.

Il peut également,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écider d'office de restituer ou de faire restituer à la victime de l'infraction les objet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dont la

propriété n'est pas contestée.

Il n'y a pas lieu à restitution lorsque celle-ci est de nature à faire obstac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ou à la sauvegarde des droits des parties ou lorsqu'elle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Elle peut être refusée lorsque la confiscation de l'objet est prévue par la loi.

L'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mentionnée a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st notifiée soit au requérant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soit au ministère public et à toute autre partie intéressée en cas de décision de restitution.

Elle peut être déféré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ur simple requête déposée au greffe du tribunal, dans le délai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s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86. Ce délai est suspensif.

Le tiers peut, au même titre que les parties, être entendu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ses observations, mais il ne peut prétendre à la mise à sa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Article 99-1

Lorsque, au cours d'une procédure judiciaire ou des contrôles mentionnés à l'article L. 214-23 du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il a été procédé à la saisie ou au retrait, à quelque titre que ce soit, d'un ou plusieurs animaux vivan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u lieu de l'infraction ou, lorsqu'il est saisi, le juge d'instruction peut placer l'animal dans un lieu de dépôt prévu à cet effet ou le confier à une fondation ou à une association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 décision mentionne le lieu de placement et vaut jusqu'à ce qu'il ait été statué sur l'infraction. Lorsque les conditions du placement sont susceptibles de rendre l'animal dangereux ou de mettre sa santé en péril, le juge d'instruction, lorsqu'il est saisi, ou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un magistrat du siège délégué par lui peut, par ordonnance motivée prise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après avis d'un vétérinaire, ordonner qu'il sera cédé à titre onéreux ou confié à un tiers ou qu'il sera procédé à son euthanasie.

Cette ordonnance est notifiée au propriétaire s'il est connu, qui peut la déférer soit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u ressort ou à un magistrat de cette cour désigné par lui, soit,

lorsqu'il s'agit d'un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l'article 99.

Le produit de la vente de l'animal est consigné pendant une durée de cinq ans.

Lorsque l'instance judiciaire qui a motivé la saisie se conclut par un non-lieu ou par une décision de relaxe, le produit de la vente est restitué à la personne qui était propriétaire de l'animal au moment de la saisie si celle-ci en fait la demande.

Dans le cas où l'animal a été confié à un tiers, son propriétaire peut saisir le magistrat désigné au deuxième alinéa d'une requête tendant à la restitution de l'animal.

Les frais exposés pour la garde de l'animal dans le lieu de dépôt sont à la charge du propriétaire, sauf décision contraire du magistrat désigné au deuxième alinéa saisi d'une demande d'exonération ou du tribunal statuant sur le fond.

Cette exonération peut également être accordée en cas de non-lieu ou de relaxe.

Lorsque, au cours de la procédure judiciaire, la conservation de l'animal saisi ou retiré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 l'animal est susceptible de présenter un danger grave et immédiat pour les personnes ou les animaux domestiqu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lorsqu'il est saisi ordonne la remise de l'animal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afin que celle-ci mette en oeuvre les mesures prévues au II de l'article L. 211-11 du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Article 99-2

Lorsque, au cours de l'instruction, la restitution des biens meuble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et dont la conservation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s'avère impossible, soit parce que le propriétaire ne peut être identifié, soit parce que le propriétaire ne réclame pas l'objet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une mise en demeure adressée à son domicile,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la destruction de ces biens ou leur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aux fins d'aliéna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ordonner,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de remettr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en vue de leur aliénation, des biens meuble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appartenant aux personnes

poursuivies, dont la conservation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a loi, lorsque le maintien de la saisie serait de nature à diminuer la valeur du bien. S'il est procédé à la vente du bien, le produit de celle-ci est consigné pendant une durée de dix ans.

En cas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escement, ou lorsque la peine de confiscation n'est pas prononcée, ce produit est restitué au propriétaire des objets s'il en fait la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ordonner la destruction des biens meuble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dont la conservation n'est plus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orsqu'il s'agit d'objets qualifiés par la loi de dangereux ou de nuisibles, ou dont la détention est illicite. Les décisions pris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font l'objet d'une ordonnance motivée. Cette ordonnance est prise soi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d'office après avis de ce dernier.

Elle est notifiée au ministère public, aux parties intéressées et, s'ils sont connus, au propriétaire ainsi qu'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le bien,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l'article 99.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99-3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ar lui commis peut, par tout moyen, requérir de toute personne, de tout établissement ou organisme privé ou public ou de toute administration publique qui sont susceptibles de détenir des documents intéressant l'instruction, y compris ceux issus d'un système informatique ou d'un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de lui remettre ces documents, notamment sous forme numérique, sans que puisse lui être opposée, sans motif légitime, l'obligation au secret professionnel.

Lorsque les réquisitions concernent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56-1 à 56-3, la remise des documents ne peut intervenir qu'avec leur accord.

En l'absence de réponse de la personne aux réquisition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0-1 sont applicables.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60-1 est également applicable.

Article 99-4

Pour les nécessités de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rocéder aux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0-2.

Avec l'autorisation expresse du juge d'instruction, l'officier de police peut procéder aux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0-2.

Les organismes ou personnes concernés mettent à disposition les informations requises par voie télématique ou informatique dans les meilleurs délais.

Le fait de refuser de répondre sans motif légitime à ces réquisitions est puni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60-2.

Sous-section 2 : Des interceptions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Article 100

En matière criminelle et en matière correctionnelle, si la peine encourue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lorsque les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l'exigent, prescrire l'interception, l'enregistrement et la transcription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Ces opérations sont effectuées sous son autorité et son contrôle.

La décision d'interception est écrite.

Elle n'a pas de caractère juridictionnel et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rticle 100-1

La décision pris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00 doit comporter tous les éléments d'identification de la liaison à intercepter, l'infraction qui motive le recours à l'interception ainsi que la durée de celle-ci.

Article 100-2

Cette décision est prise pour une durée maximum de quatre mois.

Elle ne peut être renouvelée qu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Article 100-3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peut requérir tout agent qualifié d'un service ou organisme placé sous l'autorité ou la tutelle du ministre chargé des télécommunications ou tout agent qualifié d'un exploitant de réseau ou fournisseur de services de télécommunications autorisé, en vue de procéder à l'installation d'un dispositif d'interception.

Article 100-4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dresse procès-verbal de chacune des opérations d'interception et d'enregistrement.

Ce procès-verbal mentionne la date et l'heure auxquelles l'opération a commencé et celles auxquelles elle s'est terminée.

Les enregistrements sont placés sous scellés fermés.

Article 100-5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transcrit la correspondance uti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Il en est dressé procès-verbal.

Cette transcription est versée au dossier.

Les correspondances en langue étrangère sont transcrites en français avec l'assistance d'un interprète requis à cette fin.

A peine de nullité, ne peuvent être transcrites les correspondances avec un avocat relevant de l'exerc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A peine de nullité, ne peuvent être transcrites les correspondances avec un journaliste permettant d'identifier une source en violation de l'article 2 de 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Article 100-6

Les enregistrements sont détruits, à la dilig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procureur général, à l'expiration du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de l'opération de destruction.

Article 100-7

Aucune interception ne peut avoir lieu sur la ligne d'un député ou d'un sénateur sans que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à laquelle il appartient en soit informé par le juge d'instruction.

Aucune interception ne peut avoir lieu sur une ligne dépendant du cabinet d'un avocat ou de son domicile sans que le bâtonnier en soit informé par le juge d'instruction.

Aucune interception ne peut avoir lieu sur une ligne dépendant du cabinet d'un magistrat ou de son domicile sans que le premier président ou le procureur général de la juridiction où il réside en soit informé.

Les form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prescrites à peine de nullité.

Section 4 : Des auditions de témoins

Sous-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101

Le juge d'instruction fait citer devant lui, par un huissier ou par un agent de la force publique, toutes les personnes dont la déposition lui paraît utile.

Une copie de cette citation leur est délivrée.

Les témoins peuvent aussi être convoqués par lettre simple, par lettre recommandée ou par la voie administrative ; ils peuvent en outre comparaître volontairement. Lorsqu'il est cité ou convoqué, le témoin est avisé que, s'il ne comparaît pas ou s'il refuse de comparaître, il pourra y être contraint par la force publiqu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9.

Article 102

Les témoins sont entendus, soit séparément et hors la présence des parties, soit lors de confrontations réalisées entre eux ou avec l'une ou l'autre des parties, par le juge d'instruction, assisté de son greffier ;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de leurs déclarations.

Le juge d'instruction peut faire appel à un interprète majeur, à l'exclusion de son greffier et des témoins.

L'interprète, s'il n'est pas assermenté, prête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Si le témoin est atteint de surdité, le juge d'instruction nomme d'office pour l'assister lors de son audition un interprète en langue des signes ou toute personne qualifiée maîtrisant un langage ou une méthod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es sourds.

Celui-ci, s'il n'est pas assermenté, prête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Il peut également être recouru à tout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e témoin.

Si le témoin atteint de surdité sait lire et écrir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communiquer avec lui par écrit.

Article 103

Les témoins prêtent serment de dire tout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Le juge leur demande leurs nom, prénoms, âge, état, profession, demeure, s'ils sont parents ou alliés des parties et à quel degré ou s'ils sont à leur service.

Il est fait mention de la demande et de la réponse.

Article 105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et concordants d'avoir participé aux faits dont le juge d'instruction est saisi ne peuvent être entendues comme témoins.

Article 106

Chaque page des procès-verbaux est signée du juge, du greffier et du témoin.

Ce dernier est alors invité à relire sa déposition telle qu'elle vient d'être transcrite, puis à la signer s'il déclare y persister.

Si le témoin ne sait pas lire, lecture lui en est faite par le greffier.

Si le témoin ne veut ou ne peut signer, mention en est portée sur le procès-verbal.

Chaque page est également signée par l'interprète s'il y a lieu.

Article 107

Les procès-verbaux ne peuvent comporter aucun interligne.

Les ratures et les renvois sont approuvés par le juge d'instruction, le greffier et le témoin et, s'il y a lieu, par l'interprète.

A défaut d'approbation, ces ratures et ces renvois sont nonavenus.

Il en est de même du procès-verbal qui n'est par régulièrement signé.

Article 108

Les enfants au-dessous de l'âge de 16 ans sont entendus sans prestation de serment.

Article 109

Toute personne citée pour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est tenue de comparaître, de prêter serment et de déposer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226-13 et 226-14 du code pénal.

Tout journaliste, entendu comme témoin sur des informations recueillies dans l'exercice de son activité, est libre de ne pas en révéler l'origine.

Si le témoin ne comparaît pas ou refuse de comparaître, le juge d'instruction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y contraindre par la force publique.

Article 110

La mesure de contrainte dont fait l'objet le témoin défaillant est prise par voie de réquisition.

Le témoin est conduit directement et sans délai devant le magistrat qui prescrit la mesure.

Article 112

Si un témoin est dans l'impossibilité de comparaître, le juge d'instruction se transporte pour l'entendre, ou délivre à cette fin commission rogatoire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151.

Article 113

Si le témoin entend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précédent n'était pas dans l'impossibilité de comparaître sur la cita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prononcer contre ce témoin

l'amende prévue à l'article 109.

Sous-section 2 : Du témoin assisté

Article 113-1

Toute personne nommément visée par un réquisitoire introductif ou par un réquisitoire supplétif et qui n'est pas mise en examen ne peut être entendue que comme témoin assisté.

Article 113-2

Toute personne nommément visée par une plainte ou mise en cause par la victime peut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Lorsqu'elle comparaît devant le juge d'instruction, elle est obligatoirement entendue en cette qualité si elle en fait la demande ; si la personne est nommément visée par une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elle est avisée de ce droit lorsqu'elle comparaît devant le juge d'instruction.

Toute personne mise en cause par un témoin ou contre laquelle il existe des indices rendant vraisemblable qu'elle ait pu participer, comme auteur ou complice, à la commission des infractions dont le juge d'instruction est saisi peut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Article 113-3

Le témoin assisté bénéficie du droit d'être assisté par un avocat qui est avisé préalablement des auditions et a accè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14 et 114-1. Cet avocat est choisi par le témoin assisté ou désigné d'office par le bâtonnier si l'intéressé en fait la demande.

Le témoin assisté peut demander au juge d'instruc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82-1, à être confronté avec la ou les personnes qui le mettent en cause ou formuler des requêtes en annulation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73.

Lors de sa première audition comme témoin assisté, la personne est informée de ses droits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113-4

Lors de la première audition du témoin assisté, le juge d'instruction constate son identité, lui donne connaissance du réquisitoire introductif, de la plainte ou de la dénonciation, l'informe de ses droits et procède aux formalités prévues aux deux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16.

Mention de cette information est faite au procès-verbal.

Le juge d'instruction peut, par l'envoi d'une lettre recommandée, faire connaître à une personne qu'elle sera entendue en qualité de témoin assisté.

Cette lettre comporte les informa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Elle précise que le nom de l'avocat choisi ou la demande de désignation d'un avocat commis d'office doit être communiqué au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Article 113-5

Le témoin assisté ne peut être placé sous contrôle judiciaire,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en détention provisoire, ni faire l'objet d'une ordonnance de renvoi ou de mise en accusation.

Article 113-6

A tout moment de la procédure, le témoin assisté peut, à l'occasion de son audition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demander au juge d'instruction à être mis en examen ; la personne est alors considérée comme mise en examen et elle bénéficie de l'ensemble des droits de la défense dès sa demande ou l'envoi de la lettre recommandée avec avis de récep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5 ne sont pas applicables au témoin assisté.

Article 113-7

Le témoin assisté ne prête pas serment.

Article 113-8

S'il estime que sont apparus au cours de la procédure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justifiant

la mise en examen du témoin assisté,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cette mise en examen en fais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septième et huitième alinéas de l'article 116 au cours d'un interrogatoire réalisé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114.

Il peut également procéder à cette mise en examen en adressant à la personne une lettre recommandée précisant chacun d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ainsi que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et l'informant de son droit de formuler des demandes d'actes ou des requêtes en annulation, ainsi que du délai prévisible d'achèvement de la procédu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septième et huitième alinéas de l'article 116.

Cette lettre recommandée peut être adressée en même temps que l'avis de fin d'information prévu par l'article 175.

Elle informe alors la personne de son droit de formuler des demandes d'actes ou des requêtes en annulation pendant une durée de vingt jours.

Dans les cas visé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la personne est également informée que si elle demande à être à nouveau entendue par le juge d'instruction, celui-ci est tenu de procéder à son interrogatoire.

Section 5 : Des interrogatoires et confrontations

Article 114

Les parties ne peuvent être entendues, interrogées ou confrontées, à moins qu'elles n'y renoncent expressément, qu'en présence de leurs avocats ou ces derniers dûment appelés.

Les avocats sont convoqués au plus tard cinq jours ouvrables avant l'interrogatoire ou l'audition de la partie qu'ils assistent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élécopie avec récépissé ou verbalement avec émargeme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a procédure est mise à leur disposition quatre jours ouvrables au plus tard avant chaque 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chaque audition de la partie civile.

Après la première comparu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la première audition de la partie civile, la procédure est également mise à tout moment à la disposition des avocats durant les jours ouvrables, sous réserve des exigences du bon fonctionnement du cabinet d'instruction.

Après la première comparution ou la première audition, les avocats des parties peuvent se faire délivrer, à leurs frais, copie de tout ou partie des pièces et actes du dossier.

Cette copie peut être adressée à l'avocat sous forme numérisée, le cas échéant par 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803-1.

La délivrance de cette copie doit intervenir dans le mois qui suit la demande.

Les avocats peuvent transmettre une reproduction des copies ainsi obtenues à leur client.

Celui-ci atteste au préalable, par écrit, avoir pris connaissance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suivant et de l'article 114-1.

Seules les copies des rapports d'expertise peuvent être communiquées par les parties ou leurs avocats à des tiers pour les besoins de la défense.

L'avocat doit donner connaissance au juge d'instruction, par déclaration à son greffier ou par lettre ayant ce seul objet et adressée en recommandé avec accusé de réception, de la liste des pièces ou actes dont il souhaite remettre une reproduction à son client.

Le juge d'instruction dispose d'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pour s'opposer à la remise de tout ou partie de ces reproductions par une ordonnance spécialement motivée au regard des risques de pression sur les victimes,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leurs avocats, les témoins, les enquêteurs, les experts ou toute autre personne concourant à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est notifiée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à l'avocat. A défaut de réponse du juge d'instruction notifiée dans le délai imparti, l'avocat peut communiquer à son client la reproduction des pièces ou actes dont il avait fourni la liste.

Il peut, dans les deux jours de sa notification, déférer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par 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 défaut de réponse notifiée dans le délai imparti, l'avocat peut communiquer à son client la reproduction des pièces ou actes mentionnés sur la liste.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ces documents peuvent être remis par son avocat à une personne détenue e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cette personne peut détenir ces documents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huitième et neuvième alinéas, l'avocat d'une partie civile dont la recevabilité fait l'objet d'une contestation ne peut transmettre à son client une reproduction des pièces ou actes de la procédure sans l'autorisation préalable du juge d'instruction, qui peut lui être notifiée par tout moyen.

En cas de refus du juge d'instruction ou à défaut de réponse de ce dernier dans les cinq jours ouvrables, l'avocat peut saisi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par 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En l'absence d'autorisation préalabl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vocat ne peut transmettre la reproduction de pièces ou actes de la procédure à son client.

Article 114-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114, le fait, pour une partie à qui une reproduction des pièces ou actes d'une procédure d'instruction a été remise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de la diffuser auprès d'un tiers est puni de 3 750 euros d'amende.

Article 115

Les parties peuvent à tout moment de l'information faire connaître au juge d'instruction le nom de l'avocat choisi par elles ; si elles désignent plusieurs avocats, elles doivent faire connaître celui d'entre eux auquel seront adressées les convocations et notifications ; à défaut de ce choix, celles-ci seront adressées à l'avocat premier choisi.

Sauf lorsqu'il s'agit de la première désignation d'un avocat par une partie ou lorsque la désignation intervient au cours d'un interrogatoire ou d'une audition, le choix effectué par les parties en 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doi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La déclaration doit être constatée et datée par le greffier qui la signe ainsi que la partie concernée. Si celle-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Lorsque la partie ne réside pa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déclaration au greffier peut être fait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le choix effectué par ell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peut égalemen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qui la signe ainsi que la personne détenue.

Si celle-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et par tout moyen, au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La désignation de l'avocat prend effet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cument par le greffier.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le choix peut également résulter d'un courrier désignant un avocat pour assurer sa défense.

La déclaration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oit alors être faite par l'avocat désigné ; celui-ci remet au greffier une copie, complète ou partielle, du courrier qui lui a été adressé, et qui est annexée par le greffier à la déclaration.

La personne mise en examen doit confirmer son choix dans les quinze jours selon l'une des modalités prévu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Pendant ce délai, la désignation est tenue pour effective.

Article 116

Lorsqu'il envisage de mettre en examen une personne qui n'a pas déjà été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sa première comparu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e juge d'instruction constate l'identité de la personne et lui fait connaître expressément, en précisant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chacun des faits dont il est saisi et pour lesquels la mise en examen est envisagée.

Mention de ces faits et de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Lorsqu'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80-2 et que la personne est assistée d'un avocat,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son interrogatoire ; l'avocat de la personne peut présenter ses observations au juge d'instruction.

Dans les autres cas, le juge d'instruction avise la personne de son droit de choisir un avocat

ou de demander qu'il lui en soit désigné un d'office.

L'avocat choisi ou, dans le cas d'une demande de commission d'office,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en est informé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Si l'avocat choisi ne peut être contacté ou ne peut se déplacer, la personne est avisée de son droit de demander qu'il lui en soit désigné un d'office pour l'assister au cours de la première comparution.

L'avocat peut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la personne. Le juge d'instruction avertit ensuite la personne qu'elle a le choix soit de se taire, soit de faire des déclarations, soit d'être interrogée.

Mention de cet avertissement est faite au procès-verbal.

L'accord pour être interrogé ne peut être donné qu'en présence d'un avocat.

L'avocat de la personne peut également présenter ses observations au juge d'instruction.

Après avoir, le cas échéant, recueilli les déclarations de la personne ou procédé à son interrogatoire et entendu les observations de son avocat, le juge d'instruction lui notifie :

- soit qu'elle n'est pas mise en examen ; le juge d'instruction informe alors la personne qu'elle bénéficie des droits du témoin assisté ;
- soit qu'elle est mise en examen ; le juge d'instruction porte alors à la connaissance de la personne les faits ou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si ces faits ou ces qualifications diffèrent de ceux qui lui ont déjà été notifiés ; il l'informe de ses droits de formuler des demandes d'actes ou des requêtes en annulation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81, 82-1, 82-2, 156 et 173 durant le déroulement de l'information et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un mois ou de trois mois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75,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3-1.

S'il estime que le délai prévisible d'achèvement de l'information est inférieur à un an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à dix-huit mois en matière criminelle, le juge d'instruction donne connaissance de ce délai prévisible à la personne et l'avise qu'à l'expiration dudit délai, elle pourra demander la clôture de la procédur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5-1.

Dans le cas contraire, il indique à la personne qu'elle pourra demander, en application de ce même article, la clôture de la procédure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dix-huit mois en matière criminelle.

A l'issue de la première comparution, la personne doit déclarer au juge d'instruction son adresse personnelle.

Elle peut toutefois lui substituer l'adresse d'un tiers chargé de recevoir les actes qui lui sont destinés si elle produit l'accord de ce dernier.

L'adresse déclarée doit être située, si l'information se déroule en métropole, dans un département métropolitain ou, si l'information se déroule dans un département d'outre-mer, dans ce département.

Cette déclaration est faite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orsque ce magistrat, saisi par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de ne pas placer la personne en détention.

La personne est avisée qu'elle doit signaler au juge d'instruction jusqu'au règlement de l'information, par nouvelle déclaration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Elle est également avisée que toute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Mention de cet avis, ainsi que de la déclaration d'adresse,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Ces avis sont donnés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orsque celui-ci décide de ne pas placer la personne en détention.

Article 116-1

En matière criminelle, les interrogatoires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réalisés dans le cabinet du juge d'instruction, y compris l'interrogatoire de première comparution et les confrontations, font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L'enregistrement ne peut être consulté, au cours de l'instruction ou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qu'en cas de contestation sur la portée des déclarations recueillies, sur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ou de la juridiction de jugement,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des parties.

Les huit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14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une partie demande la consultation de l'enregistrement, cette demande est formée et le juge d'instruction statue conformément aux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82-1.

Le fait, pour toute personne, de diffuser un enregistrement réalisé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 l'expiration d'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extinction de l'action publique, l'enregistrement est détruit dans le délai d'un mois.

Lorsque le nombre de personnes mises en examen devant être simultanément interrogées, au cours de la même procédure ou de procédures distinctes, fait obstacle à l'enregistrement de tous les interrogatoires,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au regard des nécessités de l'investigation, quels interrogatoires ne seront pas enregistrés.

Lorsque l'enregistrement ne peut être effectué en raison d'une impossibilité technique, il en est fait mention dans le procès-verbal d'interrogatoire qui précise la nature de cette impossibilité. Le présen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lorsque l'information concerne un crime mentionné à l'article 706-73 du présent code ou prévu par les titres Ier et II du livre IV du code pénal, sauf si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de procéder à l'enregistrement.

Un décret précis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17

Nonobstant les dispositions prévues à l'article 116, le juge d'instruction peut procéder à un interrogatoire immédiat et à des confrontations si l'urgence résulte soit de l'état d'un témoin en danger de mort, soit de l'existence d'indices sur le point de disparaître, ou encore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72.

Le procès-verbal fait mention des causes d'urgence.

Article 118

S'il apparaît au cours de l'information que les faits reproché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us une qualification correctionnelle constituent en réalité un crime, le juge d'instruction notifie à la personne, après l'avoir informée de son intention et avoir recueilli ses éventuelles observations et celles de son avocat, qu'une qualification criminelle est substituée à la qualification initialement retenue.

A défaut de cette notification, il ne peut être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81.

Si la personne étai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le mandat de dépôt initialement délivré demeure valable et est considéré comme un mandat de dépôt criminel.

La détention provisoire se trouve alors soumise aux règles applicables en matière criminelle, les délais prévus pour la prolongation de la mesure étant calculés à compter de la délivrance du mandat.

Lors de la notificat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le juge d'instruction peut faire connaître à la personne un nouveau délai prévisible d'achèvement de l'informa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huitième alinéa de l'article 116.

Si l'information a été ouverte au sein d'une juridiction dépourvue de pôle de l'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aussitôt après avoir procédé aux form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e dessaisit au profit d'un juge du pôle de l'instruction compétent, désigné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quel se trouve ce pôle.

Article 119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ssister aux interrogatoires, auditions et confrontation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la partie civile et du témoin assisté.

Chaque fois qu'il a fait connaître au juge d'instruction son intention d'y assister, le greffier du juge d'instruction doit l'avertir par simple note, au plus tard l'avant-veille de l'interrogatoire.

Article 120

Le juge d'instruction dirige les interrogatoires, confrontations et auditio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s avocats des parties et du témoin assisté peuvent poser des questions ou présenter de brèves observations. Le juge d'instruction détermine, s'il y a lieu, l'ordre des interventions et peut y mettre un terme lorsqu'il s'estime suffisamment informé.

Il peut s'opposer aux questions de nature à nuire au bon déroulement de l'information ou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Mention de ce refus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Les conclusions dépos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s avocats des parties et du témoin assisté afin de demander acte d'un désaccord avec le juge d'instruction sur le contenu

du procès-verbal sont, par le juge d'instruction, versées au dossier.

Article 120-1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le témoin assisté sont mis en cause par plusieurs personnes, ils peuvent demander, conformémen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82-1 o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3-3, à être confrontés séparément avec chacune d'entre elles. Le juge d'instruction statue sur ces demandes conformément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82-1. Le refus d'une demande de confrontation individuelle ne peut être motivé par la seule raison qu'une confrontation collective est organisée.

Article 121

Les procès-verbaux d'interrogatoire et de confrontation sont établis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106 et 107.

S'il est fait appel à un interprèt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02 sont applicables.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atteinte de surdité, le juge d'instruction nomme d'office pour l'assister lors de l'information un interprète en langue des signes ou toute personne qualifiée maîtrisant un langage ou une méthod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es sourds.

Celui-ci, s'il n'est pas assermenté, prête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Il peut être également recouru à tout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sait lire et écrir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communiquer avec elle par écrit.

Section 6 : Des mandats et de leur exécution

Article 122

Le juge d'instruction peut, selon les cas, décerner mandat de recherche, de comparution, d'amener ou d'arrê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écerner mandat de dépôt.

Le mandat de recherche peut être décerné à l'égard d'un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Il ne peut être décerné à l'égard d'une personne ayant fait l'objet d'un réquisitoire nominatif, d'un témoin assisté ou d'une personne mise en examen.

Il est l'ordre donné à la force publique de rechercher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et de la placer en garde à vue.

Le mandat de comparution, d'amener ou d'arrêt peut être décerné à l'égard d'une personne à l'égard de laquelle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rendant vraisemblable qu'elle ait pu participer, comme auteur ou complice, à la commission d'une infraction, y compris si cette personne est témoin assisté ou mise en examen.

Le mandat de comparution a pour objet de mettre en demeure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de se présenter devant le juge à la date et à l'heure indiquées par ce mandat.

Le mandat d'amener est l'ordre donné à la force publique de conduire immédiatement devant lui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Le mandat d'arrêt est l'ordre donné à la force publique de rechercher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et de la conduire devant lui après l'avoir, le cas échéant, conduite à la maison d'arrêt indiquée sur le mandat, où elle sera reçue et détenue. Le juge d'instruction est tenu d'entendre comme témoins assistés les personnes contre lesquelles il a été décerné un mandat de comparution, d'amener ou d'arrêt, sauf à les mettre en exame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16. Ces personnes ne peuvent pas être mises en garde à vue pour les faits ayant donné lieu à la délivrance du mandat.

Le mandat de dépôt peut être décerné à l'encontre d'une personne mise en examen et ayant fait l'objet d'une ordonnance d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Il est l'ordre donné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de recevoir et de détenir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Ce mandat permet également de rechercher ou de transférer la personne lorsqu'il lui a été précédemment notifié.

Article 123

Tout mandat précise l'identité de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 il est daté et signé par le magistrat qui l'a décerné et est revêtu de son sceau.

Les mandats d'amener, de dépôt, d'arrêt et de recherche mentionnent en outre la nature des faits imputés à la personne,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et les articles de loi applicables.

Le mandat de comparution est signifié par huissier à celui qui en est l'objet ou est notifié à celui-ci par un officier ou agent de la police judiciaire, ou par un agent de la force publique, lequel lui en délivre copie.

Le mandat d'amener, d'arrêt ou de recherche est notifié et exécuté par un officier ou agent de la police judiciaire ou par un agent de la force publique, lequel en fait l'exhibition à la personne et lui en délivre copie.

Si la personne est déjà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la notification lui est faite comme il est dit à l'alinéa précédent, ou,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en délivre également une copie. Les mandats d'amener, d'arrêt et de recherche peuvent, en cas d'urgence être diffusés par tous moyens.

Dans ce cas, les mentions essentielles de l'original et spécialement l'identité de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st décerné, la nature des faits qui lui sont imputés et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le nom et la qualité du magistrat mandant doivent être précisés.

L'original ou la copie du mandat est transmis à l'agent chargé d'en assurer l'exécution dans les délais les plus brefs.

Article 124

Les mandats sont exécutoires dans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rticle 125

Le juge d'instruction interroge immédiatement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 mandat de comparution.

Il est procédé dans les mêmes conditions à l'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arrêtée en vertu d'un mandat d'amener.

712 프랑스 형사소송법

Toutefois, si l'interrogatoire ne peut être immédiat, la personne peut être retenue par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endant une durée maximum de vingt-quatre heures suivant son arrestation avant d'être présenté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ou à défaut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un juge désigné par celui-ci, qui procède immédiatement à son interrogatoire ; à défaut, la personne est mise en liberté.

Article 126

Toute personne arrêtée en vertu d'un mandat d'amener, qui a été retenue pendant plus de vingt-quatre heures sans avoir été interrogée, est considérée comme arbitrairement détenue. Les articles 432-4 à 432-6 du code pénal sont applicables aux magistrats ou fonctionnaires qui ont ordonné ou sciemment toléré cette rétention arbitraire.

Article 127

Si la personne recherchée en vertu d'un mandat d'amener est trouvée à plus de 200 km du siège du juge d'instruction qui a délivré le mandat, et qu'il n'est pas possible de la conduire dans le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devant ce magistrat, elle est conduit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Article 128

Ce magistrat l'interroge sur son identité, reçoit ses déclarations, après l'avoir averti qu'elle est libre de ne pas en faire, l'interpelle afin de savoir si elle consent à être transférée ou si elle préfère prolonger les effets du mandat d'amener, en attendant, au lieu où elle se trouve,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saisi de l'affaire.

Si la personne déclare s'opposer au transfèrement, elle est conduite dans la maison d'arrêt et avis immédiat est donné au juge d'instruction compétent.

L'original ou la copie du procès-verbal de la comparution contenant un signalement complet est transmis sans délai à ce magistrat, avec toutes les indications propres à faciliter la reconnaissance d'identité. Ce procès-verbal doit mentionner que la personne a reçu avis qu'elle est libre de ne pas faire de déclaration.

Article 129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 l'affaire décide, aussitôt après la réception de ces pièces, s'il y a lieu d'ordonner le transfèrement.

Article 130

Lorsqu'il y a lieu à transfèr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28 et 129, la personne doit être conduit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qui a délivré le mandat dans les quatre jours de la notification du mandat.

Toutefois, ce délai est porté à six jours en cas de transfèrement d'un département d'outre-mer vers un autre département ou de la France métropolitaine vers un département d'outre-mer.

Article 130-1

En cas de non-respect des délais fixés par les articles 127 et 130, la personne est libérée, sur ordre du juge d'instruction saisi de l'affaire, à moins que sa conduite ait été retardée par des circonstances insurmontables.

Article 131

Si la personne est en fuite ou si elle réside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écerner contre elle un mandat d'arrêt si le fait comporte une peine d'emprisonnement correctionnelle ou une peine plus grave.

Article 133

La personne saisie en vertu d'un mandat d'arrêt est présenté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suivant son arresta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ou à défaut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le juge désigné par celui-ci pour qu'il soit procédé à son interrogatoire et qu'il soit le cas échéant statué sur son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45. A défaut, la personne est remise en liberté.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26 sont applicables.

Si la personne est arrêtée à plus de deux cents kilomètres du siège du juge d'instruction qui

714 프랑스 형사소송법

a délivré le mandat, elle est conduit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suivant son arrestation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qui reçoit ses déclarations après l'avoir avertie qu'elle est libre de ne pas en faire.

Mention est faite de cet avis au procès-verb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sans délai le magistrat qui a délivré le mandat et requiert le transfèrement.

Si celui-ci ne peut être effectué immédiat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réfère au juge mandant.

Lorsqu'il y a lieu à transfèrement, la personne doit être conduite à la maison d'arrêt indiquée sur le mandat dans l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130.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0-1 sont applicables.

Article 133-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125, 127 et 133, lorsque la personne est retenue par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avant sa présentation devant un magistra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est informé dès le début de cette rétention et la personne a le droit de faire prévenir un proch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63-2 et d'être examinée par un médeci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63-3.

Article 134

L'agent chargé de l'exécution d'un mandat d'amener, d'arrêt et de recherche ne peut s'introduire dans le domicile d'un citoyen avant 6 heures ni après 21 heures.

Il peut se faire accompagner d'une force suffisante pour que la personne ne puisse se soustraire à la loi.

La force est prise dans le lieu le plus proche de celui où le mandat doit s'exécuter et elle est tenue de déférer aux réquisitions contenues dans ce mandat.

Si la personne ne peut être saisie, un procès-verbal de perquisition et de recherches infructueuses est adressé au magistrat qui a délivré le mandat.

La personne est alors considérée comme mise en examen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76.

Article 135

En matière criminelle et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es mandats de dépôt ne peuvent être décernés qu'en exécution de l'ordonnance prévue à l'article 145.

L'agent chargé de l'exécution du mandat de dépôt remet l'intéressé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equel lui délivre une reconnaissance de cette remise.

Article 135-1

La personne découverte en vertu d'un mandat de recherche est placée en garde à vu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 lieu de la découvert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54.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s faits en est informé dès le début de la garde à vue.

Sans préjudice de la possibilité pou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éjà saisi par commission rogatoire de procéder à l'audition de la personn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 lieu où la personne a été découverte peut être requis à cet effet par le juge d'instruction ainsi qu'aux fins d'exécution de tous actes d'information nécessaires.

Pendant la durée de la garde à vue, la personne peut également être conduite dans les locaux du service d'enquête saisi des faits.

Article 135-2

Si la personne faisant l'objet d'un mandat d'arrêt est découverte après le règlement de l'information, il est procédé sel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est avisé dès le début de la rétention de la personne par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endant cette rétention,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2 et 63-3.

La rétention ne peut durer plus de vingt-quatre heures.

La personne est conduite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vingt-quatre heures de son arrestation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siège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s faits.

Après avoir vérifié son identité et lui avoir notifié le mandat, ce magistrat la présente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placer la personne sous contrôle judiciaire, soit ordonner son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par ordonnance motiv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44, rendu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organi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quatrième à neuvième alinéas de l'article 145.

Si la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les délais prévus par les quatrième et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179 et par les huitième et neuvième alinéas de l'article 181 sont alors applicables et courent à compter de l'ordonnance de placement en détention.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faire, dans les dix jours de sa notification, l'objet d'un appel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si la personne est renvoyé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et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elle est renvoyée devant la cour d'assises.

Si la personne a été arrêtée à plus de 200 kilomètres du siège de la juridiction de jugement et qu'il n'est pas possible de la conduire dans le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entionné au troisième alinéa, elle est conduit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son arrestation, qui vérifie son identité, lui notifie le mandat et reçoit ses éventuelles déclarations après l'avoir avertie qu'elle est libre de ne pas en faire.

Ce magistrat met alors le mandat à exécution en faisant conduire la personne à la maison d'arrêt et il en avis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siège la juridiction de jugement.

Celui-ci ordonne le transfèrement de la personne, qui doit comparaître devant lui dans les quatre jours de la notification du mandat ; ce délai est porté à six jours en cas de transfèrement entre un département d'outre-mer et la France métropolitaine ou un autre département d'outre-mer. Il est alors procéd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La présentation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vue par les dispositions ci-dessus n'est pas nécessaire si, dans les délais prévus pour cette présentation, la personne peut comparaîtr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s fait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mandats d'arrêt délivrés après l'ordonnance de règlement.

Elles ne sont toutefois pas applicables lorsque, postérieurement à la délivrance du mandat d'arrêt décerné au cours de l'instruction ou après son règlement,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oit en matière correctionnelle par un jugement contradictoire ou réputé contradictoire, soit en matière criminelle par un arrêt rendu par défaut ; elles ne sont de même pas applicables lorsque le mandat a été délivré à la suite d'une telle condamnation.

Dans ces cas, sans qu'il soit nécessaire de la présenter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a personne arrêté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e recours et, en cas de recours,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ns préjudice de son droit de former d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Article 135-3

Tout mandat d'arrêt ou de recherche est inscrit, à la demande du juge d'instruction ou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Lorsque la personne est renvoyé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par une décision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le gestionnaire du fichier en est informé pour qu'il soit le cas échéant fait application, s'il s'agit d'un mandat d'arrêt,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5-2.

Article 136

L'inobservation des formalités prescrites pour les mandats de comparution, d'amener, de dépôt, d'arrêt et de recherche peut donner lieu à des sanctions disciplinaires contre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s dispositions sont étendues, sauf application de peines plus graves, s'il y a lieu, à toute violation des mesures protectrices de la liberté individuelle prescrites par les articles 56, 57, 59, 96, 97, 138 et 139.

Dans les cas visés aux deux alinéas précédents et dans tous les cas d'atteint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le conflit ne peut jamais être élevé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et les tribunaux de l'ordre judiciaire sont toujours exclusivement compétents.

Il en est de même dans toute instance civile fondée sur des faits constitutifs d'une atteinte à la liberté individuelle ou à l'inviolabilité du domicile prévue par les articles 432-4 à 432-6 et

432-8 du code pénal, qu'elle soit dirigée contre la collectivité publique ou contre ses agents.

Section 7 : Du contrôle judiciaire,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et de la détention provisoire

Article 137

Toute personne mise en examen, présumée innocente, demeure libre.

Toutefois, en raison d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ou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elle peut être astreinte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si celles-ci se révèlent insuffisantes, être assignée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 titre exceptionnel, si l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ne permettent pas d'atteindre ces objectifs, elle peut êtr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Article 137-1

La détention provisoire est ordonnée ou prolongé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lui sont également soumis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un magistrat du siège ayant rang de président, de premier vice-président ou de vice-président.

Il est désigné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orsqu'il statu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il est assisté d'un greffier.

En cas d'empêchemen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ésigné et d'empêchement du président ainsi que des premiers vice-présidents et des vice-président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remplacé par le magistrat du siège le plus ancien dans le grade le plus élevé, désigné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Il peut alors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93.

Il ne peut, à peine de nullité, participer au jugement des affaires pénales dont il a connu.

Hor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37-4, il est saisi par une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instruction, qui lui transmet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ccompagné d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rs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oit statuer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5, le juge d'instruction peut indiquer dans son ordonnance si la publicité de ce débat lui paraît devoir être écartée au regard d'une ou plusieurs des raisons mentionnées au sixième alinéa de cet article.

Article 137-1-1

Pour l'organisation du service de fin de semaine ou du service allégé pendant la période au cours de laquelle les magistrats bénéficient de leurs congés annuels, un magistrat ayant rang de président, de premier vice-président ou de vice-président exerçant les fonctions d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an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être désigné afin d'exercer concurremment ces fonctions dans, au plus, deux autr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 cette désignation est décidée par ordonnance du premier président prise à la demande des présidents de ces juridictions et après avis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oncerné ; elle en précise le motif et la durée, ainsi que les tribunaux pour lesquels elle s'applique ; la durée totale d'exercice concurrent des fonctions d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ans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ne peut excéder quarante jours au cours de l'année judiciaire.

La désignation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peut également être ordonnée, selon les mêmes modalités et pour une durée totale, intermittente ou continue, qui ne peut excéder quarante jours, lorsque, pour cause de vacance d'emploi ou d'empêchement, aucun magistrat n'est susceptible, au sein d'une juridiction, d'exercer les fonctions d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rticle 137-2

Le contrôle judiciaire est ordonné par le juge d'instruction, qui statue après avoir recueilli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contrôle judiciaire peut être également ordonné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orsqu'il est saisi.

Article 137-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par ordonnance motivée.

Lorsqu'il ordonne ou prolonge une détention provisoire ou qu'il rejette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l'ordonnance doit comporter l'énoncé des considérations de droit et de fait sur le caractère insuffisant d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et le motif de la détention par référence aux seu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3-1 et 144.

Dans tous les cas, l'ordonnance est notifiée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qui en reçoit copie intégrale contre émargeme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Article 137-4

Lorsque, saisi de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ndant au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le juge d'instruction estime que cette détention n'est pas justifiée et qu'il décide de ne pas transmettr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il est tenu de statuer sans délai par ordonnance motivée, qui est immédiatemen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matière criminelle ou pour les délits punis de dix ans d'emprisonn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lors, si les réquisitions sont motivées, en tout ou partie, par les motifs prévus aux 4° à 7° de l'article 144 et qu'elles précisent qu'il envisage de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aisir directem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 déférant sans délai devant lui la personne mise en examen ; l'ordonnance rendu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ntraîne le cas échéant la caducité de l'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ayant placé la personne sous contrôle judiciaire. S'il renonce à saisir directem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avise le juge d'instruction et la personne peut être laissée en liberté.

Sous-section 1 : D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138

Le contrôle judiciaire peut être ordonn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court une peine d'emprisonnement correctionnel ou une peine plus grave.

Ce contrôle astreint la personne concernée à se soumettre, selon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ci-après énumérées :

- 1° Ne pas sortir des limites territoriales détermin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
- 2° Ne s'absenter de son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fixée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aux conditions et pour les motifs déterminés par ce magistrat ;
- 3° Ne pas se rendre en certains lieux ou ne se rendre que dans les lieux déterminé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
- 4° Informe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e tout déplacement au-delà de limites déterminées ;
- 5° Se présenter périodiquement aux services, associations habilitées ou autorités désigné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sont tenus d'observer la plus stricte discrétion sur les faits reproché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
- 6° Répondre aux convocations de toute autorité, de toute association ou de toute personne qualifiée désignée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se soumettre, le cas échéant, aux mesures de contrôle portant sur s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ur son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ainsi qu'aux mesures socio-éducatives destinées à favoriser son insertion sociale et à prévenir le renouvellement de l'infraction ;
- 7° Remettre soit au greffe, soit à un service de police ou à une brigade de gendarmerie tous documents justificatifs de l'identité, et notamment le passeport, en échange d'un récépissé valant justification de l'identité ;
- 8° S'abstenir de conduire tous les véhicules ou certains véhicules et, le cas échéant, remettre au greffe son permis de conduire contre récépissé ; toutefois,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écider 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pourra faire usage de son permis de conduire pour l'exercice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
- 9° S'abstenir de recevoir ou de rencontrer certaines personnes spécialement désign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insi que d'entrer en relation

avec elles,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

- 10° Se soumettre à des mesures d'examen, de traitement ou de soins, même sous le régime de l'hospitalisation, notamment aux fins de désintoxication ;
- 11° Fournir un cautionnement dont le montant et les délais de versement, en une ou plusieurs fois, sont fixé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compte tenu notamment des ressources et des charge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
- 12° Ne pas se livrer à certaines activités de nature professionnelle ou sociale, à l'exclusion de l'exercice des mandats électifs et des responsabilités syndicales,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ces activités et lorsqu'il est à redouter qu'une nouvelle infraction soit commise.

Lorsque l'activité concernée est celle d'un avocat, le conseil de l'ordre, saisi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seul le pouvoir de prononcer cette mesure à charge d'app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4 de la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 le conseil de l'ordre statue dans les quinze jours ;

- 13° Ne pas émettre de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exclusivem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et, le cas échéant, remettre au greffe les formules de chèques dont l'usage est ainsi prohibé ;
- 14° Ne pas détenir ou porter une arme et, le cas échéant, remettre au greffe contre récépissé les armes dont elle est détentrice ;
- 15° Constituer, dans un délai, pour une période et un montant déterminé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es sûretés personnelles ou réelles ;
- 16° Justifier qu'elle contribue aux charges familiales ou acquitte régulièrement les aliments qu'elle a été condamnée à payer conformément aux décisions judiciaires et aux conventions judiciairement homologuées portant obligation de verser des prestations, subsides ou contributions aux charges du mariage ;
- 17° En cas d'infraction commise soit contre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soit contre ses enfants ou ceux de son conjoint, concubin ou partenaire, résider hors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u couple et, le

cas échéant, s'abstenir de paraître dans ce domicile ou cette résidence ou aux abords immédiats de celui-ci, ainsi que, si nécessaire, faire l'objet d'une prise en charge sanitaire, sociale ou psychologique ;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17°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ncien conjoint ou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a personne ayant été liée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 domicile concerné étant alors celui de la victim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n ce qui concerne notamment l'habilitation des personnes contribuant au contrôle judiciaire sont déterminées en tant que de besoin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138-1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soumise à l'interdiction de recevoir, ou rencontrer la victime ou d'entrer en relation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avec el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9° de l'article 138,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dresse à celle-ci un avis l'informant de cette mesure ; si la victime est partie civile, cet avis est également adressé à son avocat.

Cet avis précise les conséquences susceptibles de résulter pour la personne mise en examen du non-respect de cette interdiction.

Article 139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placée sous contrôle judiciaire par un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qui peut être prise en tout état de l'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à tout moment, imposer à la personne placée sous contrôle judiciaire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nouvelles, supprimer tout ou partie des obligations comprises dans le contrôle, modifier une ou plusieurs de ces obligations ou accorder une dispense occasionnelle ou temporaire d'observer certaines d'entre elles.

Article 140

La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peut être ordonnée à tout moment par le juge d'instruction,

724 프랑스 형사소송법

soit d'office, soi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sur la demande de la personne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statue sur la demande de la personn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par ordonnance motivée.

Faute par le juge d'instruction d'avoir statué dans ce délai, la personne peut saisir directement de sa deman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ur les réquisitions écrites et motivées du procureur général, se prononce dans les vingt jours de sa saisine.

A défaut, la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est acquise de plein droit, sauf si des vérifications concernant la demande de la personne ont été ordonnées.

Article 141-1

Les pouvoirs conférés au juge d'instruction par les articles 139 et 140 appartiennent, en tout état de cause, à la juridiction compétente selon les distinctions de l'article 148-1.

Article 141-2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se soustrait volontairemen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le juge d'instruction peut décerner à son encontre mandat d'arrêt ou d'amener.

Il peu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37-1, saisi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ux fins d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Quelle que soit la peine d'emprisonnement encour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écerner, à l'encontre de cette personne, un mandat de dépôt en vue de sa détention provisoir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1-3.

Si la personne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alors qu'elle est renvoyé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272-1, saisi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que celui-ci décerne mandat d'arrêt ou d'amener à son encontre.

Ce magistrat est également compétent pour ordonn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5-2, l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intéressé.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1-4 sont applicables ;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instruction

par cet article sont alors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141-3

Lorsque la détention provisoire est ordonnée à la suite d'une révo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à l'encontre d'une personne antérieuremen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pour les mêmes faits, la durée cumulée des détentions ne peut excéder de plus de quatre mois la durée maximale de la détention prévue respectivement aux articles 145-1 et 145-2.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inférieure à celle mentionnée à l'article 143-1, la durée totale des détentions ne peut excéder quatre mois.

Article 141-4

Les services de police et les unités de gendarmerie peuvent, d'office ou sur instruction du juge d'instruction, appréhender toute personne placée sous contrôle judiciair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manqué aux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au titre des 9° et 17° de l'article 138.

La personne peut alors, sur décision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être retenue vingt-quatre heures au plus dans un local de police ou de gendarmerie afin que soit vérifiée sa situation et qu'elle soit entendue sur la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Dès le début de la mesu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informe le juge d'instruction.

La personne retenue est immédiatement inform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 contrôle de celui-ci, par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e la nature de l'obligation qu'elle est soupçonnée avoir violée et du fait qu'elle peut exercer les droits prévus par l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3-1, par les articles 63-2 et 63-3 et par les quatre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63-4.

Les pouvoirs conféré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articles 63-2 et 63-3 sont exercés par le juge d'instruction.

Les articles 64 et 65 sont applicables à la présente mesure.

La personne retenue ne peut faire l'objet d'investigations corporelles internes au cours de sa rétention par le service de police ou par l'unité de gendarmerie.

A l'issue de la mesure,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que la personne soit conduite devant lui, le cas échéant pour qu'il saisiss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ux fins de révo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demander à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aviser la personne qu'elle est convoquée devant lui à une date ultérieure.

Article 142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astreinte à fournir un cautionnement ou à constituer des sûretés, ce cautionnement ou ces sûretés garantissent :

1° La représenta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u prévenu ou de l'accusé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et pour l'exécution du jugement,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xécution des autres obliga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

2° Le paiement dans l'ordre suivant :

a) De la ré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infraction et des restitutions, ainsi que de la dette alimentaire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poursuivie pour le défaut de paiement de cette dette ;

b) Des amendes.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étermine les sommes affectées à chacune des deux parties du cautionnement ou des sûretés.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toutefois décider que les sûretés garantiront dans leur totalité le paiement des sommes prévues au 2° ou l'une ou l'autre de ces sommes.

Lorsque les sûretés garantissent, en partie ou en totalité, les droits d'une ou plusieurs victimes qui ne sont pas encore identifiées ou qui ne sont pas encore constituées parties civiles, elles sont établies, dans des conditions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u nom d'un bénéficiaire provisoire agissant pour le compte de ces victimes et, le cas échéant, du Trésor.

Article 142-1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avec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rdonner, ou décider, que la partie du cautionnement affectée à la garantie des droits de la victime ou du créancier d'une dette alimentaire soit versée à ceux-ci par provision, sur leur demande.

Ce versement peut aussi être ordonné, ou décidé, même sans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orsqu'une décision de justice exécutoire a accordé à la victime ou au créancier une provision à l'occasion des faits qui sont l'objet des poursuites.

Article 142-2

La première partie du cautionnement est restituée ou la première partie des sûretés est levée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prévenu ou l'accusé s'est présenté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a satisfai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et s'est soumis à l'exécution du jugement.

Dans le cas contraire, sauf motif légitime d'excuse ou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d'acquiescement ou d'exemption de peine, la première partie du cautionnement est acquise à l'Etat, ou il est procédé au recouvrement de la créance garantie par la première partie des sûretés.

Article 142-3

Le montant affecté à la deuxième partie du cautionnement qui n'a pas été versé à la victime de l'infraction ou au créancier d'une dette alimentaire est restitué en cas de non-lieu et, sauf s'il est fait application de l'article 372, en cas d'absolution ou d'acquiescement.

En cas de condamnation, il est employ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2° de l'article 142.

Le surplus est restitué lorsque la condamnation est définitive.

La deuxième partie des sûretés est levée ou il est procédé au recouvrement des créances que cette partie garanti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aux deux alinéas précédents.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142-4

Lorsqu'une juridiction de jugement est appelée à statuer dans les cas prévus à la présente

sous-section, elle le fait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rticle 148-2.

Sous-section 2 :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142-5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être ordonnée, avec l'accord ou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court une peine d'emprisonnement correctionnel d'au moins deux ans ou une peine plus grave.

Cette mesure oblige la personne à demeurer à son domicile ou dans une résidence fixée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de ne s'en absenter qu'aux conditions et pour les motifs déterminés par ce magistrat.

Cette obligation est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à l'aide du procédé prévu par l'article 723-8.

Elle peut également être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à l'aide du procédé prévu par l'article 763-12, si la personne est mise en examen pour une infraction punie de plus de sept ans d'emprisonnement et pour laquelle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Les articles 723-9 et 723-12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articles 763-12 et 763-13 sont applicables, le juge d'instruction exerçant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a personne peut être en outre astreinte aux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prévues par l'article 138.

Article 142-6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décidée par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stat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5.

Elle peut également être décidée, sans débat contradictoire, par ordonnance statuant sur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Article 142-7

L'assignation à résidence est ordonnée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six mois.
Elle peut être prolongée pour une même dur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42-6, sans que la durée totale du placement dépasse deux ans.

Article 142-8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39 et les articles 140 et 141-3 sont applicables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 personne qui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faire l'objet d'un mandat d'arrêt ou d'amener et êtr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1-2.

Article 142-9

Avec l'accord préalable du juge d'instruction, les horaires de présence au domicile ou dans les lieux d'assignation peuvent, lorsqu'il s'agit de modifications favorable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touchant pas à l'équilibre de la mesure de contrôle, être modifiés par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qui en informe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142-10

En cas de décision de non-lieu, relaxe ou acquittement devenue définitive, la personne placée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 droit à la réparation du préjudice subi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49 à 150.

Article 142-11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assimilée à une détention provisoire pour l'imputation intégrale de sa durée sur cell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conformément à l'article 716-4.

Article 142-12

L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peuvent prononcer, comme mesure alternative à la détention provisoire,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135-2, 145, 148, 201, 221-3, 272-1, 397-3, 695-34 et 696-19.

Cette mesure peut être levée, maintenue, modifiée ou révoquée par l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que le contrôle judiciair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48-2, 148-6, 213, 272-1, 695-35, 695-36, 696-20 et 696-21.

Article 142-12-1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42-5, l'assignation à résidence exécuté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peut être ordonnée lorsque la personne est mise en examen pour des violences ou des menaces, punies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commises :

- 1° Soit contre son conjoint, son concubin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2° Soit contre ses enfants ou ceux de son conjoint, concubin ou partenaire.

Le présent article est également applicabl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par l'ancien conjoint ou concubin de la victime ou par la personne ayant été liée à elle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le domicile concerné étant alors celui de la victime.

Article 142-13

Un décre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 présente sous-section.

Sous-section 3 : De la détention provisoire

Article 143-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7, la détention provisoire ne peut être ordonnée ou prolongée que dans l'un des cas ci-après énumérés :

- 1°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court une peine criminelle ;
- 2°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court une peine correction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La détention provisoire peut également être ordonn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41-2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e soustrait volontairemen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d'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144

La détention provisoire ne peut être ordonnée ou prolongée que s'il est démontré, au regard des éléments précis et circonstanciés résultant de la procédure, qu'elle constitue l'unique moyen de parvenir à l'un ou plusieurs des objectifs suivants et que ceux-ci ne sauraient être atteints en cas de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d'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

- 1° Conserver les preuves ou les indices matériels qui sont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 2° Empêcher une pression sur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ainsi que sur leur famille ;
- 3° Empêcher une concertation frauduleuse e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ses coauteurs ou complices ;
- 4° Protéger la personne mise en examen ;
- 5° Garantir le maintie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à la disposition de la justice ;
- 6° Mettre fin à l'infraction ou prévenir son renouvellement ;
- 7° Mettre fin au trouble exceptionnel et persistant à l'ordre public provoqué par la gravité de l'infraction, les circonstances de sa commission ou l'importance du préjudice qu'elle a causé.

Ce trouble ne peut résulter du seul retentissement médiatique de l'affaire.

Toutefois, le présent alinéa n'est pas applicable en matière correctionnelle.

Article 144-1

La détention provisoire ne peut excéder une durée raisonnable, au regard de la gravité des faits reproché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de la complexité des investigation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e juge d'instruction ou, s'il est saisi,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oit ordonner la

mise en liberté immédiate de la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47, dès que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44 et au présent article ne sont plus remplies.

Article 144-2

Lorsqu'une mise en liberté est ordonnée en rais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3-1, 144, 144-1, 145-2, 145-3 ou 706-24-3, mais qu'elle est susceptible de faire courir un risque à la victime, la juridiction plac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us contrôle judiciaire en la soumettant à l'interdiction de recevoir ou rencontrer la victime ou d'entrer en relation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avec el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9° de l'article 138.

Cette dernière en est avis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8-1.

Article 145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un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tendant au placement en déten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fait comparaître cette personne devant lui, assistée de son avocat si celui-ci a déjà été désigné, et procè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et après avoir, s'il l'estime utile, recueilli les observations de l'intéressé, ce magistrat fait connaître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l envisage de la placer en détention provisoire.

S'il n'envisage pas de la placer en détention provisoire, ce magistrat, après avoir le cas échéant ordonné le placement de la personne sous contrôle judiciaire, procède conformément aux deux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16 relatifs à la déclaration d'adresse.

S'il envisage d'ordonner la déten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il l'informe que sa décision ne pourra intervenir qu'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et qu'elle a le droit de demander un délai pour préparer sa défense.

Si cette personne n'est pas déjà assistée d'un avocat, le juge l'avise qu'elle sera défendue lors du débat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si elle ne choisit pas d'avocat,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L'avocat choisi ou, dans le cas d'une commission d'office,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en est avisé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Si l'avocat choisi ne peut se déplacer, il est remplacé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Mention de ces formalités est faite au procès-verbal.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au cours duquel il entend le ministère public qui développe ses réquisitions prises conformément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82 puis les observation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le cas échéant, celles de son avocat.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ajeure, le débat contradictoire a lieu et le juge statue en audience publique.

Toutefois, le ministère public,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son avocat peuvent s'opposer à cette publicité si l'enquête porte sur des faits visés à l'article 706-73 ou si celle-ci est de nature à entraver les investigations spécifiques nécessitées par l'instruction, à porter atteinte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 ou à la sérénité des débats ou à nu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aux intérêts d'un tiers.

Le juge statue sur cette opposition en audience de cabinet par ordonnance motivé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ministère public,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de son avocat. S'il fait droit à cette opposition ou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ineure, le débat a lieu et le juge statue en audience de cabinet.

Toutefoi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e peut ordonner immédiatement le placement en détention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son avocat sollicite un délai pour préparer sa défense.

Dans ce cas, il peut, au moyen d'une ordonnance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et non susceptible d'appel, prescrire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qui ne peut en aucun cas excéder quatre jours ouvrables.

Dans ce délai, il fait comparaître à nouveau la personne et, que celle-ci soit ou non assistée d'un avocat, procède comme il est dit au sixième alinéa.

S'il n'ordonne pas le placement de la personne en détention provisoire, celle-ci est mise en liberté d'office.

Pour permettre au juge d'instruction de procéder à des vérifications relatives à la situation personnelle du mis en examen ou aux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lorsque ces vérifications sont susceptibles de permettre le placement de l'intéressé sous contrôle judiciair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également décider d'office de prescrire par ordonnance motivée l'incarcération provisoire du mis en examen pendant une durée déterminée qui ne saurait excéder quatre jours ouvrables jusqu'à la tenue du débat contradictoire.

A défaut de débat dans ce délai, la personne est mise en liberté d'offic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ésent alinéa peut faire l'objet du recours prévu à l'article 187-1.

L'incarcération provisoire est, le cas échéant, imputée sur la durée de la détention provisoire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45-1 et 145-2.

Elle est assimilée à une détention provisoire au sens de l'article 149 du présent code et de l'article 24 du code pénal (article abrogé, cf. article 716-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Article 145-1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a détention provisoire ne peut excéder quatre mois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n'a pas déjà été condamnée pour crime ou délit de droit commun soit à une peine criminelle, soit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d'une durée supérieure à un an et lorsqu'elle encourt une pein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Dans les autres cas, à titre exceptionnel,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écider de prolonger la détention provisoire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quatre mois par une ordonnance motiv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7-3 et rend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organi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145, l'avocat ayant été convoqué selon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4.

Cette décision peut être renouvelée selon la même procédur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5-3, la durée totale de la détention ne pouvant excéder un an.

Toutefois, cette durée est portée à deux ans lorsqu'un des faits constitutifs de l'infraction a été commis hors du territoire national ou lorsque la personne est poursuivie pour trafic de stupéfiants, terrorisme, association de malfaiteurs, proxénétisme, extorsion de fonds ou pour une infraction

commise en bande organisée et qu'elle encourt une peine égale à dix ans d'emprisonnement. A titre exceptionnel, lorsque les investigations du juge d'instruction doivent être poursuivies et qu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causerait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des biens un ris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rolonger pour une durée de quatre mois la durée de deux ans prévue au présent articl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vant laquelle la comparution personnelle du mis en examen est de droit, est saisie par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7-1, et elle sta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44, 144-1, 145-3, 194, 197, 198, 199, 200, 206 et 207.

Article 145-2

En matière criminelle,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peut être maintenue en détention au-delà d'un an.

Toutefoi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5-3,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à l'expiration de ce délai, prolonger la détention pour une durée qui ne peut être supérieure à six mois par une ordonnance motiv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7-3 et rend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organi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145, l'avocat ayant été convoqu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4. Cette décision peut être renouvelée selon la même procédu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peut être maintenue en détention provisoire au-delà de deux an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inférieure à vingt ans de réclusion ou de détention criminelles et au-delà de trois ans dans les autres cas.

Les délais sont portés respectivement à trois et quatre ans lorsque l'un des faits constitutifs de l'infraction a été commis hors du territoire national.

Le délai est également de quatre ans lorsque la personne est poursuivie pour plusieurs crimes mentionnés aux livres II et IV du code pénal, ou pour trafic de stupéfiants, terrorisme, proxénétisme, extorsion de fonds ou pour un crime commis en bande organisée.

A titre exceptionnel, lorsque les investigations du juge d'instruction doivent être poursuivies et qu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causerait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et des biens un risque d'une particulière gravit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rolonger pour une durée de quatre mois les durée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vant laquelle la comparution personnelle du mis en examen est de droit, est saisie par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7-1, et elle sta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44, 144-1, 145-3, 194, 197, 198, 199, 200, 206 et 207.

Cette décision peut être renouvelée une fois sous les mêmes conditions e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jusqu'à l'ordonnance de règlement.

Article 145-3

Lorsque la durée de la détention provisoire excède un an en matière criminelle ou huit mois en matière délictuelle, les décisions ordonnant sa prolongation ou rejetant l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doivent aussi comporter les indications particulières qui justifient en l'espèce la poursuite de l'information et le délai prévisible d'achèvement de la procédure.

Il n'est toutefois pas nécessaire que l'ordonnance de prolongation indique la nature des investigations auxquelles le juge d'instruction a l'intention de procéder lorsque cette indication risque d'entraver l'accomplissement de ces investigations.

Article 145-4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le juge d'instruction peut prescrire à son encontre l'interdiction de communiquer pour une période de dix jours.

Cette mesure peut être renouvelée, mais pour une nouvelle période de dix jours seulement.

En aucun cas, l'interdiction de communiquer ne s'applique à l'avoca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toute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peut, avec l'autorisation du juge d'instruction, recevoir des visites sur son lieu de détention.

A l'expiration d'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u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le juge d'instruction ne peut refuser de délivrer un permis de visite à un membre de la famille de la

personne détenue que par une décision écrite et spécialement motivée au regard d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Cette décision est notifiée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au demandeur.

Ce dernier peut la déférer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par une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Lorsqu'il infirme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élivre le permis de visite.

Article 145-4-1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prescrire, par ordonnance motivée, que la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soit soumise à l'isolement aux fins d'être séparée des autres personnes détenues, si cette mesure est indispensable aux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celle du mandat de dépôt et qui peut être renouvelée à chaque prolongation de la détention.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peu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lacement à l'isolement n'affecte pas l'exercice des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sous réserve des aménagements qu'impose la sécurité.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45-5

L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une personne faisant connaître, lors de son interrogatoire par le juge d'instruction préalable à la saisin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elle exerce à titre exclusif l'autorité parentale sur un mineur de seize ans au plus ayant chez elle sa résidence ne peut être ordonné sans que l'un des services ou l'une des personnes visés au septième alinéa de l'article 81 ait été chargé au préalable de rechercher et de proposer toutes mesures propres à éviter que la santé, la sécurité et la moralité du mineur ne soient en danger ou que les conditions de son éducation ne soient gravement compromises.

738 프랑스 형사소송법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en cas de crime, en cas de délit commis contre un mineur ou en cas de non-respect d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146

S'il apparaît, au cours de l'instruction, que la qualification criminelle ne peut être retenue, le juge d'instruction peut, après avoir communiqué le dossi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équisitions, soit saisir par ordonnance motivé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ux fins du maintien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it prescrire sa mise en liberté assortie ou non du contrôle judiciair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e dans le délai de trois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saisine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147

En toute matière, la mise en liberté assortie ou non du contrôle judiciaire peut être ordonnée d'office par le juge d'instruction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charge pour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prendre l'engagement de se représenter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aussitôt qu'elle en sera requise et de tenir informé le magistrat instructeur de tous ses déplacement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la requérir à tout moment.

Sauf s'il ordonn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le juge d'instruction doit, dans les cinq jours suivant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ransmettre le dossier, assorti de son avis motivé,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statue dans le délai de trois jours ouvrables.

Article 148

En toute matière, la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ou son avocat peut, à tout moment, demander sa mise en liberté, sous les obligations prévues à l'article précédent.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est adressée au juge d'instruction, qui communique immédiatement le dossi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équisitions.

Sauf s'il donne une suite favorable à la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doit, dans les cinq jours suivant la communica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transmettre avec son avis motivé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Ce magistrat statue dans un délai de trois jours ouvrables, par une ordonnance comportant l'énoncé des considérations de droit et de fait qui constituent le fondement de cette décision par référence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44.

Toutefois, lorsqu'il n'a pas encore été statué sur une précédent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ou sur l'appel d'une précédente ordonnance de refus de mise en liberté, les délais précité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compter de la décision rendue par la juridiction compétente.

Lorsqu'il a été adressé plusieur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il peut être répondu à ces différentes demandes dans les délais précités par une décision unique.

La mise en liberté, lorsqu'elle est accordée, peut être assortie de mesures de contrôle judiciaire. Faut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avoir statué dans le délai fixé au troisième alinéa, la personne peut saisir directement de sa deman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ur les réquisitions écrites et motivées du procureur général, se prononce dans les vingt jours de sa saisine faute de quoi la personn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sauf si des vérifications concernant sa demande ont été ordonnées.

Le droit de saisir dans les mêmes conditions la chambre de l'instruction appartient égaleme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148-1

La mise en liberté peut aussi être demandée en tout état de cause par toute personne mise en examen, tout prévenu ou accusé, et en toute période de la procédure.

Lorsqu'une juridiction de jugement est saisie, il lui appartient de statuer sur la liberté provisoire ; avant le renvoi en cour d'assises et dans l'intervalle des sessions d'assises, ce pouvoir appartient à la chambre d'accusation.

En cas de pourvoi et jusqu'à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il est statué sur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par la juridiction qui a connu en dernier lieu de l'affaire au fond.

Si le pourvoi a été formé contre un arrêt de la cour d'assises, il est statué sur la détention

740 프랑스 형사소송법

par la chambre d'accusation.

En cas de décision d'incompétence et généralement dans tous les cas où aucune juridiction n'est saisie, la chambre d'accusation connaît d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Article 148-1-1

Lorsqu'une 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d'une personn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est rendu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le juge d'instruction contrairement aux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te ordonnance est immédiatement notifiée à ce magistrat.

Pendant un délai de quatre heures à compter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peut être remise en liberté et cette décision ne peut être adressée pour exécution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interjeter appel de l'ordonnance devant le greffier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du juge d'instruction, en saisissant dans le même temps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un référé-déten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87-3 ; l'appel et le référé-détention sont mentionnés sur l'ordonnanc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son avocat en sont avisés en même temps que leur est notifiée l'ordonnance, qui ne peut être mise à exécution, la personne restant détenue tant que n'est pas intervenue la décision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le cas échéant, cell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son avocat sont également avisés de leur droit de faire des observations écrites dev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Faute po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voir formé un référé-détention, dans un délai de quatre heure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celle-ci, revêtue d'une mention du greffier indiquant l'absence de référé-détention, est adressée au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la personne est mise en liberté sauf si elle est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yant pris des réquisitions de maintien en détention, estime

néanmoins ne pas avoir à s'opposer à la mise en liberté immédiate de la personne, et sans préjudice de son droit de former ultérieurement appel dan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185, il retourne l'ordonnance au magistrat qui l'a rendue en mentionnant sur celle-ci qu'il ne s'oppose pas à sa mise à exécution.

La personne est alors mise en liberté,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Article 148-2

Toute juridiction appelée à statuer,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41-1 et 148-1, sur une demande de mainlevée totale ou partielle du contrôle judiciaire ou sur demande de mainlevée totale ou partielle du contrôle judiciaire ou sur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se prononce après audition du ministère public, du prévenu ou de son avocat ; le prévenu non détenu et son avocat sont convoqués, par lettre recommandée, quarante-huit heures au moins avant la date de l'audience. Si la personne a déjà comparu devant la juridiction moins de quatre mois auparavant, le président de cette juridiction peut en cas d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refuser la comparution personnelle de l'intéressé par une décision motivée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Lorsque la personne n'a pas encore été jugée en premier ressort, la juridiction saisie statue dans les dix jours ou les vingt jours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selon qu'elle est du premier ou du second degré.

Lorsque la personne a déjà été jugée en premier ressort et qu'elle est en instance d'appel, la juridiction saisie statue dans les deux mois de la demande.

Lorsque la personne a déjà été jugée en second ressort et qu'elle a formé un pourvoi en cassation, la juridiction saisie statue dans les quatre mois de la demande.

Toutefois, lorsqu'au jou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il n'a pas encore été statué soit sur une précédent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ou de mainlevée de contrôle judiciaire, soit sur l'appel d'une précédente décision de refus de mise en liberté ou de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les délais prévus ci-dessu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compter de la décision rendue par la juridiction compétente.

Faute de décision à l'expiration des délais, il est mis fin au contrôle judiciaire ou à la détention provisoire, le prévenu, s'il n'est pas détenu pour une autre cause, étant d'office remis en liberté.

742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décision du tribunal est immédiatement exécutoire nonobstant appel ; lorsque le prévenu est maintenu en détention, la cour se prononce dans les vingt jours de l'appel, faute de quoi le prévenu, s'il n'est pas détenu pour autre cause, est mis d'office en liberté.

Article 148-3

Préalablement à sa mise en liberté, la personne mise en examen doit faire, auprès du juge d'instruction ou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déclaration d'adresse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16.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avisée qu'elle doit signaler au juge d'instruction, jusqu'à la clôture de l'information, par nouvelle déclaration ou par lettr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Elle est également avisée que toute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Mention de cet avis, ainsi que de la déclaration d'adresse, est portée soit au procès-verbal, soit dans le document qui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au juge d'instruction.

Article 148-4

A l'expiration d'un délai de quatre mois depuis sa dernière comparu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ou le magistrat par lui délégué et tant que l'ordonnance de règlement n'a pas été rendue, la personne détenue ou son avocat peut saisir directement d'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48 (dernier alinéa).

Article 148-5

En toute matière et en tout état de la procédure d'instruction,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 jugement peut, à titre exceptionnel, accorder une autorisation de sortie sous escorte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au prévenu ou à l'accusé.

Article 148-6

Toute demande de mainlevée ou de modifi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mise en liberté doi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saisie du dossier ou à celui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en vertu de l'article 148-1.

Elle doit être constatée et datée par le greffier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Si le demandeur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Lorsque la personne ou son avocat ne réside pa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déclaration au greffier peut être faite au moyen d'une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rticle 148-7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prévenu ou l'accusé est détenu,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peut aussi être faite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et par tout moyen, soit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saisie du dossier, soit à celui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selon les distinctions de l'article 148-1.

Article 148-8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tend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0, troisième alinéa, 148, sixième alinéa, ou 148-4, sa demande est faite,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s articles 148-6 et 148-7, au greffier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mpétente ou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en assure la transmission.

Lorsqu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e cette juridiction a été directement saisie,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140, 148, sixième alinéa, ou 148-4, d'une demande de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mise en liberté manifestement irrecevable, il peut décider, par une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voie de recours, qu'il n'y a pas lieu de statuer sur cette demande ; dans ce cas, la demande et l'ordonnance son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ous-section 4 : De la réparation à raison d'une détention

Article 149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141-2 et L. 141-3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a personne qui a fait l'objet d'une détention provisoire au cours d'une procédure terminée à son égard par une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ttement devenue définitive a droit, à sa demande, à réparation intégrale du préjudice moral et matériel que lui a causé cette détention.

Toutefois, aucune réparation n'est due lorsque cette décision a pour seul fondement la reconnaissance de son irresponsabilité au sens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une amnistie postérieure à la mise en détention provisoire, ou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intervenue après la libération de la personne, lorsque la personne était dans le même temp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ou lorsque la personne a fait l'objet d'une détention provisoire pour s'être librement et volontairement accusée ou laissé accuser à tort en vue de faire échapper l'auteur des faits aux poursuites. A la demande de l'intéressé, le préjudice est évalué par expertise contradictoire réalisée dans les conditions des articles 156 et suivants.

Lorsque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ttement lui est notifiée, la personne est avisée de son droit de demander réparation, ainsi qu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9-1 à 149-3 (premier alinéa).

Article 149-1

La réparation prévue à l'article précédent est allouée par décision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a été prononcée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ttement.

Article 149-2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saisi par voie de requête dans le délai de six mois de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ttement devenue définitive, statue par une décision motivée.

Les débats ont lieu en audience publique, sauf opposition du requérant.

A sa demande, celui-ci est entendu personnell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e son conseil.

Article 149-3

Les décisions prises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peuvent, dans les dix jours de leur notification,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une commission nationale de réparation des détentions.

Cette commission, placée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 statue souverainement et ses décisions ne sont susceptibles d'aucun recours, de quelque nature que ce soit.

Le bureau de la Cour de cassation peut décider que la commission nationale comportera plusieurs formations.

La commission nationale, ou le cas échéant chacune des formations qu'elle comporte, est composée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 ou de son représentant, qui la préside, et de deux magistrats du siège de la cour ayant le grade de président de chambre, de conseiller ou de conseiller référendaire, désignés annuellement par le bureau de la cour.

Outre ces deux magistrats, ce bureau désigne égalem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trois suppléants.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remplies par le parquet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9-2 sont applicables aux décisions rendues par la commission nationale.

Article 149-4

La procédure dev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la commission nationale, qui statuent en tant que juridictions civiles, est fixée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150

La réparation allouée en application de la présente sous-section est à la charge de l'Etat, sauf le recours de celui-ci contre le dénonciateur de mauvaise foi ou le faux témoin dont la faute aurait provoqué la détention ou sa prolongation.

Elle est payée comme frais de justice criminelle.

Section 8 : Des commissions rogatoires

Article 151

Le juge d'instruction peut requérir par commission rogatoire tout juge de son tribunal, tout juge d'instruction ou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i en avise dans ce ca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rocéder aux actes d'information qu'il estime nécessaires dans les lieux où chacun d'eux est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a commission rogatoire indique la nature de l'infraction, objet des poursuites.

Elle est datée et signée par le magistrat qui la délivre et revêtue de son sceau.

Elle ne peut prescrire que des actes d'instruction se rattachant directement à la répression de l'infraction visée aux poursuites.

Le juge d'instruction fixe le délai dans lequel la commission rogatoire doit lui être retournée avec les procès-verbaux dressés pour son exécution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 défaut d'une telle fixation, la commission rogatoire et les procès-verbaux doivent lui être transmis dans les huit jours de la fin des opérations exécutées en vertu de celle-ci.

Article 152

Les magistrats ou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our l'exécution exercent, dans les limites de la commission rogatoire, tous les pouvoirs du juge d'instruction.

Toutefoi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ne peuvent pas procéder aux interrogatoires et confrontations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Ils ne peuvent procéder à l'audition des parties civiles ou du témoin assisté qu'à la demande de ceux-ci.

Le juge d'instruction peut se transporter, sans être assisté de son greffier ni devoir en dresser procès-verbal, pour diriger et contrôler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dès lors qu'il ne procède pas lui-même à des actes d'instruction.

A l'occasion de ce transport, il peut ordonner la prolongation des gardes à vue prononcées dans le cadre de la commission rogatoire.

Dans tous les cas, mention de ce transport est faite sur les pièces d'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Article 153

Tout témoin cité pour être entendu au cours de l'exécution d'une commission rogatoire est tenu de comparaître, de prêter serment et de déposer.

Lorsqu'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il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il ne peut être retenu q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son audition.

S'il ne satisfait pas à cette obligation, avis en est donné au magistrat mandant qui peut le contraindre à comparaître par la force publique.

Le témoin qui ne comparaît pas encourt l'amende prévue par l'article 434-15-1 du code pénal.

L'obligation de prêter serment et de déposer n'est pas applicable aux personnes gardées à vu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54.

Le fait que les personnes gardées à vue aient été entendues après avoir prêté serment ne constitue toutefois pas une caus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Article 154

Lors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st amené, pour les nécessités de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à garder à sa disposition un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il en informe dès le début de cette mesure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s faits.

Ce dernier contrôle la mesure de garde à v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ne peut retenir la personne plus de vingt-quatre heures.

La personne doit être présentée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à ce magistrat

ou, si la commission rogatoire est exécutée dans un autre ressort que celui de son siège, au juge d'instruction du lieu d'exécution de la mesure.

A l'issue de cette présenta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accorder l'autorisation écrite de prolonger la mesure d'un nouveau délai, sans que celui-ci puisse excéder vingt-quatre heures. Il peut, à titre exceptionnel, accorder cette autorisation par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sans présentation préalable de la personne.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s ressor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anterre, Bobigny et Créteil constituent un seul et même ressor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1, 63-2, 63-3, 63-4, 64, 64-1 et 65 sont applicables aux gardes à vue exécutées dans le cadre de la présente section.

Les pouvoirs conféré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articles 63-2, 63-3 et 64-1 sont alors exercés par le juge d'instruction.

L'information prévue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63-4 précise que la garde à vue intervient dans le cadre d'une commission rogatoire.

Article 154-1

Pour les nécessités de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faire procéder aux opérations de prélèvements externes prévues par l'article 55-1.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55-1 sont applicables.

Article 154-2

Le juge d'instruction qui envisage de mettre en examen une personne qui n'a pas déjà été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peut requérir par commission rogato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51, tout juge d'instruction de procéder à la mise en examen de cette personn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16.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xécuter la commission rogatoire procède alors à la mise en examen de la personn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16, sauf s'il estime, au vu de ses observations ou celles de son avocat, qu'il n'existe pas contre elle d'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rendant vraisemblable sa culpabilité, auquel cas ce magistrat l'informe qu'elle

bénéficie des droits du témoin assisté.

Lorsqu'une personne a déjà été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le juge d'instruction peut requérir par commission rogatoire tout juge d'instruction de procéder à la mise en examen de cette personne.

Article 155

Lorsque la commission rogatoire prescrit des opérations simultanées sur divers points du territoire, elle peut, sur l'ordre du juge d'instruction mandant, être adressée aux juges d'instruction ou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chargés de son exécution sous forme de reproduction ou de copie intégrale de l'original.

Elle peut même, en cas d'urgence, être diffusée par tous moyens ; chaque diffusion doit toutefois préciser les mentions essentielles de l'original et spécialement la nature de la mise en examen, le nom et la qualité du magistrat mandant.

Section 9 : De l'expertise

Article 156

Toute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 jugement, dans le cas où se pose une question d'ordre technique, peut, soit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soit d'office, ou à la demande des parties, ordonner une expertise.

Le ministère public ou la partie qui demande une expertise peut préciser dans sa demande les questions qu'il voudrait voir poser à l'expert.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estime ne pas devoir faire droit à une demande d'expertise, il d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es dispositions des avant-dernier et dernier alinéas de l'article 81 sont applicables.

Les experts procèdent à leur mission sous le contrôle du juge d'instruction ou du magistrat que doit désigner la juridiction ordonnant l'expertise.

750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157

Les experts sont choisis parmi l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qui figurent sur la liste nationale dressée par la Cour de cassation ou sur une des listes dressées par les cours d'app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n° 71-498 du 29 juin 1971 relative aux experts judiciaires. A titre exceptionnel, les juridictions peuvent, par décision motivée, choisir des experts ne figurant sur aucune de ces listes.

Article 157-1

Si l'expert désigné est une personne morale, son représentant légal soumet à l'agrément de la juridiction le nom de la ou des personnes physiques qui, au sein de celle-ci et en son nom, effectueront l'expertise.

Article 158

La mission des experts qui ne peut avoir pour objet que l'examen de questions d'ordre technique est précisée dans la décision qui ordonne l'expertise.

Article 159

Le juge d'instruction désigne l'expert chargé de procéder à l'expertise.

Si les circonstances le justifient, il désigne plusieurs experts.

Article 160

Les experts ne figurant sur aucune d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157 prêtent, chaque fois qu'ils sont commis, le serment prévu par la loi n° 71-498 du 29 juin 1971 relative aux experts judiciaires devant le juge d'instruction ou le magistrat désigné par la juridiction.

Le procès-verbal de prestation de serment est signé par le magistrat compétent, l'expert et le greffier.

En cas d'empêchement dont les motifs doivent être précisés, le serment peut être reçu par écrit et la lettre de serment est annexé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Article 161

Toute décision commettant des experts doit leur impartir un délai pour remplir leur mission. Si des raisons particulières l'exigent, ce délai peut être prorogé sur requête des experts et par décision motivée rendue par le magistrat ou la juridiction qui les a désignés.

Les experts qui ne déposent pas leur rapport dans le délai qui leur a été imparti peuvent être immédiatement remplacés et doivent rendre compte des investigations auxquelles ils ont déjà procédé.

Il doivent aussi restituer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les objets, pièces et documents qui leur auraient été confiés en vue de l'accomplissement de leur mission.

Ils peuvent être, en outre, l'objet de mesures disciplinaires allant jusqu'à la radiation de l'une ou de l'autre des listes prévues par l'article 157.

Les experts doivent remplir leur mission en liaison avec le juge d'instruction ou le magistrat délégué ils doivent le tenir au courant du développement de leurs opérations et le mettre à même de prendre à tout moment toutes mesures utiles.

Le juge d'instruction, au cours de ses opérations, peut toujours, s'il l'estime utile, se faire assister des experts.

Article 161-1

Copie de la décision ordonnant une expertise est adressée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aux avocats des parties, qui disposent d'un délai de dix jours pour demander au juge d'instruc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de modifier ou de compléter les questions posées à l'expert ou d'adjoindre à l'expert ou aux experts déjà désignés un expert de leur choix figurant sur une des listes mentionnées à l'article 157. Si le juge ne fait pas droit, dans 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eur réception, aux demande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il rend une ordonnance motivée.

Cette ordonnance ou l'absence d'ordonnance peut être contestée dans un délai de dix jours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 dernier statue par décision motivé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Le présent article n'est pas applicable lorsque les opérations d'expertise et le dépôt des

conclusions par l'expert doivent intervenir en urgence et ne peuvent être différés pendant le délai de dix jours prévu au premier alinéa ou lorsque la communicat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risque d'entraver l'accomplissement des investigations.

Il n'est pas non plus applicable aux catégories d'expertises dont les conclusions n'ont pas d'incidence sur la détermination de la culpabilité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Les parties peuvent déclarer renoncer, en présence de leur avocat ou celui-ci dûment convoqué, à bénéficier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Article 161-2

Si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161 excède un an, le juge d'instruction peut demander que soit auparavant déposé un rapport d'étape qui est notifié aux parti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67.

Les parties peuvent alors adresser en même temps à l'expert et au juge leurs observations en vue du rapport définitif.

Article 162

Si les experts demandent à être éclairés sur une question échappant à leur spécialité, le juge peut les autoriser à s'adjoindre des personnes nommément désignées, spécialement qualifiées par leur compétence.

Les personnes ainsi désignées prêtent ser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60.

Leur rapport sera annexé intégralement au rapport mentionné à l'article 166.

Article 163

Avant de faire parvenir les scellés aux experts, le juge d'instruction ou le magistrat désigné par la juridiction procède, s'il y a lieu, à leur inventa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97. Il énumère ces scellés dans un procès-verbal.

Pour l'application de leur mission, les experts sont habilités à procéder à l'ouverture ou à la réouverture des scellés, et à confectionner de nouveaux scellés après avoir, le cas échéant,

procédé au reconditionnement des objets qu'ils étaient chargés d'examiner ; dans ce cas, ils en font mention dans leur rapport, après avoir, s'il y a lieu, dressé inventaire des scellés ; l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97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164

Les experts peuvent recevoir, à titre de renseignement et pour le seul accomplissement de leur mission, les déclarations de toute personne autre 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témoin assisté ou la partie civile.

Toutefois, si le juge d'instruction ou le magistrat désigné par la juridiction les y a autorisés, ils peuvent à cette fin recevoir, avec l'accord des intéressés, les déclaration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u témoin assisté ou de la partie civile nécessaires à l'exécution de leur mission. Ces déclarations sont recueillies en présence de leur avocat ou celui-ci dûment convoqu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4, sauf renonciation écrite remise aux experts.

Ces déclarations peuvent être également recueillies à l'occasion d'un interrogatoire ou d'une déposi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en présence de l'expert. Les médecins ou psychologues experts chargés d'examiner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témoin assisté ou la partie civile peuvent dans tous les cas leur poser des questions pour l'accomplissement de leur mission hors la présence du juge et des avocats.

Article 165

Au cours de l'expertise, les parties peuvent demander à la juridiction qui l'a ordonnée qu'il soit prescrit aux experts d'effectuer certaines recherches ou d'entendre toute personne nommément désignée qui serait susceptible de leur fournir des renseignements d'ordre technique.

Article 166

Lorsque les opérations d'expertise sont terminées, les experts rédigent un rapport qui doit contenir la description desdites opérations ainsi que leurs conclusions.

Les experts signent leur rapport et mentionnent les noms et qualités des personnes qui les ont

754 프랑스 형사소송법

assistés, sous leur contrôle et leur responsabilité, pour la réalisation des opérations jugées par eux nécessaires à l'exécution de la mission qui leur a été confiée.

Lorsque plusieurs experts ont été désignés et s'ils sont d'avis différents ou s'ils ont des réserves à formuler sur des conclusions communes, chacun d'eux indique son opinion ou ses réserves en les motivant.

Le rapport et les scellés, ou leurs résidus, sont déposés entre les mains du greffier de la juridiction qui a ordonné l'expertise ; ce dépôt est constaté par procès-verbal.

Avec l'accord du juge d'instruction, les experts peuvent, directement et par tout moyen, communiquer les conclusions de leur rapport aux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chargés de l'exécution de la commission rogatoi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aux avocats des parties.

Article 167

Le juge d'instruction donne connaissance des conclusions des experts aux parties et à leurs avocats après les avoir convoqu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14. Il leur donne également connaissance, s'il y a lieu, des conclusions des rapports des personnes requis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60 et 77-1, lorsqu'il n'a pas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60.

Une copie de l'intégralité du rapport est alors remise, à leur demande, aux avocats des parties. Les conclusions peuvent également être notifiées par lettre recommandée ou, lorsque la personne est détenue, par les soin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adresse, sans délai, au juge d'instruction l'original ou la copie du récépissé signé par l'intéressé.

L'intégralité du rapport peut aussi être notifiée, à leur demande, aux avocats des parties par lettre recommandée.

Si les avocats des parties ont fait connaître au juge d'instruction qu'ils disposent d'une adresse électronique, l'intégralité du rapport peut leur être adressée par cette voi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803-1.

Dans tous les cas, le juge d'instruction fixe un délai aux parties pour présenter des observations ou formuler une demande, notamment aux fins de complément d'expertise ou de contre-expertise. Cette demande doit être form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ixième alinéa de l'article 81.

Pendant ce délai, le dossier de la procédure est mis à la disposition des conseils des parties. Le délai fixé par le juge d'instruction, qui tient compte de la complexité de l'expertise, ne saurait être inférieur à quinze jours ou, s'il s'agit d'une expertise comptable ou financière, à un mois. Passé ce délai, il ne peut plus être formulé de demande de contre-expertise, de complément d'expertise ou de nouvelle expertise portant sur le même objet, y compris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82-1, sous réserve de la survenance d'un élément nouveau.

Lorsqu'il rejette une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rend une décision motivée qui doit intervenir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Il en est de même s'il commet un seul expert alors que la partie a demandé qu'il en soit désigné plusieurs.

Faute pour le juge d'instruction d'avoir statué dans le délai d'un mois, la partie peut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notifier au témoin assis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es conclusions des expertises qui le concernent en lui fixant un délai pour présenter une demande de complément d'expertise ou de contre-expertise.

Le juge n'est toutefois pas tenu de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s'il estime que la demande n'est pas justifiée, sauf si le témoin assisté demande à être mis en examen en application de l'article 113-6.

Article 167-1

Lorsque les conclusions de l'expertise sont de nature à conduire à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prévoyant l'irresponsabilité pénale de la personne en raison d'un trouble mental, leur notification à la partie civile est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67, le cas échéant en présence de l'expert ou des experts.

En matière criminelle, cette présence est obligatoire si l'avocat de la partie civile le demande. La partie civile dispose alors d'un délai de quinze jours pour présenter des observations ou formuler une demande de complément d'expertise ou de contre-expertise.

La contre-expertise demandée par la partie civile est de droit.

756 프랑스 형사소송법

Elle doit être accomplie par au moins deux experts.

Article 167-2

Le juge d'instruction peut demander à l'expert de déposer un rapport provisoire avant son rapport définitif.

Le ministère public et les parties disposent alors d'un délai fixé par le juge d'instruction qui ne saurait être inférieur à quinze jours ou, s'il s'agit d'une expertise comptable ou financière, à un mois, pour adresser en même temps à l'expert et au juge les observations écrites qu'appelle de leur part ce rapport provisoire.

Au vu de ces observations, l'expert dépose son rapport définitif.

Si aucune observation n'est faite, le rapport provisoire est considéré comme le rapport définitif.

Le dépôt d'un rapport provisoire est obligatoire si le ministère public le requiert ou si une partie en a fait la deman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lorsqu'elle est informée de la décision ordonnant l'expertis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61-1.

Article 168

Les experts exposent à l'audience, s'il y a lieu, le résultat des opérations techniques auxquelles ils ont procédé, après avoir prêté serment d'apporter leur concours à la justice en leur honneur et en leur conscience.

Au cours de leur audition, ils peuvent consulter leur rapport et ses annexes.

Le président peut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s parties ou de leurs conseils, leur poser toutes questions rentrant dans le cadre de la mission qui leur a été confiée.

Le ministère public et les avocats des parties peuvent également poser directement des questions aux expert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312 et 442-1.

Après leur exposé, les experts assistent aux débats, à moins que le président ne les autorise à se retirer.

Article 169

Si, à l'audience d'une juridiction de jugement, une personne entendue comme témoin ou à titre

de renseignement contredit les conclusions d'une expertise ou apporte au point de vue technique des indications nouvelles, le président demande aux experts, au ministère public, à la défense et, s'il y a lieu, à la partie civile, de présenter leurs observations.

Cette juridiction, par décision motivée, déclare, soit qu'il sera passé outre aux débats, soit que l'affaire sera renvoyée à une date ultérieure.

Dans ce dernier cas, cette juridiction peut prescrire quant à l'expertise toute mesure qu'elle jugera utile.

Article 169-1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68 et 169 sont applicables aux personnes appelées soit à procéder à des constatations, soit à apprécier la nature des circonstances d'un décès, conformément aux articles 60 et 74.

Section 10 : Des nullités de l'information

Article 170

En toute matiè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au cours de l'information, être saisie aux fins d'annulation d'un acte ou d'une pièce de la procédure par le juge d'instruction,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parties ou par le témoin assisté.

Article 171

Il y a nullité lorsque la méconnaissance d'une formalité substantielle prévue par une disposition du présent code ou toute autre disposition de procédure pénale a porté atteinte aux intérêts de la partie qu'elle concerne.

Article 172

La partie envers laquelle une formalité substantielle a été méconnue peut renoncer à s'en prévaloir et régulariser ainsi la procédure.

Cette renonciation doit être expresse.

Elle ne peut être donnée qu'en présence de l'avocat ou ce dernier dûment appelé.

Article 173

S'il apparaît au juge d'instruction qu'un acte ou une pièce de la procédure est frappé de nullité, il saisi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ux fins d'annulation, après avoir pris l'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avoir informé les parties.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ime qu'une nullité a été commise, il requiert du juge d'instruction communication de la procédure en vue de sa transmission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résente requête aux fins d'annulation à cette chambre et en informe les parties. Si l'une des parties ou le témoin assisté estime qu'une nullité a été commise, elle saisit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requête motivée, dont elle adresse copie au juge d'instruction qui transmet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requêt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lle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greffier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Si le demandeur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Lors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ne réside pa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déclaration au greffe peut être faite au moyen d'une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la requête peut également être faite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et dat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la signe, ainsi que le demandeur.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et par tout moyen, au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es trois premiers alinéas ne sont pas applicables aux actes de procédure qui peuvent faire l'objet d'un appel de la part des parties, et notamment des décisions rendue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ou de contrôle judiciaire.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u dossier par le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peut, par ordonnance non susceptible de recours, constater que la requête est irrecevabl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troisième o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73-1, des articles 174, premier alinéa, ou 175, quatrième alinéa ; il peut également constater l'irrecevabilité de la requête si celle-ci n'est pas motivée.

S'il constate l'irrecevabilité de la requêt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que le dossier de l'information soit renvoyé au juge d'instruction ; dans les autres cas, il le transmet au procureur général qui procède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194 et suivants.

Article 173-1

Sous peine d'irrecevabilité, la personne mise en examen doit faire état des moyens pris de la nullité des actes accomplis avant son interrogatoire de première comparution ou de cet interrogatoire lui-même dans un délai de six moi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sa mise en examen, sauf dans le cas où elle n'aurait pu les connaître.

Il en est de même s'agissant des moyens pris de la nullité des actes accomplis avant chacun de ses interrogatoires ultérieurs.

Il en est de même pour le témoin assisté à compter de sa première audition puis de ses auditions ultérieures.

Il en est de même pour la partie civile à compter de sa première audition puis de ses auditions ultérieures.

Article 174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saisi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173 ou de l'article 221-3, tous moyens pris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qui lui est transmise doivent, sans préjudice du droit qui lui appartient de les relever d'office, lui être proposés.

A défaut, les parties ne sont plus recevables à en faire état, sauf le cas où elles n'auraient pu les connaît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écide si l'annulation doit être limitée à tout ou partie des actes ou pièces de la procédure viciée ou s'étendre à tout ou partie de la procédure ultérieure et procède comme il est dit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206.

Les actes ou pièces annulés sont retirés du dossier d'information et classés au greffe de la cour

d'appel.

Les actes ou pièces de la procédure partiellement annulés sont annulés après qu'a été établie une copie certifiée conforme à l'original, qui est classée au greffe de la cour d'appel.

Il est interdit de tirer des actes et des pièces ou parties d'actes ou de pièces annulés aucun renseignement contre les parties, à peine de poursuites disciplinaires pour les avocats et les magistrats.

Article 174-1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nnule une mise en examen pour viol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80-1, la personne est considérée comme témoin assisté à compter de son interrogatoire de première comparution et pour l'ensemble de ses interrogatoires ultérieurs, jusqu'à l'issue de l'informatio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13-6 et 113-8.

Section 11 : Des ordonnances de règlement

Article 175

Aussitôt que l'information lui paraît terminée, le juge d'instruction communique le dossi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en avise en même temps les parties et leurs avocats soit verbalement avec émargement au dossier, soit par lettre recommandée.

Lorsque la personne est détenue, cet avis peut également être notifié par les soin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adresse sans délai au juge d'instruction l'original ou la copie du récépissé signé par l'intéress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ispose alors d'un délai d'un mois si une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ou de trois mois dans les autres cas pour adresser ses réquisitions motivées au juge d'instruction.

Copie de ces réquisitions est adressée dans le même temps aux avocats des parties par lettre recommandée.

Les parties disposent de ce même délai d'un mois ou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envoi de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pour adresser des observations écrites au juge d'instruc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

Copie de ces observations est adressée en même temp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ce même délai d'un mois ou de trois mois, les parties peuvent formuler des demandes ou présenter des requêtes sur le fondement des articles 81, neuvième alinéa, 82-1, 156, premier alinéa, et 173, troisième alinéa. A l'expiration de ce délai, elles ne sont plus recevables à formuler ou présenter de telles demandes ou requêtes.

A l'issue du délai d'un mois ou de trois mo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s parties disposent d'un délai de dix jours si une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ou d'un mois dans les autres cas pour adresser au juge d'instruction des réquisitions ou des observations complémentaires au vu des observations ou des réquisitions qui leur ont été communiquées.

A l'issue du délai de dix jours ou d'un mois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rendre son ordonnance de règlement, y compris s'il n'a pas reçu de réquisitions ou d'observations dans le délai prescrit. Les premier, troisième et cinquième alinéas et, s'agissant des requêtes en nullité, le quatr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 témoin assisté.

Les parties peuvent déclarer renoncer, en présence de leur avocat ou celui-ci dûment convoqué, à bénéficier des délai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175-1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témoin assisté ou la partie civile peut, à l'expiration du délai qui lui a été indiqué en application du huitième alinéa de l'article 116 ou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89-1 à compter, respectivement, de la date de la mise en examen, de la première audition ou d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demander au juge d'instruc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dixième alinéa de l'article 81, de prononcer le renvoi ou la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de déclarer qu'il n'y a pas lieu à suivre, y compris en procédant, le cas échéant, à une disjonction.

Cette demande peut également être formée lorsque aucun acte d'instruction n'a été accompli pendant un délai de quatre mois.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cette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y fait droit ou déclare, par ordonnance motivée, qu'il y a lieu à poursuivre l'information.

Dans le premier cas, il procè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 présente section.

Dans le second cas, ou à défaut pour le juge d'avoir statué dans le délai d'un mois,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témoin assisté ou la partie civile peut saisi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207-1.

Cette saisine doit intervenir dans les cinq jours qui suiven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du juge ou l'expiration du délai d'un mois.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a déclaré qu'il poursuivait son instruction, une nouvelle demande peut être formée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près l'envoi de l'av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75.

Article 175-2

En toute matière, la durée de l'instruction ne peut excéder un délai raisonnable au regard de la gravité des faits reproché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la complexité des investigation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de l'exerc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Si, à l'issue d'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ouverture de l'information, celle-ci n'est pas terminée, le juge d'instruction rend une ordonnance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critères prévus à l'alinéa précédent, expliquant les raisons de la durée de la procédure, comportant les indications qui justifient la poursuite de l'information et précisant les perspectives de règlement.

Cette ordonnance est communiqué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peut, par requête, saisir cette juridic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221-1.

L'ordonnance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doit être renouvelée tous les six mois.

Article 176

Le juge d'instruction examine s'il existe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s charges constitutives d'infraction, dont il détermine la qualification juridique.

Article 177

Si le juge d'instruction estime que les faits ne constituent ni crime, ni délit, ni contravention, ou si l'auteur est resté inconnu, ou s'il n'existe pas de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il déclare, par une ordonnance, qu'il n'y a lieu à suivre.

Lorsque l'ordonnance de non-lieu est motivée par l'existence de l'une des causes d'irresponsabilité pénale prévue par les articles 122-2,122-3,122-4,122-5 et 122-7 du code pénal ou par le décè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lle précise s'il existe des charges suffisantes établissant que l'intéressé a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qui sont provisoirement détenues sont mises en liberté.

L'ordonnance met fin au contrôle judiciaire.

Le juge d'instruction statue par la même ordonnance sur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Il peut refuser la restitution lorsque celle-ci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La décision relative à la restitution peut être déferée, par tout personne qui y a intérê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99.

Article 177-1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sur la demande de la personne concernée ou, avec l'accord de cette personne, d'office ou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soit la publicat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sa décision de non-lieu, soit l'insertion d'un communiqué informant le public des motifs et du dispositif de celle-ci, dans un ou plusieurs journaux, écrits périodiques ou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qu'il désigne.

Il détermine, le cas échéant, les extraits de la décision qui doivent être publiés ou fixe les termes du communiqué à insérer.

Si le juge ne fait pas droit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concernée, il d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qui est susceptible d'appel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177-2

Lorsqu'il rend une ordonnance de non-lieu à l'issue d'une information ouverte sur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e juge d'instruction peu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par décision motivée, s'il considère qu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 été abusive ou dilatoire, prononcer contre la partie civile une amende civile dont le montant ne peut excéder 15,000 euros.

764 프랑스 형사소송법

Cette décision ne peut intervenir qu'à l'issue d'un délai de vingt jours à compter de la communication à la partie civile et à son avocat, par lettre recommandée ou par télécopie avec récépissé, d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fin de permettre à l'intéressé d'adresser des observations écrites au juge d'instruction.

Cette décision peut être frappée d'appel par la partie civile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l'ordonnance de non-lieu.

Si le juge d'instruction ne suit pas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 dernier peut interjeter appel dans les mêmes conditions.

Article 177-3

Lorsque la partie civile est une personne morale, l'amende civile prévue par l'article 177-2 peut être prononcée contre son représentant légal, si la mauvaise foi de ce dernier est établie.

Article 178

Si le juge estime que les faits constituent une contravention, il prononce, par ordonnance, le renvoi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orsqu'elle est devenue définitive, cette ordonnance couvre, s'il en existe, les vices de la procédure.

Article 179

Si le juge estime que les faits constituent un délit, il prononce, par ordonnance, le renvoi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Cette ordonnance précise, s'il y a lieu, que le prévenu bénéfici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L'ordonnance de règlement met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au contrôle judiciaire.

S'il a été décerné, le mandat d'arrêt conserve sa force exécutoire ; s'ils ont été décernés, les mandats d'amener ou de recherche cessent de pouvoir recevoir exécution, sans préjudice de la possibilité pour le juge d'instruction de délivrer un mandat d'arrêt contre le prévenu.

Toutefois, le juge d'instruction peut, par ordonnance distincte spécialement motivée, maintenir le prévenu en détention,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sous contrôle judiciair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L'ordonnance de maintien en détention provisoire est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2°, 4°, 5° et 6° de l'article 144.

Le prévenu en détention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si le tribunal correctionnel n'a pas commencé à examiner au fond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date de l'ordonnance de renvoi.

Toutefois, si l'audience sur le fond ne peut se tenir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le tribunal peut, à titre exceptionnel, par une décision mentionnant les raisons de fait ou de droit faisant obstacle au jugement de l'affaire, ordonner la prolongation de la détention pour une nouvelle durée de deux mois.

La comparution personnelle du prévenu est de droit si lui-même ou son avocat en font la demande.

Cette décision peut être renouvelée une fois dans les mêmes formes.

Si le prévenu n'a toujours pas été jugé à l'issue de cette nouvelle prolongation, il est remis immédiatement en liberté.

Lorsqu'elle est devenue définitive, l'ordonnanc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couvre, s'il en existe, les vices de la procédure.

Article 179-1

Toute ordonnance renvoyant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tribunal de police ou le tribunal correctionnel informe celle-ci qu'elle doit signaler auprè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jusqu'au jugement définitif de l'affaire,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lors de sa mise en examen,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donnance l'informe également que toute citation,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Article 180

Dans les cas de renvoi, soit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oit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soit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le juge d'instruction transmet le dossier avec son ordonnanc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lui-ci est tenu de l'envoyer sans retard au greffe du tribunal qui doit statuer.

Si la juridiction correctionnelle est saisi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t faire donner assignation au prévenu pour l'une des plus prochaines audiences, en observant les délais de citation prévus au présent code.

Article 181

Si le juge d'instruction estime que les faits retenus à la charge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constituent une infraction qualifiée crime par la loi, il ordonne leur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

Il peut également saisir cette juridiction des infractions connexes.

L'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l'exposé et la qualification légale des fait, objet de l'accusation, et précise l'identité de l'accusé.

Elle précise également, s'il y a lieu, que l'accusé bénéfici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Lorsqu'elle est devenue définitive, l'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couvre, s'il en existe, les vices de la procédure.

Le contrôle judiciaire ou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dont fait l'objet l'accusé continuent à produire leurs effets.

La détention provisoir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le contrôle judiciaire des personnes renvoyées pour délit connexe prend fin, sauf s'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79.

Le délai prévu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79 est alors porté à six mois.

Si l'accusé est placé en détention provisoire, le mandat de dépôt décerné contre lui conserve sa force exécutoire et l'intéressé reste détenu jusqu'à son jugement par la cour d'assise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deux alinéas suivants et de l'article 148-1.

S'il a été décerné, le mandat d'arrêt conserve sa force exécutoire ; s'ils ont été décernés, les mandats d'amener ou de recherche cessent de pouvoir recevoir exécution, sans préjudice de la

possibilité pour le juge d'instruction de délivrer mandat d'arrêt contre l'accusé.

L'accusé détenu en raison des faits pour lesquels il est renvoyé devant la cour d'assises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s'il n'a pas comparu devant celle-ci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à compter soit de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s'il était alors détenu, soit de la date à laquelle il a été ultérieurement placé en détention provisoire.

Toutefois, si l'audience sur le fond ne peut débiter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à titre exceptionnel, par une décision rendu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4 et mentionnant les raisons de fait ou de droit faisant obstacle au jugement de l'affaire, ordonner la prolongation de la détention provisoire pour une nouvelle durée de six mois.

La comparution de l'accusé est de droit si lui-même ou son avocat en font la demande.

Cette prolongation peut être renouvelée une fois dans les mêmes formes.

Si l'accusé n'a pas comparu devant la cour d'assises à l'issue de cette nouvelle prolongation, il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Le juge d'instruction transmet le dossier avec son ordonnanc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lui-ci est tenu de l'envoyer sans retard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Les pièces à conviction, dont il est dressé état, sont transmises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si celle-ci siège dans un autre tribunal que celui du juge d'instruction.

Article 182

Des ordonnances comportant non-lieu partiel peuvent intervenir en cours d'information.

Peuvent intervenir,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s ordonnances de renvoi partiel ou de transmission partielle des pièces lorsque, sur l'un ou plusieurs des faits dont le juge d'instruction est saisi, les charges recueillies apparaissent suffisantes.

Les personnes ayant fait l'objet d'une ordonnance de renvoi partiel ou de transmission partielle des pièces et qui ne demeurent pas mises en examen pour d'autres faits sont entendues comme témoin assisté.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disjonction d'une procédure d'instruction.

Article 183

Les ordonnances de règlement sont portées à la connaissanc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du témoin assisté et les ordonnances de renvoi ou de mise en accusation à la connaissance de la partie civile ; la notification est effectuée dans les délais les plus brefs soit verbalement, avec émargeme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oit par lettre recommandée.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137-3, deuxième alinéa, les décisions qui sont susceptibles de faire l'objet de voies de recours de la part d'une partie à la procédure ou d'un tiers conformément aux articles 99, 186 et 186-1 leur sont notifiées dans les délais les plus brefs soit verbalement, avec émargeme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soit par lettre recommandée.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détenue, elles peuvent, également être portées à sa connaissance par les soin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adresse, sans délai, au juge d'instruction l'original ou la copie du récépissé signé par la personne.

Dans tous les cas, une copie de l'acte est remise à l'intéressée.

Toute notification d'acte à une partie par lettre recommandée expédié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par l'intéressée est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Les ordonnances mentionnées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qui doivent être portées à la connaissance des parties sont simultanément, e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portées à la connaissance de leurs avocats.

Les avis destiné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ui sont adressés par tout moyen.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rend une décision ou ordonnance non conforme aux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vis en est donné à celui-ci par le greffier.

Dans tous les cas, mention est portée au dossier par le greffier de la nature et de la date de la diligence fait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insi que des formes utilisées.

Article 184

Les ordonnances rendues par le juge d'instruction en vertu de la présente section contiennent les nom, prénoms, date, lieu de naissance, domicile et profess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lles indiquent la qualification légale du fait imputé à celle-ci et, de façon précise, les motifs pour lesquels il existe ou non contre elle des charges suffisantes.

Cette motivation est prise au regard d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observations des parties qui ont été adressées au juge d'instruc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175, en précisant les éléments à charge et à décharge concernant chacune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Section 12 : De l'appel des ordonnances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rticle 185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le droit d'interjeter appel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tout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Cet appel formé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oit être interjeté dans les cinq jours qui suivent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En cas d'appel par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l'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prévue par l'article 18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ispose d'un délai d'appel incident de cinq jours supplémentaires à compter de l'appel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droit d'appel appartient également dans tous les cas au procureur général.

Il doit signifier son appel aux parties dans les dix jours qui suivent l'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rticle 186

Le droit d'appel appartient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contre les ordonnances et décis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80-1-1, 87, 139, 140, 137-3, 142-6, 142-7 145-1, 145-2, 148, 167, quatrième alinéa, 179, troisième alinéa, et 181.

La partie civile peut interjeter appel des ordonnances de non-informer, de non-lieu et des ordonnances faisant grief à ses intérêts civils.

Toutefois, son appel ne peut, en aucun cas, porter sur une ordonnance ou sur la disposition d'une ordonnance relative à la détention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au contrôle judiciaire.

Les parties peuvent aussi interjeter appel de l'ordonnance par laquelle le juge a, d'office ou sur déclinatoire, statué sur sa compétence.

L'appel des parties ainsi que la requête prévue par le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99 doivent être formés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502 et 503, dans les dix jours qui suivent la notification ou la signification de la décision.

Le dossier de l'information ou sa copie établie conformément à l'article 81 est transmis, avec l'avis motivé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rocureur général, qui procède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194 et suivants.

Si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il a été fait appel d'une ordonnance non visée aux alinéas 1 à 3 du présent article, il rend d'office une ordonnance de non-admission de l'appel qui n'est pas susceptible de voies de recours.

Il en est de même lorsque l'appel a été formé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prévu au quatrième alinéa ou lorsque l'appel est devenu sans obj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également compétent pour constater le désistement de l'appel formé par l'appelant.

Article 186-1

Les parties peuvent aussi interjeter appel des ordonnances prévues par le neuvième alinéa de l'article 81, par les articles 82-1 et 82-3, et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56.

Dans ce cas, le dossier de l'information, ou sa copie établie conformément à l'article 81, est transmis avec l'avis motivé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e ce dossier, le président décide, par une ordonnanc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voie de recours, s'il y a lieu ou non de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cet appel.

Dans l'affirmative, il transmet le dossier au procureur général qui procède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194 et suivants.

Dans la négative, il ordonne par décision motivée que le dossier de l'information soit renvoyé au juge d'instruction.

Article 186-2

En cas d'appel contre une ordonnance prévue par l'article 181,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quatre mois de l'ordonnance, faute de quoi, si la personne est détenue, ell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186-3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la partie civile peuvent interjeter appel des ordonnance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79 dans le cas où elles estiment que les faits renvoyé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constituent un crime qui aurait dû faire l'objet d'une ordonnance de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

Lorsque l'information a fait l'objet d'une cosaisine, elles peuvent également, en l'absence de cosignature par les juges d'instruction cosaisis conformément à l'article 83-2, interjeter appel de ces ordonnances.

Article 187

Lorsqu'il est interjeté appel d'une ordonnance autre qu'une ordonnance de règlement ou 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directement saisi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1, neuvième alinéa, 82-1, deuxième alinéa, 156, deuxième alinéa, ou 167, quatrième alinéa, le juge d'instruction poursuit son information, y compris, le cas échéant, jusqu'au règlement de celle-ci, sauf décision contrair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Il en est de même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saisie d'une requête en nullit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173.

Article 187-1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d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i l'appel est interjeté au plus tard le jour suivant la décision de placement en détention, demander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en cas d'empêchement, au magistrat qui le remplace, d'examiner immédiatement son appel

sans attendre l'audienc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tte demand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être formée en même temps que l'appel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personne mise en examen, son avocat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joindre toutes observations écrites à l'appui de la demande.

A sa demande, l'avoca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présente oralement des observations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lors d'une audience de cabinet dont est avisé le ministère public pour qu'il y prenne, le cas échéant, ses réquisitions, l'avocat ayant la parole en dernie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statue au plus tard le troisième jour ouvrable suivant la demande,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de la procédure, par une ordonnance non motivé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peut, s'il estime que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44 ne sont pas remplies, infirmer l'ordonnanc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ordonner la re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alors dessaisie.

Dans le cas contraire, il doit renvoyer l'examen de l'appel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l infirme l'ordonnanc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peut ordonner le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l'examen de l'appel est renvoyé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décision es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u procureur général.

Elle est notifiée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par le greffe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peut, le cas échéant, recevoir le désistement d'appel de cette dernière.

La déclaration d'appel et la demande prévue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peuvent être constatées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à l'issue d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45.

Pour l'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a transmission du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être effectuée par télécopie.

Article 187-2

La personne qui forme le recours prévu par l'article 187-1 peut demander à ce qu'il soit directement examiné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Il est alors statué au plus tard,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le cinquième jour ouvrable suivant la demande.

Article 187-3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8-1-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interjette appel d'une 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contraire à ses réquisitions dans un délai de quatre heures à compter de sa notification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saisir dans le même temps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en cas d'empêchement,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d'un référé-détention afin de déclarer cet appel suspensif.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joint à sa demande les observations écrites justifiant le maintien en détention de la personn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son avocat peuvent également présenter les observations écrites qu'ils jugent utiles.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statue au plus tard le deuxième jour ouvrable suivant la demande.

Pendant cette durée, les effets de l'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sont suspendus et la personne reste détenue.

A défaut pou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de statuer dans ce délai, la personne est remise en liberté, sauf si elle est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statue, au vu des éléments du dossier de la procédure, par une ordonnance motivé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 sa demande, l'avoca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peut présenter des observations orales devant ce magistrat, lors d'une audience de cabinet dont le ministère public est avisé pour qu'il y prenne, le cas échéant, ses réquisitions.

Si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estime que le maintien en détention de la personne est manifestement nécessaire au vu d'au moins deux des critère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4 jusqu'à ce que la chambre d'instruction statue sur l'appel du ministère public, il ordonne la suspension des effets de l'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jusqu'à cette date.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peut alors être mise en liberté jusqu'à l'audienc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vant laquelle sa comparution personnelle est de droit ;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se prononcer dans les plus bref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de l'appel, faute de quoi la personn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Dans le cas contraire,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magistrat qui le remplace ordonne que la personne soit mise en liberté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A peine de nullité, le magistrat ayant statué sur la demande de référé-détention ne peut faire partie de la composit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ra sur l'appel du ministère public. La transmission du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au magistrat qui le remplace peut être effectuée par télécopie.

Section 13 : De la reprise de l'information sur charges nouvelles

Article 188

La personne mise en examen à l'égard de laquelle le juge d'instruction a dit n'y avoir lieu à suivre ne peut plus être recherchée à l'occasion du même fait, à moins qu'il ne survienne de nouvelles charges.

Article 189

Sont considérées comme charges nouvelles les déclarations des témoins, pièces et procès-verbaux qui, n'ayant pu être soumis à l'examen du juge d'instruction, sont cependant de nature soit à fortifier les charges qui auraient été trouvées trop faibles, soit à donner aux faits de nouveaux développements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rticle 190

Il appartient au ministère public seul de décider s'il y a lieu de requérir la réouverture de l'information sur charges nouvelles.

Chapitre II :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second degré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191

Chaque cour d'appel comprend au moins une chambre de l'instruction.

Cette juridiction est composée d'un président de chambre, exclusivement attaché à ce service, et de deux conseillers qui peuvent, en cas de besoin, assurer le service des autres chambres de la cou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désigné par décret, après avis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n cas d'absence ou d'empêchement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emier président désigne pour le remplacer à titre temporaire un autre président de chambre ou un conseiller. Les conseillers compos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sont désignés chaque année, pour la durée de l'année judiciaire suivant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 la cour.

Un décret pourra prévoir qu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une cour d'appel comptant moins de trois chambres assurera à titre exceptionnel le service d'une autre chambre de la même cour.

Article 192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auprè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ou par ses substituts ; celles du greffe par un greffier de la cour d'appel.

Article 193

La chambre de l'instruction se réunit au moins une fois par semaine et, sur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général, toutes les fois qu'il est nécessaire.

Article 194

Le procureur général met l'affaire en état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de la réception des pièce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et dans les dix jours en toute autre matière ; il la soumet, avec son réquisitoir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173 et 186-1, ou lorsqu'elle est directement saisi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1, neuvième alinéa, 82-1, deuxième alinéa, 156, deuxième alinéa, ou 167, quatrième alinéa,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statuer dans les deux mois à compter de la transmission du dossier au procureur général pa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se prononcer dans les plus bref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de l'appel lorsqu'il s'agit d'une ordonnance de placement en détention et dans les quinze jours dans les autres cas, faute de quoi la personne concerné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sauf si des vérifications concernant sa demande ont été ordonnées ou si des circonstances imprévisibles et insurmontables mettent obstacle au jugement de l'affaire dans le délai prévu au présent article.

Article 195

Dans les causes dont sont saisies les juridictions correctionnelles ou de police et jusqu'à l'ouverture des débats, le procureur général, s'il estime que les faits sont susceptibles d'une qualification plus grave que celle dont ils ont été l'objet, ordonne l'apport des pièces, met l'affaire en état et la soumet avec son réquisitoir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196

Le procureur général agit de même lorsqu'il reçoit, postérieurement à un arrêt de non-lieu prononcé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s pièces lui paraissant contenir des charges nouvelles dans les termes de l'article 189.

Dans ce cas et en attendant la réun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de cette juridiction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décerner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Article 197

Le procureur général notifie par lettre recommandée à chacune des parties et à son avocat la date à laquelle l'affaire sera appelée à l'audience.

La notification est faite à la personne détenue par les soin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adresse, sans délai, au procureur général l'original ou la copie du récépissé signé par la personne.

La notification à toute personne non détenue, à la partie civile ou au requérant mentionné a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99 est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tant 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clôturé son information.

Un délai minimum de quarante-huit heure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et de cinq jours en toute autre matière, doit être observé entre la date d'envoi de la lettre recommandée et celle de l'audience. Pendant ce délai, le dossier est déposé au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tenu à la disposition des avocats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et des parties civiles dont la constitution n'a pas été contestée ou, en cas de contestation, lorsque celle-ci n'a pas été retenue.

Copie leur en est délivrée sans délai, à leurs frais, sur simple requête écrite.

Ces copies ne peuvent être rendues publiques.

Article 197-1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de non-lieu, le témoin assisté peut, par l'intermédiaire de son avocat, faire valoir ses observation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date de l'audience est notifiée à l'intéressé et à son avoca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97.

Article 198

Les parties et leurs avocats sont admis jusqu'au jour de l'audience à produire des mémoires qu'ils communiquent au ministère public et aux autres parties.

Ces mémoires sont déposés au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visés par le greffier avec l'indication du jour et de l'heure du dépôt.

Lorsqu'un avocat n'exerce pas dans la ville où siège la chambre de l'instruction, il peut adresser

son mémoire au greffier, au ministère public et aux autres parties par télécopie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qui doit parvenir à leurs destinataires avant le jour de l'audience.

Article 199

Les débats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Toutefois, si la personne majeure mise en examen ou son avocat le demande dès l'ouverture des débats, ceux-ci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séance publique, sauf si la publicité est de nature à entraver les investigations spécifiques nécessitées par l'instruction ou à nu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aux intérêts d'un tiers.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sur cette demand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procureur général et, le cas échéant, des avocats des autres parties,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e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portant sur la demande principale.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et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ajeure, les débats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audience publique.

Toutefois, le ministère public,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la partie civile ou leurs avocats peuvent, avant l'ouverture des débats, s'opposer à cette publicité si celle-ci est de nature à entraver les investigations spécifiques nécessitées par l'instruction, à porter atteinte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 ou à la sérénité des débats ou à nu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aux intérêts d'un tiers, ou si l'enquête porte sur des faits visés à l'article 706-73.

La chambre statue sur cette opposition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e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portant sur la demande principale.

Si la chambre fait droit à cette opposition ou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ineure, les débats ont lieu et l'arrêt es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Il en est de même si la partie civile s'oppose à la publicité, dans les seuls cas où celle-ci est en droit de demander le huis-clos lors de l'audience de jugement.

Après le rapport du conseiller, le procureur général et les avocats des parties sont entendus.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ordonner la comparution personnelle des parties ainsi que l'apport des pièces à conviction.

Il est donné lecture de l'arrêt par le président ou par l'un des conseillers ; cette lecture peut être faite même en l'absence des autres conseiller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la comparution personnelle de la personne concernée est de droit si celle-ci ou son avocat en fait la demande ; cette requêt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être présentée en même temps que la déclaration d'appel ou que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adressé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la personne a déjà comparu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moins de quatre mois auparavant, le président de cette juridiction peut,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rejetant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refuser la comparution personnelle de l'intéressé par une décision motivée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En cas de comparution personnelle de la personne concernée, le délai maximum prévu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94 est prolongé de cinq jours.

Article 200

Lorsque les débats sont terminés, la chambre de l'instruction délibère sans qu'en aucun cas le procureur général, les parties, leurs avocats et le greffier puissent être présents.

Article 201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dans tous les cas, à la demande du procureur général, d'une des parties ou même d'office, ordonner tout acte d'information complémentaire qu'elle juge utile. Elle peut également, dans tous les cas,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prononcer d'offic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lle peut ordonner l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ou sous contrôle judicia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n cas d'urgenc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conseiller désigné par lui peut décerner mandat d'amener, d'arrêt ou de recherche.

Il peut également ordonner l'incarcéra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pendant une durée déterminée qui ne peut en aucun cas excéder quatre jours ouvrables jusqu'à la réun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202

Elle peut, d'office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ordonner qu'il soit informé à l'égard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ou prévenus renvoyés devant elle sur tous les chefs de crimes, de délits, de contraventions, principaux ou connexes, résultant du dossier de la procédure, qui n'auraient pas été visés par l'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ou qui auraient été distraits par une ordonnance comportant non-lieu partiel, disjonction ou renvoi devant la juridiction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Elle peut statuer sans ordonner une nouvelle information si les chefs de poursuite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ont été compris dans les faits pour lesquels la personne a été mise en examen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203

Les infractions sont connexes soit lorsqu'elles ont été commises en même temps par plusieurs personnes réunies, soit lorsqu'elles ont été commises par différentes personnes, même en différents temps et en divers lieux, mais par suite d'un concert formé à l'avance entre elles, soit lorsque les coupables ont commis les unes pour se procurer les moyens de commettre les autres, pour en faciliter, pour en consommer l'exécution ou pour en assurer l'impunité, soit lorsque des choses enlevées, détournées ou obtenues à l'aide d'un crime ou d'un délit ont été, en tout ou partie, recelées.

Article 204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quant aux infractions résultant du dossier de la procédure, ordonner que soient mises en exame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05, des personnes qui n'ont pas été renvoyées devant elle, à moins qu'elles n'aient fait l'objet d'une ordonnance de non-lieu devenue définitive.

Cette décision ne pourra pas faire l'objet d'un pourvoi en cassation.

Article 205

Il est procédé aux suppléments d'informa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relatives à l'instruction préalable soit par un des membre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oit par un juge d'instruction qu'elle délègue à cette fi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à tout moment requérir la communication de la procédure, à charge de rendre les pièces dans les vingt-quatre heures.

Article 206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73-1, 174 et 175, la chambre de l'instruction examine la régularité des procédures qui lui sont soumises.

Si elle découvre une cause de nullité, elle prononce la nullité de l'acte qui en est entaché et, s'il y échet, celle de tout ou partie de la procédure ultérieure.

Après annulation, elle peut soit é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201, 202 et 204, soit renvoyer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même juge d'instruction ou à tel autre,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Article 207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 statué sur l'appel relevé contre une ordonnance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ou à la suite d'une saisin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qu'elle ait confirmé cette décision, soit que, l'infirmant, elle ait ordonné une mise en liberté ou maintenu en détention ou décerné u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le procureur général fait sans délai retour du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après avoir assuré l'exécution de l'arrêt.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écerne mandat de dépôt ou qu'elle infirme une ordonnance de mise en liberté ou de refus de prolongation de détention provisoire, les décision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continuent de relever de la compétence du juge d'instruction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uf mention expresse de la par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isant qu'elle est seule compétente pour statuer sur l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et prolonger le cas échéant la détention provisoire.

Il en est de même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ou modifie un contrôle judiciaire ou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orsque, en toute autre matiè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infirme un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ou est saisi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1, dernier alinéa, 82, dernier alinéa, 82-1, deuxième alinéa, 156, deuxième alinéa, ou 167, quatrième alinéa, elle peut, soit é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201, 202, 204 et 205, soit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ou à tel autre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Elle peut également procéder à une évocation partielle du dossier en ne procédant qu'à certains actes avant de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L'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ou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frappée d'appel sort son plein et entier effet si elle est confirmé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cas d'appel formé contre une ordonnance de refus de mise en libert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lors de l'audience et avant la clôture des débats, se saisir immédiatement de tout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sur laquelle le juge d'instruction o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n'a pas encore statué ; dans ce cas, elle se prononce à la fois sur l'appel et sur cette demande.

Article 207-1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75-1, décide, dans les huit jours de la transmission du dossier, par une ordonnanc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s'il y a lieu ou non de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affirmative, il transmet le dossier au procureur général qui procède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194 et suivants.

Après qu'elle a été saisi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oit prononcer le renvoi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la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 soit déclarer qu'il n'y a pas lieu à suivre, soit é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201, 202 et 204, soit renvoyer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même juge d'instruction ou à tel autre,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Dans la négative, il ordonne, par décision motivée, que le dossier de l'information soit renvoyé au juge d'instruction.

Article 208

Lorsqu'elle a prescrit une information complémentaire et que celle-ci est termin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le dépôt au greffe du dossier de la procédure.

Le procureur général avise immédiatement de ce dépôt chacune des parties et son avocat par lettre recommandée.

Article 209

Le dossier de la procédure reste déposé au greffe pendant quarante-huit heures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pendant cinq jours en toute autre matière.

Il est alors procédé conformément aux articles 197, 198 et 199.

Article 210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un seul et même arrêt sur tous les faits entre lesquels il existe un lien de connexité.

Article 211

Elle examine s'il existe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s charges suffisantes.

Article 212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ime que les faits ne constituent ni crime, ni délit, ni contravention ou si l'auteur est resté inconnu ou s'il n'existe pas de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lle déclare qu'il n'y a lieu à suivre.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qui sont provisoirement détenues sont remises en liberté.

L'arrêt met fin au contrôle judiciaire ou à une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le même arrêt sur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Elle peut refuser la restitution lorsque celle-ci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Article 212-1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ordonner, sur la demande de la personne concernée, ou, avec l'accord de cette personne, d'office ou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soit la publication intégrale ou partielle de l'arrêt de non-lieu, soit l'insertion d'un communiqué informant le public des motifs et du dispositif de celui-ci, dans un ou plusieurs journaux, écrits périodiques ou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par voie électronique désignés par cette chambre.

Elle détermine, le cas échéant, les extraits de l'arrêt qui doivent être publiés ou fixe les termes du communiqué à insérer.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ne fait pas droit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concernée, elle doit rendre une décision motivée.

Article 212-2

Lorsqu'elle déclare qu'il n'y a lieu à suivre à l'issue d'une information ouverte sur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et par décision motivée, si elle considère qu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 été abusive ou dilatoire, prononcer contre la partie civile une amende civile dont le montant ne peut excéder 15,000 euros. Cette décision ne peut intervenir qu'à l'issue d'un délai de vingt jours à compter de la communication à la partie civile et à son avocat, par lettre recommandée ou par télécopie avec récépissé, d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afin de permettre à l'intéressé d'adresser des observations écrites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Lorsque la partie civile est une personne morale, l'amende civile peut être prononcée contre son représentant légal, si la mauvaise foi de ce dernier est établie.

Article 213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ime que les faits constituent un délit ou une contravention, elle prononce le renvoi de l'affaire, dans le premier ca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le second cas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évenu détenu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et le contrôle judiciaire prend fin.

Toutefois,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faire application, par un arrêt spécialement motivé, des dispositions prévues aux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179.

En cas de renvoi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évenu détenu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 le contrôle judiciaire prend fin.

Article 214

Si les faits retenus à la charge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constituent une infraction qualifiée crime par la loi, la chambre de l'instruction prononce la mise en accusation devant la cour d'assises.

Elle peut saisir également cette juridiction des infractions connexes.

Article 215

L'arrêt de mise en accusation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l'exposé et la qualification légale des faits, objet de l'accusation, et précise l'identité de l'accusé.

Il précise également, s'il y a lieu, que l'accusé bénéfici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L'arrêt de mise en accusation est notifié à l'accu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83.

Article 215

L'arrêt de mise en accusation contient, à peine de nullité, l'exposé et la qualification légale des faits, objet de l'accusation, et précise l'identité de l'accusé.

Il précise également, s'il y a lieu, que l'accusé bénéfici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81 sont applicables.

L'arrêt de mise en accusation est notifié à l'accu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83.

Article 216

Les arrêt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ont signés par le président et par le greffier.

Il y est fait mention du nom des juges, du dépôt des pièces et des mémoires, de la lecture du rapport, d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s'il y a lieu, de l'audition des parties ou de leurs avocats.

La chambre condamne l'auteur de l'infraction à payer à la partie civile la somme qu'elle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non payés par l'Etat et exposés par celle-ci.

Elle tient compte de l'équité o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a partie condamnée.

Elle peut, même d'office, pour des raisons tirées des mêmes considérations, dire qu'il n'y a pas lieu à cette condamnation.

Article 217

Hors le cas prévu à l'article 196, les arrêts sont, dans les trois jours, par lettre recommandée, portés à la connaissance des avocats des parties.

Dans les mêmes formes et délais, les arrêts de non-lieu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es personnes mise en examen, les arrêts de renvoi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es parties.

Les arrêts contre lesquels les parties peuvent former un pourvoi en cassation, à l'exception des arrêts de mise en accusation, leur sont signifiés à la requête du procureur général dans les trois jours.

Toutefois, ces arrêts sont notifiés par lettre recommandée aux parties ou au requérant mentionné a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99 tant 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clôturé son information ; les arrêts de mise en accusation sont également notifiés aux parties par lettre recommandée. Ils peuvent être notifiés à la personne détenue par les soin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qui adresse, sans délai, au procureur général l'original ou la copie du récépissé signé par elle.

Toute notification d'ac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par une partie est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Article 218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71, 172 e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74 sont applicables au présent chapitre.

La régularité des arrêts des chambres de l'instruction et celle de la procédure antérieure, lorsque cette chambre a statué sur le règlement d'une procédure, relève du seul contrôle de la Cour de cassation, que le pourvoi soit immédiatement recevable ou qu'il ne puisse être examiné qu'avec l'arrêt sur le fond.

Section 2 : Pouvoirs propres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219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dans les cours où il existe plusieurs chambres de l'instruction l'un des présidents spécialement désigné par l'assemblée générale, exerce les pouvoirs propres définis aux articles suivants.

En cas d'empêchement de ce président, ses pouvoirs propres sont attribués, par 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de la cour d'appel, à un magistrat du siège appartenant à ladite cour.

Le président peut déléguer tout ou partie de ses pouvoirs à un magistrat du sièg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dans les cours où il existe plusieurs chambres de l'instruction, à un magistrat du siège d'une autre chambre de l'instruction après accord du président de cette chambre.

Article 220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ssure du bon fonctionnement des cabinets d'instruction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Il vérifie notamment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s alinéas 4 et 5 de l'article 81 et de l'article 144 et s'emploie à ce que les procédures ne subissent aucun retard injustifié.

Chaque fois qu'il le juge nécessaire et au moins une fois par an, il transmet ses observations écrites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dite cour ainsi qu'a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oncerné e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dit tribunal.

Article 221

A cette fin, il est établi, chaque semestre, dans chaque cabinet d'instruction, un état de toutes les affaires en cours portant mention, pour chacune des affaires, de la date du dernier acte d'information exécuté.

Les affaires dans lesquelles sont impliquées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détenues provisoirement figurent sur un état spécial.

Les état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adressés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au procureur général dans les trois premiers jours du semestre.

Article 221-1

Lorsqu'un délai de quatre mois s'est écoulé depuis la date du dernier acte d'instruction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ar requête, saisir cette juridic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soit é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01, 202, 204 et 205, soit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ou à tel autre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Article 221-2

Lorsqu'un délai de quatre mois s'est écoulé depuis la date du dernier acte d'instruction, les parties peuvent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73.

Ce délai est ramené à deux mois au profi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orsque celle-ci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u dossier par le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peut, par ordonnance motivée non susceptible de recours, décider qu'il n'y a pas lieu de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lorsqu'elle est saisie, peut, soit é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01, 202, 204 et 205, soit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ou à tel autre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Si, dans les deux mois suivant le renvoi du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initialement saisi, aucun acte d'instruction n'a été accompli,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être à nouveau saisie selon la procédure prévue aux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Ce délai est ramené à un mois au profi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orsque celle-ci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alors, soit évoquer comme il est dit au trois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soit renvoyer le dossier à un autre juge d'instruction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Article 221-3

I. - Lorsqu'un délai de trois mois s'est écoulé depuis l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que cette détention est toujours en cours et que l'avis de fin d'information prévu par l'article 175 n'a pas été délivré,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d'office ou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écider de saisir cette juridiction afin que celle-ci examine l'ensemble de la procédure. En cas de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partie, il statue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e cette demande.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après une audience à laquelle les avocats de l'ensemble des parties et des témoins assistés sont convoqués.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son président peut ordonner la comparution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et des témoins assistés, d'office ou à la demande des parties. Si un mis en examen placé en détention provisoire demande à comparaître, le président ne peut refuser sa comparution que par une décision motivée. La comparution peut être réalis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6-71.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ajeure, les débats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audience publique. Toutefois, le ministère public,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la partie civile ou leurs avocats peuvent, avant l'ouverture des débats, s'opposer à cette publicité si celle-ci est de nature à entraver les investigations spécifiques nécessitées par l'instruction, à porter atteinte à la présomption d'innocence ou à la sérénité des débats ou à nu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aux intérêts d'un tiers, ou si l'enquête

porte sur des faits visés à l'article 706-73. La chambre statue sur cette opposition,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un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portant sur la demande principale. Si la chambre fait droit à cette opposition ou s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ineure, les débats ont lieu et l'arrêt es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Il en est de même si la partie civile s'oppose à la publicité, dans les seuls cas où celle-ci est en droit de demander le huis-clos lors de l'audience de jugeme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ordonner d'offic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que les débats se déroulent en chambre du conseil si la publicité est de nature à entraver les investigations spécifiques nécessitées par l'instruction ou à nuire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aux intérêts d'un tiers.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une ordonnance rendue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e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rendu à l'issue des débats. Deux jours ouvrables au moins avant la date prévue pour l'audience, les parties peuvent déposer des mémoires consistant soit en d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soit en des demandes d'actes, y compris s'il s'agit d'une demande ayant été précédemment rejet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86-1, soit en des requêtes en annulation, sous réserve des articles 173-1 et 174, soit en des demandes tendant à constater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 II. - La chambre de l'instruction, après avoir le cas échéant statué sur ces demandes, peut :
- 1° Ordonner la mise en liberté, assortie ou non du contrôle judiciaire, d'une ou plusieurs des personnes mises en examen, même en l'absence de demande en ce sens ;
 - 2° Prononcer la nullité d'un ou plusieurs act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206 ;
 - 3° Evoquer et procéd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01, 202, 204 et 205 ;
 - 4° Procéder à une évocation partielle du dossier en ne procédant qu'à certains actes avant de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
 - 5° Renvoyer le dossier au juge d'instruction afin de poursuivre l'information, en lui prescrivant le cas échéant de procéder à un ou plusieurs actes autres que ceux relatifs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dans un délai qu'elle détermine ;

- 6° Désigner un ou plusieurs autres juges d'instruction pour suivre la procédure avec le juge ou les juges d'instruction déjà saisis, conformément à l'article 83-1 ;
- 7° Lorsque cette décision est indispensabl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à la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et qu'il n'est pas possible de procéder aux désignations prévues au 6°, procéder au dessaisissement du juge d'instruction et à la désignation, aux fins de poursuite de la procédure, d'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de la juridiction d'origine ou d'une autre juridiction du ressort ;
- 8° Ordonner le règlement, y compris partiel, de la procédure, notamment en prononçant un ou plusieurs non-lieux à l'égard d'une ou plusieurs personnes.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être rendu au plus tard trois mois après la saisine par le président, à défaut de quoi les personnes placées en détention sont remises en liberté. Six mois après que l'arrêt est devenu définitif, si une détention provisoire est toujours en cours, et sauf si l'avis de fin d'information prévu par l'article 175 a été délivré,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à nouveau saisir cette juridi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223

Il peut saisir la chambre de l'instruction, afin qu'il soit par elle statué sur le maintien en détention d'une personne mise en examen en état de détention provisoire.

Section 3 : Du contrôle de l'activité d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224

La chambre de l'instruction exerce un contrôle sur l'activité des fonctionnaires civils et des militair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ris en cette qualité.

Article 225

Elle est saisie soit par le procureur général, soit par son président.

Elle peut se saisir d'office à l'occasion de l'examen de la procédure qui lui est soumise.

Article 226

La chambre de l'instruction, une fois saisie, fait procéder à une enquête ; elle entend le procureur général et l'officier ou agent de police judiciaire en cause.

Ce dernier doit avoir été préalablement mis à même de prendre connaissance de son dossier de police judiciaire tenu au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appel.

Il peut se faire assister par un avocat.

Article 227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ans préjudice des sanctions disciplinaires qui pourraient être infligées à l'officier ou agent de police judiciaire par ses supérieurs hiérarchiques, lui adresser des observations ou décider qu'il ne pourra, temporairement ou définitivement, exercer, soit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soit sur tout l'ensemble du territoire, ses fonctions d'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t de délégué du juge d'instruction ou ses fonctions d'agent de police judiciaire. Cette décision prend effet immédiatement.

Article 228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ime que l'officier ou agent de police judiciaire a commis une infraction à la loi pénale, elle ordonne en outre la transmission du dossier au procureur général à toutes fins qu'il appartiendra.

Article 229

Les décisions prise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tre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sont notifiées, à la diligence du procureur général, aux autorités dont ils dépendent.

Article 230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sont applicables aux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ainsi qu'aux fonctionnaires et agents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Titre IV : Dispositions communes

Chapitre unique : De la mise au clair des données chiffrée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Article 230-1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0, 77-1 et 156, lorsqu'il apparaît que des données saisies ou obtenues au cour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ont fait l'objet d'opérations de transformation empêchant d'accéder aux informations en clair qu'elles contiennent ou de les comprend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 l'affaire peut désigner toute personne physique ou morale qualifiée, en vue d'effectuer les opérations techniques permettant d'obtenir la version en clair de ces informations ainsi que, dans le cas où un moyen de cryptologie a été utilisé, la convention secrète de déchiffrement, si cela apparaît nécessaire.

Si la personne ainsi désignée est une personne morale, son représentant légal soumet à l'agrémen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e la juridiction saisie de l'affaire le nom de la ou des personnes physiques qui, au sein de celle-ci et en son nom, effectueront les opérations techniqu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Sauf si elles sont inscrites sur une liste prévue à l'article 157, les personnes ainsi désignées prêtent, par écrit, le serment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60.

Si la peine encourue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et que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l'exig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 l'affaire peut prescrire le recours aux moyens de l'Etat soumis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selon les forme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Article 230-2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 l'affaire décident d'avoir recours, pour les opér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230-1, aux moyens de l'Etat couverts par le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a réquisition écrite doit

être adressée au service national de police judiciaire chargé de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lié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avec le support physique contenant les données à mettre au clair ou une copie de celui-ci.

Cette réquisition fixe le délai dans lequel les opérations de mise au clair doivent être réalisées. Le délai peut être prorogé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A tout moment, l'autorité judiciaire requérante peut ordonner l'interruption des opérations prescrites.

Le service de police judiciaire auquel la réquisition a été adressée transmet sans délai cette dernière ainsi que, le cas échéant, les ordres d'interruption, à un organisme technique soumis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t désigné par décret.

Les données protégées au titr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ne peuvent être communiquées q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n° 98-567 du 8 juillet 1998 instituant une Commission consultative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Article 230-3

Dès l'achèvement des opérations ou dès qu'il apparaît que ces opérations sont techniquement impossibles ou à l'expiration du délai prescrit ou à la réception de l'ordre d'interruption émanant de l'autorité judiciaire, les résultats obtenus et les pièces reçues sont retournés par le responsable de l'organisme technique au service de police judiciaire qui lui a transmis la réquisition.

Sous réserve des obligations découlant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résultats sont accompagnés des indications techniques utiles à la compréhension et à leur exploitation ainsi que d'une attestation visée par le responsable de l'organisme technique certifiant la sincérité des résultats transmis.

Ces pièces sont immédiatement remises à l'autorité judiciaire par le service national de police judiciaire chargé de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lié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Les éléments ainsi obtenus font l'objet d'un procès-verbal de réception et sont versé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Article 230-4

Les décisions judiciaires pris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n'ont pas de caractère juridictionnel et ne sont susceptibles d'aucun recours.

Article 230-5

Sans préjudice des obligations découlant d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es agents requ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sont tenus d'apporter leur concours à la justice.

Livre II : Des juridictions de jugement

Titre Ier : De la cour d'assises

Chapitre Ier : De la compétence de la cour d'assises

Article 231

La cour d'assises a plénitude de juridiction pour juger, en premier ressort ou en appel, les personnes renvoyées devant elle par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Elle ne peut connaître d'aucune autre accusation.

Chapitre II : De la tenue des assises

Article 232

Il est tenu des assises à Paris et dans chaque département.

Article 233

La cour d'appel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ordonner qu'il soit formé autant de sections d'assises que les besoins du service l'exigent.

Article 234

Dans les départements où siège une cour d'appel les assises se tiennent ordinairement au chef-lieu de cette cour.

Dans les autres départements, les assises se tiennent ordinairement au chef-lieu de ces circonscriptions.

Exceptionnellemen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eut fixer le siège de la cour d'assises dans une autre ville du département où existe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rticle 235

La cour d'appel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ordonner par arrêt motivé que

les assises se tiendront au siège d'un tribunal autre que celui auquel elles se tiennent habituellement.

L'arrêt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es tribunaux intéressés par les soins du procureur général.

Article 236

La tenue des assises a lieu tous les trois mois.

Cepend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peut, sur proposition du procureur général, ordonner qu'il soit tenu, au cours d'un même trimestre, une ou plusieurs sessions supplémentaires.

Article 237

La date de l'ouverture de chaque session d'assises ordinaire ou supplémentaire est fixée, sur proposition du procureur général, par ordonnance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235, par l'arrêt de la cour d'appel.

Cette ordonnance ou cet arrêt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tribunal, siège de la cour d'assises, par les soins du procureur général,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ouverture de la session.

Article 238

Sur pro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le rôle de chaque session est arrêté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général,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Article 239

Le ministère public avise l'accusé de la date à laquelle celui-ci doit comparaître. Chapitre III : De la composition de la cour d'assises

Article 240

La cour d'assises comprend : la cour proprement dite et le jury.

Article 241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y sont exercées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aux articles 34 et 39.

798 프랑스 형사소송법

Toutefois, le procureur général peut déléguer tout magistrat du ministère public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auprès d'une cour d'assises instituée dans ce ressort.

Article 242

La cour d'assises est, à l'audience, assistée d'un greffier.

A Paris et dans les départements où siège une cour d'appel, les fonctions du greffe sont exercées par le greffier en chef ou un greffier de la cour d'appel.

Dans les autres départements, elles le sont par le greffier en chef ou un greffier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ection 1 : De la cour

Article 243

La cour proprement dite comprend : le président et les assesseurs.

Paragraphe 1er : Du président

Article 244

La cour d'assises est présidée par un président de chambre ou par un conseiller de la cour d'appel.

Article 245

Pour la durée de chaque trimestre et pour chaque cour d'assises, le président est désigné par l'ordonnance du premier président qui fixe la date d'ouverture des sessions.

Article 246

En cas d'empêchement survenu avant l'ouverture de la session, le président des assises est remplacé par ordonnance du premier président.

Si l'empêchement survient au cours de la session, le président des assises est remplacé par l'assesseur du rang le plus élevé.

Article 247

Le premier président peut présider la cour d'assises chaque fois qu'il le juge convenable.

Paragraphe 2 : Des assesseurs

Article 248

Les assesseurs sont au nombre de deux.

Toutefois, il peut leur être adjoint un ou plusieurs assesseurs supplémentaires, si la durée ou l'importance de la session rendent cette mesure nécessaire.

Les assesseurs supplémentaires siègent aux audiences.

Ils ne prennent part aux délibérations qu'en cas d'empêchement d'un assesseur titulaire, constaté par ordonnance motivée du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Article 249

Les assesseurs sont choisis soit parmi les conseillers de la cour d'appel, soit parmi les présidents, vice-présidents, ou juges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u lieu de la tenue des assises.

Article 250

Les assesseurs sont désignés par le premier président pour la durée d'un trimestre et pour chaque cour d'assises, dans les mêmes formes que le président.

Article 251

En cas d'empêchement survenu avant l'ouverture de la session, les assesseurs sont remplacés par ordonnance du premier président.

Si l'empêchement survient au cours de la session, les assesseurs sont remplacés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et choisis parmi les magistrats du siège de la cour d'appel ou du tribunal, siège de la cour d'assises.

Article 252

Lorsque la session est ouverte,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peut, s'il y a lieu, désigner

800 프랑스 형사소송법

un ou plusieurs assesseurs supplémentaires.

Article 253

Ne peuvent faire partie de la cour en qualité de président ou d'assesseur les magistrats qui, dans l'affaire soumise à la cour d'assises, ont, soit fait un acte de poursuite ou d'instruction, soit participé à l'arrêt de mise en accusation ou à une décision sur le fond relative à la culpabilité de l'accusé.

Section 2 : Du jury

Article 254

Le jury est composé de citoyens désign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suivants.

Paragraphe 1er : Des conditions d'aptitude aux fonctions de juré

Article 255

Peuvent seuls remplir les fonctions de juré, les citoyens de l'un ou de l'autre sexe, âgés de plus de vingt-trois ans, sachant lire et écrire en français, jouissant des droits politiques, civils et de famille, et ne se trouvant dans aucun cas d'incapacité ou d'incompatibilité énumérés par les deux articles suivants.

Article 256

Sont incapables d'être jurés :

- 1° Les personnes dont le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mentionne une condamnation pour crime ou une condamnation pour délit à une peine égale ou supérieure à six mois d'emprisonnement ;
- 2° (Abrogé)
- 3° Ceux qui sont en état d'accusation ou de contumace et ceux qui sont sous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
- 4°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de l'Etat, des départements et des communes, révoqués de

leurs fonctions ;

- 5° Les officiers ministériels destitués et les membres des ordres professionnels, frappés d'une interdiction définitive d'exercer par une décision juridictionnelle ;
- 6° Les personnes qui ont été déclarées en état de faillite et n'ont pas été réhabilitées ;
- 7° Les personnes qui ont fait l'objet d'une condamnation en vertu de l'article 288 du présent code ou celles auxquelles les fonctions de juré sont interdites en vertu de l'article 131-26 du code pénal ;
- 8° Les majeurs sous sauvegarde de justice, les majeurs en tutelle, les majeurs en curatelle et ceux qui sont placés dans un établissement d'aliénés en vertu des articles L. 326-1 à L. 35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257

Les fonctions de juré sont incompatibles avec celles qui sont énumérées ci-après :

- 1° Membre du Gouvernement, du Parlem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et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
- 2° Membre du Conseil d'Etat ou de la Cour des comptes, magistrat de l'ordre judiciaire, membre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magistrat des tribunaux de commerce, assesseur des tribunaux paritaires de baux ruraux et conseiller prud'homme ;
- 3° Secrétaire général du Gouvernement ou d'un ministère, directeur de ministère, membre du corps préfectoral ;
- 4° Fonctionnaire des services de police ou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et militaire de la gendarmerie, en activité de service.

Article 258

Sont dispensées des fonctions de juré les personnes âgées de plus de soixante-dix ans ou n'ayant pas leur résidence principale dans le département siège de la cour d'assises lorsqu'elles en font la demande à la commission prévue par l'article 262.

Peuvent, en outre, être dispensées de ces fonctions les personnes qui invoquent un motif grave reconnu valable par la commission.

Article 258-1

Sont exclus ou rayés de la liste annuelle des jurés et de la liste spéciale des jurés suppléants ceux qui ont rempli les fonctions de juré dans le département depuis moins de cinq ans.

Une objection morale d'ordre laïque ou religieux ne constitue pas un motif grave susceptible de justifier l'exclusion de la liste des jurés.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262 peut également exclure les personnes qui, pour un motif grave, ne paraissent pas en mesure d'exercer les fonctions de juré.

L'inobserv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et de l'article précédent n'entache d'aucune nullité la formation du jury.

Paragraphe 2 : De la formation du jury

Article 259

Il est établi, annuellement, dans le ressort de chaque cour d'assises une liste du jury criminel.

Article 260

Cette liste comprend, pour la cour d'assises de Paris, mille huit cents jurés et, pour les autres ressorts de cour d'assises, un juré pour mille trois cents habitants, sans toutefois que le nombre des jurés puisse être inférieur à deux cents.

Un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peut, pour la liste annuelle de chaque cour d'assises, fixer un nombre de jurés plus élevé que celui résultant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i le nombre de sessions tenues chaque année par la cour d'assises le justifie.

Le nombre des jurés pour la liste annuelle est réparti proportionnellement au tableau officiel de la population.

Cette répartition est faite par commune ou communes regroupées, par arrêté du préfet au mois d'avril de chaque année.

A Paris, elle est faite par arrêté du préfet au mois de juin entre les arrondissements.

Article 261

Dans chaque commune, le maire, en vue de dresser la liste préparatoire de la liste annuelle,

tire au sort publiquement à partir de la liste électorale un nombre de noms triple de celui fixé par l'arrêté préfectoral pour la circonscription.

Pour la constitution de cette liste préparatoire, ne sont pas retenues les personnes qui n'auront pas atteint, l'âge de vingt-trois ans au cours de l'année civile qui suit.

Lorsque l'arrêté préfectoral de répartition a prévu un regroupement de communes, le tirage au sort est effectué par le maire de la commune désignée dans l'arrêté du préfet.

Il porte sur l'ensemble des listes électorales des communes concernées.

A Paris, le tirage au sort est effectué, dans chaque arrondissement, par l'officier d'état civil désigné par le maire.

Article 261-1

La liste préparatoire doit être dressée en deux originaux dont l'un est déposé à la mairie, et pour Paris à la mairie annexe, et l'autre transmis avant le 15 juillet au secrétariat-greffe de juridiction siège de la cour d'assises.

Le maire doit avertir les personnes qui ont été tirées au sort.

Il leur demande de lui préciser leur profession.

Il les informe qu'elles ont la possibilité de demander par lettre simple avant le 1er septembre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262 le bénéf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58.

Le maire est tenu d'informer le greffier en chef de la cour d'appel ou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des inaptitudes légales résultant des articles 255, 256 et 257, qui, à sa connaissance, frapperaient les personnes portées sur la liste préparatoire.

Il peut, en outre, présenter des observations sur le cas des personnes qui, pour des motifs graves, ne paraissent pas en mesure d'exercer les fonctions de juré.

Article 262

La liste annuelle est dressée au siège de chaque cour d'assises par une commission présidée, au siège de la cour d'appel, par le premier président ou son délégué et, dans l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sièges de la cour d'assis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son délégué.

Cette commission comprend, outre son président :

804 프랑스 형사소송법

Trois magistrats du siège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 la juridiction siège de la cour d'assises ;

Selon le cas, soit le procureur général ou son délégué, soi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on délégué ;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de la juridiction, siège de la cour d'assises ou son représentant ;

Cinq conseillers généraux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le conseil général et, à Paris, cinq conseillers désignés par le Conseil de Paris.

Article 263

La commission se réunit sur la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au siège de la cour d'assises, dans le courant du mois de septembre.

Son secrétariat est assuré par le greffier en chef de la juridiction siège de la cour d'assises. Elle exclut les personnes qui ne remplissent pas les conditions d'aptitude légale résultant des articles 255, 256 et 257.

Elle statue sur les requêtes présent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258.

Sont également exclues les personnes visées par l'article 258-1 (alinéa 1er), ainsi que, le cas échéant, celles visées par l'article 258-1 (alinéa 2).

Les décisions de la commission sont prises à la majorité ; en cas de partage, la voix du président est prépondérante.

La liste annuelle des jurés est établie par tirage au sort parmi les noms qui n'ont pas été exclus.

La liste est définitivement arrêtée dans l'ordre du tirage au sort, signée séance tenante et déposée au secrétariat-greffe de la juridiction siège de la cour d'assises.

Article 264

Une liste spéciale de jurés suppléants est également dressée chaque année par la commiss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63, en dehors de la liste annuelle des jurés.

Les jurés suppléants doivent résider dans la ville siège de la cour d'assises.

Le nombre des jurés figurant sur cette liste,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cinquante ni supérieur

à sept cents, est fixé, pour chaque cour d'assises,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Article 265

La liste annuelle et la liste spéciale sont transmises par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au maire de chaque commune.

Le maire est tenu d'informer, dès qu'il en a connaissance,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des décès, des incapacités ou des incompatibilités légales qui frapperaient les personnes dont les noms sont portés sur ces listes.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ou leur délégué est habilité à retirer les noms de ces personnes de la liste annuelle et de la liste spéciale.

Article 266

Trente jours au moins avant l'ouverture des assises,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son délégué, ou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ou son délégué, tire au sort, en audience publique, sur la liste annuelle, les noms de quarante jurés qui forment la liste de session.

Il tire, en outre, les noms de douze jurés suppléants sur la liste spéciale.

Si, parmi les noms tirés au sort, figurent ceux d'une ou de plusieurs personnes décédées ou qui se révéleraient ne pas remplir les conditions d'aptitude légale résultant des articles 255, 256 et 257 ou avoir exercé les fonctions de juré dans le département depuis moins de cinq ans, ces noms sont immédiatement remplacés sur la liste de session et la liste des jurés suppléants par les noms d'un ou de plusieurs autres jurés désignés par le sort ; ils sont retirés de la liste annuelle ou de la liste spécial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ou leur délégué.

Sont également remplacés sur la liste de session et sur la liste des jurés suppléants, dans le cas où ils sont tirés au sort, les noms des personnes qui, dans l'année, ont satisfait aux réquisitions prescrites par l'article 267.

Article 267

Quinze jours au moins avant l'ouverture de la session, le greffier de la cour d'assises convoque, par courrier, chacun des jurés titulaires et suppléants.

Cette convocation précise la date et l'heure d'ouverture de la session, sa durée prévisible et le lieu où elle se tiendra.

Elle rappelle l'obligation, pour tout citoyen requis, de répondre à cette convocation sous peine d'être condamné à l'amende prévue par l'article 288.

Elle invite le juré convoqué à renvoyer, par retour du courrier,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le récépissé joint à la convocation, après l'avoir dûment signé.

Si nécessaire, le greffier peut requérir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aux fins de rechercher les jurés qui n'auraient pas répondu à la convocation et de leur remettre celle-ci.

Chapitre IV : De la procédure préparatoire aux sessions d'assises

Section 1 : Des actes obligatoires

Article 269

Dès que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ou, en cas d'appel, dès que l'arrêt de désignation de la cour d'assises d'appel a été signifié, l'accusé, s'il est détenu, est transféré dans la maison d'arrêt du lieu où se tiennent les assises.

Article 270

Si l'accusé est en fuite ou ne se présente pas, il peut être jugé par défau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hapitre VIII du présent titre.

Lorsque l'accusé est en fuite, la date de l'audience au cours de laquelle il doit être jugé par défaut doit toutefois lui être signifiée à son dernier domicile connu ou à étude d'huissier de justice ou, à défaut, au parqu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ù siège la cour d'assises, au moins dix jours avant le début de l'audience.

Article 271

Si l'affaire ne doit pas être jugée au siège de la cour d'appel, le dossier de la procédure est renvoyé par le procureur général au 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ù se tiennent les assises. Les pièces à conviction sont également transportées au greffe de ce tribunal.

Article 272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interroge l'accusé dans le plus bref délai, après l'arrivée de ce dernier à la maison d'arrêt et la remise des pièces au greffe.

Si l'accusé est en liberté, il est procédé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272-1.

Le président peut déléguer un de ses assesseurs afin de procéder à cet interrogatoire.

Il doit être fait appel à un interprète si l'accusé ne parle ou ne comprend pas la langue française.

Article 272-1

Si l'accusé, après avoir été convoqué par la voie administrative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ne se présente pas, sans motif légitime d'excuse, au jour fixé pour être interrogé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ce dernier peut, par décision motivée, décerner mandat d'arrêt.

Pendant le déroulement de l'audience de la cour d'assises, la cour peut égalemen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décerner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si l'accusé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s'il apparaît que la détention est l'unique moyen d'assurer sa présence lors des débats ou d'empêcher des pressions sur les victimes ou les témoins.

Dès le début de l'audience, la cour peut aussi, su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ordonner le placement de l'accusé sous contrôle judiciaire afin d'assurer sa présence au cours des débats ou empêcher des pressions sur les victimes ou les témoin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ersonnes renvoyées pour délits connexes.

A tout moment, la personne peut demander sa mise en liberté devant la cour.

Article 273

Le président interroge l'accusé sur son identité et s'assure que celui-ci a reçu notification de

808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ou, en cas d'appel, de l'arrêt de désignation de la cour d'assises d'appel.

Article 274

L'accusé est ensuite invité à choisir un avocat pour l'assister dans sa défense.

Si l'accusé ne choisit pas son avocat, le président ou son délégué lui en désigne un d'office.

Cette désignation est non avenue si, par la suite, l'accusé choisit un avocat.

Article 275

A titre exceptionnel, le président peut autoriser l'accusé à prendre pour conseil un de ses parents ou amis.

Article 276

L'accomplissement des formalités prescrites par les articles 272 à 275 est constaté par un procès-verbal que signent le président ou son délégué, le greffier, l'accusé et, s'il y a lieu, l'interprète. Si l'accusé ne sait ou ne veut signer, le procès-verbal en fait mention.

Article 277

Les débats ne peuvent s'ouvrir moins de cinq jours après l'interrogatoire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L'accusé et son avocat peuvent renoncer à ce délai.

Article 278

L'accusé ne cesse pas de pouvoir communiquer librement avec son avocat.

L'avocat peut prendre sur place communication de toutes les pièces du dossier sans que cette communication puisse provoquer un retard dans la marche de la procédure.

Article 279

Il est délivré gratuitement à chacun des accusés et parties civiles copie des procès-verbaux constatant l'infraction, des déclarations écrites des témoins et des rapports d'expertise.

Article 280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ou leurs avocats, peuvent prendre ou faire prendre copie, à leurs frais, de toutes pièces de la procédure.

Article 281

Le ministère public et la partie civile signifient à l'accusé, l'accusé signifie au ministère public et, s'il y a lieu, à la partie civile, dès que possible et vingt-quatre heures au moins avant l'ouverture des débats, la liste des personnes qu'ils désirent faire entendre en qualité de témoins. Les noms des experts appelés à rendre compte des travaux dont ils ont été chargés au cours de l'information doivent être signifi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xploit de signification doit mentionner les nom, prénoms, professions et résidence de ces témoins ou experts.

Les citations faites à la requête des parties sont à leurs frais, ainsi que les indemnités des témoins cités, s'ils en requièrent.

Toutefois, le ministère public est tenu de citer à sa requête les témoins, dont la liste lui a été communiquée par les parties, cinq jours au moins avant l'ouverture des débats ; cette liste ne peut comporter plus de cinq noms.

Article 282

La liste des jurés de session telle qu'elle a été arrêtée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266 est signifiée à chaque accusé au plus tard l'avant-veille de l'ouverture des débats.

Cette liste doit contenir des indications suffisantes pour permettre l'identification des jurés, à l'exception de celles concernant leur domicile ou résidence.

Section 2 : Des actes facultatifs ou exceptionnels

Article 283

Le président, si l'instruction lui semble incomplète ou si des éléments nouveaux ont été révélés depuis sa clôture, peut ordonner tous actes d'information qu'il estime utiles.

810 프랑스 형사소송법

Il y est procédé soit par le président, soit par un de ses assesseurs ou un juge d'instruction qu'il délègue à cette fin.

Dans ce cas, les prescriptions du chapitre Ier du titre III du livre Ier doivent être observées, à l'exception de celles de l'article 167.

Article 284

Les procès-verbaux et autres pièces ou documents réunis au cours du supplément d'information sont déposés au greffe et joint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Ils sont mis à la dis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qui sont avisés de leur dépôt par les soins du greffier.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à tout moment, requérir communication de la procédure à charge de rendre les pièces dans les vingt-quatre heures.

Article 285

Lorsqu'à raison d'un même crime plusieurs arrêts de renvoi ont été rendus contre différents accusés, le président peut, soit d'office, soi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rdonner la jonction des procédures.

Cette jonction peut également être ordonnée quand plusieurs arrêts de renvoi ont été rendus contre un même accusé pour des infractions différentes.

Article 286

Quand l'arrêt de renvoi vise plusieurs infractions non connexes, le président peut, soit d'office, soi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rdonner que les accusés ne soient immédiatement poursuivis que sur l'une ou quelques-unes de ces infractions.

Article 287

Le président peut, soit d'office, soi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rdonner le renvoi à une session ultérieure des affaires qui ne lui paraissent pas en état d'être jugées au cours de la session au rôle de laquelle elles sont inscrites.

Chapitre V : De l'ouverture des sessions

Section 1 : De la révision de la liste du jury

Article 288

Aux lieu, jour et heure fixés pour l'ouverture de la session, la cour prend séance.

Le greffier procède à l'appel des jurés inscrits sur la liste établie conformément à l'article 266.

La cour statue sur le cas des jurés absents.

Tout juré qui, sans motif légitime, n'a pas déféré à la convocation qu'il a reçue peut être condamné

par la cour à une amende de 3 750 euros.

Le juré peut, dans les dix jours de la signification de cette condamnation faite à sa personne ou à son domicile, former opposition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du siège de la cour d'assises.

Les peines portées a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tout juré qui, même ayant déféré à la convocation, se retire avant l'expiration de ses fonctions, sans une excuse jugée valable par la cour.

Article 289

Si parmi les jurés présents, il en est qui ne remplissent pas les conditions d'aptitude légales exigées par les articles 255, 256 et 257, la cour ordonne que leurs noms soient rayés de la liste et adressés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a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 cour d'assises, aux fins de radiation de la liste annuelle.

Il en est de même en ce qui concerne les noms des jurés décédés.

Sont également rayés de la liste de session, les noms des jurés qui se révéleraient être conjoints, parents ou alliés jusqu'au degré d'oncle ou de neveu inclusivement d'un membre de la cour ou de l'un des jurés présents inscrits avant lui sur ladite liste.

Article 289-1

Si, en raison des absences ou à la suite des radiations par la cour, il reste, sur la liste de session, moins de vingt-trois jurés ou, lorsqu'au cours de la session la cour d'assises doit statuer en appel, moins de vingt-six jurés, ce nombre est complété par les jurés suppléants, suivant l'ordre de

812 프랑스 형사소송법

leur inscription ; en cas d'insuffisance, par des jurés tirés au sort, en audience publique, parmi les jurés inscrits sur la liste spéciale, subsidiairement parmi les jurés de la ville inscrits sur la liste annuelle.

Dans le cas où les assises se tiennent dans un autre lieu que celui où elles doivent se tenir habituellement, le nombre des jurés titulaires est complété par un tirage au sort fait, en audience publique, parmi les jurés de la ville inscrits sur la liste annuelle.

Les noms des jurés suppléants, de ceux qui sont inscrits sur la liste spéciale ainsi que les noms des jurés de la ville où se tiennent les assises, qui sont inscrits sur la liste annuelle, sont rayés des list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précédent.

Article 290

L'ensemble des décisions de la cour fait l'objet d'un arrêt motivé,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Cet arrêt ne peut être attaqué par la voie du recours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sur le fond.

Article 291

Avant le jugement de chaque affaire, la cour procède, s'il y a lieu, aux opér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88, 289 et 289-1.

La cour ordonne, en outre, que soient provisoirement retirés de la liste, éventuellement modifiée, les noms des conjoints, parents et alliés jusqu'au degré d'oncle ou de neveu inclusivement de l'accusé ou de son avocat, ainsi que les noms de ceux qui, dans l'affaire, sont témoins, interprètes, dénonciateurs, experts, plaignants ou parties civiles ou ont accompli un acte de police judiciaire ou d'instruction.

Article 292

Tout arrêt modifiant la composition de la liste de session établie conformément à l'article 266 est porté, par les soins du greffier, sans formalité, à la connaissance de l'accusé.

Celui-ci ou son avocat peut demander qu'un délai, qui ne pourra excéder une heure, soit observé avant l'ouverture des débats.

Section 2 : De la formation du jury de jugement

Article 293

Au jour indiqué pour chaque affaire, la cour prend séance et fait introduire l'accusé.

Le jury de jugement est formé en audience publique.

La présence de l'avocat de l'accusé n'est pas prescrite à peine de nullité.

Article 294

Le président demande à l'accusé s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profession et résidence.

Article 295

Le greffier fait l'appel des jurés non excusés.

Une carte portant leur nom est déposée dans une urne.

Article 296

Le jury de jugement est composé de neuf jurés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premier ressort et de douze jurés lorsqu'elle statue en appel.

La cour doit, par arrêt, ordonner, avant le tirage de la liste des jurés, qu'indépendamment des jurés de jugement, il soit tiré au sort un ou plusieurs jurés supplémentaires qui assistent aux débats.

Dans le cas où l'un ou plusieurs des jurés de jugement seraient empêchés de suivre les débats jusqu'au prononcé de l'arrêt de la cour d'assises, ils sont remplacés par les jurés supplémentaires.

Le remplacement se fait suivant l'ordre dans lequel les jurés supplémentaires ont été appelés par le sort.

Article 297

L'accusé ou son avocat d'abord, le ministère public ensuite, récusent tels jurés qu'ils jugent à propos, à mesure que leurs noms sortent de l'urne, sauf la limitation exprimée à l'article 298.

L'accusé, son avocat, ni le ministère public ne peuvent exposer leur motifs de récusation.

814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jury de jugement est formé à l'instant où sont sortis de l'urne les noms de neuf ou douze jurés non récusés,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96, et les noms des jurés supplémentaires prévus par l'article 296.

Article 298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premier ressort, l'accusé ne peut récuser plus de cinq jurés et le ministère public plus de quatre.

Lorsqu'elle statue en appel, l'accusé ne peut récuser plus de six jurés, le ministère public plus de cinq.

Article 299

S'il y a plusieurs accusés, ils peuvent se concerter pour exercer leurs récusations ; ils peuvent les exercer séparément.

Dans l'un et l'autre cas, ils ne peuvent excéder le nombre de récusations déterminé pour un seul accusé.

Article 300

Si les accusés ne se concertent pas pour récuser, le sort règle entre eux le rang dans lequel ils font les récusations.

Dans ce cas, les jurés récusés par un seul, et dans cet ordre, le sont pour tous jusqu'à ce que le nombre des récusations soit épuisé.

Article 301

Les accusés peuvent se concerter pour exercer une partie des récusations, sauf à exercer le surplus suivant le rang fixé par le sort.

Article 302

Le greffier dresse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de formation du jury de jugement.

Article 303

Les jurés se placent dans l'ordre désigné par le sort, aux côtés de la cour, si la disposition des lieux le permet, et sinon sur des sièges séparés du public, des parties et des témoins, en face de celui qui est destiné à l'accusé.

Article 304

Le président adresse aux jurés, debout et découverts, le discours suivant : "Vous jurez et promettez d'examiner avec l'attention la plus scrupuleuse les charges qui seront portées contre X..., de ne trahir ni les intérêts de l'accusé, ni ceux de la société qui l'accuse, ni ceux de la victime ; de ne communiquer avec personne jusqu'après votre déclaration ; de n'écouter ni la haine ou la méchanceté, ni la crainte ou l'affection ; de vous rappeler que l'accusé est présumé innocent et que le doute doit lui profiter ; de vous décider d'après les charges et les moyens de défense, suivant votre conscience et votre intime conviction, avec l'impartialité et la fermeté qui conviennent à un homme probe et libre, et de conserver le secret des délibérations, même après la cessation de vos fonctions".

Chacun des jurés, appelé individuellement par le président, répond en levant la main : "Je le jure".

Article 305

Le président déclare le jury définitivement constitué.

Article 305-1

L'exception tirée d'une nullité autre que celles purgées par l'arrêt de renvoi devenu définitif et entachant la procédure qui précède l'ouverture des débats doit, à peine de forclusion, être soulevée dès que le jury de jugement est définitivement constitué.

Cet incident contentieux est régl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316.

Chapitre VI : Des débats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306

Les débats sont publics, à moins que la publicité ne soit dangereuse pour l'ordre ou les mœurs. Dans ce cas, la cour le déclare par un arrêt rendu en audience publique. Toutefois, le président peut interdire l'accès de la salle d'audience aux mineurs ou à certains d'entre eux.

Lorsque les poursuites sont exercées du chef de viol ou de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accompagnés d'agressions sexuelles, le huis clos est de droit si la victime partie civile ou l'une des victimes parties civiles le demande ; dans les autres cas, le huis clos ne peut être ordonné que si la victime partie civile ou l'une des victimes parties civiles ne s'y oppose pas.

Lorsque le huis clos a été ordonné, celui-ci s'applique au prononcé des arrêts qui peuvent intervenir sur les incidents contentieux visés à l'article 316.

L'arrêt sur le fond doit toujours être prononcé en audience publiqu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cour d'assises des mineurs si la personne poursuivie, mineure au moment des faits, est devenue majeure au jour de l'ouverture des débats et qu'elle en fait la demande, sauf s'il existe un autre accusé qui est toujours mineur ou qui, mineur au moment des faits et devenu majeur au jour de l'ouverture des débats, s'oppose à cette demande.

Article 307

Les débats ne peuvent être interrompus et doivent continuer jusqu'à ce que la cause soit terminée par l'arrêt de la cour d'assises. Ils peuvent être suspendus pendant le temps nécessaire au repos des juges, de la partie civile et de l'accusé.

Article 308

Dès l'ouverture de l'audience, l'emploi de tout appareil d'enregistrement ou de diffusion sonore, de caméra de télévision ou de cinéma, d'appareils photographiques est interdit sous peine de

18,000 euros d'amende, qui peut être prononc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itre VIII du livre IV. Toutefois,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peut ordonner que les débats feront l'objet en tout ou partie, sous son contrôle, d'un enregistrement sonore.

Il peut également, à la demande de la victime ou de la partie civile, ordonner que l'audition ou la déposition de ces dernières feront l'objet, dans les mêmes conditions,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Les supports de cet enregistrement sont placés sous scellés et déposés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L'enregistrement sonore audiovisuel peut être utilisé devant la cour d'assises, jusqu'au prononcé de l'arrêt ; s'il l'est au cours de la délibération, les formalité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47 sont applicables. L'enregistrement sonore ou audiovisuel peut également être utilisé devant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devant la commission de révision de la Cour de cassation, devant la Cour de cassation saisie d'une demande en révision, ou, après cassation ou annulation sur demande en révision, devant la juridiction de renvoi.

Les scellés sont ouverts par le premier président ou par un magistrat délégué par lui, en présence du condamné assisté de son avocat, ou eux dûment appelés, ou en présence de l'une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623 (3°), ou elles dûment appelées.

Après présentation des scellés, le premier président fait procéder par un expert à une transcription de l'enregistrement qui est joint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es dispositions ci-dessus ne sont pas prescrites à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Article 309

Le président a la police de l'audience et la direction des débats.

Il rejette tout ce qui tendrait à compromettre leur dignité ou à les prolonger sans donner lieu d'espérer plus de certitude dans les résultats.

Article 310

Le président est investi d'un pouvoir discrétionnaire en vertu duquel il peut,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prendre toutes mesures qu'il croit utiles pour découvrir la vérité.

818 프랑스 형사소송법

Il peut, s'il l'estime opportun, saisir la cour qui stat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16. Il peut au cours des débats appeler, au besoin par mandat d'amener, et entendre toutes personnes ou se faire apporter toutes nouvelles pièces qui lui paraissent, d'après les développements donnés à l'audience,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es témoins ainsi appelés ne prêtent pas serment et leurs déclarations ne sont considérées que comme renseignements.

Article 311

Les assesseurs et les jurés peuvent poser des questions aux accusés et aux témoins en demandant la parole au président.

Ils ont le devoir de ne pas manifester leur opinion.

Article 312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09, le ministère public et les avocats des parties peuvent poser directement des questions à l'accusé, à la partie civile, aux témoins et à toutes les personnes appelées à la barre, en demandant la parole au président.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peuvent également poser des questions par l'intermédiaire du président.

Article 313

Le ministère public prend, au nom de la loi, toutes les réquisitions qu'il juge utiles : la cour est tenue de lui en donner acte et d'en délibére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prises dans le cours des débats sont mentionnées par le greffier sur son procès-verbal.

Toutes les décisions auxquelles elles ont donné lieu sont signées par le président et par le greffier.

Article 314

Lorsque la cour ne fait pas droit aux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l'instruction ni le jugement ne sont arrêtés, ni suspendus.

Article 315

L'accusé, la partie civile et leurs avocats peuvent déposer des conclusions sur lesquelles la cour est tenue de statuer.

Article 316

Tous incidents contentieux sont réglés par la cour, le ministère public, les parties ou leurs avocats entendus.

Ces arrêts ne peuvent préjuger du fond.

Lorsque la cour d'assises examine l'affaire en appel, ces arrêts ne peuvent être attaqués que par la voie du recours en cassation, en même temps que l'arrêt sur le fond.

Lorsque la cour d'assises examine l'affaire en premier ressort, ces arrêts ne peuvent faire l'objet d'un recours, mais, en cas d'appel de l'arrêt sur le fond et de réexamen de l'affaire devant une autre cour d'assises, ils n'ont pas autorité de la chose jugée devant cette cour.

Section 2 : De la comparution de l'accusé

Article 317

A l'audience, la présence d'un défenseur auprès de l'accusé est obligatoire.

Si le défenseur choisi ou désigné conformément à l'article 274 ne se présente pas, le président en commet un d'office.

Article 318

L'accusé comparaît libre et seulement accompagné de gardes pour l'empêcher de s'évader.

Article 319

Si un accusé refuse de comparaître, sommation lui est faite au nom de la loi, par un huissier commis à cet effet par le président, et assisté de la force publique.

L'huissier dresse procès-verbal de la sommation et de la réponse de l'accusé.

Article 320

Si l'accusé n'obtempère pas à la sommation, le président peut ordonner qu'il soit amené par la force devant la cour ; il peut également, après lecture faite à l'audience du procès-verbal constatant sa résistance, ordonner que, nonobstant son absence, il soit passé outre aux débats. Après chaque audience, il est, par le greffier de la cour d'assises, donné lecture à l'accusé qui n'a pas comparu du procès-verbal des débats, et il lui est signifié copie d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e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qui sont tous réputés contradictoires.

Article 320-1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72-1 et de celle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79-2, le président peut ordonner que l'accusé qui n'est pas placé en détention provisoire et qui ne comparaît pas à l'audience soit amené devant la cour d'assises par la force publique.

Article 321

Lorsque à l'audience l'un des assistants trouble l'ordr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le président ordonne son expulsion de la salle d'audience.

Si, au cours de l'exécution de cette mesure, il résiste à cet ordre ou cause du tumulte, il est, sur-le-champ, placé sous mandat de dépôt, jugé e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sans préjudice des peines portées au Code pénal contre les auteurs d'outrages et de violences envers les magistrats.

Sur l'ordre du président, il est alors contraint par la force publique de quitter l'audience.

Article 322

Si l'ordre est troublé par l'accusé lui-même, il lui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21. L'accusé, lorsqu'il est expulsé de la salle d'audience, est gardé par la force publique, jusqu'à la fin des débats à la disposition de la cour ; il est, après chaque audience, procédé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320, alinéa 2.

Section 3 : De la production et de la discussion des preuves

Article 323

Lorsque l'avocat de l'accusé n'est pas inscrit à un barreau, le président l'informe qu'il ne peut rien dire contre sa conscience ou le respect dû aux lois et qu'il doit s'exprimer avec décence et modération.

Article 324

Le président ordonne à l'huissier de faire l'appel des témoins cités par le ministère public, par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dont les noms ont été signifiés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281.

Article 325

Le président ordonne aux témoins de se retirer dans la chambre qui leur est destinée.

Ils n'en sortent que pour déposer.

Le président prend, s'il en est besoin, toutes mesures utiles pour empêcher les témoins de conférer entre eux avant leur déposition.

Article 326

Lorsqu'un témoin cité ne comparaît pas, la cour peut,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ou même d'office, ordonner que ce témoin soit immédiatement amené par la force publique devant la cour pour y être entendu, ou renvoyer l'affaire à la prochaine session.

Dans tous les cas, le témoin qui ne comparaît pas ou qui refuse soit de prêter serment, soit de faire sa déposition peut,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être condamné par la cour à une amende de 3 750 euros.

L'obligation de déposer s'appliqu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226-13 et 226-14 du code pénal et de la faculté, pour tout journaliste entendu comme témoin sur des informations recueillies dans l'exercice de son activité, de ne pas en révéler l'origine.

La voie de l'opposition est ouverte au condamné qui n'a pas comparu.

L'opposition s'exerce dans les cinq jours de la signification de l'arrêt faite à sa personne ou

822 프랑스 형사소송법

à son domicile.

La cour statue sur cette opposition soit pendant la session en cours, soit au cours d'une session ultérieure.

Article 327

Le président invite l'accusé et les jurés à écouter avec attention la lecture de la décision de renvoi, ainsi que,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appel, des questions posées à la cour d'assises ayant statué en premier ressort, des réponses faites aux questions, de la décision et de la condamnation prononcée.

Il invite le greffier à procéder à cette lecture.

Article 328

Le président interroge l'accusé et reçoit ses déclarations.

Il a le devoir de ne pas manifester son opinion sur la culpabilité.

Article 329

Les témoins appelés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es parties sont entendus dans le débat, même s'ils n'ont pas déposé à l'instruction, ou s'ils n'ont pas été assignés, à condition que leurs noms aient été signifiés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281.

Article 330

Le ministère public et les parties peuvent s'opposer à l'audition d'un témoin dont le nom ne leur aurait pas été signifié ou qui leur aurait été irrégulièrement signifié.

La cour statue sur cette opposition.

Si elle est reconnue fondée, ces témoins peuvent être entendus, à titre de renseignements, en vertu du pouvoir discrétionnaire du président.

Article 331

Les témoins déposent séparément l'un de l'autre, dans l'ordre établi par le président.

Les témoins doivent, sur la demande du président, faire connaître leurs nom, prénoms, âge, profession, leur domicile ou résidence, s'ils connaissent l'accusé avant le fait mentionné dans l'arrêt de renvoi, s'ils sont parents ou alliés, soit de l'accusé, soit de la partie civile, et à quel degré.

Le président leur demande encore s'ils ne sont pas attachés au service de l'un ou de l'autre. Avant de commencer leur déposition, les témoins prêtent le serment "de parler sans haine et sans crainte, de dire tout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Cela fait, les témoins déposent oralement.

Le président peut autoriser les témoins à s'aider de documents au cours de leur auditio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09, les témoins ne sont pas interrompus dans leur déposition.

Les témoins déposent uniquement, soit sur les faits reprochés à l'accusé, soit sur sa personnalité et sur sa moralité.

Article 332

Après chaque déposition, le président peut poser des questions aux témoins.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les conseils de l'accusé et de la partie civile,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ont la même faculté,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à l'article 312.

Article 333

Le président fait dresser d'office ou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par le greffier, un procès-verbal des additions, changements ou variations qui peuvent exister entre la déposition d'un témoin et ses précédentes déclarations.

Ce procès-verbal est joint au procès-verbal des débats.

Article 334

Chaque témoin après sa déposition, demeure dans la salle d'audience, si le président n'en ordonne autrement, jusqu'à la clôture des débats.

82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335

Ne peuvent être reçues sous la foi du serment les dépositions :

- 1° Du père, de la mère ou de tout autre ascendant de l'accusé, ou de l'un des accusés présents et soumis au même débat ;
- 2° Du fils, de la fille, ou de tout autre descendant ;
- 3° Des frères et soeurs ;
- 4° Des alliés aux mêmes degrés ;
- 5° Du mari ou de la femme ; cette prohibition subsiste même après le divorce ;
- 6° De la partie civile ;
- 7° Des enfants au-dessous de l'âge de seize ans.

Article 336

Néanmoins, l'audition sous serment des personnes désignées par l'article précédent n'entraîne pas nullité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ni aucune des parties ne s'est opposé à la prestation de serment. En cas d'op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ou plusieurs des parties, le témoin peut être entendu à titre de renseignements, en vertu du pouvoir discrétionnaire du président.

Article 337

La personne qui, agissant en vertu d'une obligation légale ou de sa propre initiative, a porté les faits poursuivis à la connaissance de la justice, est reçue en témoignage, mais le président en avertit la cour d'assises.

Celui dont la dénonciation est récompensée pécuniairement par la loi peut être entendu en témoignage, à moins qu'il n'y ait opposition d'une des parties ou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338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la partie civile et l'accusé, peuvent demander, et le président peut toujours ordonner, qu'un témoin se retire momentanément de la salle d'audience, après sa déposition, pour y être introduit et entendu s'il y a lieu après d'autres dépositions, avec ou sans confrontation.

Article 339

Le président peut, avant, pendant ou après l'audition d'un témoin ou l'interrogatoire d'un accusé, faire retirer un ou plusieurs accusés et les examiner séparément sur quelques circonstances du procès ; mais il a soin de ne reprendre la suite des débats qu'après avoir instruit chaque accusé de ce qui s'est fait en son absence et ce qui en est résulté.

Article 340

Pendant l'examen, les magistrats et les jurés peuvent prendre note de ce qui leur paraît important, soit dans les dépositions des témoins, soit dans la défense de l'accusé, pourvu que les débats ne soient pas interrompus.

Article 341

Dans le cours ou à la suite des dépositions, le président fait, s'il est nécessaire, présenter à l'accusé ou aux témoins les pièces à conviction et reçoit leurs observations.

Le président les fait aussi présenter, s'il y a lieu, aux assesseurs et aux jurés.

Article 342

Si, d'après les débats, la déposition d'un témoin paraît fausse, le président, soit d'office, soit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une des parties peut ordonner spécialement à ce témoin d'être présent aux débats jusqu'à leur clôture et en outre de demeurer dans la salle d'audience jusqu'au prononcé de l'arrêt de la cour d'assises.

En cas d'infraction à cet ordre, le président fait mettre le témoin en état d'arrestation provisoire.

Après lecture de l'arrêt de la cour d'assises, ou, dans le cas de renvoi à une autre session, le président ordonne que le témoin soit, par la force publique, conduit sans délai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ui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Le greffier transmet à ce magistrat une expédition du procès-verbal qui a pu être dressé par application de l'article 333.

Article 343

En tout état de cause la cour peut ordonner d'office, ou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une des parties, le renvoi de l'affaire à la prochaine session.

Article 344

Dans le cas où l'accusé, la partie civile, les témoins ou l'un d'eux ne parlent pas suffisamment la langue française ou s'il est nécessaire de traduire un document versé aux débats, le président nomme d'office un interprète âgé de vingt et un ans au moins, et lui fait prêter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Le ministère public,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peuvent récuser l'interprète en motivant leur récusation.

La cour se prononce sur cette récusation.

Sa décision n'est susceptible d'aucune voie de recours.

L'interprète ne peut, même du consentement de l'accusé ou du ministère public, être pris parmi les juges composant la cour, les jurés, le greffier qui tient l'audience, les parties et les témoins.

Article 345

Si l'accusé est atteint de surdité, le président nomme d'office pour l'assister lors du procès un interprète en langue des signes ou toute personne qualifiée maîtrisant un langage ou une méthod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es sourds.

Celui-ci prête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Le président peut également décider de recourir à tout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a personne atteinte de surdité.

Si l'accusé sait lire et écrire, le président peut également communiquer avec lui par écrit.

L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cédent article sont applicables.

Le président peut procéder de même avec les témoins ou les parties civiles atteints de surdité.

Article 346

Une fois l'instruction à l'audience terminée la partie civile ou son avocat est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prend ses réquisitions.

L'accusé et son avocat présentent leur défense.

La réplique est permise à la partie civile et au ministère public, mais l'accusé ou son avocat auront toujours la parole les derniers.

Section 4 : De la clôture des débats et de la lecture des questions

Article 347

Le président déclare les débats terminés.

Il ne peut résumer les moyens de l'accusation et de la défense.

Il ordonne qu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soit déposé entre les mains du greffier de la cour d'assises ; toutefois, il conserve en vue de la délibération prévue par les articles 355 et suivants,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au cours de la délibération, la cour d'assises estime nécessaire l'examen d'une ou plusieurs pièces de la procédure, le président ordonne le transport dans la salle des délibérations du dossier, qui, à ces fins sera rouvert en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et des avocats de l'accusé et de la partie civile.

Article 348

Le président donne lecture des questions auxquelles la cour et le jury ont à répondre.

Cette lecture n'est pas obligatoire quand les questions sont posées dans les termes de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ou si l'accusé ou son défenseur y renonce.

Article 349

Chaque question principale est posée ainsi qu'il suit : "L'accusé est-il coupable d'avoir commis tel fait ?"

Une question est posée sur chaque fait spécifié dans le dispositif de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Chaque circonstance aggravante fait l'objet d'une question distincte.

Il en est de même, lorsqu'elle est invoquée, de chaque cause légale d'exemption ou de diminution de la peine.

Article 349-1

Lorsque est invoquée comme moyen de défense l'existence de l'une des causes d'irresponsabilité pénale prévue par les articles 122-1 (premier alinéa), 122-2, 122-3, 122-4 (premier et second alinéas), 122-5 (premier et second alinéas) et 122-7 du code pénal, chaque fait spécifié dans le dispositif de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fait l'objet de deux questions posées ainsi qu'il suit :

"1° L'accusé a-t-il commis tel fait ? ;

"2° L'accusé bénéficie-t-il pour ce fait de la cause d'irresponsabilité pénale prévue par l'article ... du code pénal selon lequel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 ?"

Le président peut, avec l'accord des parties, ne poser qu'une seule question concernant la cause d'irresponsabilité pour l'ensemble des faits reprochés à l'accusé.

Sauf si l'accusé ou son défenseur y renonce, il est donné lecture des questions posé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350

S'il résulte des débats une ou plusieurs circonstances aggravantes, non mentionnées dans l'arrêt de renvoi, le président pose une ou plusieurs questions spéciales.

Article 351

S'il résulte des débats que le fait comporte une qualification légale autre que celle donnée par la décision de mise en accusation, le président doit poser une ou plusieurs questions subsidiaires.

Article 352

S'il s'élève un incident contentieux au sujet des questions, la cour stat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316.

Article 353

Avant que la cour d'assises se retire, le président donne lecture de l'instruction suivante, qui est, en outre, affichée en gros caractères, dans le lieu le plus apparent de la chambre des délibérations :

"La loi ne demande pas compte aux juges des moyens par lesquels ils se sont convaincus, elle ne leur prescrit pas de règles desquelles ils doivent faire particulièrement dépendre la plénitude et la suffisance d'une preuve ; elle leur prescrit de s'interroger eux-mêmes dans le silence et le recueillement et de chercher, dans la sincérité de leur conscience, quelle impression ont faite, sur leur raison, les preuves rapportées contre l'accusé, et les moyens de sa défense.

La loi ne leur fait que cette seule question, qui renferme toute la mesure de leurs devoirs :

"Avez-vous une intime conviction?"

Article 354

Le président fait retirer l'accusé de la salle d'audience.

Si l'accusé est libre, il lui enjoint de ne pas quitter le palais de justice pendant la durée du délibéré, en indiquant, le cas échéant, le ou les locaux dans lesquels il doit demeurer, et invite le chef du service d'ordre à veiller au respect de cette injonction.

Il invite le chef du service d'ordre à faire garder les issues de la chambre des délibérations, dans laquelle nul ne pourra pénétrer, pour quelque cause que ce soit, sans autorisation du président.

Le président déclare l'audience suspendue.

Chapitre VII : Du jugement

Section 1 : De la délibération de la cour d'assises

Article 355

Les magistrats de la cour et les jurés se retirent dans la chambre des délibérations.

Ils n'en peuvent sortir qu'après avoir pris leurs décisions.

Article 356

La cour et le jury délibèrent, puis votent, par bulletins écrits et par scrutins distincts et successifs, sur le fait principal d'abord, et s'il y a lieu, sur les causes d'irresponsabilité pénale, sur chacune des circonstances aggravantes, sur les questions subsidiaires et sur chacun des faits constituant une cause légale d'exemption ou de diminution de la peine.

La qualification d'inceste prévue par les articles 222-31-1 et 227-27-2 du code pénal fait l'objet, s'il y a lieu, d'une question spécifique.

Article 357

Chacun des magistrats et des jurés reçoit, à cet effet, un bulletin ouvert, marqué du timbre de la cour d'assises et portant ces mots : "sur mon honneur et en ma conscience, ma déclaration est ...".

Il écrit à la suite ou fait écrire secrètement le mot "oui" ou le mot "non" sur une table disposée de manière que personne ne puisse voir le vote inscrit sur le bulletin.

Il remet le bulletin écrit et fermé au président, qui le dépose dans une urne destinée à cet usage.

Article 358

Le président dépouille chaque scrutin en présence des membres de la cour et du jury qui peuvent vérifier les bulletins.

Il constate sur-le-champ le résultat du vote en marge ou à la suite de la question résolue.

Les bulletins blancs, ou déclarés nuls par la majorité, sont comptés comme favorables à l'accusé.

Immédiatement après le dépouillement de chaque scrutin, les bulletins sont brûlés.

Article 359

Toute décision défavorable à l'accusé se forme à la majorité de huit voix au moins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premier ressort et à la majorité de dix voix au moins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appel.

Article 360

La déclaration, lorsqu'elle est affirmative, constate que la majorité de voix exigée par l'article 359 au moins a été acquise sans que le nombre de voix puisse être autrement exprimé.

Article 361

Au cas de contradiction entre deux ou plusieurs réponses, le président peut faire procéder à un nouveau vote.

Article 361-1

Si,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49-1, la cour d'assises a répondu positivement à la première question et négativement à la seconde question, elle déclare l'accusé coupable.

Si elle a répondu négativement à la première question ou positivement à la seconde question, elle déclare l'accusé non coupable.

Si elle a répondu positivement à la première question et positivement à la seconde question portant s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il est fait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29 et suivants relatifs à la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Article 362

En cas de réponse affirmative sur la culpabilité, le président donne lecture aux jurés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18 et 132-24 du code pénal, ainsi que, si les faits ont été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de l'article 132-18-1 et, le cas échéant, de l'article 132-19-1 du même code.

La cour d'assises délibère alors sans désenquêter sur l'application de la peine.

Le vote a lieu ensuite au scrutin secret, et séparément pour chaque accusé.

La décision sur la peine se forme à la majorité absolue des votants.

Toutefois, le maximum d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ncourue ne peut être prononcé qu'à la majorité de huit voix au moins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premier ressort et qu'à

la majorité de dix voix au moins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e en appel.

Si le maximum de la peine encourue n'a pas obtenu cette majorité, il ne peut être prononcé une peine supérieure à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et une peine supérieure à vingt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de trente ans de réclusion criminelle.

Les mêmes règles sont applicables en cas de détention criminelle.

Si, après deux tours de scrutin, aucune peine n'a réuni la majorité des suffrages, il est procédé à un troisième tour au cours duquel la peine la plus forte proposée au tour précédent est écartée.

Si, à ce troisième tour, aucune peine n'a encore obtenu la majorité absolue des votes, il est procédé à un quatrième tour et ainsi de suite, en continuant à écarter la peine la plus forte, jusqu'à ce qu'une peine soit prononcée.

Lorsque la cour d'assises prononce une peine correctionnelle, elle peut ordonner à la majorité qu'il soit sursis à l'exécution de la peine avec ou sans mise à l'épreuve.

La cour d'assises délibère également sur les peines accessoires ou complémentaires.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706-53-13, elle délibère aussi pour déterminer s'il y a lieu de se prononcer sur le réexamen de la situation du condamné avant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sa peine en vue d'une éventuelle rétention de sûreté conformément à l'article 706-53-14.

Article 363

Si le fait retenu contre l'accusé ne tombe pas ou ne tombe plus sous l'application de la loi pénale, ou si l'accusé est déclaré non coupable, la cour d'assises prononce l'acquittement de celui-ci.

Si l'accusé bénéficie d'une cause d'exemption de peine, la cour d'assises le déclare coupable et l'exempte de peine.

Article 364

Mention des décisions prises est faite sur la feuille de questions, qui est signée séance tenante par le président et par le premier juré désigné par le sort ou, s'il ne peut signer, par celui désigné par la majorité des membres de la cour d'assises.

Article 365

Les réponses de la cour d'assises aux questions posées sont irrévocables.

Section 2 : De la décision sur l'action publique

Article 366

La cour d'assises rentre ensuite dans la salle d'audience.

Le président fait comparaître l'accusé, donne lecture des réponses faites aux questions, et prononce l'arrêt portant condamnation, absolution ou acquittement.

Les textes de loi dont il est fait application sont lus à l'audience par le président ; il est fait mention de cette lecture dans l'arrêt.

Au cas de condamnation ou d'absolution, l'arrêt se prononce sur la contrainte judiciaire.

Article 367

Si l'accusé est exempté de peine ou acquitté, s'il est condamné à une peine autre qu'une peine ferme privative de liberté, ou s'il est condamné à une peine ferme privative de liberté couverte par la détention provisoire, il est mis immédiatement en liberté s'il n'est retenu pour autre cause.

Dans les autres cas, tant que l'arrêt n'est pas définitif et, le cas échéant, pendant l'instance d'appel, le mandat de dépôt délivré contre l'accusé continue de produire ses effets ou la cour décerne mandat de dépôt contre l'accusé, jusqu'à ce que la durée de détention ait atteint celle de la peine prononcée, sans préjudice pour l'accusé de son droit à demander sa mise en libert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148-1 et 148-2.

La cour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écider de décerner mandat de dépôt contre la personne renvoyée pour délit connexe qui n'est pas détenue au moment où l'arrêt est rendu, si la peine prononcée est supérieure ou égale à un an d'emprisonnement et si les éléments de l'espèce justifient une mesure particulière de sûreté.

Les sanctions pénale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6 à 131-11 du code pénal peuvent être déclarées exécutoires par provision.

83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368

Aucune personne acquittée légalement ne peut plus être reprise ou accusée à raison des mêmes faits, même sous une qualification différente.

Article 369

Lorsque dans le cours des débats des charges sont relevées contre l'accusé à raison d'autres faits, et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a fait des réserves aux fins de poursuites, le président ordonne que l'accusé acquitté soit, par la force publique, conduit sans délai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siège de la cour d'assises qui doit immédiatement requérir l'ouverture d'une information.

Article 370

Après avoir prononcé l'arrêt, le président avertit, s'il y a lieu, l'accusé de la faculté qui lui est accordée, selon les cas, d'interjeter appel ou de se pourvoir en cassation et lui fait connaître le délai d'appel ou de pourvoi.

Section 3 : De la décision sur l'action civile

Article 371

Après que la cour d'assises s'est prononcée sur l'action publique, la cour, sans l'assistance du jury, statue sur les demandes en dommages-intérêts formées soit par la partie civile contre l'accusé, soit par l'accusé acquitté contre la partie civile, après que les parties et le ministre public ont été entendus.

La cour peut commettre l'un de ses membres pour entendre les parties, prendre connaissance des pièces et faire son rapport à l'audience, où les parties peuvent encore présenter leurs observations et où le ministère public est ensuite entendu.

Article 372

La partie civile, dans le cas d'acquittement comme dans celui d'exemption peine, peut demander

réparation du dommage résultant de la faute de l'accusé, telle qu'elle résulte des faits qui sont l'objet de l'accusation.

Article 373

La cour peut ordonner d'office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la main de la justice. Toutefois, s'il y a eu condamnation, cette restitution n'est effectuée que si son bénéficiaire justifie que le condamné a laissé passer les délais sans se pourvoir en cassation, ou s'il s'est pourvu, que l'affaire est définitivement jugée.

La cour peut refuser la restitution lorsque celle-ci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Article 373-1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 confiscation portant sur un bien qui n'est pas sous main de justice, la cour statuant sans l'assistance des jurés peut, afin de garantir l'exécution de cette peine, ordonner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u bien confisqué.

La cour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en vue de leur aliénation, des biens meubles confisqués dont elle ordonne la saisie, lorsque ces biens ne sont plu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 leur conservation serait de nature à en diminuer la valeur.

Dans ce cas le produit de la vente est consigné.

La décision de la cour est exécutoire nonobstant l'appel qui peut être formé contre la condamnation et, le cas échéant, le caractère non avenu de l'arrêt en phase d'appel prévu à l'article 379-4.

Toutefois,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ordonner, à la requête du procureur général ou à la demande d'une des parties, la mainlevée totale ou partielle de ces mesures,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Les arrêts d'acquiescement ou qui ne confirment pas la confiscation du bien emportent de plein droit mainlevée de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ou, si le propriétaire en fait la demande, restitution du produit de la vente.

836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374

Lorsqu'elle statue en premier ressort, la cour peut ordonner l'exécution provisoire de sa décision, si celle-ci a été demandé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80-8.

Toutefois, l'exécution provisoire des mesures d'instruction est de droit.

Article 375

La cour condamne l'auteur de l'infraction à payer à la partie civile la somme qu'elle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non payés par l'Etat et exposés par celle-ci.

La cour tient compte de l'équité o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a partie condamnée.

Elle peut, même d'office, pour des raisons tirées des mêmes considérations, dire qu'il n'y a pas lieu à cette condamnation.

Article 375-1

La partie civile est assimilée au témoin en ce qui concerne le paiement des indemnité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tribunal.

Article 375-2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un même crime sont tenues solidairement des restitutions et des dommages-intérêts.

En outre, la cour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ordonner que l'accusé qui s'est entouré de coauteurs ou de complices insolubles sera tenu solidairement des amendes.

Section 4 : De l'arrêt et du procès-verbal

Article 376

Le greffier écrit l'arrêt ; les textes de lois appliqués y sont indiqués.

Article 377

La minute de l'arrêt rendu après délibération de la cour d'assises ainsi que la minute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sont signées par le président et le greffier.

Tous ces arrêts doivent porter mention de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378

Le greffier dresse, à l'effet de constater l'accomplissement des formalités prescrites, un procès-verbal qui est signé par le président et par ledit greffier.

Le procès-verbal est dressé et signé dans le délai de trois jours au plus tard du prononcé de l'arrêt.

Article 379

A moins que le président n'en ordonne autrement d'office ou sur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il n'est fait mention au procès-verbal, ni des réponses des accusés, ni du contenu des dépositions, sans préjudice, toutefois, de l'exécution de l'article 333 concernant les additions, changements ou variations dans les déclarations des témoins.

Article 379-1

Les minutes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d'assises sont réunies et déposées au greff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iège de ladite cour.

Toutefois, les minutes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d'assises du département où siège la cour d'appel restent déposées au greffe de ladite cour.

Chapitre VIII : Du défaut en matière criminelle

Article 379-2

L'accusé absent sans excuse valable à l'ouverture de l'audience est jugé par défau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Il en est de même lorsque l'absence de l'accusé est constatée au cours des débats et qu'il n'est pas possible de les suspendre jusqu'à son retour.

Toutefois, la cour peut également décider de renvoyer l'affaire à une session ultérieure, après avoir décerné mandat d'arrêt contre l'accusé si un tel mandat n'a pas déjà été décerné.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ne sont pas applicables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20 et 322.

Article 379-3

La cour examine l'affaire et statue sur l'accusation sans l'assistance des jurés, sauf si sont présents d'autres accusés jugés simultanément lors des débats, ou si l'absence de l'accusé a été constatée après le commencement des débats.

Si un avocat est présent pour assurer la défense des intérêts de l'accusé, la procédure se dérou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306 à 379-1, à l'exception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interrogatoire ou à la présence de l'accusé.

En l'absence d'avocat pour assurer la défense des intérêts de l'accusé, la cour statue sur l'accusation après avoir entendu la partie civile ou son avocat et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ferme privative de liberté, la cour décerne mandat d'arrêt contre l'accusé, sauf si celui-ci a déjà été décerné.

Article 379-4

Si l'accusé condamn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79-3 se constitue prisonnier ou s'il est arrêté avant que la peine soit éteinte par la prescription, l'arrêt de la cour d'assises est non avenu dans toutes ses dispositions et il est procédé à son égard à un nouvel examen de son affaire par la cour d'assis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269 à 379-1.

Le mandat d'arrêt délivré contre l'accus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379-3 ou décerné avant l'arrêt de condamnation vaut mandat de dépôt et l'accusé demeure détenu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a cour d'assises, qui doit intervenir dan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181 à compter de son placement en détention, faute de quoi il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Article 379-5

L'appel n'est pas ouvert à la personne condamnée par défaut.

Article 379-6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sont applicables aux personnes renvoyées pour délits connexes. La cour peut toutefois,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après avoir entendu les observations des parties, ordonner la disjonction de la procédure les concernant.

Ces personnes sont alors considérées comme renvoyée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et peuvent y être jugées par défaut.

Chapitre IX : De l'appel des décisions rendues par la cour d'assises en premier ressort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380-1

Les arrêts de condamnation rendus par la cour d'assises en premier ressort peuvent faire l'objet d'un app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Cet appel est porté devant une autre cour d'assises désignée par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et qui procède au réexamen de l'affaire selon les modalités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chapitres II à VII du présent titre.

La cour statue sans l'assistance des jurés dans les cas suivants :

- 1° Lorsque l'accusé, renvoyé devant la cour d'assises uniquement pour un délit connexe à un crime, est le seul appelant ;
- 2° Lorsque l'appel du ministère public d'un arrêt de condamnation ou d'acquittement concerne un délit connexe à un crime et qu'il n'y a pas d'appel interjeté concernant la condamnation criminelle.

Article 380-2

La faculté d'appeler appartient :

- 1° A l'accusé ;
- 2° Au ministère public ;
- 3° A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quant à ses intérêts civils ;

840 프랑스 형사소송법

4° A la partie civile, quant à ses intérêts civils ;

5° En cas d'appel du ministère public, aux administrations publiques, dans les cas où celles-ci exercent l'action publique.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également faire appel des arrêts d'acquiescement.

Article 380-3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sur l'action publique ne peut, sur le seul appel de l'accusé, aggraver le sort de ce dernier.

Article 380-4

Pendant les délais d'appel et durant l'instance d'appel, il est sursis à l'exécution de l'arrêt sur l'action publique.

Toutefois, le mandat de dépôt continue de produire ses effets à l'encontre de la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67.

Article 380-5

Lorsque la cour d'assises n'est pas saisie de l'appel formé contre le jugement rendu sur l'action publique, l'appel formé par une partie contre le seul jugement rendu sur l'action civile est porté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Les articles 380-14 et 380-15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380-6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sur l'action civile ne peut, sur le seul appel de l'accusé, du civilement responsable ou de la partie civile, aggraver le sort de l'appelant.

La partie civile ne peut, en cause d'appel, former aucune demande nouvelle ; toutefois, elle peut demander une augmentation des dommages et intérêts pour le préjudice souffert depuis la première décision.

Même lorsqu'il n'a pas été fait appel de la décision sur l'action civile, la victime constituée

partie civile en premier ressort peut exercer devant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jusqu'à la clôture des débats ; elle peut également demande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ainsi que de celle de l'article 375.

Article 380-7

Pendant les délais d'appel et durant l'instance d'appel, il est sursis à l'exécution de l'arrêt sur l'action civil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74.

Article 380-8

Lorsque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premier ressort sur l'action civile a ordonné le versement provisoire, en tout ou en partie, des dommages-intérêts alloués, cette exécution provisoire peut être arrêtée, en cause d'appel, par le premier président, statuant en référé si elle risque d'entraîner des conséquences manifestement excessives.

Le premier président peut subordonner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provisoire à la constitution d'une garantie, réelle ou personnelle, suffisante pour répondre de toutes restitutions ou réparations. Lorsque l'exécution provisoire a été refusée par la cour statuant sur l'action civile ou lorsque l'exécution provisoire n'a pas été demandée, ou si, l'ayant été, la cour a omis de statuer, elle peut être accordée, en cas d'appel, par le premier président statuant en référé.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est compéte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iège la cour d'assises désignée pour connaître de l'affaire en appel.

Section 2 : Délais et formes de l'appel

Article 380-9

L'appel est interjeté dans le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u prononcé de l'arrêt.

Toutefois, le délai ne court qu'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e l'arrêt, quel qu'en soit le mode, pour la partie qui n'était pas présente ou représentée à l'audience où le jugement a été prononcé, mais seulement dans le cas où elle-même ou son représentant n'auraient pas été informés du jour où l'arrêt serait prononcé.

Article 380-10

En cas d'appel d'une partie, pendant les délais ci-dessus, les autres parties ont un délai supplémentaire de cinq jours pour interjeter appel.

Article 380-11

L'accusé peut se désister de son appel jusqu'à son interrogatoire par le président prévu par l'article 272.

Ce désistement rend caducs les appels incidents formés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es autres parties.

Dans tous les cas, le ministère public peut toujours se désister de son appel formé après celui de l'accusé en cas de désistement de celui-ci.

Le désistement d'appel est constaté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orsque celle-ci est saisie en application de l'article 380-1 ou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La caducité de l'appel de l'accusé résulte également de la constat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que ce dernier a pris la fuite et n'a pas pu être retrouvé avant l'ouverture de l'audience ou au cours de son déroulement.

Article 380-12

La déclaration d'appel doit être faite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Elle doit être signée par le greffier et par l'appelant lui-même, par un avocat, par un avoué près la cour d'appel, ou par un fondé de pouvoir spécial ; dans ce dernier cas, le pouvoir es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Si l'appelant ne peut signer, il en sera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Elle est inscrite sur un registre public à ce destiné et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s'en faire délivrer une copie.

Lorsque l'appel est formé par le procureur général et que le siège de la cour d'assises n'est pas celui de la cour d'appel, la déclaration d'appel, signée par le procureur général, est adressée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 elle est transcrite sur le registre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et annexée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Article 380-13

Lorsque l'appelant est détenu, l'appel peut être fait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datée et sign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lle est également signée par l'appelant ;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au greffe de la cour d'assises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 il est transcrit sur le registre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80-12 e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Section 3 : Désignation de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Article 380-14

Dès que l'appel a été enregistré, le ministère public adresse sans délai au greffe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avec ses observations éventuelles, la décision attaquée et, le cas échéant, le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 mois qui suit la réception de l'appel, la chambre criminell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écrite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ou de leurs avocats, désigne la cour d'assises chargée de statuer en appel.

Il est alors procédé comme en cas de renvoi après cassation.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80-1, en cas d'appel d'une décision de la cour d'assises d'un département d'outre-mer, de la Nouvelle-Calédoni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s îles Wallis-et-Futuna, la chambre criminelle peut désigner la même cour d'assises, autrement composée, pour connaître de l'appel.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appel des décisions de la cour criminelle de Mayotte ou du tribunal criminel de Saint-Pierre-et-Miquelon.

844 프랑스 형사소송법

En cas de vacance de poste, d'absence, d'empêchement ou d'incompatibilité légale, les fonctions d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criminelle statuant en appel et, le cas échéant, des magistrats assesseurs qui la composent, sont exercées par des conseillers désignés, sur une liste arrêtée pour chaque année civil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e Paris, ou, pour la cour criminelle de Mayott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e Saint-Denis-de-la-Réunion.

Article 380-15

Si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constate que l'appel n'a pas été formé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a loi ou porte sur un arrêt qui n'est pas susceptible d'appel, elle dit n'y avoir pas lieu à désignation d'une cour d'assises chargée de statuer en appel.

Titre II : Du jugement des délits

Chapitre Ier : Du tribunal correctionnel

Section 1 : De la compétence et de la saisine du tribunal correctionnel

Paragraphe 1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381

Le tribunal correctionnel connaît des délits.

Sont des délits les infractions que la loi punit d'une peine d'emprisonnement ou d'une peine d'amende supérieure ou égale à 3 750 euros.

Article 382

Est compétent le tribunal correctionnel du lieu de l'infraction, celui de la résidence du prévenu ou celui du lieu d'arrestation ou de détention de ce dernier, même lorsque cette arrestation ou cette détention a été opérée ou est effectuée pour une autre cause.

Pour le jugement du délit d'abandon de famille prévu par l'article 227-3 du code pénal, est également compétent le tribunal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e la personne qui doit recevoir

la pension, la contribution, les subsides ou l'une des autres prestations visées par cet article. La compétence du tribunal correctionnel s'étend aux délits et contraventions qui forment avec l'infraction déferée au tribunal un ensemble indivisible ; elle peut aussi s'étendre aux délits et contraventions connexes, au sens de l'article 203.

Article 383

La compétence à l'égard d'un prévenu s'étend à tous coauteurs et complices.

Article 384

Le tribunal saisi de l'action publique est compétent pour statuer sur toutes exceptions proposées par le prévenu pour sa défense, à moins que la loi n'en dispose autrement, ou que le prévenu n'excipe d'un droit réel immobilier.

Article 385

Le tribunal correctionnel a qualité pour constater les nullités des procédures qui lui sont soumises sauf lorsqu'il est saisi par le renvoi ordonn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Toutefois, dans le cas où l'ordonnance ou l'arrêt qui l'a saisi n'a pas été porté à la connaissance des parti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selon le cas,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183 ou par l'article 217, ou si l'ordonnance n'a pas été rend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84, le tribunal renvoie la procédure au ministère public pour lui permettre de saisir à nouveau la juridiction d'instruction afin que la procédure soit régularisée.

Lorsque l'ordonnance de renvoi du juge d'instruction a été rendue sans que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175 aient été respectées, les parties demeurent recevables,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à soulever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les nullités de la procédure.

Lorsque la procédure dont il est saisi n'est pas renvoyée devant lui par la juridiction d'instruction, le tribunal statue sur les exceptions tirées de la nullité de la procédure antérieure.

La nullité de la citation ne peut être prononcée q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565.

846 프랑스 형사소송법

Dans tous les cas, les exceptions de nullité doivent être présentées avant toute défense au fond.

Article 385-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88-1 et 388-2, l'exception fondée sur une cause de nullité ou sur une clause du contrat d'assurance et tendant à mettre l'assureur hors de cause est, à peine de forclusion, présentée par celui-ci avant toute défense au fond.

Elle n'est recevable que si elle est de nature à exonérer totalement l'assureur de son obligation de garantie à l'égard des tiers.

L'assureur mis en caus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88-2 qui n'intervient pas au procès pénal est réputé renoncer à toute exception ; toutefois, s'il est établi que le dommage n'est pas garanti par l'assureur prétendu, celui-ci est mis hors de cause par le tribunal.

Article 385-2

En ce qui concerne les intérêts civils, le tribunal, après avoir mis les parties en demeure de conclure au fond, statue dans un seul et même jugement sur l'exception d'irrecevabilité et sur le fond du litige.

Article 386

L'exception préjudicielle est présentée avant toute défense au fond.

Elle n'est recevable que si elle est de nature à retirer au fait qui sert de base à la poursuite le caractère d'une infraction.

Elle n'est admise que si elle s'appuie sur des faits ou sur des titres donnant un fondement à la prétention du prévenu.

Si l'exception est admissible, le tribunal impartit un délai dans lequel le prévenu doit saisir la juridiction compétente.

Faute par le prévenu d'avoir introduit l'instance dans ce délai et de justifier de ses diligences, il est passé outre à l'exception.

Si l'exception n'est pas admise, les débats sont continués.

Article 387

Lorsque le tribunal est saisi de plusieurs procédures visant des faits connexes, il peut en ordonner la jonction soit d'office, soit sur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ou à la requête d'une des parties.

Article 388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saisi des infractions de sa compétence soit par la comparution volontaire des parties, soit par la citation, soit par la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soit par la comparution immédiate, soit enfin par le renvoi ordonné par la juridiction d'instruction.

Article 388-1

La personne dont la responsabilité civile est susceptible d'être engagée à l'occasion d'une infraction d'homicide ou de blessures involontaires qui a entraîné pour autrui un dommage quelconque pouvant être garanti par un assureur doit préciser le nom et l'adresse de celui-ci, ainsi que le numéro de sa police d'assurance.

Il en est de même pour la victime lorsque le dommage qu'elle a subi peut être garanti par un contrat d'assurance.

Ces renseignements sont consignés dans les procès-verbaux d'audition.

Lorsque des poursuites pénales sont exercées, les assureurs appelés à garantir le dommage sont admis à intervenir et peuvent être mis en caus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même pour la première fois en cause d'appel ; ils doivent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ou un avoué.

En ce qui concerne les débats et les voies de recours, les règles concernant les personnes civilement responsables et les parties civiles sont applicables respectivement à l'assureur du prévenu et à celui de la partie civil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ci-dessus et des articles 385-1, troisième alinéa (1), 388-2 et 509, deuxième alinéa.

Article 388-2

Dix jours au moins avant l'audience, la mise en cause de l'assureur est faite par toute partie qui y a intérêt au moyen d'un acte d'huissier ou d'une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qui mentionne la nature des poursuites engagées, l'identité du prévenu, de la partie

848 프랑스 형사소송법

civile et, le cas échéant, de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le numéro des polices d'assurance, le montant de la demande en réparation ou, à défaut, la nature et l'étendue du dommage, ainsi que le tribunal saisi, le lieu, la date et l'heure de l'audience.

Article 388-3

La décision concernant les intérêts civils est opposable à l'assureur qui est intervenu au procès ou a été avis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88-2.

Paragraphe 2 : De la comparution volontaire et de la citation

Article 389

L'avertissement, délivré par le ministère public, dispense de citation, s'il est suivi de la comparution volontaire de la personne à laquelle il est adressé.

Il indique le délit poursuivi et vise le texte de loi qui le réprime.

Lorsqu'il s'agit d'un prévenu détenu, le jugement doit constater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 à être jugé sans citation préalable.

Article 390

La citation est délivrée dans des délais et formes prévus par les articles 550 et suivants.

La citation informe le prévenu qu'il doit comparaître à l'audience en possession des justificatifs de ses revenus ainsi que de ses avis d'imposition ou de non-imposition, ou les communiquer à l'avocat qui le représente.

La citation informe également le prévenu que le droit fixe de procédure dû en application du 3° de l'article 1018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peut être majoré s'il ne comparaît pas personnellement à l'audience ou s'il n'est pas jug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411 du présent code.

Article 390-1

Vaut citation à personne la convocation en justice notifiée au prévenu, sur instruc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article 552, soit par un greffier ou un officier ou agent de police judiciaire, soit, si le prévenu est détenu,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convocation énonce le fait poursuivi, vise le texte de loi qui le réprime et indique le tribunal saisi, le lieu, la date et l'heure de l'audience.

Elle précise, en outre, que le prévenu peut se faire assister d'un avocat.

Elle informe qu'il doit comparaître à l'audience en possession des justificatifs de ses revenus ainsi que de ses avis d'imposition ou de non-imposition.

Elle l'informe également que le droit fixe de procédure dû en application du 3° de l'article 1018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peut être majoré s'il ne comparaît pas personnellement à l'audience ou s'il n'est pas jug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411 du présent code.

Elle est constatée par un procès-verbal signé par le prévenu qui en reçoit copie.

Article 391

Toute personne ayant porté plainte est avisée par le parquet de la date de l'audience.

Article 392

La partie civile, qui cite directement un prévenu devant un tribunal répressif, fait, dans l'acte de citation, élection de domicil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saisi, à moins qu'elle n'y soit domiciliée.

Article 392-1

Lorsque l'action de la partie civile n'est pas jointe à celle du ministère public, le tribunal correctionnel fixe, en fonction des ressources de la partie civile, le montant de la consignation que celle-ci doit, si elle n'a pas obtenu l'aide juridictionnelle, déposer au greffe et le délai dans lequel elle devra être faite sous peine de non-recevabilité de la citation directe.

Cette consignation garantit le paiement de l'amende civile susceptible d'êt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saisi par une citation directe de la partie civile, prononce une relaxe, il peut, par ce même jugemen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ndamner la partie civile au paiement d'une amende civile dont le montant ne saurait excéder 15,000 euros s'il estime que la citation directe était abusive ou dilatoire.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vent intervenir avant la clôture des débats, après les plaidoiries de la défense, et la partie civile ou son avocat doivent avoir été mis en mesure d'y réplique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galement applicables devant la cour d'appel,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a, en premier ressort, relaxé la personne poursuivie et statué sur d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ndant à la condamnation de la partie civi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Paragraphe 3 : De la convocation par procès-verbal et de la comparution immédiate

Article 393

En matière correctionnelle, après avoir constaté l'identité de la personne qui lui est déférée, lui avoir fait connaître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t avoir recueilli ses déclarations si elle en fait la demand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il estime qu'une information n'est pas nécessaire, procéder comme il est dit aux articles 394 à 396.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alors la personne déférée devant lui qu'elle a le droit à l'assistance d'un avocat de son choix ou commis d'office.

L'avocat choisi ou, dans le cas d'une demande de commission d'office,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en est avisé sans délai.

L'avocat peut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le prévenu.

Mention de ces formalités est faite au procès-verbal à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Article 393-1

Dans les cas prévus à l'article 393, la victime doit être avisée par tout moyen de la date de l'audience.

Article 394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inviter la personne déférée à comparaître devant le tribunal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ix jours, sauf renonciation expresse de l'intéressé en présence de son avocat, ni supérieur à deux mois.

Il lui notifie les faits retenus à son encontre ainsi que le lieu, la date et l'heure de l'audience. Il informe également le prévenu qu'il doit comparaître à l'audience en possession des justificatifs de ses revenus ainsi que de ses avis d'imposition ou de non-imposition.

Cette notification, mentionnée au procès-verbal dont copie est remise sur-le-champ au prévenu, vaut citation à personne.

L'avocat choisi ou le bâtonnier est informé,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de la date et de l'heure de l'audience ; mention de cet avis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L'avocat peut, à tout moment, consulter le dossier.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ime nécessaire de soumettre le prévenu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le placer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il le traduit sur-le-champ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ant en chambre du conseil avec l'assistance d'un greffier.

Ce magistrat peut, après audition du prévenu, son avocat ayant été avisé et entendu en ses observations, s'il le demande, prononcer l'une de ces mesures dans les conditions et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8, 139, 142-5 et 142-6.

Cette décision est notifiée verbalement au prévenu et mentionnée au procès-verbal dont copie lui est remise sur-le-champ.

Si le prévenu placé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1-2 sont applicables, ainsi que celles de l'article 141-4 ;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instruction par cet article sont alors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395

Si le maximum de l'emprisonnement prévu par la loi est au moins égal à deux a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rsqu'il lui apparaît que les charges réunies sont suffisantes et que l'affaire est en l'état d'être jugée, peut, s'il estime que les éléments de l'espèce justifient une comparution immédiate, traduire le prévenu sur-le-champ devant le tribunal.

En cas de délit flagrant, si le maximum de l'emprisonnement prévu par la loi est au moins égal à six mo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il estime que les éléments de l'espèce justifient une comparution immédiate, peut traduire le prévenu sur-le-champ devant le tribunal.

Le prévenu est retenu jusqu'à sa comparution qui doit avoir lieu le jour même ; il est conduit sous escorte devant le tribunal.

Article 396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précédent, si la réunion du tribunal est impossible le jour même et si les éléments de l'espèce lui paraissent exiger une mesure de détention proviso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traduire le prévenu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tatuant en chambre du conseil avec l'assistance d'un greffier.

Le juge, après avoir fait procéder, sauf si elles ont déjà été effectuées, aux vérifications prévues par le sixième alinéa de l'article 41, statue su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aux fins de détention provisoir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éventuelles du prévenu ou de son avocat ; l'ordonnance rendue n'est pas susceptible d'appel.

Il peut placer le prévenu en détention provisoir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L'ordonnance prescrivant la détention est rendu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37-3, premier alinéa, et doit comporter l'énoncé des considérations de droit et de fait qui constituent le fondement de la décision par référence aux dispositions des 1° à 6° de l'article 144. Cette décision énonce les faits retenus et saisit le tribunal ; elle est notifiée verbalement au prévenu et mentionnée au procès-verbal dont copie lui est remise sur-le-champ.

Le prévenu doit comparaître devant le tribunal au plus tard le troisième jour ouvrable suivant. A défaut, il est mis d'office en liberté.

Si le juge estime que la détention provisoire n'est pas nécessaire, il peut soumettre le prévenu,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à une ou plusieur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le placer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otifie alors à l'intéressé la date et l'heure de l'audienc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4.

Si le prévenu placé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1-2 sont applicables.

Article 397

Lorsque le tribunal est saisi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95 et 396, troisième alinéa, le président constate l'identité du prévenu, son avocat ayant été avisé.

Il avertit le prévenu qu'il ne peut être jugé le jour même qu'avec son accord ; toutefois, cet accord ne peut être recueilli qu'en présence de son avocat ou, si celui-ci n'est pas présent, d'un avocat désigné d'office sur sa demande par le bâtonnier.

Si le prévenu consent à être jugé séance tenante, mention en est faite dans les notes d'audience.

Article 397-1

Si le prévenu ne consent pas à être jugé séance tenante ou si l'affaire ne paraît pas en état d'être jugée, le tribunal,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es parties et de leur avocat, renvoie à une prochaine audience qui doit avoir lieu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eux semaines, sauf renonciation expresse du prévenu, ni supérieur à six semaines.

Lorsque la peine encourue est supérieure à sept ans d'emprisonnement, le prévenu, informé de l'étendue de ses droits, peut demander que l'affaire soit renvoyée à une audience qui devra avoir lieu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eux mois, sans être supérieur à quatre mois.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le prévenu ou son avocat peut demander au tribunal d'ordonner tout acte d'information qu'il estime nécessaire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relatif aux faits reprochés ou à la personnalité de l'intéressé.

Le tribunal qui refuse de faire droit à cette demande doit rendre un jugement motivé.

Article 397-2

A la demande des parties ou d'office, le tribunal peut commettre par jugement l'un de ses

854 프랑스 형사소송법

membres ou l'un des juges d'instruction de la juridiction désigné dans les conditions de l'article 83, alinéa premier, pour procéder à un supplément d'information ;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63 sont applicables.

Le tribunal peut, dans les mêmes conditions, s'il estime que la complexité de l'affaire nécessite des investigations supplémentaires approfondies, renvoyer le dossi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tribunal statue au préalable sur le maintien du prévenu en détention provisoir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un juge d'instruction.

Cette comparution doit avoir lieu le jour même, à défaut de quoi le prévenu est remis en liberté d'office.

Toutefois, si les faits relèvent de la compétence d'un pôle de l'instruction et qu'il n'existe pas de pôle au sei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ette comparution doit intervenir devant le juge d'instruction du pô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ans un délai de trois jours ouvrables, à défaut de quoi le prévenu est remis en liberté d'office.

Article 397-3

Dans tou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paragraphe, le tribunal peu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41-1, placer ou maintenir le prévenu sous contrôle judiciaire.

Cette décision est exécutoire par provision.

Si le prévenu placé sous contrôle judiciaire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1-2 sont applicables.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395 et suivants, le tribunal peut également placer ou maintenir le prévenu en détention provisoire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La décision prescrivant la détention est rendu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5, 137-3, premier alinéa et 464-1 et est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dispositions des 1° à 6° de l'article 144. Elle est exécutoire par provision.

Lorsque le prévenu est en détention provisoire, le jugement au fond doit être rendu dans les deux mois qui suivent le jour de sa première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Faute de décision au fond à l'expiration de ce délai, il est mis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Le prévenu, s'il n'est pas détenu pour une autre cause, est mis d'office en liberté.

Lorsqu'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97-1, le délai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est porté à quatre mois.

Article 397-4

Dans le cas où le prévenu est condamné à un emprisonnement sans sursis, le tribunal saisi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95 et suivants peut, quelle que soit la durée de la peine, ordonner, d'après les éléments de l'espèce, le placement ou le maintien en détention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8-2 et 471, deuxième alinéa, sont applicables.

La cour statue dans les quatre mois de l'appel du jugement rendu sur le fond interjeté par le prévenu détenu, faute de quoi celui-ci, s'il n'est pas détenu pour une autre cause, est mis d'office en liberté.

Si la juridiction estime devoir décerner un mandat d'arrê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65 sont applicables, quelle que soit la durée de la peine prononcée.

Article 397-5

Dans tous les cas prévus par le présent paragraphe et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0 et suivants, les témoins peuvent être cités sans délai et par tout moyen.

Lorsqu'ils sont requis verbalement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un agent de la force publique, ils sont tenus de comparaître sous les sanctions portées aux articles 438 à 441.

Article 397-6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93 à 397-5 ne sont applicables ni aux mineurs, ni en matière de délits de presse, de délits politiques ou d'infractions dont la procédure de poursuite est prévue par une loi spéciale.

Article 397-7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ime que les faits pour lesquels la personne est déférée devant

lui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3 doivent faire l'objet d'une information relevant de la compétence d'un pôle de l'instruction alors qu'il n'existe pas de tel pôle au sei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que les éléments de l'espèce lui paraissent exiger une mesure de détention provisoire, il peut requérir le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en détention provisoire de cette personn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compétent en faisant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4 ou de l'article 396.

Si la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elle doit comparaîtr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du pôle de l'instruction au plus tard le troisième jour ouvrable suivant.

A défaut, ell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Section 2 : De la composition du tribunal et de la tenue des audiences

Article 398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président et de deux juges.

Lorsqu'un procès paraît de nature à entraîner de longs débats,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décider qu'un ou plusieurs magistrats du siège supplémentaires assisteront aux débats.

Dans le cas où un ou plusieurs magistrats du siège compos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seraient empêchés de suivre les débats jusqu'au prononcé du jugement, ils sont remplacés par le ou les magistrats du siège supplémentaires, dans l'ordre de leur nomination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n commençant par le plus ancien du rang le plus élevé.

Toutefois, pour le jugement des délits énumérés à l'article 398-1, il est composé d'un seul de ces magistrats exerçant les pouvoirs conférés au président.

La désignation des magistrats du tribunal correctionnel appelés à statu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3 est fait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elon les modalités fixées pour la répartition des juges entre les diverses chambres de ce tribunal ; s'il y a lieu, le président du tribunal correctionnel répartit les affaires entre ces magistrats.

Avant le début de l'année judiciair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établit par

ordonnance la liste des juges de proximité de son ressort susceptibles de siéger en qualité d'assesseur au sein de la formation collégiale du tribunal correctionnel.

Cette ordonnance peut être modifiée en cours d'année pour prendre en compte une modification de la composition de la juridiction ou pour prévoir un service allégé pendant la période au cours de laquelle les magistrats, les fonctionnaires et les auxiliaires de justice bénéficient de leurs congés annuels.

Cette formation ne peut comprendre plus d'un juge non professionnel.

Les décis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ont des mesures d'administration non susceptibles de recours.

Article 398-1

Sont jug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

- 1°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66 et 69 du décret-loi du 30 octobre 1935 unifiant le droit en matière de chèques et relatif aux cartes de paiement ;
- 2°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 route ainsi que, lorsqu'ils sont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par les articles 222-19-1, 222-20-1, 223-1 et 434-10 du code pénal ;
- 3° Les délits en matière de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transports terrestres ;
- 4° Les délits de port ou transport d'armes de la 6e catégorie prévus par l'article L. 2339-9 du code de la défense ;
- 5°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1, 222-12 (1° à 15°), 222-13 (1° à 15°), 222-16, 222-17, 222-18, 222-32, 225-10-1, 227-3 à 227-11, 311-3, 311-4 (1° à 11°), 313-5, 314-5, 314-6, 321-1, 322-1 à 322-4-1, 322-12, 322-13, 322-14, 431-22 à 431-24, 433-3,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433-5, 433-6 à 433-8, premier alinéa, 433-10, premier alinéa, et 521-1 du code pénal et L. 628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6°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environnement en matière de chasse, de pêche en eau douce, de pêche maritime, de protection de la faune et de la flore, ainsi que par le titre VIII du livre V du même code ;
- 7°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forestier et par le code de l'urbanisme pour la protection

des bois et forêts ;

7° bis Le délit prévu par l'article L. 126-3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8° Les délits pour lesquels une peine d'emprisonnement n'est pas encourue, à l'exception des délits de presse ;

9°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en matière de garde et de circulation des animaux ;

10° L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L. 335-2, L. 335-3 et L. 335-4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orsqu'ils sont commis au moyen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

11° Les infrac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152-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Toutefois, le tribunal statue obligatoir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lorsque le prévenu est en état de détention provisoire lors de sa comparution à l'audience ou lorsqu'il est poursuivi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immédiate.

Il statue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pour le jugement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lorsque ces délits sont connexes à d'autres délits non prévus par cet article.

Article 398-2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constate que la qualification retenue dans l'acte qui le saisit ne relève pas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8-1, il renvoi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siége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constate que la qualification retenue dans l'acte qui le saisit relè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8-1,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cet article, l'affaire peut soit être renvoyé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siége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soit être jugée par le seul président.

Le tribunal correctionnel siégeant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peut, si ce renvoi lui paraît justifié en raison de la complexité des faits ou, au regard notamment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en raison de l'importance de la peine susceptible d'être prononcé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es parties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affair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siége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u même articl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qui précède ne sont alors pas applicables.

Cette décision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Le tribunal correctionnel siégeant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ne peut prononcer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d'une durée supérieure à cinq ans.

Article 398-3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rès le tribunal correctionnel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un de ses substituts ; celles du greffe par un greffier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rticle 399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sont fixés par décision conjointe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n est de même de la composition prévisionnelle de ces audiences, sans préjudice des pouvoirs propres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d'audiencement.

Les décis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sont prises, après avis de l'assemblée générale du tribunal, à la fin de l'année judiciaire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et peuvent, en cas de nécessité, être modifiées en cours d'ann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 cas d'impossibilité de parvenir à des décisions conjointes,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sont fixés par le seul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la composition prévisionnelle de ces audiences est déterminée par le seul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près avis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du procureur général.

Section 3 : De la publicité et de la police de l'audience

Article 400

Les audiences sont publiques.

Néanmoins, le tribunal peut, en constatant dans son jugement que la publicité est dangereuse pour l'ordre, la sérénité des débats, la dignité de la personne ou les intérêts d'un tiers, ordonner, par jugement rendu en audience publique, que les débats auront lieu à huis clos.

Lorsque le huis clos a été ordonné, celui-ci s'applique au prononcé des jugements séparés qui peuvent intervenir sur des incidents ou exceptions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459, alinéa 4.

Le jugement sur le fond doit toujours être prononcé en audience publiqu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pour enfants si la personne poursuivie, mineure au moment des faits, est devenue majeure au jour de l'ouverture des débats et qu'elle en fait la demande, sauf s'il existe un autre prévenu qui est toujours mineur ou qui, mineur au moment des faits et devenu majeur au jour de l'audience, s'oppose à cette demande.

Article 401

Le président a la police de l'audience et la direction des débats.

Article 402

Le président peut interdire l'accès de la salle d'audience aux mineurs ou à certains d'entre eux.

Article 404

Lorsque, à l'audience, l'un des assistants trouble l'ordre d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le président ordonne son expulsion de la salle d'audience.

Si, au cours de l'exécution de cette mesure, il résiste à cet ordre ou cause du tumulte, il est, sur-le-champ, placé sous mandat de dépôt, jugé e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sans préjudice des peines portées au code pénal contre les auteurs d'outrages et de violences envers les magistrats.

Sur l'ordre du président, il est alors contraint par la force publique de quitter l'audience.

Article 405

Si l'ordre est troublé à l'audience par le prévenu lui-même, il lui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04.

Le prévenu, même libre, lorsqu'il est expulsé de la salle d'audience, est gardé par la force publique, jusqu'à la fin des débats, à la disposition du tribunal.

Il est alors reconduit à l'audience, où le jugement est rendu en sa présence.

Section 4 : Des débats

Paragraphe 1er : De la comparution du prévenu

Article 406

Le président ou l'un des assesseurs, par lui désigné, constate l'identité du prévenu et donne connaissance de l'acte qui a saisi le tribunal.

Il constate aussi s'il y a lieu la présence ou l'absence de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de la partie civile, des témoins, des experts et des interprètes.

Article 407

Dans le cas où le prévenu, la partie civile ou le témoin ne parle pas suffisamment la langue française, ou s'il est nécessaire de traduire un document versé aux débats, le président désigne d'office un interprète, âgé de vingt et un ans au moins, et lui fait prêter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Le ministère public, le prévenu et la partie civile peuvent récuser l'interprète en motivant leur récusation.

Le tribunal se prononce sur cette récusation, et sa décision n'est susceptible d'aucune voie de recours.

L'interprète ne peut, même du consentement du prévenu ou du ministère public, être pris parmi les juges composant le tribunal, le greffier qui tient l'audience, les parties et les témoins.

Article 408

Si le prévenu est atteint de surdité, le président nomme d'office pour l'assister lors du procès un interprète en langue des signes ou toute personne qualifiée maîtrisant un langage ou une méthod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es sourds.

Celui-ci prête serment d'apporter son concours à la justice en son honneur et en sa conscience. Le président peut également décider de recourir à tout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de communiquer avec la personne atteinte de surdité.

Si le prévenu sait lire et écrire, le président peut également communiquer avec lui par écrit.

Les autres dispositions du précédent article sont applicables.

Le président peut procéder de même avec les témoins ou les parties civiles atteints de surdité.

Article 409

Au jour indiqué pour la comparution à l'audience, le prévenu en état de détention y est conduit par la force publique.

Article 410

Le prévenu régulièrement cité à personne doit comparaître, à moins qu'il ne fournisse une excuse reconnue valable par la juridiction devant laquelle il est appelé.

Le prévenu a la même obligation lorsqu'il est établi que, bien que n'ayant pas été cité à personne, il a eu connaissance de la citation régulière le concernant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557, 558 et 560.

Si ces conditions sont remplies, le prévenu non comparant et non excusé est jugé par jugement contradictoire à signifier, sauf s'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1.

Si un avocat se présente pour assurer la défense du prévenu, il doit être entendu s'il en fait la demande, même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411.

Article 410-1

Lorsque le prévenu c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10 ne comparaît pas et que la peine qu'il encourt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eux années

d'emprisonnement, le tribunal peut ordonner le renvoi de l'affaire e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écerner mandat d'amener ou mandat d'arrêt.

Si le prévenu est arrêté à la suite du mandat d'amener ou d'arrêt,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5-2.

Toutefois, dans le cas où la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lle doit comparaît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 délai d'un moi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faute de quoi elle est mise en liberté.

Article 411

Quelle que soit la peine encourue, le prévenu peut, par lettre adressée au président du tribunal et qui sera joint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demander à être jugé en son absence en étant représenté au cours de l'audience par son avocat ou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quelles que soi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prévenu a été cité.

L'avocat du prévenu, qui peut intervenir au cours des débats, est entendu dans sa plaidoirie et le prévenu est alors jugé contradictoirement.

Si le tribunal estime nécessaire la comparution personnelle du prévenu, il peut renvoyer l'affaire à une audience ultérieure en ordonnant cette comparu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cède alors à une nouvelle citation du prévenu.

Le prévenu qui ne répondrait pas à cette nouvelle citation peut être jugé contradictoirement si son avocat est présent et entendu.

Le tribunal peut également, le cas échéant, après avoir entendu les observations de l'avocat, renvoyer à nouveau l'affaire en fais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0-1.

Lorsque l'avocat du prévenu qui a demandé à ce qu'il soi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st pas présent au cours de l'audience, le prévenu est, sauf renvoi de l'affaire, jugé par jugement contradictoire à signifier.

Article 412

Si la citation n'a pas été délivrée à la personne du prévenu, et s'il n'est pas établi qu'il ait

864 프랑스 형사소송법

eu connaissance de la citation, la décision, au cas de non-comparution du prévenu, est rendue par défaut, sauf s'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1.

Dans tous les cas, si un avocat se présente pour assurer la défense du prévenu, il doit être entendu s'il en fait la demande.

Le jugement est alors contradictoire à signifier, sauf s'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 l'article 411.

Dans tous les cas, le tribunal peut, s'il l'estime nécessaire, renvoyer l'affaire à une audience ultérieure, en faisant le cas échéan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0-1.

Article 413

Nul n'est recevable à déclarer qu'il fait défaut dès lors qu'il est présent au début de l'audience.

Article 414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1, alinéas 1 et 2, sont applicables chaque fois que le débat sur le fond de la prévention ne doit pas être abordé, et spécialement quand le débat ne doit porter que sur les intérêts civils.

Article 415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peut toujours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ou un avoué. Dans ce cas, le jugement est contradictoire à son égard.

Article 416

Si le prévenu ne peut, en raison de son état de santé, comparaître devant le tribunal et s'il existe des raisons graves de ne point différer le jugement de l'affaire, le tribunal ordonne,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que le prévenu, éventuellement assisté de son avocat, sera entendu à son domicile ou à la maison d'arrêt dans laquelle il se trouve détenu, par un magistrat commis à cet effet, accompagné d'un greffier. Procès-verbal est dressé de cet interrogatoire.

Le débat est repris après citation nouvelle du prévenu, e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11, alinéas 1 et 2, sont applicables. Dans tous les cas, le prévenu est jugé contradictoirement.

Article 417

Le prévenu qui comparaît a la faculté de se faire assister par un défenseur.

S'il n'a pas fait choix d'un défenseur avant l'audience et s'il demande cependant à être assisté, le président en commet un d'office.

Le défenseur ne peut être choisi ou désigné que parmi les avocats inscrits à un barreau, ou parmi les avoués admis à plaider devant le tribunal.

L'assistance d'un défenseur est obligatoire quand le prévenu est atteint d'une infirmité de nature à compromettre sa défense, ou quand il encourt la peine de la tutelle pénale (1).

Paragraphe 2 : De la constitution de la partie civile et de ses effets

Article 418

Toute personne qui, conformément à l'article 2, prétend avoir été lésée par un délit, peut, si elle ne l'a déjà fai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à l'audience même.

Le ministère d'un avocat n'est pas obligatoire.

La partie civile peut, à l'appui de sa constitution, demander des dommages-intérêts correspondant au préjudice qui lui a été causé.

Article 419

La déclaration de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se fait soit avant l'audience au greffe, soit pendant l'audience par déclaration consignée par le greffier ou par dépôt de conclusions.

Article 420

Lorsqu'elle est faite avant l'audience, la déclaration de partie civile doit préciser l'infraction poursuivie et contenir élection de domicil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saisi, à moins que la partie civile n'y soit domiciliée.

Elle est immédiatement transmise par le greffier au ministère public qui cite la partie civile pour l'audience.

Article 420-1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toute personne qui se prétend lésée peut se constituer partie civile, directement ou par son avocat,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avis de réception ou par télécopie parvenue au tribunal vingt-quatre heures au moins avant la date de l'audience, lorsqu'elle demande soit la restitution d'objets saisis, soit des dommages-intérêts ; elle joint à sa demande toutes les pièces justificatives de son préjudice.

Ces documents sont immédiatement joints au dossier.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demande de restitution ou de dommages-intérêts peut également être formulée par la victime, au cours de l'enquête de police, auprès d'un officier ou d'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qui en dresse procès-verbal.

Cette demande vaut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si l'action publique est mise en mouvement et 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est directement saisi.

Dans les cas prévus aux deux alinéas précédents, la partie civile n'est pas tenue de comparaître.

En cas de contestation sur la propriété des objets dont la restitution est demandée, ou si le tribunal ne trouve pas dans la demande, dans les pièces jointes à celle-ci et dans le dossier, les motifs suffisants pour statuer, la décision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est renvoyée à une audience ultérieure à laquelle toutes les parties sont citées à la diligence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420-2

La décision rendue sur la demande de restitution d'objets saisis ou de dommages-intérêts présent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420-1 produit tous les effets d'une décision contradictoire ; elle est signifiée à la partie civile par exploit d'huissi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0 et suivants.

Article 421

A l'audience, la déclaration de partie civil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être faite avant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sur le fond ou, si le tribunal a ordonné l'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avant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sur la peine.

Article 422

La personne qui s'est constituée partie civile ne peut plus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Toutefois, la partie civile est assimilée au témoin en ce qui concerne le paiement des indemnité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tribunal.

Article 423

Le tribunal apprécie la recevabilité de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et, s'il échet, déclare cette constitution irrecevable. L'irrecevabilité peut également être soulevée par le ministère public, le prévenu, le civilement responsable ou une autre partie civile.

Article 424

La partie civile peut toujours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ou un avoué.
Dans ce cas le jugement est contradictoire à son égard.

Article 425

La partie civile régulièrement citée qui ne comparait pas ou n'est pas représentée à l'audience est considérée comme se désistant de s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En ce cas, et si l'action publique n'a été mise en mouvement que par la citation directe délivrée à la requête de la partie civile, le tribunal ne statue sur ladite action que s'il en est requis par le ministère public ; sauf au prévenu à demander au tribunal des dommages-intérêts pour abus de citation directe,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472.

Le jugement constatant le désistement présumé de la partie civile lui est signifié par exploit d'huissi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0 et suivants.

Ce jugement est assimilé à un jugement par défaut, et l'opposition est soumise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89 à 495.

Article 426

Le désistement de la partie civile ne met pas obstacle à l'action civil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Paragraphe 3 : De l'administration de la preuve

Article 427

Hors les cas où la loi en dispose autrement, les infractions peuvent être établies par tout mode de preuve et le juge décide d'après son intime conviction. Le juge ne peut fonder sa décision que sur des preuves qui lui sont apportées au cours des débats et contradictoirement discutées devant lui.

Article 428

L'aveu, comme tout élément de preuve, est laissé à la libre appréciation des juges.

Article 429

Tout procès-verbal ou rapport n'a de valeur probante que s'il est régulier en la forme, si son auteur a agi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et a rapporté sur une matière de sa compétence ce qu'il a vu, entendu ou constaté personnellement.

Tout procès-verbal d'interrogatoire ou d'audition doit comporter les questions auxquelles il est répondu.

Article 430

Sauf dans le cas où la loi en dispose autrement, les procès-verbaux et les rapports constatant les délits ne valent qu'à titre de simples renseignements.

Article 431

Dans les cas où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ou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ont reçu d'une disposition spéciale de la loi le pouvoir de constater des délits par des procès-verbaux ou des rapports, la preuve contraire ne peut être rapportée que par écrit ou par témoins.

Article 432

La preuve par écrit ne peut résulter de la correspondance échangée entre le prévenu et son avocat.

Article 433

Les matières donnant lieu à des procès-verbaux faisant foi jusqu'à inscription de faux sont réglées par des lois spéciales.

A défaut de disposition expresse la procédure de l'inscription de faux est réglée comme il est dit au titre II du livre IV.

Article 434

Si le tribunal estime qu'une expertise est nécessaire, il est procédé conformément aux articles 156 à 166, 168 et 169.

Article 435

Les témoins sont cités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550 et suivants.

Article 436

Après avoir procédé aux constatations prévues à l'article 406, le président ordonne aux témoins de se retirer dans la chambre qui leur est destinée.

Ils n'en sortent que pour déposer.

Le président prend, s'il en est besoin, toutes mesures utiles pour empêcher les témoins de conférer entre eux avant leur déposition.

Article 437

Toute personne citée pour être entendue comme témoin est tenue de comparaître, de prêter serment et de déposer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226-13 et 226-14 du code pénal.

Tout journaliste entendu comme témoin sur des informations recueillies dans l'exercice de son activité est libre de ne pas en révéler l'origine.

Article 438

Le témoin qui ne comparaît pas ou qui refuse, soit de prêter serment, soit de faire sa déposition, peut être,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condamné par le tribunal à une amende de 3 750 euros.

870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439

Si le témoin ne comparaît pas, et s'il n'a pas fait valoir un motif d'excuse reconnu valable et légitime, le tribunal peut,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ou même d'office, ordonner que ce témoin soit immédiatement amené devant lui par la force publique pour y être entendu, ou renvoyer l'affaire à une prochaine audience.

Article 440

Le témoin qui a été condamné à une amende ou aux frais pour non-comparution peut, au plus tard dans les cinq jours de la signification de cette décision faite à sa personne ou à son domicile former opposition.

La voie de l'appel ne lui est ouverte que sur le jugement rendu sur cette opposition.

Article 441

Le témoin qui a été condamné pour refus de prêter serment ou de déposer peut interjeter appel.

Article 442

Avant de procéder à l'audition des témoins, le président interroge le prévenu et reçoit ses déclarations.

Article 442-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01, le ministère public et les avocats des parties peuvent poser directement des questions au prévenu, à la partie civile, aux témoins et à toutes personnes appelées à la barre, en demandant la parole au président.

Le prévenu et la partie civile peuvent également poser des questions par l'intermédiaire du président.

Article 443

Lorsqu'un témoin est sourd-muet ou ne parle pas suffisamment la langue français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07 et 408 sont applicables.

Article 444

Les témoins déposent ensuite séparément, soit sur les faits reprochés au prévenu, soit sur sa personnalité et sur sa moralité.

Parmi les témoins cités, ceux qui sont produits par les parties poursuivantes sont entendus les premiers, sauf pour le président à régler lui-même souverainement l'ordre d'audition des témoins. Peuvent également, avec l'autorisation du tribunal, être admises à témoigner, les personnes, proposées par les parties, qui sont présentes à l'ouverture des débats sans avoir été régulièrement citées.

Article 445

Les témoins doivent, sur la demande du président, faire connaître leurs nom, prénoms, âge, profession et domicile, s'ils sont parents ou alliés du prévenu, de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ou de la partie civile et s'ils sont à leur service.

Le cas échéant, le président leur fait préciser quelles relations ils ont ou ont eues, avec le prévenu,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ou la partie civile.

Article 446

Avant de commencer leur déposition, les témoins prêtent le serment de dire tout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Article 447

Les enfants au-dessous de l'âge de seize ans sont entendus sans prestation de serment.

Article 448

Sont reçu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s dépositions :

- 1° Du père, de la mère ou de tout autre ascendant du prévenu ou de l'un des prévenus présents et impliqués dans la même affaire ;
- 2° Du fils, de la fille ou de tout autre descendant ;
- 3° Des frères et soeurs ;

872 프랑스 형사소송법

4° Des alliés aux mêmes degrés ;

5° Du mari ou de la femme ; cette prohibition subsiste même après le divorce.

Article 449

Toutefois les personnes visées aux articles 447 et 448 peuvent être entendues sous serment lorsque ni le ministère public ni aucune des parties ne s'y sont opposés.

Article 450

Le témoin qui a prêté le serment n'est pas tenu de le renouveler, s'il est entendu une seconde fois au cours des débats.

Le président lui rappellera, s'il y a lieu, le serment qu'il a prêté.

Article 451

La personne qui, agissant en vertu d'une obligation légale ou de sa propre initiative, a porté les faits poursuivis à la connaissance de la justice, est reçue en témoignage, mais le président en avertit le tribunal.

Celui dont la dénonciation est récompensée pécuniairement par la loi peut aussi être entendu en témoignage, à moins qu'il n'y ait opposition d'une des parties, ou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452

Les témoins déposent oralement.

Toutefois ils peuvent, exceptionnellement, s'aider de documents avec l'autorisation du président.

Article 453

Le greffier tient note du déroulement des débats et principalement, sous la direction du président, des déclarations des témoins ainsi que des réponses du prévenu.

Les notes d'audience sont signées par le greffier.

Elles sont visées par le président, au plus tard dans les trois jours qui suivent chaque audience.

Article 454

Après chaque déposition, le président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42-1, le ministère public et les parties posent au témoin les questions qu'ils jugent nécessaires.

Le témoin peut se retirer après sa déposition, à moins que le président n'en décide autrement.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la partie civile et le prévenu, peuvent demander, et le président peut toujours ordonner, qu'un témoin se retire momentanément de la salle d'audience après sa déposition, pour y être introduit et entendu s'il y a lieu après d'autres dépositions avec ou sans confrontation.

Article 455

Au cours des débats le président fait, s'il est nécessaire, représenter au prévenu ou aux témoins les pièces à conviction et reçoit leurs observations.

Article 456

Le tribunal,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artie civile ou du prévenu, peut ordonner tous transports utiles en vue de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es parties et leurs avocats sont appelés à y assister.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de ces opérations.

Article 457

Si d'après les débats la déposition d'un témoin paraît fausse, le président, soit d'office, soit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une des parties, fait consigner aux notes d'audience les dires précis du témoin.

Il peut enjoindre spécialement à ce témoin de demeurer à la disposition du tribunal, qui l'entendra à nouveau, s'il y a lieu.

Si le jugement doit être rendu le jour même, le président peut également faire garder ce témoin par la force publique dans ou hors la salle d'audience.

Après lecture du jugement sur le fond, le tribunal ordonne sa conduit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pour faux témoignage.

Il est dressé séance tenante par le tribunal, après la lecture du jugement sur le fond, un

874 프랑스 형사소송법

procès-verbal des faits ou des dires d'où peut résulter le faux témoignage.

Ce procès-verbal et une expédition des notes d'audience sont transmis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agraphe 4 : De la discussion par les parties

Article 45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end, au nom de la loi, les réquisitions tant écrites qu'orales qu'il croit convenables au bien de la justice.

Dans le cas où des réquisitions écrites sont prises, mention en est faite dans les notes tenues par le greffier et le tribunal est tenu d'y répondre.

Article 459

Le prévenu, les autres parties et leurs avocats peuvent déposer des conclusions.

Ces conclusions sont visées par le président et le greffier ; ce dernier mentionne ce dépôt aux notes d'audience.

Le tribunal qui est tenu de répondre aux conclusions ainsi régulièrement déposées doit joindre au fond les incidents et exceptions dont il est saisi, et y statuer par un seul et même jugement en se prononçant en premier lieu sur l'exception et ensuite sur le fond.

Il ne peut en être autrement qu'au cas d'impossibilité absolue, ou encore lorsqu'une décision immédiate sur l'incident ou sur l'exception est commandée par une disposition qui touche à l'ordre public.

Article 460

L'instruction à l'audience terminée, la partie civile est entendue en sa demande, le ministère public prend ses réquisitions, le prévenu, et, s'il y a lieu,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présentent leur défense.

La partie civile et le ministère public peuvent répliquer.

Le prévenu ou son avocat auront toujours la parole les derniers.

Article 460-1

Lorsque la personne qui se prétend lésée s'est constituée partie civi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420-1, le président donne lecture de sa demande dès que l'instruction à l'audience est terminée.

Le ministère public prend ses réquisitions ; le prévenu et, s'il y a lieu,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présentent leur défense.

Si le tribunal l'estime nécessaire, il peut ordonner la comparution de la partie civile.

En ce cas, les débats sur l'ensemble de l'affaire ou uniquement sur les intérêts civils sont renvoyés à une prochaine audience dont la date est immédiatement fixée.

Les parties sont tenues de comparaître sans autre citation à l'audience de renvoi I .

Il en est de même pour les personnes invitées par le tribunal à rester à sa disposition lorsqu'un avertissement écrit leur est immédiatement délivré.

Article 461

Si les débats ne peuvent être terminés au cours de la même audience, le tribunal fixe, par jugement, le jour où ils seront continués.

Les parties et les témoins non entendus, ou ceux qui ont été invités à rester à la disposition du tribunal, sont tenus de comparaître, sans autre citation, à l'audience de renvoi.

Section 5 : Du jugement

Article 462

Le jugement est rendu soit à l'audience même à laquelle ont eu lieu les débats, soit à une date ultérieure.

Dans ce dernier cas, le président informe les parties présentes du jour où le jugement sera prononcé.

Article 463

S'il y a lieu de procéder à un supplément d'information, le tribunal commet par jugement un

de ses membres qui dispose des pouvoirs prévus aux articles 151 à 155.

Dans le cas où la tutelle pénale est encourue (1), le juge commis procède ou fait procéder à tous les actes nécessaires au prononcé de cette mesure et, notamment, à l'enquête et à l'examen médico-psychologique prévus à l'article 81 (sixième et septième alinéas).

Ce supplément d'information obéit aux règles édictées par les articles 114, 119, 120 et 12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obtenir, au besoin par voie de réquisitions, la communication du dossier de la procédure à toute époque du supplément d'information, à charge de rendre les pièces dans les vingt-quatre heures.

Article 464

Si le tribunal estime que le fait constitue un délit, il prononce la peine.

Il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et peut ordonner le versement provisoire, en tout ou partie, des dommages-intérêts alloués.

Il a aussi la faculté, s'il ne peut se prononcer en l'état sur la demande en dommages-intérêts, d'accorder à la partie civile une provision, exécutoire nonobstant opposition ou appel.

Après avoir statué sur l'action publique, le tribunal peut, d'office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es parties, renvoyer l'affaire à une date ultérieure pour statuer sur l'action civile, même s'il n'ordonne pas de mesure d'instruction, afin de permettre à la partie civile d'apporter les justificatifs de ses demandes.

Ce renvoi est de droit lorsqu'il est demandé par les parties civiles.

Le tribunal doit alors fixer la date de l'audience à laquelle il sera statué sur l'action civile.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à cette audience n'est pas obligatoire.

A cette audience, le tribunal est composé du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estime, au résultat des débats, que le fait qui lui était déféré constitue un délit visé par l'article 398-1.

Article 464-1

A l'égard du prévenu détenu, le tribunal peut, en tout état de cause,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lorsque les éléments de l'espèce justifient la prolongation d'une mesure particulière de sûreté, maintenir la détention.

Pour l'exécution de cette décision, le mandat continue à produire ses effets.

Article 465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464, premier alinéa, s'il s'agit d'un délit de droit commun ou d'un délit d'ordre militaire prévu par le livre III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et si la peine prononcée est au moins d'une anné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le tribunal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lorsque les éléments de l'espèce justifient une mesure particulière de sûreté, décerner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Le mandat d'arrêt continue à produire son effet, même si le tribunal, sur opposition, ou la cour, sur appel, réduit la peine à moins d'une année d'emprisonnement.

Le mandat de dépôt décerné par le tribunal produit également effet lorsque, sur appel, la cour réduit la peine d'emprisonnement à moins d'une année.

Toutefois, le tribunal, sur opposition, ou la cour, sur appel, a la faculté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e donner mainlevée de ces mandats.

En toutes circonstances, les mandats décernés dans les cas susvisés continuent à produire leur effet, nonobstant le pourvoi en cassation.

Si la personne est arrêtée à la suite du mandat d'arrêt et qu'il s'agit d'un jugement rendu par défaut,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5-2.

Article 465-1

Lorsque les faits sont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tribunal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décerner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quelle que soit la durée de la peine d'emprisonnement prononcée.

S'il s'agit d'une récidive légale au sens des articles 132-16-1 et 132-16-4 du code pénal, le tribunal délivre mandat de dépôt à l'audience, quel que soit le quantum de la peine prononcée, sauf s'il en décide autrement par une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Article 466

Si le tribunal régulièrement saisi d'un fait qualifié délit par la loi, estime, au résultat des débats, que ce fait ne constitue qu'une contravention, il prononce la peine et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Article 467

Si le fait est une contravention connexe à un délit, le tribunal statue par un seul et même jugement, à charge d'appel sur le tout.

Article 468

Si le prévenu bénéficie d'une cause légale d'exemption de peine, le tribunal le déclare coupable et l'exempte de peine.

Il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ainsi qu'il est dit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464.

Article 469

Si le fait déféré au tribunal correctionnel sous la qualification de délit est de nature à entraîner une peine criminelle, le tribunal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Il peut,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décerner, par la même décisio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Les dispositions d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si le tribunal correctionnel, dans sa composition prévue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estime, au résultat des débats, que le fait qui lui était déféré sous la qualification de l'un des délits visés à l'article 398-1 est de nature à entraîner une peine prévue pour un délit non visé par cet article. Lorsqu'il est saisi par le renvoi ordonn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tribunal correctionnel ne peut pas faire application, d'office ou à la demande des parties,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i la victime était constituée partie civile et était assistée d'un avocat lorsque ce renvoi a été ordonné.

Toutefois, le tribunal correctionnel saisi de poursuites exercées pour un délit non intentionnel

conserve la possibilité de renvoyer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s'il résulte des débats que les faits sont de nature à entraîner une peine criminelle parce qu'ils ont été commis de façon intentionnelle.

Article 469-1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emier de l'article 464, le tribunal peut, après avoir déclaré le prévenu coupable, soit le dispenser de peine, soit ajourner le prononcé de celle-c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32-59 à 132-70 du code pénal et aux articles 747-3 et 747-4 du présent code.

Il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La dispense de peine exclut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prévoyant d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ou incapacités de quelque nature qu'elles soient qui résulteraient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Article 470

Si le tribunal estime que le fait poursuivi ne constitue aucune infraction à la loi pénale ou que le fait n'est pas établi, ou qu'il n'est pas imputable au prévenu, il renvoie celui-ci des fins de la poursuite.

Article 470-1

Le tribunal saisi, à l'initiative du ministère public ou sur renvoi d'une juridiction d'instruction, de poursuites exercées pour une infraction non intentionnelle au sens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121-3 du code pénal, et qui prononce une relaxe demeure compétent, sur la demande de la partie civile ou de son assureur formulée avant la clôture des débats, pour accorder, en application des règles du droit civil, réparation de tous les dommages résultant des faits qui ont fondé la poursuite. Toutefois, lorsqu'il apparaît que des tiers responsables doivent être mis en cause, le tribunal renvoie l'affaire, par une décision non susceptible de recours, devant la juridiction civile compétente qui l'examine d'urgence selon une procédure simplifiée détermin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470-2

Le tribunal correctionnel ne peut relaxer le prévenu en raison d'une des causes d'irresponsabilité pénale prévues par les articles 122-2, 122-3, 122-4, 122-5 et 122-7 du code pénal qu'après avoir constaté que celui-ci avait commis les faits qui lui étaient reprochés.

Dans le cas où il estime qu'est applicable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il statue conformément à l'article 706-133 relatif à la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Article 471

Nonobstant appel, le prévenu détenu qui n'a pas été condamné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sans sursis est mis en liberté immédiatement après le jugement.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lorsque la détention provisoire a été ordonnée ou mainten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64-1 ou de l'article 465, premier alinéa, aussitôt que la durée de la détention a atteint celle de la peine prononcée.

Le contrôle judiciaire prend fin sauf si le tribunal en décide autrement lorsqu'il prononce une condamnation à l'emprisonnement sans sursis ou assorti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Si un cautionnement a été fourni, les dispositions des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142-2 et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2-3 sont applicables.

Les sanctions pénale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5 à 131-11 et 132-25 à 132-70 du code pénal peuvent être déclarées exécutoires par provision. Si le tribunal a ordonné le maintien du contrôle judiciaire et que la personne se soustrait aux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1-2 sont applicables.

Lorsque le jugement est exécutoire et que le condamné est placé sous le régime de la mise à l'épreuve,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ésigner, pour veiller au respect des obligations, la personne physique ou morale qui était chargée de suivre l'intéressé dans le cadre d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472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470, lorsque la partie civile a elle-même mis en mouvement

l'action publique, le tribunal statue par le même jugement sur la demande en dommages-intérêts formée par la personne relaxée contre la partie civile pour abus de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rticle 474

En cas de condamnation d'une personne non incarcéré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ou pour laquelle la durée de déten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il est remis au condamné qui est présent à l'issue de l'audience un avis de convocation à comparaître, dans un délai qui ne saurait excéder trente jours,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vue de détermin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peine.

Le condamné est également avisé qu'il est convoqué aux mêmes fins deva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ans un délai qui ne saurait être supérieur à quarante-cinq jours.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avis de convocation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écise que, sauf exercice par le condamné des voies de recours, la peine prononcée contre lui sera mise à exécution e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il ne se présente pas, sans excuse légitime, devant ce magistrat.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orsque la personne est condamné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vec sursis assortie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ou bien à une peine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Toutefois, dans ces hypothèses, le condamné n'est convoqué que deva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Article 474-1

En cas de condamnation à des dommages et intérêts, lorsque les articles 706-15-1 et 706-15-2 sont applicables, la personne condamnée présente à l'issue de l'audience est informée qu'en l'absence de paiement volontaire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u jour où la décision sera devenue définitive, le recouvrement pourra, si la victime le demande, être exercé par le

882 프랑스 형사소송법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et qu'une majoration des dommages et intérêts, permettant de couvrir les dépenses engagées par le fonds au titre de sa mission d'aide, sera perçue par le fonds, en sus des frais d'exécution éventuels,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à l'article L. 422-9 du code des assurances.

Article 475-1

Le tribunal condamne l'auteur de l'infraction à payer à la partie civile la somme qu'il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non payés par l'Etat et exposés par celle-ci.

Le tribunal tient compte de l'équité o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a partie condamnée. Il peut, même d'office, pour des raisons tirées des mêmes considérations, dire qu'il n'y a pas lieu à cette condamna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organismes tiers payeurs intervenant à l'instance.

Article 478

Le prévenu, la partie civile ou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peut réclamer au tribunal saisi de la poursuite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la main de la justice.

Le tribunal peut ordonner d'office cette restitution.

Article 479

Toute personne autre que le prévenu, la partie civile ou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qui prétend avoir droit sur des objets placés sous la main de la justice, peut également en réclamer la restitution au tribunal saisi de la poursuite.

Seuls, les procès-verbaux relatifs à la saisie des objets peuvent lui être communiqués.

Le tribunal statue par jugement séparé, les parties entendues.

Article 480

Si le tribunal accorde la restitution, il peut prendre toutes mesures conservatoires pour assurer jusqu'à décision définitive sur le fond la représentation des objets restitués.

Article 480-1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un même délit sont tenues solidairement des restitutions et des dommages-intérêts.

En outre, le tribunal peut,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ordonner que le prévenu qui s'est entouré de coauteurs ou de complices insolvable sera tenu solidairement des amendes.

Article 481

Si le tribunal estime que les objets placés sous la main de la justice sont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ou susceptibles de confiscation, il surseoit à statuer jusqu'à sa décision sur le fond. Dans ce cas, le jugement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Le tribunal peut refuser la restitution lorsque celle-ci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Article 482

Le jugement qui rejette une demande de restitution est susceptible d'appel de la part de la personne qui a formé cette demande.

Le jugement qui accorde la restitution est susceptible d'appel de la part du ministère public et de la part du prévenu, de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ou de la partie civile à qui cette décision ferait grief.

La cour ne peut être saisie qu'après que le tribunal a statué au fond.

Article 484

Lorsque la cour d'appel est saisie du fond de l'affaire, elle est compétente pour statuer sur les restitutio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478 à 481.

La cour d'appel peut refuser la restitution lorsque celle-ci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Article 484-1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 confiscation portant sur un bien qui n'est pas sous main

884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justice, le tribunal correctionnel peut, afin de garantir l'exécution de cette peine, ordonner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u bien confisqué. Le tribunal peut également autoriser la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en vue de leur aliénation, des biens meubles confisqués dont il ordonne la saisie, lorsque ces biens ne sont plus nécessair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et que leur conservation serait de nature à en diminuer la valeur.

Dans ce cas le produit de la vente est consigné.

La décision du tribunal est exécutoire nonobstant l'appel ou l'opposition qui peut être formé à l'encontre de la condamnation.

Toutefois,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peut ordonner,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à la demande d'une des parties, la mainlevée totale ou partielle de ces mesures,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Les arrêts de relaxe ou qui ne confirment pas la confiscation du bien emportent de plein droit mainlevée de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ou, si le propriétaire en fait la demande, restitution du produit de la vente.

Article 485

Tout jugement doit contenir des motifs et un dispositif.

Les motifs constituent la base de la décision.

Le dispositif énonce les infractions dont les personnes citées sont déclarées coupables ou responsables ainsi que la peine, les textes de loi appliqués, et les condamnations civiles.

Il est donné lecture du jugement par le président ou par l'un des juges ; cette lecture peut être limitée au dispositif.

Dans le cas prévu par l'alinéa premier de l'article 398, elle peut être faite même en l'absence des autres magistrats du siège.

Article 486

La minute du jugement est datée et mentionne les noms des magistrats qui l'ont rendu ; la présence du ministère public à l'audience doit y être constatée.

Après avoir été signée par le président et le greffier, la minute est déposée au greffe du tribunal dans les trois jours au plus tard du prononcé du jugement.

Ce dépôt est mentionné sur le registre spécialement tenu au greffe à cet effet.

En cas d'empêchement du président, mention en est faite sur la minute qui est signée par celui des juges qui donne lecture du jugement.

Section 6 : Du jugement par défaut et de l'opposition

Paragraphe 1er : Du défaut

Article 487

Sauf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410, 411, 414, 415, 416 et 424, toute personne régulièrement citée qui ne comparait pas au jour et à l'heure fixés par la citation est jugée par défaut,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412.

Article 488

Le jugement prononcé par défaut est signifié par exploit d'huissi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0 et suivants.

Paragraphe 2 : De l'opposition

Article 489

Le jugement par défaut est non avenu dans toutes ses dispositions, si le prévenu forme opposition à son exécution.

Il peut toutefois limiter cette opposition aux dispositions civiles du jugement.

Article 490

L'opposition es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u ministère public, à charge par lui d'en aviser la partie civil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rticle 490-1

Lorsque l'opposant est détenu, l'opposition peut être faite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datée et sign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lle est également signée par le demandeur.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et par tout moyen, au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rticle 491

Si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a été faite à la personne du prévenu, l'opposition doit être formée dans les délais ci-après, qui courent à compter de cette signification : dix jours si le prévenu réside en France métropolitaine, un mois s'il réside hors de ce territoire.

Article 492

Si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n'a pas été faite à la personne du prévenu, l'opposition doit être formée dans les délais ci-après, qui courent 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faite à domicile, à étude d'huissier de justice ou à parquet : dix jours si le prévenu réside dans la France métropolitaine, un mois s'il réside hors de ce territoire.

Toutefois, s'il s'agit d'un jugement de condamnation et s'il ne résulte pas, soit de l'avis constatant remise de la lettre recommandée ou du récépissé prévus aux articles 557 et 558, soit d'un acte d'exécution quelconque, ou de l'avis donné conformément à l'article 560, que le prévenu a eu connaissance de la signification, l'opposition tant en ce qui concerne les intérêts civils que la condamnation pénale reste recevable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Dans les cas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le délai d'opposition court à compter du jour où le prévenu a eu cette connaissance.

Article 493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et la partie civile peuvent former opposition à tout jugement

par défaut à leur encontre, dans les délais fixés à l'article 491, lesquels courent 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quel qu'en soit le mode.

Paragraphe 3 : De l'itératif défaut

Article 494

L'opposition est non avenue si l'opposant ne comparaît pas à la date qui lui est fixée soit par la notification à lui faite verbalement et constatée par procès-verbal au moment où l'opposition a été formée, soit par une nouvelle citation, délivrée à la personne de l'intéress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0 et suivants.

Toutefois,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sans sursis, le tribunal peut ordonner le renvoi de l'affaire à une prochaine audience sans qu'il y ait lieu à délivrance de nouvelles citations et donner l'ordre à la force publique de rechercher et de conduire l'opposant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siège du tribunal qui, soit le fait comparaître à l'audience de renvoi, soit le met en demeure de s'y présenter.

Si l'opposant est trouvé en dehors du ressort du tribunal, il est conduit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qui le met en demeure de se présenter à l'audience de renvoi.

Dans tous les ca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resse procès-verbal de ses diligences et l'opposant ne peut être retenu plus de vingt-quatre heures.

Si les recherches ordonnées sont demeurées sans effet, le tribunal déclare l'opposition non avenue sans nouveau renvoi.

Il en est de même si l'opposant, régulièrement mis en demeure, ne comparaît pas.

Article 494-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premier à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494 et si des circonstances particulières le justifient, le tribunal peut, par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modifier le jugement frappé d'opposition, sans possibilité d'aggravation de la peine.

Section 7 :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Article 495

Peuvent être soumis à la procédure simplifiée prévue à la présente section :

- 1°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 route et les contraventions connexes prévues par ce code ;
- 2° Les délits en matière de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transports terrestres ;
- 3° Les délits prévus au titre IV du livre IV du code de commerce pour lesquels une peine d'emprisonnement n'est pas encourue ;
- 4° Le délit d'usage de produits stupéfiant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342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5° Le délit prévu par l'article L. 126-3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Cette procédure n'est pas applicable :

- 1° Si le prévenu était âgé de moins de dix-huit ans au jour de l'infraction ;
- 2° Si la victime a formulé, au cours de l'enquête, une demande de dommages et intérêts ou de restitution, ou a fait directement citer le prévenu avant qu'ait été rendue l'ordonnance prévue à l'article 495-1 ;
- 3° Si le délit prévu par le code de la route a été commis en même temps qu'une contravention ou qu'un délit d'homicide involontaire ou d'atteinte involontaire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Le ministère public ne peut recourir à la procédure simplifiée que lorsqu'il résulte de l'enquête de police judiciaire que les faits reprochés au prévenu sont établis et que les renseignements concernant la personnalité de celui-ci, et notamment ses charges et ses ressources, sont suffisants pour permettre la détermination de la peine.

Article 495-1

Le ministère public qui choisit la procédure simplifiée communique au président du tribunal le dossier de la poursuite et ses réquisitions.

Le président statue sans débat préalable par une ordonnance pénale portant relaxe ou condamnation à une amende ainsi que, le cas échéant, à 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ces peines pouvant être prononcées à titre de peine principale. S'il

estime qu'un débat contradictoire est utile ou qu'une peine d'emprisonnement devrait être prononcée, le juge renvoie le dossier au ministère public.

Article 495-2

L'ordonnance mentionne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et domicile du prévenu, la qualification légale, la date et le lieu du fait imputé, la mention des textes applicables et, en cas de condamnation, la ou les peines prononcées.

L'ordonnance pénale doit être motivée, au regard notamment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495.

Article 495-3

Dès qu'elle est rendue, l'ordonnance pénale est transmise au ministère public qui, dans les dix jours, peut soit former opposi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soit en poursuivre l'exécution. Cette ordonnance es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u préven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Elle peut également être portée à la connaissance du prévenu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Le prévenu est informé qu'il dispose d'un délai de quarante-cinq jours à compter de cette notification pour former opposition à l'ordonnance et que cette opposition permettra que l'affaire fasse l'objet d'un débat contradictoire et public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au cours duquel il pourra être assisté par un avocat, dont il pourra demander la commission d'office.

Le prévenu est également informé 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s'il l'estime coupable d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aura la possibilité de prononcer contre lui une peine d'emprisonnement si celle-ci est encourue pour le délit ayant fait l'objet de l'ordonnance.

En l'absence d'opposition, l'ordonnance est exécutée suivant les règle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pour l'exécution des jugements correctionnels.

Toutefois, s'il ne résulte pas de l'avis de réception que le prévenu a reçu la lettre de notification, l'opposition reste recevable jusqu'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ente jours qui court de la date à laquelle l'intéressé a eu connaissance, d'une part, de la condamnation, soit par un acte

890 프랑스 형사소송법

d'exécution, soit par tout autre moyen, d'autre part, du délai et des formes de l'opposition qui lui sont ouvertes.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arrête le recouvrement dès réception de l'avis d'opposition à l'ordonnance pénale établi par le greffe.

Article 495-4

En cas d'opposition formée par le ministère public ou par le prévenu, l'affaire est portée à l'audience du tribunal correctionnel.

Le jugement rendu par défaut, sur l'opposition du prévenu, n'est pas susceptible d'opposition.

Jusqu'à l'ouverture des débats, le prévenu peut renoncer expressément à son opposition.

L'ordonnance pénale reprend alors sa force exécutoire et une nouvelle opposition n'est pas recevable.

Article 495-5

L'ordonnance pénale, à laquelle il n'a pas été formé opposition ou qui n'a pas été portée par le ministère public à l'audience du tribunal correctionnel, a les effets d'un jugement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Cependant, elle n'a pas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à l'égard de l'action civile en ré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infraction.

Article 495-6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ne font pas échec aux droits de la partie lésée de citer l'auteur des fait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Le tribunal statue uniquement sur les intérêts civils si l'ordonnance pénale a acquis la force de chose jugée.

A cette audience, le tribunal est composé du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Article 495-6-1

L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L. 335-2, L. 335-3 et L. 335-4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orsqu'ils sont commis au moyen d'un service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peuvent

également faire l'objet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de l'ordonnance pénale prévue par la présente section.

[Dispositions déclarées non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par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9-590 DC du 22 octobre 2009.]

Article 495-6-2

Les infractions prévues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L. 152-1 du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peuvent également faire l'objet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prévue par la présente section.

Section 8 : De 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Article 495-7

Pour les délits punis à titre principal d'une peine d'amende ou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office ou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ou de son avocat, recourir à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à l'égard de toute personne convoquée à cette fin ou déférée devant lui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3, lorsque cette personne reconnaît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Article 495-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proposer à la personne d'exécuter une ou plusieurs des peines principales ou complémentaires encourues ; la nature et le quantum de la ou des peines sont détermin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2-24 du code pénal.

Lorsqu'est proposée une peine d'emprisonnement, sa durée ne peut être supérieure à un an ni excéder la moitié de la peine d'emprisonnement encourue.

Le procureur peut proposer qu'elle soit assortie en tout ou partie du sursis.

Il peut également proposer qu'elle fasse l'objet d'une des mesures d'aménagement énumérées par l'article 712-6.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opose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il précise à la personne s'il entend que cette peine soit immédiatement mise à exécution ou si la personne sera convoqué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que soient déterminées les modalités de son exécution, notamment la semi-liberté, le placement à l'extérieur ou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orsqu'est proposée une peine d'amende, son montant ne peut être supérieur à celui de l'amende encourue.

Elle peut être assortie du sursis.

Les déclarations par lesquelles la personne reconnaît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sont recueillies, et la proposition de peine est fait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présence de l'avocat de l'intéressé choisi par lui ou, à sa demande, désigné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l'intéressé étant informé que les frais seront à sa charge sauf s'il rempli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ide juridictionnelle.

La personne ne peut renoncer à son droit d'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L'avocat doit pouvoir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La personne peut librement s'entretenir avec son avocat, hors la prés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vant de faire connaître sa décision.

Elle est av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elle peut demander à disposer d'un délai de dix jours avant de faire connaître si elle accepte ou si elle refuse la ou les peines proposées.

Article 495-9

Lorsque, en présence de son avocat, la personne accepte la ou les peines proposées, elle est aussitôt présentée devan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saisi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ne requête en homologation.

Si la personne n'est pas détenue, elle peut être convoquée devan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dans un délai inférieur ou égal à un mois.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entend la personne et son avocat.

Après avoir vérifié la réalité des faits et leur qualification juridique, il peut décider d'homologuer

les peines propos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statue le jour même par ordonnance motivée.

La procédure prévue par le présent alinéa se déroule en audience publique ; la prés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cette audience n'est pas obligatoire.

Article 495-10

Lorsque la personne demande à bénéficier, avant de se prononcer sur la proposition fait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délai prévu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495-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la présenter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que celui-ci ordonne son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à titre exceptionnel et si l'une des peines proposées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eux mois d'emprisonnement ferme et 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proposé sa mise à exécution immédiate, son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394 ou les articles 395 et 396, jusqu'à ce qu'elle comparaisse de nouveau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te nouvelle comparution doit intervenir dans un délai compris entre dix et vingt jours à compter de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A défaut, il est mis fin au contrôle judiciaire, à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à la détention provisoire de l'intéressé si l'une de ces mesures a été prise.

Article 495-11

L'ordonnance par laquell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décide d'homologuer la ou les peines proposées est motivée par les constatations, d'une part, que la personne, en présence de son avocat, reconnaît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t accepte la ou les peines propos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utre part, que cette ou ces peines sont justifiées au regard des circonstances de l'infraction et de la personnalité de son auteur.

L'ordonnance a les effets d'un jugement de condamnation.

Elle est immédiatement exécutoire.

894 프랑스 형사소송법

Lorsque la peine homologuée est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la personne est,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95-8, soit immédiatement incarcérée en maison d'arrêt, soit convoqué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à qui l'ordonnance est alors transmise sans délai.

Dans tous les cas, elle peut faire l'objet d'un appel de la part du condamn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98, 500, 502 et 505.

Le ministère public peut faire appel à titre incid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A défaut, elle a les effets d'un jugement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Article 495-12

Lorsque la personne déclare ne pas accepter la ou les peines proposées ou qu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son délégué rend une ordonnance de refus d'homolog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sauf élément nouveau, le tribunal correctionnel selon l'une des procédures prévues par l'article 388 ou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Lorsque la personne avait été déférée devant lui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3,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la retenir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e juge d'instruction, qui doit avoir lieu le jour mêm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395 ; si la réunion du tribunal n'est pas possible le jour même,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6.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applicables y compris si la personne avait demandé à bénéficier d'un délai et avait été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95-8 et 495-10.

Article 495-13

Lorsque la victime de l'infraction est identifiée, elle est informée sans délai, par tout moyen, de cette procédure.

Elle est invitée à comparaître en même temps que l'auteur des faits, accompagn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devan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pour se constituer partie civile et demander réparation de son préjudic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statue sur cette demande, même dans le cas où la partie civile n'a pas comparu à l'audien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20-1.

La partie civile peut faire appel de l'ordonnanc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98 et 500.

Si la victime n'a pu exercer le droi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t l'informer de son droit de lui demander de citer l'auteur des faits à une audience du tribunal correctionnel statuant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464, dont elle sera avisée de la date, pour lui permettre de se constituer partie civile.

Le tribunal statue alors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au vu du dossier de la procédure qui est versé au débat.

Article 495-14

A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des formalités accompli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495-8 à 495-13.

Lorsque la personne n'a pas accepté la ou les peines proposées ou lorsqu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n'a pas homologué la proposi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procès-verbal ne peut être transmis à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 jugement, et ni le ministère public ni les parties ne peuvent faire état devant cette juridiction des déclarations faites ou des documents remis au cours de la procédure.

Article 495-15

Le prévenu qui a fait l'objet, pour l'un des délits mentionnés à l'article 495-7, d'une citation directe ou d'une convocation en justic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90 ou 390-1 peut, soit lui-même, soit par l'intermédiaire de son avocat, indiquer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dressé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l reconnaît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t demander l'application de la procédure prévue par la présente section. Dans ce ca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il l'estime opportun, procéd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95-8 et suivants, après avoir convoqué le prévenu et son avocat

ainsi que, le cas échéant, la victime.

La citation directe ou la convocation en justice sont alors caduques, sauf si la personne refuse d'accepter les peines proposées ou si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refuse de les homologuer lorsque l'un ou l'autre de ces refus intervient plus de dix jours avant la date de l'audienc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mentionnée dans l'acte de poursuite initi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rsqu'il décide de ne pas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95-8 et suivants, n'est pas tenu d'en aviser le prévenu ou son avoca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personnes renvoyée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par le juge d'instruction.

Article 495-15-1

La mise en oeuvre de la procédure prévue par la présente section n'interdit pa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rocéder simultanément à une convocation en justi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0-1.

La saisine du tribunal résultant de cette convocation en justice est caduque si la personne accepte la ou les peines proposées et que celles-ci font l'objet d'une ordonnance d'homologation.

Article 495-16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ne sont applicables ni aux mineurs de dix-huit ans ni en matière de délits de presse, de délits d'homicides involontaires, de délits politiques ou de délits dont la procédure de poursuite est prévue par une loi spéciale.

Chapitre II : De la cour d'appel en matière correctionnelle

Section 1 : De l'exercice du droit d'appel

Article 496

Les jugements rendus en matière correctionnelle peuvent être attaqués par la voie de l'appel. L'appel est porté à la cour d'appel.

Article 497

La faculté d'appeler appartient :

- 1° Au prévenu ;
- 2° A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quant aux intérêts civils seulement ;
- 3° A la partie civile, quant à ses intérêts civils seulement ;
- 4°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5° Aux administrations publiques, dans les cas où celles-ci exercent l'action publique ;
- 6°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Article 498

Sans préjudice de l'article 505, l'appel est interjeté dans le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u prononcé du jugement contradictoire.

Toutefois, le délai d'appel ne court qu'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quel qu'en soit le mode :

- 1° Pour la partie qui,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n'était pas présente ou représentée à l'audience où le jugement a été prononcé, mais seulement dans le cas où elle-même ou son représentant n'auraient pas été informés du jour où le jugement serait prononcé ;
- 2° Pour le prévenu qui a été jugé en son absence, mais après audition d'un avocat qui s'est présenté pour assurer sa défense, sans cependant être titulaire d'un mandat de représentation signé du prévenu ;
- 3° Pour le prévenu qui n'a pas comparu dans le cas prévu par le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411, lorsque son avocat n'était pas présent. Il en est de même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410 et 494-1,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498-1.

Article 498-1

Pour un jugement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ou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e d'un sursis partiel, rend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10 et qui n'a pas été signifié à personne, le délai d'appel ne court 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898 프랑스 형사소송법

du jugement faite à domicile, à étude d'huissier de justice ou à parquet qu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Le jugement est exécutoire à l'expiration de ce délai.

S'il ne résulte pas soit de l'avis constatant la remise de la lettre recommandée ou du récépissé prévus aux articles 557 et 558, soit d'un acte d'exécution quelconque ou de l'avis donné conformément à l'article 560, que le prévenu a eu connaissance de la signification, l'appel, tant en ce qui concerne les intérêts civils que la condamnation pénale, reste recevable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le délai d'appel courant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 prévenu a eu connaissance de la condamnation.

Si la personne a été écrouée en 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après l'expiration du délai de dix jour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et qu'elle forme appel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elle demeure toutefois détenue, sous le régime de la détention provisoire et sans préjudice de son droit de former d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jusqu'à l'audience devant la cour d'appel.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itératif défaut.

Article 499

Si le jugement est rendu par défaut ou par itératif défaut, le délai d'appel ne court qu'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u jugement, quel qu'en soit le mode.

Article 500

En cas d'appel d'une des parties pendant les délais ci-dessus, les autres parties ont un délai supplémentaire de cinq jours pour interjeter appel.

Article 500-1

Lorsqu'il intervient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ppel, le désistement par le prévenu ou la partie civile de son appel principal entraîne la caducité des appels incidents, y compris celui du ministère public si ce désistement intervient dans les formes prévues pour la déclaration d'appel.

Constitue un appel incident l'appel formé dan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500, ainsi que l'appel formé, à la suite d'un précédent appel,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es articles 498 ou 505, lorsque l'appelant précise qu'il s'agit d'un appel incident.

Dans tous les cas, le ministère public peut toujours se désister de son appel formé après celui du prévenu en cas de désistement de celui-ci.

Le désistement d'appel est constaté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Article 501

Lorsque le tribunal statue sur une demande de mise en liberté conformément aux articles 148-1 et 148-2 ainsi que lorsqu'il statue sur une demande de mainlevée ou de modification de contrôle judiciaire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ppel doit être formé dans un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Article 502

La déclaration d'appel doit être faite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Elle doit être signée par le greffier et par l'appelant lui-même, ou par un avoué près la juridiction qui a statué, ou par un avocat, ou par un fondé de pouvoir spécial ; dans ce dernier cas, le pouvoir es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Si l'appelant ne peut signer, il en sera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Elle est inscrite sur un registre public à ce destiné et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s'en faire délivrer une copie.

Article 503

Lorsque l'appelant est détenu, l'appel peut être fait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datée et sign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lle est également signée par l'appelant ;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900 프랑스 형사소송법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 il est transcrit sur le registre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502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Article 503-1

Lorsqu'il est libre, le prévenu qui forme appel doit déclarer son adresse personnelle.

Il peut toutefois lui substituer l'adresse d'un tiers chargé de recevoir les citations, rectifications et significations qui lui seront destinées s'il produit l'accord de ce dernier.

Cette déclaration est faite par l'avocat du prévenu si c'est celui-ci qui forme l'appel.

A défaut d'une telle déclaration, est considérée comme adresse déclarée du prévenu celle figurant dans le jugement rendu en premier ressort.

Le prévenu ou son avocat doit signaler auprè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jusqu'au jugement définitif de l'affaire,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e citation,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est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et le prévenu qui ne comparaît pas à l'audience sans excuse reconnue valable par la cour d'appel est jugé par arrêt contradictoire à signifier.

Si le prévenu, détenu au moment de l'appel, est remis en liberté avant l'examen de son affaire par la cour d'appel, il doit faire la déclaration d'adresse prévue par le présent article préalablement à sa mise en liberté auprès du chef de la maison d'arrêt.

Article 504

Une requête contenant les moyens d'appel peut être remise dans les délais prévus pour la déclaration d'appel au greffe du tribunal ; elle est signée de l'appelant ou d'un avocat inscrit à un barreau ou d'un avoué ou d'un fondé de pouvoir spécial.

La requête, ainsi que les pièces de la procédure sont envoy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arquet de la cour dans le plus bref délai.

Si le prévenu est en état d'arrestation, il est également, dans le plus bref délai, et par ord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ransféré dans la maison d'arrêt du lieu où siège la cour d'appel.

Article 505

En cas de jugement de condamnation,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également former son appel dans le délai de vingt jours à compter du jour du prononcé de la décision.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98 à 500, les autres parties ont alors un délai de cinq jours pour interjeter appel incident.

Même en l'absence d'appel incident, la cour d'appel peut, en cas d'appel formé par le seul procureur général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prononcer une peine moins importante que celle prononcé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Article 505-1

Lorsqu'il est fait appel après expiration des délais prévus aux articles 498, 500 ou 505, lorsque l'appel est devenu sans objet ou lorsque l'appelant s'est désisté de son appel,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rend d'office une ordonnance de non-admission de l'appel qui n'est pas susceptible de voies de recours.

Article 506

Pendant les délais d'appel et durant l'instance d'appel, il est sursis à l'exécution du jugeme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64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464-1, 471, 507, 508 et 708.

Article 507

Lorsque le tribunal statue par jugement distinct du jugement sur le fond, l'appel est immédiatement recevable si ce jugement met fin à la procédure.

Dans le cas contraire et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appel, le jugement n'est pas exécutoire et le tribunal ne peut statuer au fond.

Si appel n'a pas été interjeté ou si,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appel, la partie appelante n'a pas déposé au greffe la requête prévue à l'alinéa suivant, le jugement est exécutoire et le tribunal statue au fond.

La partie appelante peut déposer au greffe, avant l'expiration des délais d'appel, une requête

adressé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et tendant à faire déclarer l'appel immédiatement recevable.

Article 508

Le greffier avise le président du tribunal du dépôt de cette requête.

Le jugement n'est pas exécutoire et le tribunal ne peut statuer au fond tant qu'il n'a pas été prononcé sur ladite requête.

Dès que le greffier a reçu l'appel et la requête il fait parvenir celle-ci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ainsi qu'une expédition du jugement et de l'acte d'appel.

Le président statue sur la requête, par ordonnance non motivée,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e ce dossier.

S'il rejette la requête, le jugement est exécutoire et le tribunal se prononce au fond ; aucun recours n'est recevable contre l'ordonnance du président et l'appel n'est alors jugé qu'en même temps que l'appel formé contre le jugement sur le fond.

Si,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 ou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le président fait droit à la requête, il fixe la date à laquelle l'appel sera jugé.

La cour doit statuer dans le mois qui suit l'ordonnance du président, sans que puisse être soulevée devant elle une exception tirée de ce que l'appel formé contre la décision entreprise ne serait pas suspensif ; l'exécution du jugement est suspendue dans ce dernier cas jusqu'à ce qu'intervienne l'arrêt de la cour.

Article 509

L'affaire est dévolue à la cour d'appel dans la limite fixée par l'acte d'appel et par la qualité de l'appelant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515.

L'appel de l'assureur produit effet à l'égard de l'assuré en ce qui concerne l'action civile.

Il est, dans un délai de trois jours, notifié à l'assuré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dressée par l'assureur.

Section 2 : De la composition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Article 510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est composée d'un président de chambre et de deux conseillers.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ou par l'un de ses avocats généraux ou de ses substituts ; celles du greffe par un greffier de la cour d'appel.

Article 511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sont fixés à la fin de chaque année judiciaire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par une décision conjointe du premier président et du procureur général prise après avis de l'assemblée générale de la cour d'appel.

En cas de nécessité, cette décision peut être modifi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 cours d'année.

En cas d'impossibilité de parvenir à une décision conjointe,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sont fixés par le seul premier président.

Section 3 : De la procédure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Article 512

Les règles édictées pour le tribunal correctionnel sont applicables devant la cour d'appel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suivantes.

Article 513

L'appel est jugé à l'audience sur le rapport oral d'un conseiller ; le prévenu est interrogé.

Les témoins cités par le prévenu sont entendus dans les règles prévues aux articles 435 à 457.

Le ministère public peut s'y opposer si ces témoins ont déjà été entendus par le tribunal.

La cour tranche avant tout débat au fond.

Après que l'appelant ou son représentant a sommairement indiqué les motifs de son appel, les parties en cause ont la parole dans l'ordre prévu par l'article 460.

Le prévenu ou son avocat auront toujours la parole les derniers.

Article 514

Si la cour estime que l'appel est tardif ou irrégulièrement formé, elle le déclare irrecevable. Si elle estime que l'appel, bien que recevable, n'est pas fondé, elle confirme le jugement attaqué.

Article 515

La cour peut, sur l'appel du ministère public, soit confirmer le jugement, soit l'infirmer en tout ou en partie dans un sens favorable ou défavorable au prévenu.

La cour ne peut, sur le seul appel du prévenu, du civilement responsable, de la partie civile ou de l'assureur de l'une de ces personnes, aggraver le sort de l'appelant.

La partie civile ne peut, en cause d'appel, former aucune demande nouvelle ; toutefois elle peut demander une augmentation des dommages-intérêts pour le préjudice souffert depuis la décision de première instance.

Article 515-1

Lorsque le tribunal, statuant sur l'action civile, a ordonné le versement provisoire, en tout ou en partie, des dommages-intérêts alloués, cette exécution provisoire peut être arrêtée, en cause d'appel, par le premier président statuant en référé si elle risque d'entraîner des conséquences manifestement excessives.

Le premier président peut subordonner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provisoire à la constitution d'une garantie, réelle ou personnelle, suffisante pour répondre de toutes restitutions ou réparations.

Lorsque l'exécution provisoire a été refusée par le tribunal statuant sur l'action civile ou lorsque l'exécution provisoire n'a pas été demandée, ou si, l'ayant été, le tribunal a omis de statuer, elle peut être accordée, en cas d'appel, par le premier président statuant en référé.

Article 516

Si le jugement est réformé parce que la cour estime qu'il n'y a ni crime, ni délit, ni contravention, ou que le fait n'est pas établi ou qu'il n'est pas imputable au prévenu, elle renvoie celui-ci des fins de la poursuite.

Dans ce cas, si le prévenu acquitté demande des dommages-intérêt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72, il porte directement sa demande devant la cour d'appel.

Article 517

Si le jugement est réformé parce que la cour estime que le prévenu bénéficie d'une cause légale d'exemption de peine, elle se conforme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468.

Article 518

Si le jugement est annulé parce que la cour estime que le fait ne constitue qu'une contravention, elle prononce la peine et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Article 519

Si le jugement est annulé parce que la cour estime que le fait est de nature à entraîner une peine criminelle, la cour d'appel se déclare incompétente.

Elle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Elle peut,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décerner par la même décisio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Article 520

Si le jugement est annulé pour violation ou omission non réparée de formes prescrites par la loi à peine de nullité, la cour évoque et statue sur le fond.

Article 520-1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95-11, la cour évoque l'affaire et statue sur le fond sans pouvoir prononcer une peine plus sévère que celle homologué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le juge délégué par lui, sauf s'il y a appel formé par le ministère public.

Titre III : Du jugement des contraventions

Chapitre Ier : De la compétence du tribunal de police et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rticle 521

Le tribunal de police connaît d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onnaît d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eut toutefois précise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qui sont de la compétence du tribunal de police.

Le tribunal de police est également compétent en cas de poursuite concomitante d'une contravention

relevant de sa compétence avec une contravention connexe relevant de la compétence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rticle 522

Est compétent le tribunal de police du lieu de commission ou de constatation de la contravention ou celui de la résidence du prévenu.

Est également compétent le tribunal de police du siège de l'entreprise détentrice du véhicule en cas de contravention, soit aux règles relatives au chargement ou à l'équipement de ce véhicule, soit aux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transports terrestres.

Les articles 383 à 387 sont applicables au jugement des infractions de la compétence du tribunal de police.

Article 522-1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es juridictions de proximité est identique à celle prévue par l'article 522 pour les tribunaux de police, y compris les tribunaux d'instance ayant compétence exclusive en matière péna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623-2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Article 522-2

Lorsqu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onstate que la qualification retenue dans l'acte qui la saisit concerne des faits relevant de la compétence du tribunal de police, elle renvoie l'affaire devant ce tribunal après s'être déclarée incompétente.

Il en est de même lorsque le tribunal de police est saisi de faits relevant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e renvoi peut le cas échéant se faire à une audience qui se tient le même jour.

Article 523

Le tribunal de police est constitué par le juge du tribunal d'instance, un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45 et suivants, et un greffier.

Article 523-1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est constituée comme il est dit aux articles L. 331-7 et L. 331-9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ont exercées par un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45 à 48 du présent code.

Chapitre II :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Article 524

Toute contravention de police même commise en état de récidive, peut être soumise à la procédure simplifiée prévue au présent chapitre.

Cette procédure n'est pas applicable :

- 1° Si la contravention est prévue par le code du travail ;
- 2° Si le prévenu, auteur d'une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était âgé de moins de dix-huit ans au jour de l'infraction.

Cette procédure ne peut plus être poursuivie lorsque la victime du dommage causé par la

908 프랑스 형사소송법

contravention a fait citer directement le prévenu avant qu'ait été rendue l'ordonnance prévue à l'article 525.

Article 525

Le ministère public qui choisit la procédure simplifiée communique au juge du tribunal de police ou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dossier de la poursuite et ses réquisitions.

Le juge statue sans débat préalable par une ordonnance pénale portant soit relaxe, soit condamnation à une amende ainsi que, le cas échéant, à une ou plusieurs des peines complémentaires encourues.

S'il estime qu'un débat contradictoire est utile, le juge renvoie le dossier au ministère public aux fins de poursuite dans les formes de la procédure ordinaire.

Article 526

L'ordonnance contient les nom, prénoms, date et lieu de naissance et domicile du prévenu, la qualification légale, la date et le lieu du fait imputé, la mention des textes applicables et, en cas de condamnation, le montant de l'amende ainsi que la durée de la contrainte judiciaire. Le juge n'est pas tenu de motiver l'ordonnance pénale.

Article 527

Le ministère public peut, dans les dix jours de l'ordonnance, former opposition à son exécu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Si, à l'expiration du délai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le ministère public n'a pas fait opposition, l'ordonnance pénale est notifiée au préven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et exécutée suivant les règle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pour l'exécution des jugements de police.

Le prévenu peut,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nvoi de la lettre, former opposition à l'exécution de l'ordonnance.

A défaut de paiement ou d'opposition dans le délai ci-dessus, l'amende et le droit fixe de procédure sont exigibles.

Toutefois, s'il ne résulte pas de l'avis de réception que le prévenu a reçu la lettre de notification, l'opposition reste recevable jusqu'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ente jours qui courent de la date à laquelle l'intéressé a eu connaissance, d'une part, de la condamnation, soit par un acte d'exécution, soit par tout autre moyen, d'autre part, du délai et des formes de l'opposition qui lui est ouverte.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arrête le recouvrement dès réception de l'avis d'opposition à l'ordonnance pénale établi par le greffe.

Article 528

En cas d'opposition formée par le ministère public ou par le prévenu, l'affaire est portée à l'audience du tribunal de police ou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dans les formes de la procédure ordinaire.

Le jugement rendu par défaut, sur l'opposition du prévenu, ne sera pas susceptible d'opposition.

Jusqu'à l'ouverture des débats, le prévenu peut renoncer expressément à son opposition.

L'ordonnance pénale reprend alors sa force exécutoire et une nouvelle opposition est irrecevable.

Article 528-1

L'ordonnance pénale à laquelle il n'a pas été formé opposition a les effets d'un jugement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Cependant, elle n'a pas l'autorité de la chose jugée à l'égard de l'action civile en réparation des dommages causés par l'infraction.

Article 528-2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ne font pas échec au droit de la partie lésée de citer directement le contrevenant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orsque la citation est délivrée après qu'une ordonnance pénale a été rendue sur les mêmes faits,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tatue :

Sur l'action publique et sur les intérêts civils si l'ordonnance pénale a fait l'objet d'une opposition dans l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527 et au plus tard à l'ouverture des débats ;

Sur les intérêts civils seulement si aucune opposition n'a été formée ou si le prévenu a déclaré expressément, au plus tard à l'ouverture des débats, renoncer à son opposition ou à son droit d'opposition.

Il en est de même s'il est établi que l'ordonnance pénale a fait l'objet d'un paiement volontaire.

Chapitre II bis : De la procédure de l'amende forfaitaire

Section 1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certaines contraventions

Article 529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le paiement d'une amende forfaitaire qui est exclusive de l'application des règles de la récidive.

Toutefois, la procédure de l'amende forfaitaire n'est pas applicable si plusieurs infractions, dont l'une au moins ne peut donner lieu à une amende forfaitaire, ont été constatées simultanément.

Article 529-1

Le montant de l'amende forfaitaire peut être acquitté soit entre les mains de l'agent verbalisateur au moment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soit auprès du service indiqué dans l'avis de contravention dans les quarante-cinq jours qui suivent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ou, si cet avis est ultérieurement envoyé à l'intéressé, dans les quarante-cinq jours qui suivent cet envoi.

Article 529-2

Dan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précédent, le contrevenant doit s'acquitter du montant de l'amende forfaitaire, à moins qu'il ne formule dans le même délai une requête tendant à son exonération auprès du service indiqué dans l'avis de contravention.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529-10, cette requête doit être accompagnée de l'un des documents exigés par cet article.

Cette requête est transmise au ministère public.

A défaut de paiement ou d'une requête présentée dans le délai de quarante-cinq jours, l'amende forfaitaire est majorée de plein droit et recouvrée au profit du Trésor public en vertu d'un titre rendu exécutoire par le ministère public.

Section 2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certaines infractions à la police des services publics de transports terrestres

Article 529-3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à la police des services publics de transports ferroviaires et des services de transports publics de personnes, réguliers et à la demande, constatées par les agents assermentés de l'exploitant,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dérogation à l'article 521 du présent code, par une transaction entre l'exploitant et le contrevenant. Toutefois,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si plusieurs infractions dont l'une au moins ne peut donner lieu à transaction ont été constatées simultanément.

Article 529-4

La transaction est réalisée par le versement à l'exploitant d'une indemnité forfaitaire et, le cas échéant, de la somme due au titre du transport.

I. - Ce versement est effectué :

- 1° Soit, au moment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entre les mains de l'agent de l'exploitant ;
 - 2° Soit,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auprès du service de l'exploitan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de transaction ; dans ce dernier cas, il y est ajouté aux sommes dues le montant des frais de constitution du dossier.
- A défaut de paiement immédiat entre ses mains, l'agent de l'exploitant est habilité à recueillir le nom et l'adresse du contrevenant ; en cas de besoin, il peut requérir l'assistance d'un officier ou d'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Le montant de l'indemnité forfaitaire et, le cas échéant, celui des frais de constitution du dossier sont acquis à l'exploitant.

912 프랑스 형사소송법

- II. - A défaut de paiement immédiat entre leurs mains, les agents de l'exploitant, s'ils ont été agréé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assermentés, sont habilités à relever l'identité et l'adresse du contrevenant.

Si le contrevenant refuse ou se trouve dans l'impossibilité de justifier de son identité, l'agent de l'exploitant en rend compte immédiatement à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nationale ou de la gendarmerie nationa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qui peut alors lui ordonner sans délai de lui présenter sur-le-champ le contrevenant.

A défaut de cet ordre, l'agent de l'exploitant ne peut retenir le contrevenant.

Lorsq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mentionné au présent alinéa décide de procéder à une vérification d'ident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8-3, le délai prévu au troisième alinéa de cet article court à compter du relevé d'identité.

Il est mis fin immédiatement à la procédure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si le contrevenant procède au versement de l'indemnité forfaitaire.

- III. -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II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gents de l'exploitant doivent, aux frais de ce dernier, suivre une formation spécifique afin de pouvoir obtenir l'agrément délivr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définit en outr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représentant de l'Etat approuve l'organisation que l'exploitant arrête aux fins d'assurer les contrôles précités et les modalités de coordination et de transmission d'informations entre l'exploitant et la police ou la gendarmerie nationales.

Article 529-5

Dan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précédent, le contrevenant doit s'acquitter du montant des sommes dues au titre de la transaction, à moins qu'il ne formule dans le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une protestation auprès du service de l'exploitant. Cette protestation, accompagnée du procès-verbal d'infraction, est transmise au ministère public. A défaut de paiement ou de protestation dans le délai de deux mois précité, le procès-verbal d'infraction est adressé par l'exploitant au ministère public et le contrevenant

devient redevable de plein droit d'une amende forfaitaire majorée recouvrée par le Trésor public en vertu d'un titre rendu exécutoire par le ministère public.

Article 529-5-1

Les officiers du ministère public près d'une ou plusieurs juridictions de proximité dont la liste et le ressort sont fixés par décret sont compétents pour établir les titres exécutoires des amendes forfaitaires majorées prévus par l'article 529-5 lorsqu'ils concernent des contraven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529-3 et commises au préjudice de certains exploitants de services de transport public de personnes dont la liste est précisée par décret.

Cette compétence est concurrente de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522-1.

En cas de protestation ou de réclamation devant donner lieu à la saisine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es officiers du ministère public transmettent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ministère public compétent à raison du domicile du contrevenant.

Article 529-6

I . # Pour les contraventions pour non-paiement du péage constatées par les agents assermentés de l'exploitant d'une autoroute ou d'un ouvrage routier ouvert à la circulation publique et soumis à péage, y compris dans le cadre de l'article L. 130-9 du code de la route,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dérogation à l'article 521 du présent code, par une transaction entre l'exploitant et le contrevenant.

Toutefois, le premier alinéa n'est pas applicable si plusieurs infractions, dont l'une au moins ne peut donner lieu à transaction, ont été constatées simultanément.

II . # La transaction est réalisée par le versement à l'exploitant d'une indemnité forfaitaire, de la somme due au titre du péage et, le cas échéant, au titre du droit départemental de passage institu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321-11 du code de l'environnement.

Ce versement est effectué,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envoi de l'avis de paiement au domicile de l'intéressé, auprès du service de l'exploitan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de transaction.

Le montant de l'indemnité forfaitaire, de la somme due au titre du péage et, le cas échéant,

914 프랑스 형사소송법

au titre du droit départemental de passage institué en application du même article L. 321-11 est acquis à l'exploitant.

III. # Dans le délai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u II, le contrevenant doit s'acquitter du montant des sommes dues au titre de la transaction, à moins qu'il ne formule dans ce même délai une protestation auprès de l'exploitant.

Cette protestation, accompagnée du procès-verbal de contravention, est transmise au ministère public.

A défaut de paiement ou de protestation dans le délai de deux mois précité, le procès-verbal de contravention est adressé par l'exploitant au ministère public et le titulaire du certificat d'immatriculation, ou l'une des personnes visé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L. 121-2 du code de la route, devient redevable de plein droit d'une amende forfaitaire majorée recouvrée par le Trésor public en vertu d'un titre rendu exécutoire par le ministère public.

Section 2 bis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certaines infractions au code de la route

Article 529-7

Pour les contraventions au code de la route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classe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à l'exception de celles relatives au stationnement, l'amende forfaitaire est minorée si le contrevenant en règle le mont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529-8.

Article 529-8

Le montant de l'amende forfaitaire minorée peut être acquitté soit entre les mains de l'agent verbalisateur au moment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soit dans un délai de trois jours à compter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ou, si l'avis de contravention est ultérieurement envoyé à l'intéressé, dans le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cet envoi.

En cas de non-paiement de l'amende forfaitaire minor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ci-dessus, le contrevenant est redevable de l'amende forfaitaire.

Article 529-9

L'amende forfaitaire doit être versée dans le délai de quarante-cinq jours à compter de la constatation de l'infraction ou l'envoi de l'avis de contraven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529-2 relatives à la requête aux fins d'exonération et à la majoration de plein droit sont applicables.

Article 529-10

Lorsque l'avis d'amende forfaitaire concernant une des contraven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L. 121-3 du code de la route a été adressé au titulaire du certificat d'immatriculation ou aux personnes visé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L. 121-2 de ce code, la requête en exonération prévue par l'article 529-2 ou la réclamation prévue par l'article 530 n'est recevable que si elle est adress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et si elle est accompagnée :

1° Soit de l'un des documents suivants :

- a) Le récépissé du dépôt de plainte pour vol ou destruction du véhicule ou pour le délit d'usurpation de plaque d'immatriculation prévu par l'article L. 317-4-1 du code de la route, ou une copie de la déclaration de destruction de véhicule établ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code de la route ;
- b) Une lettre signée de l'auteur de la requête ou de la réclamation précisant l'identité, l'adresse, ainsi que la référence du permis de conduire de la personne qui était présumée conduire le véhicule lorsque la contravention a été constatée ;

2° Soit d'un document démontrant qu'il a été acquitté une consignation préalable d'un montant égal à celui de l'amende forfaitaire dans le cas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2, ou à celui de l'amende forfaitaire majorée dans le cas prévu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30 ; cette consignation n'est pas assimilable au paiement de l'amende forfaitaire et ne donne pas lieu au retrait des points du permis de conduire prévu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L. 223-1 du code de la route.

L'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vérifie si les conditions de recevabilité de la requête ou de la réclamation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remplies.

Article 529-11

L'avis de contravention prévu par les articles 529-1 et 529-8 ou l'avis de paiement de la transaction prévue par l'article 529-6 peut être envoyé à la suite de la constatation d'une contravention au code de la route réalisée grâce à un appareil homologué de contrôle automatique.

En cas de réclamation portée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ocès-verbal ou le rapport de l'officier ou de l'agent de police judiciaire ou de l'agent verbalisateur faisant état du résultat de ce contrôle est alors dressé.

Ce procès-verbal peut être revêtu d'une signature manuelle numérisée.

Section 3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530

Le titre mentionné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529-2, au second alinéa de l'article 529-5 ou au second alinéa du III de l'article 529-6 est exécuté suivant les règle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pour l'exécution des jugements de police.

La prescription de la peine commence à courir à compter de la signature par le ministère public du titre exécutoire, qui peut être individuel ou collectif.

Dans les trente jours de l'envoi de l'avis invitant le contrevenant à payer l'amende forfaitaire majorée, l'intéressé peut former auprès du ministère public une réclamation motivée qui a pour effet d'annuler le titre exécutoire en ce qui concerne l'amende contestée.

Cette réclamation reste recevable tant que la peine n'est pas prescrite, s'il ne résulte pas d'un acte d'exécution ou de tout autre moyen de preuve que l'intéressé a eu connaissance de l'amende forfaitaire majorée.

S'il s'agit d'une contravention au code de la route, la réclamation n'est toutefois plus recevable à l'issue d'un délai de trois mois lorsque l'avis d'amende forfaitaire majorée est envoyé par lettre recommandée à l'adresse figurant sur l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du véhicule, sauf si le contrevenant justifie qu'il a,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déclaré son changement d'adresse au service d'immatriculation des véhicules ; dans ce dernier cas, le contrevenant n'est redevable

que d'une somme égale au montant de l'amende forfaitaire s'il s'en acquitte dans un délai de quarante-cinq jours, ce qui a pour effet d'annuler le titre exécutoire pour le montant de la majoration.

La réclamation doit être accompagnée de l'avis d'amende forfaitaire majorée correspondant à l'amende considérée ainsi que, dans le cas prévu par l'article 529-10, de l'un des documents exigés par cet article, à défaut de quoi elle est irrecevable.

Article 530-1

Au vu de la requête fait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2, de la protestation formulé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5, de celle prévue par le III de l'article 529-6 ou de la réclamation fait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30, le ministère public peut, soit renoncer à l'exercice des poursuites, soit procéder conformément aux articles 524 à 528-2 ou aux articles 531 et suivants, soit aviser l'intéressé de l'irrecevabilité de la réclamation non motivée ou non accompagnée de l'avis.

En cas de condamnation, l'amende prononcée ne peut être inférieure au montant de l'amende ou de l'indemnité forfaitaire dans les cas prévu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2,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5 ou le premier alinéa du III de l'article 529-6, ni être inférieure au montant de l'amende forfaitaire majorée dans les cas prévus par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529-2, le second alinéa de l'article 529-5 et le second alinéa du III de l'article 529-6.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529-10, en cas de classement sans suite ou de relaxe, s'il a été procédé à la consignation prévue par cet article, le montant de la consignation est reversé à la personne à qui avait été adressé l'avis de paiement de l'amende forfaitaire ou ayant fait l'objet des poursuites.

Les modalités de ce remboursement sont définies par voie réglementaire.

En cas de condamnation, l'amende prononcée ne peut être inférieure au montan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augmenté d'une somme de 10 %.

Article 530-2

Les incidents contentieux relatifs à l'exécution du titre exécutoire et à la rectification des erreurs

918 프랑스 형사소송법

matérielles qu'il peut comporter sont déférés à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qui stat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1.

Article 530-2-1

Lorsque les avis de contravention ou d'amende forfaitaire majorée sont adressés à une personne résidant à l'étranger, les délais prévus par les articles 529-1, 529-2, 529-8, 529-9 et 530 sont augmentés d'un mois.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29-10 et 530 du présent code et des articles L. 121-2 et L. 121-3 du code de la route relatives aux titulaires du certificat d'immatriculation du véhicule sont applicables aux personnes dont l'identité figure sur les documents équivalents délivrés par des autorités étrangères.

Article 530-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 montant des amendes et indemnités forfaitaires, des amendes forfaitaires minorées et des amendes forfaitaires majorées ainsi que des frais de constitution de dossier e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en déterminant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agents habilités à constater les infractions sont assermentés et perçoivent le montant des amendes forfaitaires et celui des transactions.

Article 530-4

Lorsque la personne qui a fait l'objet d'une amende forfaitaire majorée ne conteste pas la réalité de la contravention mais sollicite, en raison de ses difficultés financières, des délais de paiement ou une remise gracieuse, elle adresse sa demande motivée non pas à l'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mais au comptable public compétent.

Dans ce cas, l'article 529-10 n'est pas applicable.

S'il estime la demande justifiée,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peut alors octroyer des délais ou rendre une décision de remise gracieuse partielle ou totale, le cas échéant en appliquant une diminution de 20 % des sommes dues, conformément à l'article 707-4.

Chapitre III : De la saisine du tribunal de police et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rticle 531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est saisi des infractions de sa compétence soit par le renvoi qui lui en est fait par la juridiction d'instruction, soit par la comparution volontaire des parties, soit par la citation délivrée directement au prévenu et à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de l'infraction.

Article 532

L'avertissement délivré par le ministère public dispense de citation s'il est suivi de la comparution volontaire de la personne à laquelle il est adressé.

Il indique l'infraction poursuivie et vise le texte de loi qui la réprime.

Article 533

Les articles 388-1, 388-2, 388-3 et 390 à 392-1 sont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et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hapitre IV : De l'instruction définitiv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e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rticle 534

Avant le jour de l'audience, le président peut, sur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artie civile, estimer ou faire estimer les dommages, dresser ou faire dresser des procès-verbaux, faire ou ordonner tous actes requérant célérité.

Article 535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00 à 405, 406 à 408, sont applicables à la procédu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et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Toutefois, les sanctions prévues par l'article 404, alinéa 2, ne peuvent être prononcées que par

920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tribunal correctionnel, saisi par le ministère public, au vu du procès verbal dressé par le juge du tribunal de police ou par le juge de proximité relatant l'incident.

Article 536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es règles édictées par les articles 418 à 426 concernant la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 par les articles 427 à 457 relatifs à l'administration de la preuve sous réserve de ce qui est dit à l'article 537 ; par les articles 458 à 461 concernant la discussion par les parties ; par l'article 462 relatif au jugement.

Article 537

Les contraventions sont prouvées soit par procès-verbaux ou rapports, soit par témoins à défaut de rapports et procès-verbaux, ou à leur appui.

Sauf dans les cas où la loi en dispose autrement, les procès-verbaux ou rapports établis par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t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ou les fonctionnaires ou agents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auxquels la loi a attribué le pouvoir de constater les contraventions, font foi jusqu'à preuve contraire.

La preuve contraire ne peut être rapportée que par écrit ou par témoins.

Article 538

S'il y a lieu à supplément d'information, il y est procédé par le juge du tribunal de police ou par le juge de proximité, conformément aux articles 114, 119, 120 et 121.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63, alinéa 3, sont applicables.

Article 539

Si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estime que le fait constitue une contravention, il prononce la pein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59 à 132-70 du code pénal et des articles 747-3 et 747-4 du présent code.

Il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464, alinéas 2 et 3.

Article 540

Si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estime que le fait constitue un crime ou un délit, il se déclare incompétent.

Il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Article 541

Si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estime que le fait ne constitue aucune infraction à la loi pénale, ou que le fait n'est pas établi, ou qu'il n'est pas imputable au prévenu, il renvoie celui-ci des fins de la poursuit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70-1 sont applicables.

Article 542

Si le prévenu bénéficie d'une cause légale d'exemption de peine,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déclare coupable et l'exempte de peine.

Il statue, s'il y a lieu, sur l'action civile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539.

Article 543

Sont applicables à la procédu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et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s articles 475-1 à 486 et 749 à 762 concernant les frais de justice et dépens, la restitution des objets placés sous la main de la justice et la forme des jugements.

Toutefoi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80-1 ne sont applicables qu'aux condamnés pour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Chapitre V : Du jugement par défaut et de l'opposition

Article 544

Sont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et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10 à 415 relatives à la comparution et à la représentation du prévenu et de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Toutefois, lorsque la contravention poursuivie n'est passible que d'une peine d'amende, le prévenu peut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ou par un fondé de procuration spéciale.

Article 545

Sont également applicables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87 et 488 relatives aux jugements par défaut, et 489 à 495 relatives à l'opposition.

Chapitre VI : De l'appel des jugements de police

Article 546

La faculté d'appeler appartient au prévenu, à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rocureur général et à l'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près le tribunal de police e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lorsque l'amende encourue est cell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cinquième classe, lorsqu'a été prononcée la peine prévue par le 1° de l'article 131-16 du code pénal, ou lorsque la peine d'amende prononcée est supérieure au maximum de l'amende encour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deuxième classe.

Lorsque des dommages et intérêts ont été alloués, la faculté d'appeler appartient également au prévenu et à la personne civilement responsable.

Cette faculté appartient dans tous les cas à la partie civile quant à ses intérêts civils seulement. Dans les affaires poursuivies à la requête de l'administration des eaux et forêts, l'appel est toujours possible de la part de toutes les parties, quelles que soient la nature et l'importance des condamnations.

Article 547

L'appel des jugements de police est porté à la cour d'appel.

Cet appel est interjeté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es articles 498 à 500.

L'appel est suivi et jugé dans la même forme que les appels des jugements correctionnels.

La cour est cependant composée du seul président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siégeant à juge unique.

Les articles 502 à 504, alinéas 1er et 2, sont applicables à l'appel des jugements de police.

Article 549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05 à 509, 511 et 514 à 520, sont applicables aux jugements rendus par les tribunaux de police ou les juridictions de proximité.

La cour d'appel, saisie de l'appel d'un jugement d'incompétence du tribunal de police ou de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i elle constate que le fait poursuivi constitue un délit, prononce la peine et statue, s'il y a lieu, sur les dommages-intérêts.

Titre IV : Des citations et significations

Article 550

Les citations et significations, sauf disposition contraire des lois et règlements, sont faites par exploit d'huissier de justice.

Les notifications sont faites par voie administrative.

L'huissier ne peut instrumenter pour lui-même, pour son conjoint, pour ses parents et alliés et ceux de son conjoint, en ligne directe à l'infini, ni pour ses parents et alliés collatéraux, jusqu'au degré de cousin issu de germain inclusivement.

L'exploit de citation ou de signification contient la désignation du requérant, la date, les nom, prénoms et adresse de l'huissier, ainsi que les nom, prénoms et adresse du destinataire ou, si le destinataire est une personne morale, sa dénomination et son siège.

La personne qui reçoit copie de l'exploit signe l'original ; si elle ne veut ou ne peut signer, mention en est faite par l'huissier.

Article 551

La citation est délivrée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artie civile, et de toute administration qui y est légalement habilitée.

L'huissier doit déférer sans délai à leur réquisition.

La citation énonce le fait poursuivi et vise le texte de la loi qui le réprime.

Elle indique le tribunal saisi, le lieu, l'heure et la date de l'audience, et précise la qualité de

prévenu, de civilement responsable, ou de témoin de la personne citée. Si elle est délivrée à la requête de la partie civile, elle mentionne, s'il s'agit d'une personne physique, ses nom, prénoms, profession et domicile réel ou élu et, s'il s'agit d'une personne morale, sa forme, sa dénomination, son siège social et l'organe qui la représente légalement. La citation délivrée à un témoin doit en outre mentionner que la non-comparution, le refus de témoigner et le faux témoignage sont punis par la loi.

Article 552

Le délai entre le jour où la citation est délivrée et le jour fixé pour l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est d'au moins dix jours, si la partie citée réside dans un département de la France métropolitaine ou si, résidant dans un département d'outre-mer, elle est citée devant un tribunal de ce département.

Ce délai est augmenté d'un mois si la partie citée devant le tribunal d'un département d'outre-mer réside dans un autre département d'outre-mer, dans un territoire d'outre-mer, à Saint-Pierre-et-Miquelon ou Mayotte ou en France métropolitaine, ou si, cité devant un tribunal d'un département de la France métropolitaine, elle réside dans un département ou territoire d'outre-mer, à Saint-Pierre-et-Miquelon ou Mayotte.

Si la partie citée réside à l'étranger, ce délai est augmenté d'un mois si elle demeure dans 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et de deux mois dans les autres cas.

Article 553

Si les délais prescrits à l'article précédent n'ont pas été observés, les règles suivantes sont applicables :

1° Dans le cas où la partie citée ne se présente pas, la citation doit être déclarée nulle par le tribunal

2° Dans le cas où la partie citée se présente, la citation n'est pas nulle mais le tribunal doit, sur la demande de la partie citée, ordonner le renvoi à une audience ultérieure.

Cette demande doit être présentée avant toute défense au fond,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385.

Article 554

La signification des décisions, dans les cas où elle est nécessaire, est effectuée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artie civile.

Article 555

L'huissier doit faire toutes diligences pour parvenir à la délivrance de son exploit à la personne même du destinataire ou, si le destinataire est une personne morale, à son représentant légal, à un fondé de pouvoir de ce dernier ou à toute personne habilitée à cet effet ; il lui en remet une copie.

Lorsque la signification est faite à une personne morale, l'huissier doit, en outre et sans délai, informer celle-ci par lettre simple de la signification effectuée, du nom du requérant ainsi que de l'identité de la personne à laquelle la copie a été remise.

Article 555-1

Vaut signification à personne par exploit d'huissier la notification d'une décision effectuée soit, si la personne est détenu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oit, si la personne se trouve dans les locaux d'une juridiction pénale, par un greffier ou par un magistrat.

Article 556

Si la personne visée par l'exploit est absente de son domicile, la copie est remise à un parent allié, serviteur ou à une personne résidant à ce domicile. L'huissier indique dans l'exploit la qualité déclarée par la personne à laquelle est faite cette remise.

Article 557

Si la copie a été remise à une personne résidant au domicile de celui que l'exploit concerne, l'huissier informe sans délai l'intéressé de cette remis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avis de réception.

Lorsqu'il résulte de l'avis de réception, signé par l'intéressé, que celui-ci a reçu la lettre recommandée de l'huissier, l'exploit remis à domicile produit les mêmes effets que s'il avait été délivré à personne.

L'huissier peut également , à la place de la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mentionnée à l'alinéa précédent, envoyer à l'intéressé par lettre simple une copie de l'acte accompagnée d'un récépissé que le destinataire est invité à réexpédier par voie postale ou à déposer à l'étude de l'huissier, revêtu de sa signature.

Lorsque ce récépissé signé a été renvoyé, l'exploit remis à domicile produit les mêmes effets que s'il avait été remis à personne.

Le domicile de la personne morale s'entend du lieu de son siège.

Article 558

Si l'huissier ne trouve personne au domicile de celui que l'exploit concerne, il vérifie immédiatement l'exactitude de ce domicile.

Lorsque le domicile indiqué est bien celui de l'intéressé, l'huissier mentionne dans l'exploit ses diligences et constatations, puis il informe sans délai l'intéressé,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en lui faisant connaître qu'il doit retirer dans les plus brefs délais la copie de l'exploit signifié à l'étude de l'huissier de justice, contre récépissé ou émargement, par l'intéressé ou par toute personne spécialement mandatée.

Si l'exploit est une signification de jugement rendu par itératif défaut, la lettre recommandée mentionne la nature de l'acte signifié et le délai d'appel.

Lorsqu'il résulte de l'avis de réception, signé par l'intéressé, que celui-ci a reçu la lettre recommandée de l'huissier, l'exploit déposé à l'étude de l'huissier de justice produit les mêmes effets que s'il avait été délivré à personne.

L'huissier peut également, à la place de la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mentionnée aux précédents alinéas, envoyer à l'intéressé par lettre simple une copie de l'acte ou laisser à son domicile un avis de passage invitant l'intéressé à se présenter à son étude afin de retirer la copie de l'exploit contre récépissé ou émargement.

La copie et l'avis de passage sont accompagnés d'un récépissé que le destinataire est invité à réexpédier par voie postale ou à déposer à l'étude de l'huissier, revêtu de sa signature.

Lorsque l'huissier laisse un avis de passage, il adresse également une lettre simple à la personne.

Lorsque ce récépissé a été renvoyé, l'exploit déposé à l'étude de l'huissier de justice produit

les mêmes effets que s'il avait été remis à personne.

Si l'exploit est une citation à comparaître, il ne pourra produire les effets visés aux troisième et cinquième alinéas que si le délai entre, d'une part, le jour où l'avis de réception est signé par l'intéressé, le jour où le récépissé a été renvoyé ou le jour où la personne s'est présentée à l'étude et, d'autre part, le jour indiqué pour la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est au moins égal à celui fixé, compte tenu de l'éloignement du domicile de l'intéressé, par l'article 552.

Article 559

Si la personne visée par l'exploit est sans domicile ou résidence connus, l'huissier remet une copie de l'exploit au parqu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saisi.

L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sont applicables à la signification d'un acte concernant une personne morale dont le siège est inconnu.

Article 559-1

Si l'exploit est une signification de décision, l'huissier doit avoir accompli les diligences prévues par les articles 555 à 559 dans un délai maximal de quarante-cinq jours à compter de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artie civile. A l'expiration de ce délai, l'huissier doit informer le ministère public qu'il n'a pu accomplir la significa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alors faire procéder à la signific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560.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ans sa requête porter jusqu'à trois mois le délai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Article 560

Lorsqu'il n'est pas établi que l'intéressé a reçu la lettre qui lui a été adressée par l'huissi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557 et 558, ou lorsque l'exploit a été délivré au parquet,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peut être requ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l'effet de procéder à des recherches en vue de découvrir l'adresse de l'intéressé.

En cas de découverte de ce dernier, l'officier ou l'agent de police judiciaire lui donne connaissance de l'exploit, qui produit alors les mêmes effets que s'il avait été délivré à personne. Dans tous les cas, l'officier ou l'agent de police judiciaire dresse procès-verbal de ses recherches et le transmet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rsqu'il s'agit d'une citation à préven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donner l'ordre à la force publique de rechercher l'intéressé.

En cas de découverte de ce dernier, il en est immédiatement avisé et peut adresser, par tout moyen, une copie de l'exploit pour notification par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Cette notification vaut signification à personne.

Lorsqu'un prévenu visé par un acte de citation n'a pu être découvert avant la date fixée pour l'audience, l'ordre de recherche peut être maintenu.

En cas de découvert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faire notifier à l'intéress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0-1, une convocation en justic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requérir de toute administration, entreprise, établissement ou organisme de toute nature soumis au contrôle de l'autorité administrative, sans qu'il soit possible de lui opposer le secret professionnel, de lui communiquer tous renseignements en sa possession aux fins de déterminer l'adresse du domicile ou de la résidence du prévenu.

Article 561

Dan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557 et 558, la copie est délivrée sous enveloppe fermée ne portant d'autres indications, d'un côté que les nom, prénoms, adresse de l'intéressé ou, si le destinataire est une personne morale, que ses dénomination et adresse, et de l'autre que le cachet de l'étude de l'huissier apposé sur la fermeture du pli.

Article 562

Si la personne réside à l'étranger, elle est citée au parqu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sais I .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vise l'original et en envoie la copie a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ou à toute autorité déterminée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sont applicables aux personnes morales qui ont leur siège à l'étranger.

Article 563

Dans tous les cas, l'huissier doit mentionner sur l'original de l'exploit, et sous forme de procès-verbal, ses diligences ainsi que les réponses qui ont été faites à ses différentes interpellatio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prescrire à l'huissier de nouvelles recherches, s'il estime incomplètes celles qui ont été effectuées.

L'original de l'exploit doit être adressé à la personne à la requête de qui il a été délivré, dans les vingt-quatre heures.

En outre, si l'exploit a été délivré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une copie de l'exploit doit être jointe à l'original.

Article 564

Les huissiers sont tenus de mettre, à la fin de l'original et de la copie de l'exploit, le coût de celui-ci, à peine d'une amende civile de 3 à 15 euros ; cette amende est prononcée par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saisie de l'affaire.

Article 565

La nullité d'un exploit ne peut être prononcée que lorsqu'elle a eu pour effet de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de la personne qu'il concerne, sous réserve, pour les délais de cit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553, 2°.

Article 566

Si un exploit est déclaré nul par le fait de l'huissier, celui-ci peut être condamné aux frais de l'exploit et de la procédure annulée, et éventuellement à des dommages-intérêts envers la partie à laquelle il est porté préjudice.

La juridiction qui déclare la nullité a compétence pour prononcer ces condamnations.

Livre III : Des voies de recours extraordinaires

Titre Ier : Du pourvoi en cassation

Chapitre Ier : Des décisions susceptibles d'être attaquées et des conditions du pourvoi

Article 567

Les arrêt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les arrêts et jugements rendus en dernier ressort en matière criminelle, correctionnelle et de police peuvent être annulés en cas de violation de la loi sur pourvoi en cassation formé par le ministère public ou par la partie à laquelle il est fait grief, suivant les distinctions qui vont être établies.

Le recours est porté devant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567-1

Si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constate qu'il a été formé un pourvoi contre une décision qui n'est pas susceptible de voie de recours, il rend une ordonnance de non-admission du pourvoi. Sa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567-1-1

Lorsque la solution d'une affaire soumise à la chambre criminelle lui paraît s'imposer, le premier président ou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peut décider de faire juger l'affaire par une formation de trois magistrats.

Cette formation peut renvoyer l'examen de l'affaire à l'audience de la chambre à la demande de l'une des parties ; le renvoi est de droit si l'un des magistrats composant la formation restreinte le demande.

La formation déclare non admis les pourvois irrecevables ou non fondés sur un moyen sérieux de cassation.

Article 567-2

La chambre criminelle saisie d'un pourvoi contre un 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ndu en matière de détention provisoire doit statuer dans les trois mois qui suivent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faute de quo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Le demandeur en cassation ou son avocat doit, à peine de déchéance, déposer son mémoire exposant les moyens de cassation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ssier, sauf décision d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prorogeant, à titre exceptionnel, le délai pour une durée de huit jours.

Après l'expiration de ce délai, aucun moyen nouveau ne peut être soulevé par lui et il ne peut plus être déposé de mémoire.

Dès le dépôt du mémoir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fixe la date de l'audience.

Article 568

Le ministère public et toutes les parties ont cinq jours francs après celui où la décision attaquée a été prononcée pour se pourvoir en cassation.

Toutefois, le délai de pourvoi ne court qu'à compter de la signification de l'arrêt, quel qu'en soit le mode :

- 1° Pour la partie qui,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n'était pas présente ou représentée à l'audience où l'arrêt a été prononcé, si elle n'avait pas été informée ainsi qu'il est dit à l'article 462, alinéa 2 ;
- 2° Pour le prévenu qui a été jugé en son absence, mais après audition d'un avocat qui s'est présenté pour assurer sa défense, sans cependant être titulaire d'un mandat de représentation signé du prévenu ;
- 3° Pour le prévenu qui n'a pas comparu, soit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410, soit dans le cas prévu par le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411, lorsque son avocat n'était pas présent ;
- 4° Pour le prévenu qui a été jugé par itératif défaut.

Le délai du pourvoi contre les arrêts ou les jugements par défaut ne court, à l'égard du prévenu,

que du jour où ils ne sont plus susceptibles d'opposition.

A l'égard du ministère public, le délai court à compter de l'expiration du délai de dix jours qui suit la significa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498-1 sont applicables pour déterminer le point de départ du délai de pourvoi en cassation de la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ferme ou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assortie d'un sursis partiel.

Article 568-1

Lorsque la décision attaquée est un arrêt d'une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ant dans les conditions énoncées a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695-31, le délai de pourvoi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68 est ramené à trois jours francs.

Le dossier est transmis, par tout moyen permettant d'en conserver une trace écrite, au greffe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à compter de la déclaration de pourvoi.

Article 569

Pendant les délais du recours en cassation et, s'il y a eu recours, jusqu'au prononcé de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il est sursis à l'exécution de l'arrêt de la cour d'appel, sauf en ce qui concerne les condamnations civiles, et à moins que la cour d'appel ne confirme le mandat décerné par le tribunal en application de l'article 464-1 ou de l'article 465, premier alinéa, ou ne décerne elle-même mandat sous les mêmes conditions et selon les mêmes règles.

Le contrôle judiciaire et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prennent fin, sauf si la cour d'appel en décide autrement, lorsqu'elle prononce une condamnation à l'emprisonnement sans sursis ou assorti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orsqu'un cautionnement a été fourni, les dispositions des premier et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142-2 et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2-3 sont applicables.

En cas d'acquittement, d'exemption de peine ou de condamnation soit à l'emprisonnement assorti du sursis simple ou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soit à l'amende, le prévenu détenu est, nonobstant pourvoi, mis en liberté immédiatement après l'arrêt.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lorsque la détention provisoire a été ordonnée ou mainten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linéa 1er aussitôt que la durée de la détention aura atteint celle de la peine prononcée.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498-1 est applicable en cas de pourvoi en cassation formé contre un arrêt de condamnation rend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410.

Article 570

Lorsque le tribunal ou la cour d'appel statue par jugement ou arrêt distinct de l'arrêt sur le fond, le pourvoi en cassation est immédiatement recevable si cette décision met fin à la procédure.

Si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constate qu'une décision a été à tort considérée par la partie intéressée comme mettant fin à la procédure, il apprécie si le pourvoi doit néanmoins être reçu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 ou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ou si, au contraire, il ne doit pas être reçu, et rend d'office à cet effet une ordonnance d'admission ou de non-admission.

Dans le cas où la décision n'a pas mis fin à la procédure et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e pourvoi, l'arrêt n'est pas exécutoire et la cour d'appel ne peut statuer au fond. Si aucun pourvoi n'a été interjeté ou si,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u pourvoi, la partie demanderesse au pourvoi n'a pas déposé au greffe la requête prévue par l'alinéa suivant, le jugement ou l'arrêt est exécutoire et le tribunal ou la cour d'appel statue au fond.

Il en est de même,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suivant, en cas d'arrêt rendu soit sur appel d'une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1, neuvième alinéa, 82-1, deuxième alinéa, 156, deuxième alinéa, ou 167, quatrième alinéa, soit en raison du défaut, par le juge d'instruction, d'avoir rendu une telle ordonnance.

Dans ces cas, si la procédure a été néanmoins transmise à la Cour de cassa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ordonne qu'il en soit fait retour à la juridiction saisie.

Le demandeur en cassation peut déposer au greffe, avant l'expiration des délais de pourvoi, une requête adressée a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et tendant à faire déclarer son pourvoi immédiatement recevable.

Article 571

Le greffier avise le président du tribunal ou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u dépôt de cette requête.

Le jugement ou l'arrêt n'est pas exécutoire et il ne peut être statué au fond tant qu'il n'a pas été prononcé sur ladite requête.

Dès que le greffier a reçu le pourvoi et la requête, il fait parvenir celle-ci a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ainsi qu'une expédition du jugement ou de l'arrêt et de la déclaration de pourvoi.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statue sur la requête par ordonnance dans les huit jours de la réception de ce dossier.

S'il rejette la requête, le jugement ou l'arrêt est exécutoire et le tribunal ou la cour d'appel se prononce au fond ; aucun recours n'est recevable contre l'ordonnance du président et le pourvoi n'est alors jugé qu'en même temps que le pourvoi formé contre le jugement ou l'arrêt sur le fond. Si, dans l'intérêt de l'ordre public ou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le président fait droit à la requête, il fixe la date à laquelle le pourvoi sera jugé.

La chambre criminelle doit statuer dans les deux mois qui suivent l'ordonnance du président, sans que puisse être soulevée devant elle une exception tirée de ce que le pourvoi formé contre la décision entreprise ne serait pas suspensif.

L'exécution du jugement ou de l'arrêt est suspendue jusqu'à ce qu'intervienne l'arrêt de la chambre criminell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570 et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aux pourvois formés contre les arrêts préparatoires, interlocutoires ou d'instruction rendus par les chambres de l'instruction à l'exception des arrêts visé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570.

Lorsqu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déclare immédiatement recevable le pourvoi formé contre un 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e par application de l'article 173, il peut ordonner au juge d'instruction saisi de suspendre son information, à l'exception des actes urgents.

Article 571-1

Le désistement du pourvoi est constaté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Article 572

Les arrêts d'acquittement prononcés par la cour d'assises ne peuvent faire l'objet d'un pourvoi que dans le seul intérêt de la loi, et sans préjudicier à la partie acquittée.

Article 573

Peuvent toutefois donner lieu à un recours en cassation de la part des parties auxquelles ils font grief les arrêts prononcés par la cour d'assises soit après acquit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71, soit après acquittement ou exemption de pein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372.

Il en est de même des arrêts statuant sur les restitutions,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373.

Article 574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ortant renvoi du prévenu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ne peut être attaqué devant la Cour de cassation que lorsqu'il statue, d'office ou sur déclinaoire des parties, sur la compétence ou qu'il présente des dispositions définitives que le tribunal, saisi de la prévention, n'a pas le pouvoir de modifier.

Article 574-1

La chambre criminelle saisie d'un pourvoi contre l'arrêt portant mise en accusation doit statuer dans les trois mois de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Le demandeur en cassation ou son avocat doit, à peine de déchéance, déposer son mémoire exposant les moyens de cassation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sauf décision du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prorogeant, à titre exceptionnel, le délai pour une durée de huit jours.

Après l'expiration de ce délai, aucun moyen nouveau ne peut être soulevé par lui et il ne peut plus être déposé de mémoire.

S'il n'est pas statué dans le délai prévu au premier alinéa, le prévenu est mis d'office en liberté.

Article 574-2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saisie d'un pourvoi contre un arrêt visé à l'article 568-1 statue dans le délai de quarant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u pourvoi.

Le demandeur en cassation ou son avocat doit, à peine de déchéance, déposer son mémoire exposant les moyens de cassation dans le délai de cinq jour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La transmission du mémoire peut être effectuée par tout moyen permettant d'en conserver une trace écrite.

Après l'expiration de ce délai, aucun moyen nouveau ne peut être soulevé par lui et il ne peut plus être déposé de mémoire.

Dès la réception du mémoir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fixe la date de l'audience.

Chapitre II : Des formes du pourvoi

Article 576

La déclaration de pourvoi doit être faite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Elle doit être signée par le greffier et par le demandeur en cassation lui-même ou par un avoué près la juridiction qui a statué, ou par un fondé de pouvoir spécial ; dans ce dernier cas, le pouvoir es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Si le déclarant ne peut signer, le greffier en fera mention.

Elle est inscrite sur un registre public, à ce destiné et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s'en faire délivrer une copie.

Article 577

Lorsque le demandeur en cassation est détenu, le pourvoi peut être formé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est constatée, datée et signé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lle est également signée par le demandeur ;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Ce document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 il est transcrit sur le registre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576 e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Article 578

Le demandeur en cassation doit notifier son recours au ministère public et aux autres parties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dans un délai de trois jours.

Article 579

La partie qui n'a pas reçu la notification prévue à l'article 578 a le droit de former opposition à l'arrêt rendu par la Cour de cassa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dans les cinq jours de la notification prévue à l'article 614.

Article 584

Le demandeur en cassation, soit en faisant sa déclaration, soit dans les dix jours suivants, peut déposer,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un mémoire, signé par lui, contenant ses moyens de cassation.

Le greffier lui en délivre reçu.

Article 585

Après l'expiration de ce délai, le demandeur condamné pénalement peut transmettre son mémoire directement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 les autres parties ne peuvent user du bénéfice de la présente disposition sans le ministère d'un avocat à la Cour de cassation.

Dans tous les cas, le mémoire doit être accompagné d'autant de copies qu'il y a de parties en cause.

Article 585-1

Sauf dérogation accordée pa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le mémoire du demandeur

938 프랑스 형사소송법

condamné pénalement doit parvenir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un mois au plus tard après la date du pourvoi.

Il en est de même pour la déclaration de l'avocat qui se constitue au nom d'un demandeur au pourvoi.

Article 585-2

Sauf dérogation accordée pa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le mémoire du ministère public, lorsque ce dernier se pourvoit en cassation, doit parvenir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au plus tard un mois après la date du pourvoi.

Article 586

Le greffier, dans le délai maximum de vingt jours à dater de la déclaration de pourvoi, cote et paraphe les pièces du dossier, auquel il joint une expédition de la décision attaquée, une expédition de l'acte de pourvoi et, s'il y a lieu, le mémoire du demandeur.

Du tout, il dresse inventaire.

Article 587

Lorsque le dossier est ainsi en état, le greffier le remet au magistrat du ministère public, qui l'adresse immédiatement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 celui-ci le transmet, à son tour, au greffe de la chambre criminelle.

Le président de cette chambre commet un conseiller pour le rapport.

Article 588

Si un ou plusieurs avocats se sont constitués, le conseiller rapporteur fixe un délai pour le dépôt des mémoires entre les mains du greffier de la chambre criminelle.

Article 589

La partie intéressée au pourvoi qui n'aurait pas reçu copie des mémoires produits à l'appui du pourvoi pourra former opposition à l'arrêt rendu par la Cour de cassa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dans les cinq jours de la notification prévue à l'article 614.

Article 590

Les mémoires contiennent les moyens de cassation et visent les textes de loi dont la violation est invoquée.

Ils sont rédigés sur timbre, sauf si le demandeur est un condamné à une peine criminelle.

Ils doivent être déposés dans le délai impart I .

Aucun mémoire additionnel n'y peut être joint, postérieurement au dépôt de son rapport par le conseiller commis.

Le dépôt tardif d'un mémoire proposant des moyens additionnels peut entraîner son irrecevabilité.

Chapitre III : Des ouvertures à cassation

Article 591

Les arrêt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insi que les arrêts et jugements rendus en dernier ressort par les juridictions de jugement, lorsqu'ils sont revêtus des formes prescrites par la loi, ne peuvent être cassés que pour violation de la loi.

Article 592

Ces décisions sont déclarées nulles lorsqu'elles ne sont pas rendues par le nombre de juges prescrit ou qu'elles ont été rendues par des juges qui n'ont pas assisté à toutes les audiences de la cause.

Lorsque plusieurs audiences ont été consacrées à la même affaire, les juges qui ont concouru à la décision sont présumés avoir assisté à toutes ces audiences.

Ces décisions sont également déclarées nulles lorsqu'elles ont été rendues sans que le ministère public ait été entendu.

Sont, en outre, déclarées nulles les décisions qui, sous réserve des exceptions prévues par la loi, n'ont pas été rendues ou dont les débats n'ont pas eu lieu en audience publique.

Article 593

Les arrêt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insi que les arrêts et jugements en dernier ressort sont déclarés nuls s'ils ne contiennent pas des motifs ou si leurs motifs sont insuffisants et ne permettent pas à la Cour de cassation d'exercer son contrôle et de reconnaître si la loi a été respectée dans le dispositif.

Il en est de même lorsqu'il a été omis ou refusé de prononcer soit sur une ou plusieurs demandes des parties, soit sur une ou plusieur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Article 595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sur le règlement d'une procédure, tous moyens pris de nullités de l'information doivent lui être proposés, faute de quoi les parties ne sont plus recevables à en faire état, sauf le cas où elles n'auraient pu les connaître, et sans préjudice du droit qui appartient à la Cour de cassation de relever tous moyens d'office.

Article 596

En matière criminelle et dans le cas où l'accusé a été condamné, si l'arrêt a prononcé une peine autre que celle appliquée par la loi à la nature du crime, l'annulation de l'arrêt pourra être poursuivie tant par le ministère public que par la partie condamnée.

Article 597

La même action appartient au ministère public contre les arrêts d'acquiescement mentionnés à l'article 363 si la décision a été prononcée sur la base de la non-existence d'une loi pénale qui pourtant aurait existé.

Article 598

Lorsque la peine prononcée est la même que celle portée par la loi qui s'applique à l'infraction, nul ne peut demander l'annulation de l'arrêt sous le prétexte qu'il y aurait erreur dans la citation du texte de la loi.

Article 599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e prévenu n'est pas recevable à présenter comme moyen de cassation les nullités commises en première instance s'il ne les a pas opposées devant la cour d'appel, à l'exception de la nullité pour cause d'incompétence lorsqu'il y a eu appel du ministère public.

En matière criminelle, l'accusé n'est pas recevable à présenter comme moyen de cassation les nullités qu'il n'a pas soulevées devant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conformé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305-1.

Article 600

Nul ne peut, en aucun cas, se prévaloir contre la partie poursuivie de la violation ou omission des règles établies pour assurer la défense de celle-ci.

Chapitre IV : De l'instruction des recours et des audiences

Article 601

Les règles concernant la publicité, la police et la discipline des audiences doivent être observées devant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02

Les rapports sont faits à l'audience.

Les avocats des parties sont entendus dans leurs observations après le rapport, s'il y a lieu.

Le ministère public présente ses réquisitions.

Article 603

Dans les délibérations de la cour, les opinions sont recueillies par le président, suivant l'ordre des nominations, en commençant par le conseiller le plus ancien.

Le rapporteur opine toujours le premier et le président le dernier.

Article 603-1

Les arrêts de la Cour de cassation rendus en matière pénale mentionnent les noms du président, du rapporteur, des autres magistrats qui les ont rendus, de l'avocat général ainsi que des avocats qui ont postulé dans l'instance et, en outre, les nom, prénoms, profession, domicile des parties et les moyens produits.

Article 604

La Cour de cassation, en toute affaire criminell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peut statuer sur le pourvoi, aussitôt après l'expiration d'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Elle doit statuer d'urgence et par priorité, et en tout cas,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dans les cas suivants :

- 1° Lorsque le pourvoi est formé contre un arrêt de renvoi en cour d'assises ;
- 2° Lorsqu'il est formé contre un arrêt de cour d'assises ayant prononcé la peine de mort ;
- 3° Dans les cas prévus à l'article 571, ce délai est réduit à deux mois.

Chapitre V : Des arrêts rendus par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05

La Cour de cassation, avant de statuer au fond, recherche si le pourvoi a été régulièrement formé. Si elle estim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ne sont pas remplies, elle rend, suivant les cas, un arrêt d'irrecevabilité, ou un arrêt de déchéance.

Article 606

La Cour de cassation rend un arrêt de non-lieu à statuer si le pourvoi est devenu sans objet.

Article 607

Lorsque le pourvoi est recevable, la Cour de cassation, si elle le juge mal fondé, rend un arrêt de rejet.

Article 608

Sauf décision contraire de la Cour de cassation, l'arrêt donnant acte de désistement d'une partie est enregistré gratis.

Article 609

Lorsque la Cour de cassation annule un arrêt ou un jugement rendu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elle renvoie le procès et les parties devant une juridiction de même ordre et degré que celle qui a rendu la décision annulée.

Article 609-1

Lorsque la Cour de cassation annule un arrêt d'une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ant sur un appel d'une ordonnance de règlement, elle renvoie le procès et les parties devant une autre chambre de l'instruction qui devient compétente pour la poursuite de l'ensemble de la procédure.

Lorsque la Cour de cassation annule un arrêt de chambre de l'instruction autre que ceux visés à l'alinéa précédent, la compétenc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renvoi est limitée, sauf si la Cour de cassation en décide autrement, à la solution du contentieux qui a motivé sa saisine et, après décision définitive, sous la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07, il est fait retour du dossi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rimitivement saisie, aux fins prévues, s'il y a lieu, par le deuxième alinéa dudit article o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206.

Article 610

En matière criminelle, la Cour de cassation prononce le renvoi du procès, savoir :

- devant une chambre de l'instruction autre que celle qui a prononcé la mise en accusation, si l'arrêt annulé émane d'une chambre de l'instruction ;
- devant une cour d'assises autre que celle qui a rendu l'arrêt, si l'arrêt est annulé pour cause de nullité commise à la cour d'assises ;
- devant une cour d'appel autre que celle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iège la cour d'assises qui a rendu l'arrêt, si l'arrêt est annulé seulement du chef des intérêts civils.

Article 611

Lorsque le renvoi aura été fait à une chambre de l'instruction, celle-ci désigne, s'il échet, dans son ressort, la juridiction de jugement.

Toutefois, la Cour de cassation peut désigner par avance, même dans un autre ressort, la juridiction criminelle devant laquelle doit, le cas échéant, être renvoyé l'accusé.

Article 612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si l'arrêt et la procédure sont annulés pour cause d'incompétence, la Cour de cassation renvoie le procès devant les juges qui doivent en connaître et les désigne.

La Cour de cassation peut n'annuler qu'une partie de la décision lorsque la nullité ne vicie qu'une ou quelques-unes de ces dispositions.

Article 612-1

En toute matière, lorsque l'intérêt de l'ordre public ou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le commande, la Cour de cassation peut ordonner que l'annulation qu'elle prononce aura effet à l'égard des parties à la procédure qui ne se sont pas pourvues.

Le condamné qui ne s'est pas pourvu et au profit duquel l'annulation de la condamnation a été étendu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ne peut être condamné à une peine supérieure à celle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dont la décision a été annulée.

Article 613

Dans tous les cas où la Cour de cassation est autorisée à choisir une cour ou un tribunal pour le jugement d'une affaire renvoyée, ce choix ne peut résulter que d'une délibération spéciale prise immédiatement en la chambre du conseil ; il en est fait mention expresse dans l'arrêt.

Article 614

Une expédition de l'arrêt qui a admis la demande en cassation et ordonné le renvoi devant une nouvelle juridiction est délivrée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dans les trois jours.

Cette expédition est adressée, avec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magistrat chargé du ministère public près la cour ou le tribunal de renvoi.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est notifié aux parties, à la diligence de ce magistrat.

Une expédition est également adressée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 magistrat chargé du ministère public près la cour ou le tribunal qui a rendu l'arrêt ou le jugement annulé.

Article 615

Lorsqu'un arrêt ou un jugement est annulé pour violation des formes substantielles prescrites par la loi, une expédition de la décision est transmise au ministre de la justice.

Article 617

L'arrêt qui a rejeté la demande en cassation, ou a prononcé la cassation sans renvoi, est délivré, dans les trois jours,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par extrait signé du greffier, lequel extrait est adressé au magistrat chargé du ministère public près la Cour ou le tribunal qui a rendu l'arrêt ou le jugement attaqué.

Il est notifié aux parties, à la diligence de ce magistrat,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rticle 618

Lorsqu'une demande en cassation a été rejetée, la partie qui l'avait formée ne peut plus se pourvoir en cassation contre le même arrêt ou jugement, sous quelque prétexte et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Article 618-1

La cour condamne l'auteur de l'infraction à payer à la partie civile la somme qu'elle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non payés par l'Etat et exposés par celle-ci.

La cour tient compte de l'équité ou de la situation économique de la partie condamnée.

Elle peut, même d'office, pour des raisons tirées des mêmes considérations, dire qu'il n'y a pas lieu à cette condamnation.

Article 619

Lorsque, après cassation d'un premier arrêt ou jugement rendu en dernier ressort, le deuxième arrêt ou jugement rendu dans la même affaire, entre les mêmes parties, procédant en la même qualité, est attaqué par les mêmes moyens, l'affaire est portée devant l'assemblée plénière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s articles L. 131-2 et L. 131-3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Chapitre VI : Du pourvoi dans l'intérêt de la loi

Article 620

Lorsque, sur l'ordre formel à lui donné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dénonce à la chambre criminelle des actes judiciaires, arrêts ou jugements contraires à la loi, ces actes, arrêts ou jugements peuvent être annulés.

Article 621

Lorsqu'il a été rendu par une cour d'appel ou d'assises ou par un tribunal correctionnel ou de police, un arrêt ou jugement en dernier ressort, sujet à cassation, et contre lequel néanmoins aucune des parties ne s'est pourvue dans le délai déterminé,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peut d'office et nonobstant l'expiration du délai se pourvoir, mais dans le seul intérêt de la loi, contre ledit jugement ou arrêt.

La Cour se prononce sur la recevabilité et le bien-fondé de ce pourvoi.

Si le pourvoi est accueilli, la cassation est prononcée, sans que les parties puissent s'en prévaloir et s'opposer à l'exécution de la décision annulée.

Titre II : Des demandes en révision

Article 622

La révision d'une décision pénale définitive peut être demandée au bénéfice de toute personne reconnue coupable d'un crime ou d'un délit lorsque :

- 1° Après une condamnation pour homicide, sont représentées des pièces propres à faire naître de suffisants indices sur l'existence de la prétendue victime de l'homicide ;
- 2° Après une condamnation pour crime ou délit, un nouvel arrêt ou jugement a condamné pour le même fait un autre accusé ou prévenu et que, les deux condamnations ne pouvant se concilier, leur contradiction est la preuve de l'innocence de l'un ou de l'autre condamné ;
- 3° Un des témoins entendus a été, postérieurement à la condamnation, poursuivi et condamné pour faux témoignage contre l'accusé ou le prévenu ; le témoin ainsi condamné ne peut pas être entendu dans les nouveaux débats ;
- 4° Après une condamnation, vient à se produire ou à se révéler un fait nouveau ou un élément inconnu de la juridiction au jour du procès, de nature à faire naître un doute sur la culpabilité du condamné.

Article 623

La révision peut être demandée :

- 1°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
- 2° Par le condamné ou, en cas d'incapacité, par son représentant légal ;
- 3° Après la mort ou l'absence déclarée du condamné, par son conjoint, ses enfants, ses parents, ses légataires universels ou à titre universel ou par ceux qui en ont reçu de lui la mission expresse.

La demande en révision est adressée à une commission composée de cinq magistrats de la Cour de cassation, désignés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 cette juridiction et dont l'un, choisi parmi les membres de la chambre criminelle, en assure la présidence.

Cinq magistrats suppléants sont désignés selon les mêmes formes.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exercées par le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Après avoir procédé, directement ou par commission rogatoire, à toutes recherches, auditions, confrontations et vérifications utiles et recueilli les observations écrites ou orales du requérant ou de son avocat et celles du ministère public, cette commission saisit la chambre criminelle, qui statue comme cour de révision, des demandes qui lui paraissent pouvoir être admises.

La commission statue par une décision motivée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 cette

décision, sur demande du requérant ou de son avocat, est rendue en séance publique.

La commission prend en compte, dans le cas où la requête est fondée sur le dernier alinéa (4°) de l'article 622, l'ensemble des faits nouveaux ou éléments inconnus sur lesquels ont pu s'appuyer une ou des requêtes précédemment rejetées.

Article 624

La commission saisie d'une demande de révision peut, à tout moment, ordonner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Il en est de même pour la cour de révision lorsqu'elle est saisie.

La commission ou la cour de révision qui ordonne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peut décider que cette suspension est assortie de l'obligation de respecter tout ou partie des conditions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prévues par les articles 731 et 731-1, y compris, le cas échéant, celles résultant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Elle précise dans sa décision l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auxquelles est soumis le condamné, en désign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us le contrôle duquel celui-ci sera placé.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modifier l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auxquelles est soumis le condamn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C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s'appliquent pendant une durée d'un an, qui peut être prolongée, pour la même durée, par la commission ou la cour de révision. En cas de viol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auxquelles il est soumi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aisir la commission ou la cour de révision pour qu'elle mette fin à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Il peut décerner les mandats prévus par l'article 712-17 et ordonner l'incarcération provisoire du condamné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19.

La commission ou la cour doit alors se prononcer dans un délai d'un mois.

Si elle ne met pas fin à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la commission ou la cour de révision peut modifier l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auxquelles le condamné est soumis.

Article 625

Si la cour de révision estime que l'affaire n'est pas en état, elle procède comme il est dit à l'avant-dernier alinéa de l'article 623.

Lorsque l'affaire est en état, la cour l'examine au fond et statue, par arrêt motivé non susceptible de voie de recours, à l'issue d'une audience publique au cours de laquelle sont recueillies les observations orales ou écrites du requérant ou de son avocat, celles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e, si elle intervient à l'instance, après en avoir été dûment avisée, celles de la partie civile constituée au procès dont la révision est demandée ou de son avocat.

Elle rejette la demande si elle l'estime mal fondée.

Si, au contraire, elle l'estime fondée, elle annule la condamnation prononcée.

Elle apprécie s'il est possible de procéder à de nouveaux débats contradictoires.

Dans l'affirmative, elle renvoie les accusés ou prévenus devant une juridiction de même ordre et de même degré, mais autre que celle dont émane la décision annulée.

S'il y a impossibilité de procéder à de nouveaux débats, notamment en cas d'amnistie, de décès, de démence, de contumace ou de défaut d'un ou plusieurs condamnés, d'irresponsabilité pénale ou d'excusabilité, en cas de prescription de l'action ou de la peine, la cour de révision, après l'avoir expressément constatée, statue au fond en présence des parties civiles, s'il y en a au procès, et des curateurs nommés par elle à la mémoire de chacun des morts ; en ce cas, elle annule seulement celles des condamnations qui lui paraissent non justifiées et décharge, s'il y a lieu, la mémoire des morts.

Si l'impossibilité de procéder à de nouveaux débats ne se révèle qu'après l'arrêt de la cour de révision annulant l'arrêt ou le jugement de condamnation et prononçant le renvoi, la cour, sur la réquisition du ministère public, rapporte la désignation par elle faite de la juridiction de renvoi et statue comme il est dit à l'alinéa précédent.

Si l'annulation du jugement ou de l'arrêt à l'égard d'un condamné vivant ne laisse rien subsister à sa charge qui puisse être qualifié crime ou délit, aucun renvoi n'est prononcé.

L'annulation de la condamnation entraîne la suppression de la fiche du casier judiciaire.

Article 625-1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623 et 625, le requérant peut être représenté ou assisté par un avocat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ou par un avocat régulièrement inscrit à un barreau.

Article 626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L. 781-1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un condamné reconnu innocent en 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a droit à réparation intégrale du préjudice matériel et moral que lui a causé la condamnation.

Toutefois, aucune réparation n'est due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des faits dont elle s'est librement et volontairement accusée ou laissé accuser à tort en vue de faire échapper l'auteur des faits aux poursuites.

Peut également demander une réparation, dans les mêmes conditions, toute personne justifiant du préjudice que lui a causé la condamnation.

A la demande de l'intéressé, le préjudice est évalué par expertise contradictoire réalisée dans les conditions des articles 156 et suivants.

La réparation est alloué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réside l'intéressé et suivant la procédure prévue par les articles 149-2 à 149-4.

Si la personne en fait la demande, la réparation peut également être allouée par la décision d'où résulte son innocence.

Devant la cour d'assises, la réparation est allouée par la cour statuant, comme en matière civile, sans l'assistance des jurés.

Cette réparation est à la charge de l'Etat, sauf son recours contre la partie civile, le dénonciateur ou le faux témoin par la faute desquels la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Elle est payée comme frais de justice criminelle, correctionnelle et de police.

Si le demandeur le requiert, l'arrêt ou le jugement de révision d'où résulte l'innocence du condamné est affiché dans la ville où a été prononcée la condamnation, dans la commune du lieu où le crime ou le délit a été commis, dans celle du domicile des demandeurs en révision, dans celles du lieu de naissance et du dernier domicile de la victime de l'erreur judiciaire, si

elle est décédée ; dans les mêmes conditions, il est ordonné qu'il soit inséré au Journal officiel et publié par extraits dans cinq journaux au choix de la juridiction qui a prononcé la décision. Les frais de la publicité ci-dessus prévue sont à la charge du Trésor.

Titre III : Du réexamen d'une décision pénale consécutif au prononcé d'un arrêt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Article 626-1

Le réexamen d'une décision pénale définitive peut être demandé au bénéfice de toute personne reconnue coupable d'une infraction lorsqu'il résulte d'un arrêt rendu par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que la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en violation des dispositions de la convention de sauvegard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ou de ses protocoles additionnels, dès lors que, par sa nature et sa gravité, la violation constatée entraîne pour le condamné des conséquences dommageables auxquelles la "satisfaction équitable" alloué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41 de la convention ne pourrait mettre un terme.

Article 626-2

Le réexamen peut être demandé par :

- le ministre de la justice ;
-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
- le condamné ou, en cas d'incapacité, son représentant légal ;
- les ayants droit du condamné, en cas de décès de ce dernier.

Article 626-3

La demande en réexamen est adressée à une commission composée de sept magistrats de la Cour de cassation, désignés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 cette juridiction ; chacune des chambres est représentée par un de ses membres, à l'exception de la chambre criminelle qui est représentée par deux magistrats, l'un d'entre eux assurant la présidence de la commission.

Sept magistrats suppléants sont désignés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exercées par le parquet général de la Cour de cassation.

La demande en réexamen doit être formée dans 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décision de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a décision de la commission est prononcée à l'issue d'une audience publique au cours de laquelle sont recueillies les observations orales ou écrites du requérant ou de son avocat, ainsi que celles du ministère public ;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626-4

Si elle estime la demande justifiée, la commission procè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ci-après :

- Si le réexamen du pourvoi du condamné, dans des conditions conformes aux dispositions de la convention, est de nature à remédier à la violation constatée par la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la commission renvoie l'affaire devant la Cour de cassation qui statue en assemblée plénière ;
- Dans les autres cas, la commission renvoie l'affaire devant une juridiction de même ordre et de même degré que celle qui a rendu la décision litigieuse,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25.

Article 626-5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condamnation peut être prononcée à tout moment de la procédure de réexamen par la commission ou la Cour de cassation.

Hors le cas prévu au premier alinéa, si la commission, estimant la demande justifiée, procè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626-4, la personne qui exécutait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emeure détenue, sans que cette détention puisse excéder la durée de la peine prononcée, jusqu'à la décision, selon le cas, de la Cour de cassation statuant en assemblée plénière ou de la juridiction du fond.

Cette décision doit intervenir dans 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décision de la commission ; faute de décision dans ce délai, la personne est mise en liberté, à moins qu'elle soit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Pendant ce délai, la personne est considérée comme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et peut former d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48-6 et 148-7.

Ces demandes sont examinées conformément aux articles 148-1 et 148-2.

Toutefois, lorsque la commission a renvoyé l'affaire devant l'assemblée plénière de la Cour de cassation,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est examiné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iège la juridiction ayant condamné l'intéressé.

Les troisième à sixième alinéas de l'article 624 sont applicables aux suspensions ordonnées par la commission ou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26-6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le requérant peut être représenté ou assisté par un avocat au Conseil d'Etat ou à la Cour de cassation ou par un avocat régulièrement inscrit à un barreau.

Article 626-7

Si, à l'issue de la procédure, le condamné est reconnu innoce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26 sont applicables.

Livre IV : De quelques procédures particulières

Titre Ier : De la coopération avec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Article 627

Pour l'application du statut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igné le 18 juillet 1998, la France participe à la répression des infractions et coopère avec cette juridiction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présent titre.

Les dispositions qui suivent sont applicables à toute personne poursuivie devant le Cour pénale internationale ou condamnée par celle-ci à raison des actes qui constituent, au sens des articles 6 à 8 et 25 du statut, un génocide, des crimes contre l'humanité ou des crimes de guerre.

Chapitre Ier : De la coopération judiciaire

Section 1 : De l'entraide judiciaire

Article 627-1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ont adressées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en original ou en copie certifiée conforme accompagnées de toutes pièces justificatives.

Ces documents sont transm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qui leur donne toutes suites utiles.

En cas d'urgence, ces documents peuvent être transmis directement et par tout moyen à ce magistrat.

Ils sont ensuite transmis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Article 627-2

Les demandes d'entraide sont exécutées, selon les ca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par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qui agissen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en présence, le cas échéant, du procureur près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ou de son représentant, ou de

toute autre personne mentionnée dans la demand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Les procès-verbaux établis en exécution de ces demandes sont adressés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En cas d'urgence, les copies certifiées conformes des procès-verbaux peuvent être adressées directement et par tout moyen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Les procès-verbaux sont ensuite transmis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Article 627-3

L'exécution sur le territoire français des mesures conservatoires mentionnées au k du paragraphe 1 de l'article 93 du statut est ordonné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La durée maximale de ces mesures est limitée à deux ans.

Elles peuvent être renouvelé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à la demand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transmet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toute difficulté relative à l'exécution de ces mesures, afin que soient menées les consultations prévues aux articles 93, paragraphe 3, et 97 du statut.

Section 2 : De l'arrestation et de la remise

Article 627-4

Les demandes d'arrestation aux fins de remise délivrées par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ont adressées, en original et accompagnées de toutes pièces justificatives,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qui, après s'être assurées de leur régularité formelle, les transmettent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Paris et, dans le même temps, les mettent à exécution dans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En cas d'urgence, ces demandes peuvent aussi être adressées directement et par tout moye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lles sont ensuite transmises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627-5

Toute personne appréhendée en vertu d'une demande d'arrestation aux fins de remise doit être déféré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ans ce délai,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1 à 63-5 du présent code lui sont applicables. Après avoir vérifié l'identité de cette personne, ce magistrat l'inform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qu'elle fait l'objet d'une demande d'arrestation aux fins de remise et qu'elle comparaitra, dans un délai maximum de cinq jours, devant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Par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informe également qu'elle pourra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à défaut,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informé sans délai et par tout moyen.

Il l'avise de même qu'elle pourra s'entretenir immédiatement avec l'avocat désigné.

Mention de ces informations est faite au procès-verbal, qui est aussitôt transmis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Par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réclamée à la maison d'arrêt.

Article 627-6

La personne réclamée est transférée, s'il y a lieu, et écrouée à la maison d'arrêt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de Paris.

Le transfèrement doit avoir lieu dans un délai maximum de cinq jours à compter de sa présenta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aute de quoi la personne réclamée est immédiatement libérée sur décision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Paris, à moins que le transfèrement ait été retardé par des circonstances insurmontables.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cette même cour lui notifi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la demande d'arrestation aux fins de remise ainsi que les chefs d'accusation portés contre elle.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a déjà demandé l'assistance d'un avocat et que celui-ci a été dûment convoqué, le procureur général reçoit ses déclarations.

Dans les autres cas, ce magistrat lui rappelle son droit de choisir un avocat ou de demander

qu'il lui en soit désigné un d'office.

L'avocat choisi ou, dans le cas d'une demande de commission d'office,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en est informé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L'avocat peut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la personne réclamée.

Le procureur général reçoit les déclarations de cette dernière après l'avoir avertie qu'elle est libre de ne pas en faire.

Mention de cet avertissement est faite au procès-verbal.

Article 627-7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immédiatement saisie de la procédure.

La personne réclamée comparaît devant elle dans un délai de huit jours à compter de sa présentation au procureur général.

Sur la demande de ce dernier ou de la personne réclamée, un délai supplémentaire de huit jours peut être accordé avant les débats.

Il est ensuite procédé à un interrogatoire, dont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Les débats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audience publique, sauf si la publicité est de nature à nuire au bon déroulement de la procédure en cours, aux intérêts d'un tiers ou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Dans ce cas,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ersonne réclamée ou d'office, statue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e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portant sur la remise prévue à l'article 627-8.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éclam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Article 627-8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il n'y a pas d'erreur évidente, elle ordonne la remise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si celle-ci est libre, son incarcération à cette fin.

Toute autre question soumis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renvoyée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qui lui donne les suites utiles.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quinze jours de la comparution devant elle de la personne réclamée.

En cas de pourvoi,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statue dans un délai de deux mois suivant la réception du dossier à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27-9

La mise en liberté peut être demandée à tout momen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Paris qui procède conformément à l'article 59 du statut et à la procédure prévue aux articles 148-1 et suivants du présent co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un arrêt rendu en audience publique et motivé par référence aux dispositions du paragraphe 4 de l'article 59 susvisé.

Article 627-10

L'arrêt rendu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le cas échéant, le lieu et la date de la remise de la personne réclamée, ainsi que la durée de la détention subie en vue de cette remise,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par tout moyen,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La personne réclamée est remis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u jour où cette décision est devenue définitive, faute de quoi elle est immédiatement libérée sur décision d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moins que sa remise ait été retardée par des circonstances insurmontables.

Article 627-11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27-4 à 627-10 sont également applicables si la personne réclamée est poursuivie ou condamnée en France pour d'autres chefs que ceux visés par la demand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Toutefois, la personne détenue dans ces conditions ne peut bénéficier d'une mise en liberté au titre des articles 627-6, 627-9 et du second alinéa de l'article 627-10.

La procédure suivie devant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uspend, à l'égard de cette personn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et de la peine.

Article 627-12

Le transi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est autorisé conformément à l'article 89 du statut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Article 627-13

Lorsque la cour sollicite l'extension des conditions de la remise accordée par les autorités françaises, la demande est transmise aux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qui la communiquent, avec toutes les pièces justificatives ainsi que les observations éventuelles de l'intéressé,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Paris.

Si, au vu des pièces considérées et, le cas échéant, des explications de l'avocat de la personne concern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il n'y a pas d'erreur évidente, elle autorise l'extension sollicitée.

Article 627-14

La personne qui a fait l'objet d'une arrestation proviso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92 du statut peut, si elle y consent, être remise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avant qu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aient été saisies d'une demande formelle de remise de la part de la juridiction internationale.

La décision de remise est pris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Paris après que celle-ci a informé la personne concernée de son droit à une procédure formelle de remise et a recueilli son consentement.

Au cours de son audition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personne concernée peut se faire assister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à défaut,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par le bâtonnier et, s'il y a lieu, par un interprète.

La personne qui a fait l'objet d'une arrestation proviso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92 du statut et qui n'a pas consenti à être remise à la cour peut être libérée si l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vertu de l'article 87 du statut ne reçoivent pas de demande formelle de remise dans le délai prescrit par le règlement de procédure et de preuve de cette juridiction internationale. La libération est décidé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sur requête présentée par l'intéress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huit jours de la comparution devant elle de la personne arrêtée.

Article 627-15

Toute personne détenu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peut, si elle y consent, être transférée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à des fins d'identification ou d'audition ou pour l'accomplissement de tout autre acte d'instruction.

Le transfert est autorisé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Chapitre II : De l'exécution des peines et des mesures de réparation prononcées par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ection 1 : De l'exécution des peines d'amende et de confiscation ainsi que des mesures de réparation en faveur des victimes

Article 627-16

Lorsqu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en fait la demande, l'exécution des peines d'amende et de confiscation ou des décisions concernant les réparations prononcées par celle-ci est autorisé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 saisi, à cette fin,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procédure suivi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béit aux règles du présent code.

Le tribunal est lié par la décis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y compris en ce qui concerne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des tiers.

Toutefois, dans le cas d'exécution d'une ordonnance de confiscation, il peut ordonner toutes les mesures destinées à permettre de récupérer la valeur du produit, des biens ou des avoirs dont la cour a ordonné la confiscation, lorsqu'il apparaît que l'ordonnance de confiscation ne peut pas être exécutée.

Le tribunal entend le condamné ainsi que toute personne ayant des droits sur les biens, au besoin par commission rogatoire.

Ces personnes peuvent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Lorsque le tribunal constate que l'exécution d'une ordonnance de confiscation ou de réparation aurait pour effet de porter préjudice à un tiers de bonne foi qui ne peut relever appel de ladite ordonnance, il en inform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envoi de la question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qui lui donne toutes suites utiles.

Article 627-17

L'autorisation d'exécution rendu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en vertu de l'article précédent entraîne, selon la décision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transfert du produit des amendes et des biens confisqués ou du produit de leur vente à la cour ou au fonds en faveur des victimes.

Ces biens ou sommes peuvent également être attribués aux victimes, si la cour en a décidé et a procédé à leur désignation.

Toute contestation relative à l'affectation du produit des amendes, des biens ou du produit de leur vente est renvoyée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qui lui donne les suites utiles.

Section 2 : De l'exécution des peines d'emprisonnement

Article 627-18

Lorsq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03 du statut, le Gouvernement a accepté de recevoir une personne condamnée par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afin que celle-ci y purge sa peine d'emprisonnement, la condamnation prononcée est directement et immédiatement exécutoire dès le transfert de cette personne sur le sol national, pour la partie de peine restant à subir.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statut et de la présente section, l'exécution et l'application de la peine sont régies pa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à l'exception des articles 728-2 à 728-8.

Article 627-19

Dès son arriv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a personne transférée est présenté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arrivée, qui procède à son interrogatoire d'identité et en dresse procès-verbal.

Toutefois, si l'interrogatoire ne peut être immédiatement effectué, la personne est conduite à la maison d'arrêt où elle ne peut être détenue plus de vingt-quatre heures.

A l'expiration de ce délai, elle est conduite d'offic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soins du chef d'établissement.

Au vu des pièces constatant l'accord entre le Gouvernement français et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oncernant le transfert de l'intéressé, d'une copie certifiée conforme du jugement de condamnation et d'une notification par la cour de la date de début d'exécution de la peine et de la durée restant à accompli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 l'incarcération immédiate de la personne condamnée.

Article 627-20

Si la personne condamnée dépose une demande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semi-liberté, de réduction de peine, de fractionnement ou de suspension de pein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a requête est adressée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elle est incarcérée qui la transmet au ministre de la justice.

Celui-ci communique la requête à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dans les meilleurs délais, avec tous les documents pertinents.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décide si la personne condamnée peut ou non bénéficier de la mesure considérée.

Lorsque la décision de la cour est négative, le Gouvernement indique à la cour s'il accepte de garder la personne condamn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ou s'il entend demander son transfert dans un autre Etat qu'elle aura désigné.

Titre Ier bis :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Article LO630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moyen tiré de ce qu'une disposition législative porte atteinte aux droits et libertés garantis par la Constitution peut être soulevé dans une instance pénale, ainsi qu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peut être saisi par la Cour de cassation de la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obéissent aux règles définies par les articles 23-1 à 23-7 de l'ordonnance n° 58-1067 du 7 nov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Titre II : Du faux

Article 642

Lorsqu'il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une pièce arguée de faux figure dans un dépôt public ou a été établie dans un dépôt public,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se transporter dans ce dépôt pour procéder à tous examens et vérifications nécessair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 peut déléguer les pouvoirs ci-dessus à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en cas d'urgence, ordonner le transport au greffe des documents suspectés.

Article 643

Dans toute information pour faux en écritures, le juge d'instruction, aussitôt que la pièce arguée de faux a été produite devant lui ou a été placée sous main de justice, en ordonne le dépôt au greffe.

Il la revêt de sa signature ainsi que le greffier qui dresse du dépôt un acte décrivant l'état de la pièce.

Toutefois, avant le dépôt au greffe,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que la pièce soit reproduite par photographie ou par tout autre moyen.

Article 644

Le juge d'instruction peut se faire remettre par qui il appartiendra et saisir toutes pièces de comparaison.

Celles-ci sont revêtues de sa signature et de celle du greffier qui en fait un acte descriptif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précédent.

Article 645

Tout dépositaire public de pièces arguées de faux, ou ayant servi à établir des faux, est tenu, sur ordonnance du juge d'instruction, de les lui remettre et de fournir, le cas échéant, les pièces de comparaison qui sont en sa possession.

Si les pièces ainsi remises par un officier public ou saisies entre ses mains ont le caractère d'actes authentiques, il peut demander à ce qu'il lui en soit laissé une copie, certifiée conforme par le greffier, ou une reproduction par photographie ou par tout autre moyen.

Ladite copie ou reproduction est mise au rang des minutes de l'office jusqu'à restitution de la pièce originale.

Article 646

Si au cours d'une audience d'un tribunal ou d'une cour une pièce de la procédure, ou une pièce produite, est arguée de faux, la juridiction décide,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des parties, s'il y a lieu ou non de surseoir jusqu'à ce qu'il ait été prononcé sur le faux par la juridiction compétente.

Si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ou ne peut être exercée du chef de faux, et s'il n'apparaît pas que celui qui a produit la pièce ait fait sciemment usage d'un faux, le tribunal ou la cour saisi de l'action principale statue incidemment sur le caractère de la pièce prétendue entachée de faux.

Article 647

La demande en inscription de faux contre une pièce produite devant la Cour de cassation est adressée au premier président.

Elle est déposée au greffe.

Elle est signée par le demandeur ou par un avocat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ou par un fondé de pouvoir spécial.

Dans ce dernier cas, le pouvoir est annexé à l'acte dressé par le greffier.

Si la personne qui dépose la demande ne peut signer, le greffier en fait mention.

Article 647-1

Le premier président statue dans le mois du dépôt de la requête au greffe,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Il rend une ordonnance de rejet ou une ordonnance portant permission de s'inscrire en faux.

En cas de rejet et sauf s'il en est expressément dispensé, le demandeur est condamné au paiement d'une amende dont le taux est fixé par décret.

Article 647-2

L'ordonnance portant permission de s'inscrire en faux est signifiée au défendeur dans le délai de quinze jours, avec sommation de déclarer s'il entend se servir de la pièce arguée de faux.

A cette sommation doit être jointe une copie de la requête et de l'ordonnance portant permission de s'inscrire en faux.

Article 647-3

Le défendeur doit répondre,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s'il entend ou n'entend pas se servir de la pièce arguée de faux.

Cette déclaration est signifiée au demandeur.

Article 647-4

Dans le cas où le défendeur entend se servir de la pièce arguée de faux, le premier président

doit renvoyer les parties à se pourvoir devant telle juridiction qu'il désignera pour y être procédé, suivant la loi, au jugement de l'inscription de faux incident.

Titre III : De la manière de procéder en cas de disparition des pièces d'une procédure

Article 648

Lorsque, par suite d'une cause extraordinaire, des minutes d'arrêts ou de jugements rendus en matière criminell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et non encore exécutés, ou des procédures en cours et leurs copies établies conformément à l'article 81 ont été détruites, enlevées ou se trouvent égarées ou qu'il n'a pas été possible de les rétablir, il est procédé ainsi qu'il suit.

Article 649

S'il existe une expédition ou copie authentique du jugement ou de l'arrêt, elle est considérée comme minute et en conséquence remise par tout officier public ou tout dépositaire au greffe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sur l'ordre qui lui en est donné par le président de cette juridiction.

Cet ordre lui sert de décharge.

Article 650

Lorsqu'il n'existe plus en matière criminelle d'expédition ni de copie authentique de l'arrêt, mais s'il existe encore la déclaration de la cour et du jury mentionnée sur la feuille de questions,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364, il est procédé, d'après cette déclaration, au prononcé d'un nouvel arrêt.

Article 651

Lorsque la déclaration de la cour et du jury ne peut plus être représentée ou lorsque l'affaire a été jugée par contumace et qu'il n'en existe aucun acte par écrit, l'instruction est recommencée

à partir du point où les pièces se trouvent manquer.

Il en est de même en toute autre matière, lorsqu'il n'existe plus d'expédition ni de copie authentique de la décision.

Titre IV : De la manière dont sont reçues les dépositions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celles des représentants des puissances étrangères

Article 652

Le Premier ministre et les autres membres du Gouvernement ne peuvent comparaître comme témoins qu'après autorisation du conseil des ministres, sur le rappor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Cette autorisation est donnée par décret.

Les dispositions de cet article ne s'appliquent pas aux membres du Gouvernement entendus comme témoin assisté.

Article 653

Lorsque la comparution a lieu en vertu de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précédent, la déposition est reçue dans les formes ordinaires.

Article 654

Lorsque la comparution n'a pas été demandée ou n'a pas été autorisée, la déposition est reçue par écrit dans la demeure du témoin,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si le témoin réside hors du chef-lieu de la cour,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sa résidence. Il sera, à cet effet, adressé par la juridiction saisie de l'affaire, au magistrat ci-dessus désigné, un exposé des faits ainsi qu'une liste des demandes et questions sur lesquels le témoignage est requis.

Article 655

La déposition ainsi reçue est immédiatement remise au greffe ou envoyée, close et cachetée, à celui de la juridiction requérante et communiquée, sans délai, au ministère public ainsi qu'aux parties intéressées.

A la cour d'assises, elle est lue publiquement et soumise aux débats.

Article 656

La déposition écrite d'un représentant d'une puissance étrangère est demandée par l'entremise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Si la demande est agréée, cette déposition est reçu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ou par le magistrat qu'il aura délégué.

Il est alors procédé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54, alinéa 2, et 655.

Titre V : Des règlements de juges

Article 657

Lorsque deux juges d'instruction, appartenant à un même tribunal ou à des tribunaux différents, se trouvent simultanément saisis de la même infrac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requérir l'un des juges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utre.

Le dessaisissement n'a lieu que si les deux juges en sont d'accord.

Si le conflit de compétence subsiste, il est procédé, selon les ca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84, 658 ou 659.

Article 658

Lorsque deux tribunaux correctionnels, deux juges d'instruction, deux tribunaux de police ou deux juridictions de proximité appartenant au même ressort de cour d'appel se trouvent saisis simultanément de la même infraction, il est réglé de juge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statue sur requête présentée par le ministère public ou les parties.

Cette décision est susceptible d'un recours en cassation.

Article 659

Tous autres conflits de compétence sont portés devant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aquelle est saisie par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La Cour de cassation peut aussi, à l'occasion d'un pourvoi dont elle est saisie, régler de juges d'office et même par avance.

Elle peut statuer sur tous actes faits par la juridiction qu'elle dessaisit.

Article 660

La chambre criminelle peut, avant de régler de juges, ordonner la communication de la requête aux parties.

Dans ce cas, les pièces de la procédure lui sont transmises, dans le délai par elle fixé, avec les observations des intéressés, et le cours de la procédure est suspendu.

Article 661

L'arrêt portant règlement de juges est signifié aux parties intéressées.

Celles-ci peuvent, hors le cas où la communication de la requête a été ordonnée, former opposition à cet arrêt, par acte reçu au greffe du lieu où siège l'une des juridictions en conflit, dans les formes et délais du pourvoi en cassation.

L'opposition emporte effet suspensif si la chambre criminelle en décide ainsi.

L'opposition est jugée dans les quinze jours de l'arrivée des pièces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Si l'opposition est rejetée, la chambre criminelle peut condamner le demandeur à une amende civile de 15 euros.

Titre VI : Des renvois d'un tribunal à un autre

Article 662

En matière criminell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peut dessaisir toute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 jugement et renvoyer la connaissance de l'affaire à une autre juridiction du même ordre pour cause de suspicion légitime.

La requête aux fins de renvoi peut être présentée soi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soit par le ministère public établi près la juridiction saisie, soit par les parties. La requête doit être signifiée à toutes les parties intéressées qui ont un délai de dix jours pour déposer un mémoire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La présentation de la requête n'a point d'effet suspensif à moins qu'il n'en soit autrement ordonné par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63

Lorsque deux juges d'instruction, appartenant à un même tribunal ou à des tribunaux différents, se trouvent simultanément saisis d'infractions connexes ou d'infractions différentes en raison desquelles une même personne ou les mêmes personnes sont mises en examen, le ministère public peut,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et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3, 52 et 382, requérir l'un des juges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utre.

Le dessaisissement a lieu si les juges en sont d'accord.

En cas de désaccord, il est fait application, s'il y a lieu,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64.

Article 664

Lorsqu'une personne mise en examen ou un prévenu est détenu provisoirement en vertu d'une décision prescrivant la détention ou en exécution d'une condamna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notamment pour éviter le transfèrement du détenu, requérir le renvoi de la procédure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ou de jugement saisie à celle du lieu de détention.

Il est procédé comme en matière de règlement de juges.

Article 665

Le renvoi d'une affaire d'une juridiction à une autre peut être ordonné pour cause de sûreté publique par la chambre criminelle, mais seulemen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Le renvoi peut également être ordonné,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par la chambre criminelle, soit sur requête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soit sur requête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a juridiction saisie a son siège, agissant d'initiative ou sur demande des parties. Dans les dix jours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et s'il n'y donne pas suite,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informe le demandeur des motifs de sa décision.

Ce dernier peut alors former un recours devant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qui, s'il ne saisit pas la chambre criminelle l'informe des motifs de sa décision.

La chambre criminelle statue dans les huit jours de la requête.

Article 665-1

Le renvoi peut encore être ordonné par la chambre criminelle si la juridiction normalement compétente ne peut être légalement composée ou si le cours de la justice se trouve autrement interrompu.

La requête aux fins de renvoi peut être présentée, soit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soit par le ministère public établi près la juridiction saisie.

La requête doit être signifiée à toutes les parties intéressées qui ont un délai de dix jours pour déposer un mémoire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La chambre criminelle statue dans les quinze jours de la requête.

Article 666

Tout arrêt qui a statué sur une demande en renvoi pour l'une des causes précitées sera signifié aux parties intéressées à la diligence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667

L'arrêt qui a rejeté une demande en renvoi pour sûreté publique, pour les motifs énoncé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65-1, pour suspicion légitime ou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n'exclut pas une nouvelle demande en renvoi fondée sur des faits survenus depuis.

Article 667-1

Si la juridiction normalement compétente ne peut être composée en raison de l'existence des incomptabilités prévues par la loi,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peut ordonner le renvoi devant la juridiction limitrophe située dans le ressort de cette cour et désignée par l'ordonnance prévue au dern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a requête aux fins de renvoi est présent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juridiction saisie. Elle est signifiée à toutes les parties intéressées, qui ont un délai de dix jours pour présenter leurs observations auprès du premier président.

Celui-ci statue dans les quinze jours de la requête.

Sa décision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près avis des président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concernés et du procureur général, le premier président prend chaque année une ordonnance indiquant, pour chacune des juridictions de son ressort, la juridiction devant laquelle des procédures sont susceptibles d'être renvoyé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Cette ordonnance ne peut être modifiée en cours d'année.

Titre VII : De la récusation

Article 668

Tout juge ou conseiller peut être récusé pour les causes ci-après :

- 1°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sont parents ou alliés de l'une des parties ou de son conjoint, de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de son concubin jusqu'au degré de cousin issu de germain inclusivement.

La récusation peut être exercée contre le juge, même au cas de divorce ou de décès de son conjoint, de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de son concubin, s'il a été allié d'une des parties jusqu'au deuxième degré inclusivement ;

- 2°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si les personnes dont il est tuteur, subrogé tuteur, curateur ou conseil judiciaire, si les sociétés ou associations à l'administration ou à la surveillance desquelles il participe ont intérêt dans la contestation ;
- 3°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est parent ou allié, jusqu'au degré indiqué ci-dessus, du tuteur, subrogé tuteur, curateur ou conseil judiciaire d'une des parties ou d'un administrateur, directeur ou gérant d'une société, partie en cause
- 4°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se trouve dans une situation de dépendance vis-à-vis d'une des parties ;
- 5° Si le juge a connu du procès comme magistrat, arbitre ou conseil, ou s'il a déposé comme témoin sur les faits du procès ;
- 6° S'il y a eu procès entre le juge, son conjoint,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leurs parents ou alliés en ligne directe, et l'une des parties, son conjoint, ou ses parents ou alliés dans la même ligne ;
- 7°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ont un procès devant un tribunal où l'une des parties est juge ;
- 8° Si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leurs parents ou alliés en ligne directe ont un différend sur pareille question que celle débattue entre les parties ;
- 9° S'il y a eu entre le juge ou son conjoint ou son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ou son concubin et une des parties toutes manifestations assez graves pour faire suspecter son impartialité.

Article 669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prévenu, l'accusé et toute partie à l'instance qui veut récuser

974 프랑스 형사소송법

un juge d'instruction, un juge de police, un, plusieurs ou l'ensemble des juges du tribunal correctionnel, des conseillers de la cour d'appel ou de la cour d'assises doit, à peine de nullité, présenter requête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L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ne peuvent être récusés.

La requête doit désigner nommément le ou les magistrats récusés et contenir l'exposé des moyens invoqués avec toutes les justifications utiles à l'appui de la demande.

La partie qui aura procédé volontairement devant une cour, un tribunal ou un juge d'instruction ne sera reçue à demander la récusation qu'à raison des circonstances survenues depuis, lorsqu'elles seront de nature à constituer une cause de récusation.

Article 670

Le premier président notifie en la forme administrative la requête dont il a été saisi au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à laquelle appartient le magistrat récusé.

La requête en récusation ne dessaisit pas le magistrat dont la récusation est proposée.

Toutefois, le premier président peut,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ordonner qu'il sera sursis soit à la continuation de l'information ou des débats, soit au prononcé du jugement.

Article 671

Le premier président reçoit le mémoire complémentaire du demandeur, s'il y a lieu, et celui du magistrat dont la récusation est proposée ; il prend l'avis du procureur général et statue sur la requête.

L'ordonnance statuant sur la récusation n'est susceptible d'aucune voie de recours.

Elle produit effet de plein droit.

Article 672

Toute demande de récusation vis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oit faire l'objet d'une requête adressée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 qui,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dite cour, statue par une ordonnance, laquelle n'est susceptible d'aucune voie de recour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70 sont applicables.

Article 673

Toute ordonnance rejetant une demande de récusation prononce la condamnation du demandeur à une amende civile de 75 à 750 euros.

Article 674

Aucun des juges ou conseillers visés à l'article 668 ne peut se récuser d'office sans l'autorisation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ont la décision, rendue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n'est susceptible d'aucune voie de recours.

Article 674-1

La demande en récusation d'un magistrat de la Cour de cassation, saisie en matière pénale, doit être motivée ; elle est déposée au greffe. Le ministère d'un avocat n'est pas obligatoire.

Article 674-2

La chambre compétente statue dans le mois du dépôt de la requête au greffe, après observations du magistrat récusé. Pour le surplus, les dispositions du livre II, titre XX, du Code de procédure civile seront observées.

Titre VIII : Du jugement des infractions commises à l'audience des cours et tribunaux

Article 675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342 et 457, les infractions commises à l'audience sont jugées, d'office ou su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suivant les dispositions ci-après, nonobstant toutes règles spéciales de compétence ou de procédure.

Article 676

S'il se commet une contravention de police pendant la durée de l'audience, le tribunal ou la

cour dresse procès-verbal du fait, entend le prévenu, les témoins, le ministère public, et, éventuellement, le défenseur, et applique sans désenparer les peines portées par la loi.

Article 677

Si le fait commis pendant la durée de l'audience d'un tribunal correctionnel ou d'une cour est un délit, il peut être procédé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précédent.

Dans ce cas, si la peine prononcée est supérieure à un mois d'emprisonnement, un mandat de dépôt peut être décerné.

Si le fait, qualifié délit, a été commis à l'audience d'un tribunal de police ou d'une juridiction de proximité, le président en dresse procès-verbal, qu'il transme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il peut, si la peine encourue est supérieure à six mois d'emprisonnement, ordonner l'arrestation de l'auteur, et sa conduite immédiat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lorsqu'il a été commis pendant la durée d'une audience d'une juridiction de proximité, d'un tribunal de police, d'un tribunal correctionnel ou d'une cour le délit d'outrage prévu par l'article 434-24 du code pénal, le président en dresse procès-verbal qu'il transme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magistrats ayant participé à l'audience lors de la commission du délit ne peuvent composer la juridiction saisie des poursuites.

Article 678

Si le fait commis est un crime, la cour, le tribunal de police,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après avoir fait arrêter l'auteur, l'interroge et dresse procès-verbal des faits ; cette juridiction transmet les pièces et ordonne la conduite immédiate de l'auteur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mpétent qui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Titre IX : Des infractions commise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Chapitre Ier : De la compétence des juridictions françaises

Article 689

Les auteurs ou complices d'infractions commise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peuvent être poursuivis et jugés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soit lorsqu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livre Ier du code pénal ou d'un autre texte législatif,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soit lorsqu'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ou un acte pris en application du traité instituant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 donne compétence aux juridictions françaises pour connaître de l'infraction.

Article 689-1

En application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visées aux articles suivants,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si elle se trouve en France, toute personne qui s'est rendue coupable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e l'une des infractions énumérées par ces articl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 tentative de ces infractions, chaque fois que celle-ci est punissable.

Article 689-2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contre la torture et autres peines ou traitements cruels, inhumains ou dégradants, adoptée à New York le 10 décembre 1984,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e tortures au sens de l'article 1er de la convention.

Article 689-3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répression du terrorisme, signée à Strasbourg le 27 janvier 1977, et de l'accord entre les Etats membr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concernant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répression du

terrorisme, fait à Dublin le 4 décembre 1979,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suivantes :

- 1° 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ou, si la victime est mineure,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supérieure à huit jours, enlèvement et séquestration réprimés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ainsi que les menaces définies aux articles 222-17, alinéa 2, et 222-18 de ce code, lorsque l'infraction est commise contre une personne ayant droit à une protection internationale, y compris les agents diplomatiques ;
- 2° Atteintes à la liberté d'aller et venir définies à l'article 421-1 du code pénal ou tout autre crime ou délit comportant l'utilisation de bombes, de grenades, de fusées, d'armes à feu automatiques, de lettres ou de colis piégés, dans la mesure où cette utilisation présente un danger pour les personnes, lorsque ce crime ou délit est en relation avec une entrepri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ayant pour but de troubler gravement l'ordre public par l'intimidation ou la terreur.

Article 689-4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sur la protection physique des matières nucléaires, ouverte à la signature à Vienne et New York le 3 mars 1980,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suivantes :

- 1° Délit prévu à l'article L1333-11 du code de la défense ;
- 2° Délit d'appropriation indue prévue par l'article L1333-9 du code précité, 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ou à l'intégrité de la personne, vol, extorsion, chantage, escroquerie, abus de confiance, recel, destruction, dégradation ou détérioration ou menace d'une atteinte aux personnes ou aux biens définis par les livres II et III du code pénal, dès lors 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u moyen des matières nucléaire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1er et 2 de la convention ou qu'elle a porté sur ces dernières.

Article 689-5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pour la répression d'actes illicites contre la sécurité de la

navigation maritime et pour l'application du protocole pour la répression d'actes illicites contre la sécurité des plates-formes fixes situées sur le plateau continental, faits à Rome le 10 mars 1988,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suivantes :

- 1° Crime défini aux articles 224-6 et 224-7 du code pénal ;
- 2° 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ou à l'intégrité physique, destruction, dégradation ou détérioration, menace d'une atteinte aux personnes ou aux biens réprimées par les livres II et III du code pénal ou délits définis par l'article 224-8 de ce code et par l'article L. 331-2 du code des ports maritimes, si l'infraction compromet ou est de nature à compromettre la sécurité de la navigation maritime ou d'une plate-forme fixe située sur le plateau continental ;
- 3° 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ou violences réprimés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si l'infraction est connexe soit à l'infraction définie au 1°, soit à une ou plusieurs infractions de nature à compromettre la sécurité de la navigation maritime ou d'une plate-forme visées au 2°.

Article 689-6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sur la répression de la capture illicite d'aéronefs, signée à La Haye le 16 décembre 1970, et de la convention pour la répression d'actes illicites dirigés contre la sécurité de l'aviation civile, signée à Montréal le 23 septembre 1971,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e l'une des infractions suivantes :

- 1° Détournement d'un aéronef non immatriculé en France et tout autre acte de violence dirigé contre les passagers ou l'équipage et commis par l'auteur présumé du détournement, en relation directe avec cette infraction ;
- 2° Toute infraction concernant un aéronef non immatriculé en France et figurant parmi celles énumérées aux a, b et c du 1° de l'article 1er de la convention pour la répression d'actes illicites dirigés contre la sécurité de l'aviation civile précitée.

Article 689-7

Pour l'application du protocole pour la répression des actes illicites de violence dans les aéroports servant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fait à Montréal le 24 février 1988, complémentaire à la convention pour la répression d'actes illicites dirigés contre la sécurité de l'aviation civile, faite à Montréal le 23 septembre 1971,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qui s'est rendue coupable, à l'aide d'un dispositif matériel, d'une substance ou d'une arme :

- 1° De l'une des infractions suivantes si cette infraction porte atteinte ou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 sécurité dans un aérodrome affecté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
 - a) 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tortures et actes de barbarie, violences ayant entraîné la mort, une mutilation ou une infirmité permanente ou, si la victime est mineure,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ndant plus de huit jours, réprimés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un aérodrome affecté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
 - b) Destructures, dégradations et détériorations réprimées par le livre III du code pénal,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encontre des installations d'un aérodrome affecté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ou d'un aéronef stationné dans l'aérodrome et qui n'est pas en service ;
 - c) Délit prévu au quatrième alinéa (3°) de l'article L. 282-1 du code de l'aviation civile,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l'encontre des installations d'un aérodrome affecté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ou d'un aéronef dans l'aérodrome et qui n'est pas en service ;
- 2° De l'infraction définie au sixième alinéa (5°) de l'article L. 282-1 du code de l'aviation civile, lorsqu'elle a été commise à l'encontre des services d'un aérodrome affecté à l'aviation civile internationale.

Article 689-8

Pour l'application du protocole à la convention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fait à Dublin le 27 septembre 1996 et de la convention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orruption impliquant des fonctionnaire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ou des fonctionnaires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faite à Bruxelles le 26 mai 1997, peut être poursuivi et jug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

- 1° Tout fonctionnaire communautaire au service d'une institution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ou d'un organisme créé conformément aux traités instituant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 et ayant son siège en France, coupable du délit prévu aux articles 435-1 et 435-7 du code pénal ou d'une infraction portant atteinte aux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u sens de la convention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faite à Bruxelles le 26 juillet 1995 ;
- 2° Tout Français ou toute personne appartenant à la fonction publique française coupable d'un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435-1, 435-3, 435-7 et 435-9 du code pénal ou d'une infraction portant atteinte aux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u sens de la convention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faite à Bruxelles le 26 juillet 1995
- 3° Toute personne coupable du délit prévu aux articles 435-3 et 435-9 du code pénal ou d'une infraction portant atteinte aux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u sens de la convention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faite à Bruxelles le 26 juillet 1995, lorsque ces infractions sont commises à l'encontre d'un ressortissant français.

Article 689-9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répression des attentats terroristes, ouverte à la signature à New York le 12 janvier 1998,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un crime ou d'un délit d'acte de terrorisme défini par les articles 421-1 et 421-2 du code pénal ou du délit d'association terroriste prévu par l'article 421-2-1 du même code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en employant un engin explosif ou un autre engin meurtrier défini à l'article 1er de ladite convention.

Article 689-10

Pour l'application de la 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répression du financement du terrorisme, ouverte à la signature à New York le 10 janvier 2000,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un crime ou d'un délit défini par les articles 421-1 à 421-2-2 du code pénal lorsque cette infraction constitue un financement d'actes de terrorisme au sens de l'article 2 de ladite convention.

Article 689-11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toute personne qui réside habituellement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et qui s'est rendue coupable à l'étranger de l'un des crimes relevant de la compétenc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en application de la convention portant statut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ignée à Rome le 18 juillet 1998, si les faits sont punis par la législation de l'Etat où ils ont été commis ou si cet Etat ou l'Etat dont elle a la nationalité est partie à la convention précitée.

La poursuite de ces crimes ne peut être exercée qu'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si aucune juridiction internationale ou nationale ne demande la remise ou l'extradition de la personne. A cette fin, le ministère public s'assure auprès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qu'elle décline expressément sa compétence et vérifie qu'aucune autre juridiction internationale compétente pour juger la personne n'a demandé sa remise et qu'aucun autre Etat n'a demandé son extradition.

Article 689-12

Pour l'application du règlement (CE) n° 561 / 2006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5 mars 2006 relatif à l'harmonisation de certaines dispositions de la législation sociale dans le domaine des transports par route, peut être poursuivie et jug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89-1 toute personne coupable d'infractions à la réglementation du temps de conduite et de repos au sens du chapitre II du même règlement commises dans un Etat de l'Union européenne.

Chapitre II : De l'exercice des poursuites et de la juridi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Article 692

Dans les cas prévus au chapitre précédent, aucune poursuite ne peut être exercée contre une personne justifiant qu'elle a été jugée définitivement à l'étranger pour les mêmes faits et,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 été subie ou prescrite.

Article 693

La juridiction compétente est celle du lieu où réside le prévenu, celle de sa dernière résidence connue, celle du lieu où il est trouvé, celle de la résidence de la victime ou, si l'infraction a été commise à bord ou à l'encontre d'un aéronef, celle du lieu d'atterrissage de celui-ci.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exclusives de l'application éventuelle des règles particulières de compétence prévues par les articles 697-3, 705, 706-1 et 706-17.

Lorsqu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peuvent recevoir application, la juridiction compétente est celle de Paris, à moins que la connaissance de l'affaire ne soit renvoyée à une juridiction plus voisine du lieu de l'infraction par la Cour de cassation statuant sur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à la demande des parties.

Titre X : De l'entraide judiciaire international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Section 1 : Transmission et exécution des demandes d'entraide

Article 694

En l'absence de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stipulant autrement :

- 1°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et destinées aux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sont transmises par l'intermédiair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Les pièces d'exécution sont renvoyées aux autorités de l'Etat requérant par la

même voie ;

2°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et destinées aux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sont transmises par la voie diplomatique.

Les pièces d'exécution sont renvoyées aux autorités de l'Etat requérant par la même voie.

En cas d'urgence, les demandes d'entraide sollicitées par les autorités françaises ou étrangères peuvent être transmises directement aux autorités de l'Etat requis compétentes pour les exécuter. Le renvoi des pièces d'exécution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est effectué selon les mêmes modalités.

Toutefois, sauf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stipulant autrement,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et destinées aux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doivent faire l'objet d'un avis donné par la voie diplomatique par le gouvernement étranger intéressé.

Article 694-1

En cas d'urgence,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sont transmises,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à l'article 694-2,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au juge d'instruc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lles peuvent également être adressées à ces magistrats par l'intermédiaire du procureur général.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çoit directement d'une autorité étrangère une demande d'entraide qui ne peut être exécutée que par le juge d'instruction, il la transmet pour exécution à ce dernier ou saisit le procureur général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694-4.

Avant de procéder à l'exécution d'une demande d'entraide dont il a été directement saisi, le juge d'instruction la communique immédiatement pour av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694-2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sont exécut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par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requis à cette fin par ce magistrat.

Elles sont exécut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par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ur commission rogatoire de ce magistrat lorsqu'elles nécessitent certains actes de procédure qui ne peuvent être ordonnés ou exécutés qu'au cours d'une instruction préparatoire.

Article 694-3

Les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sont exécutées selon les règles de procédure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Toutefois, si la demande d'entraide le précise, elle est exécutée selon les règles de procédure expressément indiquées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à condition, sous peine de nullité, que ces règles ne réduisent pas les droits des parties ou les garanties procédurales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Lorsque la demande d'entraide ne peut être exécutée conformément aux exigences de l'Etat requérant, les autorités compétentes françaises en informent sans délai les autorités de l'Etat requérant et indiquent dans quelles conditions la demande pourrait être exécutée.

Les autorités françaises compétentes et celles de l'Etat requérant peuvent ultérieurement s'accorder sur la suite à réserver à la demande, le cas échéant, en la subordonnant au respect desdites conditions.

L'irrégularité de la transmission de la demande d'entraide ne peut constituer une cause de nullité des actes accomplis en exécution de cette demande.

Article 694-4

Si l'exécution d'une demande d'entraide émanant d'une autorité judiciaire étrangère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ordre public ou aux intérêts essentiels de la N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 de cette demande ou avisé de cette demande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694-1 la transmet au procureur général qui détermine, s'il y a lieu, d'en saisir le ministre de la justice et donne, le cas échéant, avis de cette transmission au juge d'instruction. S'il est saisi, le ministre de la justice informe l'autorité requérante, le cas échéant, de ce qu'il ne peut être donné suite, totalement ou partiellement, à sa demande.

Cette information est notifiée à l'autorité judiciaire concernée et fait obstacle à l'exécution de la demande d'entraide ou au retour des pièces d'exécution.

Section 2 : De l'entraide aux fins d'audition, de surveillance ou d'infiltration

Article 694-5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sont applicables pour l'exécution simultan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et à l'étranger, de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ou d'actes d'entraide réalisés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Les interrogatoires, les auditions ou les confrontations réalisés à l'étranger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sont exécuté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sauf si 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y fait obstacle.

L'interrogatoire ou la confrontation d'une personne poursuivie ne peut être effectué qu'avec son consenteme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434-13 et 434-15-1 du code pénal sont applicables aux témoins entendu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judiciaires de l'Etat requér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Article 694-6

Lorsque la surveillance prévue à l'article 706-80 doit être poursuivie dans un Etat étranger, elle est autoris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hargé de l'enquête.

Les procès-verbaux d'exécution des opérations de surveillance ou rapports y afférents ainsi que l'autorisation d'en poursuivre l'exécution sur le territoire d'un Etat étranger sont versé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Article 694-7

Avec l'accord préalable du ministre de la justice saisi d'une demande d'entraide judiciaire à cette fin, des agents de police étrangers peuvent poursuivr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ous la direction d'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français, des opérations d'infiltration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1 à 706-87.

L'accord du ministre de la justice peut être assorti de conditions.

L'opération doit ensuite être autoris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ou le juge d'instruction du même ressor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81.

Le ministre de la justice ne peut donner son accord que si les agents étrangers sont affectés dans leur pays à un service spécialisé et exercent des missions de police similaires à celles des agents nationaux spécialement habilités mentionnés à l'article 706-81.

Article 694-8

Avec l'accord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les agents de police étrangers mentionné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94-7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s articles 706-81 à 706-87, participer sous la direction d'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français à des opérations d'infiltration conduite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judiciaire nationale.

Article 694-9

Lorsque, conformément aux stipulations prévue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communique à d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des informations issues d'une procédure pénale en cours, il peut soumettre l'utilisation de ces informations aux conditions qu'il détermine.

Section 3 : De l'entraide aux fins de saisie des produits d'une infraction en vue de leur confiscation ultérieure

Article 694-10

En l'absence de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stipulant autrement, les articles 694-11 à 694-13 sont applicables aux demandes d'entraide émanant des autorités étrangères compétentes, tendant à la saisie, en vue de leur confiscation ultérieure, d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quelle qu'en soit la nature, qui paraissent être le produit direct ou indirect de l'infraction ainsi que de tout bien dont la valeur correspond au produit de cette infraction.

Article 694-11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694-4, la demande présent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94-10 est rejetée si l'un des motifs de refus mentionnés à l'article 713-37 apparaît d'ores et déjà constitué.

Article 694-12

L'exécu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e mesures conservatoires faisant l'objet d'une demande présentée par une autorité judiciaire étrangère,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est ordonné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et selon les modalités du présent code, par le juge d'instruction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ès lors que le propriétaire des biens ne pouvait en ignorer l'origine ou l'utilisation frauduleuse.

Article 694-13

Le refus d'autorise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étrangère emporte de plein droit, aux frais du Trésor, mainlevée des saisies ordonnées. Il en est de même lorsque les poursuites engagées à l'étranger ont pris fin.

**Chapitre II : Dispositions propres à l'entraide entre la France et l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Article 695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sont applicables aux demandes d'entraide entre la France et l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Section 1 : Transmission et exécution des demandes d'entraide

Article 695-1

Sauf si 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stipule autrement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4-4, les demandes d'entraide sont transmises et les pièces d'exécution retournées

directement entre les autorités judiciair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es pour les délivrer et les exécuter,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694-1 à 694-3.

Section 2 : Des équipes communes d'enquête

Article 695-2

Avec l'accord préalable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le consentement du ou des autres Etats membres concernés, l'autorité judiciaire compétente peut créer une équipe commune d'enquête, soit lorsqu'il y a lieu d'effectuer,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française, des enquêtes complexes impliquant la mobilisation d'importants moyens et qui concernent d'autres Etats membres, soit lorsque plusieurs Etats membres effectuent des enquêtes relatives à des infractions exigeant une action coordonnée et concertée entre les Etats membres concernés.

Les agents étrangers détachés par un autre Etat membre auprès d'une équipe commune d'enquête, dans la limite des attributions attachées à leur statut, peuvent, sous la direction de l'autorité judiciaire compétente, avoir pour mission, le cas échéant,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

- 1° De constater tous crimes, délits ou contraventions et d'en dresser procès-verbal, au besoin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 droit de leur Etat ;
- 2° De recevoir par procès-verbal les déclarations qui leur sont faites par toute personne susceptible de fournir des renseignements sur les faits en cause, au besoin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 droit de leur Etat ;
- 3° De seconde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français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
- 4° De procéder à des surveillances et, s'ils sont spécialement habilités à cette fin, à des infiltratio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706-81 et suivants et sans qu'il soit nécessaire de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4-7 et 694-8.

Les agents étrangers détachés auprès d'une équipe commune d'enquête peuvent exercer ces missions, sous réserve du consentement de l'Etat membre ayant procédé à leur détachement. Ces agents n'interviennent que dans les opérations pour lesquelles ils ont été désignés.

Aucun des pouvoirs propres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français, responsable de l'équipe, ne peut leur être délégué.

Un original des procès-verbaux qu'ils ont établis et qui doit être rédigé ou traduit en langue française est versé à la procédure française.

Article 695-3

Dans le cadre de l'équipe commune d'enquête,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français détachés auprès d'une équipe commune d'enquête peuvent procéder aux opérations prescrites par le responsable d'équipe,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de l'Etat où ils interviennent, dans la limite des pouvoirs qui leur sont reconnus par le présent code.

Leurs missions sont définies par l'autorité de l'Etat membre compétente pour diriger l'équipe commune d'enquête sur le territoire duquel l'équipe intervient.

Ils peuvent recevoir les déclarations et constater les infractions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 l'accord de l'Etat sur le territoire duquel ils interviennent.

Section 3 : De l'unité Eurojust

Article 695-4

Conformément à la décision du Conseil du 28 février 2002 instituant Eurojust afin de renforcer la lutte contre les formes graves de criminalité, l'unité Eurojust, organe de l'Union européenne doté de la personnalité juridique agissant en tant que collège ou par l'intermédiaire d'un représentant national, est chargée de promouvoir et d'améliorer la coordination et la coopération entr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dans toutes les enquêtes et poursuites relevant de sa compétence.

Article 695-5

L'unité Eurojust, agissant par l'intermédiaire de ses représentants nationaux ou en tant que collège, peut :

- 1° Informer le procureur général des infractions dont elle a connaissance et lui demander de faire procéder à une enquête ou de faire engager des poursuites ;
- 2°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de dénoncer ou de faire dénoncer des infractions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un autre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

3°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de faire mettre en place une équipe commune d'enquête ;

4° Demander au procureur général ou au juge d'instruction de lui communiquer les informations issues de procédures judiciaires qui sont nécessaires à l'accomplissement de ses tâches.

Article 695-6

Lorsque le procureur général ou le juge d'instruction saisi ne donne pas suite à une demande de l'unité Eurojust, il l'informe dans les meilleurs délais de la décision intervenue et de ses motifs.

Toutefois, cette motivation n'est pas obligatoire pour les demandes mentionnées aux 1°, 2° et 4° de l'article 695-5, lorsqu'elle peut porter atteinte à la sécurité de la Nation ou compromettre le bon déroulement d'une enquête en cours ou la sécurité d'une personne.

Article 695-7

Lorsqu'une demande d'entraide nécessite, en vue d'une exécution coordonnée, l'intervention de l'unité Eurojust, celle-ci peut en assurer la transmission aux autorités requises par l'intermédiaire du représentant national intéressé.

Section 4 : Du représentant national auprès d'Eurojust

Article 695-8

Le représentant national est un magistrat hors hiérarchie mis à disposition de l'unité Eurojust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Le ministre de la justice peut lui adresser des instruction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rticle 30.

Article 695-9

Dans le cadre de sa mission, le représentant national a accès aux informations du casier judiciaire

national et des fichiers de police judiciaire.

Il peut également demander aux autorités judiciaires compétentes de lui communiquer les informations issues des procédures judiciaires qui sont nécessaires à l'accomplissement de sa mission.

L'autorité judiciaire sollicitée peut toutefois refuser cette communication si celle-ci est de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ordre public ou aux intérêts essentiels de la Nation.

Elle peut également différer cette communication pour des motifs liés au bon déroulement d'une enquête en cours ou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Le représentant national est informé par le procureur général des affaires susceptibles d'entrer dans le champ de compétence d'Eurojust et qui concernent au moins deux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Il est également compétent pour recevoir et transmettre au procureur général d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enquêtes de l'Office européen de lutte antifraude.

**Section 5 : De l'émission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n application de la décision-cadre du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du 22 juillet 2003**

Paragraphe 1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695-9-1

Une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st une décision prise par une autorité judiciaire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ppelé Etat d'émission, afin d'empêcher la destruction, la transformation, le déplacement, le transfert ou l'aliénation d'un bien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e confiscation ou de constituer un élément de preuve et se trouvant sur le territoire d'un autre Etat membre, appelé Etat d'exécution.

L'autorité judiciaire est compétente, selon les règles et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 présente section, pour prendre et transmettre aux autorités judiciaires d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ou pour exécuter, sur leur demande, une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La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st soumise aux mêmes règles et entraîne les mêmes effets juridiques que la saisie.

Article 695-9-2

Les biens ou les éléments de preuve qui peuvent donner lieu à la prise ou à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gel sont les suivants :

- 1° Tout bien meuble ou immeuble, corporel ou incorporel, ainsi que tout acte juridique ou document attestant d'un titre ou d'un droit sur ce bien, dont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estime qu'il est le produit d'une infraction ou correspond en tout ou partie à la valeur de ce produit, ou constitue l'instrument ou l'objet d'une infraction ;
- 2° Tout objet, document ou donnée, susceptible de servir de pièce à conviction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pénale dans l'Etat d'émission.

Article 695-9-3

Toute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st accompagnée d'un certificat décerné par l'autorité judiciaire ayant ordonné la mesure et comprenant les mentions suivantes :

- 1° L'identification de l'autorité judiciaire qui a pris, validé ou confirmé la décision de gel et de l'autorité compétente pour exécuter ladite décision dans l'Etat d'émission, si celle-ci est différente de l'autorité d'émission ;
- 2° L'identification de l'autorité centrale compétente pour la transmission et la réception des décisions de gel, lorsqu'une telle autorité a été désignée ;
- 3° La date et l'objet de la décision de gel ainsi que, s'il y a lieu, les formalités procédurales à respecter pour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gel concernant des éléments de preuve ;
- 4° Les données permettant d'identifier les biens ou éléments de preuve faisant l'objet de la décision de gel, notamment la description précise de ces biens ou éléments, leur localisation dans l'Etat d'exécution et la désignation de leur propriétaire ou de leur gardien ;
- 5° L'identité de la ou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soupçonnées d'avoir commis l'infraction ou qui ont été condamnées et qui sont visées par la décision de gel ;

- 6° Les motifs de la décision de gel, le résumé des faits connus de l'autorité judiciaire qui en est l'auteur, la nature et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 l'infraction qui la justifie y compris, s'il y a lieu, l'indication que ladite infraction entre, en vertu de la loi de l'Etat d'émission,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mentionnées aux troisième à trente-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95-23 et y est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
- 7° La description complète de l'infraction lorsque celle-ci n'entre pas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visées au 6° ;
- 8° Les voies de recours contre la décision de gel pour les personnes concernées, y compris les tiers de bonne foi, ouvertes dans l'Etat d'émission, la désignation de la juridiction devant laquelle ledit recours peut être introduit et le délai dans lequel celui-ci peut être formé ;
- 9° Le cas échéant, les autres circonstances pertinentes de l'espèce ;
- 10° La signature de l'autorité judiciaire d'émission ou celle de son représentant attestant l'exactitude d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certificat.

Article 695-9-4

La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st accompagnée, selon les cas :

- 1° D'une demande de transfert des éléments de preuve vers l'Etat d'émission ;
- 2° D'une demande d'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du bien.

A défaut, le certificat contient l'instruction de conserver le bien ou l'élément de preuve dans l'Etat d'exécution jusqu'à la réception d'une des demandes visées aux 1° et 2° et mentionne la date probable à laquelle une telle demande sera présentée.

Les demandes visées aux 1° et 2° sont transmises par l'Etat d'émission et traitées par l'Etat d'exécution conformément aux règles applicables à l'entraide judiciaire en matière pénale et à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matière de confiscation.

Article 695-9-5

Le certificat doit être traduit dans la langue officielle ou dans 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

l'Etat d'exécution ou dans l'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s institution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cceptées par cet Etat.

Article 695-9-6

La décision de gel et le certificat so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transmis directement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exécut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t dans des conditions permettant à cette dernière autorité, d'en vérifier l'authenticité. Lorsqu'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 fait une déclaration à cet effet, la décision de gel et le certificat sont expédiés par l'intermédiaire d'une ou plusieurs autorités centrales désignées par ledit Etat.

Paragraphe 2 : Dispositions relatives aux décisions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prises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Article 695-9-7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juridictions d'instructio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les juridictions de jugement compétents, en vertu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pour ordonner une saisie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sont compétents pour prendre, dans les mêmes cas et conditions, des décisions de gel visant des biens ou des éléments de preuve situés sur le territoire d'un autre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et pour établir les certificats afférents à ces décisions.

Le certificat peut préciser que la demande de gel visant des éléments de preuve devra être exécutée dans l'Etat d'exécution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Article 695-9-8

La décision de gel prise par un juge d'instruction est transmise par celui-ci, avec son certificat,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exécu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695-9-6. Dans les autres cas, la décision et le certificat sont transmis par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qui en est l'auteur.

Article 695-9-9

Les décisions qui emportent mainlevée de la décision de gel sont transmises sans délai,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695-9-8,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exécution.

Paragraphe 3 :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prises par les autorités étrangères

Article 695-9-10

Le juge d'instruction est compétent pour statuer sur les demandes de gel de biens et d'éléments de preuve ainsi que pour les exécuter.

Article 695-9-11

La décision de gel et le certificat émanant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sont transmi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695-9-6, au juge d'instru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e cas échéant par l'intermédia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procureur général.

Le juge d'instru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st celui du lieu où se situe l'un quelconque des biens ou des éléments de preuve faisant l'objet de la demande de gel ou, si ce lieu n'est pas précisé,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Si l'autorité judiciaire à laquelle la demande de gel a été transmise n'est pas compétente pour y donner suite, elle la transmet sans délai à l'autorité judiciaire compétente et en inform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Article 695-9-12

Avant d'y statuer, le juge d'instruction saisi directement d'une demande de gel la communique pour avi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reçoit directement une demande de gel la transmet pour exécution, avec son avis, au juge d'instruction.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694-4,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le procureur général.

Article 695-9-13

Après s'être assuré de la régularité de la demande, le juge d'instruction se prononce su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si possible, dans les vingt-quatre heures suivant la réception de ladite décision.

Il exécute ou fait exécuter immédiatement la décision de gel.

Il informe sans délai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d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695-9-14

Les décisions de gel d'éléments de preuve sont exécutées selon les règles de procédure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Toutefois, si la demande ou le certificat le précise, les décisions de gel sont exécuté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94-3.

Article 695-9-15

Les décisions de gel de biens ordonnées à des fins de confiscation ultérieure sont exécutées,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rticle 695-9-16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gel peut être refusée si le certificat n'est pas produit, s'il est établi de manière incomplète ou s'il ne correspond manifestement pas à la décision de gel.

Toutefois, le juge d'instruction peut impartir un délai à l'auteur de la décision pour que le certificat soit produit, complété ou rectifié, accepter un document équivalent ou, s'il s'estime suffisamment éclairé, dispense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de toute production complémentaire.

Article 695-9-17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694-4,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gel est refusée dans l'un des cas suivants :

- 1° Si une immunité y fait obstacle ou si le bien ou l'élément de preuve est insaisissable selon la loi française ;
- 2° S'il ressort du certificat que la décision de gel se fonde sur des infractions pour lesquelles la personne visée dans ladite décision a déjà été jugée définitivement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ou par celles d'un Etat autre que l'Etat d'émission, à condition,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it été exécutée, soit en cours d'exécution ou ne puisse plus être ramenée à exécution selon les lois de l'Etat de condamnation ;
- 3° S'il est établi que la décision de gel a été prise dans le but de poursuivre ou de condamner une personne en raison de son sexe, de sa race, de sa religion, de son origine ethnique, de sa nationalité, de sa langue,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ou que l'exécution de ladite décision peut porter atteinte à la situation de cette personne pour l'une de ces raisons ;
- 4° Si la décision de gel a été prise à des fins de confiscation ultérieure d'un bien et que les faits qui la justifient ne constituent pas une infraction permettant, selon la loi française, d'ordonner la saisie de ce bien.

Toutefois, le motif de refus prévu au 4° n'est pas opposable lorsque la décision de gel concerne une infraction qui, en vertu de la loi de l'Etat d'émission, entre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mentionnées aux troisième à trente-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95-23 et y est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Article 695-9-18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4° de l'article 695-9-17,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ne peut, en matière de taxes ou d'impôts, de douanes et de change, être refusée au motif que la loi française ne prévoit pas le même type de taxes ou d'impôts ou le même type de réglementation en matière de taxes ou d'impôts, de douane et de change que la loi de l'Etat d'émission.

Article 695-9-19

Le refus d'exécuter une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est motivé.
Il est notifié sans délai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Lorsqu'il est impossible d'exécuter la décision de gel parce que le bien ou les éléments de preuve ont disparu, ont été détruits, n'ont pas été retrouvés à l'endroit indiqué dans le certificat ou qu'il n'a pas été possible de les localiser, même après consultation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le juge d'instruction en informe sans délai l'autorité judiciaire dudit Etat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695-9-20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gel de biens ou d'éléments de preuve peut être différée :

- 1° Lorsqu'elle risque de nuire à une enquête pénale en cours ;
- 2° Lorsque l'un quelconque des biens ou éléments de preuve en cause a déjà fait l'objet d'une mesure de gel ou de saisi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pénale ;
- 3° Lorsque la décision de gel est prise en vue de la confiscation ultérieure d'un bien et que celui-ci fait déjà l'objet d'une décision de gel ou de saisi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non pénale en France ;
- 4° Lorsque l'un quelconque des biens ou éléments de preuve en cause est un document ou un support protégé au titre de la défense nationale, tant que la décision de le déclassifier n'a pas été notifi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au juge d'instruction en charge d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Le juge d'instruction qui décide de différe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en informe sans délai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n lui précisant le motif du report et, si possible, sa durée prévisible.

Article 695-9-21

Dès que le motif de report n'existe plus, le juge d'instruction procède à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5-9-13.

Article 695-9-22

Celui qui détient l'élément de preuve ou le bien objet de la décision de gel ou toute autre

1000 프랑스 형사소송법

personne qui prétend avoir un droit sur ledit bien ou élément peut, par voie de requête remise au greff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dans les dix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mise à exécution de la décision considérée, former un recours à l'encontre de cette dernièr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73 sont alors applicables.

Le recours n'est pas suspensif et ne permet pas de contester les motifs de fond de la décision de gel.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ar une décision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utoriser l'Etat d'émission à intervenir à l'audience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par ledit Etat à cet effet ou, le cas échéant, directement par l'intermédiaire des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prévus à l'article 706-71.

Lorsque l'Etat d'émission est autorisé à intervenir, il ne devient pas partie à la procédure.

Article 695-9-24

La personne intéressée par la décision de gel peut également s'informer, auprès du greffe du juge d'instruction, des voies de recours contre la décision de gel ouvertes dans l'Etat d'émission et mentionnées dans le certificat.

Article 695-9-25

Le procureur général inform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du recours éventuellement exercé et des moyens soulevés, afin que cette autorité puisse produire ses observations, le cas échéant par l'intermédiaire des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prévus à l'article 706-71.

Il l'avise des résultats de cette action.

Article 695-9-26

Lorsqu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a demandé le transfert d'un élément de preuve et que la décision d'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gel revêt un caractère définitif, le juge d'instruction prend les mesures nécessaires au transfert, dans les meilleurs délais, de cet élément de preuve à ladite autorité judiciaire, selon les règles applicables à l'entraide judiciaire en matière pénale.

Article 695-9-27

Lorsqu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n'a pas demandé le transfert de l'élément de preuve faisant l'objet de la décision de gel ou lorsque la demande a été émise en vue de la confiscation ultérieure du bien, celui-ci est conservé sur le territoire français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Si le juge d'instruction, en application de ces règles, envisage de ne pas conserver l'élément de preuve ou le bien, il en avis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et la met à même de produire ses observations avant de prendre sa décision.

Article 695-9-29

Le juge d'instruction inform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de toute autre mesure de gel ou saisie dont le bien ou l'élément de preuve concerné par la décision de gel fait l'objet.

Article 695-9-30

La mainlevée totale ou partielle de la mesure de gel peut être demandée par toute personne intéressée.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envisage, d'office ou à la demande de toute personne intéressée, de donner mainlevée de la mesure de gel, il en avis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et la met à même de produire ses observations.

La mainlevée de la décision de gel prononcée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emporte de plein droit,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mainlevée des mesures d'exécution prises à la demande de cette autorité.

Chapitre III : Dispositions propres à l'entraide entre la France et certains Etats

Article 695-10

Les dispositions des sections 1 et 2 du chapitre II sont applicables aux demandes d'entraide entre la France et les autres Etats parties à toute convention comportant des stipulations similaires à celles de la convention du 29 mai 2000 relative à l'entraide judiciaire en matière pénale entre l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Chapitre IV : Du mandat d'arrêt européen et des procédures de remise entre Etats membres résultant de la décision-cadre du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du 13 juin 2002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695-11

Le mandat d'arrêt européen est une décision judiciaire émise par 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ppelé Etat membre d'émission, en vue de l'arrestation et de la remise par un autre Etat membre, appelé Etat membre d'exécution, d'une personne recherchée pour l'exercice de poursuites pénales ou pour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 de liberté. L'autorité judiciaire est compétente, selon les règles et sou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e présent chapitre, pour adresser aux autorités judiciaires d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ou pour exécuter sur leur demande un mandat d'arrêt européen.

Article 695-12

Les faits qui peuvent donner lieu à l'émiss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sont, aux termes de la loi de l'Etat membre d'émission, les suivants :

- 1° Les faits punis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un an ou, lorsqu'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est intervenue, quand la peine prononcée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quatre mois d'emprisonnement ;
- 2° Les faits punis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un an ou, lorsqu'une mesure de sûreté a été infligée, quand la durée à subir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quatre mois de privation de liberté.

Article 695-13

Tout mandat d'arrêt européen contient les renseignements suivants :

- l'identité et la nationalité de la personne recherchée ;
- la désignation précise et les coordonnées complètes de l'autorité judiciaire dont il émane ;
- l'indication de l'existence d'un jugement exécutoire, d'un mandat d'arrêt ou de toute autre

décision judiciaire ayant la même force selon la législation de l'Etat membre d'émission et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695-12 et 695-23 ;

- la nature et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 l'infraction, notamment au regard de l'article 695-23 ;
- la date, le lieu et les circonstances dans lesquels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insi que le degré de participation à celle-ci de la personne recherchée ;
- la peine prononcée, s'il s'agit d'un jugement définitif, ou les peines prévues pour l'infraction par la loi de l'Etat membre d'émission ainsi que, dans la mesure du possible, les autres conséquences de l'infraction.

Article 695-14

Le mandat d'arrêt européen adressé à l'autorité compétente d'un autre Etat membre doit être traduit dans la langue officielle ou dans 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 l'Etat membre d'exécution ou dans l'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s institution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cceptées par cet Etat.

Article 695-15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se trouve en un lieu connu sur le territoire d'un autre Etat membre, le mandat d'arrêt européen peut être adressé directement à l'autorité judiciaire d'exécut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dans des conditions permettant à cette autorité d'en vérifier l'authenticité.

Dans les autres cas, la transmiss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peut s'effectuer soit par la voie du Système d'information Schengen, soit par le biais du système de télécommunication sécurisé du Réseau judiciaire européen, soit, s'il n'est pas possible de recourir au Système d'information Schengen, par la voie de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police criminelle (Interpol) ou par tout autre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t dans des conditions permettant à l'autorité judiciaire d'exécution d'en vérifier l'authenticité.

Un signalement dans le Système d'information Schengen, accompagné des informations prévues à l'article 695-13, vaut mandat d'arrêt européen.

A titre transitoire, jusqu'au moment où le Système d'information Schengen aura la capacité de

1004 프랑스 형사소송법

transmettre toutes les informations visées à l'article 695-13, le signalement vaut mandat d'arrêt européen en attendant l'envoi de l'original.

Section 2 : Dispositions relatives à l'émiss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Paragraphe 1er : Conditions d'émiss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Article 695-16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d'instruction, de jugement ou d'application des peines ayant décerné un mandat d'arrêt met celui-ci à exécution sous la forme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soit à la demande de la juridiction, soit d'office, selon les règles et sou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es articles 695-12 à 695-15.

En l'absence de renonciation au bénéfice du principe de spécialité,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a déjà été remise à la France pour un fait quelconque autre que celui pour lequel elle est de nouveau recherchée,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de jugement, d'instruction ou d'application des peines ayant décerné un mandat d'amener met celui-ci à exécution sous la forme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Le ministère public est également compétent, s'il l'estime nécessaire, pour assurer, sous la forme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l'exécution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ou égale à quatre moi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de jugement, selon les règles et sou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es articles 695-12 à 695-15.

Article 695-17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a été informé de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il adresse sans délai au ministre de la justice une copie du mandat d'arrêt transmis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exécution.

Paragraphe 2 : Effets du mandat d'arrêt européen

Article 695-18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qui a émis le mandat d'arrêt européen a obtenu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celle-ci ne peut être poursuivie, condamnée ou détenue en vue de l'exécution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our un fait quelconque antérieur à la remise et autre que celui qui a motivé cette mesure, sauf dans l'un des cas suivants :

- 1° Lorsque la personne a renoncé expressément, en même temps qu'elle a consenti à sa remise, au bénéfice de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de l'Etat membre d'exécution ;
- 2° Lorsque la personne renonce expressément, après sa remise, au bénéfice de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5-19 ;
- 3° Lorsqu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exécution, qui a remis la personne, y consent expressément ;
- 4° Lorsque, ayant eu la possibilité de le faire, la personne recherchée n'a pas quitté le territoire national dans les quarante-cinq jours suivant sa libération définitive, ou si elle y est retournée volontairement après l'avoir quitté ;
- 5° Lorsque l'infraction n'est pas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Article 695-19

Pour le cas visé au 2° de l'article 695-18, la renonciation est donnée devant la juridiction d'instruction, de jugement ou d'application des peines dont la personne relève après sa remise et a un caractère irrévocable.

Lors de la comparution de la personne remise, la juridiction compétente constate l'identité et recueille les déclarations de cette personne.

Il en est dressé procès-verbal.

L'intéressé, assisté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d'un interprète, est informé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sa renonciation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sur sa situation pénale et du caractère irrévocable de la renonciation donnée.

1006 프랑스 형사소송법

Si, lors de sa comparution, la personne remise déclare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la juridiction compétente,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et l'avocat de la personne, en donne acte à celle-ci.

La décision précise les faits pour lesquels la renonciation est intervenue.

Article 695-20

Pour les cas visés au 3° des articles 695-18 et 695-21, la demande de consentement est adressée par le ministère public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exécution.

Elle doit conteni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5-14, les renseignements énumérés à l'article 695-13.

Pour le cas mentionné au 3° de l'article 695-18, elle est accompagnée d'un procès-verbal consignait les déclarations faites par la personne remise concernant l'infraction pour laquelle le consentement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exécution est demandé.

Article 695-21

I. -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qui a émis le mandat d'arrêt européen a obtenu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celle-ci ne peut, sans le consentement de l'Etat membre d'exécution, être remise à un autre Etat membre en vue de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s de liberté pour un fait quelconque antérieur à la remise et différent de l'infraction qui a motivé cette mesure, sauf dans l'un des cas suivants :

- 1° Lorsque la personne ne bénéficie pas de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conformément aux 1° à 4° de l'article 695-18 ;
- 2° Lorsque la personne accepte expressément, après sa remise, d'être livrée à un autre Etat memb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5-19 ;
- 3° Lorsqu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exécution, qui a remis la personne, y consent expressément.

II. - Lorsque le ministère public qui a délivré un mandat d'arrêt européen a obtenu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celle-ci ne peut être extradée vers un Etat non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sans le consentement d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membre qui l'a remise.

**Section 3 :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décerné par les juridictions étrangères**

Paragraphe 1er : Conditions d'exécution

Article 695-22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est refusée dans les cas suivants :

- 1° Si les faits pour lesquels il a été émis pouvaient être poursuivis et jugés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et que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l'amnistie ;
- 2° Si la personne recherchée a fait l'objet,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ou par celles d'un autre Etat membre que l'Etat d'émission ou par celles d'un Etat tiers, d'une décision définitive pour les mêmes faits que ceux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européen à condition,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it été exécutée ou soit en cours d'exécution ou ne puisse plus être ramenée à exécution selon les lois de l'Etat de condamnation ;
- 3° Si la personne recherchée était âgée de moins de treize ans au moment des faits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européen ;
- 4° Si les faits pour lesquels il a été émis pouvaient être poursuivis et jugés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et que la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ou de la peine se trouve acquise ;
- 5° S'il est établi que ledit mandat d'arrêt a été émis dans le but de poursuivre ou de condamner une personne en raison de son sexe, de sa race, de sa religion, de son origine ethnique, de sa nationalité, de sa langue,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ou qu'il peut être porté atteinte à la situation de cette personne pour l'une de ces raisons.

Article 695-23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est également refusée si le fait faisant l'objet dudit mandat d'arrêt ne constitue pas une infraction au regard de la loi française.

Par dérogation au premier alinéa, un mandat d'arrêt européen est exécuté sans contrôle de la

1008 프랑스 형사소송법

double incrimination des faits reprochés lorsque les agissements considérés sont, aux termes de la loi de l'Etat membre d'émission, punis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similaire et

entrent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suivantes :

- participation à une organisation criminelle ;
- terrorisme ;
- traite des êtres humains ;
- exploitation sexuelle des enfants et pornographie infantile ;
- trafic illicite de stupéfiants et de substances psychotropes ;
- trafic illicite d'armes, de munitions et d'explosifs ;
- corruption ;
- fraude, y compris la fraude portant atteinte aux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u sens de la convention du 26 juillet 1995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financier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 blanchiment du produit du crime ou du délit ;
- faux monnayage, y compris la contrefaçon de l'euro ;
- cybercriminalité ;
- crimes et délits contre l'environnement, y compris le trafic illicite d'espèces animales menacées et le trafic illicite d'espèces et d'essences végétales menacées ;
- aide à l'entrée et au séjour irréguliers ;
- homicide volontaire, coups et blessures graves ;
- trafic illicite d'organes et de tissus humains ;
- enlèvement, séquestration et prise d'otage ;
- racisme et xénophobie ;
- vols commis en bande organisée ou avec arme ;
- trafic illicite de biens culturels, y compris antiquités et oeuvres d'art ;
- escroquerie ;
- extorsion ;

- contrefaçon et piratage de produits ;
- falsification de documents administratifs et trafic de faux ;
- falsification de moyens de paiement ;
- trafic illicite de substances hormonales et autres facteurs de croissance ;
- trafic illicite de matières nucléaires et radioactives ;
- trafic de véhicules volés ;
- viol ;
- incendie volontaire ;
- crimes et délits relevant de la compétence de la Cour pénale internationale ;
- détournement d'avion ou de navire ;
- sabotage.

Lorsque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à trente-quatrième alinéas sont applicables,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s faits et la détermination de la peine encourue relèvent de l'appréciation exclusive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En matière de taxes et d'impôts, de douane et de change,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ne pourra être refusée au motif que la loi française n'impose pas le même type de taxes ou d'impôts ou ne contient pas le même type de réglementation en matière de taxes, d'impôts, de douane et de change que la loi de l'Etat membre d'émission.

Article 695-24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peut être refusée :

- 1° Si, pour les faits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la personne recherchée fait l'objet de poursuites devant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ou si celles-ci ont décidé de ne pas engager les poursuites ou d'y mettre fin ;
- 2° Si la personne recherchée pour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s de liberté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et que les autorités françaises compétentes s'engagent à faire procéder à cette exécution ;
- 3° Si les faits pour lesquels il a été émis ont été commis, en tout ou en parti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

1010 프랑스 형사소송법

4° Si l'infraction a été commise hors du territo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et que la loi française n'autorise pas la poursuite de l'infraction lorsqu'elle est commise hors du territoire national.

Article 695-25

Tout refus d'exécuter un mandat d'arrêt européen doit être motivé.

Paragraphe 2 : Procédure d'exécution

Article 695-26

Dans le cas où la personne recherchée se trouve en un lieu connu sur le territoire national, le mandat d'arrêt émanant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peut être adressé directement, en original ou en copie certifiée conforme,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u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qui l'exécute après s'être assuré de la régularité de la requête. Dans les autres cas, le mandat d'arrêt européen est exécuté au vu de la transmission effectu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95-15.

L'article 74-2 est applicable à la recherche d'une personne faisant l'objet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L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alors respectiveme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conseiller par lui désigné.

Si le procureur général auquel un mandat d'arrêt européen a été adressé estime qu'il n'est pa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our y donner suite, il le transmet au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t en inform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L'original mentionné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695-15 ou la copie certifiée conforme doit parvenir au plus tard six jours ouvrables après la date de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Dans le cas où la personne recherchée bénéficie d'un privilège ou d'une immunité en France,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demande sans délai la levée aux autorités françaises compétentes.

Si les autorités françaises ne sont pas compétentes, la demande de levée est laissée aux soins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Dans le cas où la personne recherchée a déjà été remise à la France à titre extraditionnel par un autre Etat sous la protection conférée par le principe de spécialité,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rend toute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s'assurer du consentement de cet Etat.

Article 695-27

Toute personne appréhendée en 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doit être conduite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devant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endant ce délai,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1 à 63-5 sont applicables.

Après avoir vérifié l'identité de cette personne, le procureur général l'inform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de l'existence et du contenu du mandat d'arrêt européen dont elle fait l'objet. Il l'avise également qu'elle peut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à défaut,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informé sans délai et par tout moyen.

Il l'avise de même qu'elle peut s'entretenir immédiatement avec l'avocat désigné.

Mention de ces informations est faite, à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au procès-verbal.

L'avocat peut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la personne recherchée.

Le procureur général informe ensuite la personne recherchée de sa faculté de consentir ou de s'opposer à sa remise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et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résultant de ce consentement.

Il l'informe également qu'elle peut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et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cette renonciation.

Article 695-28

Le procureur général ordonne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à la maison d'arrêt du siège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elle a été appréhendée, à moins qu'il n'estime

1012 프랑스 형사소송법

que sa représentation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est suffisamment garantie.

Dans ce dernier cas, le procureur général peut soumettre la personne recherché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prévues à l'article 138.

Cette décision est notifiée verbalement à la personne et mentionnée au procès-verbal dont une copie lui est remise sur-le-champ.

Elle est susceptible de recour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doit statuer au plus tard lors de la comparution de la personne devant elle en application de l'article 695-29.

L'article 695-36 est applicable à la personne recherchée laissée en liberté ou placée sous contrôle judiciaire si elle se soustrait volontairement ou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Il en avise sans délai le ministre de la justice et lui adresse une copie du mandat d'arrêt.

Paragraphe 3 : Comparu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695-29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immédiatement saisie de la procédure.

La personne recherchée comparaît devant ell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présentation au procureur général.

Article 695-30

Lors de la comparu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son identité et recueille ses déclarations, dont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L'audience est publique, sauf si la publicité est de nature à nuire au bon déroulement de la procédure en cours, aux intérêts d'un tiers ou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Dans ce cas,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ersonne recherchée ou d'office, statue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qui n'est susceptible de pourvoi en cassation qu'en même temps que l'arrêt autorise la remise prévue par le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695-31.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echerch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ar une décision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utoriser l'Etat membre d'émission à intervenir à l'audience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par ledit Etat à cet effet. Lorsque l'Etat membre d'émission est autorisé à intervenir, il ne devient pas partie à la procédure.

Article 695-31

Si, lors de sa comparution, la personne recherchée déclare consentir à sa remis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informe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son consentement et de son caractère irrévocable.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maintient son consentement à la remis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ui demande si elle entend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après l'avoir informée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une telle renonciation et de son caractère irrévocable.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exécut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sont remplies, elle rend un arrêt par lequel elle donne acte à la personne recherchée de son consentement à être remise ainsi que, le cas échéant, de sa renonciation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et accorde la remis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sauf si un complément d'information a été ordonné dans les conditions énoncées à l'article 695-33, dans les sept jours de la comparution devant elle de la personne recherchée.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Si la personne recherchée déclare ne pas consentir à sa remis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une décision dans le délai de vingt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comparution, sauf si un complément d'information a été ordonné dans les conditions énoncées à l'article 695-33. Cette décision peut faire l'objet d'un pourvoi en cassation, par le procureur général ou par la personne recherchée, dans les conditions énoncées aux articles 568-1 et 574-2.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bénéficie d'un privilège ou d'une immunité en France, les délais mentionnés aux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compter du jour

1014 프랑스 형사소송법

où la chambre de l'instruction a été informée de sa levée.

Lorsque le consentement d'un autre Etat s'avère nécessaire, conformément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695-26, ces délai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compter du jour où la chambre de l'instruction a été informée de la décision de cet Etat.

Lorsqu'elle revêt un caractère définitif, la décis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notifiée par tout moyen et sans délai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par les soins du procureur général.

Article 695-32

L'exécut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peut être subordonnée à la vérification que la personne recherchée peut :

- 1° Former opposition au jugement rendu en son absence et être jugée en étant présente, lorsqu'elle n'a pas été citée à personne ni informée de la date et du lieu de l'audience relative aux faits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européen ;
- 2° Etre renvoyée en France, lorsqu'elle en est ressortissante, pour y effectuer la peine éventuellement prononcée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pour les faits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européen.

Article 695-33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ime que les informations communiquées par l'Etat membre d'émission dans le mandat d'arrêt européen sont insuffisantes pour lui permettre de statuer sur la remise, elle demande à l'autorité judiciaire dudit Etat la fourniture, dans le délai maximum de dix jours pour leur réception, des informations complémentaires nécessaires.

Article 695-34

La mise en liberté peut être demandée à tout momen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elon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148-6 et 148-7.

L'avocat d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convoqué,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quarante-huit heures au moins avant la date de l'audienc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la personne recherchée ou son avocat, dans les plus bref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quinze jours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par un arrêt rend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99. Toutefois,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n'a pas encore comparu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délais précités ne commencent à courir qu'à compter de la première comparution devant cette juridic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lorsqu'elle ordonn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recherchée et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astreindre l'intéressé à se soumettre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énumérées à l'article 138.

Préalablement à sa mise en liberté, la personne recherchée doit signal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on adresse.

Elle est avisée qu'elle doit signal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nouvelle déclaration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Elle est également avisée que toute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Mention de cet avis, ainsi que de la déclaration d'adresse, est portée soit au procès-verbal, soit dans le document qui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par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695-35

La mainlevée ou la modifi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peut être ordonnée à tout moment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99, soit d'office, soi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soit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recherchée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quinze jours de sa saisine.

Article 695-36

Si la personne recherchée se soustrait volontairemen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si, après avoir bénéficié d'une mise en liberté non assortie du contrôle judiciaire, il apparaît

qu'elle entend manifestement se dérober à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décerner mandat d'arrêt à son encontr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sont alors applicables, l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vues par cet article étant respectivement confiées au procureur général et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un conseiller par lui désigné.

Lorsque l'intéressé a été appréhendé, l'affaire doit être examiné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plus bref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de sa mise sous écr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firme, s'il y a lieu, la révo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et ordonne l'incarcération de l'intéressé.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echerch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Le dépassement du délai mentionné au deuxième alinéa entraîne la mise en liberté d'office de l'intéressé.

Paragraphe 4 :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Article 695-37

Le procureur général prend les mesures nécessaires afin que la personne recherchée soit remise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suivant la date de la décision définitiv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la personne recherchée est en liberté lorsque la décis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utorisant la remise est prononcée, le procureur général peut ordonner l'arrestation de l'intéressé et son placement sous écrou. L'article 74-2 est alors applicable.

L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nt alors respectiveme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conseiller par lui désigné.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a été appréhendée, le procureur général donne avis de cette arrestation, sans délai,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Si la personne recherchée ne peut être remise dans le délai de dix jours pour un cas de force majeure, le procureur général en informe immédiatement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et convient avec elle d'une nouvelle date de remis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alors remise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suivant la nouvelle date ainsi convenue.

A l'expiration des délais visés au premier alinéa ou dans la deuxième phrase du troisième alinéa, si la personne recherchée se trouve toujours en détention, elle est, sauf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95-39, re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695-38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5-37 ne font pas obstacle à ce 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près avoir statué sur l'exécut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puisse surseoir temporairement à la remise pour des raisons humanitaires sérieuses, en particulier si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susceptible d'avoir pour elle des conséquences graves en raison notamment de son âge ou de son état de santé.

Le procureur général en informe alors immédiatement l'autorité judiciaire d'émission et convient avec elle d'une nouvelle date de remis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alors remise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suivant la nouvelle date convenue.

A l'expiration de ce délai, si la personne recherchée se trouve toujours en détention, elle est, sauf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95-39, re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695-39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poursuivie en France ou y a déjà été condamnée et doit y purger une peine en raison d'un fait autre que celui visé par le mandat d'arrêt europée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après avoir statué sur l'exécution du mandat d'arrêt, différer la remise de l'intéressé.

Le procureur général en avise alors immédiatement l'autorité judiciaire d'émiss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décider la remise temporaire de la personne

1018 프랑스 형사소송법

recherchée.

Le procureur général en informe immédiatement l'autorité judiciaire d'émission et convient avec elle, par écrit, des conditions et des délais de la remise.

Article 695-40

Lors de la remise, le procureur général mentionne la durée de la détention subie sur le territoire national du fait de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Paragraphe 5 : Cas particuliers

Article 695-41

Lors de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il est procédé, à la demande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ou à l'initiative de l'autorité judiciaire d'exécution, à la saisie,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article 56, par les deux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56-1, par les articles 56-2, 56-3 et 57 et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9, des objets :

- 1° Qui peuvent servir de pièces à conviction, ou
- 2° Qui ont été acquis par la personne recherchée du fait de l'infraction.

Lorsqu'elle statue sur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la remise des objets saisis en application des 1° et 2°, le cas échéant, après avoir statué sur une contestation formulée en vertu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6-1.

Cette remise peut avoir lieu même si le mandat d'arrêt européen ne peut être exécuté par suite de l'évasion ou du décès de la personne recherch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i elle le juge nécessaire pour une procédure pénale suivie sur le territoire national, retenir temporairement ces objets ou les remettre sous condition de restitution.

Sont toutefois réservés les droits que l'Etat français ou des tiers auraient acquis sur ces objets. Si de tels droits existent, ces objets sont rendus le plus tôt possible et sans frais à l'Etat français à la fin des poursuites exercées sur le territoire de l'Etat d'émission.

Article 695-42

Lorsque plusieurs Etats membres ont émis un mandat d'arrêt européen à l'encontre de la même personne, que ce soit pour le même fait ou pour des faits différents, le choix du mandat d'arrêt européen à exécuter est opéré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cas échéant, après consultation de l'unité Eurojust, compte tenu de toutes les circonstances et notamment du degré de gravité et du lieu de commission des infractions, des dates respectives des mandats d'arrêt européens, ainsi que du fait que le mandat d'arrêt a été émis pour la poursuite ou pour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 de liberté.

En cas de conflit entre un mandat d'arrêt européen et une demande d'extradition présentée par un Etat tiers,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urseoir à statuer dans l'attente de la réception des pièces.

Elle décide de la priorité à donner au mandat d'arrêt européen ou à la demande d'extradition compte tenu de toutes les circonstances, notamment celles visées au premier alinéa et celles figurant dans la convention ou dans l'accord applicable.

Article 695-43

Lorsque, dans des cas spécifiques et en particulier si, consécutivement à un pourvoi en cassation, la décision définitive sur l'exécut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ne peut être rendue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compétentes dans le délai de soixante jours à compter de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informe immédiatement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en lui indiquant les raisons du retard.

Ce délai est alors prolongé de trente jours supplémentaires.

Lorsque, dans des circonstances exceptionnelles, notamment après un arrêt de cassation avec renvoi, la décision définitive sur l'exécution du mandat d'arrêt européen n'a pas été prise dans le délai de quatre-vingt-dix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informe le ministre de la justice qui, à son tour, en avise Eurojust, en précisant les raisons du retard.

Après un arrêt de cassation avec renvoi,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laquelle la cause est renvoyée statue dans les vingt jours à compter du prononcé de l'arrêt de la Cour de cassation.

1020 프랑스 형사소송법

Cette chambre connaît des éventuelles demandes de mise en liberté formées par la personne réclamée.

Article 695-44

Lorsque le mandat d'arrêt européen a été émis pour l'exercice de poursuites pénales, la chambre de l'instruction accède à toute demande d'audition de la personne recherchée présentée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La personne recherchée ne peut être entendue ou interrogée, à moins qu'elle n'y renonce expressément, qu'en présence de son avocat ou ce dernier dûment appelé.

L'avocat d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convoqué au plus tard cinq jours ouvrables avant la date de l'audienc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élécopie avec récépissé ou verbalement avec émargeme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audition de l'intéressé est conduite, en présence s'il y a lieu d'un interprète, par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ssisté d'une personne habilitée à cet effet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Le procès-verbal de l'audience, qui mentionne ces formalités, est aussitôt transmis à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Article 695-45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lorsque cela est possible et que la personne recherchée y consent, accepter le transfèrement temporaire de cette dernière selon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95-28 et 695-29, aux premier à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695-30, et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695-31, à charge pou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de la renvoyer pour assister aux audiences la concernant.

La décision est rendue à l'audience.

Elle est immédiatement exécutoire.

Article 695-46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vant laquelle la personne recherchée a comparu est saisie de toute

demande émanant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membre d'émission en vue de consentir à des poursuites ou à la mise à 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ononcées pour d'autres infractions que celles ayant motivé la remise et commises antérieurement à celle-ci.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également compétente pour statuer, après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sur toute demand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membre d'émission en vue de consentir à la remise de la personne recherchée à un autre Etat membre en vue de l'exercice de poursuites ou de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s de liberté pour un fait quelconque antérieur à la remise et différent de l'infraction qui a motivé cette mesure. Dans les deux cas, un procès-verbal consignait les déclarations faites par la personne remise est également transmis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membre d'émission et soumis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s déclarations peuvent, le cas échéant, être complétées par les observations faites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à défaut, commis d'office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sans recours après s'être assurée que la demande comporte aussi les renseignements prévus à l'article 695-13 et avoir, le cas échéant, obtenu des garanties au regard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5-32, dans le délai de trente jour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Le consentement est donné lorsque les agissements pour lesquels il est demandé constituent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695-23, et entre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695-12. Le consentement est refusé pour l'un des motifs visés aux articles 695-22 et 695-23 et peut l'être pour l'un de ceux mentionnés à l'article 695-24.

Section 4 : Transit

Article 695-47

Le ministre de la justice autorise le transit à travers le territoire français d'une personne recherchée en vertu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l'autorisation peut être subordonnée à la condition qu'elle soit, après avoir été entendue, renvoyée sur le territoire national pour y

1022 프랑스 형사소송법

subir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qui sera éventuellement prononcée à son encontre par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membre d'émission pour les faits faisant l'objet du mandat d'arrêt.

Lorsque la personne recherché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et que le mandat d'arrêt européen a été émis pour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s de liberté, le transit est refusé.

Article 695-48

L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nsit est accompagnée des renseignements suivants :

- l'identité et la nationalité de la personne recherchée ;
- l'indication de l'existence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
- la nature et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 l'infraction ;
- la date, le lieu et les circonstances dans lesquels l'infraction a été commise ainsi que le degré de participation à celle-ci de la personne recherchée.

Article 695-49

L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nsit ainsi que les renseignements prévus à l'article 695-48 sont transmis au ministre de la justice par tout moyen permettant d'en conserver une trace écrite. Celui-ci fait connaître sa décision par le même procédé.

Article 695-50

En cas d'atterrissage fortuit sur le territoire national, l'Etat membre d'émission fournit au ministre de la justice les renseignements prévus à l'article 695-48.

Article 695-51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5-47 à 695-50 sont applicables aux demandes de transit présentées par 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pour l'extradition vers son territoire d'une personne en provenance d'un Etat non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Chapitre V : De l'extradition

Article 696

En l'absence de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stipulant autrement, les conditions, la procédure et les effets de l'extradition sont déterminés pa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Ces dispositions s'appliquent également aux points qui n'auraient pas été réglementés par l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Section 1 : Des conditions de l'extradition

Article 696-1

Aucune remise ne pourra être faite à un gouvernement étranger de personnes n'ayant pas été l'objet de poursuites ou d'une condamnation pour une infraction prévue par la présente section.

Article 696-2

Le gouvernement français peut remettre, sur leur demande, aux gouvernements étrangers, toute personne n'ayant pas la nationalité française qui, étant l'objet d'une poursuite intentée au nom de l'Etat requérant ou d'une condamnation prononcée par ses tribunaux, est trouvé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Néanmoins, l'extradition n'est accordée que si l'infraction cause de la demande a été commise :

- soit sur le territoire de l'Etat requérant par un ressortissant de cet Etat ou par un étranger ;
- soit en dehors de son territoire par un ressortissant de cet Etat ;
- soit en dehors de son territoire par une personne étrangère à cet Etat, quand l'infraction est au nombre de celles dont la loi française autorise la poursuite en France, alors même qu'elles ont été commises par un étranger à l'étranger.

Article 696-3

Les faits qui peuvent donner lieu à l'extradition, qu'il s'agisse de la demander ou de l'accorder, sont les suivants :

1024 프랑스 형사소송법

- 1° Tous les faits punis de peines criminelles par la loi de l'Etat requérant ;
- 2° Les faits punis de peines correctionnelles par la loi de l'Etat requérant, quand le maximum de la peine d'emprisonnement encourue, aux termes de cette loi, est égal ou supérieur à deux ans, ou, s'il s'agit d'un condamné, quand la peine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de l'Etat requérant est égale ou supérieure à deux mois d'emprisonnement.

En aucun cas l'extradition n'est accordée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si le fait n'est pas puni par la loi française d'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Les faits constitutifs de tentative ou de complicité sont soumis aux règles précédentes, à condition qu'ils soient punissables d'après la loi de l'Etat requérant et d'après celle de l'Etat requis.

Si la demande a pour objet plusieurs infractions commises par la personne réclamée et qui n'ont pas encore été jugées, l'extradition n'est accordée que si le maximum de la peine encourue, d'après la loi de l'Etat requérant, pour l'ensemble de ces infractions, est égal ou supérieur à deux ans d'emprisonnement.

Article 696-4

L'extradition n'est pas accordée :

- 1°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a la nationalité française, cette dernière étant appréciée à l'époque de l'infraction pour laquelle l'extradition est requise ;
- 2° Lorsque le crime ou le délit a un caractère politique ou lorsqu'il résulte des circonstances que l'extradition est demandée dans un but politique ;
- 3° Lorsque les crimes ou délits ont été commis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4° Lorsque les crimes ou délits, quoique comm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y ont été poursuivis et jugés définitivement ;
- 5° Lorsque, d'après la loi de l'Etat requérant ou la loi française, la prescription de l'action s'est trouvée acquise antérieurement à la demande d'extradition, ou la prescription de la peine antérieurement à l'arrestation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d'une façon générale toutes les fois que l'action publique de l'Etat requérant est éteinte ;
- 6° Lorsque le fait à raison duquel l'extradition a été demandée est puni par la législation de l'Etat requérant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contraire à l'ordre public français ;

- 7°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serait jugée dans l'Etat requérant par un tribunal n'assurant pas les garanties fondamentales de procédure et de protection des droits de la défense ;
- 8° Lorsque le crime ou le délit constitue une infraction militaire prévue par le livre III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Article 696-5

Si, pour une infraction unique, l'extradition est demandée concurremment par plusieurs Etats, elle est accordée de préférence à l'Etat contre les intérêts duquel l'infraction était dirigée, ou à celui sur le territoire duquel elle a été commise.

Si les demandes concurrentes ont pour cause des infractions différentes, il est tenu compte, pour décider de la priorité, de toutes circonstances de fait, et, notamment, de la gravité relative et du lieu des infractions, de la date respective des demandes, de l'engagement qui serait pris par l'un des Etats requérants de procéder à la réextradition.

Article 696-6

Sous réserve des exceptions prévues à l'article 696-34, l'extradition n'est accordée qu'à la condition que la personne extradée ne sera ni poursuivie, ni condamnée pour une infraction autre que celle ayant motivé l'extradition et antérieure à la remise.

Article 696-7

Dans le cas où une personne réclamée est poursuivie ou a été condamnée en France, et où son extradition est demandée au gouvernement français à raison d'une infraction différente, la remise n'est effectuée qu'après que la poursuite est terminée, et, en cas de condamnation, après que la peine a été exécutée.

Toutefois, cette disposition ne fait pas obstacle à ce que la personne réclamée puisse être envoyée temporairement pour comparaître devant les tribunaux de l'Etat requérant, sous la condition expresse qu'elle sera renvoyée dès que la justice étrangère aura statué.

Est régi pa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e cas où la personne réclamée est soumise à la contrainte judiciaire par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titre VI du livre V du présent code.

Section 2 : De la procédure d'extradition de droit commun

Article 696-8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toute demande d'extradition est adressée au gouvernement français par voie diplomatique et accompagnée soit d'un jugement ou d'un arrêt de condamnation, même par défaut, soit d'un acte de procédure pénale décrétant formellement ou opérant de plein droit le renvoi de la personne poursuivi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soit d'un mandat d'arrêt ou de tout autre acte ayant la même force et décerné par l'autorité judiciaire, pourvu que ces derniers actes renferment l'indication précise du fait pour lequel ils sont délivrés et la date de ce fait.

Les pièces ci-dessus mentionnées doivent être produites en original ou en copie certifiée conforme. Le gouvernement requérant doit produire en même temps la copie des textes de loi applicables au fait incriminé.

Il peut joindre un exposé des faits de la cause.

Lorsqu'elle émane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la demande d'extradition est adressée directement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cet Etat au ministre de la justice, qui procède comme il est dit à l'article 696-9.

Article 696-9

La demande d'extradition est, après vérification des pièces, transmise, avec le dossier,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u ministre de la justice qui, après s'être assuré de la régularité de la requête, l'adresse au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Article 696-9-1

Pour la recherche d'une personne faisant l'objet d'une demande d'extradition ou d'arrestation provisoire aux fins d'extradition, l'article 74-2 est applicable.

L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vues par cet article sont respectiveme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général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e conseiller par lui désigné.

Article 696-10

Toute personne appréhendée à la suite d'une demande d'extradition doit être conduite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devant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es articles 63-1 à 63-5 sont applicables durant ce délai.

Après avoir vérifié l'identité de la personne réclamée, le procureur général l'inform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de l'existence et du contenu de la demande d'extradition dont elle fait l'objet et l'avise qu'elle peut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de son choix ou, à défaut, par un avocat commis d'office par le bâtonnier de l'ordre des avocats, qui sera alors informé sans délai et par tout moyen.

Il l'avise qu'elle peut s'entretenir immédiatement avec l'avocat désigné.

Mention de ces informations est faite, à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au procès-verbal.

L'avocat peut consulter sur-le-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la personne recherchée.

Le procureur général fait connaître également à la personne réclamée qu'elle a la faculté de consentir ou de s'opposer à son extradition et lui indique les conséquences juridiques si elle y consent.

Il l'informe qu'elle a la faculté de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et lui indique l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cette renonciation.

Le procureur général reçoit les déclarations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s'il y a lieu, de son conseil, dont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Article 696-11

Le procureur général ordonne l'incarcération et le placement sous écrou extraditionnel de la personne réclamée à la maison d'arrêt du siège de la cour d'appel.

Toutefois, s'il estime que sa représentation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est suffisamment garantie, le procureur général peut soumettre la personne réclamée,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prévues à l'article 138.

Cette décision est notifiée verbalement et mentionnée au procès-verbal dont copie lui est remise sur-le-champ.

Elle est susceptible de recour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L'article 696-21 est applicable à la personne recherchée laissée en liberté ou placée sous contrôle judiciaire si elle se soustrait volontairement ou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696-13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a déclaré au procureur général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immédiatement saisie de la procédure.

La personne réclamée comparaît devant elle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présentation au procureur général.

Lors de la comparution de la personne réclam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son identité et recueille ses déclarations.

Il en est dressé procès-verbal.

L'audience est publique, sauf si la publicité de l'audience est de nature à nuire au bon déroulement de la procédure en cours, aux intérêts d'un tiers ou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Dans ce cas,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ersonne réclamée ou d'office, statue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éclam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Article 696-14

Si, lors de sa comparution, la personne réclamée déclare consentir à être extradée et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e l'extradition sont remplies, la chambre de l'instruction, après avoir informé cette personne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son consentement, lui en donne acte dans les sept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comparution, sauf si un complément d'information a été ordonné.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696-15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a déclaré au procureur général ne pas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saisie, sans délai, de la procédure.

La personne réclamée comparaît devant elle dans un délai de dix jours ouvrables à compter de la date de sa présentation au procureur général.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96-13 sont applicables.

Si, lors de sa comparution, la personne réclamée déclare ne pas consentir à être extradé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nne son avis motivé sur la demande d'extradition.

Elle rend son avis, sauf si un complément d'information a été ordonné,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comparution devant elle de la personne réclamée.

Cet avis est défavorable si la cour estim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ne sont pas remplies ou qu'il y a une erreur évidente.

Le pourvoi formé contre un avi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ne peut être fondé que sur des vices de forme de nature à priver cet avis des conditions essentielles de son existence légale.

Article 696-16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par une décision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utoriser l'Etat requérant à intervenir à l'audience au cours de laquelle la demande d'extradition est examinée,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par ledit Etat à cet effet.

Lorsque l'Etat requérant est autorisé à intervenir, il ne devient pas partie à la procédure.

Article 696-17

Si l'avis motivé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pousse la demande d'extradition et que cet avis est définitif, l'extradition ne peut être accordée.

La personne réclamée,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est alors 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696-18

Dans les cas autres que celui prévu à l'article 696-17, l'extradition est autorisée par décret du

1030 프랑스 형사소송법

Premier ministre pris sur le rapport du ministre de la justice.

Si,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ce décret à l'Etat requérant, la personne réclamée n'a pas été reçue par les agents de cet Etat, l'intéressé est, sauf cas de force majeure, mis d'office en liberté et ne peut plus être réclamé pour la même cause.

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le décret mentionné à l'alinéa précédent doit, à peine de forclusion, être formé dans le délai d'un mois.

L'exercice d'un recours gracieux contre ce décret n'interrompt pas le délai de recours contentieux.

Article 696-19

La mise en liberté peut être demandée à tout momen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elon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148-6 et 148-7.

L'avocat de la personne réclamée est convoqué,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quarante-huit heures au moins avant la date de l'audienc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ainsi que la personne réclamée ou son avocat, dans les plus bref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vingt jours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par un arrêt rend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99.

Si la demande de mise en liberté a été formée par la personne réclamée dans les quarante-huit heures de la mise sous écrou extraditionnel, le délai imparti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our statuer est réduit à quinze jours.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également, lorsqu'elle ordonne la mise en liberté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astreindre l'intéressé à se soumettre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énumérées à l'article 138.

Préalablement à sa mise en liberté, la personne réclamée doit signal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a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on adresse.

Elle est avisée qu'elle doit signal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nouvelle déclaration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tout changement de l'adresse déclarée. Elle est également avisée que toute notification ou signification fait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era réputée faite à sa personne.

Mention de cet avis, ainsi que de la déclaration d'adresse, est portée soit au procès-verbal, soit

dans le document qui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696-20

La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ou la modification de celui-ci peut être ordonnée à tout moment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99, soit d'office, soi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soit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réclamée après avis du procureur général.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vingt jours de sa saisine.

Article 696-21

Si la personne réclamée se soustrait volontairement aux obligations du contrôle judiciaire ou si, après avoir bénéficié d'une mise en liberté non assortie du contrôle judiciaire, il apparaît qu'elle entend manifestement se dérober à la demande d'extradi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décerner mandat d'arrêt à son encontr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sont alors applicables, les attribu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révues par cet article étant respectivement confiées au procureur général et au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un conseiller par lui désigné.

Lorsque l'intéressé a été appréhendé, l'affaire doit venir à la première audience publique ou au plus tard dans les dix jours de sa mise sous écr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firme, s'il y a lieu, la révoc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la mise en liberté de l'intéressé.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éclam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Le dépassement du délai mentionné au deuxième alinéa entraîne la mise en liberté d'office de l'intéressé.

Article 696-22

Si la personne réclamée est en liberté lorsque la décision du gouvernement ayant autorisé l'extradition n'est plus susceptible de recours, le procureur général peut ordonner la recherche et l'arrestation de l'intéressé et son placement sous écrou extraditionnel.

Lorsque celui-ci a été appréhendé, le procureur général donne avis de cette arrestation, sans délai, au ministre de la justice.

La remise à l'Etat requérant de la personne réclamée s'effectue dans les sept jours suivant la date de l'arrestation, faute de quoi elle est mise d'office en liberté.

Article 696-23

En cas d'urgence et sur la demande direct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le procureur généra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eut ordonner l'arrestation provisoire d'une personne réclamée aux fins d'extradition par ledit Etat et son placement sous écrou extraditionnel.

La demande d'arrestation provisoire, transmise par tout moyen permettant d'en conserver une trace écrite, indique l'existence d'une des pièces mentionnées à l'article 696-8 et fait part de l'intention de l'Etat requérant d'envoyer une demande d'extradition.

Elle comporte un bref exposé des faits mis à la charge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mentionne, en outre, son identité et sa nationalité, l'infraction pour laquelle l'extradition sera demandée, la date et le lieu où elle a été commise, ainsi que, selon le cas, le quantum de la peine encourue ou de la peine prononcée et, le cas échéant, celui de la peine restant à purger et, s'il y a lieu, la nature et la date des actes interruptifs de prescription.

Une copie de cette demande est adressée par l'Etat requérant a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Le procureur général avise sans délai le ministre de la justice de cette arrestation.

Article 696-24

La personne arrêtée provisoir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6-23 est mise en liberté si,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à dater de son arrestation, lorsque celle-ci aura été opérée à la demand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le gouvernement français ne reçoit pas l'un d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696-8.

Si, ultérieurement, les pièces susvisées parviennent au gouvernement français, la procédure est reprise, conformément aux articles 696-9 et suivants.

Section 3 : De la procédure simplifiée d'extradition entre l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Article 696-25

Hors les cas où s'appliquen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relatives au mandat d'arrêt européen, lorsqu'une demande d'arrestation provisoire aux fins d'extradition émane d'un Etat partie à la convention du 10 mars 1995 relative à la procédure simplifiée d'extradition entre l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il est procéd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696-10 et 696-11.

La personne réclamée est en outre informée qu'elle peut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selon la procédure simplifiée prévue à la présente section.

La présente section est applicable aux demandes d'arrestation provisoire aux fins d'extradition adressées à la France par la Confédération suisse en application de l'accord entr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Conseil fédéral suisse relatif à la procédure simplifiée d'extradition et complétant la convention européenne d'extradition du 13 décembre 1957.

Article 696-26

Dans un délai de deux jours à compter de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réclamée, le procureur général notifie à cette dernière, dans une langue qu'elle comprend, les pièces en vertu desquelles l'arrestation a eu lieu.

Il l'avise qu'elle peut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selon la procédure simplifiée.

Il l'informe également qu'elle peut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Mention de ces informations est faite au procès-verbal, à peine de nullité de la procédure.

L'intéressé a droit à l'assistance d'un avoca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696-10.

Article 696-27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déclare au procureur général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elle comparaît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un délai de cinq jours ouvrable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elle a été présentée au procureur général.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déclare audit magistrat ne pas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il est procédé comme il est dit aux articles 696-15 et suivants si une demande d'extradition est parvenue aux autorités françaises.

Article 696-28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comparaît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96-27,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onstate son identité et recueille ses déclarations, dont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Le président demande ensuite à la personne réclamée, après l'avoir informée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son consentement, si elle entend toujours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déclare ne plus consentir à son extradition,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96-27 sont applicables.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maintient son consentement à l'extradi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lui demande également si elle entend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après l'avoir

informée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une telle renonciation.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réclamée à être extradée et, le cas échéant, sa renonciation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sont recueillis par procès-verbal établi lors de l'audience.

La personne réclamée y appose sa signature.

L'audience est publique, sauf si la publicité est de nature à nuire au bon déroulement de la procédure en cours, aux intérêts d'un tiers ou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Dans ce cas, la chambre de l'instruction,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e la personne réclamée ou d'office, statue par un arrê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Le ministère public et la personne réclamée sont entendus, cette dernière assistée,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en présence d'un interprète.

Article 696-29

Si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e l'extradition sont remplies, elle rend un arrêt par lequel elle donne acte à la personne réclamée de son consentement formel à être extradée ainsi que, le cas échéant, de sa renonciation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et accorde l'extradi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dans les sept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la comparution devant elle de la personne réclamée.

Article 696-30

Si la personne réclamée forme, dans le délai légal, un pourvoi en cassation contre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ccordant son extradi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ou le conseiller délégué par lui rend,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l'introduction du pourvoi, une ordonnance par laquelle il constate que la personne réclamée a ainsi entendu retirer son consentement à l'extradition et, le cas échéant, qu'elle a renoncé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Cette ordonnance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Si la personne réclamée a fait l'objet d'une demande d'extradition, il est alors procédé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696-15 et suivants.

Article 696-31

Lorsque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ccorde l'extradition de la personne réclamée et que cet arrêt est définitif, le procureur général en avise le ministre de la justice, qui inform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de la décision intervenue.

Le ministre de la justice prend les mesures nécessaires afin que l'intéressé soit remis aux autorités de l'Etat requérant au plus tard dans les vingt jours suivant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xtradition leur a été notifiée.

Si la personne extradée ne peut être remise dans le délai de vingt jours pour un cas de force majeure, le ministre de la justice en informe immédiatement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Etat requérant et convient avec elles d'une nouvelle date de remise.

1036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personne extradée est alors remise au plus tard dans les vingt jours suivant la date ainsi convenue.

La mise en liberté est ordonnée si, à l'expiration de ce délai de vingt jours, la personne extradée se trouve encor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en cas de force majeure ou si la personne extradée est poursuivie en France ou y a déjà été condamnée et doit y purger une peine en raison d'un fait autre que celui visé par la demande d'extradition.

Article 696-32

La mise en liberté peut être demandée à tout momen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elon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148-6 et 148-7.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6-19 et 696-20 sont alors applicables.

Article 696-33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6-26 à 696-32 sont applicables si la personne dont l'arrestation provisoire a été demandée fait l'objet d'une demande d'extradition et consent à être extradée plus de dix jours après son arrestation et au plus tard le jour de sa première comparu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e dans les conditions énoncées à la section 2 du présent chapitre, ou si la personne dont l'extradition est demandée consent à être extradée au plus tard le jour de sa première comparut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e dans les mêmes conditions.

Section 4 : Des effets de l'extradition

Article 696-34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696-6,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ne s'applique pas lorsque la personne réclamée y renonc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696-28 et 696-40 ou lors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donne son consent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696-35.

Ce consentement peut être donné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même au cas où le fait, cause

de la demande, ne serait pas l'une des infractions déterminées par l'article 696-3.

Article 696-35

Dans le cas où le gouvernement requérant demande, pour une infraction antérieure à l'extradition, l'autorisation de poursuivre ou de mettre à exécution une condamnation concernant l'individu déjà remis, l'avis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vant laquelle la personne réclamée avait comparu peut être formulé sur la seule production des pièces transmises à l'appui de la nouvelle demande.

Sont également transmises par le gouvernement étranger et soumises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pièces contenant les observations de l'individu remis ou la déclaration qu'il entend n'en présenter aucune.

Ces explications peuvent être complétées par un avocat choisi par lui, ou qui est désigné ou commis d'office.

Article 696-36

L'extradition obtenue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est nulle si elle est intervenue en dehor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Aussitôt après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extrad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vise qu'elle a le droit de demander que soit prononcée la nullité de l'extradition dans l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élai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t qu'elle a le droit de choisir un avocat ou de demander qu'il lui en soit désigné un d'office.

La nullité est prononcée, même d'offic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dont la personne extradée relève après sa remise ou, si elle ne relève d'aucune juridiction de jugement,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mpétente est, lorsque l'extradition a été accordée pour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délivré dans une information en cours, celle dans le ressort de laquelle a eu lieu la remise.

La requête en nullité présentée par la personne extradée doit, à peine d'irrecevabilité, être motivée et faire l'objet d'une déclaration au greffe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dans un délai

1038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vis prévu au deuxième alinéa.

La déclaration fait l'objet d'un procès-verbal signé par le greffier et par le demandeur ou son avocat. Si le demandeur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greffier.

Lorsque le demandeur ou son avocat ne réside pas dans le ressort de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déclaration au greffe peut être faite au moyen d'une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sque le demandeur est détenu, la requête peut également être faite au moyen d'une déclaration auprès du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Cette déclaration fait l'objet d'un procès-verbal signé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par le demandeur.

Si celui-ci ne peut signer, il en est fait mention par le chef de l'établissement.

Le procès-verbal est adressé sans délai, en original ou en copie et par tout moyen, au greffe de la juridiction saisie.

Article 696-37

Les juridi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6-36 sont juges de la qualification donnée aux faits qui ont motivé la demande d'extradition.

Article 696-38

Dans le cas où l'extradition est annulée, l'extradé, s'il n'est pas réclamé par le gouvernement requis, est mis en liberté et ne peut être repris, soit à raison des faits qui ont motivé son extradition, soit à raison des faits antérieurs, que si, dans les trente jours qui suivent la mise en liberté, il est arrêté sur le territoire français.

Article 696-39

Est considérée comme soumise sans réserve à l'application des lois de l'Etat requérant, à raison d'un fait quelconque antérieur à l'extradition et différent de l'infraction qui a motivé cette mesure, la personne remise qui a eu, pendant trente jours à compter de sa libération définitive, la possibilité de quitter le territoire de cet Etat.

Article 696-40

Lors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a obtenu l'extradition d'une personne en application de la convention du 27 septembre 1996 relative à l'extradition entre l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la personne ainsi extradée peut être poursuivie ou condamnée pour une infraction antérieure à la remise, autre que celle ayant motivé l'extradition, si elle renonce expressément, après sa remise, au bénéfice de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dans les conditions ci-après.

La renonciation doit porter sur des faits précis antérieurs à la remise.

Elle a un caractère irrévocable.

Elle est donnée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intéressé est incarcéré ou a sa résidence.

Lors de la comparution de la personne extradée, qui donne lieu à une audience publi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l'identité et recueille les déclarations de cette personne.

Il en est dressé procès-verbal.

L'intéressé, assisté le cas échéant de son avocat et, s'il y a lieu, d'un interprète, est informé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s conséquences juridiques de sa renonciation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sur sa situation pénale et du caractère irrévocable de la renonciation donnée.

Si, lors de sa comparution, la personne extradée déclare renoncer à la règle de la spécialit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et l'avocat de la personne, en donne acte à celle-ci.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récise les faits pour lesquels la renonciation est intervenue.

Article 696-41

Dans le cas où, l'extradition d'un étranger ayant été obtenue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le gouvernement d'un pays tiers sollicite à son tour du gouvernement français l'extradition du même individu à raison d'un fait antérieur à l'extradition, autre que celui jugé en France, et non connexe à ce fait, le Gouvernement ne défère, s'il y a lieu, à cette requête qu'après s'être assuré du consentement du pays par lequel l'extradition a été accordée.

Toutefois, cette réserve n'a pas lieu d'être appliquée lorsque l'individu extradé a eu, pendant le délai fixé à l'article 696-39, la faculté de quitter le territoire français.

Section 5 : Dispositions diverses

Article 696-42

L'extradition, par voie de transi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ou par les bâtiments des services maritimes français, d'une personne n'ayant pas la nationalité française, remise par un autre gouvernement est autorisée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sur simple demande par voie diplomatique, appuyée des pièces nécessaires pour établir qu'il ne s'agit pas d'un délit politique ou purement militaire.

Cette autorisation ne peut être donnée qu'aux Etats qui accordent, sur leur territoire, la même faculté au gouvernement français.

Le transport s'effectue sous la conduite d'agents français et aux frais du gouvernement requérant.

Article 696-43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a statué sur la demande d'extradition décide s'il y a lieu ou non de transmettre, en tout ou en partie, les titres, valeurs, argent ou autres objets saisis au gouvernement requérant.

Cette remise peut avoir lieu, même si l'extradition ne peut s'accomplir, par suite de l'évasion ou de la mort de l'individu réclamé.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la restitution des papiers et autres objets énumérés ci-dessus qui ne se rapportent pas au fait imputé à la personne réclamée.

Elle statue, le cas échéant, sur les réclamations des tiers détenteurs et autres ayants droit.

Article 696-44

Au cas de poursuites répressives exercées à l'étranger, lorsqu'un gouvernement étranger juge nécessaire la notification d'un acte de procédure ou d'un jugement à un individu résida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pièce est transmise suivant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96-8 et 696-9, accompagnée, le cas échéant, d'une traduction française.

La signification est faite à personne,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L'original constatant la notification est renvoyé par la même voie au gouvernement requérant.

Article 696-45

Lorsque, dans une cause pénale instruite à l'étranger, le gouvernement étranger juge nécessaire la communication de pièces à conviction ou de documents se trouvant entre les mains des autorités françaises, la demande est transmise suivant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96-8 et 696-9.

Il y est donné suite, à moins que des considérations particulières ne s'y opposent, et sous l'obligation de renvoyer les pièces et documents dans le plus bref délai.

Article 696-46

Lorsque l'audition d'un témoin résidant en France est jugée nécessaire par un gouvernement étranger, le gouvernement français, saisi d'une demande transmise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96-8 et 696-9, l'engage à se rendre à la convocation qui lui est adressée.

Néanmoins, la citation n'est reçue et signifiée qu'à la condition que le témoin ne pourra être poursuivi ou détenu pour des faits ou condamnations antérieurs à son audition.

Article 696-47

L'envoi des individus détenus, en vue d'une confrontation, doit être demandé dans les formes prévues aux articles 696-8 et 696-9.

Il est donné suite à la demande, à moins que des considérations particulières ne s'y opposent, et sous la condition de renvoyer lesdits détenus dans le plus bref délai.

Titre XI : Des crimes et des délits en matière militaire et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Chapitre Ier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crimes et délits en matière militaire en temps de paix

Section 1 : Compétence

Article 697

Dans le ressort de chaque cour d'appel,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st compétent pour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7-1. Des magistrats sont affectés, après avis de l'assemblée générale, aux formations de jugement, spécialisées en matière militaire, de ce tribunal. Dans le même ressort, une cour d'assises est compétente pour le jugement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697-1.

Un décret pris sur le rapport conjoin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fixe la liste de ces juridictions.

Article 697-1

Les juridi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7 connaissent des infractions militaires prévues par le livre III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 elles connaissent également des crimes et délits de droit commun commis dans l'exécution du service par les militaires, tels que ceux-ci sont définis par les articles 61 à 63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Ces juridictions sont compétentes à l'égard de toutes personnes majeures, auteurs ou complices, ayant pris part à l'infraction.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ci-dessus, ces juridictions ne peuvent connaître des infractions de droit commun commises par les militaires de la gendarmerie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relatives à la police judiciaire ou à la police administrative ; elles restent néanmoins compétentes à leur égard pour les infractions commises dans le service du maintien de l'ordre.

Si le tribunal correctionnel mentionné à l'article 697 se déclare incompétent pour connaître des faits dont il a été saisi, il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 il peut,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décerner par la même décisio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Article 697-3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es juridi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7 est détermin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43, 52, 382 et 663.

Sont également compétentes les juridictions du lieu de l'affectation ou du débarquement.

En outre, la juridic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à l'égard des personnels des navires convoyés est celle à laquelle seraient déférés les personnels du navire convoyeur.

Section 2 : Procédure

Article 698

Les infractions relevant de la compétence des juridi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7 sont instruites et jugées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édictées par les articles 698-1 à 698-9.

Toutefo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43 a qualité pour accomplir ou faire accomplir les actes nécessités par l'urgence et requérir à cet effet le juge d'instruction de son sièg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8-1 à 698-5 sont alors applicables.

Article 698-1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36, l'action publique est mise en mouvement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qui apprécie la suite à donner aux faits portés à sa connaissance, notamment par la dénonciation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ou de l'autorité militaire habilitée par lui I .

A défaut de cette dénonci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oit demander préalablement à tout acte de poursuite, sauf en cas de crime ou de délit flagrant, l'avis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ou de l'autorité militaire habilitée par lui I .

1044 프랑스 형사소송법

Hormis le cas d'urgence, cet avis est donné dans le délai d'un mois.

L'avis est demandé par tout moyen dont il est fait mention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a dénonciation ou l'avis figur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à peine de nullité, sauf si cet avis n'a pas été formulé dans le délai précité ou en cas d'urgence.

L'autorité militaire visée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st habilitée par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Article 698-2

L'action civile en réparation du dommage causé pa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97-1 appartient à ceux qui ont personnellement souffert du dommage directement causé par l'infraction.

L'action publique peut être mise en mouvement par la partie lésée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aux articles 85 et suivants.

Article 698-3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e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sont amenés, soit à constater des infractions dans les établissements militaires, soit à rechercher, en ces mêmes lieux, des personnes ou des objets relatifs à ces infractions, ils doivent adresser à l'autorité militaire des réquisitions tendant à obtenir l'entrée dans ces établissements.

Les réquisitions doivent, sauf nécessité, préciser la nature et les motifs des investigations jugées nécessaires.

L'autorité militaire est tenue de s'y soumettre et se fait représenter aux opératio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e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veillent, en liaison avec le représentant qualifié de l'autorité militaire, au respect des prescriptions relatives au secret militaire.

Le représentant de l'autorité militaire est tenu au respect du secret de l'enquête et de l'instruction.

Article 698-4

Les supérieurs hiérarchiques doivent satisfaire à la demande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tendant à mettre à leur disposition un militaire en activité de service, lorsque soit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soit l'exécution d'une commission rogatoire ou d'un mandat de justice exigent cette mesure.

Article 698-5

Les articles 73 à 77, 93, 94, 137, 204, 349, 357, 366, 368, 369, 371, 373, 374, 375, 377 et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84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sont applicables.

Conformément à l'article 135 de ce même co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e prévenu ou le condamné militaire doit être détenu dans des locaux séparés.

Article 698-6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titre Ier du livre II, notamment aux articles 240 et 248, premier alinéa,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8-7, la cour d'assises prévue par l'article 697 est composée d'un président et, lorsqu'elle statue en premier ressort, de six assesseurs, ou lorsqu'elle statue en appel, de huit assesseurs.

Ces assesseurs sont désignés comme il est dit aux alinéas 2 et 3 de l'article 248 et aux articles 249 à 253.

La cour ainsi composée applique les dispositions du titre Ier du livre II sous les réserves suivantes :

- 1° Il n'est pas tenu compte des dispositions qui font mention du jury ou des jurés ;
- 2°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254 à 267, 282, 288 à 292, 293, alinéas 2 et 3, 295 à 305 ne sont pas applicables ;
- 3°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359, 360 et 362, les décisions sont prises à la majorité.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80-1, en cas d'appel d'une décision d'une cour d'assises composée comme il est dit au présent articl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peut désigner la même cour d'assises, autrement composée, pour connaître de l'appel.

Article 698-7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8-6 ne sont applicables, pour le jugement des crimes de droit

1046 프랑스 형사소송법

commun commis dans l'exécution du service par les militaires, que s'il existe un risque de divulgation d'un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Lorsque la mise en accusation est prononc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214, premier alinéa,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state dans son arrêt, s'il y a lieu, qu'il existe un risque de divulgation d'un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t ordonne que la cour d'assises saisie soit composé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698-6.

Article 698-8

Les juridictions compétentes pour juger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livre III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peuvent également prononcer les peines militaires de la destitution et de la perte du grade.

Article 698-9

Les juridictions de jugement mentionnées à l'article 697 peuvent, en constatant dans leur décision que la publicité risque d'entraîner la divulgation d'un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ordonner, par décision rendue en audience publique, que les débats auront lieu à huis clos.

Lorsque le huis clos a été ordonné, celui-ci s'applique au prononcé des jugements séparés qui peuvent intervenir sur des incidents ou exceptions.

La décision au fond est toujours prononcée en audience publique.

Chapitre II : Des juridictions compétentes en cas de guerre, de mobilisation, d'état de siège ou d'état d'urgence

Article 699

En temps de guerre, les tribunaux des forces armées sont immédiatement établis.

Jusqu'à leur mise en place effective, les affaires de leur compétence sont portées devant les juridi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697.

Celles-ci se dessaisissent des affaires au profit des tribunaux des forces armées dès que ceux-ci les revendiquent.

Article 699-1

Lorsque le Gouvernement décide l'application des mesures de mobilisation ou de mise en gard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ordonnance n° 59-147 du 7 janvier 1959 portant organisation générale de la défense, les dispositions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relatives au temps de guerre peuvent être rendues applicables par 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pris sur le rappor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Article 700

En cas d'état de siège ou d'état d'urgence déclaré, un décret en conseil des ministres, pris sur le rapport d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défense, peut établir des tribunaux territoriaux des forces arm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justice militaire.

La compétence de ces tribunaux résulte des dispositions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pour le temps de guerre et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des lois sur l'état de siège ou l'état d'urgence. En ce qu'elles concernent la procédure, les lois sur l'état de siège et l'état d'urgence ne sont applicables que si elles sont compatibles avec les dispositions de procédure pénale militaire relatives au temps de guerre.

Chapitre III :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Article 701

En temps de guerre, l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et les infractions qui leur sont connexes sont instruits et jugés par les juridictions des forces armées ainsi qu'il est dit au code de justice militaire.

Toutefoi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qualité pour accomplir ou faire accomplir les actes nécessités par l'urgence et requérir à cet effet le juge d'instruction de son sièg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98-1 à 698-5 sont alors applicables.

Il doit se dessaisir ou requérir le dessaisissement du juge d'instruction dès que l'urgence a cessé.

Article 702

En temps de paix, l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sont instruits et jugés par les juridictions de droit commun et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Lorsque les faits poursuivis constituent un crime ou un délit prévu et réprimé par les articles 411-1 à 411-11 et 413-1 à 413-12 du code pénal ou une infraction connexe, la compétence est dévolue aux juridictions prévues et organisées par les articles 697 et 698-6.

Si le tribunal correctionnel mentionné à l'article 697 se déclare incompétent pour connaître des faits dont il a été saisi, il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 il peut,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décerner par la même décisio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Titre XII : Des demandes présentées en vue d'être relevé d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incapacités ou mesures de publication

Article 702-1

Toute personne frappée d'une interdiction, déchéance ou incapacité ou d'une mesure de publication quelconque résultant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pénale ou prononcée dans le jugement de condamnation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peut demander à la juridiction qui a prononcé la condamnation ou, en cas de pluralité de condamnations, à la dernière juridiction qui a statué, de la relever, en tout ou partie, y compris en ce qui concerne la durée, de cette interdiction, déchéance ou incapacité.

Si la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par une cour d'assises, la juridiction compétente pour statuer sur la demande es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a cour d'assises a son siège.

Lorsque la demande est relative à une déchéance, interdiction ou incapaci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626-6 du code de commerce, la juridiction ne peut accorder le relèvement que si l'intéressé a apporté une contribution suffisante au paiement du passif du débiteur.

La juridiction peut accorder,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 relèvement d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et incapacités résultant des condamnations pour banqueroute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26 à 149 de la loi n° 67-563 du 13 juillet 1967 sur le règlement judiciaire, la liquidation des biens, la faillite personnelle et les banqueroutes. Sauf lorsqu'il s'agit d'une mesure résultant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pénale, la demande ne peut être porté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qu'à l'issue d'un délai de six mois après la décision initiale de condamnation.

En cas de refus opposé à cette première demande, une autre demande ne peut être présentée que six mois après cette décision de refus.

Il en est de même, éventuellement, des demandes ultérieures.

En cas d'interdiction du territoire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la première demande peut toutefois être porté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e six mois en cas de remise en liberté.

La demande doit être déposée au cours de l'exécution de la peine.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1°) de l'article 131-6 du code pénal permettant de limiter la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sont applicables lorsque la demande de relèvement d'interdiction ou d'incapacité est relative à la peine de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seul magistrat exerçant les pouvoirs du président.

Il en est de même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ou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est composée de son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Ce magistrat peut toutefois, si la complexité du dossier le justifi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u dossier devant la formation collégiale de la juridiction.

Le magistrat ayant ordonné ce renvoi fait alors partie de la composition de cette juridiction.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03

Toute demande présentée par un condamné en vue d'être relevé d'une interdiction, d'une déchéance, d'une incapacité ou d'une mesure de publication, formé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2-1 précise la date de la condamnation ainsi que les lieux où a résidé le requérant depuis sa condamnation ou sa libération.

Elle est adressée, selon le ca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au procureur général qui s'entoure de tous les renseignements utiles, prend, s'il y a lieu, l'avi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saisit la juridiction compétente.

La juridiction saisie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requérant ou son conseil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S'il paraît nécessaire d'entendre un condamné qui se trouve détenu, il peut être procéd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 du présent code.

La décision est signifiée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lorsqu'elle est rendue hors de la présence du requérant ou de son conseil.

Elle peut être, selon le cas, frappée d'appel ou déférée à la Cour de cassation.

Mention de la décision par laquelle un condamné est relevé totalement ou partiellement d'une interdiction, déchéance, incapacité ou d'une mesure de publication est faite en marge du jugement ou de l'arrêt de condamnation et au casier judiciaire.

Titre XII : De la procédure applicable aux infractions en matière économique et financière

Article 704

Dans le ressort de chaque cour d'appel, un ou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sont compétent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s infractions suivantes dans les affaires qui sont ou apparaîtraient d'une grande complexité :

1°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38, 223-15-2, 313-1 et 313-2, 313-6, 314-1 et 314-2,

323-1 à 323-4, 324-1 et 324-2, 432-10 à 432-15, 433-1 et 433-2, 434-9, 442-1 à 442-8 et 321-6-1 du code pénal ;

- 2°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commerce ;
- 3° Délits prévus par le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 4°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 5°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 6°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1741 à 1753 bis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
- 7°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s douanes ;
- 8°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urbanisme ;
- 9°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 consommation ;
- 10° (Abrogé) ;
- 11° (Abrogé) ;
- 12° Délits prévus par la loi n° 83-628 du 12 juillet 1983 relative aux jeux de hasard ;
- 13° Délits prévus par la loi du 28 mars 1885 sur les marchés à terme ;
- 14° (Abrogé) ;
- 15° Délits prévus par la loi n° 86-897 du 1er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
- 16° (Abrogé).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également être étendue au ressort de plusieurs cours d'appel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 ces infractions, dans les affaires qui sont ou apparaîtraient d'une très grande complexité, en raison notamment du grand nombre d'auteurs, de complices ou de victimes où du ressort géographique sur lequel elles s'étendent.

La compétence des juridic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et à l'alinéa qui précède s'étend aux infractions connexes.

Un décret fixe la liste et le ressort de ces juridictions, qui comprennent une section du parquet et des forma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pécialisées pour connaître de ces infractions. Au sein de chaqu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est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 premier président, après avis du président du tribunal

1052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grande instance, désigne un ou plusieurs juges d'instruction et magistrats du siège chargés spécialement d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du jugement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u sein de chaque cour d'appel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est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 premier président et le procureur général désignent respectivement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général chargés spécialement du jugement des délits et du traitement des affaire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04-1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a seul compétence pour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délits prévus aux articles L. 465-1 et L. 465-2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Cette compétence s'étend aux infractions connex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exercent leurs attributions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Article 705

Pour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s infractions prévues à l'article 704 et des infractions connex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et la formation correctionnelle spécialisé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visé au même article exercent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382 et 706-42.

Lorsqu'ils sont compétents pour la poursuite et l'instruction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4,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exercent leurs attributions sur toute l'étendue du ressort fix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4.

La juridiction saisie reste compétente quelles que soient les incriminations retenues lors du règlement ou du jugement de l'affaire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81 et 469.

Si les faits constituent une contravention, le juge d'instruction prononce le renvoi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1.

Article 705-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ux visés à l'article 704 peut, pour les infractions énumérées dans cet article,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ou de l'une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compétentes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Les parties sont préalablement avisées et invitées à faire connaître leurs observations par le juge d'instruction ; l'ordonnance est rendue huit jours au plus tôt et un mois au plus tard à compter de cet avis.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de se dessaisir, son ordonnance ne prend effet qu'à compter du délai de cinq jours prévu par l'article 705-2 ; lorsqu'un recours est exercé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le juge d'instruction demeure saisi jusqu'à ce que soit porté à sa connaissance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ou celui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Dès que l'ordonnance est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dress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ormais compéten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705-2

L'ordonnance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5-1 peut, à l'exclusion de toute autre voie de recours, être déférée dans les cinq jours de sa notification,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soi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la juridiction spécialisée au profit de laquelle le dessaisissement a été ordonné ou refusé se trouve dans le ressort de la même cour d'appel que la juridiction initialement saisie, soit, dans le cas contraire, à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ésigne, dans les huit jours suivant la date de réception du dossier,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poursuivre l'information.

1054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ministère public peut également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rendu son ordonnance dans le délai d'un mo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5-1.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de la chambre criminelle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juge d'instruction ainsi qu'au ministère public et notifié aux parti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ndu sur le fond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5-1, le recours étant alors porté devant la chambre criminelle.

Article 706

Peuvent exercer des fonctions d'assistant spécialisé auprès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mentionné à l'article 704 les fonctionnaires de catégorie A ou B ainsi que les personnes titulaires, dans des matières définies par décret, d'un diplôme national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supérieures après le baccalauréat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 fonction publique et justifient d'une expérience professionnelle minimale de quatre années.

Les assistants spécialisés suivent une formation obligatoire préalable à leur entrée en fonction. Les assistants spécialisés participent aux procédures sous la responsabilité des magistrats, sans pouvoir toutefois recevoir délégation de signature, sauf pour les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60-1, 60-2, 77-1-1, 77-1-2, 99-3 et 99-4.

Ils accomplissent toutes les tâches qui leur sont confiées par les magistrats et peuvent notamment :

- 1° Assister les juges d'instruction dans tous les actes d'information ;
- 2° Assister les magistrats du ministère public dans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
- 3° Assiste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ur délégation des magistrats ;
- 4° Remettre aux magistrats des documents de synthèse ou d'analyse qui peuvent être versé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
- 5° Mettre en oeuvre le droit de communication reconnu aux magistrat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22 du code pénal.

Le procureur général peut leur demander d'assister le ministère public devant la juridiction

d'appel.

Ils ont accè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pour l'exécution des tâches qui leur sont confiées et sont soumis au secret professionnel sous l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226-13 du code pénal.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notamment la durée pour laquelle les assistants spécialisés sont nommés et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ils prêtent serment.

Article 706-1

Pour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actes incriminés par les articles 435-1 à 435-10 du code pé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le juge d'instruction et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 exercent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382 et de l'article 706-42. Lorsqu'ils sont compétents pour la poursuite et l'instruction des infractions prévues aux articles 435-1 à 435-10 du code pé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exercent leurs attributions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lui de Paris peut, pour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5-1 et 705-2.

Article 706-1-1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e trouve une juridiction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4, anime et coordonne, en concertation avec les autres procureurs généraux du ressort interrégional, la conduite de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cet article.

Article 706-1-2

Les articles 706-80 à 706-87 sont applicables à l'enquête relative aux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L. 335-2, L. 335-3, L. 335-4, L. 343-4, L. 521-10, L. 615-14, L. 716-9 et L. 716-10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orsqu'ils sont commis en bande organisée.

Article 706-1-3

Les articles 706-80 à 706-87, 706-95 à 706-103, 706-105 et 706-106 sont applicables à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313-2 (dernier alinéa), 432-11, 433-1, 433-2, 434-9, 434-9-1, 435-1 à 435-4 et 435-7 à 435-10 du code pénal.

Titre XIII bis : De la procédure applicable aux infractions en matière sanitaire

Article 706-2

- I . -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être étendue au ressort d'une ou de plusieurs cours d'appel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s infractions définies ci-après dans les affaires relatives à un produit de santé tel que défini par l'article L. 531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ou à un produit destiné à l'alimentation de l'homme ou de l'animal ou à un produit ou une substance auxquels l'homme est durablement exposé et qui sont réglementés en raison de leurs effets ou de leur dangerosité, qui sont ou apparaîtraient d'une grande complexité :
- atteintes à la personne humaine, au sens du titre II du livre II du code pénal ;
 - infrac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infractions prévues par le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ou le code de la consommation ;
 - infractions prévues par le code de l'environnement et le code du travail.

Cette compétence s'étend aux infractions connexes.

Un décret fixe la liste et le ressort de ces juridictions, qui comprennent une section du parquet et des forma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pécialisées pour connaître de ces infraction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et la formation correctionnelle spécialisée de ces tribunaux exercen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5,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382 et 706-4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ux visés au présent article peut, pour les infractions

énumérées ci-dessus,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5-1 et 705-2,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à compétence territoriale étendue par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 II. -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deuxième à dixième alinéas de l'article 706, peuvent exercer des fonctions d'assistant spécialisé en matière sanitaire les fonctionnaires de catégorie A ou B relevant des ministres chargés de la santé, de la recherche et de l'agriculture ainsi que les personnes titulaires, dans des matières définies par décret, d'un diplôme national sanctionnant une form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quatre années d'études supérieures après le baccalauréat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 fonction publique et justifient d'une expérience professionnelle minimale de quatre années.

Article 706-2-1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e trouve une juridiction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2, anime et coordonne, en concertation avec les autres procureurs généraux du ressort interrégional, la conduite de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cet article.

Titre XIV : Du recours en indemnité ouvert à certaines victimes de dommages résultant d'une infraction

Article 706-3

Toute personne ayant subi un préjudice résultant de faits volontaires ou non qui présentent le caractère matériel d'une infraction peut obtenir la réparation intégrale des dommages qui résultent des atteintes à la personne, lorsque sont réunies les conditions suivantes :

- 1° Ces atteintes n'entrent pas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53 de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01 (n° 2000-1257 du 23 décembre 2000) ni de l'article L. 126-1 du code des assurances ni du chapitre Ier de la loi n° 85-677 du

1058 프랑스 형사소송법

5 juillet 1985 tendant à l'amélioration de la situation des victimes d'accidents de la circulation et à l'accélération des procédures d'indemnisation et n'ont pas pour origine un acte de chasse ou de destruction des animaux nuisibles ;

2° Ces faits :

- soit ont entraîné la mort, une incapacité permanente ou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personnel égale ou supérieure à un mois ;
- soit sont prévus et réprimés par les articles 222-22 à 222-30, 225-4-1 à 225-4-5 et 227-25 à 227-27 du code pénal ;

3° La personne lésée est de nationalité française.

Dans le cas contraire, les faits ont été commis sur le territoire national et la personne lésée est :

- soit ressortissante d'un Etat membre de la Communauté économique européenne ;
- soit, sous réserve des traités et accords internationaux, en séjour régulier au jour des faits ou de la demande.

La réparation peut être refusée ou son montant réduit à raison de la faute de la victime.

Article 706-4

L'indemnité est allouée par une commission instituée dans le ressort de chaqu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ette commission a le caractère d'une juridiction civile qui se prononce en premier ressort.

La commission est composée de deux magistrats du sièg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d'une personne majeure, de nationalité française et jouissant de ses droits civiques, s'étant signalée par l'intérêt qu'elle porte aux problèmes des victimes.

Elle est présidée par l'un des magistrat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et leurs suppléants sont désignés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par l'assemblée générale des magistrats du siège du tribunal.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un de ses substitut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06-5

A peine de forclusion, la demande d'indemnité doit être présentée dans le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infraction.

Lorsque des poursuites pénales sont exercées, ce délai est prorogé et n'expire qu'un an après la décision de la juridiction qui a statué définitivement sur l'action publique ou sur l'action civile engagé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 lorsque l'auteur d'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06-3 et 706-14 est condamnée à verser des dommages-intérêts, le délai d'un an court à compter de l'avis donné par la juridic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5. Toutefois, la commission relève le requérant de la forclusion lorsqu'il n'a pas été en mesure de faire valoir ses droits dans les délais requis ou lorsqu'il a subi une aggravation de son préjudice ou pour tout autre motif légitime.

Lorsqu'une décision d'une juridiction répressive a alloué des dommages et intérêts à la victime et que la demande est jugée irrecevable, le délai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6-15-2 ne court qu'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a décision de la commission.

Article 706-5-1

La demande d'indemnité, accompagnée des pièces justificatives, est transmise sans délai par le greffe de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au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autres infractions.

Celui-ci est tenu,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présenter à la victime une offre d'indemnisation.

Le refus d'offre d'indemnisation par le fonds de garantie doit être motivé.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en cas d'aggravation du préjudice.

En cas d'acceptation par la victime de l'offre d'indemnisation, le fonds de garantie transmet le constat d'accord au président de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aux fins d'homologation.

En cas de refus motivé du fonds de garantie, ou de désaccord de la victime sur l'offre qui lui est faite, l'instruction de l'affaire par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ou le magistrat assesseur se poursuit.

Lorsque le préjudice n'est pas en état d'être liquidé et que le fonds de garantie ne conteste

pas le droit à indemnisation, il peut, en tout état de la procédure, verser une provision à la victime.

Le fonds de garantie tient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immédiatement informé.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706-6

La commission ou son président peut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à toutes auditions et investigations utiles, sans que puisse leur être opposé le secret professionnel.

Ils peuvent notamment se faire communiquer copie des procès-verbaux constatant l'infraction ou de toutes les pièces de la procédure pénale, même en cours.

Ils peuvent également requérir :

- 1° De toute personne ou administration, la communication de renseignements sur la situation professionnelle, financière, fiscale ou sociale des personnes ayant à répondre du dommage causé par l'infraction ou du requérant ;
- 2° De tout service de l'Etat, collectivité publique, organisme de sécurité sociale, organisme assurant la gestion des prestations sociales ou compagnies d'assurance susceptibles de réparer tout ou partie du préjudice, la communication des renseignements relatifs à l'exécution de leurs obligations éventuelles.

Les renseignements ainsi recueillis ne peuvent être utilisés à d'autres fins que l'instruction de la demande d'indemnité et leur divulgation est interdite.

Le président de la commission peut accorder une ou plusieurs provisions en tout état de la procédure ; il est statué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demande de provision.

Article 706-7

Lorsque des poursuites pénales ont été engagées, la décision de la commission peut intervenir avant qu'il ait été statué sur l'action publique.

La commission peut, pour l'application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6-3, surseoir à statuer jusqu'à décision définitive de la juridiction répressive.

Dans tous les cas, elle doit surseoir à statuer à la demande de la victime.

Les débats ont lieu et la décision est rendue en chambre du conseil.

Article 706-8

Lorsque la juridiction statuant sur les intérêts civils a alloué des dommages-intérêts d'un montant supérieur à l'indemnité accordée par la commission, la victime peut demander un complément d'indemnité.

Elle doit présenter sa demande dans le délai d'un an après que la décision statuant sur les intérêts civils est devenue définitive.

Article 706-9

La commission tient compte, dans le montant des sommes allouées à la victime au titre de la réparation de son préjudice :

- des prestation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gérant 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et par ceux qui sont mentionnés aux articles 1106-9, 1234-8 et 1234-20 du code rural ;
- des prestations énumérées au II de l'article 1er de l'ordonnance n° 59-76 du 7 janvier 1959 relative aux actions en réparation civile de l'Etat et de certain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
- des sommes versées en remboursement des frais de traitement médical et de rééducation ;
- des salaires et des accessoires du salaire maintenus par l'employeur pendant la période d'inactivité consécutive à l'événement qui a occasionné le dommage ;
-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e maladie et des prestations d'invalidité versées par les groupements mutualistes régis par le code de la mutualité.

Elle tient compte également des indemnités de toute nature reçues ou à recevoir d'autres débiteurs au titre du même préjudice.

Les sommes allouées sont versées par le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Article 706-10

Lorsque la victime, postérieurement au paiement de l'indemnité, obtient, du chef du même préjudice, une des prestations ou indemnités visées à l'article 706-9, le fonds peut demander à la commission qui l'avait accordée d'ordonner le remboursement total ou partiel de l'indemnité ou de la provision.

Article 706-11

Le fonds est subrogé dans les droits de la victime pour obtenir des personnes responsables du dommage causé par l'infraction ou tenues à un titre quelconque d'en assurer la réparation totale ou partielle le remboursement de l'indemnité ou de la provision versée par lui, dans la limite du montant des réparations à la charge desdites personnes.

Le fonds peut exercer ses droits par toutes voies utiles, y compris par voie de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et ce, même pour la première fois, en cause d'appel. Lorsqu'il se constitue partie civile par lettre recommandée, le fonds peut demander le remboursement des sommes mises à sa charge sans limitation de plafond.

Les administrations ou services de l'Etat et des collectivités publiques, l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les organismes qui assurent la gestion des prestations sociales, les établissements financiers et les entreprises d'assurance sont tenus de réunir et de communiquer au fonds les renseignements dont ils disposent ou peuvent disposer et qui sont utiles à la mise en oeuvre de son action récursoire.

Les renseignements ainsi recueillis ne peuvent être utilisés à d'autres fins que celle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ou à l'article L. 422-8 du code des assurances.

Leur divulgation est interdite.

Lorsque l'auteur de l'infraction a fait l'objet d'une obligation d'indemnisation de la victime dans le cadre d'une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d'un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ou d'une décision d'aménagement de peine ou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et que la victime a été indemnisée par le fonds, soit en 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soit du titre XIV bis, cette obligation doit alors être exécutée au bénéfice du fonds de garantie dans l'exercice de son recours subrogatoire et de son mandat de recouvrement au profit de la victime.

Article 706-12

Si la victime ou ses ayants droit se constituent partie civile devant la juridiction répressive ou engagent une action contre les personnes responsables du dommage, ils doivent indiquer, en tout état de la procédure, s'ils ont saisi la commission instituée par l'article 706-4 et si, le cas échéant, celle-ci leur a accordé une indemnité. A défaut de cette indication, la nullité du jugement en ce qui concerne ses dispositions civiles pourra être demandée par toute personne intéressée pendant deux ans à compter de la date à partir de laquelle ledit jugement est devenu définitif.

Article 706-14

Toute personne qui, victime d'un vol, d'une escroquerie, d'un abus de confiance, d'une extorsion de fonds ou d'une destruction, d'une dégradation ou d'une détérioration d'un bien lui appartenant, ne peut obtenir à un titre quelconque une réparation ou une indemnisation effective et suffisante de son préjudice, et se trouve de ce fait dans une situation matérielle ou psychologique grave, peut obtenir une indemn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3 (3° et dernier alinéa) à 706-12, lorsque ses ressources sont inférieures au plafond prévu par l'article 4 de la loi n° 91-647 du 10 juillet 1991 relative à l'aide juridique pour bénéficier de l'aide juridictionnelle partielle, compte tenu, le cas échéant, de ses charges de famille.

L'indemnité est au maximum égale au triple du montant mensuel de ce plafond de ressources. Ces dispositions sont aussi applicables aux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3 qui, victimes d'une atteinte à la personne prévue par cet article, ne peuvent à ce titre prétendre à la réparation intégrale de leur préjudice, les faits générateurs de celui-ci ayant entraîné une incapacité totale de travail inférieure à un mois.

Article 706-14-1

L'article 706-14 est applicable à toute personne victime de la destruction par incendie d'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lui appartenant qui justifie au moment des faits avoir satisfait aux dispositions du code de la route relatives au certificat d'immatriculation et au contrôle technique ainsi qu'aux obligations prévues à l'article L. 211-1 du code des assurances, sans qu'elle ait à établir qu'elle se trouve dans une situation matérielle ou psychologique grave ; elle peut alors

bénéficier d'une indemnité lorsque ses ressources ne dépassent pas 1, 5 fois le plafond prévu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4.

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dès lors que le fait a été commis sur le territoire national.

Article 706-15

Lorsqu'une juridiction condamne l'auteur d'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06-3 et 706-14 à verser des dommages-intérêts à la partie civile, elle informe cette dernière de la possibilité de saisir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Titre XIV bis : De l'aide au recouvreme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pour les victimes d'infractions

Article 706-15-1

Toute personne physique qui, s'étant constituée partie civile, a bénéficié d'une décision définitive lui accordant des dommages et intérêts en réparation du préjudice qu'elle a subi du fait d'une infraction pénale, mais qui ne peut pas obtenir une indemnisation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3 ou 706-14, peut solliciter une aide au recouvrement de ces dommages et intérêts ainsi que des sommes allou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75 ou 475-1.

Cette aide peut être sollicitée y compris si l'auteur de l'infraction fait l'objet d'une obligation d'indemnisation de la victime dans le cadre d'une peine de sanction-réparation, d'un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ou d'une décision d'aménagement de peine ou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Article 706-15-2

En l'absence de paiement volontaire des dommages et intérêts ainsi que des sommes allou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375 ou 475-1 par la personne condamnée dans un délai de deux mois suivant le jour où la décision concernant les dommages et intérêts est devenue définitive, la partie civile peut saisir le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d'une demande d'aide au recouvrement.

A peine de forclusion, la demande d'aide au recouvrement doit être présentée dans le délai d'un an à compter du jour où la décision est devenue définitive.

Toutefois, le fonds de garantie peut relever la victime de la forclusion pour tout motif légitime. En cas de refus opposé par le fonds, la victime peut être relevée de la forclusion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tatuant par ordonnance sur requête. A peine d'irrecevabilité, la requête est présentée dans le mois suivant la décision de refus.

La victime est tenue de communiquer au fonds tout renseignement de nature à faciliter le recouvrement de créance.

Agissant seule ou conjointement avec le débiteur, la victime peut renoncer à l'assistance au recouvrement.

Toutefois, les frais de gestion et les frais de recouvrement exposés par le fonds demeurent exigibles.

Titre XV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actes de terrorisme

Article 706-16

Les actes de terrorisme incriminés par les articles 421-1 à 421-6 du code pénal, ainsi que les infractions connexes sont poursuivis, instruits et jugés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à la poursuite, à l'instruction et au jugement des actes de terrorisme commis à l'étranger lorsque la loi française est applicable en vertu des dispositions de la section 2 du chapitre III du titre Ier du livre Ier du code pénal.

Section 1 : Compétence

Article 706-17

Pour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le tribunal correctionnel et la cour d'assises de Paris exercent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et 382.

En ce qui concerne les mineur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le juge des enfants, le tribunal pour enfants et la cour d'assises des mineurs de Paris exercent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Lorsqu'ils sont compétents pour la poursuite et l'instruction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exercent leurs attributions sur toute l'étendue du territoire national.

L'instruction des actes de terrorisme définis aux 5° à 7° de l'article 421-1 du code pénal et aux articles 421-2-2 et 421-2-3 du même code peut être confiée, le cas échéa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83-1, à un magistra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affecté aux formations d'instruction spécialisées en matière économique et financièr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4.

Article 706-17-1

Pour le jugement des délits et des crime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e Paris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général, après avis des chefs d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intéressés, du bâtonnier de Paris et, le cas échéant, du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de Paris, décider que l'audience du tribunal correctionnel,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de Paris ou de la cour d'assises de Paris se tiendra, à titre exceptionnel et pour des motifs de sécurité, dans tout autre lieu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que celui où ces juridictions tiennent habituellement leurs audiences.

L'ordonnance prise en application du précédent alinéa est portée à la connaissance des tribunaux intéressés par les soins du procureur général.

Elle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06-18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lui de Paris peut, pour l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de Paris.

Les parties sont préalablement avisées et invitées à faire connaître leurs observations par le juge d'instruction ; l'ordonnance est rendue huit jours au plus tôt et un mois au plus tard à compter de cet avis.

L'ordonnance par laquelle le juge d'instruction se dessaisit ne prend effet qu'à compter du délai de cinq jours prévu par l'article 706-22 ; lorsqu'un recours est exercé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le juge d'instruction demeure saisi jusqu'à ce que l'arrêt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soit porté à sa connaissance.

Dès que l'ordonnance est devenue définitiv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dress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706-19

Lorsqu'il apparaît au juge d'instruction de Paris que les faits dont il a été saisi ne constituent pas 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et ne relèvent pas de sa compétence à un autre titre, ce magistrat se déclare incompétent, soit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après avis de ce dernier, d'office ou sur requête des parties. Celles des parties qui n'ont pas présenté requête sont préalablement avisées et invitées à faire connaître leurs observations l'ordonnance est rendue au plus tôt huit jours après cet avis.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6-18 sont applicables à l'ordonnance par laquelle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se déclare incompétent.

Dès que l'ordonnance est devenue définitiv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Paris adress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Paris statue sur sa compétence.

Article 706-20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e tribunal pour enfants de Paris se déclare incompétent pour les motifs prévus par l'article 706-19, il renvoie le ministère public à se pourvoir ainsi qu'il avisera ; il peut, le ministère public entendu, décerner, par la même décisio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tre le prévenu.

Article 706-21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articles 706-18 à 706-20, le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conserve sa force exécutoire ; les actes de poursuite ou d'instruction et les formalités intervenus avant que la décision de dessaisissement ou d'incompétence soit devenue définitive n'ont pas à être renouvelés.

Article 706-22

Toute ordonnance rendu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706-18 ou de l'article 706-19 par laquelle un juge d'instruction statue sur son dessaisissement ou le juge d'instruction de Paris statue sur sa compétence peut, à l'exclusion de toute autre voie de recours, être déférée dans les cinq jours de sa notification,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des parties, à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qui désigne, dans les huit jours suivant la date de réception du dossier,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poursuivre l'informa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également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rendu son ordonnance dans le délai d'un mo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8.

La chambre criminelle qui constate que le juge d'instruc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n'est pas compétent peut néanmoins, dans l'intérêt d'une 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 décider que l'information sera poursuivie à ce tribunal.

L'arrêt de la chambre criminelle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juge d'instruction ainsi qu'au ministère public et signifié aux parti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rrêt rendu sur le fondement du dernier alinéa des articles 706-18 et 706-19 par lequel une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sur son dessaisissement ou sa compétence.

Article 706-22-1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0, sont seuls compétent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Paris et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de Paris pour prendre les décisions concernant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une infraction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quel que soit le lieu de détention ou de résidence du condamné. Ces décisions sont prises après avi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712-10.

Pour l'exercice de leurs attributions, les magistrats des juridiction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peuvent se déplacer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sur l'utilisation de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

Section 2 : Procédure

Article 706-24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ffectés dans les services de police judiciaire spécialement chargés d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peuvent être nominativement autorisés par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Paris à procéder aux investigations relatives aux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en s'identifiant par leur numéro d'immatriculation administrative.

Ils peuvent être autorisés à déposer ou à comparaître comme témoins sous ce même numéro. L'état civil d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visés au premier alinéa ne peut être communiqué que sur décision d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e Paris.

Il est également communiqué, à sa demande, au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de jugement saisie des fait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84 sont applicables en cas de révélation de l'identité de c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hors les cas prévus à l'alinéa précédent.

Aucune condamnation ne peut être prononcée sur le seul fondement d'actes de procédure effectués par des enquêteurs ayant bénéficié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et dont l'état

1070 프랑스 형사소송법

civil n'aurait pas été communiqué, à sa demande, au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saisie des faits.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en tant que de besoin,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706-24-3

Pour l'instruction du délit d'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 par l'article 421-5 du code pénal, la durée totale de la détention provisoire prévue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45-1 est portée à trois ans.

Article 706-25

Pour le jugement des accusés majeurs, les règles relatives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ur d'assises sont fixée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8-6.

Pour le jugement des accusés mineurs âgés de seize ans au moins, les règles relatives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ur d'assises des mineurs sont également fixées par ces dispositions, deux des assesseurs étant pris parmi les juges des enfants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20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dont les huitième à seizième alinéas sont applicables. Pour l'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le juge d'instruction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prononce la mise en accusation constate que les faits entre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16.

Article 706-25-1

L'action publique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16 se prescrit par trente ans.

La peine prononcée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 ces crimes se prescrit par tre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action publique relative aux délits mentionnés à l'article 706-16 se prescrit par vingt ans.

La peine prononcée en cas de condamnation pour ces délits se prescrit par vingt an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Titre XVI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trafic de stupéfiants

Article 706-26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du code pénal, ainsi que le délit de participation à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 par l'article 450-1 du même code lorsqu'il a pour objet de préparer l'une de ces infractions, sont poursuivies, instruites et jugées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Article 706-27

Dans le ressort de chaque cour d'appel, une ou plusieurs cours d'assise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sont compétentes pour le jugement des crimes visés à l'article 706-26 et des infractions qui leur sont connexes.

Pour le jugement des accusés majeurs, les règles relatives à la composition et au fonctionnement de la cour d'assises sont fixée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98-6.

Pour l'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lorsqu'elle prononce la mise en accusation conformémen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14, constate que les faits entre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26.

Article 706-28

Pour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26, les visites, perquisitions et saisies prévues par l'article 59 peuvent être opérées en dehors des heures prévues par cet article à l'intérieur des locaux où l'on use en société de stupéfiants ou dans lesquels sont fabriqués, transformés ou entreposés illicitement des stupéfiants lorsqu'il ne s'agit pas de locaux d'habitation. Les acte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avoir un autre objet que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26.

Article 706-30-1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99-2 à des substances

1072 프랑스 형사소송법

stupéfiantes saisies au cours de la procédure, le juge d'instruction doit conserver un échantillon de ces produits afin de permettre, le cas échéant, qu'ils fassent l'objet d'une expertise. Cet échantillon est placé sous scellés.

Il doit être procédé par le juge d'instruction ou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ur commission rogatoire à la pesée des substances saisies avant leur destruction.

Cette pesée doit être réalisée en présence de la personne qui détenait les substances, ou, à défaut, en présence de deux témoins requis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t choisis en dehors des personnes relevant de leur autorité.

La pesée peut également être réalis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au cours de l'enquête de flagrance ou de l'enquête préliminaire,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au cours de l'enquête douanière, par un agent des douanes de catégorie A ou B.

Le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de pesée est signé par les personnes mentionnées ci-dessus. En cas de refus, il en est fait mention au procès-verbal.

Article 706-31

L'action publique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26 se prescrit par trente ans.

La peine prononcée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 ces crimes se prescrit par tre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action publique relative aux délits mentionnés à l'article 706-26 se prescrit par vingt ans.

La peine prononcée en cas de condamnation pour l'un de ces délits se prescrit par vingt an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50, le maximum de la durée de la contrainte judiciaire est fixée à un an lorsque l'amende et les condamnations pécuniaires prononc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ou pour les infractions douanières connexes excèdent 100,000 euros.

Article 706-32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1 à 706-87 du présent code, et aux seules fins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d'acquisition, d'offre ou de cession de produits stupéfiants visées

aux articles 222-37 et 222-39 du code pénal, d'en identifier les auteurs et complices et d'effectuer les saisies prévues au présent cod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ous leur autor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avec l'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saisi des faits qui en avise préalablement le parquet, et sans être pénalement responsables de ces actes :

- 1° Acquérir des produits stupéfiants ;
- 2° En vue de l'acquisition de produits stupéfiants, mettre à la disposition des personnes se livrant à ces infractions des moyens de caractère juridique ou financier ainsi que des moyens de transport, de dépôt, d'hébergement, de conservation et de télécommunication.

A peine de nullité, l'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qui peut être donnée par tout moyen, est mentionnée ou versé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et les actes autorisés ne peuvent constituer une incitation à commettre une infraction.

Article 706-33

En cas de poursuite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26,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à titre provisoire, pour une durée de six mois au plus, la fermeture de tout hôtel, maison meublée, pension, débit de boissons, restaurant, club, cercle, dancing, lieu de spectacle ou leurs annexes ou lieu quelconque ouvert au public ou utilisé par le public, où ont été commises ces infractions par l'exploitant ou avec sa complicité.

Cette fermeture peut, quelle qu'en ait été la durée, faire l'objet de renouvellements dans les mêmes formes pour une durée de trois mois au plus chacun.

Les décision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et celles statuant sur les demandes de mainlevées peuven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vingt-quatre heures de leur exécution ou de la notification faite aux parties intéressées.

Lorsqu'une juridiction de jugement est saisie, la mainlevée de la mesure de fermeture en cours ou son renouvellement, pour une durée de trois mois au plus chaque fois, est prononcée selon les règles fixées par les deuxième à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148-1.

**Titre XVII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de proxénétisme ou de recours à la prostitution des mineurs**

Article 706-34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225-5 à 225-12-4 du code pénal, ainsi que le délit de participation à une 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 par l'article 450-1 du même code lorsqu'il a pour objet de préparer l'une de ces infractions, sont poursuivies, instruites et jugées selon les règles du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Article 706-35

Pour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34, les visites, perquisitions et saisies prévues par l'article 59 peuvent être opérées à toute heure du jour et de la nuit, à l'intérieur de tout hôtel, maison meublée, pension, débit de boissons, club, cercle, dancing, lieu de spectacle et leurs annexes et en tout autre lieu ouvert au public ou utilisé par le public lorsqu'il est constaté que des personnes se livrant à la prostitution y sont reçues habituellement.

Les acte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être effectués pour un autre objet que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34.

Article 706-35-1

Dans le but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225-4-1 à 225-4-9, 225-5 à 225-12 et 225-12-1 à 225-12-4 du code pénal et, lorsque celles-ci sont commises par un moyen de communication électronique, d'en rassembler les preuves et d'en rechercher les auteurs,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au cours de l'enquêt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peuvent, s'ils sont affectés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et spécialement habilités à cette fin, dans des conditions précisées par arrêté, procéder aux actes suivants sans en être pénalement responsables :

- 1° Participer sous un pseudonyme aux échanges électroniques ;

2° Etre en contact par ce moyen avec les personnes susceptibles d'être les auteurs de ces infractions

3° Extraire, transmettre en réponse à une demande expresse, acquérir ou conserver des contenus illicite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A peine de nullité, ces actes ne peuvent constituer une incitation à commettre ces infractions.

Article 706-36

En cas de poursuite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34,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à titre provisoire, pour une durée de trois mois au plus, la fermeture totale ou partielle :

1° D'un établissement visé aux 1° et 2° de l'article 225-10 du code pénal dont le détenteur, le gérant ou le préposé est poursuivi ;

2° De tout hôtel, maison meublée, pension, débit de boissons, restaurant, club, cercle, dancing, lieu de spectacle ou leurs annexes ou lieu quelconque ouvert au public ou utilisé par le public, dans lequel une personne poursuivie aura trouvé au cours des poursuites, auprès de la direction ou du personnel, un concours sciemment donné pour détruire des preuves, exercer des pressions sur des témoins ou favoriser la continuation de son activité délictueuse.

Cette fermeture peut, quelle qu'en ait été la durée, faire l'objet de renouvellements dans les mêmes formes pour une durée de trois mois au plus chacun.

Les décisions prévues aux alinéas précédents et celles statuant sur les demandes de mainlevées peuven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vingt-quatre heures de leur exécution ou de la notification faite aux parties intéressées.

Lorsqu'une juridiction de jugement est saisie, la mainlevée de la mesure de fermeture en cours ou son renouvellement, pour une durée de trois mois au plus chaque fois, est prononcée selon les règles fixées par les deuxième à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148-1.

Article 706-37

Le ministère public fait connaître au propriétaire de l'immeuble, au bailleur et au propriétaire

1076 프랑스 형사소송법

du fonds où est exploité un établissement dans lequel sont constatés les faits visés au 2° de l'article 225-10 du code pénal et fait mentionner au registre du commerce et aux registres sur lesquels sont inscrites les sûretés l'engagement des poursuites et la décision intervenu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706-38

Lorsque la personne titulaire de la licence de débit de boissons ou de restaurant ou propriétaire du fonds de commerce dans lequel est exploité l'un des établissements visés au 2° de l'article 225-10 du code pénal n'est pas poursuivie, les peines complémentaires prévues par l'article 225-22 du code pénal ne peuvent être prononcées, par décision spéciale et motivée, que s'il est établi que cette personne a été citée à la diligence du ministère public avec indication de la nature des poursuites exercées et de la possibilité pour le tribunal de prononcer ces peines. La personne visée à l'alinéa précédent peut présenter ou faire présenter par un avocat ses observations à l'audience.

Si elle use de cette faculté, elle peut interjeter appel de la décision prononçant l'une des peines prévues par l'article 225-22 du code pénal.

Article 706-39

La décision qui, en application de l'article 225-22 du code pénal, prononce la confiscation du fonds de commerce ordonne l'expulsion de toute personne qui, directement ou par personne interposée, détient, gère, exploite, dirige, fait fonctionner, finance ou contribue à financer l'établissement. Cette même décision entraîne le transfert à l'Etat de la propriété du fonds confisqué et emporte subrogation de l'Etat dans tous les droits du propriétaire du fonds.

Article 706-40

En cas d'infraction prévue par le 3° de l'article 225-10 du code pénal, l'occupant et la personne se livrant à la prostitution sont solidairement responsables des dommages-intérêts pouvant être alloués pour trouble du voisinage.

Lorsque les faits visés par cet article sont pratiqués de façon habituelle, la résiliation du bail

et l'expulsion du locataire, sous-locataire ou occupant qui se livre à la prostitution ou la tolère sont prononcées par le juge des référés, à la demande du ministère public, du propriétaire, du locataire principal ou des occupants ou voisins de l'immeuble.

Les propriétaires ou bailleurs de ces locaux sont informés, à la diligence du ministère public, que ceux-ci servent de lieux de prostitution.

Titre XVIII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infractions commises par les personnes morales

Article 706-41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à la poursuite, à l'instruction et au jugement des infractions commises par les personnes morale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Article 706-42

Sans préjudice des règles de compétence applicables lorsqu'une personne physique est également soupçonnée ou poursuivie, sont compétents :

- 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s juridictions du lieu de l'infraction ;
- 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s juridictions du lieu où la personne morale a son siège.

Ces dispositions ne sont pas exclusives de l'application éventuelle des règles particulières de compétence prévues par les articles 705 et 706-17 relatifs aux infraction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et aux actes de terrorisme.

Article 706-43

L'action publique est exercée à l'encontre de la personne morale prise en la personne de son représentant légal à l'époque des poursuites.

Ce dernier représente la personne morale à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1078 프랑스 형사소송법

Toutefois, lorsque des poursuites pour des mêmes faits ou des faits connexes sont engagées à l'encontre du représentant légal, celui-ci peut saisir par requêt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x fins de désignation d'un mandataire de justice pour représenter la personne morale. La personne morale peut également être représentée par toute personne bénéficiant, conformément à la loi ou à ses statuts, d'une délégation de pouvoir à cet effet.

La personne chargée de représenter la personne morale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oit faire connaître son identité à la juridiction saisi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Il en est de même en cas de changement du représentant légal en cours de procédure.

En l'absence de toute personne habilitée à représenter la personne mora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igne,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du juge d'instruction ou de la partie civile, un mandataire de justice pour la représenter.

Article 706-44

Le représentant de la personne morale poursuivie ne peut, en cette qualité, faire l'objet d'aucune mesure de contrainte autre que celle applicable au témoin.

Article 706-45

Le juge d'instruction peut placer la personne morale sous contrôle judicia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39 et 140 en la soumettant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suivantes :

- 1° Dépôt d'un cautionnement dont le montant et les délais de versement, en une ou plusieurs fois, sont fixés par le juge d'instruction ;
- 2° Constitution, dans un délai, pour une période et un montant déterminés par le juge d'instruction, des sûretés personnelles ou réelles destinées à garantir les droits de la victime ;
- 3° Interdiction d'émettre des chèques autres que ceux qui permettent le retrait de fonds par le tireur auprès du tiré ou ceux qui sont certifiés ou d'utiliser des cartes de paiement ;
- 4° Interdiction d'exercer certain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ociales lorsqu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exercice de ces activités et lorsqu'il est à redouter qu'une nouvelle infraction soit commise ;

- 5° Placement sous contrôle d'un mandataire de justice désigné par le juge d'instruction pour une durée de six mois renouvelable, en ce qui concerne l'activité dans l'exercic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Pour les obligations prévues aux 1° et 2°,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42 à 142-3 sont applicables.

Les interdictions prévues aux 3° et 4° ne peuvent être ordonnées par le juge d'instruction que dans la mesure où elles sont encourues à titre de peine par la personne morale poursuivie.

La mesure prévue au 5° ne peut être ordonnée par le juge d'instruction si la personne morale ne peut être condamnée à la peine prévue par le 3° de l'article 131-39 du code pénal.

En cas de violation du contrôle judiciaire, les articles 434-43 et 434-47 du code pénal sont, le cas échéant, applicables.

Article 706-46

L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pplicables à la signification des actes aux personnes morales sont fixées au titre IV du livre II.

Titre XIX : De la procédure applicable aux infractions de nature sexuelle et de la protection des mineurs victimes

Article 706-47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sont applicables aux procédures concernant les infractions de meurtre ou d'assassinat d'un mineur précédé ou accompagné d'un viol,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ou pour les infractions d'agression ou d'atteintes sexuelles ou de proxénétisme à l'égard d'un mineur, ou de recours à la prostitution d'un mineur prévues par les articles 222-23 à 222-31, 225-7 (1°), 225-7-1, 225-12-1, 225-12-2 et 227-22 à 227-27 du code pénal.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procédures concernant les crimes de meurtre ou

assassinat commis avec tortures ou actes de barbarie, les crimes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et les meurtres ou assassinat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06-47-1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peuvent être soumises à une injonction de soins prononcée soit lors de leur condamnation, dans le cadre d'un suivi socio-judicia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1-36-4 du code pénal, soit postérieurement à celle-ci, dans le cadre de ce suivi,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ou d'une surveillance de sûreté, conformément aux articles 706-53-19, 723-30, 723-37, 731-1, 763-3 et 763-8 du présent code, dans les cas et conditions prévus par ces articles.

Lorsqu'une injonction de soins est ordonnée, le médecin traitant peut prescrire un traitement inhibiteur de libido conformément à l'article L. 37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es personnes poursuivi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du présent code doivent être soumises, avant tout jugement au fond, à une expertise médicale. L'expert est interrogé sur l'opportunité d'une injonction de soins.

Cette expertise peut être ordonnée dès le stade de l'enquêt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te expertise est communiquée à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afin de faciliter le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en détention prévu par l'article 717-1.

Article 706-47-2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au cours de l'enquêt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peut faire procéder sur toute personne contre laquelle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d'avoir commis un viol, une agression sexuelle ou une atteinte sexuelle prévus par les articles 222-23 à 222-26 et 227-25 à 227-27 du code pénal, à un examen médical et à une prise de sang afin de déterminer si cette personne n'est pas atteinte d'une maladie sexuellement transmissible.

Le médecin, l'infirmier ou la personne habilitée par les disposition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à effectuer les actes réservés à ces professionnels, qui est requis à cette fin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oit s'efforcer d'obtenir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

A la demande de la victime ou lorsque son intérêt le justifie, cette opération peut être effectuée sans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 sur instructions écrite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qui sont versées au dossier de la procédure.

Le résultat du dépistage est porté,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par l'intermédiaire d'un médecin, à la connaissance de la victime ou, si celle-ci est mineure, de ses représentants légaux ou de l'administrateur ad hoc nommé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0.

Le fait de refuser de se soumettre au dépistage prévu au présent artic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2 à 132-5 du code pénal, ces peines se cumulent,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celles susceptibles d'être prononcées pour le crime ou le délit ayant fait l'objet de la procédure.

Article 706-47-3

Dans le but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227-18 à 227-24 du code pénal et, lorsque celles-ci sont commises par un moyen de communication électronique, d'en rassembler les preuves et d'en rechercher les auteurs,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au cours de l'enquêt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peuvent, s'ils sont affectés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et spécialement habilités à cette fin, dans des conditions précisées par arrêté, procéder aux actes suivants sans en être pénalement responsables :

- 1° Participer sous un pseudonyme aux échanges électroniques ;
- 2° Etre en contact par ce moyen avec les personnes susceptibles d'être les auteurs de ces infractions
- 3° Extraire, transmettre en réponse à une demande expresse, acquérir ou conserver des contenus illicites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A peine de nullité, ces actes ne peuvent constituer une incitation à commettre ces infractions.

Article 706-48

Les mineurs victimes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peuvent faire l'objet d'une expertise médico-psychologique destinée à apprécier la nature et l'importance du préjudice subi et à établir si celui-ci rend nécessaires des traitements ou des soins appropriés.

Une telle expertise peut être ordonnée dès le stade de l'enquêt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706-49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informe sans délai le juge des enfants de l'existence d'une procédure concernant un mineur victime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et lui en communique toutes pièces utiles, dès lors qu'une procédure d'assistance éducative a été ouverte à l'égard du mineur victime de cette infraction.

Article 706-50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 faits commis volontairement à l'encontre d'un mineur, désigne un administrateur ad hoc lorsque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de celui-ci n'est pas complètement assurée par ses représentants légaux ou par l'un d'entre eux. Lorsque les faits sont qualifiés d'incestueux au sens des articles 222-31-1 ou 227-27-2 du code pénal, la désignation de l'administrateur ad hoc est obligatoire, sauf décision spécialement motivé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L'administrateur ad hoc assure la protection des intérêts du mineur et exerce, s'il y a lieu, au nom de celui-ci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as de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le juge fait désigner un avocat d'office pour le mineur s'il n'en a pas déjà été choisi un.

L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sont applicables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Article 706-51

L'administrateur ad hoc nomm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précédent est désigné par le magistrat compétent, soit parmi les proches de l'enfant, soit sur une liste de personnalités dont les modalités de constitution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précise également les conditions de leur indemnisation.

Article 706-51-1

Tout mineur victime d'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est assisté par un avocat lorsqu'il est entendu par le juge d'instruction.

A défaut de désignation d'un avocat par les représentants légaux du mineur ou par l'administrateur ad hoc, le juge avise immédiatement le bâtonnier afin qu'il commette un avocat d'offic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114 sont applicables à cet avocat en cas d'auditions ultérieures.

Article 706-52

Au cours de l'enquête et de l'information, l'audition d'un mineur victime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fait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L'enregistrement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peut être exclusivement sonore sur décis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si l'intérêt du mineur le justifi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hargé de l'enquête ou agissant sur commission rogatoire peut requérir toute personne qualifiée pour procéder à cet enregistreme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60 sont applicables à cette personne, qui est tenue au secret professionnel dans les conditions de l'article 11.

Il est par ailleurs établi une copie de l'enregistrement aux fins d'en faciliter la consultation ultérieure au cours de la procédure.

Cette copie est versée au dossier.

L'enregistrement original est placé sous scellés fermés.

Sur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l'enregistrement peut être visionné ou écouté au cours de la procédure.

La copie de ce dernier peut toutefois être visionnée ou écoutée par les parties, les avocats ou les experts, en présence du juge d'instruction ou d'un greffier.

Les huit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1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ne sont pas applicables

à l'enregistrement.

La copie de ce dernier peut toutefois être visionnée par les avocats des parties au palais de justice dans des conditions qui garantissent la confidentialité de cette consultation.

Lorsque l'enregistrement ne peut être effectué en raison d'une impossibilité technique, il en est fait mention dans le procès-verbal d'audition qui précise la nature de cette impossibilité.

Si l'audition intervient au cours de l'enquête ou sur commission rogatoi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en est immédiatement avisé.

Le fait, pour toute personne, de diffuser un enregistrement ou une copie réalisé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A l'expiration d'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l'extinction de l'action publique, l'enregistrement et sa copie sont détruits dans le délai d'un mois.

Article 706-53

Au cours de l'enquête ou de l'information, les auditions ou confrontations d'un mineur victime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sont réalisées sur décis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le cas échéant à la demande du mineur ou de son représentant légal, en présence d'un psychologue ou d'un médecin spécialistes de l'enfance ou d'un membre de la famille du mineur ou de l'administrateur ad hoc désign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50 ou encore d'une personne chargée d'un mandat du juge des enfants.

Chapitre II : Du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

Article 706-53-1

Le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 constitue une application automatisée d'informations nominatives tenue par le service du casier judiciaire sous l'autori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le contrôle d'un magistrat.

Afin de prévenir le renouvellement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et de faciliter l'identification de leurs auteurs, ce traitement reçoit, conserve et communique aux personnes

habilitées les informations prévues à l'article 706-53-2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Article 706-53-2

Lorsqu'elles concernen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une ou plusieurs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sont enregistrées dans le fichier l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identité ainsi que l'adresse ou les adresses successives du domicile et, le cas échéant, des résidences, des personnes ayant fait l'objet :

- 1° D'une condamnation, même non encore définitive, y compris d'une condamnation par défaut ou d'une déclaration de culpabilité assortie d'une dispense ou d'un ajournement de la peine ;
- 2° D'une décision, même non encore définitiv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 15, 15-1, 16, 16 bis et 28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3° D'une composition pénale prévue par l'article 41-2 du présent code dont l'exécution a été constat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4° D'une décis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
- 5° D'une mise en examen assortie d'un placement sous contrôle judiciaire ou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a ordonné l'inscription de la décision dans le fichier ;
- 6° D'une décision de même nature que celles visées ci-dessu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ou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qui,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ux, ont fait l'objet d'un avis aux autorités françaises ou ont été exécutées en France à la suite du transfèrement des personnes condamnées.

Le fichier comprend aussi l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a décision judiciaire ayant justifié l'inscription et la nature de l'infraction.

Les décisions mentionnées aux 1° et 2° sont enregistrées dès leur prononcé.

Les décisions concernant des délits prévus par l'article 706-47 et punis d'une peine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ne sont pas inscrites dans le fichier,

sauf si cette inscription est ordonnée par décision expresse de la juridiction ou,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3° et 4°,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706-53-3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compétent fait procéder sans délai à l'enregistrement des informations devant figurer dans le fichier par l'intermédiaire d'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sécurisé.

Ces informations ne sont toutefois accessibles en cas de consultation du fichier qu'après vérification, lorsqu'elle est possible, de l'identité de la personne concernée, faite par le service gestionnaire du fichier au vu du répertoire national d'identification.

Lorsqu'ils ont connaissance de la nouvelle adresse d'une personne dont l'identité est enregistrée dans le fichier ainsi que lorsqu'ils reçoivent la justification de l'adresse d'une telle personn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nregistrent sans délai cette information dans le fichier par l'intermédiaire d'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sécurisé.

Article 706-53-4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53-9 et 706-53-10, les informa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2 concernant une même personne sont retirées du fichier au décès de l'intéressé ou à l'expir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ensemble des décisions enregistrées ont cessé de produire tout effet, d'un délai de :

- 1° Trente ans s'il s'agit d'un crime ou d'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
- 2° Vingt ans dans les autres cas.

L'amnistie ou la réhabilitation ainsi que les règles propres à l'effacement des condamnations figurant au casier judiciaire n'entraînent pas l'effacement de ces informations.

Ces informations ne peuvent, à elles seules, servir de preuve à la constatation de l'état de récidive.

Les mentions prévues aux 1°, 2° et 5° de l'article 706-53-2 sont retirées du fichier en cas de décision définitive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escement.

Celles prévues au 5° sont également retirées en cas de cessation ou de main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ou de l'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706-53-5

Toute personne dont l'identité est enregistrée dans le fichier est astreinte,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aux obliga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a personne est tenue, soit, si elle réside à l'étranger, auprès du gestionnaire du fichier,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soit auprès du commissariat de police ou de la gendarmerie de son domicil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ou en se présentant au service :

- 1° De justifier de son adresse, une première fois après avoir reçu l'information des mesures et des obligations mentionné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6-53-6, puis tous les ans ;
- 2° De déclarer ses changements d'adresse,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au plus tard après ce changement.

Si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lle doit justifier de son adresse une fois tous les six mois en se présentant à cette fin soit auprès du commissariat ou de l'unité de gendarmerie de son domicile, soit auprès du groupement de gendarmerie départemental ou de la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a sécurité publique de son domicile ou auprès de tout autre service désigné par la préfecture.

Si la dangerosité de la personne le justifie, la juridiction de jugement ou,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que cette présentation interviendra tous les mois.

Cette décision est obligatoire si la personn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s obligations de justification et de présentation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cessent de s'appliquer pendant le temps où la personne est incarcérée.

Le fait, pour les personnes tenues aux obliga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de ne pas respecter ces obligations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06-53-6

Toute personne dont l'identité est enregistrée dans le fichier en est informée par l'autorité

judiciaire, soit par notification à personne, soit par lettre recommandée adressée à la dernière adresse déclarée, soit, à défaut, par le recours à la force publiqu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vec l'autorisation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lle est alors informée des mesures et des obligations auxquelles elle est astreint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3-5 et des peines encourues en cas de non-respect de ces obligations.

Lorsque la personne est détenue au titre de la condamnation justifiant son inscription au fichier et qu'elle n'a pas encore reçu l'information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les informa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lui sont données au moment de sa libération définitive ou préalablement à la première mesure d'aménagement de sa peine.

Article 706-53-7

L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fichier sont directement accessibles, par l'intermédiaire d'un système de télécommunication sécurisé :

- 1° Aux autorités judiciaires ;
- 2° Aux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ans le cadre de procédures concernant un crime d'atteinte volontaire à la vie, d'enlèvement ou de séquestration, ou une infraction mentionnée à l'article 706-47 et pour l'exercice des diligences prévues aux articles 706-53-5 et 706-53-8 ;
- 3° Aux préfets et aux administrations de l'Etat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le décret prévu à l'article 706-53-12, pour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de recrutement, d'affectation, d'autorisation, d'agrément ou d'habilitation concernant des activités ou professions impliquant un contact avec des mineurs ainsi que pour le contrôle de l'exercice de ces activités ou professions ;
- 4° Aux agents des greffes spécialement habilités par les chefs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à partir de l'identité de la personne incarcérée, pour vérifier qu'elle a fait l'objet de l'inform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706-53-6 et pour enregistrer les dates de mise sous écrou et de libération ainsi que l'adresse du domicile déclaré par la personne libérée.

Les autorités et personnes mentionnées aux 1° et 2° du présent article peuvent interroger le

fichier à partir de plusieurs critères fixés par le décret prévu à l'article 706-53-12, et notamment à partir de l'un ou plusieurs des critères suivants : identité de la personne, adresses successives, nature des infractions.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3° du présent article ne peuvent consulter le fichier qu'à partir de l'identité de la personne concernée par la décision administrative.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également,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ou avec l'autorisation de ce magistrat, consulter le fichier dans le cadre d'une enquête de flagrance ou d'une enquête préliminaire ou en exécution d'une commission rogatoire, même si cette procédure ne concerne pas 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 2° du présent article.

Les maires, les présidents de conseil général et les présidents de conseil régional sont également destinataires, par l'intermédiaire des préfets, d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fichier, pour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mentionnées au 3° concernant des activités ou professions impliquant un contact avec des mineurs ainsi que pour le contrôle de l'exercice de ces activités ou professions.

Article 706-53-8

Selon des modalités précisées par le décret prévu à l'article 706-53-12, le gestionnaire du fichier avise directement le ministère de l'intérieur, qui transmet sans délai l'information aux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compétents, en cas de nouvelle inscription ou de modification d'adresse concernant une inscription ou lorsque la personne n'a pas apporté la justification de son adresse dans les délais requis.

Il avise directement le service gestionnaire d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des effacements auxquels il a procédé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53-4 et 706-53-10.

S'il apparaît que la personne ne se trouve plus à l'adresse indiqué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en inform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la fait inscrire sans délai a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euvent procéder à toutes vérifications utiles et toutes réquisitions auprès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pour vérifier ou retrouver l'adresse de la personne.

Article 706-53-9

Toute personne justifiant de son identité obtient, sur demande adressé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elle réside, communication de l'intégralité des informations la concernant figurant dans le fichier.

Les dispositions des troisième à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777-2 sont alors applicables.

Article 706-53-10

Toute personne dont l'identité est inscrite dans le fichier peut demand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rectifier ou d'ordonner l'effacement des informations la concernant si les informations ne sont pas exactes ou si leur conservation n'apparaît plus nécessaire compte tenu de la finalité du fichier, au regard de la nature de l'infraction, de l'âge de la personne lors de sa commission, du temps écoulé depuis lors et de la personnalité actuelle de l'intéressé.

La demande d'effacement est irrecevable tant que les mentions concernées sont relatives à une procédure judiciaire qui est toujours en cours, tant que la personne n'a pas été réhabilitée ou que la mesure à l'origine de l'inscription n'a pas été effacée du bulletin n° 1.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ordonne pas la rectification ou l'effacement, la personne peut saisir à cette fi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ont la décision peut être contestée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vant de statuer sur la demande de rectification ou d'effacem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vent faire procéder à toutes les vérifications qu'ils estiment nécessaires et notamment ordonner une expertise médicale de la personne. S'il s'agit d'une mention concernant soit un crime, soit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et commis contre un mineur, la décision d'effacement du fichier ne peut intervenir en l'absence d'une telle expertise.

Dans le cas prévu a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706-53-5,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is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peuvent également ordonner,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qu'elle ne sera tenue de se présenter auprès d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our justifier de son adresse qu'une fois par an ou, lorsqu'elle devait se présenter une fois par

mois, qu'une fois tous les six mois.

Article 706-53-11

Aucun rapprochement ni aucune connexion au sens de l'article 30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ne peuvent être effectués entre le fichier prévu par le présent chapitre et tout autre fichier ou recueil de données nominatives détenus par une personne quelconque ou par un service de l'Etat ne dépendant pa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à l'exception du fichier des personnes recherchées pour l'exercice des diligences prévues au présent chapitre.

Aucun fichier ou recueil de données nominatives détenu par une personne quelconque ou par un service de l'Etat ne dépendant pa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e peut mentionner, hors les cas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les informations figurant dans le fichier.

Toute infrac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est punie des peines encourues pour le délit prévu à l'article 226-21 du code pénal.

Article 706-53-12

Les modalités et condition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fichier conserve la trace des interrogations et consultations dont il fait l'objet.

Chapitre III :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et de la surveillance de sûreté

Article 706-53-13

A titre exceptionnel, les personnes dont il est établi, à l'issue d'un réexamen de leur situation intervenant à la fin de l'exécution de leur peine, qu'elles présentent une particulière dangerosité caractérisée par une probabilité très élevée de récidive parce qu'elles souffrent d'un trouble grave de la personnalité, peuvent faire l'objet à l'issue de cette peine d'une rétention de sûre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à la condition qu'elles aient été condamnées à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es crimes, commis sur une victime mineure, d'assassinat ou de meurtre, de torture ou actes de barbarie, de viol, d'enlèvement ou de séquestration. Il en est de même pour les crimes, commis sur une victime majeure, d'assassinat ou de meurtre aggravé, de torture ou actes de barbarie aggravés, de viol aggravé, d'enlèvement ou de séquestration aggravé, prévus par les articles 221-2, 221-3, 221-4, 222-2, 222-3, 222-4, 222-5, 222-6, 222-24, 222-25, 222-26, 224-2, 224-3 et 224-5-2 du code pénal ou, lorsqu'ils sont commis en récidive, de meurtre, de torture ou d'actes de barbarie, de viol, d'enlèvement ou de séquestration.

La rétention de sûreté ne peut toutefois être prononcée que si la cour d'assises a expressément prévu dans sa décision de condamnation que la personne pourra faire l'objet à la fin de sa peine d'un réexamen de sa situation en vue d'une éventuelle rétention de sûreté.

La rétention de sûreté consiste dans le placement de la personne intéressée en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dans lequel lui est proposée, de façon permanente, une prise en charge médicale, sociale et psychologique destinée à permettre la fin de cette mesure.

Article 706-53-14

La situation d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13 est examinée, au moins un an avant la date prévue pour leur libération, par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 par l'article 763-10, afin d'évaluer leur dangerosité.

A cette fin, la commission demande le placement de la personne, pour une durée d'au moins six semaines,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chargé de l'observation des personnes détenues aux fins d'une évaluation pluridisciplinaire de dangerosité assortie d'une expertise médicale réalisée par deux experts.

Si la commission conclut à la particulière dangerosité du condamné, elle peut proposer, par un avis motivé, que celui-ci fasse l'objet d'une rétention de sûreté dans le cas où :

- 1° L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inscription dans le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 ainsi que les obligations résultant d'une injonction de soins ou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susceptibles

d'être prononcés dans le cadre d'un suivi socio-judiciaire ou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apparaissent insuffisantes pour prévenir la commission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53-13 ;

2° Et si cette rétention constitue ainsi l'unique moyen de prévenir la commission, dont la probabilité est très élevée, de ces infractions.

La commission vérifie également que la personne condamnée a effectivement été mise en mesure de bénéficier, pendant l'exécution de sa peine, d'une prise en charge médicale, sociale et psychologique adaptée au trouble de la personnalité dont elle souffre.

Si la commission estime que les conditions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ne sont pas remplies mais que le condamné paraît néanmoins dangereux, elle renvoie le dossier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qu'il apprécie l'éventualité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Article 706-53-15

La décision de rétention de sûreté est prise par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Cette juridiction est composée d'un président de chambre et de deux conseillers de la cour d'appel, désignés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cette cour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Cette juridiction est saisie à cette fin par le procureur général, sur proposition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 par l'article 763-10, au moins trois mois avant la date prévue pour la libération du condamné.

Elle statue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et, si le condamné le demande, public, au cours duquel le condamné est assisté par un avocat choisi ou commis d'office.

La contre-expertise sollicitée par le condamné est de droit.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ne peut prononcer une rétention de sûreté qu'après avoir vérifié que la personne condamnée a effectivement été mise en mesure de bénéficier, pendant l'exécution de sa peine, d'une prise en charge médicale, sociale et psychologique adaptée au trouble de la personnalité dont elle souffre.

La décision de rétention de sûreté doit être spécialement motivée au regard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3-14 et du trois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1094 프랑스 형사소송법

Cette décision est exécutoire immédiatement à l'issue de la peine du condamné.

Elle peut faire l'objet d'un recours devant la Juridiction nat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composée de trois conseillers à la Cour de cassation désignés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cette cour.

La juridiction nationale statue par une décision motivée, susceptible d'un pourvoi en cassation.

Article 706-53-16

La décision de rétention de sûreté est valable pour une durée d'un an.

La rétention de sûreté peut être renouvelée, après avis favorable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53-15 et pour la même durée, dès lors que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53-14 sont toujours remplies.

Article 706-53-17

Après 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décision définitive de rétention de sûreté, la personne placée en rétention de sûreté peut demander à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qu'il soit mis fin à cette mesure.

Il est mis fin d'office à la rétention si cette juridiction n'a pas statué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autr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mois. La décision de cette juridiction peut faire l'objet des recours prévus à l'article 706-53-15.

Article 706-53-18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ordonne d'office qu'il soit immédiatement mis fin à la rétention de sûreté dès lors que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53-14 ne sont plus remplies.

Article 706-53-19

Si la rétention de sûreté n'est pas prolongée ou s'il y est mis fin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53-17 ou 706-53-18 et si la personne présente des risques de commettre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13,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peut, par la même décision et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au cours duquel la personne est assistée par un avocat choisi ou commis d'office, placer celle-ci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pendant une durée de deux ans.

La surveillance de sûreté comprend des obligations identiques à celles prévues dans le cadre de la surveillance judiciaire mentionnée à l'article 723-30, en particulier une injonction de soins prévue par les articles L. 3711-1 à L. 371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63-12 et 763-13 du présent cod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peut faire l'objet des recours prévus à l'article 706-53-15.

La mainlevée de la surveillance de sûreté peut être demand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6-53-17.

A l'issue du délai mentionné à la première phrase de l'alinéa précédent, la surveillance de sûreté peut être renouvel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t pour la même durée.

Si la méconnaissance par la personne des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fait apparaître que celle-ci présente à nouveau une particulière dangerosité caractérisée par une probabilité très élevée de commettre à nouveau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13,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régionale peut ordonner en urgence son placement provisoire dans un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Ce placement doit être confirmé dans un délai maximal de trois mois par la juridiction régionale statuant conformément à l'article 706-53-15, après avis favorable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à défaut de quoi il est mis fin d'office à la rétention.

La décision de confirmation peut faire l'objet des recours prévus par l'article 706-53-15.

Le placement en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prévu à l'alinéa précédent ne peut être ordonné qu'à la condition qu'un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la surveillance de sûreté apparaisse insuffisant pour prévenir la commission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13.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avertit la personne placée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ne pourra être mis en oeuvre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à défaut ou si elle manque à ses obligations, le placement dans un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pourra être ordonn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Constitue une méconnaissance par la personne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des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susceptible de justifier son placement en rétention de sûre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troisième alinéa, le fait pour celle-ci de refuser de commencer ou de poursuivre le traitement prescrit par le médecin traitant et qui lui a été propos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En cas de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par la personne placée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l'article 712-16-3 est applicable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en cas d'urgence et d'empêchement de celui-ci ou du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écerner mandat d'arrêt ou d'amener contre la personn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17, pour permettre le cas échéant sa présentation devant le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 en cas de décision de placement en rétention prise par ce président, la personne peut être retenu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à sa conduite dans le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Article 706-53-20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ne sont pas applicables à la personne qui bénéficie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auf si cette mesure a fait l'objet d'une révocation.

Lorsque la rétention de sûreté est ordonnée à l'égard d'une personne ayant été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celui-ci s'applique, pour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compter du jour où la rétention prend fin.

Article 706-53-21

La rétention de sûreté et la surveillance de sûreté sont suspendues par toute détention intervenue au cours de leur exécution.

Si la détention excède une durée de six mois, la repris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ou de la surveillance de sûreté doit être confirmée par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après la cessation de la détention, à défaut de quoi il est mis fin d'office à la mesure.

Article 706-53-22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les conditions e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chapitre.

Ce décret précis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s'exercent les droits des personnes retenues dans un centre socio-médico-judiciaire de sûreté, y compris en matière d'emploi, d'éducation et de formation, de visites, de correspondances, d'exercice du culte et de permissions de sortie sous escorte ou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Il ne peut apporter à l'exercice de ces droits que les restrictions strictement nécessaires aux exigences de l'ordre public.

La liste des cours d'appel dans lesquelles siègent les juridictions régionale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53-15 et le ressort de leur compétence territoriale sont fixés par arrêté du garde des sceaux.

Titre XX : Du 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Article 706-54

Le 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placé sous le contrôle d'un magistrat, est destiné à centraliser les empreintes génétiques issues des traces biologiques ainsi que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s personnes déclarées coupables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5 en vue de faciliter l'identification et la recherche des auteurs de ces infractions. Sont conservées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s personnes poursuivi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5 ayant fait l'objet d'une décis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20, 706-125, 706-129, 706-133 ou

706-134.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existe des indices graves ou concordants rendant vraisemblable qu'elles aient commis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5 sont également conservées dans ce fichier sur décision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 il est fait mention de cette décision au dossier de la procédure.

Ces empreintes sont effacées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gissant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lorsque leur conservation n'apparaît plus nécessaire compte tenu de la finalité du fichier.

Lorsqu'il est saisi par l'intéress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celui-ci de la suite qui a été réservée à sa demande ; s'il n'a pas ordonné l'effacement, cette personne peut saisir à cette fin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ont la décision peut être contestée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également, d'office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faire procéder à un rapprochement de l'empreinte de toute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commis un crime ou un délit, avec les données incluses au fichier, sans toutefois que cette empreinte puisse y être conservée.

Le fichier prévu par le présent article contient également les empreintes génétiques issues des traces biologiques recueillies à l'occasion des procédures de recherche des causes de la mort ou de recherche des causes d'une disparition prévues par les articles 74, 74-1 et 80-4 ainsi que les empreintes génétiques correspondant ou susceptibles de correspondre aux personnes décédées ou recherchées.

Les empreintes génétiques conservées dans ce fichier ne peuvent être réalisées qu'à partir de segments d'acide désoxyribonucléique non codants, à l'exception du segment correspondant au marqueur du sex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la durée de conservation des informations enregistrées.

Article 706-55

Le 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centralise les traces et empreintes génétiques concernant les infractions suivantes :

- 1° Les infractions de nature sexuelle visées à l'article 706-47 du présent code ainsi que le délit prévu par l'article 222-32 du code pénal ;
- 2° Les crimes contre l'humanité et les crimes et délits d'atteintes volontaires à la vie de la personne, de torture et actes de barbarie, de violences volontaires, de menaces d'atteintes aux personnes, de trafic de stupéfiants, d'atteintes aux libertés de la personne,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de proxénétisme, d'exploitation de la mendicité et de mise en péril des mineurs, prévus par les articles 221-1 à 221-5, 222-1 à 222-18, 222-34 à 222-40, 224-1 à 224-8, 225-4-1 à 225-4-4, 225-5 à 225-10, 225-12-1 à 225-12-3, 225-12-5 à 225-12-7 et 227-18 à 227-21 du code pénal ;
- 3° Les crimes et délits de vols, d'extorsions, d'escroqueries, de destructions, de dégradations, de détériorations et de menaces d'atteintes aux biens prévus par les articles 311-1 à 311-13, 312-1 à 312-9, 313-2 et 322-1 à 322-14 du code pénal ;
- 4° Les atteintes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a nation, les actes de terrorisme, la fausse monnaie et l'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s par les articles 410-1 à 413-12, 421-1 à 421-4, 442-1 à 442-5 et 450-1 du code pénal ;
- 5°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L. 2353-4 et L. 2339-1 à L. 2339-11 du code de la défense ;
- 6° Les infractions de recel ou de blanchiment du produit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1° à 5°, prévues par les articles 321-1 à 321-7 et 324-1 à 324-6 du code pénal.

Article 706-56

I. -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sous son contrôle, à l'égard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premier, au deuxième ou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06-54, à un prélèvement biologique destiné à permettre l'analyse d'identification de leur empreinte génétique.

Préalablement à cette opération, il peut vérifier ou faire vérifier par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placé sous son contrôle ou par un agent spécialisé, technicien ou ingénieur de police technique et scientifique placé sous son contrôle, que l'empreinte génétique de la personne concernée n'est pas déjà enregistrée, au vu de son seul état civil, dans le 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Pour qu'il soit procédé à cette analys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requérir toute personne habilité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rticle 16-12 du code civil, sans qu'il soit toutefois nécessaire que cette personne soit inscrite sur une liste d'experts judiciaires ; dans ce cas, la personne prête alors par écrit le sermen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60 du présent code.

Les réquis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peuvent également être fait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Les personnes requises conformément à l'alinéa précédent peuvent procéder, par tous moyens y compris télématiques, à la demande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aux opérations permettant l'enregistrement des empreintes dans le 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Lorsqu'il n'est pas possible de procéder à un prélèvement biologique sur une personn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l'identification de son empreinte génétique peut être réalisée à partir de matériel biologique qui se serait naturellement détaché du corps de l'intéressé. Lorsqu'il s'agit d'une personne condamnée pour crime ou déclarée coupable d'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le prélèvement peut être effectué sans l'accord de l'intéressé sur réquisitions écrite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 en va de même pour les personnes poursuivies pour un crime ou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ayant fait l'objet d'une décis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20, 706-125, 706-129, 706-133 ou 706-134.

- II. - Le fait de refuser de se soumettre au prélèvement biologique prévu au premier alinéa du I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Lorsque ces faits sont commis par une personne condamnée pour crime, la peine est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00 euros d'amende.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2-2 à 132-5 du code pénal, les peines prononcées

pour l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e cumulent, sans possibilité de confusion, avec celles que la personne subissait ou celles prononcées pour l'infraction ayant fait l'objet de la procédure à l'occasion de laquelle les prélèvements devaient être effectués.

Le fait, pour une personne faisant l'objet d'un prélèvement, de commettre ou de tenter de commettre des manoeuvres destinées à substituer à son propre matériel biologique le matériel biologique d'une tierce personne, avec ou sans son accord,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45,000 euros d'amende.

- III. - Lorsque les infra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commises par une personne condamnée, elles entraînent de plein droit le retrait de toutes les réductions de peine dont cette personne a pu bénéficier et interdisent l'octroi de nouvelles réductions de peine.

Article 706-56-1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résidence ou de détention de l'intéressé, sont inscrites, dans le fichier prévu par le présent titre, les empreintes génétiques des personnes de nationalité française, ou de nationalité étrangère résidant de façon habituelle sur le territoire national, et qui ont été condamnées par une juridiction pénale étrangère pour une infraction de même nature que celles mentionnées aux 1° et 2° de l'article 706-55, lorsque ces condamnations,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l, ont fait l'objet d'un avis aux autorités françaises ou ont été exécutées en France à la suite du transfèrement des personnes condamnée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6 sont applicables à ces personnes.

Titre XX bis : Du répertoir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llectées dans le cadre des procédures judiciaires

Article 706-56-2

Le répertoire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collectées dans le cadre des procédures judiciaires, tenu par le service du casier judiciaire sous l'autori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placé sous le contrôle d'un magistrat, est destiné à faciliter et à fiabiliser la connaissance de

1102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personnalité et l'évaluation de la dangerosité des personnes poursuivies ou condamn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pour lesquelles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et à prévenir le renouvellement de ces infractions.

Le répertoire centralise les expertises, évaluations et examens psychiatriques, médico-psychologiques, psychologiques et pluridisciplinaires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qui ont été réalisés :

- 1° Au cours de l'enquête ;
- 2° Au cours de l'instruction ;
- 3° A l'occasion du jugement ;
- 4° Au cours de l'exécution de la peine ;
- 5° Préalablement au prononcé ou durant le déroulement d'une mesure de surveillance ou de rétention de sûreté ;
- 6°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06-136 ou 706-137 ;
- 7° Durant le déroulement d'une hospitalisation d'office ordonn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du présent code ou de l'article L. 3213-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n cas de décision de classement sans suite, hormis les cas où cette décision est fondée su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ou de décision définitive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escement, les données concernant la personne poursuivie sont immédiatement effacées. La conservation des données concernant les personnes poursuivies ou condamn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pour lesquelles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ne peut excéder une période de trente ans.

L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répertoire sont directement accessibles, par l'intermédiaire d'un système sécurisé de télécommunication, aux seules autorités judiciaires.

Les membres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les experts et les personnes chargées par l'autorité judiciaire ou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d'une évaluation pluridisciplinaire de dangerosité peuvent également être destinataires, par l'intermédiaire de l'autorité judiciaire et pour l'exercice de leurs missions, d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répertoire.

Les modalités et conditions de fonctionnement du répertoire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e décret précis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répertoire conserve la trace des interrogations et consultations dont il a fait l'objet, ainsi que la durée de conservation des données inscrites et les modalités de leur effacement.

Titre XXI :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Article 706-57

Les personnes à l'encontre desquelles il n'existe aucune raison plausible de soupçonner qu'elles ont commis ou tenté de commettre une infraction et qui sont susceptibles d'apporter des éléments de preuve intéressant la procédure peuvent, sur autorisa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déclarer comme domicile l'adresse du commissariat ou de la brigade de gendarmerie.

Si la personne a été convoquée en raison de sa profession, l'adresse déclarée peut être son adresse professionnelle.

L'adresse personnelle de ces personnes est alors inscrite sur un registre coté et paraphé, qui est ouvert à cet effet.

Article 706-58

En cas de procédure portant sur un crime ou sur un délit puni d'au moins trois ans d'emprisonnement, lorsque l'audition d'une personne visée à l'article 706-57 est susceptible de mettre gravement en danger la vie ou l'intégrité physique de cette personne, des membres de sa famille ou de ses proch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requête motivé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peut, par décision motivée, autoriser que les déclarations de cette personne soient recueillies sans que son identité apparaisse dans le dossier de la procédure.

Cette décision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6-60.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écider de procéder lui-même à l'audition du témoin.

1104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ne fait pas apparaître l'identité de la personne, est jointe au procès-verbal d'audition du témoin, sur lequel ne figure pas la signature de l'intéressé. L'identité et l'adresse de la personne sont inscrites dans un autre procès-verbal signé par l'intéressé, qui est versé dans un dossier distinct du dossier de la procédure, dans lequel figure également la requête prévue à l'alinéa précédent.

L'identité et l'adresse de la personne sont inscrites sur un registre coté et paraphé, qui est ouvert à cet effet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rticle 706-59

En aucune circonstance, l'identité ou l'adresse d'un témoin ayant bénéficié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57 ou 706-58 ne peut être révélée, hors le cas prévu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6-60.

La révélation de l'identité ou de l'adresse d'un témoin ayant bénéficié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57 ou 706-58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75,000 euros d'amende.

Article 706-60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8 ne sont pas applicables si, au regard des circonstances dans lesquelles l'infraction a été commise ou de la personnalité du témoin, la connaissance de l'identité de la personne est indispensable à l'exercice des droits de la défense.

La personne mise en examen peut, dans les dix jour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il lui a été donné connaissance du contenu d'une audition réalisée dans les conditions de l'article 706-58, contester,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recours à la procédure prévue par cet article.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tatue par décision motivé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u vu des pièces de la procédure et de celles figurant dans le dossier mentionné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06-58.

S'il estime la contestation justifiée, il ordonne l'annulation de l'audition.

Il peut également ordonner que l'identité du témoin soit révélée à la condition que ce dernier fasse expressément connaître qu'il accepte la levée de son anonymat.

Article 706-61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renvoyé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demander à être confrontée avec un témoin entendu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8 par l'intermédiaire d'un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l'audition du témoin à distance ou à faire interroger ce témoin par son avocat par ce même moyen.

La voix du témoin est alors rendue non identifiable par des procédés techniques appropriés. Si la juridiction ordonne un supplément d'information aux fins d'audition du témoin, ce dernier est entendu soit par un juge d'instruction désigné pour exécuter ce supplément d'information, soit, si l'un des membres de la juridiction a été désigné pour exécuter cette audition, en utilisant le dispositif technique prévu par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706-62

Aucune condamnation ne peut être prononcée sur le seul fondement de déclarations recueilli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58 et 706-61.

Article 706-63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en tant que de besoin,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Titre XXI bis : Protection des personnes bénéficiant d'exemptions ou de réductions de peines pour avoir permis d'éviter la réalisation d'infractions, de faire cesser ou d'atténuer le dommage causé par une infraction, ou d'identifier les auteurs ou complices d'infractions

Article 706-63-1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font l'objet, en tant que de besoin, d'une protection destinée à assurer leur sécurité.

Elles peuvent également bénéficier de mesures destinées à assurer leur réinsertion.

1106 프랑스 형사소송법

En cas de nécessité, ces personnes peuvent être autorisées, par ordonnance motivée rendu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à faire usage d'une identité d'emprunt.

Le fait de révéler l'identité d'emprunt de ces personnes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révélation a causé,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des violences, coups et blessures à l'encontre de ces personnes ou de leurs conjoints, enfants et ascendants direct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révélation a causé,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a mort de ces personnes ou de leurs conjoint, enfants et ascendants directs.

Les mesures de protection et de réinsertion sont définies,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une commission nationale dont la composi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sont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Cette commission fixe les obligations que doit respecter la personne et assure le suivi des mesures de protection et de réinsertion, qu'elle peut modifier ou auxquelles elle peut mettre fin à tout moment. En cas d'urgence, les services compétents prennent les mesures nécessaires et en informent sans délai la commission national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membres de la famille et aux proches d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rticle 132-78 du code pénal.

Titre XXII : Saisine pour avis de la Cour de cassation

Article 706-64

Les juridictions pénales, à l'exception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et de la cour d'assises, peuvent solliciter l'avis de la Cour de cas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51-1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Toutefois, aucune demande d'avis ne peut être présentée lorsque, dans l'affaire concernée, une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sous assignation à résidence avec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sous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706-65

Lorsque le juge envisage de solliciter l'avis de la Cour de cassation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151-1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il en avise les parties et le ministère public.

Il recueille les observations écrites éventuelles des parties et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dans le délai qu'il fixe, à moins que ces observations ou conclusions n'aient déjà été communiquées.

Dès réception des observations et conclusions ou à l'expiration du délai, le juge peut, par une décision non susceptible de recours, solliciter l'avis de la Cour de cassation en formulant la question de droit qu'il lui soumet.

Il surseoit à statuer jusqu'à la réception de l'avis ou jusqu'à l'expiration du délai mentionné à l'article 706-67.

Article 706-66

La décision sollicitant l'avis est adressée, avec les conclusions et les observations écrites éventuelles,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au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Elle est notifiée, ainsi que la date de transmission du dossier, aux parties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e ministère public auprès de la juridiction est avisé ainsi que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le procureur général lorsque la demande d'avis n'émane pas de la cour.

Article 706-67

La Cour de cassation rend son avis dans les trois mois de la réception du dossier.

Article 706-68

L'affaire est communiquée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Celui-ci est informé de la date de séance.

Article 706-69

L'avis peut mentionner qu'il sera publié au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Article 706-70

L'avis est adressé à la juridiction qui l'a demandé, au ministère public auprès de cette juridiction,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au procureur général lorsque la demande n'émane pas de la cour.

Il est notifié aux parties par le greffe de la Cour de cassation.

Titre XXIII : De l'utilisation de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au cours de la procédure

Article 706-71

Lorsque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le justifient, l'audition ou l'interrogatoire d'une personne ainsi que la confrontation entre plusieurs personnes peuvent être effectués en plusieurs point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e trouvant reliés par des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garantissant la confidentialité de la transmission.

Dans les mêmes conditions, la présentation aux fins de prolongation de la garde à vue ou de la retenue judiciaire peut être réalisée par l'utilisation de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

Il est alors dressé, dans chacun des lieux, un procès-verbal des opérations qui y ont été effectuées. Ces opérations peuvent faire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ou sonore, les dispositions des troisième à huitième alinéas de l'article 706-52 sont alors applicables.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prévoyant l'utilisation d'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pour l'audition des témoins, des parties civiles et des experts.

C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à l'audition ou à l'interrogatoire par un juge d'instruction d'une personne détenue, au débat contradictoire préalable au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une personne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a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our la prolongation de la détention provisoire, aux audiences relatives au contentieux de la détention provisoire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juridiction de jugement, à l'interrogatoire de l'accusé par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272, à la comparution d'une personne à l'audience au cours de laquelle est rendu un jugement ou un arrêt qui avait été mis en délibéré ou au cours de laquelle il est statué sur les seuls intérêts civils, à l'interrogatoire par le procureur ou le procureur général d'une personne arrêtée en vertu d'un mandat d'amener, d'un mandat d'arrêt ou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ou à l'interrogatoire du prévenu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i celui-ci est détenu pour une autre cause.

Elles sont de même applicables devant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ractions, devant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statuant sur les demandes de réparation d'une détention provisoire, devant la Commission nationale de réparation des détentions, devant la commission et la cour de révision et devant la commission de réexamen des condamnation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trois alinéas précédents, si la personne est assistée par un avocat, celui-ci peut se trouver auprès du magistrat, de la juridiction ou de la commission compétents ou auprès de l'intéressé.

Dans le premier cas, il doit pouvoir s'entretenir avec ce dernier, de façon confidentielle, en utilisant le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

Dans le second cas, une copie de l'intégralité du dossier doit être mise à sa disposition dans les locaux de détention sauf si une copie de ce dossier a déjà été remise à l'avocat.

En cas de nécessité, résultant de l'impossibilité pour un interprète de se déplacer, l'assistance de l'interprète au cours d'une audition, d'un interrogatoire ou d'une confrontation peut également se faire par l'intermédiaire de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cis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Titre XXV : De la procédure applicable à la criminalité et à la délinquance organisées

Article 706-73

La procédure applicable à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crimes et des délits suivants est celle prévue par le présent cod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

- 1° Crime de meurtre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 par le 8° de l'article 221-4 du code pénal ;
- 2° Crime de tortures et d'actes de barbarie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 par l'article 222-4 du code pénal ;
- 3° Crimes et délits de trafic de stupéfian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34 à 222-40 du code pénal ;
- 4° Crimes et délits d'enlèvement et de séquestration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s par l'article 224-5-2 du code pénal ;
- 5° Crimes et délits aggravés de traite des êtres humains prévus par les articles 225-4-2 à 225-4-7 du code pénal ;
- 6° Crimes et délits aggravés de proxénétisme prévus par les articles 225-7 à 225-12 du code pénal ;
- 7° Crime de vol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 par l'article 311-9 du code pénal ;
- 8° Crimes aggravés d'extorsion prévus par les articles 312-6 et 312-7 du code pénal ;
- 8° bis (Abrogé)
- 9° Crime de destruction, dégradation et détérioration d'un bien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 par l'article 322-8 du code pénal ;
- 10° Crimes en matière de fausse monnaie prévus par les articles 442-1 et 442-2 du code pénal ;
- 11° Crimes et délits constituant des actes de terrorisme prévus par les articles 421-1 à 421-6 du code pénal ;
- 12° Délits en matière d'armes et de produits explosifs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s par les articles L. 2339-2, L. 2339-8, L. 2339-10, L. 2341-4, L. 2353-4 et L. 2353-5 du code de la défense ;
- 13° Délits d'aide à l'entrée, à la circulation et au séjour irréguliers d'un étranger en France

commis en bande organisée prévus par le quatrième alinéa du I de l'article 21 de l'ordonnance n° 45-2658 du 2 novembre 1945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

- 14° Délits de blanchiment prévus par les articles 324-1 et 324-2 du code pénal, ou de recel prévus par les articles 321-1 et 321-2 du même code, du produit, des revenus, des choses provenant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1° à 13° ;
- 15° Délits d'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s par l'article 450-1 du code pénal, lorsqu'ils ont pour objet la préparation d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1° à 14° ;
- 16° Délit de non-justification de ressources correspondant au train de vie, prévu par l'article 321-6-1 du code pénal, lorsqu'il est en relation avec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1° à 15°.

Pour les infractions visées aux 3°, 6° et 11°, sont applicables, sauf précision contrair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ainsi que celles des titres XV, XVI et XVII.

Article 706-74

Lorsque la loi le prévoit,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

- 1° Aux crimes et délits commis en bande organisée, autres que ceux relevant de l'article 706-73 ;
- 2° Aux délits d'association de malfaiteurs prévus par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50-1 du code pénal autres que ceux relevant du 15° de l'article 706-73 du présent code.

Chapitre Ier : Compétence des juridictions spécialisées

Article 706-75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d'une cour d'assises peut être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crimes et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à l'exception du 11°, ou 706-74, dans les affaires qui sont ou apparaîtraient d'une grande complexité. Cette compétence s'étend aux infractions connexes.

1112 프랑스 형사소송법

Un décret fixe la liste et le ressort de ces juridictions, qui comprennent une section du parquet et des forma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pécialisées pour connaître de ces infractions.

Article 706-75-1

Au sein de chaqu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est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 procureur général et le premier président,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ignent respectivement un ou plusieurs magistrats du parquet, juges d'instruction et magistrats du siège chargés spécialement de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du jugement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à l'exception du 11°, ou 706-74. Au sein de chaque cour d'assises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est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 premier président désigne des magistrats du sièg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articles 244 à 253, chargés spécialement du jugement des crime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ces infractions.

Au sein de chaque cour d'appel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est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 premier président et le procureur général désignent respectivement des magistrats du siège et du parquet général chargés spécialement du jugement des délits et du traitement des affaire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à l'exception du 11°, ou 706-74.

Article 706-76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la formation correctionnelle spécialisé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et la cour d'assises visés à l'article 706-75 exercent, sur toute l'étendue du ressort fixé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382 et 706-42.

La juridiction saisie demeure compétente, quelles que soient les incriminations retenues lors du règlement ou du jugement de l'affaire.

Toutefois, si les faits constituent une contravention, le juge d'instruction prononce le renvoi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1.

Article 706-77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ux visés à l'article 706-75 peut, pour l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à l'exception du 11°, et 706-74,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75.

Les parties sont préalablement avisées et invitées à faire connaître leurs observations par le juge d'instruction.

L'ordonnance est rendue huit jours au plus tôt et un mois au plus tard à compter de cet avis.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de se dessaisir, son ordonnance ne prend effet qu'à compter du délai de cinq jours prévu par l'article 706-78 ; lorsqu'un recours est exercé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le juge d'instruction demeure saisi jusqu'à ce que soit porté à sa connaissance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ou celui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Dès que l'ordonnance est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dress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76.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706-78

L'ordonnance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77 peut, à l'exclusion de toute autre voie de recours, être déférée dans les cinq jours de sa notification,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soi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la juridiction spécialisée au profit de laquelle le dessaisissement a été ordonné ou refusé se trouve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dans lequel se situe la juridiction initialement saisie, soit, dans le cas contraire, à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ésigne, dans les huit jours suivant la date de réception du dossier,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poursuivre l'informa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également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rendu son ordonnance

1114 프랑스 형사소송법

dans le délai d'un mo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77.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de la chambre criminelle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juge d'instruction ainsi qu'au ministère public et notifié aux parti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ndu sur le fondement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706-77, le recours étant alors porté devant la chambre criminelle.

Article 706-79

Les magistrats mentionnés à l'article 706-76 ainsi que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compétente peuvent demander à des assistants spécialisés, désign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 de participe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cet article, aux procédures concernant les crimes et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ou 706-74.

Article 706-79-1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e trouve une juridiction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75, anime et coordonne, en concertation avec les autres procureurs généraux du ressort interrégional, la conduite de la politique d'ac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cet article.

Chapitre II : Procédure

Section 1 : De la surveillance

Article 706-80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et, sous leur autorité, les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près en avoir inform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sauf opposition de ce magistrat, peuvent étendre à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a surveillance de personnes contre lesquelles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les soupçonner d'avoir commis l'un des crimes et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ou 706-74 ou la surveillance de l'acheminement

ou du transport des objets, biens ou produits tirés de la commission de ces infractions ou servant à les commettre.

L'information préalable à l'extension de compétence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oit être donnée, par tout moye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les opérations de surveillance sont susceptibles de débuter ou, le cas échéan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6.

Section 2 : De l'infiltration

Article 706-81

Lorsque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concernant l'un des crimes ou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 justifie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après avis de ce magistrat, le juge d'instruction saisi peuvent autoriser qu'il soit procédé, sous leur contrôle respectif, à une opération d'infiltra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présente section.

L'infiltration consiste, pour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spécialement habilité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t agissant sous la responsabilité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hargé de coordonner l'opération, à surveiller des personnes suspectées de commettre un crime ou un délit en se faisant passer, auprès de ces personnes, comme un de leurs coauteurs, complices ou receleurs.

L'officier ou l'agent de police judiciaire est à cette fin autorisé à faire usage d'une identité d'emprunt et à commettre si nécessaire les act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82.

A peine de nullité, ces actes ne peuvent constituer une incitation à commettre des infractions. L'infiltration fait l'objet d'un rapport rédigé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yant coordonné l'opération, qui comprend les éléments strictement nécessaires à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et ne mettant pas en danger la sécurité de l'agent infiltré et des personnes requises au sens de l'article 706-82.

Article 706-82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utorisés à procéder à une opération d'infiltration

1116 프랑스 형사소송법

peuven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sans être pénalement responsables de ces actes :

- 1° Acquérir, détenir, transporter, livrer ou délivrer des substances, biens, produits, documents ou informations tirés de la commission des infractions ou servant à la commission de ces infractions ;
- 2° Utiliser ou mettre à disposition des personnes se livrant à ces infractions des moyens de caractère juridique ou financier ainsi que des moyens de transport, de dépôt, d'hébergement, de conservation et de télécommunication.

L'exonération de responsabilité prévue au premier alinéa est également applicable, pour les actes commis à seule fin de procéder à l'opération d'infiltration, aux personnes requises par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pour permettre la réalisation de cette opération.

Article 706-83

A peine de nullité, l'autorisation donn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81 est délivrée par écrit et doit être spécialement motivée.

Elle mentionne la ou les infractions qui justifient le recours à cette procédure et l'identité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la responsabilité duquel se déroule l'opération.

Cette autorisation fixe la durée de l'opération d'infiltration, qui ne peut pas excéder quatre mois.

L'opération peut être renouvel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Le magistrat qui a autorisé l'opération peut, à tout moment, ordonner son interruption avant l'expiration de la durée fixée.

L'autorisation est versée au dossier de la procédure après achèvement de l'opération d'infiltration.

Article 706-84

L'identité réelle d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yant effectué l'infiltration sous une identité d'emprunt ne doit apparaître à aucun stade de la procédure.

La révélation de l'identité de c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est punie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75,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révélation a causé des violences, coups et blessures à l'encontre de ces personnes ou de leurs conjoints, enfants et ascendants direct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sept ans

d'emprisonnement et à 100,000 euros d'amende.

Lorsque cette révélation a causé la mort de ces personnes ou de leurs conjoints, enfants et ascendants directs, les peines sont portées à dix ans d'emprisonnement et à 150,000 euros d'amende, sans préjudice, le cas échéant,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chapitre Ier du titre II du livre II du code pénal.

Article 706-85

En cas de décision d'interruption de l'opération ou à l'issue du délai fixé par la décision autorisant l'infiltration et en l'absence de prolongation, l'agent infiltré peut poursuivre les activité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82, sans en être pénalement responsable, le temps strictement nécessaire pour lui permettre de cesser sa surveillance dans des conditions assurant sa sécurité sans que cette durée puisse excéder quatre mois.

Le magistrat ayant délivré l'autorisation prévue à l'article 706-81 en est informé dans les meilleurs délais.

Si, à l'issue du délai de quatre mois, l'agent infiltré ne peut cesser son opération dans des conditions assurant sa sécurité, ce magistrat en autorise la prolongation pour une durée de quatre mois au plus.

Article 706-86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ous la responsabilité duquel se déroule l'opération d'infiltration peut seul être entendu en qualité de témoin sur l'opération.

Toutefois, s'il ressort du rapport mentionné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06-81 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ou comparaissant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est directement mise en cause par des constatations effectuées par un agent ayant personnellement réalisé les opérations d'infiltration, cette personne peut demander à être confrontée avec cet ag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61.

Les questions posées à l'agent infiltré à l'occasion de cette confrontation ne doivent pas avoir pour objet ni pour effet de révél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sa véritable identité.

Article 706-87

Aucune condamnation ne peut être prononcée sur le seul fondement des déclarations faites par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yant procédé à une opération d'infiltra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cependant pas applicables lorsque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déposent sous leur véritable identité.

Section 3 : De la garde à vue

Article 706-88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63, 77 et 154,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relatives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a garde à vue d'une personne peut, à titre exceptionnel, faire l'objet de deux prolongations supplémentaires de vingt-quatre heures chacune.

Ces prolongations sont autorisées, par décision écrite et motivée, soi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oit par le juge d'instruction.

La personne gardée à vue doit être présentée au magistrat qui statue sur la prolongation préalablement à cette décision.

La seconde prolongation peut toutefois, à titre exceptionnel, être autorisée sans présentation préalable de la personne en raison des nécessités des investigations en cours ou à effectuer. Lorsque la première prolongation est décidée, la personne gardée à vue est examinée par un médecin désig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médecin délivre un certificat médical par lequel il doit notamment se prononcer sur l'aptitude au maintien en garde à vue, qui est versé au dossier.

La personne est avis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u droit de demander un nouvel examen médical.

Ces examens médicaux sont de droit.

Mention de cet avis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et émargée par la personne intéressée ; en cas de refus d'émargement, il en est fait mention.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i la durée prévisible des investigations restant à réaliser à l'issue des premières quarante-huit heures de garde à vue le justifi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le juge d'instruction peuvent décide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que la garde à vue fera l'objet d'une seule prolongation supplémentaire de quarante-huit heures.

La personne dont la garde à vue est prolongé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peut demander à s'entretenir avec un avoca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63-4, à l'issue de la quarante-huitième heure puis de la soixante-douzième heure de la mesure ; elle est avisée de ce droit lorsque la ou les prolongations lui sont notifiées et mention en est portée au procès-verbal et émargée par la personne intéressée ; en cas de refus d'émargement, il en est fait mention.

Toutefois, lorsque l'enquête porte sur une infraction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3° et 11° de l'article 706-73, l'entretien avec un avocat ne peut intervenir qu'à l'issue de la soixante-douzième heure.

S'il ressort des premiers éléments de l'enquête ou de la garde à vue elle-même qu'il existe un risque sérieux de l'imminence d'une action terroriste en France ou à l'étranger ou que les nécessités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le requièrent impérativement, le juge des libertés peut, à titre exceptionnel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écider que la garde à vue en cours d'une personne, se fondant s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au 11° de l'article 706-73, fera l'objet d'une prolongation supplémentaire de vingt-quatre heures, renouvelable une fois.

A l'expiration de la quatre-vingt-seizième heure et de la cent-vingtième heure, la personne dont la prolongation de la garde à vue est ainsi décidée peut demander à s'entretenir avec un avoca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63-4.

La personne gardée à vue est avisée de ce droit dès la notification de la prolonga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Outre la possibilité d'examen médical effectué à l'initiative du gardé à vue, dès le début de chacune des deux prolongations supplémentaires, il est obligatoirement examiné par un médecin désig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médecin requis devra se prononcer sur la compatibilité de la prolongation de la mesure avec

l'état de santé de l'intéressé.

S'il n'a pas été fait droit à la demande de la personne gardée à vue de faire prévenir, par téléphone, une personne avec laquelle elle vit habituellement ou l'un de ses parents en ligne directe, l'un de ses frères et soeurs ou son employeur, de la mesure dont elle est l'obj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63-1 et 63-2, elle peut réitérer cette demande à compter de la quatre-vingt-seizième heure.

Section 4 : Des perquisitions

Article 706-89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de flagrance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torise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92, que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soient opérées en dehors des heures prévues par l'article 59.

Article 706-90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préliminaire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écide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92, que l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pourront être effectuées en dehors des heures prévues à l'article 59, lorsque ces opérations ne concernent pas des locaux d'habitation.

Article 706-91

Si les nécessités de l'instruction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92, autorise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agissant sur commission rogatoire à procéder à des perquisitions, visites domiciliaires et saisies de pièces à conviction en dehors des heures

prévues à l'article 59, lorsque ces opérations ne concernent pas des locaux d'habitation.

En cas d'urgence, le juge d'instruction peut également autoriser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à procéder à ces opérations dans les locaux d'habitation :

- 1° Lorsqu'il s'agit d'un crime ou d'un délit flagrant ;
- 2° Lorsqu'il existe un risque immédiat de disparition des preuves ou des indices matériels ;
- 3° Lorsqu'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trouvant dans les locaux où la perquisition doit avoir lieu sont en train de commettre des crimes ou des délit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Article 706-92

A peine de nullité, les autoris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89 à 706-91 sont données pour des perquisitions déterminées et font l'objet d'une ordonnance écrite, précisant la qualification de l'infraction dont la preuve est recherchée ainsi que l'adresse des lieux dans lesquels les visites, perquisitions et saisies peuvent être faites ; cette ordonnance, qui n'est pas susceptible d'appel, est motivée par référence aux éléments de fait et de droit justifiant que ces opérations sont nécessaires. Les opérations sont faites sous le contrôle du magistrat qui les a autorisées, et qui peut se déplacer sur les lieux pour veiller au respect des dispositions légales.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1°, 2° et 3° de l'article 706-91, l'ordonnance comporte également l'énoncé des considérations de droit et de fait qui constituent le fondement de cette décision par référence aux seules conditions prévues par ces alinéa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9 et 706-90, est compét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o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irige l'enquêt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a perquisition doit avoir lieu.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alors se déplacer sur les lieux quelle que soit leur localisation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saisi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la perquisition doit avoir lieu, par l'intermédiair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cette juridiction.

Article 706-93

Les opérations prévues aux articles 706-89 à 706-91 ne peuvent, à peine de nullité, avoir un autre objet que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infractions visées dans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du juge d'instruction.

Le fait que ces opérations révèlent des infractions autres que celles visées dans la décision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ou du juge d'instruction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Article 706-94

Lorsque, au cours d'une enquête de flagrance ou d'une instruction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a personne au domicile de laquelle est faite une perquisition est en garde à vue ou détenue en un autre lieu et que son transport sur place paraît devoir être évité en raison des risques graves soit de troubles à l'ordre public ou d'évasion, soit de disparition des preuves pendant le temps nécessaire au transport, la perquisition peut être faite, avec l'accord préalab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en présence de deux témoins requi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57, ou d'un représentant désigné par celui dont le domicile est en caus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enquêtes préliminaires, lorsque la perquisition est faite sans l'assentiment de la personn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76 et 706-90.

L'accord est alors donné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ection 5 : Des interceptions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Article 706-95

Si les nécessités de l'enquête de flagrance ou de l'enquête préliminaire relative à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à la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toriser l'interception, l'enregistrement et la transcription de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00, deuxième alinéa, 100-1 et 100-3 à 100-7, pour une durée maximum de quinze jours, renouvelable une fois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Ces opérations sont faites sous le contrôl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00-3 à 100-5, les attributions confiées au juge d'instruction ou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requis par ce magistra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qui a autorisé l'interception est informé sans délai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s actes accomplis en application de l'alinéa précédent.

Section 6 : Des sonorisations et des fixations d'images de certains lieux ou véhicules

Article 706-96

Lorsque les nécessités de l'information concernant un crime ou un délit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706-73 l'exigent, le juge d'instruction peut,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toriser par ordonnance motivée les officiers e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commis sur commission rogatoire à mettre en place un dispositif technique ayant pour objet, sans le consentement des intéressés, la captation, la fixation, la transmission et l'enregistrement de paroles prononcées par une ou plusieurs personnes à titre privé ou confidentiel, dans des lieux ou véhicules privés ou publics, ou de l'image d'une ou plusieurs personnes se trouvant dans un lieu privé.

Ces opérations sont effectuées sous l'autorité et le contrôle du juge d'instruction.

En vue de mettre en place le dispositif technique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le juge d'instruction peut autoriser l'introduction dans un véhicule ou un lieu privé, y compris hors des heures prévues à l'article 59, à l'insu ou sans le consentement du propriétaire ou du possesseur du véhicule ou de l'occupant des lieux ou de toute personne titulaire d'un droit sur ceux-ci. S'il s'agit d'un lieu d'habitation et que l'opération doit intervenir hors des heures prévues à

1124 프랑스 형사소송법

l'article 59, cette autorisation est délivrée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à cette fin par le juge d'instruction.

Ces opérations, qui ne peuvent avoir d'autre fin que la mise en place du dispositif technique, sont effectuées sous l'autorité et le contrôle du juge d'instruc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x opérations ayant pour objet la désinstallation du dispositif technique ayant été mis en place.

La mise en place du dispositif technique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ne peut concerner les lieux visés aux articles 56-1, 56-2 et 56-3 ni être mise en oeuvre dans le véhicule, le bureau ou le domicile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100-7.

Le fait que les opéra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révèlent des infractions autres que celles visées dans la décision du juge d'instruction ne constitue pas une cause de nullité des procédures incidentes.

Article 706-97

Les décisions pris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96 doivent comporter tous les éléments permettant d'identifier les véhicules ou les lieux privés ou publics visés, l'infraction qui motive le recours à ces mesures ainsi que la durée de celles-ci.

Article 706-98

Ces décisions sont prises pour une durée maximale de quatre mois.

Elles ne peuvent être renouvelées que dans les mêmes conditions de forme et de durée.

Article 706-99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peut requérir tout agent qualifié d'un service, d'une unité ou d'un organisme placé sous l'autorité ou la tutelle du ministre de l'intérieur et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vue de procéder à l'installation des dispositifs techniqu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96.

Les officiers ou agents de police judiciaire ou les agents qualifiés mentionnés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article chargés de procéder aux opéra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96 sont autorisés

à détenir à cette fin des appareils relevant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26-3 du code pénal.

Article 706-100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dresse procès-verbal de chacune des opérations de mise en place du dispositif technique et des opérations de captation, de fixation et d'enregistrement sonore ou audiovisuel.

Ce procès-verbal mentionne la date et l'heure auxquelles l'opération a commencé et celles auxquelles elle s'est terminée.

Les enregistrements sont placés sous scellés fermés.

Article 706-101

Le juge d'instruction ou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commis par lui décrit ou transcrit, dans un procès-verbal qui est versé au dossier, les images ou les conversations enregistrées qui sont utiles à la manifestation de la vérité.

Les conversations en langue étrangère sont transcrites en français avec l'assistance d'un interprète requis à cette fin.

Article 706-102

Les enregistrements sonores ou audiovisuels sont détruits, à la dilig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procureur général, à l'expiration du délai de prescription de l'action publique.

Il est dressé procès-verbal de l'opération de destruction.

Section 7 : Des mesures conservatoires

Article 706-103

En cas d'information ouverte pour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et 706-74 et afin de garantir le paiement des amendes encourues ainsi que, le cas éché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ordonner,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des mesures conservatoires sur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a condamnation vaut validation des mesures conservatoires et permet l'inscription définitive des sûretés.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escement emporte de plein droit, aux frais du Trésor, mainlevée des mesures ordonnées.

Il en est de même en cas d'extinction de l'action publique et de l'action civile.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compéten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u titre XXIX du présent livre.

Section 8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706-104

[Dispositions déclarées non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par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 2004-492 DC du 2 mars 2004.]

Article 706-105

Lorsque, au cours de l'enquête, 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0 à 706-95, la personne ayant été placée en garde à vue six mois auparavant et qui n'a pas fait l'objet de poursuites peut interrog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le ressort duquel la garde à vue s'est déroulée sur la suite donnée ou susceptible d'être donnée à l'enquête.

Cette demande est adress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écide de poursuivre l'enquête préliminaire et qu'il envisage de procéder à une nouvelle audition ou à un nouvel 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au cours de cette enquête, cette personne est informée, dans les deux mois suivant la réception de sa demande, qu'elle peut demander qu'un avocat désigné par elle ou commis d'office à sa demande par le bâtonnier puisse consulter le dossier de la procédure.

Le dossier est alors mis à la disposition de l'avocat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la demande et avant, le cas échéant, toute nouvelle audition ou tout nouvel 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Lors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 décidé de classer l'affaire en ce qui concerne la personne, il l'informe dans les deux mois suivant la réception de sa demande.

Dans les autres ca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n'est pas tenu de répondre à la personne. Il en est de même lorsqu'il n'a pas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0 à 706-95 au cours de l'enquête.

Lorsque l'enquête n'a pas été menée sous la dire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la garde à vue a été réalisée, celui-ci adresse sans délai la demande au procureur qui dirige l'enquête.

Article 706-106

Lorsque, au cours de l'enquête, 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6-80 à 706-95, la personne qui est déféré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393 a droit à la désignation d'un avocat.

Celui-ci peut consulter sur le champ le dossier et communiquer librement avec el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393.

La personne comparaît alors en présence de son avocat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après avoir entendu ses déclarations et les observations de son avocat, soit procède comme il est dit aux articles 394 à 396, soit requiert l'ouverture d'une information.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le tribunal correctionnel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immédiate, l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97-1 permettant au prévenu de demander le renvoi de l'affaire à une audience qui devra avoir lieu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eux mois sans être supérieur à quatre mois sont applicables, quelle que soit la peine encourue.

Titre XXVI : De la procédure applicable en cas de pollution des eaux maritimes par rejets des navires

Article 706-107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s'il s'agit de délits, le jugement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pollution des eaux marines et des voies ouvertes à la navigation maritime prévues et réprimées par la sous-section 2 de la section 1 du chapitre VIII du titre Ier du livre II du code de l'environnement, qui sont commises dans les eaux territoriales, les eaux intérieures et les voies navigables, la compétence d'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peut être étendue au ressort d'une ou plusieurs cours d'appel.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s'appliquent également lorsque les infractions mentionnées dans cet alinéa, à l'exception de celle visée à l'article L. 218-19 du code de l'environnement, sont commises dans la zone économique exclusive ou dans la zone de protection écologique. Toutefois, dans les affaires qui sont ou apparaissent d'une grande complexit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peut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110 et 706-111 de se dessaisir au profi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peut également connaître des infractions qui sont ou apparaissent d'une grande complexité dès le stade de l'enquête.

Cette compétence s'étend aux infractions connexes.

Un décret fixe la liste et le ressort de ces juridictions du littoral maritime, qui comprennent une section du parquet et des formations d'instruction et de jugement spécialisées pour connaître de ces infractions.

Article 706-108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107 commises hors des espaces maritimes sous juridiction française,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compétent est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est également compétent pour l'enquête, la poursuite,

l'instruction et le jugement de l'infraction visée à l'article L. 218-19 du code de l'environnement, ainsi que des infractions qui lui sont connexes, lorsque ces infractions sont commises dans la zone économique exclusive ou dans la zone de protection écologique.

Article 706-109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la formation correctionnelle spécialisé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mentionné à l'article 706-107 exercent, sur toute l'étendue du ressort fixé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43, 52, 382 et 706-42.

Ils exercent égalem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une compétence concurrente à celle qui résulte des critères de compétence suivants :

- 1° Lieu d'immatriculation du navire, engin ou plate-forme ou de son attachement en douanes ;
- 2° Lieu où le navire, engin ou plate-forme est ou peut être trouvé.

La juridiction spécialisée saisie demeure compétente, quelles que soient les incriminations retenues lors du règlement ou du jugement de l'affaire.

Toutefois, si les faits constituent une contravention, le juge d'instruction prononce le renvoi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 ou devant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l'article 522-1.

Article 706-110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un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utre que ceux visés à l'article 706-107 peut, pour l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cet article, requérir le juge d'instruction de se dessaisir au profit de la juridiction d'instruction compétente en application de cet article.

Les parties sont préalablement avisées et invitées à faire connaître leurs observations par le juge d'instruction ; l'ordonnance est rendue huit jours au plus tôt et un mois au plus tard à compter de cet avis.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décide de se dessaisir, son ordonnance ne prend effet qu'à compter du délai de cinq jours prévu par l'article 706-111 ; lorsqu'un recours est exercé en application

1130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cet article, le juge d'instruction demeure saisi jusqu'à ce que soit porté à sa connaissance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ssé en force de chose jugée, ou celui de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Dès que l'ordonnance est passée en force de chose jug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dress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compét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09.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706-111

L'ordonnance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10 peut, à l'exclusion de toute autre voie de recours, être déférée dans les cinq jours de sa notification,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s parties, soi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si la juridiction spécialisée au profit de laquelle le dessaisissement a été ordonné ou refusé se trouve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dans lequel est située la juridiction initialement saisie, soit, dans le cas contraire, à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ésigne, dans les huit jours suivant la date de réception du dossier, le juge d'instruction chargé de poursuivre l'information.

Le ministère public peut également saisir directeme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lorsque le juge d'instruction n'a pas rendu son ordonnance dans le délai d'un mois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10.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de la chambre criminelle est porté à la connaissance du juge d'instruction ainsi qu'au ministère public et notifié aux parti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ndu sur le fondement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6-110, le recours étant alors porté devant la chambre criminelle.

Titre XXVII : De la poursuite, de l'instruction et du jugement des infractions commises par des majeurs protégés

Article 706-112

Le présent titre est applicable à toute personne majeure dont il est établi au cours de la procédure qu'elle fait l'objet d'une mesure de protection juridiq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itre XI du livre Ier du code civil.

Article 706-113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avise le curateur ou le tuteur, ainsi que le juge des tutelles, des poursuites dont la personne fait l'objet.

Il en est de même si la personne fait l'objet d'une alternative aux poursuites consistant en la réparation du dommage ou en une médiation, d'une composition pénale ou d'une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ou si elle est entendue comme témoin assisté.

Le curateur ou le tuteur peut prendre connaissance des pièces de la procédure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celles prévues pour la personne poursuivie.

Si la personne est placée en détention provisoire, le curateur ou le tuteur bénéficie de plein droit d'un permis de visit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avise le curateur ou le tuteur des décisions de non-lieu, de relaxe, d'acquittement,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ou de condamnation dont la personne fait l'objet.

Le curateur ou le tuteur est avisé de la date d'audience.

Lorsqu'il est présent à l'audience, il est entendu par la juridiction en qualité de témoin.

Article 706-114

S'il existe des raisons plausibles de présumer que le curateur ou le tuteur est coauteur ou complice de l'infraction, et faute de subrogé curateur ou de subrogé tut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demande au juge des tutelles la désignation d'un tuteur ou curateur ad hoc.

1132 프랑스 형사소송법

Il en est de même si le tuteur ou le curateur est victime de l'infraction.

A défau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igne un représentant ad hoc pour assister la personne au cours de la procédure pénale.

Article 706-115

La personne poursuivie doit être soumise avant tout jugement au fond à une expertise médicale afin d'évaluer sa responsabilité pénale au moment des faits.

Article 706-116

La personne poursuivie doit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A défaut de choix d'un avocat par la personne poursuivie ou son curateur ou son tuteu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fait désigner par le bâtonnier un avocat, l'intéressé étant informé que les frais seront à sa charge sauf s'il remplit les conditions d'accès à l'aide juridictionnelle.

Article 706-117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avise le juge des tutelles des poursuites concernant une personne dont il est établi qu'elle bénéficie d'une mesure de sauvegarde de justice.

Le juge des tutelles peut alors désigner un mandataire spécial qui dispose, au cours de la procédure, des prérogatives confiées au curateur ou au tuteur par l'article 706-113.

Ces prérogatives sont également reconnues au mandataire de protection future.

Article 706-118

Un décret fix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Titre XXVIII : De la procédure et des décisions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Chapitre Ier : Dispositions applicables devant le juge d'instruction et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706-119

Si le juge d'instruction estime, lorsque son information lui paraît terminée, qu'il est susceptible d'applique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relatif à l'irresponsabilité pénale d'une personne en raison d'un trouble mental, il en inform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orsqu'il lui communique le dossier ainsi que les parties lorsqu'il les avis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75 du présent cod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ans ses réquisitions, et les parties, dans leurs observations, indiquent s'ils demandent la saisin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fin que celle-ci statue s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conformément aux articles 706-122 à 706-127 du présent code.

Article 706-120

Lorsqu'au moment du règlement de son information, le juge d'instruction estime, après avoir constaté qu'il existe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s charges suffisantes d'avoir commis les faits reprochés, qu'il y a des raisons plausibles d'applique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il ordonne,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une partie en a formulé la demande, que le dossier de la procédure soit transmi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rocureur général aux fins de saisin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Il peut aussi ordonner d'office cette transmission.

Dans les autres cas, il rend une ordonnance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qui précise qu'il existe des charges suffisantes établissant que l'intéressé a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113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06-121

L'ordonnance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met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L'ordonnance de transmission de pièces rend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20 ne met pas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qui se poursuit jusqu'à l'audienc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sans préjudice de la possibilité pour le juge d'instruction, par ordonnance distincte, d'ordonner la mise en liberté ou la levée du contrôle judiciaire.

S'il n'a pas été mis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la chambre de l'instruction doit statuer dans un délai de six mois en matière criminelle ou quatre mois en matière correctionnelle à compter de la date de l'ordonnance de transmission de pièces, à défaut de quoi la personne mise en examen est remise en liberté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Article 706-122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st saisi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20, son président ordonne, soit d'office, soit à la demande de la partie civil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la comparution personnelle de cette dernière si son état le permet.

Si celle-ci n'est pas assistée d'un avocat, le bâtonnier en désigne un d'office à la demande du président de la juridiction.

Cet avocat représente la personne même si celle-ci ne peut comparaître.

Les débats se déroulent et l'arrêt est rendu en audience publique, hors les cas de huis clos prévus par l'article 306.

Le président procède à l'interrogat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elle est présente, conformément à l'article 442. Les experts ayant examiné la personne mise en examen doi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formément à l'article 168.

Sur décision de son président, la juridiction peut également entendre au cours des débats, conformément aux articles 436 à 457, les témoins cités par les parties ou le ministère public si leur audition est nécessaire pour établir s'il existe des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d'avoir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t déterminer si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est applicable.

Le procureur général, l'avocat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et l'avocat de la partie civile peuvent poser des questions à la personne mise en examen, à la partie civile, aux témoins et aux experts, conformément à l'article 442-1 du présent co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elle est présente, et la partie civile peuvent également poser des questions par l'intermédiaire du président.

Une fois l'instruction à l'audience terminée, l'avocat de la partie civile est entendu et le ministère public prend ses réquisitions.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elle est présente, et son avocat présentent leurs observations. La réplique est permise à la partie civile et au ministère public, mais la personne mise en examen, si elle est présente, et son avocat auront la parole les derniers.

Article 706-123

Si elle estime qu'il n'existe pas de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avoir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la chambre de l'instruction déclare qu'il n'y a lieu à suivre.

Article 706-124

Si elle estime qu'il existe des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mise en examen d'avoir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et que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n'est pas applicabl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le renvoi de la personne devant la juridiction de jugement compétente.

Article 706-125

Dans les autres cas,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nd un arrê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par lequel :

- 1° Elle déclare qu'il existe des charges suffisantes contre la personne d'avoir commis les faits qui lui sont reprochés ;
- 2° Elle déclare la personne irresponsable pénalement en raison d'un trouble psychique ou neuropsychique ayant aboli son discernement ou le contrôle de ses actes au moment des faits ;

1136 프랑스 형사소송법

- 3° Si la partie civile le demande, elle renvoi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compétent pour qu'il se prononce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e la personne, conformément à l'article 489-2 du code civil, et statue sur les demandes de dommages et intérêts ;
- 4° Elle prononce, s'il y a lieu,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s a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Article 706-126

L'arrê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met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Il peut faire l'objet d'un pourvoi en cassation.

Article 706-127

Les articles 211 à 218 sont applicables aux décisions prévues aux articles 706-123 à 706-125.

Article 706-128

Les articles 706-122 à 706-127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ou en cas d'appel d'une ordonnance de renvoi lorsque cet appel est formé par une personne mise en examen qui invoque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Chapitre II : Dispositions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ou la cour d'assises

Section 1 : Dispositions applicables devant la cour d'assises

Article 706-129

Lorsqu'en application des articles 349-1 et 361-1, la cour d'assises a, au cours du délibéré, répondu positivement à la première question relative à la commission des faits et positivement

à la seconde question portant s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elle déclare l'irresponsabilité pénale de l'accusé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Article 706-130

Lorsque la cour d'assises rentre dans la salle d'audience en application de l'article 366, le président prononce un arrêt portant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Cet arrêt met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706-131

En application de l'article 371 du présent code et conformément à l'article 489-2 du code civil, la cour, sans l'assistance du jury, statue alors sur les demandes de dommages et intérêts formées par la partie civile.

Elle prononce s'il y a lieu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s a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Article 706-132

Le procureur général peut faire appel des arrêts portant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La cour d'assises statuant en appel est alors désignée conformément aux articles 380-14 et 380-15.

L'accusé et la partie civile peuvent faire appel de la décision sur l'action civile.

L'appel est alors porté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conformément à l'article 380-5.

Section 2 : Dispositions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Article 706-133

S'il estime que l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sont applicables, le tribunal correctionnel rend un jugemen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par lequel :

1138 프랑스 형사소송법

- 1° Il déclare que la personne a commis les faits qui lui étaient reprochés ;
- 2° Il déclare la personne irresponsable pénalement en raison d'un trouble psychique ou neuropsychique ayant aboli son discernement ou le contrôle de ses actes au moment des faits ;
- 3° Il se prononce sur la responsabilité civile de la personne auteur des faits, conformément à l'article 489-2 du code civil, et statue, s'il y a lieu, sur les demandes de dommages et intérêts formées par la partie civile ;
- 4° Il prononce, s'il y a lieu,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s au chapitre III du présent titre.

Le jugemen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met fin à la détention provisoire ou au contrôle judiciaire.

Article 706-134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133 sont applicables devant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Elles sont également applicables, à l'exception du 4°,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Chapitre III : Mesures de sûreté pouvant être ordonnées en cas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Article 706-135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L. 3213-1 et L. 3213-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une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 arrêt ou un jugemen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elle peut ordonner, par décision motivée, l'hospitalisation d'office de la personne dans un établissement mentionné à l'article L. 3222-1 du même code s'il est établi par une expertise psychiatrique figurant au dossier de la procédure que les troubles mentaux de l'intéressé nécessitent des soins et compromettent la sûreté des personnes ou portent atteinte, de façon grave, à l'ordre public.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ou, à Paris, le préfet de police est immédiatement

avisé de cette décision.

Le régime de cette hospitalisation est celui prévu pour les hospitalisations ordonn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3213-1 du même code, dont le deuxième alinéa est applicable.

L'article L. 3213-8 du même code est également applicable.

Article 706-136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u une juridiction de jugement prononce un arrêt ou un jugement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elle peut ordonner à l'encontre de la personne les mesures de sûreté suivantes, pendant une durée qu'elle fixe et qui ne peut excéder dix ans en matière correctionnelle et vingt ans si les faits commis constituent un crime ou un délit puni de dix ans d'emprisonnement :

- 1° Interdiction d'entrer en relation avec la victime de l'infraction ou certaines personnes ou catégories de personnes, et notamment les mineurs, spécialement désignées ;
- 2° Interdiction de paraître dans tout lieu spécialement désigné ;
- 3° Interdiction de détenir ou de porter une arme ;
- 4° 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spécialement désignée, dans l'exercice de laquelle ou à l'occasion de laquelle l'infraction a été commise ou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les mineurs, sans faire préalablement l'objet d'un examen psychiatrique déclarant la personne apte à exercer cette activité ;
- 5°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
- 6° 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avec interdiction de solliciter la délivrance d'un nouveau permis.

Ces interdictions, qui ne peuvent être prononcées qu'après une expertise psychiatrique, ne doivent pas constituer un obstacle aux soins dont la personn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Si la personne est hospitalis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3213-1 et L. 3213-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es interdictions dont elle fait l'objet sont applicables pendant la durée de l'hospitalisation et se poursuivent après la levée de cette hospitalisation, pendant la durée fixée par la décision.

1140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06-137

La personne qui fait l'objet d'une interdiction prononc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6 peut demander a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lieu de la situation de l'établissement hospitalier ou de son domicile d'ordonner sa modification ou sa levée.

Celui-ci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sur les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le demandeur ou son avocat entendus ou dûment convoqués.

Il peut solliciter l'avis préalable de la victime.

La levée de la mesure ne peut être décidée qu'au vu du résultat d'une expertise psychiatrique.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aucune demande ne peut être dépos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six mois.

Article 706-138

Lorsque l'interdiction prévue au 1° de l'article 706-136 est prononcée, la partie civile peut demander à être inform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la levée de l'hospitalisation d'office dont cette personne aura pu faire l'objet en application des articles L. 3213-1 et L. 3213-7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a partie civile peut, à tout moment, indiqu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elle renonce à cette demande.

Article 706-139

La méconnaissance par la personne qui en a fait l'objet des interdictions prévues par l'article 706-136 est puni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122-1 du code pénal,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30,000 euros d'amende.

Article 706-140

Un décre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Titre XXIX: Des saisies spéciales

Article 706-141

Le présent titre s'applique, afin de garantir l'exécution de la peine complémentaire de confiscation selon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aux saisies réalisé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code lorsqu'elles portent sur tout ou partie des biens d'une personne, sur un bien immobilier, sur un bien ou un droit mobilier incorporel ou une créance ainsi qu'aux saisies qui n'entraînent pas de dépossession du bien.

Chapitre Ier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706-14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instruction ou, avec leur autorisation,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vent requérir le concours de toute personne qualifiée pour accomplir les actes nécessaires à la saisie des biens visés au présent titre et à leur conservation.

Article 706-143

Jusqu'à la mainlevée de la saisie ou la confiscation du bien saisi, le propriétaire ou, à défaut, le détenteur du bien est responsable de son entretien et de sa conservation.

Il en supporte la charge, à l'exception des frais qui peuvent être à la charge de l'Etat.

En cas de défaillance ou d'indisponibilité du propriétaire ou du détenteur du bien, et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tiers de bonne fo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peuvent autoriser la remise à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du bien saisi dont la vente par anticipation n'est pas envisagée afin que cette agence réalise, dans la limite du mandat qui lui est confié, tous les actes juridiques et matériels nécessaires à la conservation, l'entretien et la valorisation de ce bien. Tout acte ayant pour conséquence de transformer, modifier substantiellement le bien ou d'en réduire la valeur est soumis à l'autorisation préalable du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en a ordonné ou autorisé la saisie, du juge d'instruction qui en a ordonné ou

1142 프랑스 형사소송법

autorisé la saisie ou du juge d'instruction en cas d'ouverture d'une information judiciaire postérieurement à la saisie.

Article 706-144

Le magistrat qui a ordonné ou autorisé la saisie d'un bien ou le juge d'instruction en cas d'ouverture d'une information judiciaire postérieurement à la saisie sont compétents pour statuer sur toutes les requêtes relatives à l'exécution de la saisi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destruction et à l'aliénation des biens saisis au cours de l'enquête ou de l'instruction prévues aux articles 41-5 et 99-2.

Lorsque la décision ne relève pa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n avis est sollicité préalablement.

Le requérant e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vent, dans 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cette décision, faire appel de la décision devant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t appel est suspensif.

Article 706-145

Nul ne peut valablement disposer des biens saisis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pénale hors les cas prévus aux articles 41-5 et 99-2 et au présent chapitre.

A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elle devient opposable et jusqu'à sa mainlevée ou la confiscation du bien saisi, la saisie pénale suspend ou interdit toute procédure civile d'exécution sur le bien objet de la saisie pénale.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le créancier ayant diligenté une procédure d'exécution antérieurement à la saisie pénale est de plein droit considéré comme titulaire d'une sûreté sur le bien, prenant rang à la date à laquelle cette procédure d'exécution est devenue opposable.

Article 706-146

Si le maintien de la saisie du bien en la forme n'est pas nécessaire, un créancier muni d'un titre exécutoire constatant une créance liquide et exigible peut être autoris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06-144, à engager ou reprendre une procédure civile d'exécution sur le bien,

conformément aux règles applicables à ces procédures.

Toutefois, il ne peut alors être procédé à la vente amiable du bien et la saisie pénale peut être reportée sur le solde du prix de cession, après désintéressement des créanciers titulaires d'une sûreté ayant pris rang antérieurement à la date à laquelle la saisie pénale est devenue opposable.

Le solde du produit de la vente est consigné.

En cas de classement sans suite, de non-lieu ou de relaxe, ou lorsque la peine de confiscation n'est pas prononcée, ce produit est restitué au propriétaire du bien s'il en fait la demande.

En cas de reprise d'une procédure civile d'exécution suspendue par la saisie pénale, les formalités qui ont été régulièrement accomplies n'ont pas à être réitérées.

Article 706-147

Les mesures ordonnées en 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sont applicables y compris lorsqu'elles sont ordonnées après la date de cessation des paiements et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632-1 du code de commerce.

Chapitre II : Des saisies de patrimoine.

Article 706-148

Si l'enquête porte sur une infraction punie d'au moins cinq ans d'emprisonneme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peut, dans les cas prévus aux cinquième et sixième alinéas de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et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toriser par ordonnance motivée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e tout ou partie des biens, lorsque la loi qui réprime le crime ou le délit prévoit la confiscation de tout ou partie des biens du condamné ou lorsque l'origine de ces biens ne peut être établie.

Le juge d'instruction peut,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office après avis du ministère public, ordonner cette saisie dans les mêmes conditions.

L'ordonnance pris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est notifiée au ministère public, au propriétaire du bien saisi et, s'ils sont connus, 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ce bien,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ans un délai de

1144 프랑스 형사소송법

dix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Cet appel n'est pas suspensif.

Le propriétaire du bien et les tiers peu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tiers ne peuvent toutefois pas prétendre à la mise à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Article 706-149

Les règles propres à certains types de bie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à l'exclusion de celles relatives à la décision de saisie, s'appliquent aux biens compris en tout ou partie dans le patrimoine saisi.

Chapitre III : Des saisies immobilières.

Article 706-150

Au cours de l'enquête de flagrance ou de l'enquête préliminair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utoriser par ordonnance motivée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es immeuble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Le juge d'instruction peut, au cours de l'information, ordonner cette saisie dans les mêmes conditions.

L'ordonnance pris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est notifiée au ministère public, au propriétaire du bien saisi et, s'ils sont connus, 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ce bien,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ans 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Cet appel n'est pas suspensif.

Le propriétaire du bien et les tiers peu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tiers ne peuvent toutefois pas prétendre à la mise à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Article 706-151

La saisie pénale d'un immeuble est opposable aux tier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e la décision

ordonnant la saisie au bureau des hypothèques ou, pour les départements du Bas-Rhin, du Haut-Rhin et de la Moselle, au livre foncier du lieu de situation de l'immeuble.

Les formalités de cette publication sont réalisées, au nom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du juge d'instruction, par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Jusqu'à la mainlevée de la saisie pénale de l'immeuble ou la confiscation de celui-ci, la saisie porte sur la valeur totale de l'immeuble, sans préjudice des privilèges et hypothèques préalablement inscrits ou des privilèges visés à l'article 2378 du code civil et nés antérieurement à la date de publication de la décision de saisie pénale immobilière.

La publication préalable d'un commandement de saisie sur l'immeuble ne fait pas obstacle à la publication de la décision de saisie pénale immobilière.

Article 706-152

La cession de l'immeuble conclue avant la publication de la décision de saisie pénale immobilière et publiée après cette publication à la conservation des hypothèques ou au livre foncier pour les départements concernés est inopposable à l'Etat, sauf mainlevée ultérieure de la saisie. Toutefois, si le maintien de la saisie du bien en la forme n'est pas nécessaire et que la vente n'apparaît pas frauduleuse eu égard à ses conditions et au prix obtenu, le magistrat compétent peut décider le report de la saisie pénale sur le prix de la vente, après désintéressement des créanciers titulaires d'une sûreté ayant pris rang antérieurement à la date à laquelle la saisie pénale est devenue opposable.

Dans ce cas, la publication de la décision et la consignation du solde du prix de vente rendent la vente opposable à l'Etat.

Chapitre IV : Des saisies portant sur certains biens ou droits mobiliers incorporels

Article 706-153

Au cours de l'enquête de flagrance ou de l'enquête préliminair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utoriser par ordonnance motivée

1146 프랑스 형사소송법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es biens ou droits incorporel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Le juge d'instruction peut, au cours de l'information, ordonner cette saisie dans les mêmes conditions.

L'ordonnance pris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est notifiée au ministère public, au propriétaire du bien ou du droit saisi et, s'ils sont connus, 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ce bien ou sur ce droit,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ans 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Cet appel n'est pas suspensif.

Le propriétaire du bien ou du droit et les tiers peu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tiers ne peuvent toutefois pas prétendre à la mise à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Article 706-154

Lorsque la saisie porte sur une somme d'argent versée sur un compte ouvert auprès d'un établissement habilité par la loi à tenir des comptes de dépôts, elle s'applique indifféremment à l'ensemble des sommes inscrites au crédit de ce compte au moment de la saisie et à concurrence, le cas échéant, du montant indiqué dans la décision de saisie.

Article 706-155

Lorsque la saisie porte sur une créance ayant pour objet une somme d'argent, le tiers débiteur doit consigner sans délai la somme due à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ou auprès de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lorsqu'elle est saisie. Toutefois, pour les créances conditionnelles ou à terme, les fonds sont consignés lorsque ces créances deviennent exigibles.

Lorsque la saisie porte sur une créance figurant sur un contrat d'assurance sur la vie, elle entraîne la suspension des facultés de rachat, de renonciation et de nantissement de ce contrat, dans l'attente du jugement définitif au fond.

Cette saisie interdit également toute acceptation postérieure du bénéfice du contrat dans l'attente

de ce jugement et l'assureur ne peut alors plus consentir d'avances au contractant.

Cette saisie est notifiée au souscripteur ainsi qu'à l'assureur ou à l'organisme auprès duquel le contrat a été souscrit.

Article 706-156

La saisie de parts sociales, valeurs mobilières, instruments financiers ou autres biens ou droits incorporels est notifiée à la personne émettrice.

Le cas échéant, la saisie est également notifiée à l'intermédiaire financier mentionné aux 2° à 7° de l'article L. 542-1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teneur du compte ainsi qu'à l'intermédiaire inscrit mentionné à l'article L. 228-1 du code de commerce.

Article 706-157

La saisie d'un fonds de commerce est opposable aux tiers à compter de son inscription,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sur le registre des nantissements tenu au greffe du tribunal de commerce du lieu de situation du fonds.

Chapitre V : Des saisies sans dépossession

Article 706-158

Au cours de l'enquête de flagrance ou de l'enquête préliminair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aisi pa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autoriser par ordonnance motivée la saisie,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d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est prévue par l'article 131-21 du code pénal sans en dessaisir le propriétaire ou le détenteur.

Le juge d'instruction peut, au cours de l'information, ordonner cette saisie dans les mêmes conditions.

L'ordonnance prise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est notifiée au ministère public, au propriétaire du bien saisi et, s'ils sont connus, aux tiers ayant des droits sur ce bien, qui peuvent la déférer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par déclaration au greffe du tribunal dans un délai de dix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l'ordonnance.

Cet appel n'est pas suspensif.

Le propriétaire du bien et les tiers peuvent être entendus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s tiers ne peuvent toutefois pas prétendre à la mise à disposition de la procédure.

Le magistrat qui autorise la saisie sans dépossession désigne la personne à laquelle la garde du bien est confiée et qui doit en assurer l'entretien et la conservation, aux frais le cas échéant du propriétaire ou du détenteur du bien qui en est redevable conformément à l'article 706-143 du présent code.

En dehors des actes d'entretien et de conservation, le gardien du bien saisi ne peut en user que si la décision de saisie le prévoit expressément.

Titre XXXI : Des mesures conservatoires

Article 706-166

En cas d'information ouverte pour l'une des infractions, punie d'une pein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figurant au sein du titre Ier du livre III du code pénal,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6-103 du présent code, ordonner des mesures conservatoires sur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afin de garantir le paiement des amendes encourues ainsi que, le cas éché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La condamnation vaut validation des mesures conservatoires et permet l'inscription définitive des sûretés.

La décision de non-lieu, de relaxe ou d'acquiescement emporte de plein droit, aux frais du Trésor, mainlevée des mesures ordonnées.

Il en est de même en cas d'extinction de l'action publique et de l'action civile.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est compétent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u titre XXIX du présent livre.

Livre V : Des procédures d'exécution

Titre Ier : De l'exécution des sentences pénales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07

Sur décision ou sous le contrôle des autorités judiciaires, les peine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pénales sont, sauf circonstances insurmontables, mises à exécution de façon effective et dans les meilleurs délais.

L'exécution des peines favorise, dans le respect des intérêts de la société et des droits des victimes,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des condamnés ainsi que la prévention de la récidive. A cette fin, les peines sont aménagées avant leur mise à exécution ou en cours d'exécution si la personnalité et l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du condamné ou leur évolution le permettent.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doit, chaque fois que cela est possible, permettre le retour progressif du condamné à la liberté et éviter une remise en liberté sans aucune forme de suivi judiciaire.

En cas de délivrance d'u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l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peuvent être immédiatement aménag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sans attendre que la condamnation soit exécutoire conformément au présent article, sous réserve du droit d'appel suspensif du ministère public prévu par l'article 712-14.

Article 707-1

Le ministère public et les parties poursuivent l'exécution de la sentence chacun en ce qui le concerne.

Néanmoins, les poursuites pour le recouvrement des amendes et confiscations en valeur sont faites au nom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L'exécution des autres confiscations est réalisée au nom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Agence de gestion et de recouvrement des avoirs saisis et confisqués qui procède, s'il y a

1150 프랑스 형사소송법

lieu, aux formalités de publication foncière aux frais du Trésor.

Le paiement du montant de l'amende doit toujours être recherché.

Toutefois, le défaut total ou partiel du paiement de ce montant peut entraîner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selon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Pour le recouvrement des amendes, la prescription est interrompue par un commandement notifié au condamné ou une saisie signifiée à celui-c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oursuit également l'exécution des sanctions pécuniaires prononcées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décision-cadre 2005 / 214 / JAI du Conseil, du 24 février 2005, concernant l'application du principe de reconnaissance mutuelle aux sanctions pécuniaires, selon des modalités fixées par décret.

Ce décret précise également les modalités d'application à ces sanctions des articles 707-2 et 749 à 762 du présent code, ainsi que les règles applicables à la transmission pour mise à exécution dans 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des sanctions pécuniaires prononcées par les autorités françaises.

Article 707-2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toute personne condamnée peut s'acquitter du montant du droit fixe de procédure dû en application de l'article 1018 A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ainsi que, le cas échéant, du montant de l'amende à laquelle elle a été condamné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 jugement a été prononcé.

Lorsque le condamné règle le montant du droit fixe de procédure ou le montant de l'amend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ces montants sont diminués de 20 % sans que cette diminution puisse excéder 1 500 euros.

Dans le cas où une voie de recours est exercée contre les dispositions pénales de la décision, il est procédé, sur demande de l'intéressé, à la restitution des sommes versées.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07-3

Lorsque le tribunal prononce 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d'amende en matière correctionnelle ou de police, le président avise le condamné que, s'il s'acquitte du montant de cette amende dans un délai d'un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 jugement a été prononcé, ce montant est diminué de 20 % sans que cette diminution puisse excéder 1 500 euros.

Le président informe le condamné que le paiement de l'amende ne fait pas obstacle à l'exercice des voies de recours.

Les avis prévus par le présent article peuvent également être délivrés au condamné par le greffier de la juridiction ou le greffier du bureau de l'exécution des peines.

Article 707-4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07-2 et 707-3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 condamné qui a été autorisé à s'acquitter du paiement du montant de l'amende en plusieurs versements étalés dans le temps, dans des délais et selon des modalités déterminés par les services compétents du Trésor public.

Article 708

L'exécution de la ou des peines prononcées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a lieu lorsque la décision est devenue définitive.

Toutefois, le délai d'appel accordé au procureur général par les articles 505 et 548 ne fait point obstacle à l'exécution de la peine, quelle que soit sa nature.

L'exécution d'une peine de police ou d'une peine correctionnelle non privative de liberté peut être suspendue ou fractionnée pour motifs graves d'ordre médical, familial, professionnel ou social.

La décision est prise soit par le ministère public, soit, sur la pro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par le tribunal de police ou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statuant en chambre du conseil, selon que l'exécution de la peine doit être suspendue pendant moins ou plus de trois mois.

La suspension ou le fractionnement de la peine de suspension de permis de conduire n'est

1152 프랑스 형사소송법

toutefois pas possible en cas de délits ou de contraventions pour lesquels la loi ou le règlement prévoit que cette peine ne peut pas être limitée à la conduite en dehors de l'activité professionnelle.

Lorsque l'exécution fractionnée d'une peine d'amende, de jours-amende ou de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a été décidé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28 du code pénal, cette décision peut être modifi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709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procureur général ont le droit de requérir directement l'assistance de la force publique à l'effet d'assurer cette exécution.

Article 709-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établit un rapport annuel sur l'état et les délais de l'exécution des peines qui comprend, notamment, un rapport établi par le directeur départemental des finances publiques relatif au recouvrement des amendes dans le ressort du tribunal.

Le directeur départemental des finances publiques communique son rapport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 plus tard le premier jour ouvrable du mois de mars.

Le rappor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 rendu public avant le dernier jour ouvrable du mois de juin selon des modalités fixées par un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Article 710

Tous incidents contentieux relatifs à l'exécution sont portés devant le tribunal ou la cour qui a prononcé la sentence ; cette juridiction peut également procéder à la rectification des erreurs purement matérielles contenues dans ses décisions.

Elle statue sur les demandes de confusion de peines présent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4 du code pénal.

En matière criminell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onnaît des rectifications et des incidents d'exécution auxquels peuvent donner lieu les arrêts de la cour d'assises.

Sont également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s demande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par l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soit le tribunal ou la cour, soi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 ressort duquel le condamné est détenu.

Le ministère public de la juridiction destinataire d'une demande de confusion déposée par une personne détenue peut adresser cette requête à la juridiction du lieu de détention.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auf en matière de confusion de peine,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seul magistrat exerçant les pouvoirs du président.

Il en est de même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ou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qui est composée de son seul président, siégeant à juge unique.

Ce magistrat peut toutefois, si la complexité du dossier le justifi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u dossier devant la formation collégiale de la juridiction.

Le magistrat ayant ordonné ce renvoi fait alors partie de la composition de cette juridiction.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11

Le tribunal ou la cour, sur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ou de la partie intéressée, statue en chambre du conseil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le conseil de la partie s'il le demande et, s'il échet, la partie elle-mêm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

Lorsque le requérant est détenu, sa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n'est de droit que s'il en fait la demande expresse dans sa requêt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en litige est suspendue si le tribunal ou la cour l'ordonne.

Le jugement sur l'incident est signifié à la requête du ministère public aux parties intéressées.

Article 712

Dans toutes les hypothèses où il paraît nécessaire d'entendre un condamné qui se trouve détenu, la juridiction saisie peut donner commission rogatoire au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le plus proche du lieu de détention.

Ce magistrat peut déléguer l'un des juges du tribunal qui procède à l'audition du détenu par

procès-verbal.

La juridiction peut également décider de faire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Chapitre II : D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ction 1 : Etablissement et composition

Article 712-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stituent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premier degré qui sont chargé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de fixer les principales modalités de l'exécution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ou de certaines peines restrictives de liberté, en orientant et en contrôlant les conditions de leur application.

Les décis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être attaquées par la voie de l'appel.

L'appel est porté,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devant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composée d'un président de chambre et de deux conseillers, ou devant le président de cette chambre.

Les appels concernant les décisions du juge ou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Guyane sont portés devant la chambre détachée de la cour d'appel de Fort-de-France ou son président.

Article 712-2

Dans chaqu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un ou plusieurs magistrats du siège sont chargés des fonctions d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s magistrats sont désignés par décret pris après avis du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Il peut être mis fin à leurs fonctions dans les mêmes formes.

Si un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temporairement empêché d'exercer ses fonctions,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ésigne un autre magistrat pour le remplacer.

Pour le fonctionnement de son cabine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assisté d'un greffier et doté d'un secrétariat-greffe.

Article 712-3

Dans le ressort de chaque cour d'appel sont établis un ou plusieurs tribunaux de l'application des peines dont la compétence territoriale, correspondant à celle d'un ou plusieur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u ressort, est fixée par décre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composé d'un président et de deux assesseurs désignés par le premier président parmi les juges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ressort de la cour.

Dans les départements d'outre-mer, un membre au moins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e la cour d'appel de Fort-de-France, un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également établi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ayenne et est composé d'au moins un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Nouvelle-Calédonie, en Polynésie française et dans les collectivité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être composé d'un seul membr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s débats contradictoires auxquels procède cette juridiction ont lieu au siège des différent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ou dans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de ce ressort.

Les fonctions de ministère public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ù se tient le débat contradictoire ou dans le ressort duquel est situé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ù se tient ce débat.

Section 2 : Compétence et procédure devant les juridictions du premier degré

Article 712-4

Les mesures relevant de la compétenc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nt accordées, modifiées, ajournées, refusées, retirées ou révoquées par ordonnance ou jugement motivé de ce

1156 프랑스 형사소송법

magistrat agissant d'office, sur la demande du condamné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lon les distinctions prévues aux articles suivants.

Si la durée de la peine prononcée ou restant à subir le permet, ces mesures peuvent également être accordées selon les procédures simplifiées prévues par les articles 723-14 à 723-27.

Article 712-5

Sauf en cas d'urgence, les ordonnances concernant les réductions de peine, les autorisations de sorties sous escortes et les permissions de sortir sont prise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tte commission est réputée avoir rendu son avis si celui-ci n'est pas intervenu dans le délai d'un mois à compter du jour de sa saisine.

La commiss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présid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chef d'établissement en sont membres de droit.

Article 712-6

Les jugements concernant les mesures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semi-liberté, de fractionnement et suspension des peines,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t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ont rendus, après avis du représentant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tenu en chambre du conseil, au cours duque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end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les observations du condamné ainsi que, le cas échéant, celles de son avocat.

Si le condamné est détenu, ce débat peut se tenir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Il peut être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celui du condamné ou de son avocat, octroyer l'une de ces mesures sans procéder à un débat contradictoi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chaque fois qu'il l'estime nécessaire, décider,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ou du ministère public, de renvoyer le jugement de l'affaire devan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 juge ayant ordonné ce renvoi est membre du tribunal qui statu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7.

La décision de renvoi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sauf si la loi en dispose autrement, aux décis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cernant les peines de suivi socio-judiciaire, d'interdiction de séjour, de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d'emprisonnement avec sursis assorti de la mise à l'épreuve ou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ou les mesures d'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712-7

Les mesures concernant le relèvement de la période de sûreté,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ou la suspension de peine qui ne relèvent pas de la compétenc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nt accordées, ajournées, refusées, retirées ou révoquées par jugement motivé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aisi sur la demande du condamné,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à l'initiativ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ont relève le condamné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0.

Les jugements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nt rendus, après avis du représentant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tenu en chambre du conseil, au cours duquel la juridiction entend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les observations du condamné ainsi que, le cas échéant, celles de son avocat.

Si le condamné est détenu, ce débat peut se tenir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Il peut être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Article 712-8

Les décisions modifiant ou refusant de modifier les mesures mentionnées aux premier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6 ou les obligations résultant de ces mesures ou des mesures ordonnées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12-7 sont prises par ordonnance motivé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auf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mande qu'elles fassent l'objet d'un jugement pris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Toutefois, pour l'exécution d'une mesure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à l'extérieur ou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pour l'exécution de permissions de sort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ans sa décision, autoriser le chef d'établissement ou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s'agissant des mineurs, le directeur régional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à modifier les horaires d'entrée ou de sortie du condamné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de sa présence en un lieu déterminé, lorsqu'il s'agit de modifications favorables au condamné ne touchant pas à l'équilibre de la mesure.

Il est informé sans délai des modifications opérées et peut les annuler par ordonnance non susceptible de recours.

Article 712-9

Si le condamné non détenu, dûment convoqué à l'adresse déclaré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us le contrôle duquel il est placé, ne se présente pas, sans motif légitime, a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ar les articles 712-6 ou 712-7,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statuer en son absence.

Le délai d'appel ne court alo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u jugement faite à cette adresse qu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suivant.

S'il n'est pas établi que le condamné a eu connaissance de cette notification et que le jugement a ordonné la révocation ou le retrait de la mesure dont il bénéficiait, l'appel reste recevable jusqu'à l'expiration des délais de prescription de la peine et le délai d'appel court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 condamné a eu connaissance du jugement.

En cas d'appel, l'audition du condamné par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alors de droit, le cas échéan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71.

Article 712-10

Est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est situé soit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dans lequel le condamné est écroué, soit,

si le condamné est libre, la résidence habituelle de celui-ci ou, s'il n'a pas en France de résidence habituel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tribunal dans le ressort duquel a son siège la juridiction qui a statué en première instance.

Lorsqu'une mesure de placement à l'extérieur ou de semi-liberté doit s'exécuter hors du ressort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qui l'a ordonnée, le condamné est alors inscrit au registre d'écrou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itué à proximité du lieu d'exécution de la mesure ;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mpétent pour, le cas échéant, préciser ou modifi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mesure, prononcer ou proposer son retrait, est celui de la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est situé cet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orsqu'a été accordée une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st celui de la juridi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se trouve le lieu d'assignation du condamné ou sa résidence habituelle fixée par la décision ayant accordé la mesure.

La compétence territoriale définie dans le présent article s'apprécie au jour de la saisin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après la saisine initiale, celui-ci peut se dessaisir d'office, sur la demande du condamné ou sur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au profit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nouveau lieu de détention ou de la nouvelle résidence habituelle du condamné lorsqu'il est situé dans un autre ressort.

Est territorialement compéten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e condamné réside habituellement, est écroué ou exécute sa peine selon les distinctions du présent article.

Section 3 : De la procédure en cas d'appel

Article 712-11

Les décis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être attaquées par la voie de l'appel par le condam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par le procureur général, à compter de leur notification :

1° Dans le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s'agissant des ordonnances mentionnées aux articles

1160 프랑스 형사소송법

712-5 et 712-8 ;

2° Dans le délai de dix jours s'agissant des jugem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712-6 et 712-7.

Article 712-12

L'appel des ordonnances mentionnées aux articles 712-5 et 712-8 est porté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qui statue par ordonnance motivée au vu des observations écrites du ministère public et de celles du condamné ou de son avocat.

Article 712-13

L'appel des jugem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712-6 et 712-7 est porté devant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qui statue par arrêt motivé 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au cours duquel sont entendues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et les observations de l'avocat du condamné.

Le condamné n'est pas entendu par la chambre, sauf si celle-ci en décide autrement.

Son audition est alors effectuée, en présence de son avocat ou celui-ci régulièrement convoqué, soi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71, soit, par un membre de la juridiction,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ù il se trouve détenu.

Pour l'examen de l'appel des juge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712-7,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est composée, outre le président et les deux conseillers assesseurs, d'un responsable d'une association de réinsertion des condamnés et d'un responsable d'une association d'aide aux victimes.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la compétence d'une cour d'appel peut être étendue au ressort de plusieurs cours d'appel par un décret qui fixe la liste et le ressort de ces juridictions.

Si elle confirme un jugement ayant refusé d'accorder une des mesures mentionnées aux articles 712-6 ou 712-7, la chambre peut fixer un délai pendant lequel toute nouvelle demande tendant à l'octroi de la même mesure sera irrecevable.

Ce délai ne peut excéder ni le tiers du temps de détention restant à subir ni trois années.

Article 712-14

Les décision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nt exécutoires par provision.

Toutefois, lorsque l'appel du ministère public est formé dans les vingt-quatre heures de la notification, il suspend l'exécution de la décision jusqu'à ce que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ou son président ait statué.

L'affaire doit être examinée au plus tard dans les deux mois suivant l'appel du parquet, faute de quoi celui-ci est non avenu.

Article 712-15

Les ordonnances et arrêts mentionnés aux articles 712-12 et 712-13 peuvent faire, dans les cinq jours de leur notification, l'objet d'un pourvoi en cassation qui n'est pas suspensif.

Section 4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 712-16

Dans l'exercice de leurs attributions,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procéder ou faire procéder,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à tous examens, auditions, enquêtes, expertises, réquisitions, y compris celles prévues par l'article 132-22 du code pénal ou toute autre mesure, permettant de rendre une décision d'individualisation de la peine ou de s'assurer qu'un condamné respecte les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à la suite d'une telle décision.

Article 712-16-1

Préalablement à toute décision entraînant la cessation temporaire ou définitive de l'incarcération d'une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avant la date d'échéance de cette peine,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ennent en considération les intérêts de la victime ou de la partie civile au regard des conséquences pour celle-ci de cette décision.

Les mesures prévues à l'article 712-16 peuvent porter sur les conséquences des décisions d'individualisation de la peine au regard de la situation de la victime ou de la partie civile, et

notamment le risque que le condamné puisse se trouver en présence de celle-ci.

Si elles l'estiment opportun,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avant toute décision, informer la victime ou la partie civile,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e son avocat, qu'elle peut présenter ses observations par écrit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la notification de cette information.

Article 712-16-2

S'il existe un risque que le condamné puisse se trouver en présence de la victime ou de la partie civile et qu'au regard de la nature des faits ou de la personnalité de l'intéressé il apparaît qu'une telle rencontre paraît devoir être évitée,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assortissent toute décision entraînant la cessation temporaire ou définitive de l'incarcération d'une interdiction d'entrer en relation avec la victime ou la partie civile et, le cas échéant, de paraître à proximité de son domicile et de son lieu de travail.

Le prononcé de cette interdiction est obligatoire, sauf décision contraire spécialement motivée,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47. La juridiction adresse à la victime un avis l'informant de cette interdiction ; si la victime est partie civile, cet avis est également adressé à son avocat.

Cet avis précise les conséquences susceptibles de résulter pour le condamné du non-respect de cette interdiction.

La juridiction peut toutefois ne pas adresser cet avis lorsque la personnalité de la victime ou de la partie civile le justifie, lorsque la victime ou la partie civile a fait connaître qu'elle ne souhaitait pas être avisée d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peine ou dans le cas d'une cessation provisoire de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d'une durée ne pouvant excéder la durée maximale autorisée pour les permissions de sortie.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a victime ou la partie civile peut informer la juridict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ses changements de résidence ou de lieu de travail.

Article 712-16-3

Les services de police et les unités de gendarmerie peuvent, d'office ou sur instruct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du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ou, en cas d'urg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ppréhender toute personne placée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à l'encontre de laquelle il existe une ou plusieurs raisons plausibles de soupçonner qu'elle a manqué aux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et spécialement à son interdiction d'entrer en relation avec certaines personnes, dont la victime, ou de paraître en un lieu, une catégorie de lieux ou une zone spécialement désignés.

La personne peut alors, sur décision d'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être retenue vingt-quatre heures au plus dans un local de police ou de gendarmerie afin que soit vérifiée sa situation et qu'elle soit entendue sur la violation de ses obligations.

Dès le début de la mesur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inform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en cas d'empêchement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insi que du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a personne retenue est immédiatement inform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ou, sous le contrôle de celui-ci, par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e la nature de l'obligation qu'elle est soupçonnée avoir violée et du fait qu'elle peut exercer les droits prévus par l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3-1, par les articles 63-2 et 63-3 et par les quatre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63-4.

Les pouvoirs conféré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articles 63-2 et 63-3 sont exercés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en cas d'empêchement de ce juge ainsi que du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articles 64 et 65 sont applicables à la présente mesure.

A l'issue de la mesu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peut ordonner que la personne soit conduite devant lui, le cas échéant pour qu'il ordonne son incarcération provisoi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peut également demander à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aviser la personne qu'elle est convoquée devant lui à une date ultérieure puis de mettre fin à la rétention de la personne.

Article 712-17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élivrer un mandat d'amener contre un condamné placé sous son contrôle en cas d'inobservation par ce dernier des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Si le condamné est en fuite ou réside à l'étranger, il peut délivrer un mandat d'arrêt.

La délivrance du mandat d'arrêt suspend, jusqu'à son exécution, le délai d'exécution de la peine ou des mesures d'aménagement.

En cas d'urgence et d'empêchement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insi que du magistrat du siège qui le remplace, le mandat d'amener peut être délivr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en informe dès que possib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lorsqu'il n'a pas déjà été mis à exécution, ce mandat est caduc s'il n'est pas repris, dans le premier jour ouvrable qui suit,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i la personne est découverte, il est procéd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ci-aprè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rrestation est avisé dès le début de la rétention de la personne par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endant la rétention, qui ne peut durer plus de vingt-quatre heures, 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63-2 et 63-3.

La personne est conduite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au plus tard dans les vingt-quatre heures de son arrestation,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sièg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mpétent.

Après avoir vérifié son identité et lui avoir notifié le mandat, ce magistrat la présent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qui procèd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Si la présentation immédiat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st pas possible, la personne est présentée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Ce juge peut, sur les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jusqu'à sa comparution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qui doit intervenir dans les huit jours ou dans le mois qui suit, selon qu'il s'agit d'une procédure correctionnelle ou d'une procédure criminelle.

Si la personne est arrêtée à plus de 200 kilomètres du sièg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t qu'il n'est pas possible de la conduire dans le délai de vingt-quatre heures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mpétent en vertu du sixième alinéa, elle est conduit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son arrestation, qui vérifie son identité, lui notifie le mandat et reçoit ses éventuelles déclarations après l'avoir avertie qu'elle est libre de ne pas en faire. Ce magistrat met alors le mandat à exécution en faisant conduire la personne à la maison d'arrêt ; il en avis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yant délivré le mandat. Celui-ci ordonne le transfèrement de la personne, qui doit comparaître devant lui dans les quatre jours de la notification du mandat ; ce délai est porté à six jours en cas de transfèrement entre un département d'outre-mer et la France métropolitaine ou un autre département d'outre-mer.

Article 712-18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qui incombent au condamné faisant l'objet d'une mesure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extérieur ou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la suspension de la mesure.

A défaut de la tenue d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ar l'article 712-6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suivant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qui résulte de cette suspension, la personne est remise en liberté si elle n'est pas détenue pour une autre cause.

Ce délai est porté à un mois lorsque le débat contradictoire doit se faire devan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12-7.

Article 712-19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qui incombent au condamné faisant l'objet d'un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d'un sursis avec 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d'un suivi socio-judiciaire,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d'une suspension ou d'un fractionnement de peine ou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incarcération provisoire du condamné.

L'ordonnance d'incarcération provisoire peut être prise par le juge d'application des peines du lieu où se trouve le condamné.

A défaut de la tenue d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ar l'article 712-6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suivant l'incarcération du condamné, celui-ci est remis en liberté s'il n'est pas détenu pour une autre cause.

Ce délai est porté à un mois lorsque le débat contradictoire doit se faire devant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7.

Article 712-20

La viol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auxquelles il est astreint, commise pendant la durée d'exécution d'une des mesures, y compris d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ou 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mentionnées aux articles 712-6 et 712-7 peut donner lieu à la révocation ou au retrait de la mesure après la date d'expiration de celle-ci lorsque le juge ou la juridict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mpétent a été saisi ou s'est saisi à cette fin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un mois après cette date.

Article 712-21

Les mesures mentionnées aux articles 712-5, 712-6 et 712-7, à l'exception des réductions de peines n'entraînant pas de libération immédiate et des autorisations de sortie sous escortes, ne peuvent être accordées sans une expertise psychiatrique préalable à une personne condamnée pour une infraction pour laquelle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Cette expertise est réalisée par deux experts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le meurtre, l'assassinat ou le viol d'un mineur de quinze ans.

Cette expertise détermine si le condamné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Lorsqu'elles concernent les infractions violentes ou de nature sexuelle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les expertises psychiatriques ordonnées préalablement aux mesures d'aménagement des peines conformément au présent article doivent se prononcer spécialement sur le risque de récidive du condamné.

Constitue pour le condamné 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pouvant donner lieu, selon les cas, à la délivrance des mandats prévus par l'article 712-17, à la suspension de la mesure d'aménagement prévue par l'article 712-18, à l'incarcération provisoire prévue par l'article 712-19 ou au retrait ou à la révocation de la mesure prévu par l'article 712-20, le fait

de refuser de commencer ou de poursuivre le traitement prescrit par le médecin traitant et qui lui a été propos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Article 712-22

Lorsqu'elles se prononcent sur l'octroi d'une des mesures prévues aux articles 712-6 et 712-7,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dans le même jugement, sur la demande du condamné, le relever en tout ou partie, y compris en ce qui concerne la durée, d'une interdiction résultant de plein droit d'une condamnation pénale ou prononcée à titre de peine complémentaire, soit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ou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soit d'exercer une profession commerciale ou industrielle, de diriger, d'administrer, de gérer ou de contrôler à un titre quelconque,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our son propre compte ou pour le compte d'autrui, une entreprise commerciale ou industrielle ou une société commerciale. Cette décision peut également être pris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tatuant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préalablement à l'octroi d'une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afin de permettre ultérieurement son prononcé.

Elle peut être prise par ordonnance sauf opposition du ministère public.

Dans les mêmes conditions, les juridictions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vent également, dans les cas prévus par les deux premiers alinéas, exclure d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les condamnations qui font obstacle au projet d'aménagement de peines.

Article 712-23

Un décret précis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chapitre.

Ce décret précise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xpertise prévue par l'article 712-21 peut ne pas être ordonnée, avec l'accord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oit en raison de l'existence dans le dossier du condamné d'une précédente expertise, soit, pour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des infractions dont il fixe la liste, en cas de permission de sortir ou en raison de la personnalité de l'intéressé, soit en cas de délivrance du certificat médical visé à la seconde phrase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0-1-1.

Chapitre III :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aux fins d'exécution d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Section 1 : De la transmission et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en application de la décision-cadre du Conseil de l'Union européenne du 6 octobre 2006

Paragraphe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13

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une peine ou une mesure définitive ordonnée par une juridiction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ppelé Etat d'émission, à la suite d'une procédure portant sur une ou plusieurs infractions pénales, aboutissant à la privation permanente d'un ou plusieurs biens.

L'autorité judiciaire est compétente, selon les règles et dans les conditions déterminées par la présente section, pour transmettre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es autr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appelés Etats d'exécution, ou pour exécuter, sur leur demande, 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de biens.

Article 713-1

L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qui peuvent donner lieu à la transmission ou à l'exécution dans un autre Etat sont celles qui confisquent d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corporels ou incorporels, ainsi que tout acte juridique ou document attestant d'un titre ou d'un droit sur ce bien, au motif :

- 1° Qu'ils constituent l'instrument ou l'objet d'une infraction ;
- 2° Qu'ils constituent le produit d'une infraction ou correspondent en tout ou en partie à la valeur de ce produit ;
- 3° Qu'ils sont passibles de confiscation en application de toute autre disposition de la législation de l'Etat d'émission bien qu'ils ne soient pas l'instrument, l'objet ou le produit de l'infraction.

Article 713-2

Toute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accompagnée d'un certificat établi par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comprenant les mentions suivantes :

- 1° L'identification de l'Etat d'émission ;
- 2° L'identification de la juridiction de l'Etat d'émission ayant rendu la décision ;
- 3° L'identité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à l'encontre desquelles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 été rendue ;
- 4° Les données permettant d'identifier les biens faisant l'objet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dans l'Etat d'exécution, notamment la description précise de ces biens, leur localisation et la désignation de leur gardien ou le montant de la somme à confisquer ;
- 5° Les motifs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a description des faits constitutifs de l'infraction, la nature et la qualification juridique de l'infraction qui la justifie, y compris, le cas échéant, l'indication que ladite infraction entre, en vertu de la loi de l'Etat d'émission,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mentionnées aux troisième à trente-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95-23 et y est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
- 6° La description complète de l'infraction lorsque celle-ci n'entre pas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mentionnées au 5° ;
- 7° La mention que la décision a été rendue à titre définitif et n'est pas prescrite ;
- 8° La mention que la personne visée par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s'est vu dûment notifier la procédure engagée à son encontre et les modalités et délais de recours ;
- 9° L'éventuelle exécution partielle de la décision, y compris l'indication des montants déjà confisqués et des sommes restant à recouvrer ;
- 10° La possibilité d'appliquer dans l'Etat d'émission des peines de substitution et, le cas échéant, l'acceptation éventuelle de l'Etat d'émission pour l'application de telles peines, la nature de ces peines et la sanction maximale prévue pour chacune d'elles ;
- 11° La signature de l'autorité judiciaire de l'Etat d'émission ou celle de son représentant attestant l'exactitude d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le certificat.

1170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13-3

Le certificat doit être traduit dans la langue officielle ou dans 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 l'Etat d'exécution ou dans l'une des langues officielles des institutions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cceptées par cet Etat.

Article 713-4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ou la copie certifiée conforme de celle-ci et le certificat sont, sous réserve du deuxième alinéa, transmis par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directemen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exécut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t dans des conditions permettant à cette autorité d'en vérifier l'authenticité.

Lorsqu'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 effectué une déclaration à cet effet,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ou la copie certifiée conforme de celle-ci et le certificat sont expédiés par l'intermédiaire d'une ou plusieurs autorités centrales désignées par ledit Etat.

Sur demande d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la copie certifiée conforme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l'original du certificat sont adressés dans les meilleurs délais.

Toutes les communications s'effectuent directement entr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Paragraphe 2 : Dispositions relatives aux décisions de confiscation de bie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Article 713-5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qui a ordonné la confiscation établit le certificat y afférent et transmet la décision et le certificat, selon les modalités visées à l'article 713-4, à l'autorité compétente du ou des Etats compétent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13-6 à 713-10.

Cette transmission n'empêche pas la poursuite de l'exécution, en tout ou parti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e la confiscation.

Article 713-6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en principe transmise pour exécution à un seul Etat.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concerne des biens déterminés, le ministère public la transmet avec le certifica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exécution dans lequel il a des raisons de croire que se trouvent ces biens.

Article 713-7

Toutefois, si le ministère public a des raisons de croire que la confiscation d'un bien spécifique implique d'agir dans plusieurs Etats, ou qu'un ou plusieurs biens visés par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se trouvent dans différents Etats, il transmet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le certificat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e ces Etats.

Article 713-8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concerne une somme d'argent, le ministère public la transmet avec le certifica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ans lequel il a des raisons de croire que la personne physique ou morale possède des biens ou des revenus.

Toutefois, il peut adresser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à plusieurs Etats lorsqu'il estime, pour des raisons particulières, nécessaire de le faire.

Le montant total des sommes recouvrées dans plusieurs Etats, en exécution de cette décision, ne peut être supérieur au montant spécifié dans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rticle 713-9

S'il n'existe aucun moyen permettant de déterminer l'Etat dans lequel se trouvent les biens ou les revenus de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la décision a été rendue, le ministère public transmet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le certificat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ans lequel la personne concernée a sa résidence habituelle ou son siège.

Article 713-10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orte sur une somme d'argent et qu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exécution y a substitué la confiscation d'un bien, le consentement au transfert de ce bien est donné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1172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13-11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qui a ordonné la confiscation d'un bien informe immédiatement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exécut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de tout ce qui a pour effet soit de retirer à la décision son caractère exécutoire ou de soustraire son exécution à l'Etat d'exécution, soit de modifie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 été exécutée en partie, le ministère public précise le montant ou les biens restant à recouvrer.

Paragraphe 3 : Dispositions relatives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de bie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d'un autre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Article 713-12

Le tribunal correctionnel,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st compétent pour statuer sur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émanant d'une juridiction d'un autre Etat membre.

Article 713-13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le certificat sont transmi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13-4 ou adressé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correctionne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irect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u procureur général. Le tribunal correctionne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st celui du lieu où se situe l'un quelconque des biens confisqués ou, à défaut,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

Si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quel la demande a été adressée n'est pa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pour y donner suite, il la transmet sans délai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correctionnel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t en inform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Article 713-14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avec son avis,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la demande de reconnaissance et d'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rticle 713-15

Après s'être assuré de la régularité de la demande, le tribunal correctionnel statue sans délai su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rticle 713-16

S'il l'estime utile, le tribunal correctionnel entend, le cas échéant par commission rogatoire, le condamné ainsi que toute personne ayant des droits sur les biens qui ont fait l'objet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Ces personnes peuvent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Article 713-17

Le tribunal correctionnel peut surseoir à statuer lorsqu'il juge nécessaire la traduction de la décision ou lorsque le bien fait déjà l'objet soit d'une mesure de saisie ou de gel, soit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définitive dans le cadre d'une autre procédure.

Lorsqu'il sursoit à statuer, le tribunal correctionnel peut ordonner des mesures de saisi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484-1.

En cas de sursis à statue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informe sans délai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n précisant les motifs et, si possible, la durée du sursis à statuer.

Article 713-18

Dès que le motif du sursis à statuer n'existe plus, le tribunal correctionnel statue su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inform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713-19

Lors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envisage de refuser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sur le fondement de l'un des motifs visés aux 1°, 3° et 7° de l'article 713-20 ou à l'article

1174 프랑스 형사소송법

713-22, il en avise, avant de statuer,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et la met à même de produire ses observations.

Article 713-20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694-4,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refusée dans l'un des cas suivants :

- 1° Si le certificat n'est pas produit, s'il est établi de manière incomplète ou s'il ne correspond manifestement pas à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
- 2° Si une immunité y fait obstacle ou si le bien, par sa nature ou son statut, ne peut faire l'objet d'une confiscation selon la loi française ;
- 3°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se fonde sur des infractions pour lesquelles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la décision a été rendue a déjà été jugée définitivement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ou par celles d'un Etat autre que l'Etat d'émission, à condition,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it été exécutée, soit en cours d'exécution ou ne puisse plus être mise à exécution selon les lois de l'Etat de condamnation ;
- 4° S'il est établi 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 été émise dans le but de poursuivre ou de condamner une personne en raison de son sexe, de sa race, de sa religion, de son origine ethnique, de sa nationalité, de sa langue,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ou que l'exécution de ladite décision peut porter atteinte à la situation de cette personne pour l'une de ces raisons ;
- 5° Si la confiscation est fondée sur des faits qui ne constituent pas des infractions permettant, selon la loi française, d'ordonner une telle mesure ;
- 6° Si les droits d'un tiers de bonne foi rendent impossible, selon la loi français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
- 7° Si, selon le certificat,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la décision a été rendue n'a pas comparu en personne et n'était pas représentée lors de la procédure ayant abouti à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sauf si le certificat indique qu'elle a été informée de la procédure personnellement ou par l'intermédiaire de son représentant, conformément à

la loi de l'Etat d'émission, ou qu'elle a indiqué ne pas contester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

8° Si les faits sur lesquels la décision est fondée relèvent de la compétence des juridictions françaises et 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prescrite au regard de la loi française. Toutefois, le motif de refus prévu au 5° n'est pas opposable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concerne une infraction qui, en vertu de la loi de l'Etat d'émission, entre dans l'une des catégories d'infractions mentionnées aux troisième à trente-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95-23 et y est puni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également refusée, le cas échéant partiellement,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se fonde sur le motif visé au 3° de l'article 713-1.

Dans ce cas, il est fait 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713-24.

Article 713-21

Nonobstant les dispositions du 5° de l'article 713-20,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ne peut, en matière de taxes ou d'impôts, de douane et de change, être refusée au motif que la loi française ne prévoit pas le même type de taxes ou d'impôts ou le même type de réglementation en matière de taxes ou d'impôts, de douane et de change que la loi de l'Etat d'émission.

Article 713-22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peut être refusée dans l'un des cas suivants :

- 1°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fondée sur une procédure pénale relative à des infractions commises en tout ou partie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
- 2° Si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fondée sur une procédure pénale relative à des infractions qui ont été commises hors du territoire de l'Etat d'émission et que la loi française n'autorise pas la poursuite de ces faits lorsqu'ils sont commis hors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1176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13-23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orte sur une somme d'argent exprimée en devises, le tribunal correctionnel convertit le montant à confisquer en euros au taux de change en vigueur à la date à laquell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 été prononcée.

Article 713-24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s quatre alinéas suivants, le tribunal correctionnel ne peut ni appliquer des mesures qui se substitueraient à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ni modifier la nature du bien confisqué ou le montant faisant l'objet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orsque l'intéressé est en mesure de fournir la preuve de la confiscation, totale ou partielle, dans un autre Etat, le tribunal correctionnel, après consultation d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déduit intégralement du montant qui doit être confisqué en France toute fraction déjà recouvrée dans cet autre Etat en applica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orsqu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y consent, le tribunal correctionnel peut ordonner le paiement d'une somme d'argent correspondant à la valeur du bien en remplacement de la confiscation de celui-ci.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orte sur une somme d'argent qui ne peut être recouvrée, le tribunal correctionnel peut ordonner la confiscation de tout autre bien disponible dans la limite du montant de cette somme d'argent.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orte sur des biens qui ne pourraient être confisqués en France relativement aux faits commis, le tribunal correctionnel ordonne qu'elle soit exécutée dans les limites prévues par la loi française pour des faits analogues.

Article 713-25

Le refus d'exécuter 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de biens est motivé et notifié sans délai à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713-26

Lorsque l'endroit où se trouve le bien n'a pas été indiqué de manière assez précise dans le certifica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nsult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Lorsque le bien mentionné dans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a déjà été confisqué, a disparu, a été détruit ou ne peut être retrouvé à l'endroit indiqué dans le certificat ou lorsque le montant ne peut être recouvré et que la personne ne dispose d'aucun bie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d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a déci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713-27

Le tribunal correctionnel,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ordonner, selon les modalités de l'article 484-1, la saisie des biens lorsqu'un recours est formé contre la décision autorisant l'exécution de la confiscation ou lorsque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est différée par le ministère public.

Article 713-28

Si plusieurs décisions de confiscation rendues à l'encontre de la même personne portent soit sur une somme d'argent et que cette personne ne dispose pas en France de biens suffisants pour que toutes les décisions puissent être exécutées, soit sur le même bien spécifique, le tribunal correctionnel détermine la ou l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à exécuter en tenant compte de toutes les circonstances, dont l'existence éventuelle de mesures de gel concernant ces biens dans l'affaire, la gravité relative et le lieu de commission des infractions, ainsi que les dates auxquelles les différentes décisions ont été rendues et transmise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de cette décision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u ou des Etats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713-29

Le condamné peut faire appel de la décision autorisant en France l'exécution de la confiscation. Celui qui détient le bien objet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ou toute autre personne qui prétend avoir un droit sur ce bien peut, par voie de requête remise au greffe de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territorialement compétente dans les dix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mise à

1178 프랑스 형사소송법

exécution de la décision considérée, former un recours à l'encontre de cette dernière.

En cas de recours contr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e procureur général informe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du recours formé.

Le recours est suspensif mais ne permet pas de contester les raisons substantielles qui ont conduit au prononcé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La cour peut, par une décision qui n'est susceptible d'aucun recours, autoriser l'Etat d'émission à intervenir à l'audience par l'intermédiaire d'une personne habilitée par ledit Etat à cet effet ou, le cas échéant, directement par l'intermédiaire des moyens de télécommunications prévus à l'article 706-71.

Lorsque l'Etat d'émission est autorisé à intervenir, il ne devient pas partie à la procédure.

Article 713-30

Le ministère public près la juridiction ayant statué poursuit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autorisation de confiscation lorsque celle-ci est définitiv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7 et inform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de la mise à exécution de la décision.

Article 713-31

Le ministère public peut différer l'exécution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dans les cas suivants :

- 1° Lorsqu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orte sur une somme d'argent et que le montant recouvré risque d'être supérieur au montant spécifié dans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n raison de l'exécution de celle-ci dans plusieurs Etats ;
- 2° Lorsqu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risque de nuire à une enquête ou une procédure pénales en cours.

Le ministère public qui diffèr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n informe sans délai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en lui précisant les motifs du report et, si possible, sa durée prévisible.

Dès que le motif de report n'existe plus, le ministère public exécut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en inform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Article 713-32

Les biens autres que des sommes d'argent, confisqués en applica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euvent être vendus selon les dispositions du code du domaine de l'Etat. Les sommes d'argent recouvrées et le produit de la vente des biens confisqués sont dévolus à l'Etat français lorsque le montant recouvré est inférieur à 10 000 €, et dévolus pour moitié à l'Etat français et pour moitié à l'Etat d'émission dans les autres cas.

Les frais d'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ne sont pas imputés sur le montant dévolu à l'Etat d'émission.

Toutefois, lorsque des frais élevés ou exceptionnels ont dû être supportés, des indications détaillées sur ces frais peuvent être communiquées à l'Etat d'émission afin d'en obtenir le partage.

Les biens confisqués qui ne sont pas vendus sont dévolus à l'Etat français sauf accord contraire avec l'Etat d'émission.

Article 713-33

Lorsque la personne à l'encontre de laquelle la décision a été rendue est en mesure de justifier de l'exécution, totale ou partielle, de la confiscation dans un autre Etat, le ministère public consult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par tous les moyens appropriés.

Toute partie du montant recouvré en applica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dans un autre Etat est déduite intégralement du montant qui doit être recouvré.

Article 713-34

Le ministère public met fin à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dès qu'il est informé de toute décision ou mesure qui a pour effet de retirer à la décision son caractère exécutoire ou de soustraire l'exécution de la décision aux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Article 713-35

Lorsque la décision est amnistiée par la loi française ou fait l'objet d'une grâce accordée en France, le ministère public met fin à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et en informe

dans les meilleurs délais par tout moyen laissant une trace écrite l'autorité compétente de l'Etat d'émission.

Section 2 : De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prononcées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Article 713-36

En l'absence de convention internationale en disposant autrement, les articles 713-37 à 713-40 sont applicables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confiscation prononcées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étrangères, tendant à la confiscation d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quelle qu'en soit la nature, ayant servi ou qui étaient destinés à commettre l'infraction ou qui paraissent en être le produit direct ou indirect ainsi que de tout bien dont la valeur correspond au produit de cette infraction.

Article 713-37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694-4, l'exécution de la confiscation est refusée :

- 1° Si les faits à l'origine de la demande ne sont pas constitutifs d'une infraction selon la loi française
- 2° Si les biens sur lesquels elle porte ne sont pas susceptibles de faire l'objet d'une confiscation selon la loi française ;
- 3° Si la décision étrangère a été prononcée dans des conditions n'offrant pas de garanties suffisantes au regard de la protection des libertés individuelles et des droits de la défense ;
- 4° S'il est établi que la décision étrangère a été émise dans le but de poursuivre ou de condamner une personne en raison de son sexe, de sa race, de sa religion, de son origine ethnique, de sa nationalité, de sa langue,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orientation sexuelle ;
- 5° Si le ministère public français avait décidé de ne pas engager de poursuites pour les faits à raison desquels la confiscation a été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étrangère ou si ces faits ont déjà été jugés définitivement par les autorités judiciaires françaises ou

par celles d'un Etat autre que l'Etat demandeur, à condition, en cas de condamnation, que la peine ait été exécutée, soit en cours d'exécution ou ne puisse plus être ramenée à exécution selon les lois de l'Etat de condamnation ;

6° Si elle porte sur une infraction politique.

Article 713-38

L'exécution de la confiscation ordonnée par une autorité judiciaire étrangèr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13-36 est autorisé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xécution est autorisée à la condition que la décision étrangère soit définitive et exécutoire selon la loi de l'Etat requérant.

L'autorisation d'exécution ne peut avoir pour effet de porter atteinte aux droits licitement constitués au profit des tiers, en application de la loi française, sur les biens dont la confiscation a été prononcée par la décision étrangère.

Toutefois, si cette décision contient d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des tiers, elle s'impose aux juridictions françaises à moins que les tiers n'aient pas été mis à même de faire valoir leurs droits devant la juridiction étrangère dans des conditions analogues à celles prévues par la loi française.

Le refus d'autoriser l'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confiscation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étrangère emporte de plein droit mainlevée de la saisie.

Il en est de même lorsque les poursuites engagées à l'étranger ont pris fin ou n'ont pas conduit à la confiscation des biens saisis.

Article 713-39

S'il l'estime utile, le tribunal correctionnel entend, le cas échéant par commission rogatoire, le propriétaire du bien saisi, la personne condamnée ainsi que toute personne ayant des droits sur les biens qui ont fait l'objet de la décision étrangère de confiscation.

Les personnes mentionnées à l'alinéa précédent peuvent se faire représenter par un avocat.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lié par les constatations de fait de la décision étrangère.

1182 프랑스 형사소송법

Si ces constatations sont insuffisantes, il peut demander par commission rogatoire à l'autorité étrangère ayant rendu la décision, la fourniture, dans un délai qu'il fixe, des informations complémentaires nécessaires.

Article 713-40

L'exécution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une décision de confiscation émanant d'une juridiction étrangère entraîne transfert à l'Etat français de la propriété des biens confisqués, sauf s'il en est convenu autrement avec l'Etat requérant.

Les biens ainsi confisqués peuvent être vendus selon les dispositions du code du domaine de l'Etat.

Les modalités du partage éventuel du produit de la vente des avoirs confisqués à la demande d'un Etat étranger sont définies par décret.

Si la décision étrangère prévoit la confiscation en valeur, la décision autorisant son exécution rend l'Etat français créancier de l'obligation de payer la somme d'argent correspondante. A défaut de paiement, l'Etat fait recouvrer sa créance sur tout bien disponible à cette fin.

Article 713-41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section, le tribunal correctionnel compétent est celui du lieu de l'un des biens objet de la demande ou, à défaut, 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

Titre II : De la détention

Chapitre Ier : De l'exécution de la détention provisoire

Article 714

Les personnes mise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soumis à la détention provisoire la subissent dans une maison d'arrêt.

Il y a une maison d'arrêt près de chaqu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haque cour d'appel

et de chaque cour d'assises, sauf auprès des tribunaux et des cours qui sont désignés par décret. Dans ce dernier cas, le décret détermine la ou les maisons d'arrêt où sont retenus les prévenus, appelants ou accusés ressortissant à chacune de ces juridictions.

Article 715

Le juge d'instruction,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le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ainsi 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procureur général, peuvent donner tous les ordres nécessaires soit pour l'instruction, soit pour le jugement, qui devront être exécutés dans les maisons d'arrêt.

Article 715-1

Toutes communications et toutes facilités compatibles avec les exigences de la sécurité de la prison sont accordées aux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pour l'exercice de leur défense.

Article 716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soumis à la détention provisoire sont placés en cellule individuelle.

Il ne peut être dérogé à ce principe que dans les cas suivants :

- 1° Si les intéressés en font la demande ;
- 2° Si leur personnalité justifie, dans leur intérêt, qu'ils ne soient pas laissés seuls ;
- 3° S'ils ont été autorisés à travailler ou à suivre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scolaire et que les nécessités d'organisation l'imposent.

Lorsque les personnes mises en examen, prévenus et accusés sont placés en cellule collective, les cellules doivent être adaptées au nombre des personnes détenues qui y sont hébergées.

Celles-ci doivent être aptes à cohabiter.

Leur sécurité et leur dignité doivent être assurées.

Chapitre II : De l'exécution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716-1

La peine d'un jour d'emprisonnement est de vingt-quatre heures.

Celle d'un mois est de trente jours.

Celle de plus d'un mois se calcule de quantième en quantième.

Article 716-2

La durée de tout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st comptée du jour où le condamné est détenu en vertu d'une condamnation définitive.

Article 716-3

Le condamné dont l'incarcération devrait prendre fin un jour de fête légale ou un dimanche sera libéré le jour ouvrable précédent.

Article 716-4

Quand il y a eu détention provisoire à quelque stade que ce soit de la procédure, cette détention est intégralement déduite de la durée de la peine prononcée ou, s'il y a lieu, de la durée totale de la peine à subir après confusion.

Il en est de même, s'agissant d'une détention provisoire ordonnée dans le cadre d'une procédure suivie pour les mêmes faits que ceux ayant donné lieu à condamnation, si cette procédure a été ultérieurement annulée.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sont également applicables à la privation de liberté subie en exécution d'un mandat d'amener ou d'arrêt, à l'incarcération subie hors de France en 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ou sur la demande d'extradition et à l'incarcération subie en application du septième alinéa de l'article 712-17, de l'article 712-19 et de l'article 747-3.

Article 716-5

Afin d'assurer l'exécution d'une peine d'emprisonnement ou de réclus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procureur général peuvent autoriser les agents de la force publique à pénétrer au domicile de la personne condamnée afin de se saisir de celle-ci.

Cependant, les agents ne peuvent s'introduire au domicile de la personne avant 6 heures et après 21 heures.

Toute personne arrêtée en vertu d'un extrait de jugement ou d'arrêt portant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ou de réclusion peut être retenue vingt-quatre heures dans un local de police ou de gendarmerie, aux fins de vérifications de son identité, de sa situation pénale ou de sa situation personnel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procureur général, en est informé dès le début de la mesure. La personne arrêtée est immédiatement avis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qu'elle peut exercer les droits prévus par les articles 63-2, 63-3 et 63-4 (premier et deuxième alinéa).

Lorsque, à l'issue de la mesur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procureur général, envisage de ramener la peine à exécution, il peut ordonner que la personne soit conduite devant lui. Après avoir recueilli les observations éventuelles de la personn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ui notifie s'il y a lieu le titre d'écr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procureur général, peut également demander à un officier ou un agent de police judiciaire d'aviser la personne qu'elle est convoqué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ordonner qu'elle soit conduite devant ce magistrat, lorsque celui-ci doit être saisi pour décider d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peine.

Article 717

Les condamnés purgent leur peine dans un établissement pour peines.

Les condamnés à l'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peuvent, cependant, à titre exceptionnel, être maintenus en maison d'arrêt et incarcérés, dans ce cas, dans un quartier distinct, lorsque des conditions tenant à la préparation de leur libération, leur situation familiale ou leur personnalité le justifient.

Peuvent également, dans les mêmes conditions, être affectés, à titre exceptionnel, en maison

d'arrêt, les condamnés auxquels il reste à subir une peine d'une durée inférieure à un an. Toute personne condamnée détenue en maison d'arrêt à laquelle il reste à subir une peine d'une durée supérieure à deux ans peut, à sa demande, obtenir son transfèrement dans un établissement pour peines dans un délai de neuf mois à compter du jour où s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Cependant, elle peut être maintenue en maison d'arrêt lorsqu'elle bénéficie d'un aménagement de peine ou est susceptible d'en bénéficier rapidement.

Article 717-1 A

Dans l'année qui suit sa condamnation définitive, la personne condamnée à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53-13 est placée, pour une durée d'au moins six semaines,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permettant de déterminer les modalités de la prise en charge sociale et sanitaire au cours de l'exécution de sa peine.

Au vu de cette évalua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éfinit un parcours d'exécution de la peine individualisé.

Si la personne souffre de troubles psychiatriques, sur indication médicale, elle fait l'objet d'une prise en charge adaptée à ses besoins, le cas échéant en hospitalisation.

Article 717-1

Dès leur accueil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t à l'issue d'une période d'observation pluridisciplinaire, les personnes détenues font l'objet d'un bilan de personnalité.

Un parcours d'exécution de la peine est élaboré par le chef d'établissement et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our les condamnés, en concertation avec ces derniers, dès que leur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e projet initial et ses modifications ultérieures sont portés à la connaissanc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a répartition des condamnés dans les prisons établies pour peines s'effectue compte tenu de leur catégorie pénale, de leur âge, de leur état de santé et de leur personnalité.

Leur régime de détention est déterminé en prenant en compte leur personnalité, leur santé, leur dangerosité et leurs efforts en matière de réinsertion sociale.

Le placement d'une personne détenue sous un régime de détention plus sévère ne saurait porter atteinte aux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Dans des conditions prévu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es personnes condamnées pour une infraction pour laquelle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exécutent leur peine dans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permettant d'assurer un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adapté.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63-7,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oposer à tout condamné relevant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de suivre un traitement pendant la durée de sa détention, si un médecin estime que cette personn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el traitement. Ce traitement peut être celui prévu par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L. 37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L. 3711-1, L. 3711-2 et L. 37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sont applicables au médecin traitant du condamné détenu, qui délivre à ce dernier des attestations de suivi du traitement afin de lui permettre d'en justifier auprè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l'obtention des réductions de peine prévues par l'article 721-1.

Deux ans avant la date prévue pour la libération d'un condamné susceptible de relever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53-13, celui-ci est convoqu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uprès duquel il justifie des suites données au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adapté qui a pu lui être proposé en application des trois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Au vu de ce bila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ui propose, le cas échéant, de suivre un traitement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pécialisé.

Les agents et collaborateurs du service public pénitentiaire transmettent aux personnels de santé chargés de dispenser des soins aux détenus les informations utiles à la mise en oeuvre des mesures de protection des personnes.

Article 717-1-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onne son avis, sauf urgence, sur le transfert des condamnés d'un établissement à l'autre.

1188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17-2

Les condamnés sont soumis dans les maisons d'arrêt à l'emprisonnement individuel du jour et de nuit, et dans les établissements pour peines, à l'isolement de nuit seulement, après avoir subi éventuellement une période d'observation en cellule.

Il ne peut être dérogé à ce principe que si les intéressés en font la demande ou si leur personnalité justifie que, dans leur intérêt, ils ne soient pas laissés seuls, ou en raison des nécessités d'organisation du travail.

Article 717-3

Les activités de travail e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générale sont prises en compte pour l'appréciation des gages de réinsertion et de bonne conduite des condamnés.

Au sein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toutes dispositions sont prises pour assur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ou générale aux personnes incarcérées qui en font la demande.

Les rela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incarcérées ne font pas l'objet d'un contrat de travail. Il peut être dérogé à cette règle pour les activités exercées à l'extérieur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Les règles relatives à la répartition des produits du travail des détenus sont fixées par décret. Le produit du travail des détenus ne peut faire l'objet d'aucun prélèvement pour frais d'entretien e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défini à l'article L. 3231-2 du code du travail.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icle 718

Les personnes détenues peuvent travailler pour leur propre compte avec l'autorisation du chef d'établissement.

Article 719

Les députés et les sénateurs ainsi que l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élus en France sont autorisés à visiter à tout moment les locaux de garde à vue, les centres de rétention, les zones d'attente et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Article 719-1

Selon des modalités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identité et l'adresse des personnes condamnées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sont communiquées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aux services de police ou aux unités de gendarmerie du lieu de résidence des intéressés lorsque leur incarcération prend fin.

Section 2 : De la suspension et du fractionnement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Article 720-1

En matière correctionnelle, lorsqu'il reste à subir par la personne condamnée une peine d'emprisonnemen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cette peine peut, pour motif d'ordre médical, familial, professionnel ou social et pendant une période n'excédant pas quatre ans, être suspendue ou exécutée par fractions, aucune de ces fractions ne pouvant être inférieure à deux jours. La décision est pris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Ce juge peut décider de soumettre le condamné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Lorsque l'exécution fractionnée de la peine d'emprisonnement a été décidé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27 du code pénal, cette décision peut être modifi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Article 720-1-1

Sauf s'il existe un risque grave de renouvellement de l'infraction, la suspension peut également être ordonnée, quelle que soit la nature de la peine ou la durée de la peine restant à subir,

et pour une durée qui n'a pas à être déterminée, pour les condamnés dont il est établi qu'ils sont atteints d'une pathologie engageant le pronostic vital ou que leur état de santé est durablement incompatible avec le maintien en détention, hors les cas d'hospitalisation des personnes détenues en établissement de santé pour troubles mentaux.

La suspension ne peut être ordonnée que si deux expertises médicales distinctes établissent de manière concordante que le condamné se trouve dans l'une des situations énoncées à l'alinéa précédent.

Toutefois, en cas d'urgence, lorsque le pronostic vital est engagé, la suspension peut être ordonnée au vu d'un certificat médical établi par le médecin responsable de la structure sanitaire dans laquelle est pris en charge le détenu ou son remplaçant.

Lorsqu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rononcée es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dix ans ou que, quelle que soit la peine initialement prononcée, la durée de déten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trois ans, cette suspension est ordonn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ans les autres cas, elle est prononcée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7.

La juridiction qui accorde une suspension de la pein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peut décider de soumettre le condamné à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à tout moment ordonner une expertise médicale à l'égard d'un condamné ayant bénéficié d'une mesure de suspension de peine en 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ordonner qu'il soit mis fin à la suspension si les conditions de celle-ci ne sont plus remplies.

Il en est de même si le condamné ne respecte pas les obliga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ou s'il existe de nouveau un risque grave de renouvellement de l'infraction.

La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pris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Si la suspension de peine a été ordonnée pour une condamnation prononcée en matière criminelle,

une expertise médicale destinée à vérifier que les conditions de la suspension sont toujours remplies doit intervenir tous les six moi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20-2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ection 3 : De la période de sûreté

Article 720-2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a suspension ou le fractionnement de la peine, le placement à l'extérieur, les permissions de sortir, la semi-liberté et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ne sont pas applicables pendant la durée de la période de sûreté prévue à l'article 132-23 du code pénal. Sauf s'il en est décidé autrement par le décret de grâce, la commutation ou la remis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assortie d'une période de sûreté entraîne de plein droit le maintien de cette période pour une durée globale qui correspond à la moitié de la peine résultant de cette commutation ou remise, sans pouvoir toutefois excéder la durée de la période de sûreté attachée à la peine prononcée.

Article 720-4

Lorsque le condamné manifeste des gage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à titre exceptionnel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7, décider qu'il soit mis fin à la période de sûreté prévue par l'article 132-23 du code pénal ou que sa durée soit réduite.

Toutefois, lorsque la cour d'assises a décidé de porter la période de sûreté à trente an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s articles 221-3 et 221-4 du code pénal,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 peut réduire la durée de la période de sûreté ou y mettre fin qu'après que le condamné a subi une incarcér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vingt ans. Dans le cas où la cour d'assises a décidé qu'aucune des mesure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23 du code pénal ne pourrait être accordée au condamné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 peut accorder l'une de ces mesures que si le condamné

1192 프랑스 형사소송법

a subi une incarcération d'une durée au moins égale à trente ans.

Les décisions prévues par l'alinéa précédent ne peuvent être rendues qu'après une expertise réalisée par un collège de trois experts médicaux inscrits sur la liste des experts agréés près la Cour de cassation qui se prononcent sur l'état de dangerosité du condamné.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32,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ononcer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sans limitation dans le temps.

Article 720-5

En cas de condamnation assortie d'une période de sûre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quinze ans, auc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ne pourra être accordée avant que le condamné ait été placé pendant une période d'un an à trois ans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a semi-liberté ou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alors ordonné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7, sauf si la peine restant à subir par le condamné est inférieure à trois ans.

Section 4 : Des réductions de peines

Article 721

Chaque condamné bénéficie d'un crédit de réduction de peine calculé sur la durée de la condamnation prononcée à hauteur de trois mois pour la première année, de deux mois pour les années suivantes et, pour une peine de moins d'un an ou pour la partie de peine inférieure à une année pleine, de sept jours par mois ; pour les peines supérieures à un an, le total de la réduction correspondant aux sept jours par mois ne peut toutefois excéder deux mois.

Lorsque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crédit de réduction de peine est calculé à hauteur de deux mois la première année, d'un mois pour les années suivantes et, pour une peine de moins d'un an ou pour la partie de peine inférieure à une année pleine, de cinq jours par mois ; pour les peines supérieures à un an, le total de la réduction correspondant aux cinq jours par mois ne peut toutefois excéder un mois.

Il n'est cependant pas tenu compt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linéa pour déterminer la date à partir de laquelle 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ccordée au condamné, cette date étant fixée par référence à un crédit de réduction de peine qui serait calcul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En cas de mauvaise conduite du condamné en déten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être saisi par le chef d'établissement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retrait, à hauteur de trois mois maximum par an et de sept jours par mois, de cette réduction de peine.

Il peut également ordonner le retrait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les crimes ou délits, commis sur un mineur, de meurtre ou assassinat, torture ou actes de barbarie, viol, agression sexuelle ou atteinte sexuelle et qu'elle refuse pendant son incarcération de suivre le traitement qui lui est propos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ur avis médical,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17-1 ou 763-7.

Sa décision est pris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12-5.

Lorsque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retrait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est alors de deux mois maximum par an et de cinq jours par mois.

En cas de nouvell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our un crime ou un délit commis par le condamné après sa libération pendant une période égale à la durée de la réduction résultant des dispositions du premier ou du deuxième alinéa et, le cas échéant, du trois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la juridiction de jugement peut ordonner le retrait de tout ou partie de cette réduction de peine et la mise à 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correspondant, qui n'est pas confondu avec celui résultant de la nouvelle condamnation.

Lors de sa mise sous écrou, le condamné est informé par le greffe de la date prévisible de libération compte tenu de la réduction de peine prévue par le premier alinéa, des possibilités de retrait, en cas de mauvaise conduite ou de commission d'une nouvelle infraction après sa libération, de tout ou partie de cette réduction.

Cette information lui est à nouveau communiquée au moment de sa libération.

Article 721-1

Une réduction supplémentaire de la peine peut être accordée aux condamnés qui manifestent des effort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notamment en passant avec succès un examen scolaire, universitaire ou professionnel traduisant l'acquisition de connaissances nouvelles, en justifiant de progrès réels dans le cadre d'un enseignement ou d'une formation, en suivant une thérapie destinée à limiter les risques de récidive ou en s'efforçant d'indemniser leurs victime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ucune réduction supplémentaire de la peine ne peut être accordée à une personne condamnée pour un crime ou un délit pour lequel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qui refuse pendant son incarcération de suivre le traitement qui lui est propos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17-1 et 763-7.

Cette réduction, accord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 peut excéder,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deux mois par année d'incarcération ou quatre jours par mois lorsque la durée d'incarcéra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à une année.

Si le condamné n'est pa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ces limites sont respectivement portées à trois mois et à sept jours.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les crimes ou délits, commis sur un mineur, de meurtre ou assassinat, torture ou actes de barbarie, viol, agression sexuelle ou atteinte sexuelle, la réduction ne peut excéder deux mois par an ou quatre jours par mois ou, si elle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un mois par an ou deux jours par mois, dès lors qu'elle refuse les soins qui lui ont été proposés.

Elle est prononcée en une seule fois si l'incarcération est inférieure à une année et par fraction annuelle dans le cas contraire.

Sauf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ise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personnes condamn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si, lorsque leur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e casier judiciaire faisait mention d'une telle condamnation.

Article 721-2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ordonner que le condamné ayant bénéficié d'une ou plusieurs des réductions de peines prévues par les articles 721 et 721-1 soit soumis après sa libération à l'interdiction de recevoir la partie civile ou la victime, de la rencontrer ou d'entrer en relation avec elle de quelque façon que ce soit, pendant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le total des réductions de peines dont il a bénéficié. Cette décision est prise préalablement à la libération du condamné, le cas échéant en même temps que lui est accordée la dernière réduction de peine.

L'interdiction mentionnée à l'alinéa précédent peut être accompagnée de l'obligation d'indemniser la partie civile.

En cas d'inobserv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retirer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s réductions de peine dont il a bénéficié et ordonner sa réincarcéra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sont applicables.

Article 721-3

Une réduction de peine exceptionnelle, dont le quantum peut aller jusqu'au tiers de la peine prononcée, peut être accordée aux condamnés dont les déclarations faites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antérieurement ou postérieurement à leur condamnation ont permis de faire cesser ou d'éviter la commission d'une infraction mentionnée aux articles 706-73 et 706-74.

Lorsque ces déclarations ont été faites par des condamnés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une réduction exceptionnelle du temps d'épreuve prévu au neuvième alinéa de l'article 729, pouvant aller jusqu'à cinq années, peut leur être accordée.

Ces réductions exceptionnelles sont accordées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12-7.

**Section 5 : Du placement à l'extérieur, de la semi-liberté, des permissions de sortir
et des autorisations de sortie sous escorte**

Article 723

Le condamné admis au bénéfice du placement à l'extérieur est astreint, sou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à exercer des activités en dehors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e régime de semi-liberté est défini par l'article 132-26 du code pénal.

Un décret détermine les conditions auxquelles ces diverses mesures sont accordées et appliquées.

Article 723-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évoir que la peine s'exécutera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soit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soit lorsqu'il reste à subir par le condamné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ubordonner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du condamné à l'exécution, à titre probatoire, d'une mesure de semi-liberté ou de placement à l'extérieur, pour une durée n'excédant pas un an.

La mesure de semi-liberté ou de placement à l'extérieur peut être exécutée un an avant la fin du temps d'épreuve prévu à l'article 729.

Article 723-2

Lorsqu'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25 du code pén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fixe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par ordonnance non susceptible de recours, dans un délai maximum de quatre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exécutoire.

Si les conditions qui ont permis au tribunal de décider que la peine serait subie sous le régime de la semi-liberté ou du placement à l'extérieur ne sont plus remplies, si le condamné ne satisfait pas aux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ou s'il fait preuve de mauvaise conduite, le bénéfice

de la mesure peut être retir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ar une décision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Si la personnalité du condamné ou les moyens disponibles le justifi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substituer la mesure de semi-liberté à la mesure de placement à l'extérieur et inversement, ou substituer à l'une de ces mesures cell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723-3

La permission de sortir autorise un condamné à s'absenter d'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endant une période de temps déterminée qui s'impute sur la durée de la peine en cours d'exécution.

Elle a pour objet de préparer la réinsertion professionnelle ou sociale du condamné, de maintenir ses liens familiaux ou de lui permettre d'accomplir une obligation exigeant sa présence.

Article 723-4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ubordonner l'octroi au condamné du placement à l'extérieur, de la semi-liberté ou de la permission de sortir au respect d'une ou plusieurs obligations ou interdic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Article 723-5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434-29 du code pénal, en cas de condamnation pour un crime ou un délit volontaire commis à l'occasion d'une permission de sortir, la juridiction peut décider que le condamné perdra le bénéfice des réductions de peine qui lui ont été accordées antérieurement.

Article 723-6

Tout condamné peut, dans les conditions de l'article 712-5, obtenir, à titre exceptionnel, une autorisation de sortie sous escorte.

Section 6 :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rticle 723-7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prévoir que la peine s'exécutera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éfini par l'article 132-26-1 du code pénal soit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soit lorsqu'il reste à subir par le condamné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ont la durée totale n'excède pas deux ans.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ubordonner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du condamné à l'exécution, à titre probatoire, d'une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our une durée n'excédant pas un an.

La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être exécutée un an avant la fin du temps d'épreuve prévu à l'article 729.

Lorsque le lieu désign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st pas le domicile du condamné,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ne peut être prise qu'avec l'accord du maître des lieux, sauf s'il s'agit d'un lieu public.

Article 723-7-1

Lorsqu'il a été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26-1 du code pén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fixe les modalités d'exécution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ar une ordonnance non susceptible de recours dans un délai maximum de quatre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exécutoire.

Si les conditions qui ont permis au tribunal de décider que la peine serait subie sous le régim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ne sont plus remplies, si le condamné ne satisfait pas aux interdictions ou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s'il fait preuve de mauvaise conduite, s'il refuse une modification nécessaire des conditions d'exécution ou s'il en fait la demande, le bénéfic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peut être retir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ar une décision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Si la personnalité du condamné ou les moyens disponibles le justifi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substituer à la mesure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une mesure de semi-liberté ou de placement à l'extérieur.

Article 723-8

Le contrôle de l'exécution de la mesure est assuré au moyen d'un procédé permettant de détecter à distance la présence ou l'absence du condamné dans le seul lieu désign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chaque période fixée.

La mise en oeuvre de ce procédé peut conduire à imposer à la personne assignée le port, pendant toute la duré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un dispositif intégrant un émetteur.

Le procédé utilisé est homologué à cet effet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La mise en oeuvre doit garantir le respect de la dignité, de l'intégrité et de la vie privée de la personne.

Article 723-9

La personn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placée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elle est assignée.

Le contrôle à distanc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est assuré par des fonctionnaire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qui sont autorisés, pour l'exécution de cette mission, à mettre en oeuvre un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nominatives.

La mise en oeuvre du dispositif technique permettant le contrôle à distance peut être confiée à une personne de droit privé habilitée dans des condi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ans la limite des périodes fixées dans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es agents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chargés du contrôle peuvent se rendre sur le lieu de l'assignation pour demander à rencontrer le condamné.

Ils ne peuvent toutefois pénétrer au domicile de la personne chez qui le contrôle est pratiqué sans l'accord de celle-ci.

Ces agents font aussitôt rapport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eurs diligences.

1200 프랑스 형사소송법

Les services de police ou de gendarmerie peuvent toujours constater l'absence irrégulière du condamné et en faire rapport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723-10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soumettre la personne placé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ux mesure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3 à 132-46 du code pénal.

Il peut en particulier soumettre le condamné à l'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contrôle ou obliga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Article 723-1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et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odifier les conditions d'exécution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ainsi que les mesures prévues à l'article 723-10.

Article 723-12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à tout moment désigner un médecin afin que celui-ci vérifie que la mise en oeuvre du procédé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3-8 ne présente pas d'inconvénient pour la santé du condamné.

Cette désignation est de droit à la demande du condamné.

Le certificat médical est versé au dossier.

Article 723-13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retirer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soit en cas d'inobservation des interdictions ou obligations prévues aux articles 132-26-2 et 132-26-3 du code pénal, d'inconduite notoire, d'inobservation des mesure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23-10 du présent code, de nouvelle condamnation ou de refus par le condamné d'une modification nécessaire des conditions d'exécution, soit à la demande du condamné.

La décision est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En cas de retrait de la décision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e condamné subit, selon les dispositions de la décision de retrait,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 la peine qui lui restait à accomplir au jour de so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Le temps pendant lequel il a été placé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compte toutefois pour l'exécution de sa peine.

Article 723-13-1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 la présente section.

Section 7 : Des procédures simplifiées d'aménagement des peines

Article 723-14

Les personnes condamnées à de courtes peines d'emprisonnement, qu'elles soient libres ou incarcérées, peuvent bénéficier de procédures simplifiées d'aménagement de ces peines dans les conditions et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aux articles 723-15 à 723-27.

Ces procédures ne sont pas exclusives de l'application des articles 712-4 et 712-6.

Un décret détermin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et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 la présente section.

Paragraphe 1 :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condamnés libres

Article 723-15

Les personnes non incarcérées, condamnées à une peine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d'emprisonnement ou pour lesquelles la durée de la déten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ou pour lesquelles, en cas de cumul de condamnations, le total des peines d'emprisonnement prononcées ou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bénéficient, dans la mesure du possible et si leur personnalité et leur situation le permettent, suivant la procédure prévue au présent paragraphe, d'une semi-liberté, d'un placement à l'extérieur, d'un

1202 프랑스 형사소송법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d'un fractionnement ou d'une suspension de peines,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ou de la conversion prévue à l'article 132-57 du code pénal.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linéa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Préalablement à la mise à exécution de la ou des condamnations, le ministère public inform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cette ou de ces décisions en lui adressant toutes les pièces utiles, parmi lesquelles une copie de la ou des décisions et le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de l'intéressé.

Sauf s'il a déjà été avisé de ces convocations à l'issue de l'audience de jugement en application de l'article 474 du présent code, le condamné est alor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voqué en premier lieu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uis devant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ans des délais qui ne sauraient être respectivement supérieurs à trente et à quarante-cinq jours à compter de leur information par le ministère public, afin de détermin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sa peine les mieux adaptées à sa personnalité et à s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Article 723-15-1

Si, à l'issue de la convocation, une mesure d'aménagement ou la conversion de la peine lui paraît possible et si l'intéressé en est d'accord,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rdonne cette mesure ou cette convers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premier ou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6.

Si le juge ne dispose pas des éléments d'information suffisants pour ordonner immédiatement cette mesure ou cette conversion, il peut charger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d'examiner les modalités d'exécution de la décision qu'il envisage de prendre et, le cas échéant, de lui présenter une autre proposition d'aménagement ou de conversion, dans 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cette saisine.

Au vu du rapport motiv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il peut ordonner l'aménagement ou la conversion de la peine du condamn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x premier ou deux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6.

Article 723-15-2

Si le condamné ne souhaite pas bénéficier d'un aménagement ou d'une conversion de sa peine ou si, au vu du rapport motiv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un tel aménagement ou une telle conversion ne lui paraît pas possib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fixer la date d'incarcération.

A défaut de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s quatre mois suivant la communication de la copie de la décision, ainsi que dans les cas prévus par l'article 723-16, le ministère public peut ramener la peine à exécution.

Si, sauf motif légitime ou exercice des voies de recours, la personne ne se présente pas aux convocation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informe le ministère public qui ramène la peine à exécution.

Article 723-16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23-15, en cas d'urgence motivée soit par un risque de danger pour les personnes ou les biens établi par la survenance d'un fait nouveau, soit par l'incarcération de la personne dans le cadre d'une autre procédure, soit d'un risque avéré de fuite du condamné, le ministère public peut mettre la peine à exécution e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Il en informe immédiatem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i celui-ci a été saisi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3-15.

Article 723-17

Lorsqu'une condamn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723-15 n'a pas été mise à exécution dans le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e condamné peut sais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vue de faire l'objet d'une des mesure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12-6, même s'il s'est vu opposer un refus antérieur, et cette saisine suspend la possibilité pour le parquet de mettre la peine à exécutio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23-16.

Il est alors statué sur la demande sel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Article 723-18

Lorsque le condamné doit exécuter un reliquat de peine inférieur ou égal aux réductions de peine susceptibles d'être octroyé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ccorder cette mesure sans qu'il soit nécessaire que la personne soit à nouveau écrouée.

Paragraphe 2 :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condamnés incarcérés

Article 723-19

Les personnes détenues condamnées à une ou des peines d'emprisonnement dont le cumul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ou condamnées à une ou des peines d'emprisonnement dont le cumul est inférieur ou égal à cinq ans et dont le reliquat de peine est inférieur ou égal à deux ans bénéficient, sauf impossibilité matérielle et si leur personnalité et leur situation le permettent, d'une semi-liberté, d'un placement à l'extérieur, d'un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conformément à la procédure prévue par le présent paragraphe.

Les durées de deux a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réduites à un an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Article 723-20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examine en temps utile le dossier de chacun des condamnés relevant de l'article 723-19, afin de déterminer, après avis du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a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la mieux adaptée à sa personnalité et à sa situation matérielle, familiale et sociale.

Sauf en cas d'absence de projet sérieux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ou d'impossibilité matérielle de mettre en place une mesure d'aménagement, le directeur, après avoir obtenu l'accord du condamné à la mesure qui lui est proposée, adress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vue de la saisin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e proposition d'aménagement comprenant, le cas échéant, une ou plusieurs d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45 du code pénal. A défaut, il lui adresse, ainsi qu'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 rapport motivé

expliquant les raisons pour lesquelles un aménagement de peine ne peut être proposé et en informe le condamné.

S'il estime la proposition justifi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ransmet celle-ci pour homologation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lui-ci dispose alors d'un délai de trois semaines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requête le saisissant pour décider par ordonnance d'homologuer ou de refuser d'homologuer la proposition.

S'il n'estime pas la proposition justifié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n inform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lui transmettant cette proposition.

Il avise également le condamné de sa posi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lors ordonner un aménagement de peine, d'offic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à la suite d'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du présent code.

Il peut également le faire après avoir reçu le rappor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23-22

Si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refuse d'homologuer la proposition, il doit rendre une ordonnance motivée qui est susceptible de recours par le condamné et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vant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1° de l'article 712-11.

Article 723-24

A défaut de répons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délai de trois semaines,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eut, sur instruction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amener à exécution la mesure d'aménagement.

Cette décision constitue une mesure d'administration judiciaire qui n'est pas susceptible de recours.

Elle est préalablement notifié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723-25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président de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sais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23-20 ou de l'article 723-22 peuvent substituer à la mesure d'aménagement proposée une des autres mesures prévues par l'article 723-19.

Ils peuvent de même modifier ou compléter l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45 du code pénal et accompagnant la mesure.

La mesure est alors octroyée, sans débat contradictoire, par ordonnance motivée.

Lorsqu'elle est rendu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tte ordonnance peut faire l'objet d'un appel de la part du condamné ou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1° de l'article 712-11.

Article 723-26

Lorsque la proposition d'aménagement de la peine est homologuée ou 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23-24, l'exécution de la mesure d'aménagement est directement mise en oeuvre dans les meilleurs délais par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En cas d'inobservation par le condamné de ses obligations, le directeur du service saisi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ux fins de révocation de la mesu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Le juge peut également se saisir d'office à cette fin, ou être saisi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723-27

Pour les condamnés mentionnés à l'article 723-19 et afin de préparer une mesure de semi-liberté, de placement à l'extérieur, d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ou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paragraphe,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eut adress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fins de saisin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une proposition de permission de sorti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23-19 à 723-24.

Section 8 : Modalités d'exécution des fins de peines d'emprisonnement en l'absence de tout aménagement de peine

Article 723-28

Pour les peines d'emprisonnemen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cinq ans, lorsqu'aucune mesure d'aménagement n'a été ordonnée six mois avant la date d'expiration de la peine, toute personne condamnée à laquelle il reste quatre mois d'emprisonnement à subir ou, pour les peines inférieures ou égales à six mois, à laquelle il reste les deux tiers de la peine à subir, exécute le reliquat de sa peine selon les modalités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sauf en cas d'impossibilité matérielle, de refus de l'intéressé, d'incompatibilité entre sa personnalité et la nature de la mesure ou de risque de récidive.

Le placement est mis en oeuvre par le directeur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sous l'autorité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i peut fixer les mesures de contrôle et les obligations énumérées aux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auxquelles la personne condamnée devra se soumettre.

En l'absence de décision de placement, la personne condamnée peut sais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our qu'il statue par jugement après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712-6.

Un décret précis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ection 9 :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urveillance judiciaire de personnes dangereuses condamnées pour crime ou délit

Article 723-29

Lorsqu'une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sept ans pour un crime ou un délit pour lequel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et aux seules fins de prévenir une récidive dont le risque paraît avéré, qu'elle sera placée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dès sa libération et pendant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celle correspondant au crédit de réduction de peine et aux réductions

1208 프랑스 형사소송법

de peines supplémentaires dont elle a bénéficié et qui n'ont pas fait l'objet d'une décision de retrait.

Article 723-30

La surveillance judiciaire peut comporter les obligations suivantes :

- 1° Obliga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
- 2° Obligation prévue par l'article 131-36-12 du même code ;
- 3° Si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53-13 du présent code, obligation d'assignation à domicile, emportant pour l'intéressé l'interdiction de s'absenter de son domicile ou de tout autre lieu désigné par le juge en dehors des périodes fixées par celui-ci.

Les périodes et les lieux sont fixés en tenant compte :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par le condamné ; du fait qu'il suit un enseignement ou une formation, effectue un stage ou occupe un emploi temporaire en vue de son insertion sociale ; de sa participation à la vie de famille ; de la prescription d'un traitement médical.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 condamné placé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est soumis à une injonction de soi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3711-1 et suivant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orsqu'il est établi, après expertise médicale prévue à l'article 723-31, qu'il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Article 723-31

Le risque de récidive mentionné à l'article 723-29 doit être constaté par une expertise médicale ordonn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6, et dont la conclusion fait apparaître la dangerosité du condamné et détermine si le condamné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Cette expertise peut être également ordonn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723-31-1

La situation de tous les condamnés susceptibles de faire l'objet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conformément à l'article 723-29 doit être examinée avant la date prévue pour leur libérat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à cette fin, demander le placement du condamné, pour une durée comprise entre deux et six semaines,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chargé de l'observation des personnes détenues aux fins d'une évaluation pluridisciplinaire de dangerosité et saisir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également ordonner que l'expertise prévue par l'article 723-31 soit réalisée par deux experts.

Article 723-32

La décision prévue à l'article 723-29 est prise, avant la date prévue pour la libération du condamné, par un jugement rendu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Lors du débat contradictoire prévu par l'article 712-6, le condamné est obligatoirement assisté par un avocat choisi par lui, ou, à sa demande, désigné par le bâtonnier. Le jugement précise les obligations auxquelles le condamné est tenu, ainsi que la durée de celles-ci.

Article 723-33

Le condamné placé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fait également l'objet de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destinées à faciliter et à vérifier sa réinsertion. Ces mesures et les obligations auxquelles le condamné est astreint sont mises en oeuvr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ssist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et, le cas échéant, avec le concours des organismes habilités à cet effet.

Article 723-34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modifier les obligations auxquelles le condamné est astreint, par ordonnance rend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8. Si la réinsertion du condamné paraît acquise, il peut, par jugement rendu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1210 프랑스 형사소송법

712-6, mettre fin à ces obligations.

Si le comportement ou la personnalité du condamné le justifie, il peut, par jugement rendu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 dernière phrase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3-32, décider de prolonger la durée de ces obligations, sans que la durée totale de celles-ci ne dépasse celle prévue à l'article 723-29.

Article 723-35

En cas d'inobservation par le condamné des obligations et interdic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retirer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s réductions de peine dont il a bénéficié et ordonner sa réincarcéra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sont applicabl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vertit le condamné que les mesures prévues aux articles 131-36-4 et 131-36-12 du code pénal ne pourront être mises en oeuvre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à défaut,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s réductions de peine dont il a bénéficié pourra,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lui être retiré.

La décision prévue au premier alinéa peut également être prise, après avi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cas de condamnation de la personne placée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pour un crime ou un délit pour lequel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Constitue pour le condamné 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le fait de refuser de commencer ou de poursuivre le traitement prescrit par le médecin traitant et qui lui a été propos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Article 723-36

L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ne sont pas applicables si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ou si elle fait l'objet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Article 723-37

Lors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a été prononcé à l'encontre d'une personne condamnée à un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53-13, la juridiction régionale mentionnée à l'article 706-53-15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cet article, décider de prolonger tout ou partie des obligations auxquelles est astreinte la personne, au-delà de la limite prévue à l'article 723-29, en la plaça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pour une durée de deux ans.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est saisi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ix mois avant la fin de la mesur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ne peut être ordonné, après expertise médicale constatant la persistance de la dangerosité, que dans le cas où :

- 1° Les obligations résultant de l'inscription dans le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 apparaissent insuffisantes pour prévenir la commission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53-13 ;
- 2° Et si cette mesure constitue l'unique moyen de prévenir la commission, dont la probabilité est très élevée, de ces infractions.

La surveillance de sûreté peut être prolongée selon les mêmes modalités et pour la même durée si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demeurent remplies.

Les dispositions des quatre derniers alinéas de l'article 706-53-19 sont applicables.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peut égalemen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6-53-15, ordonner une surveillance de sûreté à l'égard d'une personne placée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à laquelle toutes les réductions de peine ont été retirées, en 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3-35, à la suite d'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auxquelles elle était soumise dans des conditions qui font apparaître des risques qu'elle commette à nouveau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53-13.

La surveillance de sûreté s'applique dès la libération de la personne.

Article 723-38

Lors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a été prononcé dans le cadre d'une

1212 프랑스 형사소송법

surveillance judiciaire à l'encontre d'une personne condamnée à un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53-13, il peut être renouvelé tant que la personne fait l'objet d'une surveillance judiciaire ou d'une surveillance de sûreté.

Article 723-38-1

La surveillance judiciaire est suspendue par toute détention intervenant au cours de son exécution et ne découlant pas d'un retrait de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s réductions de peine décid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723-35, et elle reprend, pour la durée restant à courir, à l'issue de cette suspension.

Article 723-39

Un décret détermine en tant que de besoin les modalités et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 présente section.

Chapitre III : Des dispositions communes aux différent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Article 724

L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reçoivent les personnes en détention provisoire ou condamnées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Un acte d'écrou est dressé pour toute personne qui est conduite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qui s'y présente librement.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Article 724-1

Les services pénitentiaires constituent et tiennent à jour pour chaque personne incarcérée un dossier individuel comprenant des informations de nature pénale et pénitentiaire.

Les services pénitentiaires communiquent aux autorités administratives compétentes pour en

connaître des informations relatives à l'identité du détenu, à son lieu d'incarcération, à sa situation pénale et à sa date de libération, dès lors que ces informations sont nécessaires à l'exercice des attributions desdites autorités.

Ils communiquent notamment aux services centraux ou déconcentrés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les informations de cette nature relatives aux étrangers détenus faisant ou devant faire l'objet d'une mesure d'éloignement du territoire.

Article 725

Nul agent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ne peut, à peine d'être poursuivi et puni comme coupable de détention arbitraire, recevoir ni retenir aucune personne qu'en vertu d'un arrêt ou jugement de condamnation, d'un mandat de dépôt ou d'arrêt, d'un mandat d'amener lorsque ce mandat doit être suivi d'incarcération provisoire, ou d'un ordre d'arrestation établi conformément à la loi, et sans qu'ait été donné l'acte d'écrou prévu à l'article 724.

Article 726

Le régime disciplinaire des personnes détenues placées en détention provisoire ou exécutant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st déterminé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

- 1° Le contenu des fautes disciplinaires, qui sont classées selon leur nature et leur gravité ;
- 2° Les différentes sanctions disciplinaires encourues selon le degré de gravité des fautes commises. Le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le confin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ordinaire ne peuvent excéder vingt jours, cette durée pouvant toutefois être portée à trente jours pour tout acte de violence physique contre les personnes ;
- 3° La composition de la commission disciplinaire, qui doit comprendre au moins un membre extérieur à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
- 4° La procédure disciplinaire applicable, au cours de laquelle la personne peut être assistée par un avocat choisi ou commis d'office, en bénéficiant le cas échéant de l'aide de l'Etat pour l'intervention de cet avocat ;
- 5°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a personne placée en cellule disciplinaire ou en

1214 프랑스 형사소송법

confinement dans une cellule individuelle exerce son droit à un parloir hebdomadaire ;

- 6°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 maintien d'une mesure de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en confinement dans une cellule individuelle est incompatible avec l'état de santé de la personne détenue.

Le placement, à titre exceptionnel, des détenus mineurs de plus de seize ans en cellule disciplinaire ne peut excéder sept jours.

En cas d'urgence, les détenus majeurs et les détenus mineurs de plus de seize ans peuvent faire l'objet, à titre préventif, d'un placement en cellule disciplinaire ou d'un confinement en cellule individuelle.

Cette mesure ne peut excéder deux jours ouvrables.

Lorsqu'une personne détenue est placée en quartier disciplinaire, ou en confinement, elle peut saisir le juge des référ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Article 726-1

Toute personne détenue, sauf si elle est mineure, peut être placée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pour une durée maximale de trois mois, à l'isolement par mesure de protection ou de sécurité soit à sa demande, soit d'office.

Cette mesure ne peut être renouvelée pour la même durée qu'après un débat contradictoire, au cours duquel la personne concernée, qui peut être assistée de son avocat, présente ses observations orales ou écrites. L'isolement ne peut être prolongé au-delà d'un an qu'après avis de l'autorité judiciaire.

Le placement à l'isolement n'affecte pas l'exercice des droits visés à l'article 22 de la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sous réserve des aménagements qu'impose la sécurité.

Lorsqu'une personne détenue est placée à l'isolement, elle peut saisir le juge des référ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1-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27-1

Aux fins de prévenir les évasions et d'assurer la sécurité et le bon ordre des 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ou des établissements de santé habilités à recevoir des détenus, les communications téléphoniques des personnes détenues peuvent, à l'exception de celles avec leur avocat, être écoutées, enregistrées et interrompues par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ous le contrô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dans des conditions et selon des modalités qui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Les détenus ainsi que leurs correspondants sont informés du fait que les conversations téléphoniques peuvent être écoutées, enregistrées et interrompues.

Les enregistrements qui ne sont suivis d'aucune transmission à l'autorité judiciaire en application de l'article 40 ne peuvent être conservés au-delà d'un délai de trois mois.

Article 728

Des règlements intérieurs types, prévu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nt les dispositions prises pour le fonctionnement de chacune des catégories d'établissements pénitentiaires.

Chapitre IV : Des valeurs pécuniaires des détenus

Article 728-1

Les valeurs pécuniaires des détenus, inscrites à un compte nominatif ouvert à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sont divisées en trois parts : la première sur laquelle seules les parties civiles et les créanciers d'aliments peuvent faire valoir leurs droits ; la deuxième, affectée au pécule de libération, qui ne peut faire l'objet d'aucune voie d'exécution ; la troisième, laissée à la libre disposition des détenus.

Les sommes destinées à l'indemnisation des parties civiles leur sont versées directement, sous réserve des droits des créanciers d'aliments,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orsque le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intervient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11, il est assimilé à une partie civile et bénéficie

des mêmes droits dès lors que le prélèvement au profit des parties civiles a eu lieu.

La consistance des valeurs pécuniaires, le montant respectif des parts et les modalités de gestion du compte nominatif sont fixés par décret.

Chapitre V : Du transfèrement des personnes condamnées

Article 728-2

Lorsque,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ux, une personne détenue en exécution d'une condamnation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étrangère est transférée sur le territoire français pour y accomplir la partie de la peine restant à subir, l'exécution de la peine est poursuivi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et notamment du présent chapitre. Il en est de même pour l'exécution d'une peine ou d'une mesure de sûreté privative de liberté, que la personne soit ou non détenue, lors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a fait application du 2° de l'article 695-24.

Article 728-3

Dès son arrivée sur le sol français, le condamné détenu est présenté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arrivée, qui procède à son interrogatoire d'identité et en dresse procès-verbal.

Toutefois, si l'interrogatoire ne peut être immédiat, le condamné est conduit à la maison d'arrêt où il ne peut être détenu plus de vingt-quatre heures.

A l'expiration de ce délai, il est conduit d'office devan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les soins du chef d'établissement.

Au vu des pièces constatant l'accord des Etats sur le transfèrement et le consentement de l'intéressé ainsi que de l'original ou d'une expédition du jugement étranger de condamnation, accompagnés, le cas échéant, d'une traduction officiel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requiert l'incarcération immédiate du condamné.

L'incarcération peut également être requise au vu de la décision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refusant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et donnant acte aux autorités françaises

compétentes de leur engagement à faire exécuter la peine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étrangère.

Article 728-4

La peine prononcée à l'étranger est, par l'effet de la convention ou de l'accord internationaux, directement et immédiatement exécutoire sur le territoire national pour la partie qui restait à subir dans l'Etat étranger.

Toutefois, lorsque la peine prononcée est, par sa nature ou sa durée, plus rigoureuse que la peine prévue par la loi française pour les mêmes faits, le tribunal correctionnel du lieu de détention, saisi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condamné, lui substitue la peine qui correspond le plus en droit français ou réduit cette peine au maximum légalement applicable.

Il détermine en conséquence, suivant les cas, la nature et, dans la limite de la partie qui restait à subir dans l'Etat étranger, la durée de la peine à exécuter.

Article 728-5

Le tribunal statue en audience publique, après avoir entendu le ministère public, le condamné et, le cas échéant, l'avocat choisi par lui ou commis d'office sur sa demande.

Le jugement est immédiatement exécutoire nonobstant appel.

Article 728-6

Les délais de transfèrement s'imputent intégralement sur la durée de la peine qui est mise à exécution en France.

Article 728-7

Tous incidents contentieux relatifs à l'exécution d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restant à subir en France sont portés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nel du lieu de détent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1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Article 728-8

L'application de la peine est régie par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Article 728-9

Aucune poursuite pénale ne peut être exercée ou continuée et aucune condamnation ne peut être exécutée à raison des mêmes faits contre le condamné qui exécute en France,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ux,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rononcée par une juridiction étrangère.

Titre III : De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Article 729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tend à la réinsertion des condamnés et à la prévention de la récidive. Les condamnés ayant à subir une ou plusieur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peuvent bénéficier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s'ils manifestent des efforts sérieux de réadaptation sociale et lorsqu'ils justifient :

- 1° Soit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d'un stage ou d'un emploi temporaire ou de leur assiduité à un enseignement ou à une formation professionnelle ;
- 2° Soit de leur participation essentielle à la vie de leur famille ;
- 3° Soit de la nécessité de suivre un traitement médical ;
- 4° Soit de leurs efforts en vue d'indemniser leurs victimes ;
- 5° Soit de leur implication dans tout autre projet sérieux d'insertion ou de réinsertion.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23 du code pénal,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ccordée lorsque la durée de la peine accomplie par le condamné est au moins égale à la durée de la peine lui restant à subir.

Toutefois, les condamnés en état de récidive aux termes des articles 132-8, 132-9 ou 132-10 du code pénal ne peuvent bénéficier d'une mesure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que si la durée de la peine accomplie est au moins égale au double de la durée de la peine restant à subir. Dans les cas prévus au présent alinéa, le temps d'épreuve ne peut excéder quinze années ou,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vingt années.

Pour les condamnés à la réclusion à perpétuité, le temps d'épreuve est de dix-huit années ;

il est de vingt-deux années si le condamné es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pour un crime ou un délit pour lequel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ne peut lui être accordée si elle refuse pendant son incarcération de suivre le traitement qui lui est propos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717-1 et 763-7.

Elle ne peut non plus être accordée au condamné qui ne s'engage pas à suivre, après sa libération, le traitement qui lui est propos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731-1.

La personne condamnée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ne peut bénéficier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qu'après avis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rendu à la suite d'une évaluation pluridisciplinaire de dangerosité réalisée dans un service spécialisé chargé de l'observation des personnes détenues et assortie d'une expertise médicale ; s'il s'agit d'un crime pour lequel le suivi socio-judiciaire est encouru, cette expertise est réalisée par deux experts et se prononce sur l'opportunit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du recours à un traitement utilisant des médicaments inhibiteurs de libido, mentionné à l'article L. 37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orsque le condamné est âgé de plus de soixante-dix ans, les durées de peines accomplie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et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ccordée dès lors que l'insertion ou la réinsertion du condamné est assurée, en particulier s'il fait l'objet d'une prise en charge adaptée à sa situation à sa sortie de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ou s'il justifie d'un hébergement, sauf en cas de risque grave de renouvellement de l'infraction ou si cette libération est susceptible de causer un trouble grave à l'ordre public.

Article 729-1

Des réductions de temps d'épreuve nécessaire à l'octroi de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vent être accordées aux condamnés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dans les formes et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21-1 ; la durée totale de ces réductions ne peut toutefois excéder, par année d'incarcération, vingt jours ou un mois selon que le condamné se trouve ou non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Les réductions ne sont, le cas échéant, imputables que sur la partie de la peine excédant la

1220 프랑스 형사소송법

période de sûreté prévue par l'article 132-23 du code pénal.

Article 729-2

Lorsqu'un étranger condamné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st l'objet d'une mesur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de reconduite à la frontière, d'expulsion, d'extradition ou de remise sur le fondement d'un mandat d'arrêt européen, sa libération conditionnelle est subordonnée à la condition que cette mesure soit exécutée.

Elle peut être décidée sans son consentement.

Par exception aux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accorder 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à un étranger faisant l'objet d'une peine complémentair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en ordonnant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cette peine pendant la durée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prévue à l'article 732. A l'issue de cette durée, si la décision de mise en liberté conditionnelle n'a pas été révoquée, l'étranger est relevé de plein droit de la mesure d'interdiction du territoire français.

Dans le cas contraire, la mesure redevient exécutoire.

Article 729-3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ccordée pour tout condamné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inférieure ou égale à quatre ans, ou pour laquelle la durée de la peine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quatre ans, lorsque ce condamné exerce l'autorité parentale sur un enfant de moins de dix ans ayant chez ce parent sa résidence habituell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personnes condamnées pour un crime ou pour un délit commis sur un mineur ou pour une infraction commise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Article 730

Lorsque la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rononcée es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dix ans, ou que, quelle que soit la peine initialement prononcée, la durée de détention restant à subir est inférieure ou égale à trois ans,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est accord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Dans les autres cas,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est accordée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7.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la situation de chaque condamné est examinée au moins une fois par an, lorsque les conditions de délai prévues à l'article 729 sont remplies.

Pour les demandes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concernant des personnes condamnées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égale ou supérieure à cinq ans ou à une peine de réclusion, l'avocat de la partie civile peut, s'il en fait la demande, assister au débat contradictoire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la chambr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cour d'appel statuant en appel pour y faire valoir ses observations, avant les réquisitions du ministère public.

Un décret fix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31

Le bénéfice de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assorti de conditions particulières ainsi que de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destinées à faciliter et à vérifier le reclassement du libéré. Celui-ci peut en particulier être soumis à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contrôle ou obliga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132-44 et 132-45 du code pénal.

Ces mesures sont mises en oeuvr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ssisté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et, le cas échéant, avec le concours des organismes habilités à cet effet.

Un décre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mesures visées au présent article et les conditions d'habilitation des organismes mentionnés à l'alinéa précédent.

Il fixe également les conditions du financement indispensable à l'application de ces mesures et au fonctionnement des comités.

Article 731-1

La personne faisant l'objet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peut être soumise aux obligations prévues pour le suivi socio-judiciaire si elle a été condamnée pour un crime ou un délit pour

1222 프랑스 형사소송법

lequel cette mesure est encourue.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u d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tte personne est soumise à une injonction de soin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L. 3711-1 et suivants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s'il est établi, après l'expertise prévue à l'article 712-21 du présent code, qu'ell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Cette personne peut alors être également placée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63-10 à 763-14.

Article 732

La décision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fixe les modalités d'exécution et les conditions auxquelles l'octroi et le maintien de la liberté est subordonné, ainsi que la nature et la durée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Si elle est prise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elui-ci peut prévoir que l'élargissement s'effectuera au jour fixé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tre deux dates déterminées.

Cette durée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la durée de la partie de la peine non subie au moment de la libération s'il s'agit d'une peine temporaire ; elle peut la dépasser pour une période maximum d'un an.

La durée totale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ne peut toutefois excéder dix ans.

Lorsque la peine en cours d'exécution est une peine perpétuelle, la durée des mesures d'assistance et de contrôle est fixée pour une période qui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cinq années, ni supérieure à dix années.

Pendant toute la durée de la liberté conditionnelle, les dispositions de la décision peuvent être modifiées, suivant les distinctions de l'article 730, soit après avis d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mpétent pour mettre en oeuvre cette décision, soit, sur proposition de ce magistrat,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732-1

Lorsque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la réclusion criminelle à perpétuité pour l'un des crimes

visés à l'article 706-53-13 et qu'elle a fait l'objet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avec injonction de soins,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53-15, décider de prolonger tout ou partie des obligations auxquelles est astreinte la personne, au-delà de la période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en la plaça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avec injonction de soins pour une durée de deux ans.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ne peut être ordonné qu'après expertise médicale constatant que le maintien d'une injonction de soins est indispensable pour prévenir la récidive. Les deuxième à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723-37 sont applicables, ainsi que l'article 723-38.

Article 733

En cas de nouvelle condamnation, d'inconduite notoire, d'infraction aux conditions ou d'inobservation des mesures énoncées dans la décision de mise en liberté conditionnelle, cette décision peut être révoquée, suivant les distinctions de l'article 730, soit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it par le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712-6 ou 712-7.

Il en est de même lorsque la décision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n'a pas encore reçu exécution et que le condamné ne remplit plus les conditions légales pour en bénéficier.

Constitue pour le condamné 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le fait de refuser de commencer ou de poursuivre le traitement prescrit par le médecin traitant et qui lui a été propos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conformément à l'article 731-1.

Après révocation, le condamné doit subir, selon les dispositions de la décision de révocation, tout ou partie de la durée de la peine qu'il lui restait à subir au moment de sa mise en liberté conditionnelle, cumulativement, s'il y a lieu, avec toute nouvelle peine qu'il aurait encourue ; le temps pendant lequel il a été placé en état d'arrestation provisoire compte toutefois pour l'exécution de sa peine.

Si la révocation n'est pas intervenue avant l'expiration du délai prévu à l'article précédent, la libération est définitive.

Dans ce cas, la peine est réputée terminée depuis le jour de la libération conditionnelle.

Titre III bis :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733-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par décision motivée de substituer a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une peine de jours-amende.

Cette décision est pris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Cette décision peut également intervenir à la suite de l'exécution partielle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733-2

En cas d'inexécution d'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par décision motivée la mise à 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et de l'amende prononcés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s articles 131-9 et 131-11 du code pénal. L'exécution peut porter sur tout ou partie de cette peine.

Cette décision est prise à l'issue d'un débat contradictoi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En cas d'inexécution du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sont applicables.

Titre IV : Du sursis et de l'ajournement

Article 734

Le tribunal ou la cour qui prononce une peine peut, dans les cas et selon les conditions prévus par les articles 132-29 à 132-57 du code pénal, ordonner qu'il sera sursis à son exécution. La juridiction peut également ajourner le prononcé de la peine dans les cas et conditions prévus par les articles 132-60 à 132-70 dudit code.

Les modalités de mise en oeuvre du sursis et de l'ajournement sont fixées par le présent titre.

Chapitre Ier : Du sursis simple

Article 735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n'a pas expressément statué sur la dispense de révocation du surs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38 du code pénal, le condamné peut ultérieurement demander à bénéficier de cette dispense ; sa requête est alors instruite et jugée selon les règles de compétence et de procédure fixées par les articles 702-1 et 703 du présent code.

Article 735-1

En cas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mprisonnement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pénale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la révocation du sursis simple ne peut être prononcée que par le tribunal correctionnel statuant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11.

Article 736

La suspension de la peine ne s'étend pas au paiement des dommages-intérêts.

Elle ne s'étend pas non plus aux incapacités, interdictions et déchéances résultant de la condamnation.

Toutefois, ces incapacités, interdictions et déchéances cesseront d'avoir effet du jour où, par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32-35 du code pénal, la condamnation aura été réputée non avenue.

Cette disposition ne s'applique pas au suivi socio-judiciaire prévu à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ou à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Chapitre II :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Article 739

Lorsqu'une condamnation est assortie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le condamné est placé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elon les modalités

1226 프랑스 형사소송법

prévues par l'article 712-10.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le condamné doit satisfaire à l'ensemble des mesures de contrôle prévues par l'article 132-44 du code pénal et à celles des obliga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par l'article 132-45 du même code qui lui sont spécialement imposées, soit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soit par une décision que peut, à tout moment, prend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8.

Article 740

Au cours du délai d'épreuv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us le contrôle de qui le condamné est placé s'assure, soit par lui-même, soit par toute personne qualifiée, de l'exécution des mesures de contrôle et d'aide et des obligations imposées à ce condamné.

Article 741

Le condamné est tenu de se présenter, chaque fois qu'il en est requis, de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us le contrôle duquel il est placé.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sont applicables.

Article 742

Lorsque le condamné ne se soumet pas aux mesures de contrôle ou aux obligations particulières impos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39, lorsqu'il a commis une infraction suivie d'une condamnation à l'occasion de laquelle la révocation du sursis n'a pas été prononcé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ou sur réquisitions du parquet, ordonner par jugement motivé la prolongation du délai d'épreuve.

Il peut aussi,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132-49 à 132-51 du code pénal, révoquer en totalité ou en partie le sursis.

La décision est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Ces dispositions sont applicables même lorsque le délai d'épreuve fixé par la juridiction a expiré, lorsque le motif de la prolongation du délai ou de la révocation s'est produit pendant le délai d'épreuve.

Article 743

Lors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rolonge le délai d'épreuve, ce délai ne peut au total être supérieur à trois années.

Article 744

Si le condamné satisfait aux mesures de contrôle et d'aide et aux obligations particulières imposé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39 et si son reclassement paraît acqui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éclarer non avenue la condamnation prononcée à son encont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ne peut être saisi à cette fin ou se saisir d'offic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à compter du jour où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La décision est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Article 746

La suspension de la peine ne s'étend pas au paiement des dommages-intérêts.

Elle ne s'étend pas non plus aux incapacités, interdictions et déchéances résultant de la condamnation.

Toutefois, ces incapacités, interdictions et déchéances cesseront d'avoir effet du jour où, par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3 ou de l'article 132-52 du code pénal, la condamnation aura été déclarée ou réputée non avenue.

Cette disposition ne s'applique pas à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Article 747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effets du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sont fixées par les articles 132-52 et 132-53 du code pénal.

Chapitre III : Du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Article 747-1

Le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suit les mêmes règles que celles qui sont prévues pour le sursis avec mise à l'épreuve,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suivantes :

- 1°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est assimilée à une obligation particulière ;
- 2° Les mesures de contrôle sont celles énumérées à l'article 132-55 du code pénal ;
- 3°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743 est ramené à dix-huit mois ;
- 4° L'article 744 n'est pas applicable.

Article 747-1-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à la demande de l'intéressé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par décision motivée de substituer au sursis assorti de l'obligation d'accomplir 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une peine de jours-amende.

Cette décision est pris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Article 747-2

Dans le cas prévu à l'article 132-57 du code pén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est saisi et statue sel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6 ou de l'article 723-15.

Dès sa saisin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la suspension de l'exécution de la peine jusqu'à sa décision sur le fond.

Le sursis ne peut être ordonné que si, après avoir été informé du droit de refuser l'accomplissement d'un travail d'intérêt général, le condamné a expressément déclaré renoncer à se prévaloir de ce droit.

Chapitre IV : De l'ajournement

Article 747-3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ajourne le prononcé de la pein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63 du code pénal, le prévenu est placé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il a sa résidenc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assure, soit par lui-même, soit par toute personne qualifiée, de l'exécution de la mesur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1 sont applicables au contrôle exercé sur le prévenu.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ménager, modifier ou supprimer les obligations particulières imposées au prévenu ou en prévoir de nouvell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8.

Si le prévenu ne se soumet pas aux mesures de contrôle et d'assistance ou aux obligations particulièr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saisir le tribunal avant l'expiration du délai d'épreuve afin qu'il soit statué sur la peine.

Lors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il peut décider, par ordonnance motivée, rendue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que le condamné sera provisoirement incarcéré dans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le plus proche.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saisi dans les meilleurs délais afin de statuer sur la peine.

L'affaire doit être inscrite à l'audience au plus tard dans les cinq jours de l'écrou du condamné, à défaut de quoi l'intéressé est remis en liberté d'office.

Article 747-4

Lorsque la juridiction de jugement ajourne le prononcé de la pein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66 du code pénal,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le prévenu a sa résidence s'assure, soit par lui-même, soit par toute personne qualifiée, de l'exécution des prescriptions énumérées par l'injonction de la juridiction.

Titre V : De la reconnaissance de l'identité des individus condamnés

Article 748

Lorsque, après une évasion suivie de reprise ou dans toute autre circonstance, l'identité d'un condamné fait l'objet d'une contestation, cette contestation est tranchée suivant les règles établies en matière d'incidents d'exécution.

Toutefois l'audience est publique.

Si la contestation s'élève au cours et à l'occasion d'une nouvelle poursuite, elle est tranchée par la cour ou le tribunal saisi de cette poursuite.

Titre VI : De la contrainte judiciaire

Article 749

En cas d'inexécution volontaire d'une ou plusieurs condamnations à une peine d'amende prononcées en matière criminelle ou en matière correctionnelle pour un délit puni d'une peine d'emprisonnement, y compris en cas d'inexécution volontaire de condamnations à des amendes fiscales ou douanièr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une contrainte judiciaire consistant en un emprisonnement dont la durée est fixée par ce magistrat dans la limite d'un maximum fixé par la loi en fonction du montant de l'amende ou de leur montant cumulé.

Article 750

Le maximum de la durée de la contrainte judiciaire est fixé ainsi qu'il suit :

- 1° A vingt jours lorsque l'amende est au moins égale à 2,000 euros sans excéder 4,000 euros ;
- 2° A un mois lorsque l'amende est supérieure à 4,000 euros sans excéder 8,000 euros ;
- 3° A deux mois lorsque l'amende est supérieure à 8,000 euros sans excéder 15,000 euros ;
- 4° A trois mois lorsque l'amende est supérieure à 15,000 euros.

Article 751

La contrainte judiciaire ne peut être prononcée ni contre les personnes mineures au moment des faits, ni contre les personnes âgées d'au moins soixante-cinq ans au moment de la condamnation.

Article 752

La contrainte judiciaire ne peut être prononcée contre les condamnés qui, par tout moyen, justifient de leur insolvabilité.

Article 753

Elle ne peut être exercée simultanément contre le mari et la femme, même pour le recouvrement de sommes afférentes à des condamnations différentes.

Article 754

Elle ne peut être exercée que cinq jours après un commandement fait au condamné à la requête de la partie poursuivante.

Dans le cas où le jugement de condamnation n'a pas été précédemment signifié au débiteur, le commandement porte en tête un extrait de ce jugement, lequel contient le nom des parties et le dispositif.

Au vu de l'exploit de signification du commandement, si ce dernier acte de moins d'un an, et sur le demande du Tréso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requéri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prononcer la contrainte judiciair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6.

Ce magistrat peut à cette fin délivrer les mandats prévus par l'article 712-17.

La décision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qui est exécutoire par provision, peut faire l'objet d'un appel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rticle 712-11.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écider d'accorder des délais de paiement au condamné si la situation personnelle de ce dernier le justifie, en ajournant sa décision pour une durée qui ne saurait excéder six mois.

1232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58

La contrainte judiciaire est subie e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dans le quartier à ce destiné.

Article 759

Les individus contre lesquels la contrainte a été prononcée peuvent en prévenir ou en faire cesser les effets soit en payant ou consignat une somme suffisante pour éteindre leur dette, soit en fournissant une caution reconnue bonne et valable.

La caution est admise par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En cas de contestation, elle est déclarée, s'il y a lieu, bonne et valabl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agissant par voie de référé.

La caution doit se libérer dans le mois, faute de quoi elle peut être poursuivie.

Lorsque le paiement intégral n'a pas été effectué, et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60, la contrainte judiciaire peut être requise à nouveau pour le montant des sommes restant dues.

Article 760

Lorsque la contrainte judiciaire a pris fin pour une cause quelconque, elle ne peut plus être exercée ni pour la même dette, ni pour des condamnations antérieures à son exécution, à moins que ces condamnations n'entraînent par leur quotité une contrainte plus longue que celle déjà subie, auquel cas la première incarcération doit toujours être déduite de la nouvelle contrainte.

Article 761

Le débiteur détenu est soumis au même régime que les condamnés, sans toutefois être astreint au travail.

Article 761-1

Le condamné qui a subi une contrainte judiciaire n'est pas libéré du montant des condamnations pour lesquelles elle a été exercée.

Article 762

Lors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tatu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54 pour mettre à exécution l'emprisonnement encouru pour défaut de paiement d'un jour-amend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50 ne sont pas applicables.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52 et 753 sont applicable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54, une mise en demeure de payer, adressée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a les mêmes effets qu'un commandement de payer.

Titre VII : De l'interdiction de séjour

Article 762-1

La personne condamnée à la peine d'interdiction de séjour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1-31 du code pénal peut être soumis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à 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surveillance suivantes :

- 1° Se présenter périodiquement aux services ou autorités désignés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
- 2° Informe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tout déplacement au-delà de limites déterminées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
- 3° Répondre aux convocations de toute autorité ou de toute personne qualifiée désignée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Article 762-2

La personne condamnée à la peine d'interdiction de séjour est tenue d'informe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ous le contrôle duquel elle est placée de tout changement de résidence.

L'article 712-17 est applicable au condamné à l'interdiction de séjour.

123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762-3

Les mesures d'assistance prévues à l'article 131-31 du code pénal ont pour objet de faciliter le reclassement social du condamné.

Article 762-4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le condamné a déclaré fixer sa résidence assure la mise en oeuvre des mesures d'assistance et veille au respect des mesures de surveillance prévues par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A tout moment de la durée de l'interdiction de séjou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près audition du condamné et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odifier la liste des lieux interdits et les mesures de surveillance et d'assistanc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712-8.

Article 762-5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décider de suspendre provisoirement l'exécution de la mesure d'interdiction de séjou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12-6. En cas d'urgence, l'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ner dans une localité interdite peut être donn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cette localité pour une durée n'excédant pas huit jours.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nforme sans délai de sa décisio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territorialement compétent.

Sauf disposition contraire de la décision ordonnant la suspension de la mesure, le temps pendant lequel le condamné a bénéficié de la suspension est compté dans la durée de l'interdiction de séjour.

Article 763

En cas de prescription d'une peine prononcée en matière criminelle, le condamné est soumis de plein droit et à titre définitif à l'interdiction de séjour dans le département où demeurent la victime du crime ou ses héritiers directs.

Titre VII bis : Du suivi socio-judiciaire

Article 763-1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1-36-1 à 131-36-8 du code pénal est placée sous le contrô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ans le ressort duquel elle a sa résidence habituelle ou, si elle n'a pas en France de résidence habituell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u tribunal dans le ressort duquel a son siège la juridiction qui a statué en première instanc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ésigner le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pour veiller au respect des obligations imposées au condamné.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0 sont applicables.

Article 763-2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est tenue de justifier, auprè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ccomplissement des obligations qui lui sont imposées.

Article 763-3

Pendant la durée du suivi socio-judiciair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près audition du condamné et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modifier ou compléter les mesures prévues aux articles 131-36-2 et 131-36-3 du code pénal.

Sa décision est exécutoire par provision.

Elle peut être attaquée par la voie de l'appel par le condamné,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le procureur général, à compter de sa notification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1° de l'article 712-11.

Si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n'a pas été soumise à une injonction de soin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ordonne en vue de sa libération une expertise médicale afin de déterminer si elle est susceptible de faire l'objet d'un traitement. S'il est établi à la suite de cette expertise la possibilité d'un traitement, la personne condamnée est soumise à une injonction de soins,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1236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vertit le condamné qu'aucun traitement ne pourra être entrepris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s'il refuse les soins qui lui seront proposés, l'emprisonnement prononcé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Les dispositions des deux alinéas précédents sont alors applicable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après avoir procédé à l'examen prévu à l'article 763-10, ordonner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du condamné.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vertit le condamné 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ne pourra être mis en oeuvre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à défaut ou s'il manque à ses obligations, l'emprisonnement prononcé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Les dispositions des deux premiers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Si la personne a été condamnée à une peine d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 des crimes mentionnés à l'article 706-53-13,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également prononcer une obligation d'assignation à domicile prévue par le 3° de l'article 723-30.

Les dispositions des deux premiers alinéa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Article 763-4

Lorsque la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comprenant une injonction de soins doit exécuter cette mesure à la suite d'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ordonner l'expertise médicale de l'intéressé avant sa libération.

Cette expertise est obligatoire si la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plus de deux ans auparavant.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en outre, à tout moment du suivi socio-judiciaire et sans préjudice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63-6, ordonner, d'office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s expertises nécessaires pour l'informer sur l'état médical ou psychologique de la personne condamnée.

Les expertises prévues par le présent article sont réalisées par un seul expert, sauf décision motivée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763-5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mentionnées aux articles 131-36-2 et 131-36-3 du code pénal ou de l'injonction de soin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ou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rdonner, par décision motivée, la mise à 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prononcé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Cette décision est prise selon les dispositions prévues à l'article 712-6.

En cas d'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ou de l'injonction de soin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12-17 sont applicables.

Constitue pour le condamné une violation des obligations qui lui ont été imposées le fait de refuser de commencer ou de poursuivre le traitement prescrit par le médecin traitant et qui lui a été proposé dans le cadre d'une injonction de soins.

L'accomplissement de l'emprisonnement pour inobservation des obligations du suivi socio-judiciaire ne dispense pas le condamné de l'exécution du suivi socio-judiciaire.

En cas de nouveau manquement par le condamné à ses obligations,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e nouveau ordonner la mise à exécution de l'emprisonnement pour une durée qui, cumulée avec la durée de l'emprisonnement exécuté, ne saurait excéder celle fixée par la juridiction de condamnation.

Article 763-6

Toute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peut demander à la juridiction qui a prononcé la condamnation ou, en cas de pluralité de condamnations, à la dernière juridiction qui a statué de la relever de cette mesure.

Si la condamnation a été prononcée par une cour d'assises, la juridiction compétente pour statuer sur la demande est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 ressort de laquelle la cour d'assises a son siège.

La demande ne peut être porté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qu'à l'issue d'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décision de condamnation.

En cas de refus opposé à cette première demande, une autre demande ne peut être présentée

1238 프랑스 형사소송법

qu'une année après cette décision de refus.

Il en est de même, éventuellement, des demandes ultérieures. La demande de relèvement est adressée a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qui ordonne une expertise médicale et la transmet à la juridiction compétente avec les conclusions de l'expert ainsi que son avis motivé.

L'expertise est réalisée par deux experts en cas de condamnation pour meurtre ou assassinat d'un mineur précédé ou accompagné d'un viol, de tortures ou d'actes de barbarie.

La juridiction stat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troisième, quatrième et cinquième alinéas de l'article 703.

La juridiction peut décider de relever le condamné d'une partie seulement de ses obligations.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après audition du condamné et avis du médecin coordonnateur, décider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8 de mettre fin de manière anticipée au suivi socio-judiciaire comportant une injonction de soins, sans qu'il soit nécessaire de saisir la juridiction de jugement, dès lors qu'il apparaît que le reclassement du condamné est acquis et qu'un traitement n'est plus nécessaire.

Le juge peut également décider de ne relever le condamné que d'une partie de ses obligations parmi lesquelles, le cas échéant, l'injonction de soins.

Article 763-7

Lorsqu'une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comprenant une injonction de soins doit subir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lle exécute cette peine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17-1 et permettant de lui assurer un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adapté.

Elle est immédiatement informé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e la possibilité d'entreprendre un traitement.

Si elle ne consent pas à suivre un traitement, cette information est renouvelée au moins une fois tous les ans.

En cas de suspension ou de fractionnement de la peine, de placement à l'extérieur sans surveillance ou de mesure de semi-liberté, les obligations résultant du suivi socio-judiciaire sont applicables.

Article 763-8

Lorsqu'un suivi socio-judiciaire a été prononcé à l'encontre d'une personne condamnée à une réclusion criminelle d'une durée égale ou supérieure à quinze ans pour l'une des infractions visées à l'article 706-53-13, la juridiction régionale de la rétention de sûreté peu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06-53-15, décider de prolonger tout ou partie des obligations auxquelles est astreinte la personne, au-delà de la durée prononcée par la juridiction de jugement et des limites prévues à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en la plaçant sous surveillance de sûreté pour une durée de deux ans.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à septième alinéas de l'article 723-37 du présent code sont applicables, ainsi que celles de l'article 723-38.

Le présent article est applicable y compris si la personne placée sous suivi socio-judiciaire avait fait l'objet d'une libération conditionnelle.

Article 763-9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Titre VII ter :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à titre de mesure de sûreté

Article 763-10

Un an au moins avant la date prévue de sa libération, la personne condamnée a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36-9 à 131-36-12 du code pénal fait l'objet d'un examen destiné à évaluer sa dangerosité et à mesurer le risque de commission d'une nouvelle infraction.

Cet examen est mis en oeuvre par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 celui-ci peut solliciter l'avis de la commission pluridisciplinaire des mesures de sûreté composée selon des modalités déterminées par le décret prévu à l'article 763-14.

1240 프랑스 형사소송법

Les articles 712-16 et 712-16-1 sont applicables.

Au vu de cet examen,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détermin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712-6, la durée pendant laquelle le condamné sera effectivement placé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Cette durée ne peut excéder deux ans, renouvelable une fois en matière délictuelle et deux fois en matière criminel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rappelle au condamné que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ne pourra être mis en oeuvre sans son consentement, mais que, à défaut ou s'il manque à ses obligations, l'emprisonnement prononcé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pourra être mis à exécution.

Six mois avant l'expiration du délai fixé,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statue, selon les mêmes modalités, sur la prolongation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dans la limite prévue au troisième alinéa.

A défaut de prolongation, il est mis fin a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Article 763-11

Pendant la duré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l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peut d'office, sur réquisition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à la demande du condamné présentée, le cas échéant, par l'intermédiaire de son avocat, modifier, compléter ou supprimer les obligations résultant dudit placement.

Article 763-12

Le condamné placé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est astreint au port, pendant toute la durée du placement, d'un dispositif intégrant un émetteur permettant à tout moment de déterminer à distance sa localisation sur l'ensemble du territoire national.

Ce dispositif est installé sur le condamné au plus tard une semaine avant sa libération.

Le procédé utilisé est homologué à cet effet par le ministre de la justice.

Sa mise en oeuvre doit garantir le respect de la dignité, de l'intégrité et de la vie privée de la personne et favoriser sa réinsertion sociale.

Article 763-13

Le contrôle à distance de la localisation du condamné fait l'objet d'un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mis en oeuvr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Dans le cadre des recherches relatives à une procédure concernant un crime ou un délit,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spécialement habilités à cette fin sont autorisés à consulter les données figurant dans ce traitement.

Article 763-14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titre.

Ce décret précise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évaluation prévue par l'article 763-10 est mise en oeuvre.

Il précise également les conditions d'habilitation des personnes de droit privé auxquelles peuvent être confiées les prestations techniques détachables des fonctions de souveraineté concernant la mise en oeuvre du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et relatives notamment à la conception et à la maintenance du dispositif prévu à l'article 763-12 et du traitement automatisé prévu à l'article 763-13.

Les dispositions de ce décret relatives au traitement automatisé prévu à l'article 763-13, qui précisent, notamment, la durée de conservation des données enregistrées, sont prise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Titre VIII : Du casier judiciaire

Article 768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qui peut comporter un ou plusieurs centres de traitement, est tenu sous l'autori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Il reçoit,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nées en France et après contrôle de leur identité au moyen du répertoire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personnes physiques, le numéro

d'identification ne pouvant en aucun cas servir de base à la vérification de l'identité :

- 1° Les condamnations contradictoires ainsi que les condamnations par défaut, non frappées d'opposition, prononcées pour crime, délit ou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ainsi que les déclarations de culpabilité assorties d'une dispense de peine ou d'un 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sauf si la mention de la décision au bulletin n° 1 a été expressément excl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32-59 du code pénal ;
- 2° Les condamnations contradictoires ou par défaut, non frappées d'opposition,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dès lors qu'est prise, à titre principal ou complémentaire, une mesure d'interdiction, de déchéance ou d'incapacité ;
- 3° Les décisions prononcées par application des articles 8, 15, 15-1, 16, 16 bis et 28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modifiée,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4° Les décisions disciplinaires prononcées par l'autorité judiciaire ou par une autorité administrative lorsqu'elles entraînent ou édictent des incapacités ;
- 5° Les jugements prononçant la liquidation judiciaire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la faillite personnelle ou l'interdiction prévue par l'article L. 653-8 du code de commerce ;
- 6° Tous les jugements prononçant la déchéance de l'autorité parentale ou le retrait de tout ou partie des droits y attachés ;
- 7° Les arrêtés d'expulsion pris contre les étrangers ;
- 8°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étrangères qui,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ux, ont fait l'objet d'un avis aux autorités françaises ou ont été exécutées en France à la suite du transfèrement des personnes condamnées ;
- 9° Les compositions pénales, dont l'exécution a été constatée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
- 10° Les jugements ou arrêts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lorsqu'une hospitalisation d'office a été ordonn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ou lorsqu'une ou plusieurs d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s par l'article 706-136 ont été prononcées.

Article 768-1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reçoit,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morales et après contrôle de leur identité au moyen du répertoire national des entreprises et des établissements :

- 1° Les condamnations contradictoires et les condamnations par défaut non frappées d'opposition, prononcées pour crime, délit ou contravention de la cinquième classe par toute juridiction répressive ;
- 2° Les condamnations contradictoires ou par défaut non frappées d'opposition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dès lors qu'est prise, à titre principal ou complémentaire, une mesure d'interdiction, de déchéance, d'incapacité, ou une mesure restrictive de droit ;
- 3° Les déclarations de culpabilité assorties d'une dispense de peine ou d'un ajournement, avec ou sans injonction, du prononcé de la peine ;
- 4°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étrangères qui,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ou d'un accord internationaux, ont fait l'objet d'un avis aux autorités françaises.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détermin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769

Il est fait mention sur l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des peines ou dispenses de peines prononcées après ajournement du prononcé de la peine, des grâces, commutations ou réductions de peines, des décisions qui suspendent ou qui ordonnent l'exécution d'une première condamnation, des décisions prises en 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8-4 ou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8-7, des décisions de libération conditionnelle et de révocation, des décisions de surveillance judiciaire et de réincarcération prises en application de l'article 723-35, des décisions de surveillance de sûreté, des décisions de rétention de sûreté, des décisions de suspension de peine, des réhabilitations, des décisions qui rapportent ou suspendent les arrêtés d'expulsion, ainsi que la date de l'expiration de la peine et du paiement de l'amende.

Il est fait mention, sur l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relatives à des décisions de rétention de sûreté ou de surveillance de sûreté, des décisions de renouvellement de ces mesures.

1244 프랑스 형사소송법

Sont retirées du casier judiciaire les fiches relatives à des condamnations effacées par une amnistie ou réformées en conformité d'une décision de rectification du casier judiciaire.

Il en est de même, sauf en ce qui concerne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des faits imprescriptibles, des fiches relatives à des condamnations prononcées depuis plus de quarante ans et qui n'ont pas été suivies d'une nouvelle condamnation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Sont également retirés du casier judiciaire :

1° Les jugements prononçant la faillite personnelle ou l'interdiction prévue par l'article L. 653-8 du code de commerce lorsque ces mesures sont effacées par un jugement de clôture pour extinction du passif, par la réhabilitation ou à l'expiration du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u jour où ces condamnations sont devenues définitives ainsi que le jugement prononçant la liquidation judiciaire à l'égard d'une personne physique,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u jour où ce jugement est devenu définitif ou après le prononcé d'un jugement emportant réhabilitation.

Toutefois, si la durée de la faillite personnelle ou de l'interdiction est supérieure à cinq ans, la condamnation relative à ces mesures demeure mentionnée sur l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pendant la même durée ;

2° Les décisions disciplinaires effacées par la réhabilitation ;

3° (Supprimé)

4° Les dispenses de peines,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où la condamnation est devenue définitive ;

5° Les condamnations pour contravention,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où ces condamnations sont devenues définitives ; ce délai est porté à quatre ans lorsqu'il s'agit d'une contravention dont la récidive constitue un délit ;

6° Les mentions relatives à la composition pénale,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où l'exécution de la mesure a été constatée, si la personne n'a pas, pendant ce délai, soit subi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soit exécuté une nouvelle composition pénale ;

7° Les fiches relatives aux mesures prononc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8, 15, 15-1, 16,

16 bis et 28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précitée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u jour où la mesure a été prononcée si la personne n'a pas, pendant ce délai, soit subi de condamnation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soit exécuté une composition pénale, soit fait l'objet d'une nouvelle mesure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précitées de ladite ordonnance ;

8° Les condamnations ayant fait l'objet d'une réhabilitation judiciaire, lorsque la juridiction a expressément ordonné la suppression de la condamnation du casier judiciaire conformément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98 ;

9° Les fiches relatives aux jugements ou arrêts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lorsque l'hospitalisation d'office ordonn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06-135 a pris fin ou lorsque les mesures de sûreté prévues par l'article 706-136 ont cessé leurs effets.

Article 769-1

Il est fait mention, sur l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des personnes morales, des décisions modificative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69.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69 s'applique aux condamnations prononcées à l'encontre des personnes morales.

Article 770

Lorsque, à la suite d'une décision prise à l'égard d'un mineur de dix-huit ans, la rééducation de ce mineur apparaît comme acquise, le tribunal pour enfants peut, après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adite décision et même si le mineur a atteint sa majorité, décider, à sa requête, à celle du ministère public ou d'office, la suppression du casier judiciaire de la fiche concernant la décision dont il s'agit.

Le tribunal pour enfants statue en dernier ressort.

Lorsque la suppression de la fiche a été prononcée, la mention de la décision initiale ne doit plus figurer au casier judiciaire du mineur.

La fiche afférente à ladite décision est détruite.

1246 프랑스 형사소송법

Le tribunal de la poursuite initiale, celui du lieu du domicile actuel du mineur et celui du lieu de sa naissance sont compétents pour connaître de la requête.

La suppression de la fiche relative à une condamnation prononcée pour des faits commis par une personne âgée de dix-huit à vingt et un ans peut également, si le reclassement du condamné paraît acquis, être prononcée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a condamnation. Cette suppression ne peut cependant intervenir qu'après que l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ont été subies et que les amendes ont été payées et, si des peines complémentaires ont été prononcées pour une durée déterminée, après l'expiration de cette durée.

Dans le cas prévu à l'alinéa qui précède, la suppression du casier judiciaire de la fiche constatant la condamnation est demandée par requête, selon les règles de compétence et de procédure fixées par l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78.

Article 771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reçoit également les condamnations, décisions, jugements ou arrêtés visés à l'article 768 du présent code, concernant les personnes nées à l'étranger et les personnes dont l'acte de naissance n'est pas retrouvé ou dont l'identité est douteuse.

Article 772

Il est donné connaissance aux autorités militaires, par l'envoi d'une copie de la fiche du casier judiciaire, des condamnations ou des décisions de nature à modifier les conditions d'incorporation des individus soumis à l'obligation du service militaire.

Il est donné avis également aux mêmes autorités de toutes modifications apportées à la fiche ou au casier judiciaire en vertu des articles 769 et 770.

Article 773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communique à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l'identité des personnes qui ont fait l'objet d'une décision entraînant la privation de leurs droits électoraux.

Article 773-1

Une copie de chaque fiche constatant 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prononcée pour crime ou délit est adressée au sommier de police technique tenu par le ministre de l'intérieur.

La consultation de ce fichier est exclusivement réservée aux autorités judiciaires et aux servic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Les condamnations effacées par une amnistie ou par la réhabilitation de plein droit ou judiciaire cessent de figurer au sommier de police technique.

Article 774

Le relevé intégral d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applicables à la même personne est porté sur un bulletin appelé bulletin n° 1.

Le bulletin n° 1 n'est délivré qu'aux autorités judiciaires.

Lorsqu'il n'existe pas de fiche au casier judiciaire, le bulletin n° 1 porte la mention "néant".

Article 774-1

Le relevé intégral d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applicables à la même personne morale est porté sur le bulletin n° 1, qui n'est délivré qu'aux autorités judiciaires nationales, sauf accord de réciprocité.

Lorsqu'il n'existe pas de fiche au casier judiciaire, le bulletin n° 1 porte la mention "néant".

Article 775

Le bulletin n° 2 est le relevé des fiches du casier judiciaire applicables à la même personne, à l'exclusion de celles concernant les décisions suivantes :

- 1° Les décisions prononcées en vertu des articles 2, 8, 15, 15-1, 16, 18 et 28 de l'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modifiée,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
- 2° Les condamnations dont la mention au bulletin n° 2 a été expressément excl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75-1 ;
- 3°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contraventions de police ;

1248 프랑스 형사소송법

- 4° Les condamnations assorties du bénéfice du sursis, avec ou sans mise à l'épreuve, lorsqu'elles doi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non avenues ; toutefois, si a été prononcé le suivi socio-judiciaire prévu par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ou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la décision continue de figurer au bulletin n° 2 pendant la durée de la mesure ;
- 5° Les condamnations ayant fait l'objet d'une réhabilitation de plein droit ou judiciaire ;
- 6° Les condamnations auxquelles sont applicables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L. 255-22 du code de justice militaire ;
- 7° et 8° (paragraphe abrogés) ;
- 9° Les dispositions prononçant la déchéance de l'autorité parentale ;
- 10° Les arrêtés d'expulsion abrogés ou rapportés ;
- 11°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sans sursi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5 à 131-11 du code pénal,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cinq ans à compter du jour où elles sont devenues définitives.

Le délai est de trois ans s'il s'agit d'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de jours-amende. Toutefois, si la durée de l'interdiction, déchéance ou incapacité, prononcée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10 et 131-11, est supérieure à cinq ans, la condamnation demeure mentionnée au bulletin n° 2 pendant la même durée ;
- 12° Les déclarations de culpabilité assorties d'une dispense de peine ou d'un ajournement du prononcé de celle-ci ;
- 13°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ar des juridictions étrangères ;
- 14° Les compositions pénales mentionnées à l'article 768.
- 15° Sauf décision contraire du juge, spécialement motivée,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les délits prévus au titre IV du livre IV du code de commerce.

Les bulletins n° 2 fournis en cas de contestation concernant l'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ne comprennent que les décisions entraînant des incapacités en matière d'exercice du droit de vote. Lorsqu'il n'existe pas au casier judiciaire de fiches concernant des décisions à relever sur le bulletin n° 2, celui-ci porte la mention "Néant."

Article 775-1 A

Le bulletin n° 2 d'une personne morale est le relevé des fiches qui lui sont applicables, à l'exclusion de celles concernant les décisions suivantes :

- 1° Les condamnations dont la mention sur l'extrait de casier a été expressément exclue, en application de l'article 775-1 ;
- 2°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our contravention de police et les condamnations à des peines d'amende d'un montant inférieur à 30,000 euros ;
- 3° Les condamnations assorties du bénéfice du sursis lorsqu'elles doi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non venues ;
- 4° Les déclarations de culpabilité assorties d'une dispense de peine ou d'un ajournement, avec ou sans injonction, du prononcé de la peine ;
- 5° Les condamnations prononcées par les juridictions étrangères.

Lorsqu'il n'existe pas au casier judiciaire de fiches concernant des décisions à relever sur ce bulletin n° 2, il porte la mention "néant".

Article 775-1

Le tribunal qui prononce une condamnation peut exclure expressément sa mention au bulletin n° 2 soit dans le jugement de condamnation, soit par jugement rendu postérieurement sur la requête du condamné instruite et jugée selon les règles de compétence et procédure fixées par les articles 702-1 et 703.

Les juridictions compétentes sont alors composé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02-1.

L'exclusion de la mention d'une condamnation au bulletin n° 2 emporte relèvement de toutes l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ou incapacités de quelque nature qu'elles soient résultant de cette condamnation.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personnes condamnées pour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à l'article 706-47.

Le présent article est également applicable aux jugements ou arrêts de déclaration d'irresponsabilité pénale pour cause de trouble mental.

Article 775-2

Les condamnés à une peine ne pouvant donner lieu à réhabilitation de plein droit bénéficient, sur simple requête, de l'exclusion de la mention de leur condamnation au bulletin n° 2, selon les règles de compétence fixées par l'article précéden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vingt années à compter de leur libération définitive ou de leur libération conditionnelle non suivie de révocation, s'ils n'ont pas, depuis cette libération, été condamnés à une peine criminelle ou correctionnelle.

Article 776

Le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est délivré :

- 1° Aux préfets et aux administrations publiques de l'Etat saisis de demandes d'emplois publics, de propositions relatives à des distinctions honorifiques ou de soumissions pour des adjudications de travaux ou de marchés publics ou en vue de poursuites disciplinaires ou de l'ouverture d'une école privée, ainsi que de demandes d'agrément destinées à permettre la constatation par procès-verbal d'infractions à la loi pénale ;
- 2° Aux autorités militaires pour les appelés des classes et de l'inscription maritime et pour les jeunes qui demandent à contracter un engagement ainsi qu'aux autorités publiques compétentes en cas de contestation sur l'exercice des droits électoraux ou sur l'existence de l'incapacité d'exercer une fonction publique élective prévue par l'article 194 de la loi n° 85-98 du 25 janvier 1985 précitée (1)
- 3° Aux administrations et personnes morales dont la liste sera déterminée par le décret en Conseil d'Etat prévu à l'article 779, ainsi qu'aux administrations ou organismes chargés par la loi ou le règlement du contrôle de l'exercice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lorsque cet exercice fait l'objet de restrictions expressément fondées sur l'existence de condamnations pénales ou de sanctions disciplinaires.
- 4° Aux présidents des tribunaux de commerce pour être joint aux procédures de faillite et de règlement judiciaire, ainsi qu'aux juges commis à la surveillance du registre du commerce à l'occasion des demandes d'inscription audit registre ;
- 5° Aux présidents de conseils généraux saisis d'une demande d'agrément en vue d'adoption

prévu à l'article L. 225-2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

- 6°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ésignées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lorsque celles-ci reçoivent,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ou d'un acte pris sur le fondemen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une demande de communication des sanctions pénales ou disciplin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un professionnel, de la part d'une autorité compétente d'un autre Etat partie à ladite convention,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ou d'un Etat partie à l'accord sur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chargée d'appliquer des mesures restreignant l'exercice d'une activité, fondées, dans cet Etat, sur l'existence de sanctions pénales ou disciplin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e ce professionnel.

Les dirigeants de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ou privé exerçant auprès des mineurs une activité culturelle, éducative ou sociale au sens de l'article L. 312-1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peuvent obtenir la délivrance d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pour les seules nécessités liées au recrutement d'une personne, lorsque ce bulletin ne porte la mention d'aucune condamnation.

La liste de ces personnes morales est déterminée par décret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u ou des ministres intéressés.

Le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est transmis,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ou d'un acte pris sur le fondemen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un autre Etat visées au 6° du présent article.

Article 776-1

Le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des personnes morales est délivré :

- 1° Aux préfets, aux administrations de l'Etat et aux collectivités locales saisis de propositions ou de soumissions pour des adjudications de travaux ou de marchés publics ;
- 2° Aux administrations chargées de l'assainissement des professions agricoles, commerciales, industrielles ou artisanales ;
- 3° Aux présidents des tribunaux de commerce en cas de redressement ou de liquidation judiciaires, ainsi qu'aux juges commis à la surveillance du registre du commerce et des

sociétés à l'occasion des demandes d'inscription audit registre ;

- 4° A l'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morales demandant l'admission de leurs titres financiers aux négociations sur un marché réglementé ;
- 5°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ésignées par arrêté du ministre de la justice, lorsque celles-ci reçoivent,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ou d'un acte pris sur le fondemen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une demande de communication des sanctions pénales ou disciplin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une personne morale, de la part d'une autorité compétente d'un autre Etat partie à ladite convention, d'un Etat membre de l'Union européenne ou d'un Etat partie à l'accord sur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chargée d'appliquer des mesures restreignant l'exercice d'une activité, fondées, dans cet Etat, sur l'existence de sanctions pénales ou disciplinaires prononcées à l'encontre de cette personne morale.

Le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des personnes morales est transmis,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ou d'un acte pris sur le fondement du traité sur le fonctionnement de l'Union européenne, aux autorités compétentes d'un autre Etat visées au 5°.

Article 777

Le bulletin n° 3 est le relevé des condamnations suivantes prononcées pour crime ou délit, lorsqu'elles ne sont pas exclues du bulletin n° 2 :

- 1° Condamnations à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une durée supérieure à deux ans qui ne sont assorties d'aucun sursis ou qui doivent être exécutées en totalité par l'effet de révocation du sursis ;
- 2° Condamnations à des peines privatives de liberté de la nature de celles visées au 1° ci-dessus et d'une durée inférieure ou égale à deux ans, si la juridiction en a ordonné la mention au bulletin n° 3
- 3° Condamnations à d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ou incapacités prononcées sans sursi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31-6 à 131-11 du code pénal, pendant la durée des interdictions, déchéances ou incapacités ;
- 4° Décisions prononçant le suivi socio-judiciaire prévu par l'article 131-36-1 du code pénal

ou la peine d'interdiction d'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bénévole impliquant un contact habituel avec des mineurs, pendant la durée de la mesure.

Le bulletin n° 3 peut être réclamé par la personne qu'il concerne, il ne doit, en aucun cas, être délivré à un tiers.

Article 777-1

La mention d'une condamnation au bulletin n° 3 peut être exclue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alinéa 1er de l'article 775-1.

Article 777-2

Toute personne justifiant de son identité obtient, sur demande adressé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elle réside, communication du relevé intégral des mentions du casier judiciaire la concernant.

Lorsqu'il s'agit d'une personne morale, la demande est adressée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ans le ressort duquel elle a son siège, par son représentant légal justifiant de sa qualité.

Si la personne réside ou a son siège à l'étranger, la communication est faite par l'intermédiaire de l'agent diplomatique ou du consul compétent.

La communication ne vaut notification des décisions non définitives et ne fait pas courir les délais de recours.

Aucune copie de ce relevé intégral ne peut être délivré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également applicables au sommier de police technique.

Article 777-3

Aucune interconnexion au sens du 3° du I de l'article 30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ne peut être effectuée entre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et tout autre fichier ou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étenus par une personne quelconque ou par un service de l'Etat ne dépendant pa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1254 프랑스 형사소송법

Aucun fichier ou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étenu par une personne quelconque ou par un service de l'Etat ne dépendant pas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e pourra mentionner, hors les cas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s par la loi, des jugements ou arrêts de condamnation. Toutefois, une condamnation pénale pourra toujours être invoquée en justice par la victime de l'infraction.

Toute infraction aux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sera punie des peines encourues pour le délit prévu à l'article 226-21 du code pénal.

Article 778

Lorsque au cours d'une procédure quelconqu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le juge d'instruction constate qu'un individu a été condamné sous une fausse identité ou a usurpé un état civil, il est immédiatement procédé d'office, à la diligenc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ux rectifications nécessaires avant la clôture de la procédure.

La rectification est demandée par requête au président du tribunal ou de la cour qui a rendu la décision.

Si la décision a été rendue par une cour d'assises, la requête est soumise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ident communique la requête au ministère public et commet un magistrat pour faire le rapport.

Les débats ont lieu et le jugement est rendu en chambre du conseil.

Le tribunal ou la cour peut ordonner d'assigner la personne objet de la condamnation.

Si la requête est admise, les frais sont supportés par celui qui a été la cause de l'inscription reconnue erronée s'il a été appelé dans l'instance.

Dans le cas contraire ou dans celui de son involvabilité, ils sont supportés par le Trésor.

Toute personne qui veut faire rectifier une mention portée à son casier judiciaire peut agir dans la même forme.

Dans le cas où la requête est rejetée, le requérant est condamné aux frais. Mention de la décision est faite en marge du jugement ou de l'arrêt visé par la demande en rectification.

La même procédure est applicable au cas de contestation sur la réhabilitation de droit, ou de

difficultés soulevées par l'interprétation d'une loi d'amnistie, dans les termes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769.

Article 779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mesures nécessaires à l'exécution des articles 768 à 778, et notam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doivent être demandés, établis et délivrés les bulletins n° 1, 2 et 3 du casier judiciaire.

Ce règlement détermine également les conditions dans lesquelles les informations enregistrées par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peuvent être utilisées pour l'exécution des sentences pénales.

Ce décret organise en outre les modalités de transmission des informations entre le cas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et les personnes ou services qui y ont accès.

Le décret en Conseil d'Etat susvisé est pris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Article 781

Quiconque en prenant un faux nom ou une fausse qualité, s'est fait délivrer un extrait du casier judiciaire d'un tiers est puni de 7 500 euros d'amende.

Est puni des mêmes peines celui qui aura fourni des renseignements d'identité imaginaires qui ont provoqué ou auraient pu provoquer des mentions erronées au casier judiciaire.

Est puni des mêmes peines celui qui se sera fait délivrer par l'intéressé tout ou partie des mentions du relevé intégral visé à l'article 777-2 du présent code.

Titre IX : De la réhabilitation des condamnés

Article 782

Toute personne condamnée par un tribunal français à une peine criminelle, correctionnelle ou contraventionnelle peut être réhabilitée.

Article 783

La réhabilitation est soit acquise de plein droi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133-13 et suivants du code pénal, soit accordée par la chambre de l'instruc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Dans tous les cas, elle produit les effets prévus à l'article 133-16 du code pénal.

Chapitre Ier :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personnes physiques

Article 785

La réhabilitation ne peut être demandée en justice, du vivant du condamné, que par celui-ci, ou, s'il est interdit, par son représentant légal ; en cas de décès et si les conditions légales sont remplies, la demande peut être suivie par son conjoint ou par ses ascendants ou descendants et même formée par eux, mais dans le délai d'une année seulement à dater du décès.

La demande doit porter sur l'ensemble des condamnations prononcées qui n'ont pas été effacées par une réhabilitation antérieure.

Article 786

La demande en réhabilitation ne peut être formée qu'après un délai de cinq ans pour les condamnés à une peine criminelle, de trois ans pour condamnés à une peine correctionnelle et d'un an pour les condamnés à une peine contraventionnelle.

Ce délai part, pour les condamnés à une amende, du jour où la condamnation est devenue irrévocable et, pour les condamnés à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du jour de leur libération définitive ou,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733, quatrième alinéa, du jour de leur libération conditionnelle lorsque celle-ci n'a pas été suivie de révocation et, pour les condamnés soumis à la tutelle pénale, du jour où celle-ci a pris fin.

A l'égard des condamnés à une sanction pénale autre que l'emprisonnement ou l'amende, prononcée à titre principal, ce délai part de l'expiration de la sanction subie.

Article 787

Les condamnés qui sont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 ceux qui, après avoir obtenu la réhabilitation, ont encouru une nouvelle condamnation, ceux qui, condamnés contradictoirement ou par contumace à une peine criminelle, ont prescrit contre l'exécution de la peine, ne sont admis à demander leur réhabilitation qu'après un délai de dix ans écoulés depuis leur libération ou depuis la prescription.

Néanmoins, les récidivistes qui n'ont subi aucune peine criminelle et les réhabilités qui n'ont encouru qu'une condamnation à une peine correctionnelle sont admis à demander la réhabilitation après un délai de six années depuis leur libération.

Sont également admis à demander la réhabilitation, après un délai de six années écoulées depuis la prescription, les condamnés contradictoirement ou par défaut à une peine correctionnelle qui ont prescrit contre l'exécution de la peine.

Les condamnés contradictoirement, les condamnés par contumace ou par défaut, qui ont prescrit contre l'exécution de la peine, sont tenus, outre les conditions qui vont être énoncées, de justifier qu'ils n'ont encouru, pendant les délais de la prescription, aucune condamnation pour faits qualifiés crimes ou délits et qu'ils ont eu une conduite irréprochable.

Article 788

Le condamné doit, sauf le cas de prescription, justifier du paiement de l'amende et des dommages-intérêts ou de la remise qui lui en est faite.

A défaut de cette justification, il doit établir qu'il a subi le temps de contrainte judiciaire déterminé par la loi ou que le Trésor a renoncé à ce moyen d'exécution.

S'il est condamné pour banqueroute frauduleuse, il doit justifier du paiement du passif de la faillite en capital, intérêts et frais ou de la remise qui lui en est faite.

En cas de condamnation solidaire, la cour fixe la part des dommages-intérêts ou du passif qui doit être payée par le demandeur.

Si la partie lésée ne peut être retrouvée, ou si elle refuse de recevoir la somme due, celle-ci est versée à la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omme en matière d'offres de paiement et de consignation.

1258 프랑스 형사소송법

Si la partie ne se présente pas dans un délai de cinq ans pour se faire attribuer la somme consignée, cette somme est restituée au déposant sur sa simple demande.

Article 789

Si depuis l'infraction le condamné a rendu des services éminents au pays, la demande de réhabilitation n'est soumise à aucune condition de temps ni d'exécution de peine.

En ce cas, la cour peut accorder la réhabilitation même si l'amende et les dommages-intérêts n'ont pas été payés.

Article 790

Le condamné adresse la demande en réhabilita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sa résidence actuelle ou, s'il demeure à l'étrang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e sa dernière résidence en France ou, à défaut, à celui du lieu de condamnation.

Cette demande précise :

- 1° La date de la condamnation ;
- 2° Les lieux où le condamné a résidé depuis sa libération.

Article 791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ntoure de tous renseignements utiles aux différents lieux où le condamné a pu séjourner.

Il prend en outre l'avis du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Article 792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 fait délivrer :

- 1° Une expédition des jugements de condamnation ;
- 2° Un extrait du registre des lieux de détention où la peine a été subie constatant quelle a été la conduite du condamné ;
- 3° Un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Il transmet les pièces avec son avis au procureur général.

Article 793

La cour est saisie par le procureur général.

Le demandeur peut soumettre directement à la cour toutes pièces utiles.

Article 794

La cour statue dans les deux mois sur les conclusions du procureur général, la partie ou son avocat entendu ou dûment convoqués.

Article 795

L'arrêt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peut être déféré à la Cour de cassation dans les forme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Article 796

Dans le cas visé à l'article 789, le pourvoi en cassation formé contre l'arrêt rejetant la demande en réhabilitation est instruit et jugé sans amende ni frais.

Tous les actes de la procédure sont visés pour timbre et enregistrés gratis.

Article 797

En cas de rejet de la demande, une nouvelle demande ne peut être formée avant l'expiration d'un délai de deux années, à moins que le rejet de la première ait été motivé par l'insuffisance des délais d'épreuve.

En ce cas, la demande peut être renouvelée dès l'expiration de ces délais.

Article 798

Mention de l'arrêt prononçant la réhabilitation est faite en marge des jugements de condamnation.

Dans ce cas, les bulletins n° 2 et n° 3 du casier judiciaire ne doivent pas mentionner la condamnation.

L'arrêt qui prononce la réhabilitation peut toutefois ordonner que la condamnation soit retirée du casier judiciaire et ne soit pas non plus mentionnée au bulletin n° 1.

Le réhabilité peut se faire délivrer sans frais une expédition de l'arrêt de réhabilitation et un extrait de casier judiciaire.

Article 798-1

Toute personne dont la condamnation a fait l'objet d'une réhabilitation légale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peut demander, selon la procédure et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 présent chapitre, que la chambre de l'instruction ordonne que cette condamnation soit retirée du casier judiciaire et ne soit plus mentionnée au bulletin n° 1.

Chapitre II :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personnes morales

Article 799

Lorsque la personne condamnée est une personne morale, la demande en réhabilitation est formée par son représentant légal.

La demande ne peut être formée qu'après un délai de deux ans à compter de l'expiration de la durée de la sanction subie.

Elle doit préciser, d'une part, la date de la condamnation pour laquelle il est demandé la réhabilitation et, d'autre part, tout transfert du siège de la personne morale intervenu depuis la condamnation.

Le représentant légal adresse la demande en réhabilitation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u siège de la personne morale ou, si la personne morale a son siège à l'étranger,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du lieu de la juridiction qui a prononcé la condamnation.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e fait délivrer une expédition des jugements de condamnation de la personne morale et un bulletin n° 1 du casier judiciaire de celle-ci.

Il transmet ces pièces avec son avis au procureur général.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88, à l'exception de celles des deuxième et quatrième alinéas, et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93 à 798-1 sont applicables en cas de demande en réhabilitation d'une personne morale condamnée.

Toutefois,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797 est ramené à un an.

Titre X : Des frais de justice

Article 800

Un décret en Conseil d'Etat détermine les frais qui doivent être compris sous la dénomination de frais de justice criminelle, correctionnelle et de police ; il en établit le tarif ou fixe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ce tarif est établi, en règle le paiement et le recouvrement, détermine les voies de recours, fixe les conditions que doivent remplir les parties prenantes et, d'une façon générale, règle tout ce qui touche aux frais de justice en matière criminelle, correctionnelle et de police.

Article 800-1

Nonobstant toutes dispositions contraires, les frais de justice criminelle, correctionnelle et de police sont à la charge de l'Etat et sans recours envers les condamnés.

Toutefois,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articles 177-2 ou 212-2 à l'encontre de la partie civile dont la constitution a été jugée abusive ou dilatoire, les frais de justice correspondant aux expertises ordonnées à la demande de cette dernière peuven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ces articles, être mis à la charge de celle-ci par le juge d'instruction ou la chambre de l'instruction. Le présent alinéa n'est pas applicable en matière criminelle et en matière de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prévus par le livre II du code pénal ou lorsque la partie civile a obtenu l'aide juridictionnelle.

Article 800-2

A la demande de l'intéressé, toute juridiction prononçant un non-lieu, une relaxe ou un acquittement peut accorder à la personne poursuivie une indemnité qu'elle détermine au titre des frais non payés par l'Etat et exposés par celle-ci.

Cette indemnité est à la charge de l'Etat.

La juridiction peut toutefois ordonner qu'elle soit mise à la charge de la partie civile lorsque l'action publique a été mise en mouvement par cette dernière.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801

Tout délai prévu par une disposition de procédure pénale pour l'accomplissement d'un acte ou d'une formalité expire le dernier jour à vingt-quatre heures.

Le délai qui expirerait normalement un samedi ou un dimanche ou un jour férié ou chômé est prorogé jusqu'au premier jour ouvrable suivant.

Article 801-1

Tous les actes mentionnés au présent code, qu'il s'agisse d'actes d'enquête ou d'instruction ou de décisions juridictionnelles, peuvent être revêtus d'une signature numérique ou électronique, selon des modalités qui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802

En cas de violation des formes prescrites par la loi à peine de nullité ou d'inobservation des formalités substantielles, toute juridiction, y compris la Cour de cassation, qui est saisie d'une demande d'annulation ou qui relève d'office une telle irrégularité ne peut prononcer la nullité que lorsque celle-ci a eu pour effet de porter atteinte aux intérêts de la partie qu'elle concerne.

Article 803

Nul ne peut être soumis au port des menottes ou des entraves que s'il est considéré soit comme dangereux pour autrui ou pour lui-même, soit comme susceptible de tenter de prendre la fuite. Dans ces deux hypothèses, toutes mesures utiles doivent être prises, dans les conditions compatibles avec les exigences de sécurité, pour éviter qu'une personne menottée ou entravée soit photographiée ou fasse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visuel.

Article 803-1

Dans les cas où, en vertu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code, il est prévu de procéder aux notifications à un avocat par lettre recommandée ou par lettre recommandée avec demande d'avis de réception, la notification peut aussi être faite sous la forme d'une télécopie avec récépissé

ou par un envoi adressé par 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à l'adresse électronique de l'avocat et dont il est conservé une trace écrite.

Article 803-2

Toute personne ayant fait l'objet d'un défèrement à l'issue de sa garde à vue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omparaît le jour même devant ce magistrat ou, en cas d'ouverture d'une information, devant le juge d'instruction saisi de la procédure.

Il en est de même si la personne est déférée devant le juge d'instruction à l'issue d'une garde à vue au cours d'une commission rogatoire, ou si la personne est conduite devant un magistrat en exécution d'un mandat d'amener ou d'arrêt.

Article 803-3

En cas de nécessité et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803-2, la personne peut comparaître le jour suivant et peut être retenue à cette fin dans des locaux de la juridiction spécialement aménagés, à la condition que cette comparution intervienne au plus tard dans un délai de vingt heures à compter de l'heure à laquelle la garde à vue a été levée, à défaut de quoi l'intéressé est immédiatement remis en liberté.

Lorsqu'il est fait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la personne doit avoir la possibilité de s'alimenter et, à sa demande, de faire prévenir par téléphone une d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63-2, d'être examinée par un médecin désign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63-3 et de s'entretenir, à tout moment, avec un avocat désigné par elle ou commis d'office à sa deman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63-4.

L'identité des personnes retenue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premier alinéa, leurs heures d'arrivée et de conduite devant le magistrat ainsi qu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font l'objet d'une mention dans un registre spécial tenu à cet effet dans le local où ces personnes sont retenues et qui est surveillé, sous le contrôl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ar des fonctionnaires de la police nationale ou des militaires de la gendarmerie national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e la personne a fait l'objet,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88, d'une garde à vue ayant duré plus de

1264 프랑스 형사소송법

soixante-douze heures.

Article 803-4

Lorsqu'une personne poursuivie ou condamnée par les juridictions françaises est arrêtée hors du territoire national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sur le mandat d'arrêt européen ou sur l'extradition ou en application d'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elle peut déclarer auprès des autorités étrangères compétentes qu'elle exerce les recours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notamment en formant opposition, appel ou pourvoi contre la décision dont elle fait l'objet.

Dans tous les cas, y compris en cas d'arrestation d'une personne condamnée par défaut en matière criminelle, les délais de présentation, de détention ou de jugement prévus par le présent code ne commencent toutefois à courir qu'à compter de sa remise ou de son retour sur le territoire national.

Livre VI : Disposition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d'outre-mer régies par l'article 74 de la Constitution et à la Nouvelle-Calédonie

Titre Ier : Dispositions applicables en Polynésie française,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t en Nouvelle-Calédoni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804

Le présent code est applicable en Nouvelle-Calédonie, en Polynésie française et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et aux seules exceptions :

- 1° Pour la Nouvelle-Calédonie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et des articles 529-3 à 529-6 ;
- 2° Pour la Polynésie française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des articles 529-3 à 529-9 et 529-11 ;
- 3° Pour les îles Wallis et Futuna des articles 52-1, 83-1, 83-2,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des articles 529-3 à 529-9 et 529-11.

Article 805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termes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tribunal d'instance" ou "tribunal de police"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ou, le cas échéant, par les termes : "section détaché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Les termes "pôle de l'instruction" et "collège de l'instruction"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juge d'instruction" et les mots :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a collectivité".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ces territoires et en Nouvelle-Calédonie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ayant le même objet.

Article 806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sanctions pécuniaires encourues en vertu du présent code sont prononcées en monnaie locale, compte tenu de la contre-valeur de l'euro dans cette monnaie.

Chapitre II : De l'action publique et de l'action civile

Article 807

L'article 2-6 est rédigé comme suit :

"Art. 2-6. -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se proposant par ses statuts de combattre les discriminations fondées sur le sexe ou sur les mœurs, peu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discriminations commises en raison du sexe, de la situation de famille ou des mœurs de la victime, réprimées par les articles 225-2 et 432-7 du code pénal, ou prohibée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droit du travail."

Article 808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8 est rédigé comme suit :

"Toute association régulièrement déclarée depuis au moins cinq ans à la date des faits ayant, en vertu de ses statuts, vocation à défendre ou à assister les personnes handicapées peut également exercer les droits reconnus à la partie civile en ce qui concerne les infractions aux dispositions législatives ou réglementaires applicables localement relatives à l'accessibilité des locaux d'habitation, des lieux de travail ou des établissements et installations recevant du public."

Chapitre III : De la police judiciaire

Article 809

I. -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exerçant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en Nouvelle-Calédonie des fonctions correspondant à celles des fonctionnaires et agents métropolitains

visés aux articles 22 à 29 sont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 dans les conditions et les limites fixées par ces mêmes articles.

- II. - Les agents assermentés des territoires et, en Nouvelle-Calédonie, des provinces, peuvent constater par procès-verbal des infractions aux réglementations édictées par les territoires ou, en Nouvelle-Calédonie, les provinces, lorsqu'ils appartiennent à une administration chargée de contrôler la mise en oeuvre de ces réglementations. Ces agents sont commissionnés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après qu'ils ont été agréé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s prêtent serment devan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Article 809-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1-2, les références aux articles L. 2339-5 et L. 2339-9 du code de la défense et à l'article L. 1er du code de la route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qui répriment la détention ou le port d'arme et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irculation routière qui répriment la conduite sous l'empire d'un état alcoolique ou en état d'ivresse manifeste.

Article 809-2

En Polynésie française,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mentionnés à l'article 35 de la loi organique n° 2004-192 du 27 février 2004 portant statut d'autonomi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sont agents de police judiciaire adjoint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21 du présent code.

Article 809-3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4-1,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révues par cet article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du code des communes de la Nouvelle-Calédonie et du code des communes de Polynésie française.

Article 810

Pour l'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5,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sont

remplies par les fonctionnaires et agents mentionnés au I de l'article 809, à l'exception de ceux exerçant des fonctions de gardes champêtres des communes et des gardes particuliers assermentés.

Article 811

Po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6 et de l'article 48,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peuvent également être exercées par un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ppartenant à la gendarmerie.

Pour l'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6, les fonctions du ministère public peuvent être également exercées par le chef de la circonscription ou de la subdivision administrative où siège le tribunal de police.

Chapitre IV : Des enquêtes

Article 812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63, 77 et 154, lorsque les conditions de transport ne permettent pas de conduire devant le magistrat compétent la personne retenu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prescrire à cette personne de se présenter à lui périodiquement, à charge d'en informer immédiatement le magistrat compétent.

Ce dernier décide de la mainlevée de la mesure ou de son maintien pour une durée qu'il fixe et qui ne peut se prolonger au-delà du jour de la première liaison aérienne ou maritime.

Le fait de se soustraire à l'obligation définie au précédent alinéa est puni d'un an de prison et 15,000 euros d'amende.

Article 813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n l'absence d'un médecin dans l'île où se déroule la garde à vue, l'examen prévu par l'article 63-3 est effectué par un infirmier diplômé ou, à défaut, par un membre du corps des auxiliaires de santé publique.

Article 814

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a garde à vue se déroule en dehors des communes de Nouméa, Mont-Doré, Dumbéa et Paita et que le déplacement d'un avocat paraît matériellement impossible, l'entretien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3-4 peut avoir lieu avec une personne choisie par la personne gardée à vue, qui n'est pas mise en cause pour les mêmes faits ou pour des faits connexes et qui n'a fait l'objet d'aucune condamnation, incapacité ou déchéance mentionnée a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3-4 sont applicables à la personne choisie, qui en est inform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fait pour une personne, qui a été appelée à interveni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de faire état auprès de quiconque de cet entretien dans le but d'entraver le cours de la justic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15,000 euros d'amende.

Les dispositions des alinéas précédents s'appliquent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lorsque la garde à vue se déroule dans une île où il n'y a pas d'avocat et que le déplacement d'un avocat paraît matériellement impossible.

Dans les territoires des îles Wallis-et-Futuna, il peut être fait appel pour l'entretien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3-4 à une personne agréé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Lorsque cette personne n'est pas désignée par la personne gardée à vue, elle l'est d'office par le président de cette juridiction.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au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3-4 et celles du deuxième alinéa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à la personne choisie, qui en est inform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Article 814-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8-2-1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du code du travail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dans ces collectivités.

Chapitre V :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Article 815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88, l'aide juridictionnelle doit s'entendre du régime d'aide ou d'assistance judiciaire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816

L'obligation pour la partie civile de déclarer une adresse au juge d'instruction prévue par l'article 89 s'entend, pour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a Nouvelle-Calédonie, d'une adresse située dans le territoire où se déroule l'information.

Article 817

Pour l'application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02, le greffier peut être désigné comme interprète pour l'une des langues en usage dans le territoire.

Il est, dans ce cas, dispensé du serment.

Article 818

L'obligation pour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déclarer une adresse au juge d'instruction prévue a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16 s'entend d'une adresse située dans le territoire où se déroule l'information.

Article 819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116-1 est porté à un mois lorsque la personne mise en examen ne réside pas sur l'île où siège le juge d'instruction saisi.

Article 820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27, 133 et 135-2, si la personne faisant l'objet du mandat est trouvée dans une île où ne siège pas de tribunal, la conduite a lieu dès la première liaison aérienne ou maritime.

Le délai nécessaire à la conduite de cette personne devant le magistrat compétent et celui pendant lequel elle a été retenue avant son embarquement sont imputés, s'il y a lieu, sur la durée de la peine.

Article 821

L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130 et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5-2 sont portés à quinze jours lorsque le transfèrement se fait à partir ou à destination d'un territoire d'outre-mer ou de la Nouvelle-Calédonie.

Article 82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28, la personne peut être retenue dans un local autre qu'une maison d'arrêt.

Article 823

Pour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145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e juge d'instruction peut ordonner l'incarcération provisoire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Celle-ci doit comparaître devant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ans les meilleurs délais et, au plus tard, le septième jour ouvrable suivant.

Le délai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187-1 est également porté à sept jours ouvrables.

Article 823-1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06-71 sont applicables au débat contradictoire préalable au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une personne libre, tenu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de Nouméa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45 et 396.

Article 824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91, la chambre de l'instruction de la cour d'appel de Nouméa et celle de la cour d'appel de Papeete sont composées d'un président de chambre ou d'un conseiller et de deux magistrats du siège du ressort de la cour d'appel.

1272 프랑스 형사소송법

Ces magistrats sont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n cas d'empêchement d'un membre de la chambre de l'instruction, celui-ci est remplacé par un magistrat du siège désigné par le premier président.

Chapitre VI : De la cour d'assises

Article 825

Par dérogation à l'article 236, la tenue des assises a lieu chaque fois qu'il est nécessaire.

Article 826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44, et sous réserve de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e l'article 247, la cour d'assises peut également être présidé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ou par le magistrat du siège le plus ancien dans le grade le plus élevé de ce tribunal.

Article 827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45 et 250, il est procédé annuellement à la désignation du président de la cour d'assises et des assesseurs.

Article 828

Le 8° de l'article 256 est rédigé comme suit :

"8° Les majeurs sous sauvegarde de justice, les majeurs en tutelle, les majeurs en curatelle et ceux qui sont placés dans un établissement accueillant les malades atteints de troubles mentaux en vertu d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Article 829

Sans préjudice de l'application de l'article 257, les fonctions de juré sont également incompatibles avec les fonctions suivantes : assesseurs du tribunal du travail ; assesseurs du tribunal mixte de commerce ; assesseurs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de Wallis-et-Futuna ; membres du gouvernement de la Polynésie française ; membres des assemblées territoriales ; membres du

conseil du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 membres des assemblées provinciales de la Nouvelle-Calédonie ; représentants de l'Etat dans les territoires ; secrétaires généraux des territoires chefs de circonscription ou de subdivision administratives.

Article 830

Le nombre minimum de jurés prévu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60 est fixé à 80 pour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Article 831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a liste préparatoire de la liste annuelle, prévue par les articles 261 et 261-1, est dressée par circonscription territoriale et les attributions du maire sont exercées par le chef de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Article 832

- I . - Pour l'application en Nouvelle-Calédonie et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262 fixant la composition de la commission prévue à cet article, les conseillers généraux sont remplacés par cinq membres désignés chaque année en son sein par le Congrès ou l'assemblé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 II . -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a commission prévue à l'article 262 comprend :
-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président ;
 -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on délégué ;
 - un citoyen désigné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L. 933-2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 deux membres de l'assemblée territoriale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celle-ci.

Article 833

La liste spéciale de jurés suppléants, prévue à l'article 264, comprend trente noms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Article 834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69, l'accusé peut être transféré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autre qu'une maison d'arrêt.

Chapitre VII : Du jugement des délits

Article 835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392-1, l'aide juridictionnelle doit s'entendre du régime d'aide ou d'assistance judiciaire en vigueur localement.

Article 836

En Nouvelle-Calédonie, le tribunal correctionnel statuant en formation collégiale est complété par deux assesseur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e tribunal correctionnel statuant en formation collégiale est composé d'un magistrat du siège et de deux assesseur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Article 837

L'article 398-1 est ainsi rédigé :

I. -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

"Art. 398-1.-Sont jug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

- 1°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66 et 69 du décret-loi du 30 octobre 1935 unifiant le droit en matière de chèques et relatif aux cartes de paiement ;
- 2°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irculation routière ainsi que, lorsqu'ils sont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par les articles 222-19-1, 222-20-1, 223-1 et 434-10 du code pénal ;
- 3°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transports terrestres ;
- 4°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1, 222-12 (1° à 15°), 222-13 (1° à 15°), 222-16,

222-17, 222-18, 222-32, 225-10-1, 227-3 à 227-11, 311-3, 311-4 (1° à 11°), 313-5, 314-5, 314-6, 321-1, 322-1 à 322-4-1, 322-12, 322-13, 322-14, 431-22 à 431-24, 433-3 premier et deuxième alinéa, 433-5, 433-6 à 433-8 premier alinéa, 433-10 premier alinéa et 521-1 du code pénal et L. 342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5°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hasse, de pêche, de protection de la faune et de la flore et en matière de pêche maritime ;
- 6° Les délits prévus par le code de l'aménagement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n matière de défaut de permis de construire ou de terrassement ou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sur les installations classées ;
- 7° Les délits prévus par la loi n° 83-581 du 5 juillet 1983 relative à la sauvegarde de la vie humaine en mer ;
- 8° Les délits de port ou transport d'armes de la 6e catégorie prévus par l'article L. 2339-9 du code de la défense ;
- 9° Les délits pour lesquels une peine d'emprisonnement n'est pas encourue, à l'exception des délits de presse.

Toutefois, le tribunal statue obligatoir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lorsque le prévenu est en état de détention provisoire lors de sa comparution à l'audience ou lorsqu'il est poursuivi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immédiate.

Il statue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pour le jugement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lorsque ces délits sont connexes à d'autres délits non prévus par cet article."

II. - En Nouvelle-Calédonie et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

"Art. 398-1.-Sont jugé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8 :

- 1°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66 et 69 du décret-loi du 30 octobre 1935 unifiant le droit en matière de chèques et relatif aux cartes de paiement ;
- 2°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irculation routière ainsi que, lorsqu'ils sont commis à l'occasion de la conduite d'un véhicule, par les articles 222-19-1, 222-20-1, 223-1 et 434-10 du code pénal ;

1276 프랑스 형사소송법

- 3°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réglementations relatives aux transports terrestres ;
- 4° Les délits prévus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hasse, de pêche, de protection de la faune et de la flore et en matière de pêche maritime ;
- 5° Les délits de port ou transport d'armes de la 6e catégorie prévus par l' article L. 2339-9 du code de la défense ;
- 6° Les délits prévus par les articles 222-11, 311-3, 313-5, 314-5, 314-6, 433-5 et 521-1 du code pénal et L. 342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
- 7° Les délits prévus par la loi n° 83-581 du 5 juillet 1983 relative à la sauvegarde de la vie humaine en mer.

Toutefois, le tribunal statue obligatoir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lorsque le prévenu est en état de détention provisoire lors de sa comparution à l'audience ou lorsqu'il est poursuivi selon la procédure de comparution immédiate.

Il statue égal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8 pour le jugement des déli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lorsque ces délits sont connexes à d'autres délits non prévus par cet article."

Article 838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avis prévu par l'article 399 est donné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83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07, le greffier peut être désigné comme interprète pour l'une des langues en usage dans le territoire.

Il est, dans ce cas, dispensé du serment.

S'il existe un interprète officiel permanent, celui-ci ne prête serment qu'à l'occasion de son entrée en fonctions.

Article 84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16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e déplacement d'un avocat paraît matériellement impossible, le prévenu peut prendre pour conseil une personne qui n'a fait l'objet d'aucune condamnation, incapacité ou déchéance mentionnée a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Ne peut être choisie comme conseil une personne qui fait l'objet de poursuites pour les mêmes faits ou pour des faits connexes.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e prévenu peut prendre pour conseil une personne agréé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814.

Article 843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20-1, le montant de la demande ne doit pas excéder le plafond de la compétence de droit commun des tribunaux d'instance de la métropole en matière civile.

Article 844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470-1 est ainsi rédigé :

"Toutefois, lorsqu'il apparaît que des tiers responsables doivent être mis en cause, le tribunal renvoie l'affaire, par une décision non susceptible de recours, devant la juridiction civile compétente."

Article 844-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e condamné est mineur, le service chargé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enf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Article 844-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1278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845

Les délais d'opposition prévus à l'article 491 e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92 sont de dix jours si le prévenu réside dans l'île où siège le tribunal et d'un mois s'il réside hors de cette île.

Article 846

Le délai supplémentaire prévu à l'article 500 est porté à quinze jours pour les parties qui résident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Article 847

Si l'appelant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la déclaration d'appel prévue à l'article 502 peut être adressée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par lettre signée de l'appelant.

Dès réception de cette lettre, le greffier dresse l'acte d'appel et y annexe la lettre de l'appelant. Dans le délai prévu par les articles 498, 500 et 846, l'appelant est tenu de confirmer son appel à la mairie ou à la gendarmerie la plus proche de sa résidence.

Chapitre VIII : Du jugement des contraventions

Article 848

A Nouméa, Mata-Utu et Papeete, le tribunal de police est constitué par un jug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un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45 à 48, 810 et 811, et un greffier. Dans les sections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t lors des audiences foraines, le tribunal est constitué par le juge chargé du service de la section ou le juge forain, un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ainsi qu'il est dit aux articles 45 à 48, 810 et 811, et un greffier.

Article 84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527, le délai d'opposition ouvert au prévenu, fixé au troisième alinéa de cet article, est porté à deux mois si le prévenu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Article 850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29 est ainsi rédigé :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aux réglementations applicables localement en matière de circulation routière, d'assurances, de chasse, de pêche,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e droit de la consommation, de la sécurité en mer, de réglementation sur les débits de boissons ou l'ivresse publique manifeste et d'écobuage, qui sont punies seulement d'une peine d'amende,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le paiement d'une amende forfaitaire qui est exclusive de l'application des règles de la récidive."

En Nouvelle-Calédonie, pour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n matière de transport terrestre qui sont seulement punies d'une peine d'amende, l'action publique est éteinte par le paiement d'une amende forfaitaire qui est exclusive de l'application des règles de la récidive.

Article 850-1

En Nouvelle-Calédonie, les contraventions des quatre premières classes à la police des services de transports publics routiers de personnes, fixées par la réglementation locale, sont constatées par des procès-verbaux dressés concurremment par les agents assermentés de la Nouvelle-Calédonie, des provinces et des communes et des délégataires du service public.

Ces agents sont commissionnés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ou par le délégataire de service public.

Après avoir été agréé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ils prêtent serment devan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Ces agents sont habilités à relever l'identité et l'adresse du contrevenant uniquement lorsqu'ils procèdent au contrôle de l'existence et de la validité des titres de transport des voyageurs.

Si le contrevenant refuse ou se trouve dans l'impossibilité de justifier de son identité, l'agent du délégataire du service public en rend compte immédiatement à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e la police nationale ou de la gendarmerie nationale territorialement compétent, qui peut alors lui ordonner sans délai de lui présenter sur-le-champ le contrevenant.

A défaut de cet ordre, l'agent du délégataire du service public ne peut retenir le contrevenant.

Article 850-2

Pour l'application en Nouvelle-Calédonie de l'article 529-7, les mots :

"Pour les contraventions au code de la route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classes dont la liste est fixée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Pour les contraventions des deuxième, troisième et quatrième classes à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en matière de circulation routière.

Article 851

Outre les dispositions rendues applicables par les articles 544 et 545, les articles 841 et 845 sont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Article 852

Les dispositions du quatrième alinéa de l'article 546 s'appliquent aux affaires poursuivies à la requête des autorités compétentes en matière d'eaux et forêts.

Article 853

Outre les dispositions rendues applicables par les articles 547 et 549, l'article 846 est applicable aux appels formés contre les jugements de police.

Chapitre IX : Des citations et significations

Article 854

Le délai prévu par l'article 552 entre le jour où la citation est délivrée et le jour fixé pour la comparution devant la juridiction est d'au moins dix jours si la partie citée réside dans l'île où siège le tribunal.

Ce délai est augmenté d'un mois si la partie citée réside dans une autre île de ce territoire ou en tout autre lieu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Chapitre X : Du pourvoi en cassation

Article 855

Le délai de pourvoi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68 est porté à un mois si le demandeur en cassation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Article 856

Si le demandeur en cassation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la déclaration de pourvoi prévue à l'article 576 peut également être faite par lettre signée du demandeur en cassation et adressée au greffier de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Dès réception de cette lettre, le greffier dresse l'acte de pourvoi et y annexe la lettre du demandeur en cassation.

Dans les délais prévus par les articles 568 et 855, le demandeur en cassation est tenu de confirmer son pourvoi à la mairie ou à la gendarmerie la plus proche de sa résidence.

Article 857

Le délai d'opposition à l'arrêt rendu par la Cour de cassation prévu à l'article 579 est porté à un mois si la partie qui forme opposition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Dans ce dernier cas, l'opposition peut être également faite dans les formes prévues à l'article 856.

Article 858

Le délai prévu à l'article 584 est porté à deux mois si le demandeur en cassation réside hors de l'île où la juridiction qui a rendu la décision attaquée a son siège.

Article 859

Le délai et les formes d'opposition à l'arrêt rendu par la Cour de cassation prévus à l'article 589 sont ceux définis aux articles 855 et 856.

Chapitre XI : De quelques procédures particulières

Article 859-1

Le délai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27-6 est porté à quinze jours lorsque le transfèrement se fait à partir de la Nouvelle-Calédoni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ou des îles Wallis-et-Futuna.

Article 860

L'ordonnance mentionnée à l'article 628 et l'extrait de condamnation mentionné à l'article 634 sont insérés dans l'un des journaux du territoire, affichés à la porte du domicile de l'intéressé et, lorsqu'il n'y a pas de mairie, affichés à la diligence du chef de circonscription administrative.

Article 861

Le délai prévu a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662 est de deux mois.

Article 862

Dans le territoire des îles Wallis-et-Futuna,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à la commission mentionnée à l'article 706-4.

Article 862-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06-2 en Nouvelle-Calédonie, en Polynésie française et à Wallis-et-Futuna, il est ajouté après les mots : "par l'article L. 5311-1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les mots : "ou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localement".

Article 863

L'article 706-9 est rédigé ainsi :

"Art. 706-9. - La commission ou, à Wallis-et-Futuna,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tient compte dans le montant des sommes allouées à la victime au titre de la réparation de son préjudice :

- des prestations énumérées au II de l'article 1er de l'ordonnance n° 59-76 du 7 janvier 1959 relative aux actions en réparation civile de l'Etat et de certain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
- des prestation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gérant 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
- des sommes versées en remboursement d'un traitement médical ou de rééducation ;
- des salaires et des ressources du salarié maintenus par l'employeur pendant la période d'inactivité consécutive à l'événement qui occasionne le dommage.

Il est tenu également compte des indemnités de toutes natures reçues ou à recevoir d'autres débiteurs au titre du même préjudice.

Les sommes allouées sont versées par le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Article 864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4 est ainsi rédigé :

"Toute personne qui, victime d'un vol, d'une escroquerie ou d'un abus de confiance, ne peut obtenir à un titre quelconque une réparation ou une indemnisation effective et suffisante de son préjudice, et se trouve de ce fait dans une situation matérielle grave, peut obtenir une indemn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3 (troisième et dernier alinéa) à 706-12, lorsque ses ressources sont inférieures au plafond pour bénéficier de l'aide juridictionnelle partielle, affectée le cas échéant de correctif pour charges de famille, prévu par l'article 3 de l'ordonnance n° 92-1147 du 12 octobre 1992 relative à l'aide juridictionnelle en matière pénale dans les territoires d'outre-mer."

Article 865

Dans le territoire de la Polynésie française, les examens prévus à l'article 706-88 peuvent être effectués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813.

1284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866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03 est ainsi rédigé :

"En cas d'information ouverte pour l'une des infractions entra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s articles 706-73 et 706-74 et afin de garantir le paiement des amendes encourues ainsi que, le cas éché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le président du tribunal d'instance ou un juge délégué par lui,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ordonner, aux frais avancés du Trésor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des mesures conservatoires sur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Article 866-1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66 est ainsi rédigé :

En cas d'information ouverte pour l'une des infractions, punie d'une peine égale ou supérieure à trois ans d'emprisonnement, figurant au sein du titre Ier du livre III du code pénal, le président du tribunal d'instance ou un juge délégué par lui, sur requêt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t, dans les conditions et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706-103 du présent code, ordonner des mesures conservatoires sur les biens, meubles ou immeubles, divis ou indivis, de la personne mise en examen afin de garantir le paiement des amendes encourues ainsi que, le cas échéant, l'indemnisation des victimes.

Article 867

Les attributions dévolues au comptable public compétent par l'article 707 sont exercées par l'agent chargé du recouvrement des amendes en vertu de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dans le territoire.

Article 868

Les personnes visées à l'article 714 peuvent être détenues dans un local autre qu'une maison d'arrêt.

Article 868-1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2,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de Wallis-et-Futuna exerce les fonctions d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Il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a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12-3.

Article 868-2

En Nouvelle-Calédonie, lorsque le condamné est mineur, le service chargé de la protection judiciaire de l'enfance ou son directeur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selon les ca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à son directeur.

Article 868-3

Pour son application en Polynési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éfini localement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ou de la Nouvelle-Calédonie.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icle 868-4

Pour son application dans les îles Wallis et Futuna,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défini à l'article 95 de la loi n° 52-1322 du 15 décembre 1952 instituant un code du travail dans les territoires et territoires associés relevant des ministères de la France d'outre-mer.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icle 872

La caution mentionnée à l'article 759 est admise par le comptable public compétent ou par l'agent qui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à celui-ci par la réglementation applicable au territoire.

Article 873

L'article 763 est ainsi rédigé :

"Art. 763. - En cas de prescription d'une peine prononcée en matière criminelle, le condamné est soumis de plein droit et à titre définitif à l'interdiction de séjour, dans la circonscription ou subdivision administrative où demeurent la victime du crime ou ses héritiers directs."

Article 873-1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63-7 est ainsi rédigé :

"Lorsqu'une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comprenant une injonction de soins doit subir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lle exécute cette peine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ermettant de lui assurer un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adapté."

Chapitre XIII : Du casier judiciaire

Article 874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68, les attributions du casier judiciaire national sont exercées par le greffe de chaqu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qui reçoit,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nées dans la circonscription du tribunal et après vérification de leur identité aux registres de l'état civil, des fiches constatant les condamnations, jugements et décisions énumérés aux 1° à 8° dudit article.

Article 875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68-1, les attributions du casier judiciaire national sont exercées par le greff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qui reçoit, en ce qui concerne les personnes morales dont le siège se situe dans le ressort du tribunal et après contrôle de leur identité au moyen

du répertoire territorial des entreprises et établissements, des fiches constatant les condamnations et déclarations mentionnées aux 1° à 4° dudit article.

Article 876

L'article 773 est ainsi rédigé :

"Art. 773. - Il est adressé une copie de chaque fiche constatant une décision entraînant la privation des droits électoraux à l'autorité administrative compétente du territoire."

Titre II : Dispositions applicables à Mayott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877

A l'exception des articles 52-1, 83-1, 83-2, 191, 232, 235, 240, 243 à 267, 288 à 303, 305, 398 à 398-2, 399, 510, le présent code (Dispositions législatives) est applicable à Mayotte sous réserve des adaptations prévues au présent titre.

Article 878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à Mayotte :

Les termes : "cour d'appel" ou :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ou : "chambre de l'instruction"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tribunal supérieur d'appel" ;

Les termes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ou : "tribunal d'instance" ou : "tribunal de police"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Les termes : "cour d'assises" ou : "la cour et le jury"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cour criminelle" ;

Le terme : "département" est remplacé par les termes : "collectivité territoriale" ;

Le terme : "préfet" est remplacé par les termes : "représentant du Gouvernement" et les termes : "arrêté préfectoral" par les termes : "arrêté du représentant du Gouvernement".

Les termes : "pôle de l'instruction" et "collège de l'instruction"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juge d'instruction".

De même, les références à des dispositions non applicables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pplicables localement ayant le même objet.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aux chefs de cours par le présent code sont exercées respectivement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t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dit tribunal.

Celles qui sont attribuées au juge d'instruction sont exercées par un magistrat du sièg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Article 879

Les attributions dévolues par le présent code aux avocats et aux conseils des parties peuvent être exercées par des personnes agréées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Ces personnes sont dispensées de procuration.

Article 879-1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16 à 19, les officiers de police de Mayotte mis à la disposition de l'Etat sont assimilés, selon les dispositions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ces articles, aux fonctionnaires titulaires du corps de commandement et d'encadrement de la police nationale.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0 et 21, les agents de police de Mayotte mis à la disposition de l'Etat sont assimilés, selon les dispositions e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ces articles, aux agents de la police nationale.

Chapitre II : Des enquêtes

Article 880

Lorsque le déplacement d'un avocat ou d'une personne agré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879 paraît matériellement impossible, l'entretien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3-4 peut avoir lieu avec une personne choisie par la personne gardée à vue, qui n'est pas mise en cause pour les mêmes faits ou pour des faits connexes et qui n'a fait l'objet d'aucune condamnation,

incapacité ou déchéance mentionnée au bulletin n° 2 du casier judiciaire.

Les dispositions des deuxième au quatrième alinéas de l'article 63-4 sont applicables à la personne choisie, qui en est informée par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Le fait pour une personne qui a été appelée à intervenir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de faire état auprès de quiconque de cet entretien dans le but d'entraver le cours de la justice est puni d'un an d'emprisonnement et de 15,000 euros d'amende.

Chapitre III :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Article 881

L'obligation pour la partie civile de déclarer une adresse au juge d'instruction prévue par l'article 89 s'entend d'une adresse situé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Article 882

L'obligation pour la personne mise en examen de déclarer une adresse au juge d'instruction prévue par le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16 s'entend d'une adresse situé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Article 883

L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130 sont portés à quinze jours lorsque le transfèrement se fait à partir ou à destination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Article 884

Par dérogation à l'article 193, le tribunal supérieur d'appel, en tant que chambre de l'instruction, se réunit sur la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à chaque fois qu'il est nécessaire.

Chapitre IV : De la cour criminelle

Article 885

La cour criminelle est présidé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ou par un magistrat du siège délégué par lui, assisté de quatre assesseurs lorsque la cour criminelle statue en premier ressort et de six assesseurs lorsqu'elle statue en appel.

Ces assesseurs sont tirés au sort, pour chaque session, sur une liste arrêtée par le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sur proposition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faite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euvent être inscrites sur cette liste les personnes de nationalité française, âgées de plus de vingt-trois ans, sachant lire et écrire en français, présentant des garanties de compétence et d'impartialité et jouissant des droits politiques, civils et de famille.

En cas d'empêchement du président, survenant avant ou pendant la session, celui-ci est remplacé par un magistrat du siège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n cas d'empêchement d'un assesseur, il est pourvu à son remplacement selon les mêmes modalités que pour sa désignation initiale.

Article 886

Le président de la cour criminelle adresse aux assesseurs qui l'assistent le discours prévu par l'article 304.

Ces derniers prêtent le serment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u même article.

Article 887

Le président de la cour criminelle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à la cour par les articles 316, 343, 344 et 371 à 375-2.

Article 888

Les majorités de huit ou dix voix prévues par les articles 359 et 362, deuxième alinéa, sont remplacées par des majorités de quatre ou cinq voix.

Chapitre V : Du jugement des délits

Article 889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composé d'un magistrat du sièg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Article 890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sont fixés à la fin de chaque année judiciaire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par une ordonnanc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prise après avis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te décision peut être modifi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 cours d'année.

Article 892

Les délais d'opposition prévus à l'article 491 e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492 sont de dix jours si le prévenu résid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t d'un mois s'il réside en dehors de celle-ci.

Article 893

Le délai supplémentaire prévu à l'article 500 est porté à quinze jours pour les parties qui résident hors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Article 894

Le nombre et le jour des audiences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statuant en tant que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sont fixés à la fin de chaque année judiciaire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par une ordonnanc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prise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Cette décision peut être modifiée dans les mêmes conditions en cours d'année.

Chapitre VI : Du jugement des contraventions

Article 895

Le délai d'opposition à l'ordonnance pénale prévu par le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527 est porté à deux mois si le prévenu ne réside pas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Article 896

Les articles 892 et 893 sont applicables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Chapitre VII : Des citations et des significations

Article 897

Le délai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52 s'applique lorsque la partie citée résid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Ce délai est augmenté d'un mois si la partie citée réside en tout autre lieu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Chapitre VIII : De quelques procédures particulières

Article 897-1

Le délai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27-6 est porté à quinze jours lorsque le transfèrement se fait à partir de Mayotte.

Article 899

L'article 706-9 est rédigé ainsi :

"Art. 706-9. - Le président tient compte dans le montant des sommes allouées à la victime au titre de la réparation de son préjudice :

- des prestations énumérées au II de l'article 1er de l'ordonnance n° 59-76 du 7 janvier 1959 relative aux actions en réparation civile de l'Etat et de certain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

- des prestations versées par les organisme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gérant un régime obligatoire de sécurité sociale ;
- des sommes versées en remboursement d'un traitement médical ou de rééducation ;
- des salaires et des ressources du salarié maintenus par l'employeur pendant la période d'inactivité consécutive à l'événement qui occasionne le dommage.

Il tient également compte des indemnités de toutes natures reçues ou à recevoir d'autres débiteurs au titre du même préjudice.

Les sommes allouées sont versées par le fonds de garantie des victimes des actes de terrorisme et d'autres infractions."

Article 900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06-14 est ainsi rédigé :

"Toute personne qui, victime d'un vol, d'une escroquerie ou d'un abus de confiance ne peut obtenir à un titre quelconque une réparation ou une indemnisation effective et suffisante de son préjudice, et se trouve de ce fait dans une situation matérielle grave, peut obtenir une indemni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articles 706-3 (troisième et dernier alinéa) à 706-12, lorsque ses ressources sont inférieures au plafond pour bénéficier de l'aide juridictionnelle partielle, affectées le cas échéant de correctif pour charges de famille, prévu par l'article 3 de l'ordonnance n° 92-1143 du 12 octobre 1992 relative à l'aide juridictionnelle en matière pénale à Mayotte."

Chapitre IX : Des procédures d'exécution

Article 901

L'article 758 est ainsi rédigé :

"Art. 758. - La contrainte judiciaire est subie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Article 901-1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2,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1294 프랑스 형사소송법

Il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a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12-3.

Article 901-2

Pour son application à Mayotte, le dernier alinéa de l'article 713-3 est ainsi rédigé : "La rémunération du travail des personnes détenues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un taux horaire fixé par décret et indexé sur 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défini à l'article L. 141-2 du code du travail applicable à Mayotte.

Ce taux peut varier en fonction du régime sous lequel les personnes détenues sont employées."

Article 902

Le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63-7 est ainsi rédigé :

"Lorsqu'une personne condamnée à un suivi socio-judiciaire comprenant une injonction de soins doit subir une peine privative de liberté, elle exécute cette peine dans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ermettant de lui assurer un suivi médical et psychologique adapté."

Titre III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Saint-Pierre-et-Miquelon

Article 902-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Saint-Pierre-et-Miquelon, il est tenu compte des adapta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 903

Le tribunal supérieur d'appel exerce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par le présent code à la cour d'appel et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Article 904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par le présent cod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à la cour d'assises, a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et au juge du tribunal d'instance sont exercées respectivement par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le tribunal criminel,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t par un jug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Les compétences attribuées a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et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appel sont exercées par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près le tribunal supérieur d'appel.

Article 905

Les attributions dévolues par le présent code aux avocats et aux conseils des parties peuvent être exercées par des personnes agréées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Ces personnes sont dispensées de justifier d'un mandat.

Chapitre II : De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Article 905-1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les termes : "pôle de l'instruction" et "collège de l'instruction" sont remplacés par les termes : "juge d'instruction".

Les articles 52-1, 83-1 et 83-2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906

Par dérogation à l'article 193, le tribunal supérieur d'appel, en tant que chambre de l'instruction, ne se réunit que sur convocation de son président ou à la demande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toutes les fois qu'il est nécessaire.

Article 907

Les articles L. 952-11 et L. 952-12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relatifs au remplacement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t des assesseurs et aux modalités particulières

1296 프랑스 형사소송법

d'exercice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sont applicables à la chambre de l'instruction et à son président.

Article 907-1

Les délais prévus à l'article 130, a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135-2 et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627-6 sont portés à quinze jours lorsque le transfèrement se fait à partir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Chapitre III : Des juridictions de jugement

Section 1 : Du jugement des crimes

Article 908

Les articles 233, 245, 261 et 261-1 du présent code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90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36,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convoque, en cas de besoin, le tribunal criminel par ordonnance prise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910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40, le tribunal criminel est composé du tribunal proprement dit et du jury.

Article 91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43, le tribunal proprement dit comprend le président et les assesseurs.

Article 91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44, le tribunal criminel est présidé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n cas de vacance de poste, d'absence, d'empêchement ou d'incompatibilité légale, les fonctions d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sont exercées par un magistrat du siège désigné par le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appel de Paris sur une liste arrêtée par lui pour chaque année civile.

Article 913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49, les conditions que doivent remplir les assesseurs au tribunal criminel sont celles énoncées à l'article L. 951-2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Article 914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50, les assesseurs sont désignés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Article 915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51, en cas d'empêchement survenu avant ou au cours de la session, les assesseurs sont remplacés par ordonnanc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Article 916

Pour l'application de l'alinéa 1er de l'article 260, le nombre des jurés ne peut être inférieur à trente-quatre.

Article 917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62, la commission comprend :

-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président ;
-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u son suppléant ;
- une personne agréée dans les conditions définies à l'article 905 et désignée par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

1298 프랑스 형사소송법

- trois conseillers généraux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le conseil général ;
- trois conseillers municipaux désignés chaque année par les conseils municipaux, à raison de deux pour la commune de Saint-Pierre et un pour la commune de Miquelon-Langlade.

Article 918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64, une liste spéciale de dix jurés suppléants est formée chaque année, en dehors de la liste annuelle du jury et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celle-ci.

Article 91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66, seize jurés, dont les noms sont tirés sur la liste annuelle, forment la liste de la session.

En outre, les noms de trois jurés suppléants sont tirés sur la liste spéciale.

Si par suite des décès, des incapacités ou des incompatibilités légales survenues depuis l'établissement des listes, le nombre des citoyens parmi lesquels les jurés de la session doivent être tirés au sort est inférieur à trente, la commission chargée de dresser la liste annuelle des jurés est réunie de nouveau pour compléter la liste principale et former une nouvelle liste spéciale de dix citoyens.

Article 920

Po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289-1, si, à la suite des absences ou des radiations, il reste moins de quatorze jurés sur la liste, ce nombre est complété par les jurés suppléants, suivant l'ordre de leur inscription ; en cas d'insuffisance, par des jurés tirés au sort, en audience publique, parmi les jurés inscrits sur la liste spéciale.

Article 921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96 et 297, le jury de jugement est formé de quatre jurés lorsque le tribunal criminel statue en premier ressort et de six jurés lorsqu'il statue en appel.

Article 92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98, l'accusé et le ministère public ne peuvent récuser chacun plus de quatre jurés.

Article 923

Les majorités de huit ou dix voix prévues par les articles 359 et 362, deuxième alinéa, sont remplacées par des majorités de quatre ou cinq voix.

Section 2 : Du jugement des délits

Article 924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398, le tribunal correctionnel est toujours composé du président ou d'un juge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Les articles L. 952-6 et L. 952-7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relatifs au remplacement de ces magistrats et aux modalités particulières d'exercice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sont applicables au tribunal correctionnel.

Article 925

Les articles 398-1 et 398-2 du présent code ne sont pas applicables.

Article 926

Po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399,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après avis du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t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xe par ordonnance, pendant la première quinzaine du mois de décembre, le nombre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Article 926-1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474 à Saint-Pierre-et-Miquelon,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1300 프랑스 형사소송법

Article 927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491 et 492, les délais d'opposition sont de dix jours si le prévenu résid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t d'un mois s'il réside en dehors de celle-ci.

Article 928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510,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est composée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ainsi que de deux assesseurs figurant sur la liste prévue à l'article L. 951-3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es articles L. 952-10 et L. 952-11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relatifs au remplacement du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et des assesseurs et aux modalités particulières d'exercice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sont applicables à 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Article 928-1

Pour l'application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11, le président du tribunal supérieur d'appel, après avis du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xe par ordonnance, pendant la première quinzaine du mois de décembre, le nombre des audiences correctionnelles pour l'année judiciaire suivante.

Article 929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513, l'appel est jugé sur le rapport oral du président.

Section 3 : Du jugement des contraventions

Article 930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523,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occupe le siège du ministère public devant le tribunal de police.

Article 931

Les articles L. 952-6 et L. 952-7 du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relatifs au remplacement des magistrats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t aux modalités particulières d'exercice des

fonctions juridictionnelles sont applicables au tribunal de police.

Section 4 : Des citations et significations

Article 932

Le délai prévu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552 s'applique lorsque la partie citée réside dans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Le délai est augmenté d'un mois si la partie citée réside en tout autre lieu du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Section 5 : Des recours en indemnité

Article 933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06-4,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à la commission d'indemnisation.

Section 6 : De l'exécution des sentences pénales

Article 934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es deuxième et troisième alinéas de l'article 712-2,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exerce les fonctions de juge de l'application des peines.

Il exerce les attributions dévolues au tribunal de l'application des pein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12-3.

Article 934-1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723-15, 723-24 et 723-27 à Saint-Pierre-et-Miquelon,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xerce les fonctions dévolues, selon les cas, au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 ou à son directeur.

Article 934-2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23-20 à Saint-Pierre-et-Miquelon, le premier alinéa de cet article est ainsi rédigé : "Le chef d'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examine en temps utile le dossier de chacun des condamnés relevant de l'article 723-19 afin de déterminer la mesure d'aménagement de la peine la mieux adaptée à leur personnalité."

Titre IV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applicables aux collectivités de Saint-Barthélemy et de Saint-Martin

Article 935

Pour l'application du présent code à Saint-Barthélemy et à Saint-Martin :

- 1° Les mots : "le département" sont remplacés par les mots : "la collectivité" ;
- 2° En l'absence d'adaptations prévues par le présent code, les références opérées par lui à des dispositions qui ne sont pas applicables à Saint-Barthélemy et à Saint-Martin sont remplacées par les références aux dispositions ayant le même objet applicables localement.

Article 936

Les débats contradictoires tenus en application de l'article 396 par le juge des libertés et de la détention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Basse-Terre pour les prévenus se trouvant dans la collectivité de Saint-Martin peuvent être réalisés par l'intermédiaire d'un moyen de télécommunication audiovisuelle, conformément à l'article 706-71.

Les dispositions des quatrième et cinquième alinéas de cet article sont alors applicables.

Copie de l'ordonnance d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prise en application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396 est adressée sur-le-champ, par télécopie ou par l'intermédiaire d'un moyen de communication électronique, pour notification et remise au prévenu et pour mise à exécution du titre de détention.

Article 937

Les personnes placées en détention provisoire jusqu'à leur comparution devant le tribunal peuvent être détenues dans un local autre qu'une maison d'arrêt au plus tard jusqu'au troisième jour ouvrable suivant l'ordonnance prescrivant la détention. A défaut, elles sont mises d'office en liberté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396.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717-3 et 718 ainsi que celles des cinq premiers alinéas de l'article 716 et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7 ne leur sont pas applicable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15, de l'article 719, d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724 et d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727, le local prévu au premier alinéa est regardé comme un 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725, la personne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 qui reçoit les personnes placées en détention provisoire au sein d'un local autre qu'une maison d'arrêt est regardée comme un agent de l'administration pénitentiaire.

Sous réserve qu'ils ne soient placés sous main de justice, les valeurs, bijoux et effets dont sont porteurs les détenus sont pris en charge par l'autorité publique responsable de ce local.

Ils sont dès lors inventoriés afin d'être remis à l'intéressé lors de sa libération ou d'être remis à l'établissement pénitentiaire dans lequel il sera, le cas échéant, conduit.

Un décret détermine en tant que de besoin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et le régime de détention applicable dans ce local.